제 2339 호
1990.3.1～3.15
경기도공보관실발행

경기도보

경기도청종합발간실
인 쇄

(조 례)

경기도조례 제 2007 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 2008 호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 2009 호 가축위생시험소 설치조례

제 2010 호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2011 호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제 2012 호 경기도사무위임위탁조례중 개정조례

제 2013 호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 2014 호 지방공사 경기도(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015 호 지방공사 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 2016 호 지방공사 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 2017 호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규 칙)

경기도규칙 제 2060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예 규)

경기도예규	제 592 호	축산물검사합격표시에 대한 사무취급요령 개정요령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64 호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 개정규정
	제 865 호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중 개정규정
	제 866 호	북부출장소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
	제 867 호	경기도전산실운영규정중 개정규정
	제 868 호	경기도북부출장소전결규정중 개정규정
	제 869 호	경기도북부출장소민원실운영규정중 개정규정

(고 시)

경기도고시	제 78 호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사항고시
	제 81 호	골재채취허가고시 (3 공구)
	제 82 호	〃 (5 공구)
	제 83 호	'90 춘기사방지지정고시
	제 87 호	경기도낚시터운영관리세칙중 개정세칙고시
	제 88 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무상양여 및 편입결정고시
	제 89 호	돼지와 양의 자가용 도살허용지역 지정 개정고시
	제 90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제 91 호	광명도시계획시설 (광명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경기도고시	제 92 호	어린이공원(반월제 281 호, 군자제 63 호)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제 93 호	연동가격(쇠·돼지고기)고시
	제 94 호	경기도자동차운전학원수강료고시 개정고시
	제 97 호	단미사료성분등록고시
	제 98 호	배합사료 〃
수원시고시	제 9 호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시행허가고시
시흥시고시	제 6 호	반월 〃 (도로)사업시행변경승인고시
김포군고시	제 6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공 고)

경기도공고	제 62 호	골재채취허가공고
	제 63 호	KS 표시허가취소공고
	제 64 호	시화지구특별회계공무원직인신조공고
	제 68 호	KS 표시허가취소공고
	제 69 호	품질관리등급시정취소공고
	제 70 호	중소기업협동조합의설립인가공고
	제 72 호	KS 표시허가취소공고
	제 74 호	공인신조공고
	제 76 호	특수지역골재채취승인공고
	제 81 호	공인신조공고
	제 82 호	〃
	제 84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말소의 공고

공 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사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한 환

1990 년 3 월 7 일

경기도조례 제 2007 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내지 (별표 4)중 위치란의 성남시 다음에 수성구 및 중원구를 각각 삽입하고, 남양주군의 "별내면"을 "퇴계원면"으로 하며, 평택군의 "오성면"을 "안중면"으로 하고, 파주군의 "천현면"을 "법원읍"으로 한다.

(별표 1) 고등학교의 부천시란중 부천북고등학교란 다음에 원종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흥시란중 "군자실업고등학교"를 "군자공업고등학교"로 한다.

시 군	명 칭	위 치
부 천 시	원종고등학교	부천시 중구 원종동 128 - 1 번지

(별표 3) 중학교의 수원시란중 곡선중학교란 다음에 구운중학교란을, 의정부시란중 금오여자중학교란 다음에 의정부서중학교란을, 부천

시란중 역곡중학교란 다음에 부일중학교란, 내동중학교란 다음에 덕산중학교란을, 안산시란중 원일중학교란 다음에 성포중학교란을, 용인군란의 신갈중학교란 다음에 기흥중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군	명 칭	위 치
수원시	구운중학교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8번지
의정부시	의정부서중학교	의정부시 의정부동 5브럭
부천시	부일중학교	부천시 남구 소사동 332-3번지
〃	덕산 〃	〃 중구 오정동 117-2번지
안산시	성포 〃	안산시 월피동 459번지
용인군	기흥 〃	용인군 기흥읍 신갈토지구획지구 3브럭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한 환

1990년 3월 7일

경기도조례 제 2008 호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 년 3 월 9 일

경기도조례 제 2009 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지소) 제 4 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 안양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군
〃 동부지소	경기도 이천군	성남시, 하남시, 여주군, 광주군 양평군, 이천군
〃 서부지소	경기도 김포군	부천시, 파주군, 고양군,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 남부지소	경기도 안성군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용인군 안성군
〃 북부지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미금시, 양주군, 남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 년 3 월 9 일

경기도조례 제 2010 호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한 교통환경조성과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원 교육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면제대상)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이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운수종사원 교육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운수종사원 교육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 3 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면제신청)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90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 년 3 월 9 일

경기도조례 제 2011 호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예산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강개발사업이라 함은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과 팔당호수준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중 "기타 수입금을 세입"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3월 9일

경기도조례 제2012호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제2호 다음에 제3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일련번호	실과명	위 임 사 무 명	위탁할자	근 거 법 규
3	상정과	①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1 조의 2 제 1 항
		②검사대상기기의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한 검사	〃	동법제 31 조의 2 제 2 항
		③합격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 교부	〃	〃 제 3 항
		④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및 검사의 연기	〃	〃 제 4 항
		⑤검사에 필요한 조치요구	〃	〃 제 7 항 동법시행규칙제 43 조
		⑥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및 채용연기승인과 필요한 조치명령	〃	동법제 36 조제 3 항·제 제 4 항 및 제 5 항
		⑦검사의 통지등	〃	동법시행규칙 제 41 조
		⑧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제 44 조
		⑨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 변경신고	〃	〃 제 45 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3월 9일

경기도조례 제2013호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임원)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7인 내지 11인이내

제28조의 2(경영평가)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의료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 천/안 성}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3월 9일

경기도조례 제 2014 호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 천/안 성}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임원)의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7 인 내지 11 인이내

제 28 조의 2(경영평가)의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의료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3월 9일

경기도조례 제 2015 호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임원)의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7인 내지 11인이내

제 28 조의 2(경영평가)의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의료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3월 9일

경기도조례 제 2016 호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임원)의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사 7 인 내지 11 인이내

제 28 조의 2(경영평가)의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의료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한 환

1990년 3월 14일

경기도조례 제 2017 호

경기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제 1 조(목적) 초·중·고등학교 과학 및 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의 탐구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건을 조성하고 전국민 과학화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하에 경기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위치) 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 26 번지에 둔다.

제 3 조(기능) ①과학교육원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제공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지도 및 교직원 연수
3. 과학·기술교육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지도
4. 과학,·기술교육자료의 전시 및 개발, 보급, 수리지원
5.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의 계몽과 지원

6. 기타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제 4조(원장) ①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과학교육원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5조(정원) 과학교육원 운영을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 6조(하부조직) ①과학교육원에 서무과, 연구부, 지도부, 자료부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 7조(서무과) 서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문서관리
3. 민원 및 보안관리
4. 인사, 복무, 연금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8조(연구부) 연구부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원 전체 업무의 기획·조정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3. 과학·기술교육 연구, 실험, 시범학교 운영지도

4.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지도자료 개발보급 지원

5. 〃 관한 정보자료 발간 및 정보교환

6. 과학·기술교육 행사의 운영 및 홍보

7. 학교 및 시군의 과학실험(자료)실 운영지도와 상담

8. 도서실 관리운영

제 9 조(지도부) 지도부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 기술 및 컴퓨터에 관한 교직원 연수

2. 학생, 일반인에 대한 과학기술·컴퓨터 실험실습지도 및 특별활동 운영

3.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각종 경진·경시대회 운영

5. 과학실험실, 컴퓨터실 관리 운영

6. 전체투영실 및 전체관측실 관리 운영

제 10 조(자료부) 자료부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실험기구, 자료, 시청각 및 전시자료 개발, 보급

2. 과학작품 및 창안품의 제작지도와 전시회 운영

3. 각종 전시실 운영 및 관람 지도

4. 과학교구 수리 및 시청각 기자재 지원

5. 수족관, 온실 및 동·식물 교재원 관리 운영

6. 시청각실 및 기술공작실 관리 운영

제 11 조(운영자문위원회) ①과학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과학교육원에 경기도과학교육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2 조(재정) ①과학교육원의 소요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계상한다.

제 13 조(사용료 및 제작실비) ①과학교육원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실험기구 및 교구의 제작을 의뢰 받았을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사용료 및 제작실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14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 1337 호의 경기도학생과학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기도학생과학관에 소속된 직원은 경기도과학교육원 소속의 직원이 된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3월 9일

경기도규칙 제 2060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공무원정원) 제 1항 "별표 1"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총괄)의 계난 1,920을 1,92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68을 1,073으로 하고, 5급의 소계 215를 216으로, 지방수의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4를 5로, 6급의 소계 296를 297로, 지방수의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 3을 4로, 7급의 소계 351을 354로, 지방행정주사보 156을 157로, 지방수의사보 9를 11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676을 678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520을 522로, 지방위생원 46(사역 45, 위생 1)을 47(사역 46, 위생 1)로, 지방사무보조원 264(조무 134 타자 86, 전산 32, 제도 4, 편집 1, 필기 1)를 265(조무 134, 타자 87 전산 32, 제도 4, 편집 1, 필기 1)로 한다.

동조 제 4항 "별표 4"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사업소)의 계난 571을 578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261을 266으로 하고, 5급의 소계 23을 24로, 지방수의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4를 5로, 6급의 소계 77을 78로, 지방수의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 3을 4로, 7급의 소계 92를 95로, 지방행정주사보 25를 26으로, 지방수의사보 8을 10으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264를 266으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188을 190으로, 지방위생원 25(사역 25)를 26(사역 26)으로, 지방사무보조원 54(조무 34, 타자 20)를 55(조무 34, 타자 21)로 하며,

가축위생시험소(본소)의 계난 14를 12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을 5로 하고, 7급의 소계 2를 1로, 지방수의사보 2를 1로 하며, 연구직난 소계 3을 2로, 하고, 연구사의 소계 3을 2로, 지방농업연구사 3을 2로 하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계난 10을 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5를 4로 하고, 7급의 소계 3을 2로, 지방수의사보 2를 1로 하며,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난 다음에 남부지소난을 신설하여 계난에 11을, 일반직난 소계에 8을, 5급의 소계에 1을, 지방수의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 1을, 6급의 소계에 1을, 지방수의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에 1을, 7급의 소계에 6을, 지방행정주사보에 1을, 지방수의사보에 5를, 연구직난 소계에 1을, 연구사의 소계에 1을, 지방농업연구사에 1을, 기능직난 소계에 2를, 10등급의 소계에 2를, 지방위생원에 1(사역 1)을, 지방사무보조원에 1(타자 1)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

축산물검사합격표시에 대한 사무취급요령 개정요령을 이에 발령한다.

1990 년 3 월 9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예규 제 592 호

축산물검사합격표시에 대한 사무취급요령개정요령

축산물검사합격표시에 대한 사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경기도축산물검사합격표시에대한사무취급요령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 35 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검사합격표시 부호 및 검인번호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도축장) 축산물작업장중 도축장의 검사합격표시부호 및 검인번호부여는 별표 1 과 같이 한다.

제 3 조(도계장) 축산물작업장중 도계장의 검사합격표시부호 및 검인번호부여는 별표 2 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의 검사합격표시부호 및 검인은 1991. 2. 9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요령발령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부여한 부호 및 검인번호는 이 요령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별표1)

도 축 장 검 인 번 호

시 군	도 축 장 명	구 분	검인번호		비 고
			부 호	번 호	
수 원	수원도축장	1 급	거	21	
	축산시험장도축장	〃	〃	22	
성 남	초원식품	특 급	〃	11	
의 정 부	의정부도축장	1 급	〃	23	
안 양	협신기인	특 급	〃	12	
	대화식품도축장	2 급	〃	51	
부 천	부천도축장	1 급	〃	24	
동 두 천	동양기업	〃	〃	25	
평 택 시	제일식품	특 급	〃	13	
미 금	미금물산	〃	〃	14	
시 흥	군자도축장	1 급	〃	26	
남 양 주	와부산업	〃	〃	27	
	대하산업	〃	〃	28	
여 주	여주도축장	〃	〃	29	
화 성	화성도축장	〃	〃	30	
파 주	파주 〃	〃	〃	31	
고 양	원혁산업(주)	특 급	〃	15	

광 주	필성산업	특 급	거	16	
연 천	전곡도축장	1 급	〃	32	
포 천	서울경기양돈협동조합 포천도축장	특 급	〃	17	
가 평	청평도축장	1 급	〃	33	
양 평	양평 〃	〃	〃	34	
이 천	신영축산㈜	특 급	〃	18	
용 인	용인도축장	1 급	〃	35	
안 성	안성 〃	〃	〃	36	
김 포	김포 〃	〃	〃	37	
	㈜천보농산	2 급	〃	52	
강 화	강화도축장	1 급	〃	38	
	교동 〃	〃	〃	39	
옹 진	백령 〃	〃	〃	40	
계	개 소				

(별표2)

도 계 장 검 인 번 호

시 군	도 계 장 명	구 분	검인번호		비 고
			부 호	번 호	
성 남	대한브로이라	특 급	거	101	
의 정 부	경미식품	〃	〃	102	
안 양	효성 〃	〃	〃	103	
부 천	남양 〃	〃	〃	104	
동 두 천	천호인티그레이션	〃	〃	105	
평 택 시	부성산업	〃	〃	106	
미 금	유림 〃	〃	〃	107	
양 주	경남부로이라	〃	〃	108	
	삼성 〃	〃	〃	109	
화 성	수원도계장	〃	〃	110	
	(주) 계 림	〃	〃	111	
	(주) 한일식품	1 급	〃	121	
고 양	화성산업(주)	특 급	〃	112	
광 주	태남산업	〃	〃	113	
포 천	정우식품	〃	〃	114	
양 평	양평축협	1 급	〃	122	
용 인	대연식품	특 급	〃	115	
안 성	(주) 신기농장	1 급	〃	123	
김 포	금환산업	특 급	〃	116	
계	19 개소				

경기도훈령 제 864 호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 3. 6.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별표사항중 치수과소관 제 1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내 부 위 임 사 항

○ 치수과소관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1	직할하천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공영개발사업구역내의 행위허가에 한함)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하천법제 25 조 제 1 항 제 6 호	경 기 도 공영개발 사업단장

경기도훈령 제865호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3 월 9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정원) 제13항 "별표5"중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위생시험소(본소)의 계난 7을 6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7을 6으로 하고, 6급의 소계 3을 2로, 수의사 3을 2로 하며,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난 다음에 남부지소 난을 신설하여 계난에 1을, 일반직난 소계에 1을, 6급의 소계에 1을, 수의사에 1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3월7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훈령 제 866 호

북부출장소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3 월 13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북부출장소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

북부출장소사무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위임사항) "별표"중 상정과 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위 임 사 무 목 록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처리부서
상 정 과	1. 계량기 수리검정 및 검사	개 발 과
	가. 적산식 가솔린 미터	
	나. 액화석유가스 미터	
	2. 부정계량기 단속 및 처벌	〃
	3. 실량표시 상품의 검사 및 조치	〃
	4. 계량기제작(수리)업허가	〃
	5. 계량기제작(수리)업허가증 재교부	〃

상정과	6. 계량기제작(수리)업 허가증 정정, 승계신고수리	개발과
	7. 계량기제작(수리)업 분공장설치신고수리	〃
	8. 계량기제작(수리)업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신고수리	〃
	9. 계량기제작(수리)업 휴·폐업신고수리	〃
	10. 계량기제작(수리)업자 관리	〃
	가. 사업장 지도감독	
	나. 사업정지처분 및 취소	
	11.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수리	〃
	12. 계량기 자치관리 인정	〃
	13. 계량시범점포 지정 및 관리	〃
	14. 계량기 증명업, 판매업관리 지도감독	〃
	15. 수출용 원자재 단위소요량 책정, 정·가소요량 증명발급, 고시, 재발급 및 사항변경	〃
	16. 군납업자등록	〃
	17. 군납업자 등록사항변경	〃
	18. 부당경쟁 방지고발 및 처리	〃
	19. 무역업 등록허가	〃
	20. 무역법 허가사항 변경허가	〃
	21. 무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
	22. 무역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
	23. 무역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북부출장소사무위임규정개정

1. 개정주요골자

가. 기위임된 사무에 관련되는 부수사무 추가 위임

- ㅇ 계량기 제작(수리)업 행정처분 권한
- ㅇ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책정 권한
- ㅇ 무역업허가 부수 사무
  - 변경허가
  - 지위승계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

나. 시군 위임사무 삭제

- ㅇ 택시미터기 수리검정 권한
- ㅇ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승인 권한

다. 위임사항 순위조정 : 삭제 및 추가위임에 따른 항목번호(순위)조정

2. 개정사유

- ㅇ 위임사무중 주된사무만 위임되고 부수사무가 위임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불편
- ㅇ 모법개정에 따른 조문폐지 업무가 일부 삭제되지 않고있어 위임근거 소멸
- ㅇ 북부출장소에 위임이후에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가 일부 잔존하여 업무처리체계 및 책임한계에 혼선 초래

3. 신·구조문대비표(위임사항)대비표

소관부서	위임사항 변경전	위임사항 변경후	개정사유
상정과	1. 계량기 수리검정 가. 택시미터 나. 적산식 가솔린미터	1. ····· 및 검사 가. 적산식 가솔린미터 나. 액화석유가스 가스미터	수리검정업무에 계속 검사업무추가 택시미터검정은 '87시군 위임 추가위임
	2. 계량기사업장외 수리업승인		삭제(계량법 개정에 의한 모법 조문 삭제)
	3. 부정계량기 단속 및 처벌	2. ····· 3. 실량표시상품의 검사및조치	위임항목 순위조정 〃
	4. 계량기제작(수리)업 허가	4. ·····	
	5. 계량기제작(수리)업 허가증 재교부	5. ·····	〃
	6. 계량기제작(수리)업 허가증 정정 승계신고수리	6. ·····	〃

상 정 과	7. 계량기제작(수리)업 분공장설치 신고수리	7. ……	위임항목 순위조정
	8. 계량기제작(수리)업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신고수리	8. ……	〃
	9. 계량기제작(수리) 휴업(폐업)신고수리	9. …… ……	〃
		10. 계량기제작(수리)업 관리 가. 지도감독 나. 사업허가 정지처분 및 취소	신설(허가업무에 연계처리)
	10.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	11. ……	
	11. 계량기제작 기호신고		삭 제(계량법 개정에 의한 조문삭제)
	12. 계량기 자치관리 인정	12. ……	위임항목 순위조정
		14. 계량기증명업, 판매업 관리 지도 감독	

	13.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증명발급	15. …… 단위소요량 책정 및 정·가소요량 증명발급, 고시재발급 및 사항변경	소요량 증명발급에 필요한 단위소요량 책정업무 추가위임
	14. 군납업자 등록	16. ……	위임항목 순위조정
	15. …… 등록사항 변경	17. ……	〃
	16. 부당경쟁방지 고발 및 처리	18. ……	〃
	17. 무역법 등록허가	19. ……	〃
		20. 무역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설(무역업 등록에 수반되는 부수업무 추가위임)
		21. 무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22. 무역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23. 무역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18.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승인 19. 실량표시 상품의 검사 20. 계량기(주유기, L.P.G충전기)의 검사		삭제(90.2 시군에 위임) 항목3으로 순위조정 항목1호 순위조정

경기도 전산담당관실운영규정 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개정 82.10.26 (제 659 호)
개정 86. 4.12 (제 732 호)
개정 90. 3.13 (제 867 호)

1990년 3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훈령 제 867 호

경기도전산담당관실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전자계산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전산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담당관실"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과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제반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기계실, 입력실, 프로그래머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테이프, 디스크등)와 전산처리된 출력보고서를 말하며 전산자료에는 제 26 조에서 규정한 중요 전산자료와 이를 제외한 일반 전산자료로 구분한다.
3. "업무개발"이라 함은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일체의 작업과 이미 등록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4. "프로그램수정"이라 함은 기본 프로그램과 상이한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사용 언어의 변경을 말한다.

5. "전산전문요원"이라 함은 전산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중 프로그래머, 기기조작자 이상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전산실운영과일반전산자료입력

제 3 조(작업계획수립)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월 전산업무개발 및 처리계획, 기계처리계획, 자료입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기계처리의뢰) 각종 자료를 기계처리 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업무별 기계처리 작업대장을 작성하여 전산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기계처리확인) 기계조작 담당자는 의뢰된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업무별 기계처리 작업대장을 작성하여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기계실 근무조 편성) 담당관은 전자계산조직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 기계조작자의 일일 근무시간을 2부 또는 3부제로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기계장애발생) 전자계산조직(주전산기, 주변기기, 단말기, 입력기)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수정비 회사에 통보하여 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기계장애 발생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기계가동 및 정지) 정상업무 시간외에 전자계산조직을 가동하거나 정지할때에는 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시된 업무량을 처리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 9 조(원시자료등의 관리) ①외부로부터 전산처리토록 위탁된 각종

원시자료 및 변동자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훼손 분실등의 사고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가 완료되어 전산담당관실에서 보관이 불필요한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는 최단 시간내에 위탁받은 부서에 인계토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일반전산자료의 관리) ①전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개별 색인표를 부착하고 입력실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입력실에 기계실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기계실에 보관 관리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주무계에서 집중 보관 관리하고 필요시 업무담당자가 사용토록 한다.

②담당관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자료에 대하여는 예비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반출 대여등은 제 12조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산처리후 보관의 필요가 없는 자료는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시에는 담당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 11조(소모품의 관리) 담당관은 전산처리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의 적정 재료량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불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 12조(프로그램관리) ①개발된 프로그램 및 폐기하여야 할 프로그램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 1항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프로그램은 관련업무담당계장이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③법령개정, 제도개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할 시

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담당관의 확인을 받은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프로그램은 전산담당관실 내에서만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을 외부로 반출 또는 대역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3급이상의 비밀자료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는 관련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3조 (프로그램의 문서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기계시험이 끝난 프로그램 또는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하여야 한다.

제 14조 (자료의 유지관리) ①기계실에서는 보존자료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며 자료의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존자료의 현시성 (UP-DATING)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자료의 현황을 점검 파악하여 관련부서의 협조하에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에서는 월 1회이상 자기테이프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 업무별 테이프 총괄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테이프의 반출 입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전산정보 반출대장에 기재한다.

제 15조 (입력처리) ①전산전문요원이 프로그램, 원시자료 및 변동자료를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입력실 조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자료를 입력요원에게 작업토록 할당하고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한 내용을 별지 제 10 호 서식에 기록한후 관련업무담당 계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입력실 조장은 자료입력 작업전에 입력요원에게 화일설계 양식에 의거 자료입력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제 16 조 (보관매체의 관리) 화일관리 담당자는 자기테이프의 신규구입 대출 및 회수시에는 별지 제 11 호 서식에 의한 테이프 운용 현황부 및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한 테이프 출납부를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자료보관 및 폐기) ① 전산부서에서 처리되는 입력 또는 출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문서보존 기간에 준한다. 다만, 자기테이프 및 디스크화일의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료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 13-1 호 서식 전산자료 관리카드 (화일이력부 및 테이프 이력부) 를 근거로 별지 제 14 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간 경과 화일명세표를 작성하여 공람한후 화일을 폐기한다.

제 18 조 (기계보안관리) ① 기계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전산담당관실 근무자 이외의 자는 기계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별지 제 22 호 서식 및 별지 제 22-1 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부로부터 견학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기계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기계실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계실내에서는 끽연을 금하고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실 출입자는 어떠한 자성물질도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신발을 벗고 출입하여야 한다.

3. 기계실의 기계장치는 반드시 기계제작 순서에 의거 작동하여야 하며 기계조작자 이외에는 작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단말기운영

제 19 조(단말기 설치) ①도정 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개발 및 자료처리를 위하여 전산부서와 주전산기로 부터 단말기를 연결 사용할 수 있으나 타 기관에서 사용코자 할때에는 별지 제 15 호 서식에 의거 단말기설치 요청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 설치 요청서를 접수한 전산부서의 장은 별지 제 16 호 서식에 의한 단말기 설치 타당성을 조사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중앙부서 지침에 의거 설치코자 할때는 예외로 한다.

제 20 조(단말장치 관리) ①단말기조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주전산기를 보유한 전산담당관실의 통제에 의한다.

②단말기장애시는 전산담당관실에 통보, 즉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단말기의 운용요원은 별지 제 21 호 서식에 의한 단말기 사용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단말기운용관리자의 지정) ① 기계운영부서의 장은 단말기를 설치한 기관으로 하여금 단말기의 운용과 시설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 17 호 서식에 의한 단말기 취급자 등록서를 징구받아 등록된자만이 개인코드와 암어에 의하여 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 (암어의 종류 및 관리방법) 단말장치 사용에 따른 암어의 종류 및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팀 패스워드 (Team Password) 란 단말기 사용시 사용팀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팀별로 관리하게 할수 있다.

2. 프로그래머 네임 (Programmer Name) 및 프로그래머 패스워드 (Programmer Password) 란 프로그램을 작성 및 수정할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래머별로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 (단말장치사용시의 자료관리) ① 각 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자료의 관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의 신고는 각 단말장치에서 전산처리한 내용을 단말기 조작자가 기계실의 자료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관 신청을 받은 자료관리담당자는 동 내용을 별지 제 18 호 서식에 의한 단말장치 자료보관 신청서에 기입하여 처리한다.

제 24 조 (온라인회선 및 설비관리) 온라인 관계 전산기의 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계조작원은 회선 및 설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 19 호 서식에 의한 통신회선 및 단말장치 관리일지에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정기점검의 실시) 보수정비 계약에 의하여 전산기 및 부대설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 20 호서식에 의한 정기점검실시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중요전산자료의보안및보관

제 26 조(정의) 이 규정에서 중요 전산자료라 함은 비밀사항(대외비 포함) 이외의 행정업무의 전산처리에 이용되는 자료와 그 전산처리 결과로서 전산화 형태로 보관하는 자료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 및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 27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1. 프로그램 및 입출력 데이타의 보안 및 보관

2. 1 호의 내용이 수록된 기록매체 및 도큐멘트의 보안 및 보관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 및 동시행규칙과 기타 보안업무 관계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등록) 모든 중요 전산자료는 보관 기재별로 관리 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록부에는 문서번호, 제목, 생산부서, 생산 및 파일일자와 부수등의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제 29 조(보관) ①중요전산자료는 일반자료와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요 전산자료의 보관장소에의 출입은 취급인가자에 한하며 출입자의 기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요 전산자료의 보관장소에의 출입은 취급인가자에 한하며 출입자의 기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관기간이 경과한 중요전산자료는 파기와 동시에 보관기재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 30 조(자료의 입출력) ①전산부서의 장은 중요전산자료를 처리하는 기기운용 요원을 취급인가자로 한정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기기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자에게 개인코드와 암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중요전산자료의 입출력시에는 작업일지 및 출력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출력대장에는 문서번호, 제목, 처리의뢰자, 생산 및 파기일자와 부수, 수령자 및 배포내역등의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③전산부서의 장은 사용하지 않는 입출력 기기를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 31 조(이용) ①전산부서의 장은 단말기에 의한 중요전산자료의 부정사용을 막는 물리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접근 허가카드나 암어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전산부서의 장은 중요 전산자료를 포함한 데이타 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중요전산자료 보호기능을 갖춘 제어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사용권한이 없는자가 부정 사용함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중요 데이타를 수록하고 물리적 보관기재에의 접근을 특별한 접근 코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데이타 베이스 관리자는 접근코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2 조(복제 및 복사) 중요 전산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복제 및 복사는 그 사유 및 경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33 조(수정) 중요 전산자료의 수정시는 그 사유 및 경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34 조(파기) ① 중요 전산자료를 수록한 자기테이프와 자기디스크는 내용을 완전히 지운후 파기하여야 한다.

② 기타 외형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기록매체 및 도큐멘트는 소각, 용해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중요 전산자료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취급인가권자의 참여아래 그 자료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긴급시의 조치) ①보관책임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BACK-UP)을 제작하고 안전지역에 소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긴급시의 중요전산자료의 보호 및 복구조치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 36 조(통신보안) 중요 전산자료의 통신시의 보안에 대하여는 데이타 통신 보안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 37 (보안사고 조치) 중요 전산자료의 보안사고의 발생시 이를 인지한자는 사고일시, 내용, 조치계획을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 38 조(보안점검) 보안담당관은 중요전산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안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년 1 회이상의 중요 전산자료의 일제 확인

② 일일 보안담당의 지정 시행

③ 전기관리, 장비관리 관계일지의 유지

④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작업일지 및 출력관리대장 비치

⑤ 소속 직원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

제 39 조(책임한계) 전산담당관실 운영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한계를 별지 제 1 호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전산업무처리의책임한계

업 무 내 용 별	책 임 한 계		
	1 차책임	2 차 책 임	3 차책임
○ 원시자료등의 관리	담 당	담 당 계 장	담 당 관
○ 일반전산자료의 관리			
• 기 계 실	〃	전산관리계장	〃
• 입 력 실	〃	전산지도계장	〃
○ 프로그램 관리			
• 보 관	〃	전산지도계장	〃
◦ 유지보수	〃	담 당 계 장	〃
○ 자료의 보관			
• 기 계 실	〃	전산관리계장	〃
• 입 력 실	〃	전산지도계장	〃
○ 자료의 폐기			
• 기 계 실	〃	전산관리계장	〃
• 입 력 실	〃	전산지도계장	〃
○ 기계보안관리 및 점검			
• 사 무 실	〃	전산지도계장	〃
• 기 계 실	〃	전산관리계장	〃
• 입 력 실	〃	전산지도계장	〃
○ 단말장치 운영관리			
• 사 무 실	〃	전산지도계장	〃
◦ 기 계 실	〃	전산관리계장	〃
• 총 무 과	〃	인 사 계 장	총무과장
◦ 지 방 과	〃	행 정 계 장	지방과장

※ 각계의 예산이 수반된 업무에 대하여 계약 및 지출품위는 담당계에서 책임 처리한다.

※ 정보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료의 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 위 각 항목이외의 업무 및 신규업무 발생시는 관련업무 담당계에서 책임 처리한다.

〈별지 제 2 호 서식〉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기 계 처 리 의 뢰 서

	업무명	의뢰일자	의뢰자	기관명	SHEET 구분			업무내용
TITLE					이면지	양면지	FORM	

	QUALIFIER	FILENAME	EIEMENINAME	기관코드	RUNNAME	비 고
RUN INFOR - MATION	ST	*	•			

	DEVICE	REEL NO	FILENAME	I/O	B/L	R/L	자료건수	비고
FILE INFO -RMATION								

	장 수	VOLUME	OUT FILENAME	비 고
DISKETTE INFORMA - TION				
DISKETTE NO				

ENTER DATE	
PROGRAM-MER 요 구 사 항	

기계처리결과통보서

결재	담 당	계 장	담당관

	접수일자	처리일자	업무명	기관명	RUNNAME	출력매수
TITLE						

	정 상	ERROR 내용	비 고
OPERATOR MESSAGE (작업완료구분)			

〈별지 제3호 서식〉

업무별기계처리작업대장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년 월 일)

업 무 명	작 업 내 용	소요시간	처 리 결 과	담 당 자 사 용 자	서 명 날 인

〈별지 제 4 호 서식〉

전 자 계 산 조 직 의 이 용 및 장 애 현 황

서명	정비자	정비회사	장애내용	총장애시간	장애종료시간	통보시간 및 통보자	장애개시시간	장애기재명	총가동시간	가동종료시간	가동개시시간	일자	결재		
													담당	계장	담당관

〈별지 제5호 서식〉

프 로 그 램

○ 업무명 :

일련번호	등록일자	프로그램화 일	작업구분 (B/O)	RUN STREAM ELEMENT/ VERSION	SOURCE ELEMENT/ VERSION	LANGUAGE 및 PACKAGE	내 용 요 약

등 록 부

처리 주기	대상기관 및 배부처	관련 화일 내역	출력명	결재			폐기				
				담당	계장	담당관	일자	사유	담당	계장	담당관

〈별지 제 6 호 서식〉

프로그램 수정 신청서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업 무 명					
등록번호		RUN-ID		PROGRAM - ID	
수정구분	1. 내용상이	2. 내용불명확	3. 용어불통일		
	4. 용어오자	5. 제도개선	6. 기 타		
수정방법	1. 신설	2. 삭제	3. 갱신	4. 기타	
수정완료 예정일		수정자			

수정·내용요약

〈별지 제 7 호서식〉

PROGRAM 수정결과보고서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업 무 명 (수정내용)	등록번호	RUN-ID		PROGRAM-ID				
						수정방법	신설 ①	삭제 ②	갱신 ③	기타 ④
						작성년월일	년 월 일			
수정구분 ①내용상위 ②내용불분명 ③용어불통일 ④용어오자 ⑤요망 ⑥기 타						작 성 자				

PAGE	COLUMNS	수정구분	수 정 개 소(OLD)	COLUMNS	수 정 방 법	수정안(NEW)

〈별지 제8호 서식〉

전 산 정 보 반 출 대 장

반출								반납			
일 자	품 명	수 량	목 적	반출선	결재			일 자	결재		
					반출요구자	계 장	담당관		환수확인자	계 장	담당관

〈별지 제 9 호 서식〉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의 뢰 일		처 리 일	
업 무 명		DISKE - TTE수	
의뢰건수		건 수	
처리기한		ENTRY	
의 뢰 자		VERIFY	
참고사항(기관별 내역등)		참고사항(기관별 내역등)	

담 당	계 장	담 당 관

DISKETTE
파 기 일 . . .

〈별지 제 10 호 서식〉

처 리

19 . . . 요일

접 수				처 리			
기관명 (의뢰자)	업무명	작업구분	자료량	업무량	계	천공	검공
				일 계			
				월 계			
				누 계			
				명 일 제 획			
				업무명	의뢰일자	기관명	자료량
일 계							
월 계							
누 계				계			

기 록 부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퇴 청 시 점 검 사 항

구 분	이상유무		비 고
	유	무	
전기배관확인			
소화장비정비여부			
자료보관상태			
실내소등여부			
보안사항점검			
점검자및시간	시 분 (인)		

특 기 사 항

〈별지제 11 호서식〉

테 이 프 운 용 현 황 부

① 일 시	② 적 요	③ 1200 FEET			④ 2400 FEET			⑤ 기 타			⑥ 결 재		
		반입	반출	재고	반입	반출	재고	반입	반출	재고	담당	계장	담당관

〈별지제 12 호서식〉

테 이 프 출 납 부

① 반 출 사 항									② 반 입 사 항				⑫ 비 고
③ 일 시	④ MT-NO	⑤ 화일내용	⑥ 반출사유	⑦ 반출자 성명(인)	담당계장	⑧ 테이프관리자 담 당	계 장	담당관	⑨ 일 시	⑩ 반입자(인)	⑪ 테이프관리자 담 당	계 장	

〈별지 제 13 호〉

업 무 별 테 이 프 총 괄 표

년 월 일 현재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① 업무명 \ ② 증감	③ 보관화일				④ 소산화일				⑤ 계				⑥비고
	ft 2,400	ft 1,200	ft 600	기 타	ft 2,400	ft 1,200	ft 600	기 타	ft 2,400	ft 1,200	ft 600	기 타	

SEQ. NO.	
구 분	

전 산 자 료 관 리 카 - 드

〈별지 제 13-1 호 서식〉

업무명	내 용	VOL-NAME	LBL-NAME	BLOCK SIZE	RECORD SIZE	자료 건수	규 격	작성 년월일	파기 의뢰자	파기 년월일	비 고

〈별지 제 14 호 서식〉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①업무명	

② NO.	③ 프로그램명 (ID)	④ 화 일 명	⑤ 화 일 내 용	⑥ 기계실보관화일		⑦ 소 산 화 일	
				REEL NO. PACK NO.	보관기간	REEL NO.	보관기간

〈별지 제 15 호 서식〉

단 말 기 설 치 요 청 서

1. 기 관 명 :

2. 설치기종 :

3. 설치장소(주소) :

4. 적용업무(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

5. 단말설치방식

6. 설치요구일자

7. 기 타

첨 부 : 1. 설치장소 도면 1 부

2. 연결도면 1 부

〈별지 제 16호 서식〉

단말기설치타당성조사표

1. 대상기관

2. 조사기간

3. 전산실(단말)운영현황

가. 인 원

나. 시 설

(1) 기계설치

(2) 설치장소

다. 작업처리(적용업무)

라. 예산사항

4. 요구기종 및 용품(신청자부담 여부 확인)

5. 소 견

6. 기계연결도면(별첨)

19 . . .

조사자 (인)

귀하

〈별지 제 17 호 서식〉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 재

단말기취급자등록서

1. 기 관 명 :

2. 기계관리자 :

3. 등록자명단 :

①등록일자	②개인코드	③ 성 명	④ 업무번호	⑤ 비 고

〈별지제 18 호서식〉

단 말 장 치 자 료 보 관 신 청 서

신청일 : 년 월 일

① 기관명	② 업무명	③ 작업자명 / PROJECT-ID	④ RUN / -ID	⑤ 작업내용	⑥ REEL-No / PACK-ID	⑦ FILE 명	⑧ I/O관계 / C/A관계	⑨ FILE 구 분	⑩ 통화자	⑪ OP 확인 결과	⑪ OP 확인 확인

〈별지 제 19 호 서식〉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통신회선및단말기장치관리일지

년 월 일

설치장소	장애사항					신고자	접수자	처리자	장애원인및보수내역
	전원	터미날	HOST	통신		신고기간	장애상태	완료시간	
				장비	회선				

〈별지 제 20 호 서식〉

정기점검실시상황보고서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재

① DEVICE 명	② 보수및정비내용	③ 특 기 사 항
④ 차주점검대상기기	⑤ 점 검 내 용	⑥ 특 기 사 항
		C·E 확인
		(인)

〈별지 제 21 호 서식〉

단 말 기 사 용 일 지

담 당	계 장	담당관	결 재

일 자	사용자 성 명	사용시간		작 업 내 용 (통화내용)	통화시간		수화자 성 명	비 고
		시 작	종 료		시 작	종 료		

〈별지 제 22 호〉

전 자 계 산 실 출 입 자 통 제 부

월 일	출입자성명	출입자 소속 (주 소)	출입자 직명	출 입 시 간		용 건	담 당	계 장	담당관	비 고
				입	출					

〈별지 제 22-1 호〉

전자계산실출입자통제부 (내 부)

월 일	출 입 자 성 명	용 건	출입시간		결 재			비 고
			입	출	담 당	계 장	담당관	

경기도 훈령 제 868 호

경기도북부출장소 전결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3 월 15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 기 도 위 임 전 결 규 정 개 정 규 정

제 1 조(목적) 이규정은 정부공문서 규정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서 사무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출장소 부소장 및 각과장의 전결 사항은 따로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일반적인 전결사항) 출장소 부소장, 과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소장의 전결사항

가. 법령등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나. 과·계장의 국내출장명령

다. 과장의 조퇴와 외출허가

라. 계장의 연가, 병가, 공가허가

마.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

바.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사. 하급기관에 1 회보고를 요하는 사항

아. 소장의 하명사항에 대한 복명의 처리

자.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차. 소속과장의 사무인계 보고의 처리

카. 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 공문의 처리

타. 기타 예산등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확정된 계획 및 시책의 추진사항

나. 소속공무원의 국내출장명령(6급이하)

다. 소속공무원의 조퇴, 외출허가 및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

라.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마. 소속공무원의 경미란 복명서의 처리

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질의 조복

사. 대장, 기타 장부정리에 그치는 보고서의 처리

아.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 인수 확인

자. 문서의 불비 오류등의 보정을 위한 조복

차. 과 비품등 각종 장부의 기록정리 확인

카. 각종 공부의 열람허용

타. 대장에 의한 각종 증명발급

파.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하. 수취하지 않을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거. 기타 현업위주의 업무처리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제4조(단위업무의 전결사항) ①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외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소장 부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재 사항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소의 중요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총무과장과 기타 다른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관과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 보고) ①전결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말여는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계획중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재정 및 인사감독 사항
3. 각종자금의 영달등
4. 각종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5.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고
6.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제 7 조(문서통제관의 의무) 문서통제관은 이규정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시정조치 하여야한다.

제 8 조(민원사무의 반려등) 민원서류를 불허 또는 반려할때는 전결사항이 부소장일 경우에는 소장에게, 과장일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결최를 득하여야 한다.

제 9 조(별도규정) 출장소 민원실 사무중 창구에서 즉결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무과소관〕

단 위 사 무 명	결재구분			비고
	과장	부소장	소 장	
1. 기획일반				
가. 소정보고 작성			○	
나. 지휘보고			○	
2.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		
나. 수정운영계획		○		
다. 전시운영계획		○		
3. 각종 지시사항 처리				
가. 지시사항 시달	○			
나. 추진계획 수립			○	
다. 추진실적 보고		○		
라. 최종결과보고			○	
4. 공 보				
가. 소정홍보계획 수립		○		
나. 신문구독계획	○			
다. 보도자료 작성		○		
5. 주간, 월간 업무계획	○			
6. 임 용				
가. 5급공무원의 소내전보			○	
나.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전보		○		

다. 기능직(고용직포함)임용 (시험 요구포함) 및 전보		○		
라. 청원경찰 임면에 관한 사항		○		
마. 일용인부사역	○			
바. 회계직 공무원 임용		○		
7. 시·군 인사교류				
가. 5급공무원 인사교류 (6급직무대리 포함)			○	
나. 6급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		
8. 정기승급	○			
9. 포 상				
가. 5급이상 공무원 포상추천			○	
나. 6급이하 공무원 포상추천		○		
10. 연 금				
가. 공무원 요양승인 신청		○		
나. 연금급여 청구	○			
다. 기타 연금업무	○			
11. 의료보험관리	○			
12. 인사업무				
가. 인사통계	○			
나. 전력조회	○			
다. 공무원증 발급	○			
마. 인사기록관리	○			

바.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13. 복 무				
가. 복무에 관한 계획 및 실시		○		
나. 복무에 관한 각종대장사열	○			
다. 근무사항 지도감독(협의)	○			
라. 당직근무지침	○			
마. 당직근무 명령 및 대직명령	○			
바. 근무시간 변경 및 복장	○			
사. 지도방문통제	○			
14. 의 식				
가. 주요의식			○	
나. 경미한 의식		○		
15. 교육차출				
가. 계장급이상		○		
나. 기타 공무원	○			
16. 직장교육실시	○			
17. 행정예고제 운영		○		
18. 보안업무				
가.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보안담당관 임명		○		
나. 신원조사 의뢰	○			
다. 비밀 소유현황 및 취급인가자 통계보고	○			

라. 4급이상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마. 5급이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취급인가 및 해제		○		
바.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			
사. 보안업무 감사 및 보안사고 처리		○		
아. 충무계획		○		
19. 직원후생 및 체위향상	○			
20. 직장민방위대 운영				
가. 민방위대원의 전출입	○			
나. 민방위대 편성	○			
다. 민방위대원 교육	○			
21. 종합관찰제 운영	○			
22. 한미친선 협의회 운영			○	
23. 조례·규칙·훈령 개정 건의			○	
24. 주민관리 전산화관리	○			
25. 자동차 전산망 관리	○			
26. 행정통신망 운영	○			
27. 민원업무처리				
가. 유기민원 접수	○			
나. 민원사무처리 상황 검열	○			
다. 월별 민원사무 처리현황 분석보고	○			
28. 문서관리				

가. 공문서 수발	○			
나. 보존문서 관리	○			
다. 폐기문서 처리	○			
29. 행정구역조정				
가. 법정리 명칭 및 경계조정			○	
나. 행정운영 동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	
다. 행정 통·반 조정		○		
라. 시·군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사무 및 재산의 인계승인			○	
마.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30. 지방행정동향				
가. 동향보고	○			
나. 행정정보수집 및 분석	○			
다. 여론의 수집 및 분석		○		
31. 예산운영				
가. 예산편성			○	
나. 예산의 이·전용		○		
다. 배정요구	○			
라. 결산 및 자금반납		○		
32. 회계일반				
가. 지출서류 심사	○			
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			

다. 물품검수 입회확인	○			
33. 예산집행품의				
가. 예정금액 500만원 초과공사			○	
나. 예정가격 200만원 초과제조			○	
다. 제정가격 100만원 초과물건 매입			○	
라. 기타 50만원 초과의 집행품의			○	
마.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공사		○		
바. 예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제조		○		
사. 예정각격 100만원이하의 물건매입		○		
아. 기타 50만원 이하의 집행품의		○		
자. 예정가격 30만원 이하의 집행	○			
차. 봉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판공비·정보비 기타 의무적 경비 집행품의	○			
34. 회계직 공무원 인감 및 인감대장정리	○			
35. 회계관계직인 보관	○			
36. 기여금 징수불입 및 관계자료 관리	○			
37.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보관	○			
38. 지출계산증명	○			
39. 금고계약 및 감독				
가. 출납사무 검사	○			
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		○		
다. 금고 사무지도	○			

40. 입찰현장설명	○			
41. 계약사무				
가. 예정가격 500만원 초과공사, 200만원 초과 제조 50만원초과 물건매입		○		경리관
나.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공사, 200만원이하의 제조 50만원이하의 물건매입	○			분임경리관
다. 기타 30만원이하의 집행 및 조달구매, 관급자재	○			
라.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			
42. 물품관리				
가. 사무용품 조달신청	○			
나. 물품출납보관		○		
다. 재물조사 실시 결과보고	○			
라.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			
마. 물품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보고	○			
바. 불용품 매각 결정품의		○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 단가 1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		

생산물				
단가 5 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43 . 청사관리				
가. 소화 및 방화계획 훈련	○			
나. 회의실 사용승인	○			
다. 청경감독 및 옥내외 청소	○			
라. 청사관리	○			
44 . 차량관리				
가. 배차승인	○			
나. 차량배정승인 신청 및 차종차형변경 신청조정		○		
45 . 도유재산관리				
가. 대 부		○		
나. 사용허가				
· 중요재산		○		
· 일반재산	○			
· 계속사용허가	○			
다. 도유재산평가	○			
라. 도유재산 취득 , 처분승인 신청			○	
46 . 세 입				
가. 법령 ,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해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확정된 세입 징수	○			

나. 가항이외의 징수결의		○		
다. 세입징수 보고		○		
47.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			
48.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	
가. 등 록				
나. 변경등록	○			
다. 사업계획 승인			○	
라. 양도양수 휴업 폐업신고		○		
마. 이용료, 관람료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		
바. 과태료 부과		○		
사.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심고접수및 지도감독	○			
〔감사과소관〕				
1. 감사계획 수립			○	
2. 자체감사실시 및 종합조정 (본소, 도사업소, 시군산하단체)				
가. 자체감사 계획승인			○	
나. 감사(감사원 대행감사 포함)실시 계획 시달		○		
다. 감사실시결과(감사원대행 감사포함) 시달			○	
라. 감사지시사하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			

마. 계산증명 검사 결과지시	○			
바. 계산증명 검사실시	○			
3.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의 수감				
가. 수감자료 작성		○		
나. 감사결과 지시사항의 처리				
· 중요사항			○	
· 경미한 사항			○	
4. 감사통계				
가. 감사원 및 중앙부처 요구 일반통계	○			
나. 비위공무원 징계보고 및 수시비위공무원 발생보고	○			
다. 비위공무원 조사		○		
라. 각종 소송사항장 대한 검토	○			
5. 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가. 사정업무 추진계획 수립			○	
나. 사정업무 추진실적 보고			○	
6. 공사계획 체결상황 보고	○			
7. 공사집행실적 보고	○			
8. 공사집행계획 보고	○			
9. 비위예방대책 계획수립 및 실시결과 보고			○	
10. 공무원 문책에 관한 사항				
가. 5급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	

나. 6급이하 국가 및 지방공무원		○		
11. 기관소청에 관한 사항				
가. 5급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	
나. 6급이하 국가 및 지방공무원		○		
12.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가. 5급이상 공무원			○	
나. 6급공무원 이하		○		
다. 기타 경미한 사항		○		
13. 사무인계인수 감사계획				
가. 인계인수 감사계획		○		
나. 인계인수 결과보고		○		
다. 인계인수후 시정조치		○		
14.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15. 감사원법 제29조의 의한 망실, 훼손 사고 조사처리		○		
16. 청원, 진정서 처리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17. 대통령비서실 이첩사항 처리				
가. 자체처리 종결			○	
나. 각과 이첩처리 지시		○		

18.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			
19.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20. 각종 월보 및 분기보고	○			
21. 다주인 관련 민원 관리보고			○	
〔보건사회과소관〕				
1. 군대민 지원사업 조정협의			○	
2. 현충탑 및 전적비의 보호유지 관리 지도	○			
3. 노사동향 파악	○			
4. 노동쟁의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 보고		○		
5. 시·군 노정담당 공무원교육		○		
6.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		
7. 노동단체 지원대책 수립 및 노동관계 행사지원			○	
8.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및 허가사항보고		○		
9. 직업소개 종사원 교육		○		
10. 구인, 구직의 개척 및 구직의 알선		○		
11. 직업지도		○		
12. 노동시장 조사 및 분석		○		
13. 근로자복지시설 건립 및 지원			○	
14. 해외근로자 가족보호		○		

15.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및 관리보고		○		
16. 노동조합 업무지도	○			
17. 특정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	
18. 한의마약 제재용 원료마약 사용허가	○			
19. 원료마약 사용허가 사항변경 허가	○			
20.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			
21. 적출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			
22.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지도 감독			○	
23. 시·군 보건소 지도감독	○			
24. 가족보건 이용홍보 시술반 운영		○		
25. 식품제조업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26. 식품제조업 위생검사(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27. 식품제조업 품목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28. 식품제조업 조건부허가 (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29. 식품제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30. 식품제조영업소 상호, 주소, 성명, 변경신고(아이스크림, 통·병조림)	○			
31. 식품제조 영업, 휴업(폐업, 재개업)	○			

신고(아이스크림, 통·병조림)				
32. 식품위생 관리인 선임신고	○			
(아이스크림, 통·병조림)				
33. 식품제조 영업허가증 재교부	○			
(아이스크림, 통·병조림)				
34.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		
35. 무허가 식품업소 지도단속		○		
36. 환경접객업소 지도단속		○		
37.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		
38. 자연정화활동				
가. 정화운동 지침시달			○	
나. 자연보호 육성지도		○		
39. 자연보존사업의 추진				
가. 사업지침수립			○	
나. 마을별 보호대상 및 지정관리	○			
다. 희귀 동식물 보호관리	○			
40. 자연보호 교육홍보				
가. 교육 및 홍보지침 수립		○		
나. 자연보호 교육실시	○			
41. 공해방지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나. 배출시설 관리인 선임신고				
다. 배출시설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고발	○			

라. 배출시설 사용 개시신고	○			
마. 오염도검사	○			
바.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제출	○			
사. 주요하천 환경보전대책계획 수립			○	
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		
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		
차.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			
〔가정복지관소관〕				
1. 사회복지법인 관리(노인, 아동)				
가. 법인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신청서 전달		○		
나. 법인 기본재산 대체허가 결과보고	○			
다. 법인정관변경				
· 변경사항보고	○			
· 허가신청서 전달		○		
라. 임원취임 승인보고	○			
마. 법인보조금관리		○		
바. 수익사업 신고 수리 보고	○			
사. 법인지도감독		○		
2. 사회복지시설관리(노인, 아동)				
가. 시설의 설치, 인가, 취소 및 폐휴가 보고		○		

나. 시설정원 및 소재지 변경보고		○		
다. 요보호자 수용	○			
라. 수용자 동태보고	○			
마. 시설운영 지도	○			
바. 종사자 훈련 및 교육	○			
3. 노인복지사업				
가. 노인복지사업 계획수립		○		
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		
다.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		
라. 노인대학(학교) 운영지도	○			
마. 경로주간 행사			○	
바. 경로우대제도 실시	○			
사. 가출노인 수배 및 보호와 수용	○			
아. 각종 정기보고	○			
4. 아동복지사업				
가. 아동복지사업 계획 수립		○		
나.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		○		
다. 시설(신.증개축,개보수) 기능보강 사업 추진		○		
라. 불우아동보호 및 지원	○			
마.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결함 자녀보호 및 지원	○			
바. 후원자 결연사업 지원	○			

사. 어린이 놀이터 관리	○			
아. 어린이날 행사			○	
자. 시·군 아동복지 지도원 지도	○			
차. 각종 정기보고	○			
5. 건전가정의례 실천 추진				
가. 계몽 및 교육	○			
나. 수수료 및 임대료 최고한도액 고지			○	
6. 부녀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7. 새마을부녀회 육성 및 지도				
가. 시범새마을부녀회 육성계획		○		
나. 시범새마을부녀회 육성지도	○			
8. 여성단체 지도육성				
가. 단체기능 조정		○		
나. 활동 및 행사지원	○			
다. 봉사원 인력은행 설치운영	○			
9. 요보호여성 선도 및 직업보도				
가. 윤락여성 선도사업	○			
나. 미혼모 예방 및 선도사업	○			
다. 저소득모자세대 자활능력 배양사업	○			
라. 해외취업자 가족선도사업	○			
10. 여성지위향상				
가. 부녀자 교양 및 경제교육		○		
나. 부녀자 취미교육	○			

11. 부녀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운영계획 조정		○		
나. 운영지도	○			
12. 생활개선 사업지도				
가. 국민생활 및 가정생활 개선사업지도	○			
나. 환경미화 및 의식주생활의 합리화 사업지도	○			
13. 심장병어린이돕기 사업추진 지도	○			
14.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 추진지도		○		
15.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지도		○		
16. 재해구호를 위한 민간자원활동사업 추진지도	○			
17. 각종 정기보고 취합정리 및 보고	○			
18. 청소년 육성업무의 기본계획 및 추진				
가. 청소년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나. 청소년 육성계획 조정보고		○		
다. 청소년 육성 추진실적 보고	○			
19.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도 감독	○			
20.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지도		○		
21.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가. 청소년 체육문화 주요행사 계획		○		
나.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추진및실적보고	○			

22. 청소년 보호육성				
가. 청소년 보호지원 추진계획 수립		○		
나. 청소년 보호지원 추진계획 보고	○			
23.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가. 청소년 및 지도자 교육계획 수립		○		
나. 청소년 및 지도자 교육 실적보고	○			
24.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가.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계획 수립		○		
나.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25. 청소년 후원조직 육성관리				
가. 청소년 후원조직 육성계획 수립		○		
나. 청소년 후원조직 지도	○			
〔개발과소관〕				
1.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가. 소 형 (1,300 m)		○		
나. 중 형 (4,100 m)		○		
다. 대 형 (7,000 m)			○	
2. 접도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4. 토지거래신고, 허가현황 및 지가동향 조사보고		○		
5. 도시계획구역 위법행위 단속		○		

6.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 - 도지사권한 사항				
가. 행위허가 승인				
o 건축물 1,000㎡이상			○	
o 건축물 660㎡이상 1,000㎡미만			○	
o 건축물 660㎡미만		○		
o 토지형질변경 10,000㎡이상			○	
o 토지형질변경 5,000㎡이상 10,000㎡미만		○		
o 토지형질변경 1,000㎡이상 5,000㎡미만		○		
o 토지형질변경 1,000㎡미만	○			
나. 승인신청 서류보완지시	○			
7.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지도·단속		○		
8.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관련 민원처리(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질의조복 등)		○		
9. 도시계획구역내 공공시설 대체승인 및 용도폐지			○	
10. 도시통계조사		○		
11. 국립공원지정 및 변경승인신청			○	
12. 국립공원 사업시행 및 관리허가 및 진달		○		

13. 국립공원개발계획수립 및 공원사업의 승인신청		○		
14. 국립공원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		○		
15. 국립공원내 영업시설의 명의변경 및 업종변경		○		
16. 국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17. 공원구역내 산림사업허가		○		
18. 공원구역내 조경사업 승인		○		
19. 공원특별회계관리		○		
20. 특수지역개발사업중 지사가 지정하는 도직영 사업의 현지추진		○		
21. 지사가 지시하는 특수시책사업			○	
22. 지사가 지정하는 사업의 확인평가			○	
23. 접적지역 개발사업 현지지도 감독		○		
24. 기지촌 대책사업 현지지도 감독		○		
25.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		
26. 상공회의소 인가			○	
27. 계량기 수리점검(적산식가솔린 미터)	○			
28. 계량기 사업장의 수리업 승인	○			
29. 부정계량기 단속 및 처벌		○		
30. 계량기제작(수리)업 허가신청		○		
31. 계량기제작 허가증재교부 신청	○			
32. 계량기제작 허가증정정, 승계신고	○			

33. 계량기제작 분공장 설치신고	○			
34.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신고	○			
35. 계량기제작(수리)업 휴업(폐업)신고	○			
36.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	○			
37. 계량기 제작기호 신고	○			
38. 계량기 자치관리 인정 신청	○			
39. 수출용 원자재 기준소요량 책정 및 증명발급	○			
40. 군납업자등록	○			
41. 군납업자 등록사항 변경	○			
42. 부당경쟁 방지고발 및 처리		○		
43. 무역업 등록허가	○			
44.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승인	○			
45. 실량표시 상품의 검사	○			
46. 계량기(주유기, LPG충전기)의 검사	○			
47. 관할지역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	
48. (관할지역의 시내·시외버스, 구역화물 노선화물, 특수화물)운송개시일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 승인	○			
49.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운임인가(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50. 운송약관인가	○			

51.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사업 계획변경인가 및 운행시간인가		○		
52.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공동운수계약 협정인가 및 변경인가		○		
53.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	○			
54. 관할구역의 시내버스사업 개선명령		○		
55.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사업 위탁 및 수탁의허가		○		
56. 관할구역의 시내버스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		
57.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		○		
58.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해산인가		○		
59.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면허 취소처분		○		
60.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자동차 사용정지명령		○		
61.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사업면허 실효 확인	○			
62. 자동차정비관리자 채용 및 해임신고수리(의정부, 동두천시소재 제외)	○			
63. (관할지역내)자동차 정비사업		○		
64. 동 양도양수인가 신청		○		
65. 동 임원 취임신고	○			
66. 동 정비주임(임, 면)신고	○			
67. (관할지역내)자동차정비업체 지도단속		○		
68. 자동차 노후도 검사신청	○			
69. 농지불법 전용단속		○		

70. 영농자재공급(PE필름, 죽골재)	○			
71. 농촌일손돕기		○		
72. 농기계보내기운동		○		
73. 농기계 사후봉사		○		
74. 비료생산업 허가		○		
75. 부정비료 유통단속		○		
76. 농경지 이용도 제고		○		
77. 농약안전사용 지도	○			
78. 공유림 영림계획 이가승인		○		
79. 임산물 반출관리	○			
80. 조림사업 지도감독	○			
81. 조림지 사후관리 지도	○			
82. 묘목(산림, 가로수, 조경수)생산지도		○		
83. 가로수 식재 및 관리지도	○			
84. 산림훼손 허가지 지도감독	○			
85.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지 지도감독	○			
86. (제사업, 견방업)생산시설 개설신고		○		
87. (제사설, 견방업)생산시설 준공검사신청	○			
88. 잠종생산시설 준공검사		○		
89. 잠견매매설(주선업)허가		○		
90. 견방업(휴업, 폐업)신고		○		
91. 제사업 생산시설 증설허가신청		○		
92. 견방업 허가신청		○		
93. 견방업 생산시설 양도이전승인신청		○		
94. 견방업 생산시설 임대신고	○			
95. 견방업의 생산시설 증설허가 신청		○		
96. 상전조성 및 재상법 개선	○			
97. 상전비배관리 및 잠업단지 조성		○		
98. 원예작물 지원사업 추진		○		
99. 지역특산물개발사업			○	

경기도훈령제 869 호

경기도북부출장소 민원실 운영 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3 월 15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 북부출장소 민원실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북부 출장소 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한다)사무중 창구에서 즉결 처리가 가능한 민원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창구) ①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창구를 둔다.

② 창구별 처리업무는 별표 1 과 같다.

제 3 조(기능) 각종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교부 또는 통제한다.

제 4 조(즉결위임) 민원계장과 창구 담당직원이 처리할수 있는 즉결위임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 5 조(이폐적인사항) 즉결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폐적인 사항은 의견을 붙여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창구별 즉결업무 처리 내역

창구번호	즉 결 민 원 업 무 명
	1 。도수입증지 판매 2 。차적조회 3 。자동차 관련 세금 대행징수

2	1. 등록원부(갑을)등본 교부
	2. 등록원부(갑을)등본 열람
	3. 중기등록원부(갑을)등본 교부
	4. 중기등록원부(갑을)등본 열람
	5. 자동차 관계 제증명
3	1.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2.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3. 이미용사 면허증 서환교부
	4. 조리사 면허증 교부
	5.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6. 조리사 면허증 서환교부
	7.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8.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
	9. 중기조종사 면허증 교부
	10.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11. 중기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12. 중기조정사 면허증 갱신 신청
	13. 저당권 설정등록
	14. 저당권 이전 등록
	15. 저당권 변경 등록
	16. 자동차 압류 등록
	17. 자동차 압류 말소 등록
	18. 자동차 공동 저당

	19. 관광종사원 자격증 교부
	20.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4	1. 말소등록
	2. 등록번호판 재교부
	3. 외국인 자동차 말소 등록
	4.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
	5. 자동차 등록 재교부
5	1.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명칭)
	2. 자동차 이관등록(전출)
	3. 이전등록
	4. 일반민원 접수
6	1. 자동차 신규 등록
	2. 외국인 자동차 등록
	3. 자가용자동차 사용 신고
7	1. 차대 및 원동기 번호 각자
	2. 자동차 정기점검
	3. 자동차검사기록부 보관 관리
	4. 자동차정기점검기록부 보관 관리
	5. 자동차 계속검사
	6. 자동차 계속검사 연기허가
	7. 타관할 관청에 의한 검사
	8. 자동차 기관 재사용증명

8	1. 중기 신규등록 2. 중기등록 말소 3. 중기 등록 사항 변경 4. 중기등록 이관 5. 중기저당등록 6. 중기신규등록 검사 7. 중기등록번호표 봉인 8.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단속 9.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10. 중기대여업 주기장 시설 보유증명서 발급 11. 자동차 신규검사
9	1. 이관등록(전입)

(별표 2)

즉결위임 사무 내역

번 호	사 무 명	전결구분	
		취급자	계 장
1	도수입증지 판매	○	
2	차적조회	○	
3	등록원부(갑을)등본교부	○	
4	등록원부(갑을)등본 열람	○	
5	중기등록원부(갑을)등본 교부	○	
6	중기등록원부(갑을)등본 열람	○	
7	자동차관계 제증명	○	

8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	
9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10	이미용사 면허증 서환교부	○	
11	조리사 면허증 교부	○	
12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	
13	조리사 면허증 서환교부	○	
14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교부	○	
15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	○	
16	중기조종사 면허증 교부	○	
17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	
18	중기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19	중기조종사 면허증 갱신 신청	○	
20	저당권 설정등록		○
21	저당권 이전 등록	○	
22	저당권 변경 등록	○	
23	자동차 압류 등록		○
24	자동차 압류 말소 등록		○
25	자동차 공동 저당		○
26	관광종사원 자격증 교부	○	
27	방화관리자 수첩 교부	○	
28	말소등록		○
29	외국인 자동차 말소 등록		○
30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	○	

31	자동차등록증 교부	○	
32	자동차변경등록(주소 명칭)	○	
33	자동차 이관 등록(전출)		○
34	이전등록		○
35	자동차 등록관련 세금 대행징수		○
36	자동차 신규 등록		○
37	외국인 자동차 등록		○
38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	○	
39	차대 및 원동기 번호 각자	○	
40	자동차 정기점검	○	
41	자동차 검사기록부 보관관리	○	
42	자동차 정기점검기록부 보관관리	○	
43	자동차 계속검사	○	
44	자동차 계속검사 연기허가	○	
45	타관할 관청에 의한 검사	○	
46	자동차 기관 재사용증명		○
47	중기 신규등록		○
48	중기등록 말소		○
49	중기등록사항 변경	○	
50	중기등록 이관	○	
51	중기저당 등록(설정, 말소)		○
52	중기 신규등록 검사	○	
53	중기번호표 봉인	○	
54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단속		○

55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
56	중기대여업 주기장시설 보유증명서 발급	○	
57	자동차 신규검사	○	
58	이관등록(전입)		○

고 시

경기도고시제 78 호

사료관리법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2 월 28 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사항 2 부 끝.

백합사료성분등록 및 취소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번호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비타민 A Iu/kg이상
등록	흥성사료	안산시 목내동 490-1	정태원	배합사료	착유 4-4	비유량 20 kg이상	18-31-4	18.0	3.0	0.6	0.4	25.0	10.0	
					큰소 비육1	생체중 300~400 kg	18-35-21	13.0	2.5	0.5	0.3	8.0	10.0	
취소					〃	〃	〃	15.0	2.5	0.5	0.3	8.0	10.0	
등록	천광산업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09-1	김만호	〃	육계 전기1	0~주 (입붙이기)	12-7-1	21.0	3.0	0.8	0.5	6.0	8.0	
					육계 후기2	출하7일전~출하시	12-9-1	17.0	3.0	0.7	0.5	6.0	8.5	
					착유1	비유량 15 kg이하	12-28-1	14.0	2.5	0.6	0.4	13.0	10.0	
	녹십자수의약품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227-5	김선환	배합사료대용유	양돈용대용유1	어린돼지용	23-2	20.0	5.0	0.7	0.5	5.0	12.0	25000

단미사료성분등록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등록번호	나트륨(Na) %이상	마그네슘(Mg) %이상	순도 %이상
등록	동양금속화학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521-8	이명교	단미사료	혼합광물질 (Na+Mg)	배합사료첨가용	9-4-10	10.0	10.0	
					광물질첨가물 (Mg)	〃	9-4-11	〃	52.0	90.0

경기도고시제 81 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 골재채취를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3. 3.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제 3 공구
2. 면 적 : 42.458 ㎡
3. 물 량 : 430,000 ㎥
4. 점 용 료 : 1,247,000 천원
5. 허가기간 : 90.3.3-90.6.30
6. 피허가자 : 삼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 기 석

경기도고시제 82 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 골재채취를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3. 3.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제 5 공구
2. 면 적 : 207,750 ㎡
3. 물 량 : 470,000 ㎥
4. 점 용 료 : 1,363,000,000
5. 허가기간 : 90.3.3-90.8.31 (182 일간)
6. 피허가자 : 유원건설(주) 대표이사 황 성 열

고 시

경기도고시제 83 호

사방사업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1 조 규정에 의거 이를 지정 고시한다.

1990 년 3 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지정내역 : 별첨 내역과 같음

2. 사방지지정이유 : 사방사업 시행

3. 제한사항

사방지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죽의 벌채, 토석, 떼, 수근, 초근, 생지, 낙엽, 송지, 수피의 채취 또는 채굴, 가축의 방목, 개간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 이동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 방 지 정 지 명 세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성명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시군	읍면	리동	성명	
					㎡	ha					
동두천		안흥	임야산 81	임야	34,512	0.02				국방부	
〃		〃	임산 82-1	〃	221,157	1.73					
〃		〃	〃 83	〃	38,678	0.25					
		계	3필지		294,347	2.00					
연천	미산	동이	임야 산 23	임야	193,592	1.18				소유자 및 지적미복구	
〃	〃	〃	〃 24-2	〃	15,211	0.15	연천	미산	동이 304	김연만	
〃	〃	〃	〃 25-1	〃	37,983	0.80	〃	〃	〃	〃	
〃	〃	〃	〃 25-3	〃	9,421	0.10	〃	〃	〃	〃	
〃	〃	〃	〃 28	〃	10,215	0.02	서울	양천	목 624-7	최성호외 1	

연천	미산	동이	임 야 28-2	임야	9,917	0.06				국 방 부	
〃	〃	〃	〃 32	〃	10,215	0.10	서울	도 봉	수 유 273-6	송 수 영	
〃	〃	〃	〃 32-2	〃	8,231	0.22				국 방 부	
〃	〃	〃	〃 35-3	〃	29,355	0.18	연천	군 남	남 계	김 창 식	
〃	〃	〃	〃 36-2	〃	34,512	0.43	서울	동대문	전 농 433-12	김 의 식	
〃	〃	〃	〃 36-5	〃	23,277	0.45	〃	〃	〃	〃	
〃	〃	〃	〃 40	〃	8,330	0.20	〃	종 로	청 운 89-1	김 경 식	
〃	〃	〃	〃 42	〃	12,922	0.13	연천	미 산	동 이 222	김 병 규	
〃	〃	〃	〃 43	〃	7,140	0.20	〃	〃	마 전	양 원 길	
〃	〃	〃	〃 44	〃	16,165	0.47				미 복 구	
〃	〃	〃	〃 45	〃	2,479	0.15	연천	미 산	동 이	김 창 식	

연천	미산	동이	임 야 산 46	임야	10,909	0.19	서울	송 파	송 파 130-13	이 용 만		
〃	〃	〃	〃 47	〃	1,488	0.10	〃	동대문	전 농 433-12	김 의 식		
〃	〃	〃	〃 47-2	〃	3,868	0.08	〃	〃	신 설 30	김 태 섭		
〃	〃	〃	〃 49	〃	14,083	0.27	〃	〃	전 농 209-18	김 중 봉		
〃	〃	〃	〃 51	〃	13,680	0.20				소유자미복구		
〃	〃	〃	〃 53	〃	30,240	0.22				〃		
〃	〃	〃	〃 63-2	〃	11,603	0.05				〃		
〃	〃	〃	〃 65	〃	14,777	0.05	서울	성 북	장 위 276	양 경 갑		
		계	24 필		530,675	6.00						
가평	하	하건	산 120-2	임야	4,951,137	0.52				산 림 청		기미정 0.03nA
		계	1 필지		4,951,137	0.52						

가평	하	상란	산 102	임야	39,000	0.02	가 평	하	상 란 102	정 진 배	
〃	〃	〃	〃 103	〃	167,306	0.53	인천시	동구	화평 3	박영자외 1 인	
〃	〃	〃	〃 105	〃	21,400	0.30	포 천	신북	심 곡 311	이 명 준	
〃	〃	〃	〃 106	〃	215,207	1.22	서 울	강남	청 담 76-7	정 운 회	
〃	〃	〃	〃 108	〃	382,200	0.25	〃	중구	태 평 1가 61	(사단법인) 동방문화학원	
		계	5 필지		4,951,137	2.32					
의정부		자 일	산 8-2	임야	42,775	230	의정부		자 일 395	김광식외 16 인	
〃		〃	〃 8-6	〃	33,171	240	〃		〃 188-3	유 은 학	
〃		〃	〃 8-7	〃	1,551	20	〃		〃 산 8-9	김 광 식	
〃		〃	〃 8-8	〃	2,761	1200	〃		〃	〃	
〃		〃	〃 8-11	〃	1,430	780	충 남 천 안		월 성 559-13	김 천 석	한일연립 가동 301 호

의정부		자 일	407	전	2,142	180	의정부		자 일 산8-9	김 광 식	
〃		〃	408	〃	2,023	3	〃		〃	〃	
계			7 필		85,853	2,653					
여 주	여 주	하 거	254-2	답	12,090		여 주	여 주	하 거 197	이 복 남	
〃	〃	〃	688	천	6,774	1,354				국 유	
〃	〃	〃	689	도	674	216				〃	
〃	〃	〃	690	구	9,858	2,206				미 복 구	
〃	〃	〃	684	천	843	96				국 유	
〃	〃	〃	산 5-1	임	572,484	3,308				〃	
계			6 필		602,723	7,380					
여 주	가 남	안 금	산 67	임	11,000	878	서 울	종 로	신문로2가 241	서 상 호	
〃	〃	〃	223	대	1,088	72	여 주	가 남	안금 46	신 종 준	

여 주	가 남	안 금	192	전	3,719	29	여 주		안 금 528	신삼달외 1 인	
〃	〃	〃	188	답	1,064	100	〃	〃	〃 323	박 수 일	
〃	〃	〃	15	임	1,279	216	〃	〃	〃 18	정윤락외 1 인	
〃	〃	〃	18	전	3,326	345	〃	〃	〃	〃	
〃	〃	〃	17	임	2,430	432	〃	〃	〃	〃	
〃	〃	〃	667	도	377	15				국	
〃	〃	〃	73	임	127,000	848	서 울	종 로	신문로 2 가 241	서 상 호	
〃	〃	〃	16	전	661	187	여 주	가 남	안 금 18	정윤락외 1 인	
〃	〃	〃	686	구	5,742	1,008				국	
〃	〃	〃	685	〃	3,045	560				〃	
〃	〃	〃	산 68	임	32,900	187	서 울	종로구	신문로 2 가 241	서 상 호	

여 주	가 남	안 금	669	구	2,425	316				국
계			14 필		196,056	5,193				
화 성	봉 담	내	산 33-1	임야	70,612	647				산 림 청
〃	〃	〃	612-1	답	3,531	5	화 성	봉 담	내 518	영 호
〃	〃	〃	615	〃	2,274	14	〃	〃	〃	〃
〃	〃	〃	616-1	〃	2,509	446	〃	〃	〃 563	조 광 현
〃	〃	〃	616-2	〃	3,365	302	〃	〃	〃 393	이 정 원
〃	〃	〃	617	〃	949	115	수 원	장안구	송 죽 417-24	윤 명 운
〃	〃	〃	618-1	〃	1,574	7	화 성	봉 담	내 177	조 규 복
〃	〃	〃	623-2	전	552	86	수 원	장안구 경희연립	정자 70-63 2 동 202	김 대 원
〃	〃	〃	712	답	426	14	화 성	봉 담	내 529	이 상 철

화 성	봉 담	내	829	도	29,455	14				국	
〃	〃	〃	854	구	23,550	1,670				〃	
계			11 필		138,797	3,320					
파 주	문 산	선 유	산 90-1	임야	106,017	2,810	파 주	문 산	선유 430	이태경외 2 인	
〃	〃	〃	362-1	구	1,071	215				미 복 구	
〃	〃	〃	362-2	〃	1,359	660				국	
〃	〃	〃	367	답	4,618	158				미 복 구	
〃	〃	〃	369	〃	4,635	100	파 주	〃	선유 320	이 충 진	
〃	〃	〃	370	전	694	158				미 복 구	
〃	〃	〃	372-1	답	2,301	7	파 주	문 산	선유 201	이 기 현	
〃	〃	〃	372-2	〃	3,709	42	〃	〃	〃 320	이 창 진	

파 주	문 산	선 유	372-3	답	4,304	15	파 주	문 산	선 유 413	한 백 수	
〃	〃	〃	375-1	〃	1,590	5	〃	〃	〃 319	이 창 진	
〃	〃	〃	379	〃	1,425	10	〃	〃	〃 320	상 병 천	
〃	〃	〃	379-2	구	4,354	1,574	〃			국	
〃	〃	〃	384-1	전	638	29				미 복 구	
〃	〃	〃	385-1	답	3,878	47	파 주	문 산	선 유 320	이 병 국	
〃	〃	〃	385-2	〃	350	316	〃	〃	〃 413	한 백 수	
〃	〃	〃	385-3	〃	932	86	〃	〃	〃 320	상 명 천	
〃	〃	〃	386	전	628	3	〃	〃	〃 430	부평이씨종중	
	계		17 필지		142,503	6,235					

광 주	광 주	목	임야 58	임	7,835	102	광 주	광 주	목328	남 대 현	
〃	〃	〃	59-1	〃	23,306	575	안 성	양 성	방산 185	오배환외 1인	
〃	〃	〃	60	〃	31,647	28	광 주	광 주	목221	이 종 학	
〃	〃	〃	62-1	〃	9,620	474	충 남	대전시	용문동 259	이 종 방	
〃	〃	〃	396	〃	3,210	187	광 주	광 주	목32-8	남 윤 경	
〃	〃	〃	383	전	1,880	22				미 복 구	
〃	〃	〃	388	〃	16,930	48	〃	〃	목386	박 병 윤	
〃	〃	〃	389	〃	21,150	29	〃	〃	〃	〃	
〃	〃	〃	390	〃	1,550	2	〃	〃	목328	남 대 현	
〃	〃	〃	380-1	답	62,380	230	〃	〃	목380-1	이 승 안	
〃	〃	〃	391	전	496	57	〃	〃	〃	남인순외 8인	
〃	〃	〃	392	답	988	374	〃	〃	〃	남 윤 식	
〃	〃	〃	394	〃	4,860	173	〃	〃	태천 422	송 주 성	
〃	〃	〃	408	전	12,500	17	〃	〃	목328	남 대 현	
〃	〃	〃	564	구	41,770	849				국	
〃	〃	〃	548	〃	8,430	2,733				〃	

광 주	광 주	목	임야 400	답	12,460	30	성 남	수진 1동	2,148	이 형 우	
			549	도	347	18				국	
	계		18 필		260,359	5,948					
광 주	남 종	금 사	임야 224-1	답	420	29	서울중구남대문 2 가 5			한 전	
〃	〃	〃	224-2	〃	83	43	광 주	남 종	금사 101	박 윤 배	
〃	〃	〃	226	〃	2,483	43	〃	〃	〃	〃	
〃	〃	〃	225	〃	73	43	〃	〃	〃	〃	
〃	〃	〃	229-1	〃	2,232	14				미 복 구	
〃	〃	〃	229-2	〃	2,628	144	〃	남 종	금사 201	김 종 식	
〃	〃	〃	188	전	1,825	72	〃	퇴 촌	광동 245-1	김 희 주	
〃	〃	〃	186	답	9,747	72	〃	남 종	오리 142	순흥안씨종중	
〃	〃	〃	230-1	〃	1,008	100				미 복 구	
〃	〃	〃	230-2	〃	2,952	129	광 주	남 종	금사 307	이 석 순	
〃	〃	〃	298	구	16,260	1,545				국	
〃	〃	〃	산 5-1	주	184,346	172	서울도봉구쌍문 1 동 274-2			이중인외 2 인	
〃	〃	〃	177	답	1,686	14	광 주	남 종	금사 177	김 학 근	

	계		13 필		225,743	2,420					
포 천	화 현	지 현	산 26	임야	51,273	490	포 천	군 내	상성북 157	홍사충외 3 인	
〃	〃	〃	〃 28	〃	23,306	1,896	서 울	서대문	천연산 4	대한예수교장노회황동노회	
〃	〃	〃	〃 29	〃	41,653	562	포 천	소 흘	송두 77	최동선외 2 인	
〃	〃	〃	〃 30	〃	86,980	29	서 울	중	신당 338	대한예수교장노회중앙교회	
〃	〃	〃	〃 38	〃	747,669	5,342	〃	동대문	용두동 39-93	백 승 권	
〃	〃	〃	26-1	구	2,106	850				국 유	
〃	〃	〃	39-3	임	4,268	1,613	서 울	중 구	명동 2 가 1	재단법인경성구천주교회	
〃	〃	〃	332-1	답	9,435	187	포 천	하 현	지현 335-18	방 창 수	
〃	〃	〃	334-4	전	4,499	5	〃	〃	〃 323	장운석외 1 인	
〃	〃	〃	335-19	천	26,970	1,152				건 설 부	
	계		10 필		998,154	12,126					
포 천	영 동	금 주	산 34-2	임야	4,264	762	포 천	영 동	금주산 34	여 운 정	
〃	〃	〃	1061-4	전	60,744	1,570	〃	〃	〃	〃	
	계		2 필		65,008	2,332					

양 평	강 하	성 덕	1062	천	65,877	2,478				국	
〃	〃	〃	193-2	〃	350	130	서 울	서초구 A.P.T	반포동 58 동 404 호	정 태 연	
〃	〃	〃	192-5	〃	582	518	양 평	강 하	운심 45-1	조 진 덕	
〃	〃	〃	192-1	답	582	72	〃		〃	〃	
〃	〃	〃	192-2	천	440	374	〃	〃	성덕 597	이 준 승	
〃	〃	〃	190-2	답	245	10	〃	〃	동오 574	신 명 교	
〃	〃	〃	190-3	천	162	159	〃	〃	성덕 594	고 영 두	
〃	〃	〃	191-2	〃	1,121	600				미 복 구	
〃	〃	〃	191-1	답	1,137	130	〃	〃	성덕 689-8	남 면 희	
〃	〃	〃	130-3	천	132	86	서 울	도봉구	수유동 8-115	김경순외 6 명	
〃	〃	〃	130-1	답	499	40	〃	〃	〃	〃	
〃	〃	〃	103	천	1,355	446	양 평	강 하	성덕 544	이 시 종	
〃	〃	〃	107	〃	1,550	360	〃	〃	〃	청 목 호 성	
〃	〃	〃	1064	도	546	43				국	
〃	〃	〃	104	전	4,172	173	〃	양 평	양근 414-4	김 영 호	
〃	〃	〃	1058	도	615	28				국	

양 평	강 하	성 덕	1059	천	12,169	5,370				국	
〃	〃	〃	1052	〃	10,873	3,024				〃	
〃	〃	〃	225-1	〃	707	158	양 평	강 하	성덕 820	유 인 순	
〃	〃	〃	192-4	전	529	28	〃	〃	운심 45-1	조 진 덕	
〃	〃	〃	192-6	임야	949	57	성 남	태평2동	3309-127	손 풍 자	
〃	〃	〃	192-3	천	258	28	〃	〃	〃	〃	
〃	〃	〃	산 3	임야	16,165	110	양 평	강 하	성덕 158-2	최 철 영	
〃	〃	〃	123-1	천	602	230	〃	〃	전수 911-4	조 창 섭	
〃	〃	〃	106	〃	79	43	〃	〃	성덕 671	최 송 희	
〃	〃	〃	1065	도	1,967	115				국	
〃	〃	〃	122-1	천	1,051	259	양 평	강 하	전수 97-4	조 창 섭	
계			27 필		124,714	15,060					
용 인	원 삼	좌 항	산 58	임야	82,572	29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05-26	백양자외 23 인	
〃	〃	〃	〃 61	〃	17,653	60	서 울 구로구	독산동	1076-9	심 상 우	
〃	〃	〃	〃 63-2	〃	17,002	315				국 유 림	

용 인	원 삼	좌 항	산 65-1	임야	17,950	1,815	서 울 도봉구	수유동	472-52	조 남 용	
〃	〃	〃	〃 106	〃	7,835	1,800	서울강남구반포동 39-1 우성Ⓐ 101-43 34브럭 8호			천호인외 14인	
〃	〃	〃	〃 107-1	〃	2,479	100	용 인	용 인	김 량 장	안 석 춘	
〃	〃	〃	〃 107-3	〃	1,983	806	〃	〃	〃	안 석 문	
〃	〃	〃	〃 107-4	〃	1,190	259	〃	원 삼	사 암 18	심 기 택	
〃	〃	〃	268	임	264	14				미 복 구 (국 유)	
〃	〃	〃	269	전	446	187				〃	
〃	〃	〃	279-1	〃	1,098	45	용 인	원 삼	좌항 158	임 효 소	
〃	〃	〃	280	답	3,425	72	〃	〃	〃 375	원 곡 명	
〃	〃	〃	281	〃	2,092	58	〃	〃	사암 458	신 무 철	
〃	〃	〃	282-1	〃	387	14	〃	〃	〃	〃	
〃	〃	〃	282-2	〃	1,607	43	〃	〃	사암 456	안 기 환	
〃	〃	〃	283-2	〃	1,788	14	〃	〃	〃 18	심 상 수	
〃	〃	〃	284	〃	1,488	14	〃	〃	〃	〃	
〃	〃	〃	285	전	7,616	4	〃	〃	〃	〃	

용 인	원 삼	좌 항	288	답	4,175	72	용 인	원 삼	사암 18	심 상 수	
〃	〃	〃	291	〃	860	14	〃	〃	〃 19	심 상 철	
〃	〃	〃	293-2	〃	1,504	43	〃	〃	〃	〃	
〃	〃	〃	300	전	747	72	〃	〃	미평 121-2	김 홍 욱	
〃	〃	〃	301	임	714	58	〃	〃	〃	〃	
〃	〃	〃	320-1	답	1,696	14	〃	〃	사암 18	이 상 돈	
〃	〃	〃	321-9	〃	2,033	6	〃	〃	〃	이 천 주	
〃	〃	〃	321-15	〃	3,005	43	〃	〃	〃	심 상 호	
〃	〃	〃	321-19	전	10,788	1,195	서 울 강남구	신사동	〃 631-36	김종균외 2 인	
〃	〃	〃	538	구	387	150				국 유	
〃	〃	〃	543	〃	5 .236	1,510				〃	
〃	〃	〃	555	〃	3,243	173				〃	
〃	〃	〃	558	〃	2,747	1,567				〃	
			559	〃	2,023	1,627				〃	
	계		32 필지		208,533	12,193					

용 인	원 삼	사 암	산 11	임야	7,934	504	수 원	연무동	86 브럭 1롯트	김 종 찬	
〃	〃	〃	21-1	답	241	14	용 인	원 삼	사암 18	조 병 효	
〃	〃	〃	22-2	〃	1,345	144	〃	〃	〃	심 상 춘	
〃	〃	〃	22-5	〃	1,289	130	〃	〃	〃	심 상 국	
〃	〃	〃	22-9	〃	1,616	29	〃	〃	사암 248	이 원 경	
〃	〃	〃	23-2	〃	1,636	58	〃	〃	사암 18	이 복 재	
〃	〃	〃	1174	천	3,140	1,775				(국 유)	
〃	〃	〃	1179	〃	529	70				〃	
	계		8 필		17,730	2,724					
의정부		산 곡	산 94-3	임 야	225,124	621	의정부		의정부 217-8	전주유씨전철공파 종 중	
〃		〃	〃 94-11	〃	445,760	1,526	서 울	종로구	종로 2 가 40	영안주식회사	
	계		2 필		670,884	2,147					
안 양		석 수	산 15-1	임야	185,752	1,700	안양시		석수동산 14-3	신 영 자	
	계		1 필		185,752	1,700					

파 주	적 성	객 현	산 19	임야	256,860	130	파 주	광 탄	신산리 232	학교법인광탄학원	
〃	〃	〃	〃 20	〃	31,931	225				미 복 구	
〃	〃	〃	〃 21	〃	3,570	815	〃	〃	신산리 232	학교법인광탄학원	
	계		3필지		292,361	1,170					
가 평	하	하 완	산 130-1	임야	388,680	1,295				산 림 청	
〃	〃	〃	125-3	도로	6,660	17				〃	
〃	〃	〃	산 125-11	임야	420	46				〃	
	계		3필지		395,760	1,358					
안 양		안양3동	산 95-3	임야	18,232	10,520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742			석 유 환	
〃		〃	〃 95-2	〃	7,039	4,450				안 양 시	
〃		〃	717-24	대지	288	30				〃	
	계		3필		25,559	15,000					
광 명		하 안	산31-23	임야	22,096	5,000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664-21 삼풍연립 307 호			이 택 수	
	계		1필		22,096	5,000					

경기도고시제 87 호

경기도 낚시터 운영관리 세칙중 개정 세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3 월 7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낚시터운영관리세칙중개정세칙

제 1 조의 2 (정의) 중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일낚시 시간은 07:00-익일 06:00 (23 시간) 로 하고, 1 시간은 환경정화 및 자원조성 시간으로 활용한다.

제 5 조 (낚시료 및 좌대료 결정) 을 "제 5 조 (낚시료 및 좌대료 결정징수)" 로 하고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 2 항과 제 3 항을 삭제한다.

①낚시터의 1 인당 낚시료 및 좌대료는 당해 낚시터의 시설 수준 및 자원조성 실적을 감안하여 낚시터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허가 권자에게 신고후 낚시료 및 좌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낚시료 및 좌대료 변경 포함)

제 7 조 (낚시업 갱신 허가절차) 을 "제 7 조 (낚시업 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허가 신청절차)" 로 하고 제 1 항과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낚시업허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다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2 월전 사이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필요한 요건을 갖춘때에는 낚시업 허가 기간만료 일전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낚시업 허가 추천서 발급)을 "제8조(낚시업 허가 신청시 협회 경유)"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한다.

①낚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기간만료로 인한 허가포함)낚시업 허가 신청서(필요한 구비서류 포함)를 협회장 경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 낚시터 지정)를 삭제한다.

제10조(협회설립)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회의 수는 1개로하며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③낚시업 허가를 받은자는 협회 회원이 된다.

④협회는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을 둘수 있으며 임원의 수와 그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협회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때도 같다.

1. 목 적
2.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협회업무등)중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낚시업 발전을 위한 업무, 조사, 지도 및 홍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수탁 업무

3. 기타 정관이 지정하는 사항

④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협회의 업무처리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사항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감독 및 보고)을 "제12조(보고)"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권자는 관내 낚시터별 운영 실적을 파악하여 다음 서식에 의거 매익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별표5 및 별표6과 별표8 및 별표9를 삭제하고, 별표3(낚시터 자원조성 의무량 부과 기준)중"재허가대상"을 "기간만료로 인한 허가대상"으로 "잔여허가 기간"을 "허가낚시터"로 하고 별표7(낚시료 징수 영수증 서식)중 "(주, 야)"를 삭제한다.

부 칙 (90.3.7)

1. (시행일) 이 세칙은 90.3.7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세칙 시행 이전에 결정한 낚시료 및 좌대료는 이세칙에 의하여 신고한것으로 본다.

단, 낚시료 및 좌대료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고시제 88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길정 2 지구
2. 구 역 : 강화군 화도, 양도면 길정 2 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강화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3,799,018 ㎡
5. 환 지 내 용 : 길정 2 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3. 7.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고시제 89 호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 8 조 규정에 의거 돼지와 양의 자가용 도살 허용 지역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경기도고시 제 79-444 호 (79.10.29)는 이를 폐지한다.

1990. 3. 7.

경 기 도 지 사

첨부 돼지와 양의 자가용 도살 허용지역 1 부 끝.

돼지와 양의 자가용 도살 허용 지역 지정

시 군	읍 면	허 용 지 역 (리·동)	
		현 행	개 정
안 산	반 월	본오 (3)	(0)
	수 암	월피	
	군 자	성곡	
의 왕	초 평	초평 1 , 초평 2 (2)	
양 주	백 석	기산 (1)	
남양주	수 동	외방 1.2 , 수산 1.2 (6)	외방 2 , 수산 1 (4)
		내방 1.2	내방 1.2
여 주	점 동	관할 , 도리 , 삽합 , 장안 (27)	(0)
	가 남	안금 , 연대 , 삼승 , 송림	
	능 서	미래 , 미화	
	흥 천	외사 , 상백 , 상대	
	금 사	상품 , 주록 , 송현 , 전북	
	대 신	옥천 , 상구	
	북 내	상교 , 운촌 , 중앙	
	강 천	도천 , 부평 , 대둔 , 걸은 , 강천	
평 택	서 탄	사리 , 수월암 2 , 내천 2 , 마두 1.2 , 회화 , 장등 2 , 금각 2 , 황구지	(1)
	포 승	원정 (10)	
	진 위		동천

화 성	반 월	속 1.2 , 당속 2 (44)	속달 1.2 (9)
	내 승	송라 1 , 야목 2,3,4	송라 2
	봉 담	상기	
	비 봉	유포 , 청요 , 지안	
	마 도	백곡 , 송림 , 고모 , 청원	
	송 산	고정 , 우음도 , 고포 1 , 철곡 , 어도 , 독지 2 , 형도	우음도 , 어도 , 형도
	서 신	전곡 1.2 , 송교 1,2 , 궁평 제부 , 백미	제부
	우 정	국화 , 입화 , 이화 1,2,3,4 호곡 1,2,3 , 주곡 1,2,3	국화 , 입화
	동 탄	중 2 , 신 1.2	
고 양	일 산	장항 4,5,6 , 주엽 1,2,3,4 5 (20)	(0)
	벽 제	문봉 , 성석 1,2,3 , 성문 1, 2 , 구산 3	
	송 포	덕이 4.5 , 법곶 1,2,3	
파 주	탄 현	낙하 , 만우 , 대동 , 성동 (20)	(11)
	교 하	산남 , 송촌 , 서패 , 동패	
	천 현	직천 , 오현	직천 , 오현
	적 성	적암 , 장현 , 율포 , 무건	적암 , 장현 , 무건 , 율포
	파 평	마산 , 이천 3	마산
	광 탄	용미 4 , 분수 3 , 발랑 , 영장	발랑 , 영장
	군 내		백연 , 조산
광 주	도 척	추곡 , 방도 (9)	(3)
	실 촌	상열미 , 봉현 , 건업	
	남 종	검천 , 수청	검천 , 수청
	퇴 촌	영동 , 우산	영동

연 천	전 곡	눌목1.2 , 간파 (6)	(0)
	백 학	구미	
	미 산	삼화	
	신 서	내산	
포 천	내 촌	마명 (14)	(0)
	화 현	화현 , 명덕 , 지현	
	신 북	갈월 , 삼정 , 덕둔	
	창 수	운산 , 추동 , 주원	
	관 인	종1.2 , 삼율	
	영 북	대회산	
가 평	가 평	승안 , 개곡 , 이화 , 금대 ,	금대 , 두밀 (11)
	설 악	사룡 , 송산 , 미사 , 엄소 , 묵안 , 가일 , 설곡 , 방일 , 천안 , 이천	송산2 , 설곡 , 묵안 , 가일
	외 서	상천3 , 삼회 , 호명 , 고성	호명 , 고성
	상 면	행현1 , 봉수 , 태봉2 , 상동	상동
	하 면	상판 , 마일 , 대보	상판
	북 면	도대 , 적목 , 화악 , 백	적목
양 평	강 상	대석 (12)	(11)
	강 하	항금	항금
	서 종	명달 , 정배 , 서후	명달 , 수입2 , 노문
	단 월	석산 , 산음 , 명성	명1.2 , 석산1.2 , 산음1.2
	청 운	도원	도원
	양 동	고송 , 계청 , 단석	
이 천	호 법	매곡 (13)	(0)
	대 월	송라 , 군량2	
	모 가	두미1 , 어농1	

이 천	설 성	암산2 , 송계 1 , 대축 1	
	율 면	충곡 , 산양 1.2	
	마 장	해월 , 장암 2	
용 인	외 사	옥산 , 장평 , 석천 (3)	옥산 , 장평 , 석천 (10)
	모 현		갈담 3
	구 성		종 2
	수 리		고기 2
	남 사		원암
	이 동		묘봉 3
	원 삼		죽능
	내 사		경수
안 성	보 개	신안 , 가율 , 이전 (34)	(4)
	금 광	한운 , 한곡 , 옥정	한운 , 현곡 , 옥정
	서 운	산평 , 청용 , 북산	
	미 양	법전 , 강덕	
	대 덕	삼한 , 무능	
	양 성	장서 , 노곡 , 미산 , 방축 , 난실	
	공 도	중복	
	원 곡	산하 , 성운 , 성주	
	일 죽	고은 , 방초 , 금산	
	이 죽	칠장 , 당목 , 두교 , 용선	
	삼 죽	가현 , 동평 , 남평 , 율곡	
	고 삼	쌍지	쌍지
김 포	고 촌	풍곡1 , 태 3.5.6 , 전호 1.2 (43)	(13)
	검 단	원당3 , 대곡2.3.4 , 왕길 3 , 금곡 3	
	양 촌	석모 5 , 마산 1.2.3 , 대포 2 , 학운 2.3.4.5	학운 4.5
	대 곶	송마 1.2 , 석정 , 쇄암 , 신안 1.2	쇄암 , 신안 1.2

	월 곶	응정, 보구곶, 용강, 조강	응정, 보구곶, 용강, 조곶
	하 성	후평1, 서암1.2, 신리, 기금1.2.3, 봉성, 전유	전유, 후평1, 시암1.2
	계 양	갈산, 축실, 북상	- (인천시로 행정구역개편)
강 화	길 상	동검, 선두5 (14)	동검 (21)
	화 도	흥왕, 장화	흥왕, 장화, 여차
	하 점	망월	
	양 사	인화, 북성	인화, 북성, 교산, 적하, 철산
	송 해	양오	양오
	삼 산	서검, 미법	서검, 미법, 석모, 석포, 상피, 하리, 매음
	서 도	주문, 아차, 말도, 볼음	주문, 아차, 말도, 볼음
옹 진	영 종	운남, 운서, 운북, 중산 (34)	(22)
	북 도	시도, 신도, 모도, 장봉	시도, 신도, 모도, 장봉
	용 유	남북, 물왕, 덕교, 무의	
	송 림	연평, 소연평	연평, 소연평
	대 청	대청, 소청	대청, 소청
	덕 적	진리, 서포, 북리, 승봉, 울도, 백아, 소야, 문갑	진리, 서포, 북리, 울도, 백아, 소야, 문갑
	영 흥	내리, 선재, 자월, 이작 외리	승봉 내리, 선재, 외리
	자 월		자월, 이작, 승봉
	대 부	동남북, 선감, 풍도	

고 시

경기도고시 제 90호

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3. 7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장명 : ㈜ 퓨리나코리아
- 소재지 : 송탄시 장당동 85-1
- 대표자 : 폴반헬레겜

구분	사료 종류	사료 명칭	사료 용도	등록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사료	주문육계전기	0~3주	5-7-3	19.5	2.0	0.6	0.4	6.0	8.0
		착유3-2	비유량 18-19㎏(질이 매우 우수한 조사료급여시)	5-30-2	17.0	2.0	0.8	0.4	14.0	11.0

경기도고시 제 91호

- 광명도시계획시설(광명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o 결정도서는 광명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 3 . 8

경 기 도 지 사

o 광명도시계획시설(광명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 별첨

o 조성계획결정도면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o 실시계획인가사항 : 별첨

o 승인조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것이며 본법이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이행후 사업시행

o 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단위 : ㎡

시설구분	시설명	당초		변경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합계		34,586.8		34,586.8	
조경시설	파고라	20		20	
휴양시설	벤치외 1종	257		257	
공원관리시설	휴지통외 4종	81		481	96.76
교양시설	현충탑	596.7		596.7	
도로 및 광장	산책로, 광장	3,361		3,361	
보존녹지		30,271.1		29,871.1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명시 철산동 153 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광명 근린공원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결정면적 : 34,586.8 ㎡

○ 시행면적 : 400 m (관리사무소 신축 96.76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광명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7일

○ 준공예정일 : 1990.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소재지 : 광명시 철산동 153 번지

○ 면 적 : 34,586.8 ㎡

○ 소유자 : 광명시장

○ 면적 및 규모

단위 : ㎡

시설구분	시 설 명	당초		변경	
		부지면적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합 계		34,586.8		34,586.8	
조경시설	파고라	20		20	
휴양시설	벤치외 1종	257		257	
공원관리시설	휴지통외 4종	81		481	96.78
교양시설	현충탑	596.7		596.7	
도로및광장	산책로, 광장	3,361		3,361	
보존녹지		30,271.1		29,871.1	

경기도고시 제 92 호

○ 반월도시계획시설 (반월 281 호, 군자 63 호 어린이공원) 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 25 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제 12 조 제 4 항 및 동법 제 2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결정도서는 안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 3 . 8

경 기 도 지 사

○ 반월도시계획시설 (반월 281 호, 군자 63 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첨

○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실시계획 인가사항 : 별첨

○ 승인조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것이며 본법이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이행후 사업시행

○ 조성계획 결정조서

단위 : ㎡

공원명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연면적
반월제 281호 어린이공원	계		2,236	96.21	106.11
	휴양시설	노인정	96.21	96.21	106.11
	유희시설	로켓트미끄럼대외 7종	2,139.79		
군자제 63호 어린이공원	계		1,441.1	59.40	109.98
	휴양시설	노인정	59.40	59.4	109.98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 7종	1,381.70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시행위치 : 안산시 이동 582-2, 초지동 594-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반월제 281호, 군자제 6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결정면적 ┌ 반월 제 281호 어린이공원 — 2,236 ㎡
  └ 군자 제 63호 어린이공원 — 1,441.1 ㎡
- 시행면적 ┌ 반월 제 281호 어린이공원 — 2,236 ㎡
  └ 군자 제 63호 어린이공원 — 1,441.1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안산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착수예정 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7일

○ 준공예정 년월일 : 1990. 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소재지 — 반월제 281호 어린이공원 — 안산시 이동 582-2

— 군자제 63 호 어린이공원 — 안산시 초지동 594-1

○ 면 적 — 반월제 281호 어린이공원 — 2,236 ㎡

— 군자제 63 호 어린이공원 — 1,441.1 ㎡

○ 소유자 : 안산시장

○ 면적 및 규모

단위 : ㎡

공 원 명	시설구분	시 설 명	부지면적	건축바닥면적	연면적
반월제 281 호 어린이공원	계		2,236	96.21	106.11
	휴양시설	노인정	96.21	96.21	106.11
	유희시설	로켓트미끄럼대 외 7종	2,139.79		
군자제 63호 어린이공원	계		1,441.1	59.40	109.98
	휴양시설	노인정	59.40	59.4	109.98
	유희시설	조합놀이대외 7종	1,381.70		

경기도고시 제 93 호

육류연동가격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 3 . 12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동가격	비 고
쇠 고 기	정육 500 g 당	5,350 원	
돼 지 고 기	박피품(정육 500 g 당)	1,700 〃	
	미박피품(〃)	1,500 〃	

○ 시행일 : '90. 3.15

경기도고시 제 94 호

경기도자동차운전학원 운용규칙 제 33 조 제 1 항에 의거 고시한 경기도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년 3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자동차운전학원수강료고시개정고시

1. 수강료

종별 / 구분	제 1 종			제 2 종		속 성 반			도로연수 (시간당)
	대형	보통	특 수	보 통	소 형	1 대	1 보	2 보	
시	140,000	163,500	156,000	139,700	55,000	68,200	78,400	64,300	8,000
군	134,400	158,000	127,900	134,200	52,000	68,200	78,400	64,300	8,000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고시 87-56 호 ('87.2.27)는 폐지한다.

경기도고시 제 97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 3 . 4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장명 : 승화기업

○ 소재지 :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418-12

○ 대표자 : 백연수

구분	사료			등록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칼슘 (K) % 이상	유황 (S) % 이상
등록	단미 사료	혼합광물질 ($KCl + Na_2 + SO_4$) 썰파-K	배합사료 첨가용	9-5-12	18.0	11.0
		광물질첨가물 $(NH_4)SO_4$ 암모니움썰페이트	〃	9-5-13		23.0

경기도고시 제 98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 3 . 14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장명 : 한일사료공업㈜

○ 소재지 :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13

○ 대표자 : 최병덕

구분	사료			등록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 사료	착유 2-1	비유량 16-17 kg	15-29 -2	15.0	2.0	0.6	0.25	25.0	10.0
		착유 4-1	비유량 20 kg 이상	15-31 -2	20.0	2.0	0.6	0.4	20.0	10.0

수원시고시 제 9 호

1.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와 장안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 3 . 5

수 원 시 장

가. 허가내용

1)사업시행지의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26 외 16 필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
- 명칭 : ㈜ 중앙개발

3)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30,225 ㎡
- 규모

단위 : ㎡

계	택지부지	공공용지	공원부지	도로부지	녹지부지
30,255	12,784	1,474.5	2,438.75	8,933.25	4,624.5

- 건축계획 : 분양용 단독주택 59세대
  - 건 축 면 적 : 5,550 ㎡
  - 건 축 연 면 적 : 11,100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50번지

㈜ 중앙개발 대표 김종찬

5) 사업의 착수일 준공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91. 12. 2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7) 단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나. 허가조건 : 생략

시흥시고시 제 6 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제 6 항 규정에 의거 반월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 33 조 제 4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흥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1990. 3. 6

시 흥 시 장

1. 사업명 : 진양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진양건설㈜ 대표이사 김홍기

○ 주소 : 부천시 남구 소사동 212-11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62-1 외 4필지

○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4,538.16

건축면적 : 1,499.91

연 면 적 : 10,285.8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2동 156세대

4. 사업시행기간 : '90.3 - 90.8

5.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변경

○ 변경사항

구 분	종별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시 점	종 점	비 고
				m	m	m			
기 정	소로	3	24	6	67	402	소 1 - 1	소 2 - 23	
변 경	소로	3	24	6	67	402	소 1 - 1	소 2 - 23	

김포군고시 제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90. 3. 6

김 포 군 수

아 래

1. 사업명 : ㈜ 함성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61-8번지

㈜ 함성건설 대표 유창환

3. 위 치

1단지 : 김포군 김포읍 북리변리 산55, 산56, 산57-8번지

2단지 : 〃 〃 북변리 산 55 번지

3단지 : 〃 〃 〃 산 56 번지

4. 규 모

단위 : 평방메다

구 분	대지면적	건 축 면 적	건축연면적	층 수	동 수	세대수
1 단 지	3,834	961.08	5,535.72	5	4	88
2 단 지	1,878	480	2,816.64	5	2	40
3 단 지	1,355	381.78	1,983.42	5	1	20

5. 사업시행기간 : '90.3 — 90.12

6.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1) 건축법 제 5 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 47 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2) 도시계획법 제 4 조 및 제 5 조 제 2 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 24

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과(84-2181-9 교환 25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62호

수도권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팔당호수 준설사업지구내 골재채취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 3. 5

경 기 도 지 사

1. 허가지역 및 대상물량

지역및하천명	공구별	'90년 허가예정량	비 고
계	9	3,000 천㎥	
한강, 남한강 북한강 각일부	1 - 1	500 〃	
	1 - 2	200 〃	
	1 - 3	200 〃	
	2 - 2	200 〃	
	2 - 3	500 〃	
	2 - 4	300 〃	
	3 - 1	500 〃	
	3 - 2	300 〃	
	3 - 3	300 〃	

2. 허가신청자격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 및 장비를 구비한 자로서 현장설명서에 등록하고 신청기간내 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하천법 제 25 조의 2 각항에 저촉되지 아니한자

나.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에 참여한자 및 건설업법에 의한 준설업 면허소지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한 다음의 장비를 소유한자

(1) 펌프준설선 (1,000 HP) 1 척이상 (단, 허가신청시에는 제작중인 확인서 또는 반입이행각서 제출로 대체할수 있으나 채취 예정 기한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함)

(2) 바켈식준설선, 펌프바지선, 크렘쉘중 1 대이상

(3) 쇄석기 1 대이상

(4) 로우더, 쇼벨계중기 각 1 대이상

다. 하천산출물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할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소지한자.

3. 허가신청의 세부요령 및 피허가자 선정방법등

팔당호수 준설사업구역내 골재채취허가 사무처리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르면, 특히 허가신청량은 수중채취장비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구별 허가예정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현장설명일시 : 1990. 3.15. 10:00

5. 현장설명장소 :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자재과 (하남시 신장동 소재)

6. 허가신청기간 : 1990. 3.16. 16:00 (신청량 발표 당일 18:00)

7. 허가예정일 : 1990. 3.19

8. 허 가 기 간 : 허가일로부터 — 1990.12.31

9. 기타사항

가. 피허가자는 1990.5.1 부터 골재채취 및 반출하여야 하며 허가후 분기별 반출량은 채취계획량의 90%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자재과 (하남시 신장동 274 번지, 전화 (0347) 791 - 2161, 792 - 2657) 문의하시고, 공고기간내 관계도서를 열람할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배부합니다.

경기도공고 제 63 호

K • S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90 . 3 . 2

경 기 도 지 사

1 . 업 체 명 : 유신메라민공업㈜

2 . 소 재 지 : 안산시 목내동 456-6

3 . 대 표 자 : 이동철

4 . 허 가 번 호 : 제 4936 호

5 . 규 격 품 목 : K S C 6482

6 . 품 명 : 프린트배선용 동입힘 적층판 (종이바탕 페놀수지)

7 . 종류및등급 : 허가전종류 및 등급

8 . 취 소 일 자 : 1990 . 3 . 2

9 . 취 소 사 유 : 허가 자진반납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공고 제 64 호

공인신조사용공고

경기도 시화지구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직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하였기 경기도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 : 1990 년 3 월 2 일

1990 년 3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분임칭수관인



공 고

경기도공고 제 68 호

K . 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3. 3.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평국산업사
2. 소 재 지 : 파주군 교하면 야당리 45-3
3. 대 표 자 : 이 대 수
4. 허 가 번 호 : 제 4197 호
5. 규 격 번 호 : KSE 7001
6. 품 명 : 구멍탄용 연소통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취 소 일 자 : '90 .3 .3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69 호

품질관리 등급사정 취소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등급사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0. 3. 5.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동방개발
2. 대 표 자 : 김 현 용
3. 소 재 지 : 송탄시 서정동 147-1 번지
4. 사정등급 : 2 을
5. 사정번호 : D 마 2 을 - 58
6. 사정상품 : 남자용직물제 내의류
7. 취소일자 : '90.3.5
8. 취소사유 : 업종변경으로 인한 자진반납. 끝.

공 고

경기도공고 제 70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2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기 공고함.

1990. 3. 5.

경 기 도 지 사

1. 인 가 번 호 : 제 39 호
2. 설 립 조 합 명 : 경기동남부슈퍼마켙협동조합
3.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519-5
4. 대 표 자 : 김 재 인
5. 설립인가일자 : 1990.3.
6. 업 무 구 역 : 성남, 하남, 광주, 여주, 이천
7. 업 종 : 6220, 종합소매업
8. 설 립 목 적 : 종합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72 호

K.S 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3. 6.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삼한실업(주)
2. 소 재 지 : 안산시 원시동 743-5
3. 대 표 자 : 김 형 돈
4. 허 가 번 호 : 3858
5. 규 격 번 호 : K S M 6523
6. 품 명 : 구두용 고무창
7. 종류및등급 : 허가 전종류 및 등급
8. 취 소 일 자 : 1990.3.6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74 호

당도 관할 군포소방서장의 관인 및 계인을 관인규정 제 9 조에 의거 신조하여 3월 9 일부터 사용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군 포 소 방 서 장 인	계 인
	

1990. 3. 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공고 제 76 호

특수지역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 공고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제 4 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특수지역 골재채취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승인내역 (단위 : 천㎥)

위 치	하천명	채취계획량	비 고
계	5 개 소	6,443	
여주군강천면강천리일대	남한강	1,100	
〃 〃 굴암리 〃	〃	700	
고양군지도읍신평리 〃	한 강	3,200	
양평군양평읍회현리 〃	남한강	443	
김포군고촌면신곡리 〃	한 강	1,000	

○ 채취기간 : '90.3월부터 - '92.12

○ 허가방법 : 시군별 자체계획에 따라 허가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도청 치수과 (42-4374) 및 해당시군 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0. 3. 12.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공고 제 81 호

내무경비 02640-1403(90.2.3)에 의거 창설되는 경기도 경찰국 기동대 제 8 중대의 직인 및 계인을 신조 조각하여 사용함을 관인 규정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직 인	계 인
	

1990. 3. 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공고 제 82 호

공인신조 공고

경기도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사용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 .

경 기 도 지 사

1. 사용개시일 : 경기도보 게재후
2. 공 인 명 :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지원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
3. 인 영



공 고

경기도공고 제 84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업자의 등록말소의 공고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건설촉진법 제 10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 조 규정에 의거 사업실적 미달 및 사업실적 미제출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 7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3. 15.

경 기 도 지 사

아 래

1. 등록업체명 : 별지와 같음.
2.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사유 : 별지와 같음.
3. 영업정지기간 : 별지와 같음. 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현황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일	처분분야	사 유	근 거	처분내용
1	78-62	78. 12.29	(주) 복원주택	연규옥	성남시태평동 3309-475	90.3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 미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등록말소
2	81-47	81. 11. 5	(주) 금강건설	이규현	부천시역곡동 28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3	82-16	82. 5.24	기오개발 (주)	김정규	안양시안양동 627-20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4	83-17	83. 3.17	(주) 대진건설	한성섭	부천시역곡동 342-4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5	83-52	83. 3.31	㈜ 삼남주택	박혜선	성남시신흥동 5394	90. 3.	주택 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등록 말소
6	84-12	84. 3.15	철성건설 ㈜	정일효	광명시철산동 467-407	〃	〃	〃	〃	〃
7	84-15	〃	평화주택	김영국	부천시심곡동 125-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	〃
8	84-32	〃	㈜ 복지건설	김성수	부천시심곡동 177-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9	84-46	〃	경일건설 ㈜	이학래	수원시화서동 208호 경일Ⓐ 상가 202	90. 3.15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10	84-49	84. 3.15	대연주택 (주)	김성태	오산시원동 238-3	//	//	//	//	//
11	84-66	84. 3.30	한보건설 (주)	홍기유	수원시고등동 74-5	//	//	실적없음	//	//
12	84-112	84. 12.24	(주)부일 주택건설	김부겸	고양군원당읍 주교리 127-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13	85-10	85. 4. 2	평화버스 (주)	권영수	안성군대덕면 건지리 55-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14	85-38	//	상아주택 건설	전영철 외 1 인	구리시수택동 258-1,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15	85-67	85. 4.2	현진건설 (주)	장동갑	부천시원미동 110-1	90. 3.15	주택 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등록 말소
16	85-68	//	방산건설 (주)	이천성	시흥시대야동 378-22	//	//	//	//	//
17	86-21	86. 3.18	(주) 안국건설	이창결	부천시괴안동3	//	//	//	//	//
18	86-25	//	(주) 동호건설	노흥렬	시흥시신천동 378-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	//
19	86-26	//	(주) 청송주택	양승조	부천시송내동 557-5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20	86-73	//	세원건설 (주)	강중순	광명시광명동 158-795	//	//	//	//	//

21	86-89	86. 3. 8	(주) 좌방산업	방정식	송탄시이충동 463-1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22	87- 6	87. 3.28	서흥건설 (주)	곽명식	수원시영화동 404-18	//	//	//	//	//
23	87- 8	//	(주) 일신건설	윤형기	부천시심곡동 590-4	//	//	//	//	//
24	87-15	//	(주)동 진	박용래	수원시교동 134-3	//	//	//	//	//
25	87-16	//	(주) 우일건설	김상수	부천시송내동 380	//	//	//	//	//

26	87-17	87. 3.28	삼우건설 (주)	조해영	수원시세류동 148-12	90. 3.15	주택 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등록 말소
27	87-29	//	형제주택 건설	서재만	광명시광명동 139-7	//	//	//	//	//
28	87-36	//	(주)정 보	우정광	성남시수진동 591-1	//	//	//	//	//
29	87-40	87. 4.13	정아산업 (주)	김용건	의정부시의정부동 176-6	//	//	//	//	//
30	87-41	//	삼덕건설	이한성	하남시덕풍동 418-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31	87-45	87. 4.24	(주) 아남건설	민병학	광명시광명동 93-6	〃	〃	〃	〃	〃
32	87-46	〃	상경주택 개발(주)	오성환	하남시덕풍동 372-8	〃	〃	〃	〃	〃
33	87-47	〃	(주)진 성 레미콘	박수득 외 1 인	구리시교문동 511-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34	87-49	〃	동일주택 건설	윤태혁	가평군외서면 청평리 619-10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	〃
35	87-52	87. 4.16	(주) 풍원건설	황상연	안양시관양동 361-13	〃	〃	〃	〃	〃

36	87-54	87. 4.14	(주) 진선건설	민남옥	성남시태평동 3311	90. 3.15	주택 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등록 말소
37	87-57	87. 4. 8	(주)동 산	심재동	가평군가평읍 대곡리 230-11	//	대지 조성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38	87-33	87. 3.28	덕계임대 주택	이광연	양주군회천읍 덕계리 669	//	임대 주택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39	87-34	//	한진임대 주택	최광미	연천군전곡읍 전곡리 318-2	//	//	//	//	//
40	87-35	//	(주) 현대주택	권창범	구리시수택동 594-4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41	87-18	87. 3.28	(주) 진흥주택	박상욱	부천시중구 심곡동 89-16	90. 3.15	주택 건설	• 실적미달	//	영업정지 6월(90. 3.15-9. 14)
42	87-44	87. 4.24	(주) 혜인주택	이희용	부천시심곡동 561-1	//	//	//	//	//
43	86-79	86. 3.18	천보건설 (주)	홍천유	수원시매산로3가 31-4	//	//	• 실적미달 • 청문불응 (공문반송)	//	영업정지 4월(90. 3.15 - 7.14)
44	87-24	87. 3.28	유림건설 (주)	유동웅	광명시광명동 150-11	//	//	• 실적미달	//	//
45	87-50	87. 4. 9	비우건설 (주)	김인수	평택시비전1동 633-5	//	//	//	//	//

46	84-33	84. 3.15	(주) 진흥건설	이동호	안성군안성읍 낙원리 80-6	90. 3.15	주택 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	영업정지 3월(90. 3.15 - 6.14)
47	84-62	84. 3.30	명성주택 건설(주)	고전일	의정부시의정부동 198-1	〃	〃	〃	〃	〃
48	84-102	84. 12.22	두승주택	최승수 외 4 인	미금시금곡동 404-74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49	85-19	85. 4. 2	신한건설 (주)	김죽남	수원시중동 41	〃	〃	〃	〃	〃
50	85-28	〃	범양주택 건설(주)	김종익	부천시송내동 393	〃	〃	〃	〃	〃

51	85-85	85. 10.7	(주)국경 주택	이계진	부천시중구심곡동 378-1	//	//	//	//	//
52	86-4	86. 3.18	(주)동우 주택건설	한진호 외 1 인	화성군향남면평리 76-13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53	86-35	//	(주) 원촌주택	이덕형	안양시안양동 293-19	//	//	//	//	//
54	86-59	//	동오건설 (주)	한문교	수원시지동 354-22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55	86-91	//	동진건설 (주)	김순희 외 1 인	부천시원미동 105-3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56	86-111	86. 3.28	신성토건	신수용	수원시영화동 334-5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57	86-113	86. 3.28	해원건설 (주)	김우상	이천군이천읍 창전리 77-3	90. 3.15	주택 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영업정지 3월(90. 3.15- 6.14)
58	86-146	86. 4.15	(주)중평	김용찬	동두천시생연동 445-2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59	87-4	87. 3.28	성우건설 (주)	곽선권	구리시수택동 460-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60	87-23	//	대도건설 (주)	김찬호	부천시중구 원미동 92-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61	87-27	//	덕흥주택	김현수	수원시신풍동 109-2	//	//	//	//	//
62	87-30	//	보우건설	오구해	부천시중동 765-7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63	87-42	87. 4.13	금영건설	김평현	안산시원곡동 779-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64	88-5	88. 4. 4	한일공영건설(주)	백훈기	안양시호계동 915-24	//	//	//	//	영업정지 2월(90. 3.15 - 5.14)
65	88-12	88. 4.15	광원주택	천영일	고양군원당읍 성사리 676-3	//	//	//	//	//
66	89-2	89. 4.26	대신주택(주)	한규남	의정부시가능동 603-2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67	89-17	//	(주) 미 려	김 용	용인군남사면 북리 557-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68	89-20	//	보명건설산업(주)	남 궁 창 호	의정부시의정부동 185-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69	89-34	89. 4.26	대성주택 건설	박승현	부천시중구내동 222-68	90. 3.15	주택건설 대지조성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영업정지 2월(90. 3.15 - 5.14)
70	89-38	〃	뉴한신 주택	노해용	안양시비산동 218브럭6-1롯트	〃	주택건설	〃	〃	〃
71	89-39	〃	동양섬유 산업㈜	박광진	고양군원당읍 성사리 519-11	〃	〃	〃	〃	〃
72	89-47	〃	남향건설 ㈜	엄정일	안양시안양동 202-7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73	89-74	〃	영진기업 ㈜	유경선	부천시중구삼정동 34-8	〃	〃	〃	〃	〃
74	89-75	〃	남경건설 ㈜	김창택	안산시고잔동 542-3	〃	〃	〃	〃	〃

75	89-77	89. 4.26	(주) 성남건설	정규인 외 1 인	고양군원당읍 주교리 602-9	//	//	//	//	//
76	89-85	//	삼호주택	박관용	안양시관양동 289-1	//	//	//	//	//
77	89-106	89. 5.17	태원건설 (주)	김중태	구리시수택동 542-5	//	//	//	//	//
78	89-112	//	(주) 삼 원	이결휘	포천군포천읍 신읍리 35-6	//	//	//	//	//
79	89-116	//	우신토건 (주)	김성완	부천시중구내동 128	//	//	//	//	//
80	89-121	//	금강주택 건설(주)	강중순	광명시광명동 102-13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81	89-126	89. 5.17	원신건설 (주)	박은규	부천시중구심곡동 476-9	90. 3.15	주택 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영업정지 2월(90. 3.15 - 5.14)
82	89-130	//	대지건설 산업공사	정필수	부천시중구심곡동 87-3	//	대지 조성	//	//	//
83	89-135	//	(합) 이화건설	김수영	이천군이천읍중리 119-4	//	주택 건설	//	//	//
84	89-136	//	대원건설 (주)	이종복	안산시고잔동 542-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85	89-137	//	신창건설 (주)	육창수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48-8	//	//	//	//	//

86	89-139	89. 5.17	미성건설	신현제	가평군가평읍 읍내리 496-1	//	//	//	//	//
87	89-146	//	대지조성 산업공사	정필수	부천시중구 심곡동 171-16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88	89-149	89. 4.18	서흥건설	조남원	부천시중구 여월동 48-7	//	//	//	//	//

제 2340 호
1990.3.16 - 3.27
경기도공보관실발행

경기도보

경기도청종합발간실
인 쇄

(규 칙)

경기도규칙 제 2061 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70 호 경기도사무의 공영개발사업단 내부위임규정
제 871 호 경기도 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

(고 시)

경기도고시 제 99 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제 100 호 반월도시계획시설 정정 지적승인 고시
제 101 호 팔당호수 준설사업지구내 골재채취허가 고시
제 102 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고시
제 105 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 107 호 사료성분 등록고시
제 109 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고시
제 111 호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 113 호 골재채취허가 (한강개발 1 공구) 고시
구리시고시 제 9 호 구리도시계획시설 (한강) 변경 결정고시
광주군고시 제 11 호 경안도시계획시설 (학교 : 광명학원) 사업시행허가 고시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2 호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 분묘개장 공고

제 84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공고

제 91 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공고

제 92 호 '90년도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공고

제 93 호 K S표시허가 취소공고

제 94 호 비료생산업 폐업처리 통보공고

제 96 호 // 휴업 // //

제 97 호 하천사용금지구역 일시해제 승인공고

제 98 호 지방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제 99 호 전기공사업면허 영업정지 처분공고

제 100 호 무주부동산 공고

안산시공고 제 33 호 반월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시행공고

오산시공고 제 25 호 공인신조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 1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제 14 호 //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3. 20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규칙 제 2061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공무원 정원) 제 1 항 "별표 1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총괄)의 계난 1,915 를 1,920 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67 을 1,068 로 하고, 8 급의 소계 187 을 188 로, 지방행정서기 69 를 70 으로 하며, 별정직난 6 급상당의 소계 20 을 21 로 하고, 교재편집원 2 를 3 으로, 7 급상당의 소계 31 을 30 으로, 교재편집원 1 을 삭제하며, 소방직난 소계 8 을 11 로 하고, 지방소방령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 1 을 2 로, 지방소방장 3 을 4 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675 를 676 으로 하고, 8 등급의 소계 44 를 45 로, 지방전기원 1 을 2 로, 10 등급의 지방운전원 90 을 92 로, 지방보건원 4 를 3 으로, 지방위생원 46 (사역 46)을 46 (사역 45, 위생 1)으로, 지방사무보조원 265 (조무 134, 타자 86, 전산 32, 제도 5 , 편집 1 , 필기 7)를 264 (조무 134, 타자 86, 전산 32, 제도 4 , 편집 1 , 필기 7)로 한다.

동조 제 2 항 "별표 2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본청)의 계난 1,039 를 1,042 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93 을 694 로 하고 8 급의 소계 112 를 113 으로, 지방행정서기 39 를 40 으로 하며, 소방직난 소계 8 을 11 로 하고, 지방소방령 2 를 3 으로, 지방소방경 1 을 2 로, 지방소방장 3 을 4 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304 를 303 으로 하고, 10 등급의 소계 244 를 243 으로, 지방사무보조원 178 (조무 84, 타자 53, 전산 32 , 제도 4 , 필기 5)을 177 (조무 84 , 타자 53, 전산 32, 제도 3 , 필기 5)로 하며

국민운동지원과의 일반직난 소계 12를 13으로 하고, 8급의 소계 2를 3으로, 지방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별정직난 7급상당의 소계 1과 홍보요원 1을 삭제하고, 6급상당의 소계에 1, 홍보요원에 1을 각각 삽입하며, 기능직난 소계 2를 1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2를 1로, 지방사무보조원 2 (타자 1 , 제도 1)를 1 (타자 1)로 하며

문화예술과의 별정직난 6급상당의 소계 2를 1로, 홍보요원 1을 삭제하고, 7급상당의 소계에 1, 홍보요원에 1을 각각 삽입하며, 소방과의 계난 9를 12로 하고, 소방직난 소계 8을 11로, 지방소방령 2를 3으로, 지방소방경 1을 2로, 지방소방장 3을 4로 한다.

동조 제 3 항 "별표 3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계난 222를 30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7을 113으로 하고, 5급의 소계 35를 36으로, 지방행정사무관 22를 23으로, 6급의 소계 26을 28로, 지방행정주사 11을 13으로, 7급의 소계 29를 31로, 지방행정주사보 15를 16으로, 지방보건기사보 2를 3으로, 8급의 소계 13을 14로, 지방행정서기 11을 12로 하며, 연구직난을 신설하여 소계에 63을 연구관의 소계에 13을, 지방농업연구관에 1을, 지방보건연구관에 12를, 연구사 소계에 50을, 지방농업연구사에 3을, 지방보건연구사에 47을 각각 삽입하며, 별정직난 6급상당의 소계 8을 9로, 교재편집원 2를 3으로, 7급상당의 소계 6을 5로 하고, 교재편집원 1을 삭제하며, 기능직난 소계 93을 109로 하고, 8등급의 소계 7을 9로,

지방난방원 1을2로, 지방전기원에 1을 삽입하며 9등급의 소계 5를 6으로, 지방운전원 5를 6으로, 10등급의 소계 76을 89로 지방운전원 17을 22로, 지방위생원 8 (사역 8)을 9 (사역 8, 위생 1)로, 지방사무보조원 30 (조무 14, 타자 12, 제도 1, 편집 1, 필기 2)을 33 (조무 16, 타자 13, 제도 1, 편집 1, 필기 2)로, 지방방호원 6 (방호 6)을 7 (방호 7)로, 지방보건원에 3을 삽입하며,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학과의 별정직난 6급상당의 소계 7을 8로, 교재편집원 2를 3으로, 7급상당의 소계 3을 2로 하고, 교재편집원 1을 삭제하며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학과난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소난을 신설하여 계난에 84를, 일반직난 소계에 6, 5급의 소계에 1, 지방행정사무관에 1, 6급의 소계에 2, 지방행정주사에 2, 7급의 소계에 2, 지방행정주사보에 1, 지방보건기사보에 1, 8급의 소계에 1, 지방행정서기에 1을, 연구직난 소계에 63, 연구관의 소계 13, 지방농업연구관에 1, 지방보건연구관에 12, 연구사의 소계에 50, 지방농업연구사에 3, 지방보건연구사에 47을, 기능직난 소계에 15, 8등급의 소계에 2, 지방난방원에 1, 지방전기원에 1, 9등급의 소계에 1, 지방운전원에 1, 10등급의 소계에 12, 지방운전원에 4, 지방보건원에 3, 지방위생원에 1 (위생 1), 지방사무보조원에 3 (조무 2, 타자 1), 지방방호원에 1 (방호 1)을 각각 삽입하며,

북부출장소 총무과의 계난 31을 32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13을 14로, 10등급의 소계 13을 14로, 지방운전원 4를 5로 한다.

동조 제4항 "별표4"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사업소)의 계난 654를 571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267을 261로 하고, 5급의 소계 24를 23으로, 지방행정사무관 6을 5로, 6급의 소계 79를 77로, 지방행정주사 30을 28로, 7급의 소계 94를 92로, 지방행정주사보 26을 25로 하며, 지방보건기사보 1을 삭제하고, 8급의 소계 19를 18로, 지방행정서기 19를 18로 하며, 연구직난 소계 91을 28로, 연구관의 소계 17을 4로, 지방농업연구관 5를 4로, 지방보건연구관 12를 삭제하고, 연구사의 소계 74를 24로, 지방농업연구사 27을 24로, 지방보건연구사 47을 삭제하며, 기능직난 소계 278을 264로, 8등급의 소계 25를 24로, 지방난방원 2를 1로, 9등급의 소계 36을 35로, 지방운전원 19를 18로, 10등급의 소계 200을 188로, 지방운전원 56을 43으로, 지방위생원 26(사역 26)을 25(사역 25)로, 지방사무보조원 57(조무 36, 타자 21)을 54(조무 34, 타자 20)로, 지방방호원 11(경비 5, 방호 6)을 10(경비 5, 방호 5)으로 하고, 지방보건원 4를 삭제하며,

보건환경연구소의 계난 83, 일반직난 소계 6, 5급의 소계 1, 지방행정사무관 1, 6급의 소계 2, 지방행정주사 2, 7급의 소계 2, 지방행정주사보 1, 지방보건기사보 1, 8급의 소계 1, 지방행정서기 1, 연구직난 소계 63, 연구관의 소계 13, 지방농업연구관 1, 지방보건연구관 12, 연구사의 소계 50, 지방농업연구사 3, 지방보건연구사 47, 기능직난 소계 14, 8등급의 소계 1, 지방난방원 1, 9등급의 소계 1, 지방운전원 1, 10등급의 소계 12, 지방운전원 3, 지방보건원 4, 지방위생원 1

(사역 1), 지방사무보조원 3 (조무 2, 타자 1), 지방방호원 1 (방호 1)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 년 2 월 12 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훈령 제 870 호

경기도사무의 공영개발사업단 내부위임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3. 22.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사무의 공영개발사업단 내부위임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공영개발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므로서 원활한 공영개발사업추진과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도지사의 권한중 단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단,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소관사업에 한한다.

제 3 조(권한의 표시) 이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 4 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훈령 제 871 호

경기도 사무위임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3. 22.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 사무 내부위임규정중 개정규정

제 1 조(목적)중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삭제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본문중 "공영개발사업단장"과 별표중 치수과소관 일련번호 1을(직할하천 구역내에서 행위허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경기도고시 제 99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3. 16.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주소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면적	사유	·성명	(현실지번)
					ha	ha	ha			
용인	용인	남	산117	임야	5.23	0.13	0.10			산117-2 산117-3
			〃118	〃	6.03	0.16	0.13			〃118-1
			〃119	〃	3.32	1.25	0.13			〃119-1
			〃130	〃	5.58	0.25	0.07		용인군기흥	
			〃136	〃	0.97	0.12	0.12		읍신갈리	〃136-1
			〃137	〃	0.53	0.05	0.05	골프장	52-12	
			〃138	〃	2.54	0.35	0.35	조 성	용인개발㈜	〃138-1 〃138-2
			〃139	〃	3.19	0.30	0.30		대표이사	
	이동	천	〃135	〃	8.75	0.20	0.20		임 정 규	〃135-1
			〃141	〃	8.40	0.40	0.40			
			〃141	〃	8.40	0.14	0.14			
			〃142	〃	5.71	0.70	0.70			〃142-1

			산142	임 야	5.71	0.21	0.21		산142-1
			//143	//	2.61	0.20	0.20		//143-1
			//143	//	2.61	0.23	0.23		// //
			//144	//	3.18	0.40	0.40		//144-1
			//145	//	1.40	0.20	0.20		
			//145	//	1.40	0.30	0.30		
			//146	//	1.79	0.20	0.20		
			//146	//	//	0.10	0.10		
계						5.89	4.53		

2. 해제신청자 : 주소 :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52-12 용인개발(주)

성명 : 대표이사 임 정 규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00 호

1. 경기도고시 제 246 호 (87.9.11) 로 지적승인되고 건설부고시 제 325 호 (89.6.21) 로 변경결정된 반월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 지적승인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3. 19.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가. 자동차정류장 정정지적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4	자동차정류장	안산시 신길동	7,600	
정정	4	〃	〃	6,456.7	감) 1,143.3 도면변경 없음.

나.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경기도고시 제 101 호

고 시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팔당호수 준설사업지구내 '90 년 골재채취를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0. 3. 19.

경 기 도 지 사

위 치	허가 목적	면 적 (천㎡)	허가량 (천㎥)	허가기간	피 허 가 자
계		2,670	2,946		
남양주군조안면진중리, 양평군양서면양수리지내 (1~3공구)	골 재 채 취	350	520	90.3.19 -12.31	삼표산업㈜ 한 상 헌
남양주군조안면조안리, 양평군양서면양수리지내 (2~2공구)	〃	340	350	〃	고려산업개발㈜ 장 기 남
〃 (2~3공구)	〃	830	510	〃	원덕개발㈜ 김 진 식
양평군양서면양수리, 광주군남종면귀여리지내 (3~1공구)	〃	530	820	〃	강원산업㈜ 박 대 선
광주군남종면귀여리 지내 (3~2공구)	〃	410	320	〃	유정건업㈜ 최 우 경
〃 (3~3공구)	〃	210	426	〃	㈜ 진성레미콘 고 한 준

경기도고시 제 102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방축지구

2. 구 역 : 포천군 가산면 방축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포천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1,035,448 ㎡

5. 환 지 내 용 : 방축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3. 21.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05 호

안양시 박달동 산 10 번지외 4 필지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0. 3. 2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분양주택)

나. 사업주체 :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876-1

동삼건설㈜ 황 유 복

다. 사업위치 : 안양시 박달동 산10번지외 4필지

라. 기 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 지 면 적	14,074 ㎡	13,830 ㎡
(사업면적)	(14,074 ㎡)	(14,074 ㎡)
사 업 규 모	5층5동 290세대	12층3동 312세대
사 업 비	7,601,842 천 원	15,785,421 천원
사 업 기 간	89.7 - 90.12.31	90.2 - 90.12.31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과 같음.

3. 기 타 :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주택과에 보관. 끝.

지적승인 및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m^2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사업면적(m^2)		대지면적(m^2)		소유자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7,298	14,074	14,074	14,074	13,830	서울시서대문구 연희동 86-14	전상선 외 2인	서울시구로구 독산동 887-9	황호순 외 1인
안양시 박달동	산 10	임야	3,341	3,341	3,341	3,341	3,194	〃	〃	〃	〃
〃	산 12-1	〃	9,109	6,970	6,970	6,970	6,940	〃	〃	〃	〃
〃	산 12-8	〃	1,377	1,377	1,377	1,377	1,310	〃	〃	〃	〃
〃	산 12-9	〃	198	198	198	198	198	〃	〃	〃	〃
〃	산 12-10	〃	3,273	2,188	2,188	2,188	2,188	〃	〃	〃	〃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07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3. 24.

경 기 도 지 사

배합사료성분등록 및 취소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번호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하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당초	두산 곡산	부천시중구 삼정동 15-6	안기영	배합사료	육계전기	0～3주	17-7-1	19.5	3.0	0.7	0.5	6.0	8.0
변경					〃	〃 (조기출하용)	〃	20.5	3.0	0.7	0.5	6.0	8.0
등록					메추리	산란용	17-45-1	19.0	3.0	2.5	0.5	6.0	14.5
등록	퓨리나코리아(부천)	부천시중구 오정동114-5	풀반월레겜	〃	육계전기 1	0～3주(조기출하용)	13-7-2	19.5	2.0	0.6	0.4	6.0	8.0
	세한유통	의왕시고천동 234-6	배주혁	수입배합사료	개사료6	이유후～8개월	90-40-6	27.7	8.1	1.6	1.0	1.2	6.8
	한일사료	용인군기흥읍 하갈리213	최병덕	배합사료	포유돈2	포유기간중	15-19-2	16.0	2.5	0.5	0.3	10.0	10.0

경기도고시 제 109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백석지구

2. 구 역 : 파주군 파주읍 백석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파주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239,361 ㎡

5. 환 지 내 용 : 백석지구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3. 23.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11 호

아산산업기지 개발구역내 자동차 제조공장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8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고시한다.

1990. 3. 24.

경 기 도 지 사

다 음

1. 사업의 명칭 : 아산산업기지개발구역내 자동차 제조공장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514-5

나) 성명 : 기아산업㈜ 대표 김선홍

3. 사업목적 및 개요(당초와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구위치 및 면적(당초와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87.6-90.3.30

변경 : 87.6-90.9.30 (6개월)

6. 서류의 송달 : (당초와 변동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당초와 변동없음)

8. 조 건 : (당초와 변동없음)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1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 계획인가 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개 요	사업시행자
	시 점	종 점		
문산—전곡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51-1 번지 (도로)	경기도연천군 전곡읍전곡리 302-38 번지 (대지)	도로개수 및 포장 L = 1.54 km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2. 공람장소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과 (752-8117)
• 현장사무실 (0355. 32 - 0348)
• 연천군청 건설과 (0355. 34 - 2211)

3. 편입토지조서 : 공람장소에 비치

1990. 3. 16.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1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 (도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시 점	종 점		
• IBRD 6 차차관 도로사업 제 1 공구 (전곡-성동) 공사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348-3 번지 (도로) 경기도포천군 영송리 125-2 번지 (도로)	경기도연천군 전곡읍전곡리 682 번지 (천) 경기도포천군 성동리 914-6 번지 (도로)	도로개수및 포장 L = 0.56 km 도로개수및 포장 L = 0.96 km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2. 공람장소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도과 (752-8117)
• 연천군청 및 포천군청 건설과
• 현장사무실 (0357-34-3936)

3. 편입토지조서 : 공람장소에 비치

1990. 3. 16.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고 시

고양군고시 제 11 호

일산도시계획시설(대로 3 - 1)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사업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고양군청 및 일산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3. 16

고 양 군 수

1. 허가내용

등 급	류별	번 호	폭(m)	연장(m)	면적 (㎡)	사업시행지		비 고
						기 점	종 점	
대 로	3	1	17.5 - 35	440	12014	일산리 1004	일산리 542-7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일산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산 1번지 경기도지사

다. 착공예정일 : 1990.3

라. 준공예정일 : 1991.12.

고 시

고양군고시 제 12 호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 - 1)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고양군청 및 원당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3. 16.

고 양 군 수

1. 허가내용

등급	류 별	번호	폭 (m)	연장(m)	면적(㎡)	사업시행지		비고
						기 점	종 점	
대로	3	1	17.5-35	2,380	62,734	주교리 207-33	주교리 601-2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산1번지 경기도지사

다. 착공예정일 : 1990.3

라. 준공예정일 : 1991.12

고 시

고양군고시 제14호

원능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3-1호선)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고양군청 및 원당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3. 23.

고 양 군 수

1. 허가내용

등급	류별	번호	폭	연장	면적	사업시행지		비고
						기점	종점	
대로	3	1	17.5-35	2,380	62,734	주교리 207-33	식사리 601-2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 식사리 지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능도시계획 도로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산1번지
경 기 도 지 사

라.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90.3 허가일 - 91.12.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바. 토지 또는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항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교	235-10	도	172	172		국(건설부)
//	235-4	도	374	374	원당읍주교리 107	최광군
//	235-11	도	188	188		국(건설부)
//	235-5	전	726	129	원당읍주교리 107	최광군
//	235-16	전	264	3		국(국방부)
//	235-17	전	253	1		//
//	529-8	전	975	90	원당읍성사리 408	최관근
//	529-14	도	50	50		경기도
//	529-7	전	1,312	215	원당읍주교리 117	김사귀
//	529-13	도	73	73		경기도
//	529-2	도	684	684	은평구불광동	김희문
//	529-9	도	119	119		경기도
//	529-1	전	53	53	성북구성북동 179-55	이교덕
//	529-6	전	1,164	212	원당읍주교리 303	김수성
//	529-15	도	63	63		경기도
//	529-5	전	1,322	314	원당읍주교리 134-4	김년환
//	529-12	도	53	53		경기도
//	237-2	도	331	331		차흥인
//	237-3	도	294	294		경기도
//	235-3	도	7	7		이완재

주 교	253-13	도	16	16		경 기 도
〃	233-1	도	3	3	원당읍식사리 289	이 완 재
〃	251-8	도	66	5		경 기 도
〃	237-1	답	3,180	821	원당읍주교리 302	김을선외4
〃	233-2	전	205	153	〃 〃 191	오 용 기
〃	233-3	도	69	69		국
〃	235-15	도	43	43		경 기 도
〃	235-18	전	1,170	9	광명시광명동 346-9	이 정 현
〃	235-12	도	225	217		경 기 도
〃	235-2	도	284	284	원당읍식사리 107	최준식외1
〃	286	전	2,764	663	성북구성북동 179-55	이 교 덕
〃	285-2	답	2,529	72	〃	〃
〃	542	도	2,680	2,511		국
〃	235-1	전	66	66	원당읍주교리 107	최 광 군
〃	225-2	도	172	172	충주군열정면율능리	홍승구외5
〃	224	전	83	83	충북충주군염정면 율능리	〃
〃	233-6	도	86	86		경 기 도
〃	223-8	전	148	116	원당읍식사리 635	심 조 택
〃	223-3	전	178	75	서울목동신시가지㉮ 217-902	유 용 근
〃	223-7	대	183	22	원당읍식사리 635	심 조 택
〃	산 91-1	임	1,587	70	부산시남구광안동 1055-125	김 병 호
〃	산 90	임	298	253	원당읍주교리 220-9	강옥빈외10
〃	235-20	전	7,594	89	〃 〃 102	최 항 군

주 교	235-7	전	1,289	243	원당읍주교리 191	오 용 기
〃	235-14	도	86	86		경 기 도
〃	232-2	도	73	73	〃 식사리 289	이 완 재
〃	232-3	도	122	122	일산읍산황리 272	장 엄 전
〃	232-1	전	149	29	원당읍주교리 191	오 용 기
〃	231	전	228	2	충북중원구노은면 안덕리 71	홍현희외 4
〃	235-8	전	1,187	30	원당읍주교리 95	서 광 현
〃	234	전	182	31	〃	〃
〃	227-4	도	60	60		경 기 도
〃	227-1	전	102	82	원당읍주교리 221-1	최 순 재
〃	227-2	도	16	16	〃 〃 401	이 영 세
〃	229-1	도	46	46		경 기 도
〃	229	전	578	42	서울성동구구의동 225-39	조 성 창
〃	222-6	도	10	10	원당읍주교리 221-1	최 순 재
〃	227-3	도	7	7	〃 〃 303-2	김 홍 신
〃	230	전	698	120	〃 〃 352	이 성 호
〃	223-2	전	288	268	〃 〃 221-1	최 순 재
〃	233-1	도	30	30	〃 〃 118	이 송 림
〃	233-5	도	76	76	〃	〃
〃	233-4	전	972	162	강서구목동 902 목동Ⓐ 217-002	유 용 곤
〃	226-2	도	146	146	원당읍주교리 118	이 송 림
〃	226-1	전	658	247	〃 〃 352	이 성 호
〃	226-3	도	212	212		경 기 도

주 교	225-1	전	139	29	충주군염정면율능리	홍승구외 5
〃	225-3	도	165	165	〃	〃
〃	217	대	149	70	원당읍주교리 95	서 상 돈
〃	217-1	전	460	57	강동구길동 160 서동아Ⓐ 3-909	이 영 복
〃	216-1	전	803	20	〃	〃
〃	218-5	전	446	330	서울마포구신공덕동 5	황 금 진
〃	218-4	전	208	208	〃	〃
〃	산 95	임	2,281	494	서울마포구공덕동 118-4	김 호 성
〃	218-2	전	152	152	서울마포구공덕동 5	황 금 진
〃	218-1	도	112	86	지도읍토당리 336	박 관 원
〃	228-2	도	33	11	〃	〃
〃	228-1	전	73	9	〃	〃
〃	228-3	전	106	411	〃	〃
〃	218-7	대	699	200	충북음성군금왕면 우곡리 224	조 성 민
〃	222-4	도	364	52	원당읍주교리 221-1	최 순 재
〃	222-3	전	532	63	〃	〃
〃	222-2	전	965	186	원당읍주교리 444	〃
〃	222-1	도	116	74	〃 〃 303-2	김 홍 식
〃	227-5	도	60	60		경 기 도
식 사	491-24	도	195	152		〃
〃	491-6	대	187	36	원당읍주교리 504	최 장 옥
〃	산 81-6	도		518		
〃	산 81-3	도	79	79	부산시서구김천동 830	김용수외 5

식 사	산82-2		198	198	원당읍주교리 451	차 종 덕
//	산 81-5	도	8,430	1,011	부산동래구철산동34-2	홍 기 경
//	491-21	도	73	36		경 기 도
//	491-20	도	69	69		//
//	산 82-4	임	496	143	원당읍주교리 451	차 종 덕
//	499	전	598	369	// // 496	차 도 환
//	491-7	대	324	35	// // 산82	최 병 화
//	491-16	도	3	3		고 양 군
//	980		4,228	428		국
//	567-6	답		168		
//	573-4	대	473	64	충북중원구노은면 안락리 71	홍혁회외 4
//	572-3	도	7	7		동양척식(주)
//	572-1	도	13	13		//
//	500	전	526	54	원당읍주교리 496	차 도 환
//	501-4	전	2,635	1,042	신도읍삼송리 30-39	최 정 대
//	981	도	4,228	428		국
//	513	답	3,580	1,736	원당읍주교리 479	장 석 범
//	512-3	대	119	119	// // 496	차 도 환
//	512-2	도	149	35		경 기 도
//	511-3	도	185	147	원당읍주교리 496	차 도 환
//	511-2	전	674	674	//	//
//	514-1	답	2,122	110	원당읍주교리 504	최 장 남
//	510-3	전	1,729	1,288	// // 538	이 금 만

식 사	510-4	도	268	268		경 기 도
〃	510-1	도	7	1	경성부태평동이정목 21	정삼치작
〃	491-23	도	73	73		경 기 도
〃	509-2	도	40	8	충북충주군엄정면율능리	홍승구외 5
〃	산 83-3	도	198	198		국
〃	491-9	전	2,876	695	원당읍주교리 4510	최 종 덕
	491-22	도	139	64		경 기 도
〃	566-52	구	64	28	파주군금촌읍금촌리 80-23	파주농지개량조합
〃	1447	구	1,890	92		〃
〃	1423	답	3,423	737	원당읍주교리 509	김 영 자
〃	1343	구	15,490	55		국
〃	1421	구	499	131		국
〃	1418	답	3,051	305	원당읍성사리 705-1	이 한 기
〃	1441	구	6,496	68		국
〃	979	구	1,916	115		국
〃	1403	구	539	115		국
〃	1425	답	3,195	352	원당읍주교리 504	장 영 희
〃	1426	답	1,315	152	〃 〃 482	손 오 복
〃	1427	답	2,832	325	〃	〃
〃	1428	답	2,487	224	〃	〃

식 사	1429	답	4,193	247	원당읍주교리 482	이 류 순
〃	1424	구	1,300	936		국
〃	1402	답	4,134	605	원당읍주교리 621-8	이 진 영
〃	1422	구	206	193		국
〃	산 84-2	임	11,107	2,565	원당읍주교리 496	차 덕 영
〃	498-4	답	1,762	538	〃	차 도 환
〃	499	전	598	195	〃	〃
〃	501-4	도	2,653	462	신도읍삼송리 30-39	최 정 대
〃	산 76-3	도	83	123	마포구공덕동 118-4	김 영 한
〃	-4	도	99	141		경 기 도
〃	-1	임	3,570	158	마포구공덕동 118-4	김 영 한
〃	-2	도	99	146	〃	〃
〃	산 75-2	도	1	46	〃	최 병 익
〃	-3	임	694	82		국 방 부
〃	-1	임	1,289	3		〃
〃	510-2	도	33	33	경성부태평도이정부21	공 상 치 작
〃	567-12	도	126	150		경 기 도
〃	573-2	도	3	3	충북충주군염정면율능리	홍승구외 5
〃	575-16	도	192	155		국 방 부

식 사	572-4	도	73	73		동양척식(주)
〃	575-6	도	215	215		〃
주 교	527-4	전	1,976	30	원당읍주교리 527-1	김 재 덕
〃	산 84-2	임	5,752	496	마포구공덕동 118-4	김 영 한
〃	산 84-4	도	1,587	1,427		경 기 도
〃	산 84-1	도	198	493	개풍군상도면양사리	김 충 진
〃	산 84-3	임	2,876	10	원당읍주교리 304	김 성 환
〃	산 84-5	도	992	966		경 기 도
〃	산 165	임	52,364	2,108	마포구공덕동 118-4	김 영 한
〃	산 177	임	893	649	〃	〃
식 사	산 74-2	도	595	573	〃	〃
〃	산 74-1	임	56,727	1,378	〃	〃
〃	산 74-8	도	99	89	〃	〃
〃	산 74-9	도	99	42		경 기 도
〃	산 74-10	도	496	93		〃
〃	산 85-2	임	1,190	647	파주군교하면산남리	이응당외 4
〃	산 85-3	도	694	683	〃	〃
〃	산 85-1	도	99	592	청석면산남리	감맹화외 4
〃	산 84-3	도	1,190	20		경 기 도

주 교	529-4	전	869	350		김 노 미
//	529-11	도	53	53		경 기 도
//	287-3	도	102	42		//
//	286-1	도	23	21		//
//	529-3	전	747	555	원당읍주교리 303	김 수 성
//	529-10	도	106	106		경 기 도
//	528-5	전	1,170	4	원당읍주교리 359	김 창 원
//	528-4	전	902	186	// 303	김 수 성
//	-10	전	36	36	// 114	최 의 공
//	-7	도	40	40		경 기 도
//	-9	도	50	50		//
//	-1	도	215	215		동 양 척 식
//	545	도	2,220	620		국
//	528-8	도	443	443		경 기 도
//	-2	전	1,045	648	원당읍주교리 402	태 영 봉
//	529-10	도	106	106		경 기 도
//	527-3	도	36	26	원당읍주교리 95	김 재 덕
//	207-33	답	2,298	540	서울중구만리동 1 가 62-11	밀양박씨수정 공파대종회
//	211-3	답	377	130	서울은평구신사동 263	김성유외 1

주 교	209-3	답	2,529	1,309	원당읍주교리	박 상 범
//	209-2	구	329	252		고 양 군
//	209	답	707	594	원당읍주교리	박 상 범
//	212-3	답	349	22	// // 569-5	최 명 자
//	197-1	답	1,174	548	// // 443	최 종 수
//	197-2	답	3,263	811	//	//
원 당	196	답	2,678	71	원당읍주교리 210	김 용 산
주 교	213-3	답	2,155	1,204	// // 213-8	전 암
//	213-2	답	2,592	287	// // 412	김 호 식
//	213-5	답	499	216	// // 214	안 관 철
//	202-2	답	2,777	1,164	지도읍화정리 37	신 상 훈
//	533	도	3,809	274		국(문교부)
//	531	구	94,830	1,106		국
//	215	전	1,253	2,211	원당읍원당리 160	강영기외1
//	543	도	4,060	3,405		국
식 사	567-2	도	20	20		동양척식(주)
//	575-26	답	46	21	원당읍주교리 592	이 용 익
//	575-25	도	122	36		국 방 부

식 사	575-33	답	168	37		국 방 부
〃	-28	도	169	164		경 기 도
〃	548	전	608	10	원당읍주교리 81	장범식외 4
〃	575-29	도	13	13		동양척식(주)
〃	979	구	1,916	291		국
〃	995	도	1,012	1,012		국
〃	577-66	답	615	615		재 무 부
〃	-82	도	60	26		경 기 도
〃	-81	도	344	297		건 설 부
〃	566-1	도	109	75		동양척식(주)
〃	566-45	전	39	24	파주군금촌읍금촌리 80-23	농지개량조합
〃	959	전	62,512	427		국

고 시

고양군 고시 제 15 호

일산도시계획시설 (대로 3-1)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허가 하고 같은법 제 24 조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고양군청 및 일산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3. 23

고 양 군 수

1. 허가내용

등 급	류별	번 호	폭 (m)	연 장	면 적	사 업 시 행 전		비 고
						기 점	종 점	
대 로	3	1	17.5-35	440	12,014	일산리 1004	일산리 542-7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지내

나. 사업의 종류 명칭 : 일산도시계획도로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 가 산 1 번지 경기도지사

라.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1990.3 허가일 - 1991.12.31 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바. 토지 또는 건축물 및 지장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 성명 : 별항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일산	531-1	도	83	5		
〃	530	답	4,106	1,264	원당읍주교리 567	오송규
〃	532-5	〃	1,322	555	〃 〃 108	장무재
〃	532-3	〃	4,588	2,908	도봉구수유동 518-102	홍일식
〃	532-2	〃	4,413	1,011	마포구합정동359-27	우광덕
〃	537-1	〃	569	308	신도읍효자리169	나옥인
〃	1007	천	32,258	448		국
〃	538	답	1,101	315	원당읍주교리 518	안구영
〃	539-1	〃	405	180	〃 〃 540-4	민옥순
〃	539-2	〃	834	33	〃 〃 652	김경배
〃	539-3	구	253	108	〃 〃 571	장봉수
〃	539-4	〃	72	21	〃 〃 652	김정배
〃	540-2	전	1,627	697	〃 〃 540-7	민옥순
〃	558-2	〃	729	208	〃 〃 567	허병용
〃	558-1	〃	769	179	〃 〃 산 42	김귀숙외 2
〃	541-1	답	1,074	602	〃 〃 652	김정대

일 산	541-2	답	2,476	777	원당읍주교리 610	오 세 웅
〃	542-5	〃	4,083	1,227	〃 〃 571	장 봉 수
〃	542-6	〃	3,586	243	영등포구당산동4가 28	정 병 주
〃	542-4	〃	3,719	115	원당읍주교리 612	최 홍 재
〃	542-17	도	261.66		〃 〃 571	장 봉 수
〃	1018	〃	1,002	33		국
〃	1004	구	7,137	129		국
〃	531-2	답	952	582	원당읍주교리 108	장 무 재

고 시

구리시고시 제 9 호

경기도고시 제 214 호(88.8.19)로 실시계획이 인가된 구리도시계획 시설(한강)이 경기도고시 제 71 호(90.2.22)에 의하여 변경결정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도시과 및 구리시 수평동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

1990. 3. 21

구 리 시 장

1. 사업시행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다. 면적 또는 규모

당 초 : 3,547,300 ㎡

변 경 : 3,945,932 ㎡ (증 : 437,668 ㎡)

* 변경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및 토평동 일부지역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및 성명 : 바항과 동일함

2.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생략)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지적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1	구리토평	23-32	전	1,944	1,944	서울용산한남 60-4	우승환외 1
2	〃	23-8	제	163	163	구리토평 37	김 기 봉
3	〃	23-34	〃	148	148	〃	〃
4	〃	25-1	천	5,453	5,453	서울용산한남 1-168	김 재 순
5	〃	25-3	〃	154	154	〃	〃
6	〃	26-1	제	1,156	1,156	구리토평 34	이추월외 2
7	〃	26-4	〃	31	31	〃	〃
8	〃	26-2	〃	193	193	〃	이부일외 2
9	〃	26-5	〃	134	134	〃	〃
10	〃	26-3	전	72	72	〃	건 설 부
11	〃	26-6	〃	4	4	〃	〃
12	〃	27-1	제	565	565	서울동대문제기 5-3	김 헌 정
13	〃	28-3	〃	751	751	구리토평 37	서 정 구
14	〃	48-124	임	4,386	4,386	서울용산한남 1-168	김재순외 1
15	〃	48-98	제	117	117	〃	〃
16	〃	48-126	〃	253	253	〃	〃
17	〃	48-127	〃	6,097	6,097	구리토평 48-1	조 동 근
18	〃	48-128	임	2,508	2,508	〃	〃

19	구리토평	465-172	전	48	48	구리토평 34	안귀만
20	〃	-173	〃	1,086	1,086	〃	안귀동
21	〃	-72	〃	384	384		건설부
22	〃	-174	〃	740	740		〃
23	〃	-73	〃	330	330	서울성동성수장미(A)3-302	안동근외 1
24	〃	-175	〃	784	784	〃	〃
25	〃	- 74	〃	7	7		건설부
26	〃	-176	〃	476	476		〃
27	〃	-171	〃	41	41	구리수택 474	안의근
28	〃	-177	임	387	387	서울강남청담목련(A) 3-302	윤영수
29	〃	-178	전	159	159	구리토평 37	이문기
30	〃	-179	〃	308	308	서울강남대치초원연립 102	고병식
31	〃	-180	〃	385	385	구리수택 562	원철수
32	〃	-181	〃	1,877	1,877	구리토평 534-7	이성규
33	〃	-182	〃	36	36	〃	〃
34	〃	-183	〃	606	606	구리토평 555-1	문기열
35	〃	-184	〃	93	93	〃	〃
36	〃	-185	〃	1,061	1,061	구리토평 37	이문기
37	〃	-186	〃	279	279	〃	〃
38	〃	-187	〃	1,297	1,297	구리수택 474	안의근
39	〃	-188	〃	324	324	〃	〃
40	〃	-189	〃	1,210	1,210	구리토평 34	박학문
41	〃	-190	〃	120	120	〃	〃

42	구리토평	465-191	전	621	621	구리토평 34	안귀동
43	〃	-192	〃	551	551	〃	〃
44	〃	-193	〃	983	983	〃	안호경
45	〃	-194	〃	1,257	1,257	〃	〃
46	〃	-104	〃	681	681		건설부
47	〃	-195	〃	1,558	1,558		〃
48	〃	-106	〃	415	415		〃
49	〃	-196	〃	1,026	1,026		〃
50	〃	-107	〃	160	160		〃
51	〃	-197	〃	1,900	1,900		〃
52	〃	-111	〃	302	302		〃
53	〃	-198	〃	3,169	3,169		〃
54	〃	-199	〃	103	103		〃
55	〃	-200	〃	524	524	구리토평 34	이천성
56	〃	-201	〃	55	55	〃	〃
57	〃	-120	〃	175	175		건설부
58	〃	-202	〃	66	66		〃
59	〃	-121	〃	547	547	구리토평 379	김순용
60	〃	-203	〃	74	74	〃	〃
61	〃	-123	〃	430	430		건설부
62	〃	-204	〃	36	36		〃
63	〃	-205	〃	3,272	3,272		〃
64	〃	-206	〃	8	8		〃

65	구리토평	465-125	전	2,214	2,214	구리토평 34-3	안덕영
66	〃	-207	〃	761	761	〃	〃
67	〃	-127	〃	2,074	2,074		건설부
68	〃	-208	〃	91	91		〃
69	〃	-146	〃	225	225	서울종로명륜 1가 36-13	강해영
70	〃	-209	〃	480	480	〃	〃
71	〃	-210	〃	394	394	〃	〃
72	〃	-212	〃	1,286	1,286	구리토평 34	박학문
73	〃	-213	〃	112	112	〃	〃
74	〃	-168	〃	365	365		건설부
75	〃	-214	〃	250	250		〃
76	〃	471-9	제	24	24	구리토평 34	서기선
77	〃	473-1	전	1,369	1,369	구리토평 303	이익수
78	〃	-49	〃	416	416	〃	〃
79	〃	-3	〃	902	902	구리교문 270	노연성
80	〃	-5	제	66	66	서울종로누장 166-50	오충선
81	〃	-6	전	312	312	미금도농 1	원진레이온
82	〃	-51	〃	164	164	〃	〃
83	〃	-8	〃	247	247	〃	〃
84	〃	-52	〃	27	27	〃	〃
85	〃	-53	〃	864	864	구리토평 34	안귀만
86	〃	-65	〃	3	3	〃	〃
87	〃	-54	〃	636	636	구리토평 37	이성동

88	구리토평	473- 16	전	386	386	구리토평 379	김 영 기
89	〃	- 55	〃	242	242	〃	〃
90	〃	- 17	〃	439	439	미금도농 1	원진레이온
91	〃	- 56	〃	103	103	〃	〃
92	〃	- 52	〃	604	604	〃	〃
93	〃	- 58	〃	1,756	1,756	〃	〃
94	〃	- 31	〃	188	188	구리토평 34	안 귀 만
95	〃	- 59	〃	53	53	〃	〃
96	〃	- 36	잡	498	498	미금도농 1	원진레이온
97	〃	- 64	〃	5	5	〃	〃
98	〃	- 37	전	178	178	〃	〃
99	〃	- 60	〃	130	130	〃	〃
100	〃	- 61	〃	12	12	〃	〃
101	〃	- 41	잡	2,172	2,172	구리토평 379	김 순 용
102	〃	- 63	〃	175	175	〃	〃
103	〃	- 47	전	2,175	2,175	미금도농 1	원진레이온
104	〃	474- 6	〃	1,398	1,398	구리토평 379	김 순 용
105	〃	475-3	〃	1,727	1,727	구리토평 35-6	이 금 체
106	〃	477	천	1,392	1,392		건 설 부
107	〃	477-1	〃	33	33		〃
108	〃	480-8	임	1,704	1,704	서울종로가희 27	박윤식외 2
109	〃	-9	〃	2,252	2,252	〃	〃
110	〃	-10	〃	5,552	5,552	〃	〃

111	구리토평	480- 2	전	187	187		건 설 부
112	〃	-11	〃	200	200		〃
113	〃	-12	천	1,263	1,263		〃
114	〃	-13	〃	5,304	5,304		〃
115	〃	-14	〃	949	949		〃
116	〃	-15	〃	655	655		〃
117	〃	-17	〃	2	2		〃
118	〃	-21	전	4	4		〃
119	〃	-18	천	3,176	3,176		〃
120	〃	-19	〃	12,695	12,695		〃
121	〃	- 6	〃	235	235		〃
122	〃	-20	〃	690	690		〃
123	〃	490-	전	1,761	1,761		〃
124	〃	- 6	〃	1,370	1,370		〃
125	〃	- 7	잡	597	597	서울강남압구정현대(A)25-501	김 준 용
126	〃	- 8	〃	287	287	〃	〃
127	〃	492- 1	전	624	624	서울성동광장 120	노 경 환
128	〃	- 2	〃	2,104	2,104	〃	〃
129	〃	494- 1	잡	1,074	1,074	구리토평 823	배 학 기
130	〃	-5	〃	1,319	1,319	〃	〃
131	〃	494- 2	전	1,460	1,460		건 설 부
132	〃	- 6	〃	1,019	1,019		〃
133	〃	- 3	〃	2,251	2,251		〃

134	구리토평	494-7	전	427	427		건설부
135	〃	495-1	잡	2,118	2,118	구리토평 823	배학기
136	〃	-2	〃	769	769	〃	〃
137	〃	490-9	〃	1	1	서울강남압구정현대A 25-501	김준용
138	〃	497-4	〃	497	497	서울서대문갈현 123-2	이순용
139	〃	-5	전	46	46	구리토평 823	배학기
140	〃	504-14	잡	74	74	서울강남압구정현대A 25-501	김준용
141	〃	-15	전	2	2		건설부
142	〃	800-4	〃	224	224	구리교문 712	송옥화외1
143	〃	801-1	〃	3,402	3,402	〃 652	김광수
144	〃	802-1	묘	357	357		미복구
145	〃	807-3	전	1,052	1,052	미국거주	안중보
146	〃	808-1	묘	108	108		미복구
147	〃	809-3	전	2,025	2,025	구리인창동 555	배순자
148	〃	-4	〃	3,013	3,013	서울성동중곡 150-60	최영훈외1
149	〃	810	〃	1,226	1,226	구리교문 642	안준식
150	〃	810-2	〃	9,224	9,224	〃	〃
151	〃	811	〃	777	777		건설부
152	〃	811-1	〃	2,562	2,562		〃
153	〃	812-1	〃	260	260		〃
154	〃	-4	〃	5,697	5,697		〃
155	〃	-5	임	8,237	8,237	서울성동행당 192	임재희
156	〃	-6	〃	768	768	〃	〃

157	구리토평	812-7	도	120	120		건설부
158	〃	-8	〃	267	267		〃
159	〃	813-1	잡	2,577	2,577		〃
160	〃	-4	〃	388	388		〃
161	〃	-2	〃	1,372	1,372		〃
162	〃	-5	〃	3	3		〃
163	〃	826-2	도	147	147		〃
164	〃	-3	〃	1,152	1,152		〃
165	〃	827-2	전	4,097	4,097	구리토평 823	배학기
166	〃	-6	〃	214	214	〃	〃
167	〃	-1	〃	10	10		미복구
168	〃	-7	〃	119	119		〃
169	〃	829	〃	7,276	7,276	구리수택 604-6	이혜영
170	〃	829-1	〃	3,967	3,967	〃	〃
171	〃	832-1	〃	1,697	1,697	서울동대문제기 901	윤창노
172	〃	833-1	〃	2,703	2,703	서울성동지양 22-16	오윤성
173	〃	834	〃	1,495	1,495		건설부
174	〃	834-1	〃	4,842	4,842		〃
175	〃	835-1	〃	1,686	1,686	서울동대문장안 339-4	김재하
176	〃	836-1	〃	4,665	4,665	구리토평 823	배학기
177	〃	-2	〃	1,213	1,213	〃	〃
178	〃	837-1	〃	3,736	3,736	구리토평 849	이연상
179	〃	838-3	〃	487	487		건설부

180	구리토평	838-2	전	1,728	1,728	구리토평 823	배 학 기
181	〃	838-4	〃	1, 988	1,988	〃	〃
182	〃	883-3	잡	2,749	2,749		건 설 부
183	〃	-7	〃	183	183		〃
184	구리아천	16-1	전	766	766		〃
185	〃	-13	〃	183	183		〃
186	〃	20-1	〃	1,233	1,233	서울중예장 6-5	배 학 기
187	〃	-3	〃	622	622	〃	〃
188	〃	20-2	〃	48	48	〃	〃
189	〃	-4	〃	1,932	1,932	〃	〃
190	〃	-5	〃	50	50	〃	〃
191	〃	21	잡	3,784	3,784	서울강남학동시영A 4단지 22	이 태 무
192	〃	21-1	〃	920	920	〃	〃
193	〃	28-4	전	1,849	1,849	서울서초반포우정 A 102-709	장 숙 자
194	〃	-5	〃	970	970	〃	〃
195	〃	-6	잡	275	275	서울강남학동시영 A 4단지 22	이 태 무
196	〃	30-1	전	2,485	2,485	구리아천 86	방 정 태
197	〃	32	〃	200	200	〃 346	이기순외 6
198	〃	32-1	〃	1,532	1,532	〃	〃
199	〃	34-1	임	986	986	서울 중 예장 6-5	배 학 기
200	〃	-7	〃	164	164	〃	〃
201	〃	-4	잡	1,848	1,848	〃	〃
202	〃	-8	〃	463	463	〃	〃

203	구리아천	35-2	구	337	337		건설부
204	〃	-3	〃	851	851		〃
205	〃	36-2	전	3,021	3,021	광주삼리 155	정인억
206	〃	-3	〃	1,261	1,261	〃	〃
207	〃	38-1	〃	1,179	1,179	구리아천 300	신영철
208	〃	-2	〃	2,656	2,656	〃	〃
209	〃	39-1	〃	475	475	〃	〃
210	〃	-2	〃	2,013	2,013	〃	〃
211	〃	51-4	〃	584	584	서울 중 예장 6-5	배학기
212	〃	-5	〃	1,068	1,068	〃	〃
213	〃	52-1	〃	2,333	2,333	〃	〃
214	〃	-2	〃	1,755	1,755	〃	〃
215	〃	65-24	잡	530	530	구리아천 300	신영철
216	〃	-25	〃	1,953	1,953	〃	〃
217	〃	120-1	전	463	463	구리아천 830-12	한지성외1
218	〃	121-11	잡	2,315	2,315	서울영등포상도 120	김기봉
219	〃	-12	〃	24	24	〃	〃
220	〃	-2	전	994	994		건설부
221	〃	-13	〃	1,244	1,244		〃
222	〃	-14	잡	1,869	1,869	서울강남정담 58브럭 2롯트	장영자
223	〃	- 4	〃	2,151	2,151		건설부
224	〃	-17	〃	8	8		〃
225	〃	-15	〃	278	278	서울성동광장 120	노경환
226	〃	- 16	〃	53	53	〃	〃
227	〃	185-1	〃	14	14	〃	〃

228	구리아천	186-1	임	632	632	서울성동광장 120	노 경 환
229	〃	193-1	잡	3	3	〃	〃
230	〃	194-1	〃	3	3	서울관악봉천 산 102-3	홍 만 순
231	〃	195-1	〃	2,825	2,825	서울성동광장 120	노 경 환
232	〃	-4	〃	458	458	〃	〃
233	〃	196-2	〃	1,948	1,948	서울강남청담 58브럭 2롯트	장 영 자
234	〃	-4	구	54	54		건 설 부
235	〃	-5	〃	1,456	1,456		〃
236	〃	-7	〃	27	27		〃
237	〃	-8	〃	115	115		〃
238	〃	-9	〃	114	114		〃
239	〃	197-1	잡	1,457	1,457	서울강남청담 58 브럭 2 롯트	장 영 자
240	〃	198-1	〃	2,939	2,939		건 설 부
241	〃	-3	〃	79	79		〃
242	〃	-2	〃	1,995	1,995		〃
243	〃	-4	〃	1,701	1,701		〃
244	〃	199	〃	3,121	3, 121		〃
245	〃	199-3	〃	316	316		〃
246	〃	200-1	임	2,499	2,499	서울 중 남대문 5 가 120	(주) 럭키금성
247	〃	-2	〃	94	94	〃	〃
248	〃	-3	〃	15,117	15,117	〃	〃
249	〃	202	잡	1,537	1,537	서울강남청담 58 브럭 2 롯트	장 영 자
250	〃	202-1	〃	152	152	〃	〃
251	〃	209	〃	5,994	5,994		건 설 부
252	〃	209-1	〃	241	241		〃

253	구리아천	211-1	전	2,852	2,852	서울동대문청량리마주A 4-106	강금액외1
254	〃	-3	〃	193	193	〃	〃
255	〃	-2	〃	1,606	1,606	구리 아천 316-7	유 엽 자
256	〃	-4	〃	1,538	1,538	〃	〃
257	〃	223-3	임	2,115	2,115		건 설 부
258	〃	-4	〃	78	78		〃
259	〃	224-6	잡	1,100	1,100	서울종로평창 534-7	문 박
260	〃	-7	〃	315	315	〃	〃
261	〃	271-1	〃	1,589	1,589	서울 중 남대문 5 가 120	(주)럭키금성
262	〃	-2	〃	26	26	〃	〃
263	〃	273-39	구	372	372		건 설 부
264	〃	-40	〃	491	491		〃
265	〃	274-11	〃	266	266		〃
266	〃	-12	〃	32	32		〃
267	〃	281-6	임	2,539	2,539	서울종로평창 534-17	문 박
268	〃	-7	〃	1,477	1,477	〃	〃
269	〃	282-6	잡	544	544	〃	〃
270	〃	-7	〃	764	764	〃	〃
271	〃	-8	도	153	153		건 설 부
272	〃	-9	〃	246	246		〃
273	〃	283-1	전	21	21		〃
274	〃	390	천	596,308	596,308		〃
275	〃	390-4	〃	22,569	22,569		〃
276	〃	51-6	전	760	760	서울 중 예장 6-5	배 학 기
277	〃	-7	〃	973	973	〃	〃

광주군 고시 제 11 호

고 시

경안도시계획시설(학교 : 광명학원)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 같은법 시행령 제 2 조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시행허가 하고 같은법 제 2 조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군청 도시과 및 광주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2. 27

광 주 군 수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위치

당초 :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산 20-5 번지외 2 필지

변경 : 〃 6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학 교 : 서울장로회 신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370 번지

성명 : 학교법인 광명학원 이사장 김 종 대

라. 면 적

결정면적 ┌ 당초 : 46,997 ㎡
└ 변경 : 62,930 ㎡

시행승인 허가면적 ┌ 당초 : 46,997 ㎡
└ 변경 : 59,297 ㎡ (증 12,300 ㎡)

마.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토지조서 참조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연인원 : 1990. 2. 27 ~ 91. 6. 30

분묘 이(개)장 공고

경기도 공고 제22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이(개)장을 공고합니다.

만약 아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분묘 소재지의 관할시장의 임의 이(개)장 합니다.

다 음

1. 이(개)장의 사유 :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 강북도로건설공사
2.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3. 신 고 처 : 미금시 건설과(전화 0345-68-0071 교환 352)
4. 참 고 사 항 : 연고자 및 관리인은 미금시 건설과에서 보상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분묘 위치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분묘기수
계			203
미금시 수석동	산 2-3	임 야	131
〃	356	전	1
미금시 가운동	산 19	임 야	68
〃 삼패동	328-3	〃	3

1990. 3. 26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84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등록업자의등록말소의공고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건설촉진법 제 10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 규정에 의거 사업실적 미달 및 사업실적 미제출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 7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3. 15

경 기 도 지 사

아 래

1. 등록업체명 : 별지와 같음
2.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사유 : 별지와 같음
3. 영업정지기간 : 별지와 같음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말소및영업정지현황

순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일	처분분야	사 유	근 거	처분내용
1	78-62	78. 12.29	(주) 복원주택	연규옥	성남시 태평동 3309-475	90. 3.15	주택건설	• 실적 및 계획서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등록말소
2	81-47	81. 11.5	(주) 금강건설	이규현	부천시역곡동 28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3	82-16	82. 5.24	기오개발 (주)	김정규	안양시안양동 627-20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4	83-17	83. 3.17	(주) 대진건설	한성섭	부천시역곡동 342-4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5	83-52	83。3.31	(주)삼남주택	박혜선	성남시신흥동 5394	90。3.15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등록말소
6	84-12	84。3.15	칠성건설(주)	정일효	광명시철산동 467-407	〃	〃	〃	〃	〃
7	84-15	〃	평화주택	김영국	부천시심곡동 125-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	〃
8	84-32	84。3.15	(주)복지건설	김성수	부천시심곡동 177-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9	84-46	〃	경일건설(주)	이학래	수원시화서동 208호 경일(A)상가 20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10	84-49	〃	대연주택(주)	김성태	오산시원동 238-3	〃	〃	〃	〃	〃

11	84-66	84. 3.30	한보건설 (주)	홍기유	수원시고등동 74-5	90. 3.15	주 택 건 설	• 실적없음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등 록 말 소
12	84-112	84. 12.14	(주) 부일 주택건설	김부겸	고양군원당읍 주교리 127-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13	85-10	85. 4.2	평화버스 (주)	권영수	안성군대덕면 건지리 55-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14	85-38	85. 4.2	상아주택 건설	전영철 외 1 인	구리시수택동 258-1,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15	85-67	〃	현진건설 (주)	장동갑	부천시원미동 110-1	〃	〃	〃	〃	〃
16	85-68	〃	방산건설 (주)	이천성	시흥시대야동 378-2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공문반송)	〃	〃

17	86-21	86. 3.18	(주) 안국건설	이창걸	부천시괴안동 3	90. 3.15	주 택 건 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 진법제 7 조	등 록 말 소
18	86-25	〃	(주) 동호건설	노흥렬	시흥시신천동 387-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미달 • 청문불응	〃	〃
19	86-26	〃	(주) 청송주택	양승조	부천시송내동 557-5	〃	〃	〃	〃	〃
20	86-73	〃	세원건설 (주)	강중순	광명시광명동 158-795	〃	〃	〃	〃	〃
21	86-89	86. 3.8	(주) 좌방산업	방정식	송탄시이충동 463-1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22	87-6	87. 3.28	서흥건설 (주)	곽명식	수원시화서동 404-18	〃	〃	〃	〃	〃

23	87-8	87. 3.28	(주) 일신건설	윤형기	부천시심곡동 590-4	90. 3.15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등록말소
24	87-15	〃	(주) 동진	박용래	수원시교동 134-3	〃	〃	〃	〃	〃
25	87-16	〃	(주) 우일건설	김상수	부천시송내동 380	〃	〃	〃	〃	〃
26	87-17	〃	삼우건설 (주)	조해영	수원시세류동 148-1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27	87-29	〃	형제주택 건설	서재만	광명시광명동 139-7	〃	〃	〃	〃	〃
28	87-36	〃	(주) 정보	우정광	성남시수진동 591-1	〃	〃	〃	〃	〃
29	87-40	87. 4.13	정아산업 (주)	김용건	의정부시의정부동 176-6	〃	〃	〃	〃	〃

30	87-41	87. 4.13	삼덕건설	이한성	하남시덕풍동 418-1	90. 3.15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등록말소
31	87-45	87. 4.24	(주) 아남건설	민병학	광명시광명동 93-6	〃	〃	〃	〃	〃
32	87-46	〃	상경주택개발 (주)	오성환	하남시덕풍동 372-8	〃	〃	〃	〃	〃
33	87-47	〃	(주) 진성레미콘	박수득 외 1 인	구리시교문동 511-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34	87-49	〃	동일주택건설	윤태혁	가평군외서면 청평리 619-10	〃	〃	〃	〃	〃
35	87-52	87. 4.16	(주) 풍원건설	황상연	안양시관양동 361-13	〃	〃	〃	〃	〃
36	87-54	87. 4.14	(주) 진선건설	민남옥	성남시태평동 3311	〃	〃	〃	〃	〃

37	85-57	87. 4. 8	(주) 동 산	심 재 동	가평군가평읍 대곡리 230-11	90. 3.15	대 지 조 성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 7 조	등 록 말 소
38	87-33	87. 3.28	덕계임대 주택	이 광 연	양주군회천읍 덕계리 669	〃	임 대 주 택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	〃
39	87-34	〃	한진임대 주택	최 광 미	연천군전곡읍 전곡리 318-2	〃	〃	〃	〃	〃
40	87-35	〃	(주) 현대주택	권 창 범	구리시수택동 594-4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실적없음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41	87-18	〃	(주) 진흥주택	박 상 욱	부천시중구 심곡동 89-16	〃	주 택 건 설	• 실적미달	〃	영업정지 6 월(90. 3.15-90. 9.14)
42	87-44	87. 4.24	(주) 혜인주택	이 희 용	부천시중구 심곡동 561-1	〃	〃	〃	〃	〃

43	86-79	86. 3.	천보건설(주)	홍천유	수원시매산로3가 31-4	90. 3.15	주택건설	• 실적미달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 7 조	영업정지 4월(90. 3.15-90 7.14)
44	87-24	87. 3.28	유림건설(주)	유동웅	광명시광명동 150-11	〃	〃	• 실적미달	〃	〃
45	87-50	87. 4. 9	바우건설(주)	김인수	평택시비전 1 동 633-5	〃	〃	• 실적미달	〃	〃
46	84-33	84. 3.15	(주) 진흥건설	이동호	안성군안성읍 낙원리 80-6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영업정지 3월(90. 3.15- 90.6.14)
47	84-62	84. 3.30	명성주택건설(주)	고전일	의정부시의정부동 198-1	〃	〃	〃	〃	〃
48	84-102	84. 12.22	두승주택	최승수 외 4 인	미금시금곡동 404-74	〃	〃	〃	〃	〃
49	85-19	85. 4.2	신한건설(주)	김죽남	수원시중동 41	〃	〃	〃	〃	〃
50	85-28	〃	범양주택건설(주)	김종익	부천시송내동 393	〃	〃	〃	〃	〃

51	85-85	85. 10.7	(주) 국경주택	이계진	부천시중구심곡동 378-1	90. 3.15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영업정지 3월(90. 3.15 - 6.14)
52	86-4	86. 3.18	(주) 동우주택건설	한진호 외 1 인	화성군향남면평리 76-13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53	86-35	〃	(주) 원촌주택	이덕형	안양시안양동 293-19	〃	〃	〃	〃	〃
54	86-59	〃	동오건설 (주)	한문교	수원시지동 354-22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55	86-91	〃	동진건설 (주)	김순희 외 1 인	부천시원미동 105-3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56	86-111	86. 3.28	신성토건	신수용	수원시영화동 334-5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57	86-113	〃	해원건설 (주)	김우상	이천군이천읍 창전리 77-3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공문반송)	〃	〃
58	86-146	86. 4.15	(주) 중평	김용찬	동두천시생연동 445-2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59	87-4	87. 3.28	성우건설(주)	곽선권	구리시수택동 460-1	90. 3.15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영업정지 3월(90. 3.15 - 6.14)
60	87-23	〃	대도건설(주)	김찬호	부천시중구원미동 92-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61	87-27	〃	덕흥주택	김현수	수원시신풍동 109-2	〃	〃	〃	〃	
62	87-30	〃	보우건설	오구해	부천시중동 765-7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63	88-42	87. 4.13	금영건설	김평현	안산시원곡동 779-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64	88-5	87. 4.4	한일공영건설(주)	백훈기	안양시호계동 915-24	〃	〃	〃	〃	영업정지 2월(90. 3.15 - 5.14)
65	88-12	88. 4.15	광원주택	천영일	고양군원당읍 성사리 676-3	〃	〃	〃	〃	〃

66	89-2	89. 4.26	대신주택(주)	한규남	의정부시가능동 603-28	90. 3.15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 7 조	영업정지 2월(90. 3.15 - 5.14)
67	89-17	〃	(주)미려	김용	용인군남사면 북리 557-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68	89-20	〃	보명건설 산업(주)	남궁창호	의정부시의정부동 185-1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69	89-34	〃	대성주택 건설	박승현	부천시중구내동 222-68	〃	주택건설 대지조성	〃	〃	〃
70	89-38	〃	뉴한신 주택	노해용	안양시비산동 218브럭 6-1 롯트	〃	주택건설	〃	〃	〃
71	89-39	〃	동양섬유 산업(주)	박광진	고양군원당읍 성사리 519-11	〃	〃	〃	〃	〃
72	89-47	〃	남향건설 (주)	엄정일	안양시안양동 202-7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73	89-74	89. 4.26	영진기업(주)	유경선	부천시중구 삼정동 34-8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74	89-75	〃	남경건설(주)	김창택	안산시고잔동 542-3	〃	〃	〃	〃	〃
75	89-77	〃	(주)성남건설	정규인 외 1 인	고양군원당읍 주교리 602-9	〃	〃	〃	〃	〃
76	89-85	〃	삼호주택	박판용	안양시관양동 289-1	〃	〃	〃	〃	〃
77	89-106	89. 5.17	태원건설(주)	김중태	구리시수택동 542-5	〃	〃	〃	〃	〃
78	89-112	〃	(주)삼원	이결휘	포천군포천읍 신읍리 35-6	〃	〃	〃	〃	〃
79	89-116	〃	우신토건(주)	김성완	부천시중구내동 128	〃	〃	〃	〃	〃
80	89-121	〃	금강주택건설(주)	강중순	광명시광명동 102-13	〃	〃	• 실적및계획서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	〃

81	89-126	89. 5.17	원진건설(주)	박은규	부천시중구 심곡동 476-9	90. 3.15	주택건설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공문반송)	주택건설촉진법제7조	영업정지 2월(90. 3.15 - 5.14)
82	89-130	〃	대지건설 산업공사	정팔수	부천시중구 심곡동 87-3	〃	대지조성	〃	〃	〃
83	89-135	〃	(합) 이화건설	김수영	이천군이천읍 중리 119-4	〃	주택건설	〃	〃	〃
84	89-136	〃	대원건설(주)	이종복	안산시고잔동 542-2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	〃	〃
85	89-137	〃	신창건설(주)	육창수	수원시장안구 정자동 48-8	〃	〃	〃	〃	〃
86	89-139	〃	미성건설	신현제	가평군가평읍 읍내리 496-1	〃	〃	〃	〃	〃
87	89-146	〃	대지조성 산업공사	정팔수	부천시중구 심곡동 171-16	〃	〃	• 실적및계획서미제출 • 청문불응(공문반송)	〃	〃
88	89-149	89. 4.18	서흥건설	조남원	부천시중구 여월동 48-7	〃	〃	〃	〃	〃

경기도공고 제 91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

주택건설사업자등 아래 업체에 대하여 원에 의거 등록말소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 20

경 기 도 지 사

아 래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구분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 록 말소일	사 유
서울 89-219	'89. 4.11	주택건설	오림개발(주)	오승일	과천시중앙동 40-10	'90. 3.20	◦ 원에 의함

공 고

경기도공고 제 92 호

'90 년도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공고

전기공사업법 제 2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90 년도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그 순위를 공고합니다.

1990. 3. 20

경 기 도 지 사

첨부: '90 년도 제 2 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표

'90 년도 제2종 전기공사업체 수급한도액 및 순위표

순 위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수급한도액
1	2 - 0105	한국진흥공업(주)	한 용 남	수원시매탄동 524-1	1,543,133,210
2	2 - 0363	금아전기(주)	김 재 천	부천시심곡2동 155-17	1,283,364,740
3	2 - 0583	경기전업사	이 택 선	오산시원동 750-2	1,132,201,451
4	2 - 0719	(주)부천종합전기건설	김 두 일	부천시중구원미동 66-5	1,085,452,463
5	2 - 0070	국제전기	박 광 국	수원시교동 2-35	1,000,517,580
6	2 - 0087	(주)대 풍	박 정 권	〃 매교동 173-6	948,804,340
7	2 - 0637	삼성전기	송 주 봉	성남시수진2동 2932	945,247,800
8	2 - 0315	성화전기(주)	성 치 민	고양군원당읍성사리 420-1	717,440,155
9	2 - 0390	두성전기시스템	이 의 용	수원시북수동 141	648,400,465
10	2 - 0553	성일전기	김 광 원	안양시비산1동 547-25	627,523,264
11	2 - 0275	형제전기	이 언 교	오산시오산동 843-12	612,426,851
12	2 - 0099	경기전업사	윤 인 섭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338-4	590,434,316
13	2 - 0635	삼원전기공사	허 진 행	〃 〃 161-13	579,851,301

14	2 - 0131	대하전설	이 은 호	안양시 안양8동 350-14	579,387,067
15	2 - 0493	우진전설	신 달 범	〃 〃 6동 492-1	573,100,203
16	2 - 0092	금광전업사	양 광 섭	수원시영화동 148-7	562,347,779
17	2 - 0377	단성전력(주)	김 천 호	〃 장안구연무동 104 브럭 3 롯트	545,309,710
18	2 - 0448	동양전기공사	이 구 락	성남시신흥1동 5493 의 6	541,325,469
19	2 - 0532	상명전기공사	강 연 숙	안산시원곡동 994 (유통상가 4동 225호)	537,007,647
20	2 - 0586	우신전기공사	임 인 숙	〃 〃 779-17	521,538,752
21	2 - 0357	유천전기	김 영 순	〃 고잔동 520-3	517,156,359
22	2 - 0081	남전사	박 남 철	수원시교동 122-9	515,592,480
23	2 - 0318	화성전업사	염 기 열	안산시고잔동 541 (종합상가 3동 203호)	513,920,141
24	2 - 0144	유창전기	유 만 진	수원시인계동 754-10	502,443,344
25	2 - 0246	삼성전설(주)	주 한 복	성남시신흥동 5493 의 5	472,861,783
26	2 - 0577	유성전척	유 석 환	광명시광명동 158-75	471,024,092
27	2 - 0548	광명전력공사	장 성 섭	구리시수택동 90 B L 5-1 L T	457,961,996
28	2 - 0494	광운전기공사	조 규 응	안양시안양동산 155-2	454,894,582
29	2 - 0026	화성전설(주)	최 인 영	수원시교동 81-1	438,530,920

30	2 - 0700	삼우전기(주)	정 영 화	수원시권선구매탄동 153-3	432,168,291
31	2 - 0292	경원전설(주)	김 진 곤	안산시원시동 777	423,214,000
32	2 - 0485	세원전기	조 명 석	안양시안양 4 동 782-1	412,990,379
33	2 - 0139	주립건설(주)	오 영 철	부천시중구심곡 3 동 87-11	410,194,925
34	2 - 0123	(주)경기엔지니어링	송 승 만	평택시평택동 67-18	403,801,690
35	2 - 0327	(주)호 성	이 성 규	안양시안양 6 동 473-4	402,680,548
36	2 - 0089	중앙전기쇼방(주)	이 원 채	성남시수진 2 동 4612 중앙빌딩 2 층	402,129,458
37	2 - 0068	봉신전기	봉 종 필	고양군벽제읍고양리 48	399,024,651
38	2 - 0519	경신전기공사	김 영 섭	광명시광명 6 동산 87-5 (만선빌딩 10)	392,948,978
39	2 - 0146	(합)한일전기	김 종 호	수원시영화동 411-4	391,801,743
40	2 - 0034	한진전기건설사	전 정 진	동두천시생연 1 동 480-17	380,195,319
41	2 - 0434	강남전기	백 승 오	성남시중동 2471	376,183,672
42	2 - 0675	(주)영 일	김 근 희	광명시광명동 374-137	366,828,000
43	2 - 0231	삼원전기	정 기 운	수원시교동 132-3	361,809,151
44	2 - 0331	서오전기	서 연 권	안양시안양 2 동 859-8	358,447,274
45	2 - 0003	(유)태화전기	김 태 걸	성남시신흥 1 동 5493-6	343,125,433

46	2 - 0414	한진건설	백 창 현	의정부시의정부3동 128-4	339,346,205
47	2 - 0401	동연전업사	정 종 선	수원시권선지구 74 브럭 13 롯트	331,822,338
48	2 - 0267	대천전기공사	김 지 환	고양군일산읍일산리 960-15	322,145,774
49	2 - 0298	영화전기공사	홍 성 억	부천시남구소사3동 225-2	313,917,535
50	2 - 0500	삼일전기	송 덕 영	수원시화서동 71-22	308,391,510
51	2 - 0112	보성전기공사	강 진 구	연천군전곡읍전곡리 468	306,323,448
52	2 - 0537	안전전업공사	손 도 영	안산시원곡동 994-5 (유통상가 2동 31)	305,315,013
53	2 - 0037	㈜신영전기	김 갑 태	수원시교동 135-24	304,451,046
54	2 - 0351	금강전설공사	강 성 복	〃 영화동 124-76	300,852,171
55	2 - 0054	서하전기공사	김 영 호	의정부시의정부4동 8-26	292,892,976
56	2 - 0116	세왕전설	황 종 완	안양시비산2동 566 (삼익상가 218)	292,350,295
57	2 - 0399	대광전기	이 석 환	수원시권선구권선동 616	290,954,349
58	2 - 0100	마을전업사	김 상 열	〃 장안동 322-18	288,059,090
59	2 - 0326	종합전기	김 인 현	동두천시생연1동 494-10	285,892,063
60	2 - 0216	인창전업사	김 대 희	구리시수택동 408-4	282,980,624
61	2 - 0398	동해전설공사	오 동 훈	수원시세류동 281-4	281,123,813

62	2 - 0042	경안전업사	전학천	광주군광주읍경안리 54-2	279,565,006
63	2 - 0507	백송전기	박경순	안양시안양6동 492-1	275,531,400
64	2 - 0047	금성전업사	이윤만	〃 〃 490-14	275,433,990
65	2 - 0484	내외전기건설공사	김학배	〃 〃 505-16	273,624,486
66	2 - 0124	극동전업사	이도진	오산시오산동 876-6	269,395,694
67	2 - 0291	대원전기공사	고선훈	부천시남구상동 247-18	266,569,896
68	2 - 0562	태평양전업사	김완재	평택시비전동 561-2	266,083,242
69	2 - 0230	대창전업사	유득열	안양시안양4동 714-53	258,773,970
70	2 - 0293	진흥전기	백귀현	수원시지동 360-19	257,250,180
71	2 - 0053	안산건설	오세원	안양시석수동 168-13	256,814,800
72	2 - 0241	동진전업사	김진현	수원시장안구남수동 16-17	253,192,560
73	2 - 0269	명일전기상사	유제현	〃 지만인계지구 99 브럭 8 롯트	252,250,967
74	2 - 0501	㈜형진건설	강판호	성남시태평2동 3429-4	250,468,518
75	2 - 0685	인제전기	김종석	부천시남구심곡2동 188-5	244,772,411
76	2 - 0664	김포전력공사	여운환	김포군고촌읍신곡리 532-66	243,767,944
77	2 - 0011	㈜부천전기공사	정수길	부천시남구송내동 425-2	239,785,855

78	2 - 0631	명성전기	김 명 호	이천읍창전리 168-10	239,310,918
79	2 - 0702	부여전기공사	엄 성 순	안산시원곡동 782-8	238,208,597
80	2 - 0260	한진전업사	이 한 교	안양시안양5동 710-101	237,714,692
81	2 - 0306	광명전기	김 택 수	광명시광명7동 290-19	236,779,698
82	2 - 0382	태흥전력건설공사	김 완 기	안양시안양8동 552-10	231,187,440
83	2 - 0451	풍성전기건설공사	임 명 수	부천시중구 고강동 404-5	230,790,848
84	2 - 0468	동서전설㈜	이 무 형	송탄시지산동 864-3	221,170,250
85	2 - 0591	광성전기공사	김 충 실	안양시안양동 428-2	218,334,500
86	2 - 0698	범신전기건설공사	조 병 윤	광명시광명동 94-3	217,567,463
87	2 - 0629	설봉전기	임 광 수	이천군이천읍창전리 142-1	215,351,445
88	2 - 0012	동성전업사	김 근 석	안양시안양6동 491-5	211,440,990
89	2 - 0328	삼창종합건설㈜	서 상 기	안양시안양동 510-2	207,006,000
90	2 - 0427	서원건설㈜	이 원 민	성남시신흥1동 5513	206,167,956
91	2 - 0043	경기전업사	유 범 상	안양시안양4동 676-33	201,399,054
92	2 - 0251	대성전기	한 문 섭	수원시매교동 111-41	200,646,206
93	2 - 0096	발안전업사	한 정 택	화성군향남면장짐리 282-31	195,866,807

94	2 - 0129	㈜일창건설	김 명 렬	안양시안양6동 505-2	190,035,643
95	2 - 0090	성경전업사	김 종 일	안산시고잔동 520-3	190,000,594
96	2 - 0036	우성전기㈜	홍 계 찬	파주군문산읍문산리 17-345	188,841,404
97	2 - 0058	대우전기	최 진 수	의정부시의정부1동 147	183,720,292
98	2 - 0210	영흥전업사	한 영 규	안양시안양4동 711-182	182,196,074
99	2 - 0420	한일계전	이 선 영	오산시원동 786-20	179,227,848
100	2 - 0299	인천전업사	유 충 렬	안양시안양2동 833-13	178,849,869
101	2 - 0148	승일전기건설공사	홍 택 선	부천시중구내동 232-33	178,807,648
102	2 - 0302	삼우전력공사	장 길 성	성남시태평동 3309-475	178,567,597
103	2 - 0551	극동전기공사	김 영 길	여주군여주읍홍문리 103 번지	177,849,797
104	2 - 0261	광덕전기	장 순 주	광명시철산동 464-7 월산빌딩 402 호	175,971,000
105	2 - 0513	영흥전기	조 영 제	안양시호계2동 925-24	175,242,100
106	2 - 0689	경인전기공사	김 만 중	부천시중구춘의동 173-1	173,417,200
107	2 - 0082	새한전기공사	김 용 배	평택시비전동 585-1	171,109,203
108	2 - 0362	유신전기	권 영 익	수원시중동 14	170,757,656
109	2 - 0312	제일전기공사	이 영 기	김포군검단면마전리 691-8	170,031,277

110	2 - 0561	광양전공사	오 문 효	광명시철산 2동 463-17	169,458,028
111	2 - 0104	문화전기공사	이 재 정	여주군가남면태평리 141-39	165,729,353
112	2 - 0141	삼원전기	이 삼 택	의정부의정부 1동 185-1	164,549,050
113	2 - 0127	㈜대 영	오 영 택	광주군실촌면열미리 502-2	163,707,180
114	2 - 0594	범일전기공업	이 계 성	안양시호계동 926	163,140,280
115	2 - 0254	태양전기공사	한 철 호	부천시중구심곡 2동 136-6	161,594,059
116	2 - 0149	신덕종합건설㈜	양 정 주	안양시석수동 320-5	159,748,038
117	2 - 0479	대영건업㈜	정 영 창	〃 비산동 570-11	159,210,000
118	2 - 0581	유진전기	김 명 호	부천시중구원종동 391-1	155,952,367
119	2 - 0285	명진전업사	서 청 순	파주군금촌읍이동 2리 12-1	155,769,849
120	2 - 0395	고려전기공사	주 정 애	용인군포곡면전대리 361	155,387,870
121	2 - 0008	대영전업사	황 규 정	포천군포천읍신읍리 191-76	154,140,092
122	2 - 0142	삼대건설㈜	남 정 규	안양시안양 2동 688-17	154,008,000
123	2 - 0295	일신전기공사	김 성 환	광주군광주읍역리 39-11	153,221,006
124	2 - 0663	동일전업공사	오 세 명	부천시남구송내동 398	152,720,053
125	2 - 0376	선진전기	이 종 윤	수원시교동 163-8	152,664,757

126	2 - 0530	입석전공사	권 영 상	부천시도당동 253-8	152,212,606
127	2 - 0135	파주전기(주)	이 조 원	파주군파주읍파주 4 리 471-13	151,685,353
128	2 - 0676	정화전기기술공사	김 기 택	부천시중구심곡동 463-13	150,745,029
129	2 - 0482	아산전기	신 의 섭	안양시안양 1 동 622-189	149,820,239
130	2 - 0372	신일전기	조 금 묵	수원시매산로 3 가 53-9	148,549,184
131	2 - 0118	국토건설산업(주)	송 인 준	안양시안양 6 동 529-2	147,447,000
132	2 - 0031	대덕전력공사	이 건 우	부천시중구심곡 2 동 168-3	147,408,286
133	2 - 0400	수원종합전기공사	김 함 석	수원시고등동 144-1	145,562,776
134	2 - 0028	기우전기공사	이 명 수	가평군가평읍대곡리 177-3	142,824,508
135	2 - 0147	군자전업사	김 현 묵	안양시안양동 622-41	142,785,457
136	2 - 0051	한동건설(주)	신 항 철	수원시장안구파송지구 90 브럭 1 롯트	141,854,432
137	2 - 0624	광덕전기공사	김 용 배	이천군이천읍창전리 145-4	141,573,900
138	2 - 0013	대화전업사	정 윤 호	송탄시서정동 103-22	141,049,187
139	2 - 0526	대성전업사	최 광 용	〃 지산동 755-9	138,382,310
140	2 - 0384	정우전기	박 연 옥	수원시영화동 31-1	138,089,487
141	2 - 0478	성우전기	홍 성 우	안양시안양 4 동 676-159	137,719,836

142	2 - 0270	동서전기건설공사	박 후 용	광명시광명 4 동 158-785	136,328,493
143	2 - 0038	대성전기	송 재 덕	안산시원곡동 761-1	135,394,894
144	2 - 0060	남미전기	성 낙 원	안양시호계동 967-22	134,258,434
145	2 - 0055	대화전기공사	노 철 승	부천시남구송내동 354-8	133,816,851
146	2 - 0550	광성전기공사	함 창 규	의정부시의정부 1 동 203-4	132,229,863
147	2 - 0236	태양전기공사	김 영 태	구리시수택동 90 브럭 5-1 롯트	132,033,969
148	2 - 0294	동일전업사	김 명 래	부천시남국심곡동 554-25	130,693,200
149	2 - 0108	제일전기	김 형 자	의정부시의정부 4 동 8-26	128,763,183
150	2 - 0101	동양전업사	황 무 웅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118-6	128,619,899
151	2 - 0347	은행전력공사	표 무 경	광명시광명 4 동 158-776	124,932,742
152	2 - 0426	대한전업사	임 종 철	김포군통진면서암리 759	124,826,394
153	2 - 0023	한성전업사	전 금 표	안성군안성읍창전동 608-3	123,606,689
154	2 - 0469	안양전력공사	박 남 원	안양시안양 7 동 126-36	122,330,900
155	2 - 0402	수전사	안 재 승	수원시매향동 30	121,544,457
156	2 - 0568	남양전업사	김 창 수	평택시통복동 97-2	121,240,925
157	2 - 0137	대원전기공사	고 문 규	부천시중구도당동 272-28	121,067,122

158	2 - 0017	건일전기공업사	김 건 수	연천군연천읍차탄리 34-253	121,051,017
159	2 - 0279	쌍용전력건설공사	이 성 수	동두천시생연 1 동 476-11	119,974,098
160	2 - 0628	삼덕전업사	심 용 수	이천읍창전리 255 브럭 1-3	118,968,392
161	2 - 0654	동우전력공사	심 만 복	시흥시대야동 37 브럭 3-5 롯트	118,360,000
162	2 - 0576	삼흥전업사	이 형 구	오산시오산동 583	116,707,935
163	2 - 0329	창성전기공업사	이 종 열	고양군원당읍주교리 585-10	116,640,115
164	2 - 0109	㈜우진건설	양 태 석	수원시영화동 443-14	115,471,286
165	2 - 0534	부성전기	안 효 응	안산시원곡동 764-1	113,454,154
166	2 - 0708	부일전기공사	이 하 수	부천시중구심곡 3 동 93-13	112,502,080
167	2 - 0666	대성전기공사	이 형 근	강화군강화읍관청리 170-15	112,135,908
168	2 - 0474	명지전업사	강 효 중	안양시호계동 924-24	110,696,326
169	2 - 0661	대성전기공사	오 세 영	성남시단대 1 동 4312-2	108,783,390
170	2 - 0324	㈜정방종합건설	홍 순 우	평택군진위면봉남리 309-1	108,578,261
171	2 - 0359	천우전기	김 현 모	수원시매교동 98-1	108,280,611
172	2 - 0215	두남전기공사	송 명 순	〃 세류동 244 브럭 4 롯트	106,327,319
173	2 - 0678	일광전기공업사	진 성 철	부천시중구심곡동 352-2	103,422,147

174	2 - 0098	광림전업사	김 진 섭	안양시안양동 493-14	103,337,124
175	2 - 0470	동우전기	성 낙 환	〃 안양6동 504-21	103,144,865
176	2 - 0509	신성전기	김 웅 배	수원시장안구조원동 70 브럭 3 롯트	101,792,280
177	2 - 0599	고양전기공사	황 재 선	고양군일산읍일산리 552-24	101,626,428
178	2 - 0289	종로전기	이 영 호	수원시고등동 144-1	101,550,363
179	2 - 0665	유신전업사	이 면 규	강화군강화읍관청리 884-7	101,151,818
180	2 - 0143	태찬산업공사	정 찬 조	고양군원당읍성사리 371-11	100,818,233
181	2 - 0378	지현전기	박 상 규	수원시세류동 801-10	100,685,460
182	2 - 0405	영진전기	이 의 인	〃 교동 132-4	97,799,251
183	2 - 0693	대우전업공사	정 태 득	부천시남구송내동 393	97,502,900
184	2 - 0022	㈜동방전업사	서 재 엽	수원시고등동 148-7	97,501,069
185	2 - 0597	동아전기	김 홍 균	부천시중구오정동 572-3 (종합시장)	97,010,094
186	2 - 0350	삼풍전기	강 한 순	수원시교동 64-2	96,998,000
187	2 - 0716	무일전기건설공사	황 무 일	부천시중구원미동 72-12	96,952,570
188	2 - 0229	대광전기	엄 기 순	김포군김포읍북변리 409-6	96,599,338
189	2 - 0623	명진전설	안 영 균	수원시권선구인계동 880 (대륜빌딩 50)	95,798,579

190	2 - 0365	충남종합상사	이 근 연	성남시수진 1 동 1292-1	95,644,570
191	2 - 0413	광진전기	이 진 남	안산시원곡동 761-11	94,809,275
192	2 - 0717	정화전기건설공사	박 용 호	시흥시대야동 38 브럭 8 롯트	94,341,853
193	2 - 0255	정우전기건설공사	최 기 현	부천시중구내동 163-2	93,980,356
194	2 - 0374	일양전기	오 동 수	수원시정자동 51-54	93,069,830
195	2 - 0225	용원전기공업	이 경 재	안산시원곡동 994 (유통상가 5 동 101)	91,630,000
196	2 - 0332	현대전기공사	정 기 복	의정부시의정부 1 동 152-1	89,222,640
197	2 - 0527	안전사	안 순 교	송탄시지산동 811-15	88,936,764
198	2 - 0610	신우전업사	이 일 우	포천군신북면가채리 806-5	87,677,698
199	2 - 0680	강원전력공사	손 경 두	구리시수택동 76 브럭 3 롯트	87,465,511
200	2 - 0619	삼흥전업사	남 궁 재	가평군외서면청평리 432-30	86,748,120
201	2 - 0085	신광전업사	방 종 석	부천시남구심곡동 659	86,578,350
202	2 - 0041	광성전업공사	유 정 목	하남시신장 1 동 430-7	85,808,211
203	2 - 0582	형제전업사	정 규 용	오산시오산동 877-28	85,804,083
204	2 - 0278	한국전기건설공사	정 진 택	안산시고잔동 530-3	85,341,550
205	2 - 0317	경동전력	이 준 덕	성남시수정구신흥 3 동 3436-17	84,941,516

206	2 - 0004	(합자)만복전력	이 봉 현	양평군양평읍양근리 348-1	83,910,255
207	2 - 0388	중앙전업사	홍 처 기	수원시장지동 45-1.2	83,411,252
208	2 - 0358	성진전기공사	김 진 흥	〃 영화동 47-3	82,800,940
209	2 - 0564	서원건설산업(주)	신 동 수	〃 권선구고등동 6-6	82,381,710
210	2 - 0674	공단전업사	이 광 원	부천시남구송내동 500-7 (삼정상가 1)	81,462,792
211	2 - 0339	원전사	이 일 남	하남시신장 1 동 432-44	81,034,446
212	2 - 0057	중앙전기건설공사	유 근 범	부천시중구원미동 59-19	80,923,990
213	2 - 0529	한성전업사	강 병 인	동두천시생연 2 동 665	80,878,801
214	2 - 0266	천영전업사	이 한 천	수원시영화동 308-3	80,792,576
215	2 - 0119	세운건설	박 복 만	파주군금촌읍 . 리 37 브럭 2-3 롯트 (하경)	80,217,300
216	2 - 0121	현대전기공사	정 용 국	용인군외사면백암리 371-7	80,182,023
217	2 - 0461	백경전기	김 제 중	의정부시의정부 4 동 7-1	80,072,461
218	2 - 0348	한국전설	조 재 철	수원시신풍동 151	79,088,605
219	2 - 0541	금곡전업사	송 영 규	미금시금곡동 430-36	79,021,906
220	2 - 0061	대연전업사	김 영 연	안양시안양 6 동 510-12	78,914,791
221	2 - 0334	금호전기건설	임 동 복	안양시관양동 1472	78,433,882

222	2 - 0570	대광전기공사	이 재 흥	오산시오산동 859-3	78,321,304
223	2 - 0456	국제전기공사	이 창 표	의정부시의정부 4 동 215-25	78,045,442
224	2 - 0264	세원전기건설공사	남궁정완	광명시광명 3 동 150-20	77,612,109
225	2 - 0078	세림전설	문 재 학	안성군안성읍영동 428	77,526,279
226	2 - 0259	신성전기건설공사	김 종 주	부천시중구심곡동 344-4	77,275,991
227	2 - 0592	동아전업사	김 희 용	동두천시생연동 427-15	77,077,563
228	2 - 0596	신신전기공사	문 재 엽	파주군조리면봉일천리 204-15	76,787,040
229	2 - 0633	동양전기	이 석 원	이천군이천읍창전리 146-1	76,527,402
230	2 - 0014	동아전업사	황 명 옥	구리시교문동 223-2	76,368,247
231	2 - 0075	우신전업사	정 태 헌	평택시비전동 620-8	76,043,486
232	2 - 0308	삼환전기건설공사	한 승 충	부천시남구괴안동 113-10	75,873,974
233	2 - 0242	신영전업사	황 두 경	안산시원곡동 994 (상가 13 동 322 호)	75,125,820
234	2 - 0605	금성전력공사	서 한 석	안양시관양지구 20 브럭 14 롯트	74,934,430
235	2 - 0393	제일전업사	김 수 원	안성군안성읍서인동 75	74,884,671
236	2 - 0151	동남전기공사	최 근 식	김포군월곶면갈산리 485-1	74,333,994
237	2 - 0067	대한전업사	석 진 이	부천시중구내동 12-1	73,821,196

238	2 - 0110	영진전업사	홍 세 기	의정부시의정부1동 154-1	72,987,052
239	2 - 0280	정일전업공사	김 정 일	부천시남구송내동 381	72,586,129
240	2 - 0408	삼영전업사	박 현 수	수원시교동 134-2	72,222,181
241	2 - 0309	삼대전업사	배 수 년	화성군태안면진안리 543-7	71,452,498
242	2 - 0397	해동전업사	강 진 열	용인군용인읍유방리 501-3	70,832,717
243	2 - 0651	대일전기공사	이 명 호	구리시수택동 545-1	70,816,962
244	2 - 0341	삼아전력	장 동 만	안산시원곡동 994 (유통상가 8동 118)	70,801,743
245	2 - 0587	대일전업공사	허 종 배	시흥시신천동 66-39	70,755,456
246	2 - 0086	화도전업사	서 재 효	남양주군화도면마석우리 297-22	69,996,290
247	2 - 0021	태광전업사	고 근 원	안양시안양5동 449-33	69,819,452
248	2 - 0102	신진전기공사	권 순 문	파주군문산읍선유2리 900-6	69,444,524
249	2 - 0520	광일전기공사	최 중 길	송탄시지산동 864-11	69,411,009
250	2 - 0706	고려전기공사	구 남 출	부천시중구내동 295-1	68,176,790
251	2 - 0217	광명전기공사	성 병 문	동두천시생연동 480-1	67,631,494
252	2 - 0609	우성전기공사	최 용 규	포천군포천읍신읍리 202-1	67,423,562
253	2 - 0338	창곡전기공사	김 동 윤	광주군광주읍경안4리 36-3	67,098,578

254	2 - 0273	대흥전기건설공사	이 종 오	안양시안양6동 529-2	67,028,790
255	2 - 0684	태광전기	신 동 희	성남시신흥동 3436-1	66,939,000
256	2 - 0659	정우전기공사	채 수 윤	김포군김포읍북변리 408	66,876,135
257	2 - 0622	미림전기공사	염 운 학	양평군양평읍양근리 180-4	65,877,198
258	2 - 0511	관동전업사	유 동 호	안산시와동 109-1	65,507,449
259	2 - 0029	정아산업㈜	김 용 건	의정부시의정부동 221-25	65,249,800
260	2 - 0271	새마을전기공사	이 종 균	이천군이천읍창전3리 145-6	64,942,153
261	2 - 0574	삼성전력공사	권 상 경	부천시남구소사동 41-22	64,175,750
262	2 - 0084	영일전업사	최 성 창	수원시세류동 526-6	64,154,262
263	2 - 0134	㈜우성전업사	조 규 환	오산시궐4동 54-5	63,795,370
264	2 - 0368	대림전기공사	임 능 수	수원시매교동 127-4	62,976,478
265	2 - 0417	동신전업사	이 석 근	〃 인계동 966-3	62,245,063
266	2 - 0248	대덕전력공사	이 시 영	의정부시신곡동 567-24	61,760,809
267	2 - 0321	삼성전업사	김 영 기	화성군송산면사강리 687-9	61,051,450
268	2 - 0640	국제전기공사	김 재 종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145-1	60,669,868
269	2 - 0386	삼우전업사	김 택 수	수원시남수동 54-4	58,993,165

270	2 - 0107	성우전기공사	김 영 수	의정부시의정부 4 동 220-85	58,662,192
271	2 - 0528	희망전기공사	신 명 배	동두천시생연동 420-21	58,453,115
272	2 - 0471	유성전기건설공사	이 동 원	수원시권선동 550-1	58,015,834
273	2 - 0486	아남전기건설공사	서 진 구	광명시철산동 146	57,887,299
274	2 - 0336	형제전업사	김 광 섭	남양주군별내면퇴계원리 312	57,372,195
275	2 - 0691	화신전업사	이 상 혁	부천시남구소사동 91-28	56,687,582
276	2 - 0505	우신전기공사	임 효 기	이천군이천읍중리 193-12	56,418,592
277	2 - 0658	대명전기	박 시 걸	김포군김포읍북변리 230-13	55,501,720
278	2 - 0048	제일전기공사	김 창 효	이천군이천읍중리 220-1	55,278,049
279	2 - 0125	시몬전기	양 홍 식	여주군여주읍홍문리 15-4	55,035,745
280	2 - 0130	효성전기공사	황 성 근	성남시수진 2 동 3397	55,032,196
281	2 - 0415	동아전업사	양 덕 석	군포시산본 1 동 265-8	54,631,835
282	2 - 0608	신일전기개발공사	강 충 구	연천군전곡읍전곡 2 리 483-48	54,535,750
283	2 - 0249	중앙전기공사	김 원 기	이천군장호원읍장호원리 64	54,084,977
284	2 - 0305	현창전업사	임 낙 근	성남시신흥 3 동 3417	53,753,406
285	2 - 0064	한국전업사	문 덕 용	의왕시고천동 277-9	53,017,327

286	2 - 0126	금성전기설비공사	방 태 석	성남시양지동 852	52,457,538
287	2 - 0265	서울전업사	손 춘 기	평택시비전동 188-4	50,179,163
288	2 - 0546	성부전설	한 용 선	구리시수평동 498-23	49,851,829
289	2 - 0300	다선전업사	최 춘 자	송탄시서정동 429-11	49,286,416
290	2 - 0450	옥산전기공사	엄 옥 섭	성남시성남동 15-77	49,222,982
291	2 - 0418	서일전기	신 천 식	평택군팽성읍안정리 41-119	49,048,510
292	2 - 0353	성우전기시설	양 영 태	광명시광명동 290-52	48,889,951
293	2 - 0556	세원전업사	오 세 익	평택군오성면안중리 305-5	48,627,927
294	2 - 0720	사강전업사	김 홍 식	화성군송산면사강리 687-1	48,507,118
295	2 - 0436	한성전기공사	하 준 용	광주군광주읍경안리 76-1	48,381,051
296	2 - 0411	부광전기개발	이 기 원	연천군전곡읍전곡리 314-13	47,967,929
297	2 - 0072	동아전기	조 은 호	수원시장안구지동 157-1	47,782,527
298	2 - 0080	신광전력개발	안 석 호	동두천시생연동 424-13	47,674,000
299	2 - 0421	경일전기공사	조 민 목	미금시도농동 299	47,561,580
300	2 - 0117	태양전업사	강 병 도	용인군수지면풍덕천리 82-18	47,326,173
301	2 - 0276	시온전기	채 수 원	강화군내가면고천리 1135-3	47,197,808

302	2 - 0103	㈜중앙전업사	염 영 태	평택군팽성읍안정리 35-7	46,664,308
303	2 - 0656	상신전기공사	임 영 재	강화군강화읍신문리 709	46,183,031
304	2 - 0604	태양전기	한 상 준	하남시덕풍동 394-1.2	46,035,702
305	2 - 0681	성원전기	조 성 국	부천시남구중동 891-8	44,842,386
306	2 - 0554	여흥전업사	윤 흥 철	여주군여주읍흥문리 67-7	44,269,917
307	2 - 0644	동아전업사	김 창 복	평택시합정동 733-8	44,113,706
308	2 - 0410	대진전기	송 대 현	수원시정자동 72-9	44,018,076
309	2 - 0234	과천전업사	윤 형 택	안양시호계동 928-9 대림APT동 1	43,900,298
310	2 - 0611	신영전기	박 진 용	포천군소흘면송우리 141-17	43,144,077
311	2 - 0580	일광전기	박 희 자	화성군반월면건건리 644	42,602,579
312	2 - 0639	삼성전기공사	이 강 우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118	41,695,944
313	2 - 0679	성주전업사	김 용 기	부천시남구심곡동 373-11	41,655,820
314	2 - 0097	우일전업사	조 해 현	군포시당동 70-3	41,516,318
315	2 - 0440	삼일전기공사	오 세 원	성남시수정구단대 1 동 3794	41,426,373
316	2 - 0547	신일전기공사	김 용 권	미금시도농동 117	41,405,992
317	2 - 0288	두산전기	김 해 식	의정부시가능 2 동 739-17	41,184,422

318	2 - 0422	성남소방전기(주)	권 수 용	성남시신흥동 2485	41,048,000
319	2 - 0030	신한건설(주)	유 지 연	안양시안양동 162-3	40,859,302
320	2 - 0669	삼진계전공업사	이 상 만	〃 관양동 951-1	40,700,000
321	2 - 0120	양평전기공사	김 현 수	양평군양평읍양근리 358-1	40,320,500
322	2 - 0458	형제전기건설	조 원 길	의정부시의정부4동 215-31	40,030,178
323	2 - 0549	대성전기공사	김 완 수	남양주군화도면창현리 469	39,555,303
324	2 - 0593	동아전기전업사	김 태 성	안양시호계동 946-38	39,520,459
325	2 - 0575	삼일전기	양 승 남	화성군우정면조암리 367-12	38,834,589
326	2 - 0446	경일전기공사	송 상 열	광주군광주읍경안리 54-1	38,667,742
327	2 - 0614	대원전기	민 영 봉	포천군가산면마산리 152-6	38,384,911
328	2 - 0649	경성전업사	송 중 서	안성군이죽면죽산리 428-1	38,223,813
329	2 - 0063	대양전기(주)	김 태 용	성남시수진동 3993	38,205,453
330	2 - 0345	은광전기	김 완 식	수원시지동 249-3	38,195,336
331	2 - 0652	명보전기	정 영 기	부천시중구원종동 144	37,990,793
332	2 - 0296	부성전기	오 귀 준	안양시관양동 361-13	37,544,100
333	2 - 0015	신아전업사	조 연 환	가평군가평읍읍내리 410-1	37,311,868

334	2 - 0552	세종전업사	김 종 돈	여주군여주읍창리 136-1	36,560,909
335	2 - 0033	대흥전업사	권 복 천	의정부시의정부 4 동 214-16	36,301,528
336	2 - 0480	국제전력공사	김 범 수	부천시남구역곡 1 동 221-13	36,146,000
337	2 - 0356	태성전기공사	문 태 수	의정부시가능 1 동 646	36,096,947
338	2 - 0447	대명전기공사	최 명 수	성남시수진 2 동 3042	35,914,924
339	2 - 0373	서부전기	김 수 명	수원시화서동 71-106	35,888,008
340	2 - 0346	한상산업전기	한 상 득	포천군소흘면송우리 106-5	35,875,468
341	2 - 0687	동명전기	박 동 우	부천시중구내동 191-1	35,761,253
342	2 - 0239	현대전업사	김 권 복	안양시안양 4 동 676-34	35,723,012
343	2 - 0066	황제전업사	이 행 훈	평택군안중면안중리 262-31	35,582,780
344	2 - 0083	한일전기공사	박 용 주	여주군여주읍흥문리 67-9	35,393,710
345	2 - 0600	문일전기공사	고 영 민	광주군실촌면곤지암리 453-10	35,225,608
346	2 - 0626	현대전기건설공사	정 현 준	이천군이천읍창전리 233-2	34,996,299
347	2 - 0457	대광전기	정 영 용	의정부시가능 2 동 218-137	34,755,876
348	2 - 0020	제일전기공사	이 영 수	오산시원동 776-3	34,737,640
349	2 - 0095	경명전기공사	천 만 식	안산시원곡동 747	34 ,455,391

350	2 - 0449	원일전기공사	이 용 억	성남시하대원동 135-5	34,365,479
351	2 - 0297	현대전력공사	박 연 수	〃 태평1동 6427	34,180,015
352	2 - 0544	세양전기공사	이 문 희	미금시도농동 133 (강호연립나동 105호)	34,081,484
353	2 - 0713	반도전설	김 연 태	부천시중구심곡2동 464-6	33,985,999
354	2 - 0667	광우전기	김 종 윤	강화군길상면온수리 525-8	33,689,943
355	2 - 0445	한일전기공사	이 영 구	성남시상대원2동 2996-1	33,456,491
356	2 - 0435	정광전기공사	정 광 복	〃 중동 3749-2	33,336,494
357	2 - 0545	삼화전기공사	허 성 윤	구리시수택동 578	32,998,302
358	2 - 0006	㈜흥일전업사	강 석 수	성남시단대3동 222-1	32,747,051
359	2 - 0237	㈜영화조명	송 종 구	양주군광적면가납리 709-3	32,600,000
360	2 - 0262	부영전기건설	정 영 신	하남시덕풍동 379-6	32,457,904
361	2 - 0460	신흥전기건설공사	백 운 봉	의정부시의정부4동 214-8	32,256,998
362	2 - 0240	부일전기공사	박 종 부	부천시남구소사동 204-3	32,110,999
363	2 - 0111	범진전기공업사	유 계 열	남양주군와부읍덕소리 462-9	31,944,536
364	2 - 0430	㈜돌마전설	고 석 민	성남시하대원동 155-26	31,902,414
365	2 - 0453	동북전기공사	이 성 환	〃 중원구성남동 1309-7	31,820,852

366	2 - 0323	수성산업㈜	강 래 봉	수원시교동 79-2 성신빌딩 3	31,799,100
367	2 - 0403	태극전기공사	이 혜 상	의정부시가능 1 동 668-10	30,917,994
368	2 - 0425	한진전기	박 용 태	성남시신흥 2 동 1772	30,705,114
369	2 - 0024	광명전업사	이 종 성	포천군영북면운천리 513-31	30,665,771
370	2 - 0660	대원전기	최 중 기	김포군통진면서암리 725	30,469,258
371	2 - 0387	동남전기	김 형 남	수원시정자동 10-1	30,405,114
372	2 - 0214	금성종합전기	신 경 식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76 브럭 1 롯트	30,330,000
373	2 - 0073	용호전업사	노 재 용	송탄시서정동 814-7	30,209,851
374	2 - 0466	동양전기공사	김 창 남	양평군양평읍양근리 436-8	30,071,166
375	2 - 0521	신성전기공사	양 재 옥	안성군안성읍석정동 29-2	30,036,970
376	2 - 0342	금성전업사	한 규 복	화성군향남면평리 116-2	29,882,549
377	2 - 0487	영성전업사	윤 동 간	안양시안양 7 동 138-39	29,834,253
378	2 - 0025	동양전업사	최 희 성	〃 안양 1 동 668-29	29,464,251
379	2 - 0668	명성전업사	명 상 국	강화군강화읍관청리 171-5	29,205,334
380	2 - 0281	중앙전기공사	서 봉 남	성남시상대원 3 동 2978-9	28,886,169
381	2 - 0077	신광전업사	최 성 목	안산시선부동 973-4	28,847,840

382	2 - 0313	선호종합전기	최 재 창	평택시통북동 86-7	28,687,606
383	2 - 0677	동북전기	최 정 철	부천시남구괴안동 169-17	28,594,500
384	2 - 0052	영구전기공사	김 금 용	고양군지도읍토당리 283-1	28,275,000
385	2 - 0567	세건전업사	박 해 용	평택시비전동 621-13	28,234,347
386	2 - 0333	신한전기공사	신 경 철	남양주군진건면용정리 793-1	28,021,094
387	2 - 0555	보성전기공사	정 낙 두	이천군이천읍창전리 89-45	27,601,449
388	2 - 0653	창우전기설비공사	이 창 우	김포군양촌면양곡리 414-21	27,565,225
389	2 - 0106	양주전업사	정 산 훈	의정부시의정부 4 동 9-32	27,273,200
390	2 - 0704	현대전기건설공사	김 원 기	부천시중구심곡동 322-2	26,963,432
391	2 - 0465	동식전기공사	구 자 익	의정부시의정부동 8-32	26,529,665
392	2 - 0019	극동전기건설공사	이 영 수	성남시태평3동 3972	26,418,372
393	2 - 0638	평강전업사	김 종 용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285-1	26,318,669
394	2 - 0540	와부전기	이 운 용	구리시인창동 517-3	26,261,651
395	2 - 0423	신흥전기조명공사	심 광 진	성남시신흥3동 4126	26,232,904
396	2 - 0692	한성전기	김 봉 식	이천군마장면오천리 281-9	26,161,201
397	2 - 0618	동양전기	호 완 식	가평군상면연하리 181	26,087,646

398	2 - 0383	대산전기	고 민 선	수원시교동 106-1	25,979,813
399	2 - 0452	우진전업사	정 연 득	성남시단대 3 동 770-49	25,858,931
400	2 - 0463	㈜금아신전설	이 흥 진	고양군지도읍토당리 56-10	25,617,324
401	2 - 0122	장원전기공사	임 인 규	이천군장호원읍장호원리 64	25,362,147
402	2 - 0221	영광전업사	임 성 빈	포천군일동면기산리 91-32	24,531,607
403	2 - 0515	신광전설	신 봉 섭	고양군일산읍일산 5 리 640-8	24,417,510
404	2 - 0277	광진전기건설공사	오 종 천	성남시중동 658	24,226,911
405	2 - 0071	동아계전	신 종 구	부천시중구도당동 14	24,115,971
406	2 - 0074	삼보전기	이 덕 율	송탄시신장동 274-160	24,040,889
407	2 - 0645	아세아전기공사	유 재 경	안성군안성읍인지동 351	23,733,033
408	2 - 0256	두성전기	김 광 수	부천시남구심곡 1 동 697	23,611,207
409	2 - 0219	삼성전업사	박 종 호	성남시성남동 29-28	23,391,957
410	2 - 0518	영진전기건설공사	전 시 현	안양시안양 6 동 529-5	23,227,761
411	2 - 0707	토탈전기건설공사	최 규 철	고양군원당읍성사리 524-1	23,213,583
412	2 - 0005	시민전기공사	이 수 용	의정부시가능 1 동 290-17	23,189,933
413	2 - 0566	의정부전기건설공사	임 광 현	〃 의정부 1 동 206-9	22,937,933

414	2 - 0322	대성전기공사	이 선 훈	김포군통진면서암리 719	22,816,347
415	2 - 0477	대우개발	이 명 구	오산시원동 776-26	22,743,000
416	2 - 0367	상원전설	이 상 천	포천군포천읍선단리 52-1	22,428,887
417	2 - 0542	신영전기	최 향 수	구리시수택동 557-17	22,390,300
418	2 - 0381	평강전기공사	김 진 설	수원시조원동 275-9	22,373,575
419	2 - 0091	동부전기공사	김 준 수	여주군여주읍홍문리 67-7	22,250,193
420	2 - 0522	한승전기	김 상 만	송탄시서정동 840	21,993,344
421	2 - 0563	아남주택전기	문 길 남	평택시통복 5 동 287-5	21,903,602
422	2 - 0703	삼정전기건설공사	이 석 하	부천시중구삼정동 299-3	21,831,767
423	2 - 0404	동부전기	이 규 홍	수원시권선구권선동 141 브럭 1-5	21,808,656
424	2 - 0114	신명전기	이 광 신	〃 장안구화서동 349-4	21,680,418
425	2 - 0250	경기전업사	백 인 기	여주군가남군태평리 178-5	21,670,061
426	2 - 0502	오성전기건설공사	오 성 택	안양시호계 2 동 915-24	21,538,018
427	2 - 0340	광진전기공사	고 우 옥	하남시덕풍 2 동 370-13	21,407,900
428	2 - 0607	삼오전기공사	이 왕 규	이천군마장면오천리 282	21,194,588
429	2 - 0235	태광전업사	이 문 규	포천군포천읍신읍리 175-21	21,193,437

430	2 - 0094	대신전기	지 규 열	이천군마장면오천리 294-8	21,109,247
431	2 - 0714	영광전력	김 진 홍	안양시박달동 102-7	20,828,662
432	2 - 0133	승진전기공사	오 정 식	포천군포천읍신읍리 42-1	20,790,812
433	2 - 0432	연합전기공사	송 광 철	성남시신흥 1 동 5183	20,767,085
434	2 - 0572	성원전기	윤 영 록	화성군우정면조암리 217-11	20,735,090
435	2 - 0467	덕성전기공사	이 장 훈	의정부시의정부 1 동 210-8	20,614,804
436	2 - 0138	동해전설산업(주)	조 풍 국	성남시금광동 3702	20,481,610
437	2 - 0512	지구전업사	정 상 영	안양시관양동제 7 지구	20,392,571
438	2 - 0290	금학전업사	김 홍 철	포천군일동면기산리 284-19	20,379,472
439	2 - 0416	경남전기	이 상 옥	안산시원곡동 53-3	20,242,010
440	2 - 0370	명지통신공사	오 복 순	수원시조원동 642-4	20,117,509
441	2 - 0504	신성전기	신 영 성	안양시안양 6 동 471-17	20,098,576
442	2 - 0701	범진산업(주)	김 삼 봉	〃 안양동 622-175	19,910,450
443	2 - 0136	현대전기공사	이 일 환	가평군가평읍읍내리 458-2	19,506,212
444	2 - 0688	영백전업	유 정 신	부천시중구심곡동 163-2	19,497,806
445	2 - 0543	아주전기	조 병 구	구리시수택동 268-1	19,275,450

446	2 - 0647	일죽전기	신 재 동	안성군일죽면송천리 13-1	18,939,914
447	2 - 0431	우수전기공사	최 갑 수	이천군이천읍창전리 22-2	18,322,561
448	2 - 0396	흥제전기	홍 종 락	수원시신풍동 230	18,210,730
449	2 - 0268	태양전기	박 종 업	양평군용문면다문 4 리 729-3	18,207,589
450	2 - 0559	오성전기	김 흥 래	평택군오성면숙성리 130-1	17,779,090
451	2 - 0419	새마을전업사	이 대 희	송탄시서정동 816-10	17,692,530
452	2 - 0617	삼성전기	백 승 복	파주군적성면구읍리 640-2	17,607,938
453	2 - 0670	강화전기공사	이 종 회	부천시남구상동 245-37	17,569,678
454	2 - 0686	세진전기건설공사	장 석 권	구리시교문동 193-116	17,336,000
455	2 - 0483	동아전업사	신 성 원	안양시비산동 547-8	17,256,337
456	2 - 0601	한국전가공사	방 종 문	의정부시의정부 4 동 8-53	17,114,811
457	2 - 0673	한영전기건설공사	고 재 곤	부천시중구심곡 3 동 297-30	17,020,300
458	2 - 0459	환영전기	우 영 환	의정부시가능 1 동 652-49	16,791,894
459	2 - 0711	양곡전기	배 철 기	김포군양촌면구래리 238	16,632,403
460	2 - 0524	정암전기통신	성 규 암	성남시중원구금광 2 동 3666	16,500,000
461	2 - 0245	무지개전기	박 보 승	의정부시의정부 1 동 34-3	16,126,141

462	2 - 0330	금성전기공사	여 봉 구	군포시산본1동 213-9	16,036,110
463	2 - 0274	대원전기건설공사	박 갑 진	미금시도농2동 91	15,974,723
464	2 - 0616	대일전기공사	김 종 호	포천군소흘면송우리 452-2	15,941,085
465	2 - 0213	대명전기	이 현 구	수원시매탄동 134-5	15,800,722
466	2 - 0018	동성전기	정 동 현	이천군이천읍관고리 6-3	15,573,384
467	2 - 0283	영일전기공사	지 시 훈	구리시수택동 583-4	15,564,217
468	2 - 0441	경기전업사	이 기 천	성남시단대1동 4011	15,477,483
469	2 - 0655	대호전기공사	조 대 호	김포군하성면마곡리 633-7	15,448,563
470	2 - 0391	영일전업사	윤 여 형	송탄시신장동 279-19	15,244,157
471	2 - 0088	유신전업사	유 해 중	화성군향남면평리 106-6	15,221,265
472	2 - 0282	한신전기공사	이 성 현	연천군연천읍전곡1리 480-19	15,076,692
473	2 - 0001	팔형제전업사	이 진 현	오산시원동 750-6	15,037,787
474	2 - 0495	한일전기공사	김 춘 섭	광주군광주읍경안리 74-19	14,960,363
475	2 - 0287	아남전기	이 봉 구	안성군안성읍서인리 114	14,789,279
476	2 - 0481	조경전기	조 경 현	안양시안양4동 711-167	14,768,535
477	2 - 0301	효성전기공사	김 수 윤	고양군지도읍토당리 292-3	14,636,095

478	2 - 0050	동남전기	권 오 선	양평군양평읍양근리 421-3	14,404,920
479	2 - 0630	남부전기공사	서 은 석	이천군이천읍중리 225-1	14,243,203
480	2 - 0491	현대전력공사	정 송 문	안양시관양동 567-8	14,204,887
481	2 - 0533	태백전기공사	손 광 식	안산시원곡동 828 (주공 2 단지 APT)	14,118,500
482	2 - 0035	동신전기건설공사	정 진 욱	양평군양평읍양근리 422-25	14,101,000
483	2 - 0444	인천전기공사	송 인 석	성남시상대원 1 동 1494-2	14,055,348
484	2 - 0316	은혜전업사	이 정 구	평택시세교동 180-12	14,021,220
485	2 - 0409	동양전업사	박 영 식	안성군안성읍연지동 98	13,938,792
486	2 - 0632	세광전업사	송 진 원	이천군이천읍중 2 리 291-4	13,910,115
487	2 - 0695	한양전기	김 맹 수	구리시수택동 521	13,901,640
488	2 - 0589	광영전기	진 창 수	군포시산본동 40-63	13,899,928
489	2 - 0115	성동전기	박 종 승	광주군광주읍송정리 112-6	13,815,500
490	2 - 0443	성음전업사	홍 현 석	성남시산성동 1208	13,749,058
491	2 - 0620	선미전업사	오 성 근	가평군외서면청평리 438-3	13,696,129
492	2 - 0439	평화전업사	이 성 익	성남시금광 1 동 686	13,526,252
493	2 - 0571	유신토건(주)	김 동 길	안양시안양동 548-1	13,500,000

494	2 - 0718	상명전기	안 순 기	부천시중구원미동 72-9	13,348,529
495	2 - 0539	광명전기공사	채 창 만	연천군전곡읍전곡리 306-3	13,252,280
496	2 - 0286	호남전기공사	이 충 식	동두천시생연 2 동 659	13,044,128
497	2 - 0464	원전사	이 성 호	남양주군진접읍팔야리 787-17	13,025,427
498	2 - 0437	현대전기공사	김 지 환	성남시신흥 1 동 5183	12,803,830
499	2 - 0424	일만전기	임 한 술	〃 태평동 2779	12,764,737
500	2 - 0056	창신전설	채 흥 식	고양군원당읍주교리 603-7	12,684,633
501	2 - 0455	공영전기공사	정 연 해	성남시신흥 3 동 155-5	12,639,812
502	2 - 0585	신라전기	이 용 길	군포시당동 128	12,624,357
503	2 - 0369	제일전업사	문 국 열	용인군용인읍마평리 657-3	12,618,800
504	2 - 0059	조흥전기건설공사	최 홍 사	파주군금촌읍금촌리 329-155	12,593,988
505	2 - 0613	신일전기	나 법 식	포천군포천읍신읍리 41-4	12,591,602
506	2 - 0032	은하전기공사	이 절 자	동두천시지행동 725-3	12,542,838
507	2 - 0506	형제전업사	고 영 복	안양시안양 3 동 759-46	12,465,319
508	2 - 0065	(주)한국승강기제작소	최 종 관	김포군김포읍풍무리 661-13	12,457,500
509	2 - 0606	대광조명전기공사	조 공 심	광주군광주읍경안리 83-6	12,383,874

510	2 - 0394	협동전업사	변 승 옥	수원시영화동 424-33	11,987,295
511	2 - 0407	범양전기	김 명 래	〃 권선동 79 브럭 7 롯트	11,730,834
512	2 - 0615	한양전기	김 용 국	포천군영북면운천리 509-13	11,716,272
513	2 - 0224	승원전기	이 원 국	의정부시의정부동 214-1	11,635,500
514	2 - 0525	팔팔전업사	봉 근 종	송탄시서정동 314-2	11,425,362
515	2 - 0385	영도전기	김 구 영	수원시고등동 238-5	11,371,063
516	2 - 0433	정우전기공사	박 흥 식	성남시신흥 1 동 5761	11,324,991
517	2 - 0588	삼일전업공사	김 선 길	의왕시오전동 52-1	11,106,287
518	2 - 0045	명전사	김 재 형	강화군강화읍관청리 168-7	11,049,274
519	2 - 0076	형제전업사	김 용 진	송탄시지산동 239-3	11,017,119
520	2 - 0303	한성전기	윤 건 호	파주군문산읍문산리 44-17	10,945,066
521	2 - 0627	광명전기공사	이 근 수	이천군장호원읍장호원리 132-3	10,805,020
522	2 - 0560	청북전업사	백 승 혁	평택군청북면현곡리 298-16	10,710,296
523	2 - 0039	대광전기공사	이 영 옥	고양군지도읍토당리 340-1	10,700,000
524	2 - 0046	평화전기공사	이 순 재	시흥시신천동 135 브럭 2 롯트	10,351,000
525	2 - 0490	영원전업사	최 종 하	안양시안양 3 동 873-87	9,763,886

526	2 - 0337	유성산업(주)	김 유 현	부천시중구원미동 74-2	9,737,000
527	2 - 0715	유원전기건설공사	어 해 준	동두천시생연동 477-8	9,466,769
528	2 - 0380	대영전기	이 영 구	옹진군대부면동리 1447	9,192,004
529	2 - 0429	여흥전기공사	민 영 화	성남시신흥3동 2573-1	9,129,687
530	2 - 0603	광주전기공사	이 지 용	광주군광주읍역2리 27-28	9,057,400
531	2 - 0244	동서전력(주)	김 도 웅	성남시수정구신흥3동 3415	8,467,031
532	2 - 0027	제일전업사	차 봉 규	화성군향남면발안리 130	7,733,645
533	2 - 0253	동광전업사	권 승 일	수원시정자동 2-7	7,702,161
534	2 - 0258	현대전기건설공사	김 희 성	구리시인창동 611	7,529,841
535	2 - 0523	성광전기	박 미 선	연천군전곡읍전곡리 390-5	7,401,765
536	2 - 0510	용문전기공사	김 용 주	양평군용문면다문리 327-9	7,250,055
537	2 - 0238	선유전기공사	홍 일 수	성남시금광동 663	7,151,685
538	2 - 0007	신명전업사	김 인 배	이천군장호원읍장호원리 7-3	7,132,679
539	2 - 0218	화성전기공사	정 창 규	성남시금광2동 3740	7,125,555
540	2 - 0503	남경개발(주)	오 영 환	안양시안양6동 505-15	6,531,360
541	2 - 0379	문성전기	박 문 수	수원시세류3동 873-7	6,466,006

542	2 - 0672	신호전자㈜	김 동 한	군포시금정동 46-2	6,193,000
543	2 - 0220	서북전기	오 장 열	성남시성남동 37-4	6,138,098
544	2 - 0488	화양전업사	최 종 길	안양시안양동 710-57	6,988,598
545	2 - 0612	서울전기	이 옥 희	포천군내촌면내리 480-1	5,921,600
546	2 - 0344	우일전업사	박 기 훈	평택시평택동 21	5,519,000
547	2 - 0565	동화전기	김 만 천	〃 〃 72-16	5,417,201
548	2 - 0016	㈜삼양전업사	오 하 영	송탄시중앙동 335-27	5,390,636
549	2 - 0247	금화전설공사	오 봉 식	김포군김포읍북변리 376-34	5,308,260
550	2 - 0272	삼일전기공사	김 영 채	부천시중구심곡 2 동 394-3	5,296,395
551	2 - 0113	거목전기공사	주 영 호	의정부시가능 3 동 701-39	5,081,965
552	2 - 0646	한일전업사	유 영 규	안성군안성읍인지동 390-6	5,068,300
553	2 - 0040	명진전기㈜	이 만 균	이천군이천읍창전리 129-14	4,820,807
554	2 - 0578	광일전업사	박 경 택	평택군오성면안중리 256-2	4,815,918
555	2 - 0621	희망전기공사	전 희 영	양평군양동면쌍학리 178-3	4,724,048

556	2 - 0392	덕영전기공사	양 대 석	수원시권선구세류 2 동 206 브럭 9 롯트	4,517,745
557	2 - 0496	대진전력공사	이 상 천	구리시수택동 290-2	4,417,410
558	2 - 0634	일류전기공사	이 홍 범	광주군광주읍경안리 80-9	4,301,000
559	2 - 0428	신한전기	박 승 희	남양주군화도면마석우리 290-6	4,258,465
560	2 - 0579	승영전기	장 영 자	화성군남양면남양리 1244	4,049,201
561	2 - 0355	근화상공	진 효 근	고양군원당읍주교리 603-7	3,425,398
562	2 - 0442	영신전기공사	이 명 열	안산시본오동 343-6-21	2,512,400
563	2 - 0602	이화전기공사	박 철 호	성남시중원구태평 1 동 5568	1,793,000
564	2 - 0462	동서전기공사	임 창 빈	의정부시가능 1 동 352-15	1,308,193
565	2 - 0557	대한전기	김 태 환	하남시신장 2 동 450-23	1,045,000
566	2 - 0699	칠용전기공사	한 복 동	부천시중구심곡 2 동 394-1	882,750
567	2 - 0538	일성엔지니어링	강 경 옥	송탄시서정동 818-4	880,000
568	2 - 0062	우덕전업사	안 창 오	남양주군퇴계원면퇴계원리 314-23	709,500
569	2 - 0009	한일전업사	이 성 일	오산시오산동 554	431,587

570	2 - 0598	경기전업사	박 광 일	고양군신도읍화전리 558-6	312,264
571	2 - 0371	(주)성스테이지 엔지니어	성 낙 균	안양시안양동 817-38	258,589
572	2 - 0010	금성전기	이 희 범	부천시중구심곡동 414-6	0
572	2 - 0044	삼정전업사	박 원 암	〃 〃 도당동 27-3	0
572	2 - 0079	명신전업	조 병 기	용인군내사면장지리 466-1	0
572	2 - 0132	제일전업사	김 학 만	화성군남양면남양리 1165-10	0
572	2 - 0140	신명전기	신 기 한	오산시오산동 881-7	0
572	2 - 0211	진일전기공사	여 운 일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254-326	0
572	2 - 0222	호태전기	최 흥 준	안양시안양1동 622-216	0
572	2 - 0232	제일전기공사	권 영 순	안성군일죽면송천리 5-1	0
572	2 - 0243	안중전업사	손 치 호	평택군오성면안중리 252-47	0
572	2 - 0252	남해전기공사	최 선 아	수원시세류3동 173-6	0
572	2 - 0304	대우전설기업사	이 종 학	시흥시신천동 297	0
572	2 - 0319	대우전기건설공사	소 용 석	양평군양평읍양근리 222-7	0

572	2 - 0320	대하전기공사㈜	유 길 웅	수원시송죽동 382-11	0
572	2 - 0354	동양전기	박 함 균	평택시통복 2 동 76-1	0
572	2 - 0360	삼진토건	최 석 조	수원시권선구권선지구 112 브럭 12 롯트	0
572	2 - 0361	동양전기	윤 대 원	안양시관양동제 7 지구 27 브럭 27 롯트	0
572	2 - 0364	비봉전설	김 홍 원	안성군안성읍인지리 104-1	0
572	2 - 0366	고려전업공사	강 원 기	안양시호계 2 동 920-6	0
572	2 - 0375	한우전기	변 대 근	수원시영화동 405-11	0
572	2 - 0389	대흥전기	오 목 근	〃 인계동 750-63	0
572	2 - 0406	부광전기공사	강 희 창	〃 우만동 523	0
572	2 - 0412	대광전기	홍 순 식	〃 인계동 888-17	0
572	2 - 0438	명문전기공사	이 종 문	고양군원당읍주교 1 리 609	0
572	2 - 0454	경우안전산업㈜	채 양 석	성남시신흥동 3436-2	0
572	2 - 0473	성원전력공사	장 태 성	안양시석수 2 동 770	0
572	2 - 0475	대지전업사	정 하 림	〃 호계동 660-1	0

572	2 - 0476	삼일전기	서 원 기	안양시호계 2 동 924-28	0
572	2 - 0489	북부전기건설	이 종 완	양주군회천읍회정리 49-63	0
572	2 - 0492	을지전기	이 영 수	안양시호계동 924-7	0
572	2 - 0498	주경기전	전 수 남	수원시화서 1 동 32-6	0
572	2 - 0516	두원전기	이 성 호	안산시원곡동 994-5 (상가 11 동 303)	0
572	2 - 0517	백제전력건설공사	정 양 채	광명시광명동 295-8	0
572	2 - 0531	조양전기공사	문 형 관	시흥시안산동 472-8 102 호	0
572	2 - 0535	성남전기공사	이 선 숙	안산시원곡동 782-6	0
572	2 - 0536	군자전업사	김 희 태	〃 고잔동 520-4	0
572	2 - 0558	한림전기공사	권 달 수	평택시통복동 111-12	0
572	2 - 0625	삼흥전기공사	정 희 덕	이천군이천읍창전리 256-2	0
572	2 - 0636	용인전업사	김 찬 수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324-4	0
572	2 - 0641	신갈전기	박 남 철	〃 기흥면신갈리 75-21	0
572	2 - 0643	백암전기	구 본 호	〃 외사면버암리 418-1	0

572	2 - 0650	대광전업사	이 종 분	안성군이죽면죽산리 433-13	0
572	2 - 0662	신대림전업공사	임 용 을	강화군강화읍신문리 373	0
572	2 - 0682	용진건설(주)	석 정 남	부천시남구 송내동 500-7	0
572	2 - 0683	명성전업건설공사	김 철 환	〃 〃 중동 805-1	0
572	2 - 0705	신한전기	김 춘 구	〃 중구 원종동 296-4	0
572	2 - 0709	성진전기공사	김 귀 식	〃 〃 심곡3동 93-3	0

공 고

경기도공고제 93 호

K • S 표 시 허 가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3.21.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극동기계공업사
2. 소 재 지 : 경기도송탄시장당동 270-4
3. 대 표 자 : 최 기 철
4. 허 가 번 호 : 제 4796 호
5. 규격 번 호 : KSE7006
6. 품 명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7. 종류및등급 :
8. 취 소 일자 : '90.3.21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94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폐업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 22.

경 기 도 지 사

1. 허 가 번 호 : 10 -가-유기질 15 - 2
2. 상 호 : 흥농(주)
3. 대 표 자 성 명 : 지 종 호
4. 비료의종류및품목 : 혼합무기질
5. 제 조 창 소 : 경기도평택군서탄면수월암리산 37
6. 폐 업 년 월 일 : 1990. 3.22.
7. 폐 업 사 유 : 경영난에 의한 자진폐업

공 고

경기도공고제 96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휴업 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 26.

경 기 도 지 사

1. 허 가 번 호 : 10 -가 - 15 - 4
   10 -가 - 13 - 3
   10 - 나 - 9 - 13
2. 상 호 : 서정엔터프라이즈(주)
3. 대표자 성명 : 윤 평 구
4. 비료종류와품목 : 건계분 , 계분가공비료 , 혼합유기질
5. 제 조 장 소 :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남산리 41-6
6. 휴 업 기 간 : '90.3.26-'90.9.26 (6개월)
7. 휴 업 사 유 : 경영난으로 의한 휴업신고

경기도공고제 97 호

하천사용금지구역일시해제공고

하천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구역을 아래와 같이 일시 해제하였기 공고함.

가. 위 치 :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665-2 번지선

나. 일시해제구간 : 360 m

다. 일시해제기간 : '90.3.23-'90.7.30

라. 일시해제목적 : 하천 개수사업에 따른 토사의 제거

1990.3.23.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공고제 98 호

지방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19 조(노선인정의 공고)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였기에 이에 공고한다.

1990. 3. 27.

경 기 도 지 사

노선의종류(번호)	구분	노선명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km)	중용구간
지방도 313 호선	신규	진천 - 안성	안성 · 안성읍 옥천리 395-9	안성 · 금광면 상중리 산 11-2	금광면	11.999	
지방도 318 호선	〃	일죽 - 생극	안성 · 일죽면 송천리 453-1	이천 · 율면 산양리 595 (충북도계)	일죽면 율 면	9.4	

지 방 도 노 선 인 가

(단위 : km)

노 선 명 (번 호)	노 선 인가일	구 간	연장(경기도)	비 고
지 방 도 313 호 (진천~안성)	'90.3.20	충북·백곡면~경기도 금광면	20.499(11.999)	
지 방 도 318 호 (일죽~생극)	〃	경기·일죽면, 율면 - 충북·생극면, 삼성면	15.9(9.4)	

o 필요성

- 도로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도로관리불편
- 도와도간의 상업 및 농업용수송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농촌소득원 향상 및 지역간 균형 개발
- 교통체증 해소

o 효 과

- 진천-안성간 도로가 확·포장 됨으로서 경기도와 충북도를 단시간에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있음은 물론 진천군 백곡면과 이월면 농공단지의 중부내륙지방과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에 직결되어 향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처하며
- 일죽-생극간 도로가 확·포장 완료되면 서울-충주간 거리가 31 km단축, 시간도 1시간대로 수도권, 중부권 및 영호남권을 연결시켜 충주, 서해안공단, 아산만항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며 중원관광권의 개발과 이천에서 장호원을 거쳐 생극간에 이르는 도로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수 있음

공 고

경기도공고제 99 호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 27.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영업정지기간	비 고
제 50 호	동남전기	권오선	양평군양평읍 양근리 421-3	'90.3.27- '90.9.26 (6월)	면허기준미달

경기도공고제 100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신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무부소관 재산으로 등기할 것임을 공고함

1990 년 3 월 28 일

경 기 도 지 사

1. 신고기간 : 1990 년 3 월 28 일 - 1990 년 월 일
2. 신 고 처 :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 (시 - 회계과, 군 - 재무과)
3. 신고사항 : 신고처에서 배부하는 신고처 양식

4. 재산의 표시 : 별 첨

안산공고제 33 호

공 고

건설부 고시 제 399 호('85.9.17)로 결정하고 경기도 고시 제 246 호('87.9.11)로 지적고시된 반월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동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 공람공고 합니다.

1990 년 3 월 27일

안 산 시 장

아 래

1. 사업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반월신도시(선부동) 109 브럭 12-7 필지
2. 사업의 종류 : 소매시장
   시장의 명칭 : 안산종합시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상 호 : ㈜안산종합시장
   - 성 명 : 대표이사 김용태
   - 주 소 : 안산시 반월신도시(선부동) 109 브럭 12-7 필지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소유자 : 안산시 반월신도시(선부동) 109 브럭 12-7 필지 대표 김용태
   - 건물소유자 : 신축계획
   - 이해관계인 : 대전직할시 대덕구 연축동산 6-2 한국수자원공사사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 예정일 : 1990 년 4 월 일

— 사업 준공예정일 : 1991 년 9 월 30 일

6. 허가신청의 요지

시 설 명	세부시설명	면 적 (㎡)	위 치
계		6,800	안산시 반월신도시 (선부동) 109 브럭 12-7 필지
소 매 시 장 (중앙시장)	건 축 부 지	5,765.5	
	녹 지 부 지	86	
	주 차 장 부 지	924	
	기 타 부 지	24.5	

7. 공람일시 : 관보 (도보) 게재일로부터 14 일간

공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과

8.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안산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안산시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오산시공고제 25 호

오산시 공인조례 제 2 조에 의거 신조사용할 공인을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24.

오 산 시 장

다 음

o 사용개시일 : 90.4.2

o 신조사용인

오산시 보건소 물품출납원인	오산시보건소전도자금출납원인
	
오산시보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산시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
	
오산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람 | 기관의 장

제 2341 호

1990년 3 월 28일(수)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18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 2

○경기도조례 제2019호 경기도 도로보수 중기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4

○경기도조례 제2020호 경기도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 5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62호 경기도 문화상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6

○경기도규칙 제2063호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9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13호 '90골재채취(제1공구)허가고시..... 13

○경기도고시 제 116호 보호수 지정해제고시..... 14

○경기도고시 제 117호 사료성분등록 변경사항고시..... 15

○경기도고시 제 118호 사료성분등록 및 변경사항고시..... 15

○경기도고시 제 124호 '90춘기 사방지지정(추가)고시..... 17

○경기도고시 제 125호 육류 연동가격 고시..... 18

○경기도고시 제 127호 평택L.N.G 인수기지 1,2 단계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포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21

회람 | | | | | | | P1 12 24 |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01호 K.S 표시허가 취소공고..... 22
○경기도공고 제 102호 K.S 표시정지 처분공고..... 23
○경기도공고 제 106호 품질관리 등급사정 취소공고..... 24
○경기도공고 제 107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등록 신청공고..... 25
○경기도공고 제 109호 공인 신조 공고..... 27
○경기도공고 제 110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제출공고..... 29
○양주군공고 제 27호 도시계획 결정(도로)사업시행 사전 공람공고..... 30
○광주군공고 제 29호 공인 신조 공고..... 31
○안성군공고 제 55호 농지 조성에 따른 국통이용계획 일부변경공고..... 32

조 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조례 제 2018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위임사항) "별표"중 "보건과난"에 제 37호 다음에 제 38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별 표)

위 임 사 무

보 건 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38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의료기사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시장·군수
		②안경업소의 개설등록증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③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수리	동법 제13조의5	〃
		④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동법 제13조의6	〃
		⑤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청문	동법 제13조의7	〃
		⑥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17조의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조례 제 2019 호

경기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도로보수, 재해응급복구용으로"를 "도로보수용으로"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중기를 유상사용케 할 수 있다. 다만, 12 톤미만의 덤프트럭은 제외한다"를 "중기를 유상사용케 할 수 있다"로 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중기투입계획 수립) ①사업소장은 매년도 2월말까지 도 및 시·군의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중기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입계획이 수립되었을 시에도 당해 공사의 발주청은 공사일정에 따라 사업소 보유중기를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청에 대하여 동 공사를 사업소에 위탁하거나 도급시공케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에 중기가 없거나 사업소가 시공할 수 없다고 희시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1. 차선도색공사(페인트 도색에 한한다)

2.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확·포장공사(도당 2~3건 정도의 공사에 한한다)

3. 기타 공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 19 조 제 1 항중 "감면하거나 증액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시행 직영도로유지보수공사에 중기사용은 예외로 한다"를 "감면하거나 증액조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20조 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조례 제2020호

경기도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문학부문

3. 조형예술부문

4. 공연예술부문

제3조(수상대상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경기도인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문화상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년 3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규칙 제2062호

경기도문화상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수상대상자의 추천) 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학부문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경기도지회장, 소속지부장,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부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감

3. 조형예술부문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경기도지회장, 소속지부장,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부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감

4. 공연예술부문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경기도지회장, 소속지부장,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부장, 대학·총학장(전문대학장 포함),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감

6. 지역사회개발부문 : 시장·군수, 새마을운동중앙본부경기도지부회장,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부장

7. 체육부문 : 시군체육회장,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감

제2조중 제2항과 "별표"를 삭제한다.

제2조 제3항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현지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심사기준)중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1호 다음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학부문 : 소설, 시, 수필, 희곡, 시나리오, 아동문학, 평론등의 분야에서 창조적 문학활동을 통한 공헌

3. 조형예술부문 : 회화, 서예, 건축, 사진, 조각, 공예, 디자인등의 분야에서 창조적 예술활동을 통한 공헌.

4. 공연예술부문 :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연예, 영화등의 분야에서 창조적 예술활동을 통한 공연

6.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사회봉사,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 및 지방문화계발육성에 공헌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별지 제4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주 소 (소 속)	
직업(직위, 직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공사생활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년 월 일

현지확인자 ㊞

경 기 도 지 사 귀 하

경기도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년 3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경기도규칙 제 2063 호

경기도 소방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소방서 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사무분장) 제 1 항중 소방서 각과 및 계의 사무분장은 별표 1 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방 서 의 과 계 사 무 분 장 표

과 별	계	분 장 사 무
소 방	소 방	1.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비밀에 관한 사항 3. 의식회의 및 소방연혁에 관한 사항 4. 직원 신분, 상벌,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5. 직원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직원근태에 관한 사항 7. 서내 단속과 숙직에 관한 사항 8. 직원근무 배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근무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10. 소방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11.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원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과별	계	분 장 사 무
		13. 문서사행방법 및 내용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4. 성안문서의 통제 및 우표수불에 관한 사항
		15. 문서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금에 관한 사항
		17. 소방력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18. 과내 서무 및 타과계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소 방	장 비	1. 소방차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차량 부속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류보급 불출에 관한 사항
		4. 운전요원의 기술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구입물품 및 수리입회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자료제출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세입세출 현금과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8. 제증빙서 작성 및 경리장부 정리보전에 관한 사항
		9. 봉급계산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0. 물품구입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1. 국·공유재산관리, 영선에 관한 사항
		12. 비품 및 소모품 출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3. 급대여품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4.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과 별	계	분 장 사 무
방 호	방 호	1.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진압소방 및 구조에 관한 사항 3. 화재현장조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수난구조, 민방위대등 협조에 관한 사항 6.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 7. 소방장비를 동원하는 훈련(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방통신의 관리유지 및 지령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방호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 10.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2.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취급주임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14. 과내 서무 및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과 별	계	분 장 사 무
방 호	예 방	1. 방화사상 계몽선전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방화관리 및 소방훈련지도에 관한 사항 4. 소방검사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의 완비촉진과 지도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7. 건축관계 민원서류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8. 방화건축지도에 관한 사항 9.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제청에 관한 사항 10. 방화관리자 및 순찰원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 증명에 관한 사항 12. 무검정 소방용기계기구 및 약품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승인 제청에 관한 사항 14. 화재 예방관계 민원서류 조사처리 15.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13 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골재채취를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3. 26.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제 1 공구

2. 면 적 : 36,958 ㎡

3. 물 량 : 280,000 ㎥

4. 점 용 료 : 812,000,000 원

5. 허가기간 : 90.3 - 90.7.11

6. 피허가자 : 대림산업㈜ 대표이사 이 원 현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경기도고시 제116호

경기도고시 제82-360호로 지정된 다음 보호수에 대하여 산림법 제69조 및 동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구분 / 품격별	위 치	수 종	지정번호	수령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군 나 무	여 주 군 북 내 면 석 우 리	느티나무 (1본)	5-13-22	300 년	여주군 북내면 석우리 259	한명기

1990. 3. 28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17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3 월 29 일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장명 : 아세아항미
- 소재지 : 당초 : 안산시 반월공단 608-12
  변경 : 안산시 성곡동 633
- 대표자 : 강 형 모

구분	사료			등록	사료성분등록내역		사용방법
	종 류	명 칭	용 도	번호	향 미	부 형 제	사료톤당
	보조사료 (향미재)	케나인크 레이브외 13 종	애완동물용 외 13 종		기 등록	사항과 같음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18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변경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3 월 29 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 사료성분등록 및 변경등록사항 1 부

배합사료성분등록및변경등록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당초	한일사료공업 (주)	용인군기흥읍하갈리 213	최병덕	수입배합사료	개사료 2	육성견용	15-40-2	21.0	6.5	0.7	0.5	5.0	10.0
변경					〃	〃	〃	21.0	6.0	0.7	0.5	8.0	12.0
당초					개사료 8	자견, 육성견 노약견	15-40-8	10.0	3.0	0.3	0.2	1.5	5.0
변경					〃	〃	〃	9.0	4.0	0.3	0.2	3.0	10.0
등록					양어사료 3	광어, 육성용	15-50-3	47.0	4.0	1.8	1.0	8.0	20.0
등록	선진축산	이천군대월면사동리 114-1	이원복	배합사료	어린송아지 2	3개월이내	9-23-1	15.5	2.5	0.8	0.4	15.0	8.0
					착유 Ⅲ - 2	비유량 18 ~ 19 *kg*	9-30-1	17.0	2.3	0.8	0.4	15.0	10.0
당초					착유 Ⅳ	비유량 20 *kg*이상	9-31	20.0	2.0	0.7	0.4	10.0	10.0
변경					〃	〃	〃	19.0	2.0	0.7	0.4	10.0	10.0
당초					착유 Ⅳ - 2	비유량 30 *kg*이상	9-31-1	19.0	2.0	0.7	0.4	8.0	9.0
변경					〃	〃	〃	19.0	2.0	0.7	0.4	15.0	10.0
당초					육성우	고기소용 4 ~ 6개월	9-34-21	14.0	2.0	0.5	0.3	9.0	9.0
변경					〃	〃	〃	15.0	2.0	0.5	0.3	9.0	9.0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24 호

사방사업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 1 조 규정에 의거 이를 지정 고시한다.

1990 년 4 월 1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내역 : 별첨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이유 : 사방사업 시행
3. 제 한 사 항

   사방지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목죽의 벌채, 토석, 떼 수근, 초근, 생지, 낙엽, 송지, 수피의 채취 또는 채굴, 가축의 방목, 개간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 이동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 방 지 정 지 명 세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주소성명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시군	읍면	리 동	성 명	
가평	하	상판	산 102	임야	39,000㎡	1,400㎡	가평	하	상판 102	정진배	
〃	〃	〃	산 103	〃	167,306	8,600	인천	동구	화평 3	박영자	기지정 0.03 ha
〃	〃	〃	산 105	〃	21,400	3,200	포천	신북	심곡 311	이명준	
계			3 필		227,706	13,200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또는점유자주소성명				비고
시군	읍면	리동			㎡	㎡	시군	읍면	리동	성명	
가평	하	하판	산 120-2	임야	4,951,137	1,000			국	(산림청)	
계			1		4,951,137	1,000					
광명		철산	산 66-3	임야	2,182	2,18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4	삼덕주식회사 (주택)	
〃		〃	66-16	〃	6,281	2,818	〃	〃	〃	〃	
계			2 필		8,463	5,000					
성남	중원	상대원	50-1	구거	2,073	620				국	
〃	〃	〃	51-1	도로	1,240	16				국(건설부)	
〃	〃	〃	산 8	임야	16,562	101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188	김 이 정	
〃	〃	〃	산 10	〃	21,326	115	성 남		사송 10	이 원 정	
〃	〃	〃	산 142	〃	12,992	29	서울시	중 구	명동2가 53-1	이 종 민	
계			5 필		54,193	881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25 호

육 류 연 동 가 격 고 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4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쇠 고 기	정 육 500 g 당	5,650 원	
돼 지 고 기	박피품 (정육500 g 당)	1,800	
	미박피품(〃)	1,600	

○ 시행일 : 90.4.6

고 시 (안)

경기도고시 제 126 호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894-1 외 5필지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화성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0. 4. 2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분양주택)

나. 사업주체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4 호

인정건설㈜ 대표 이 종 근

다. 사업위치 :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894-1 외 5필지

라. 기 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지면적 (사업면적)	20,478.35 ㎡ (20,478.35)	20,360.55 ㎡ (24,599.71)
사업규모	5 - 6층 9동 512세대	5 - 6층 9동 512 세대
사 업 비	14,752,119 천원	14,752,119 천원
사업기간	89. 7 - 90.12.31	89. 7 - 90.12.31

2. 지적승인 및 사용할 토지조서 (별첨 1과 같음)

3. 도시계획 시설 (시설녹지) : 금회 변경없음

4. 도 면 : 별첨과 같음 (생략)

5. 기 타 : 관계도서는 화성군청 도시과에 보관 "끝"

(별첨 1)

지 적 승 인 및 사 용 할 토 지 조 서

(단위 : ㎡)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	사 업 면 적		대 지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주 소	성 명	
계			25,144	20,478.35	24,599.71	20,478.35	20,360.55			
화성군반월면 건건리	892-4	전	1,946	1,785.27	1,785.27		1,667.47	강남구역삼동 694 보원빌딩302호-14	인정건설㈜ 이 종 근	
〃	894-1	도로	526	0	267.66	0	0	상 동	상 동	
〃	894-9	임야	5,190	3,821.04	5,064.78	3,821.04	3,821.04	〃	〃	
〃	894-10	〃	13,367	11,528.51	13,367	11,528.51	11,528.51	〃	〃	
〃	894-12	〃	1,984	1,790.26	1,984	1,790.26	1,790.26	〃	〃	
〃	894-13	〃	2,131	1,553.27	2,131	1,553.27	1,553.27	〃	〃	

고 시

경기도고시제 127호

○ 아산 산업기지개발구역내 평택 L.N.G인수기지 1,2단계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한다.

1990. 4. 3.

경 기 도 지 사

다 음

1. 사업의 명칭 : 평택 L.N.G인수기지 1,2단계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포장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

나)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 희 성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당초와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당초와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83.10.15-90.3.31
└ 변 경 : 83.10.15-90.9.31 (6개월)

6. 공시송달 방법(당초와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당초와 변경없음)

8. 조 건(당초와 변경없음)

공 고

경기도공고제 101호

KS표시 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 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3.29.

경 기 도 지 사

1. 업체명 : 수봉산업사
2. 소재지 : 포천군 일동면 길명리 680
3. 대표자 : 박 우 석
4. 허가번호 : 제3941호, 제3942호
5. 규격번호 : KSF4002, KSF4004
6. 품 명 : 속빈시멘트블록, 시멘트벽돌
7. 종류 및 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취소일자 : 90.3.29
9. 취소사유 : 공장폐업으로 KS표시품 생산 불가능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102 호

KS표시 정지 처분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3.29.

경 기 도 지 사

1. 업체명 :㈜라이프통상
2. 소재지 :부천시 삼정동 48-40
3. 대 표 :양 창 화
4. 허가번호 :제 3437 호
5. 규격번호 : KSF3109
6. 품 명 :목제문 및 문틀
7. 종류 및 등급 :목제문
8. 처분기간 : '90.3-'90.6 (3개월)
9. 처분사유 : KS규격 미달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106 호

품질관리 등급사정 취소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등급사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0. 3.30.

경 기 도 지 사

1. 사정번호 : G마2갑 - 403
2. 사정등급 : 2갑등급
3. 사정공장명 : 세창공업사
4. 대표자 : 정규철
5. 소재지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425-1
6. 사정장품명 : 유아용삼륜차, 아동용이륜자전거
7. 취소일자 : '90.3.30
8. 취소사유 :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 107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 신청 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 6 조, 동법 시행령 제 9 조, 제 9 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신청을 공고하오니 아래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990. 4. 3.

경 기 도 지 사

아 래

1. 등록대상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내에 둔자로서, 년간 단독주택 20 호, 공동주택 20 세대이상을 건설공급하는 자와 10,000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등록기준

구 분	자 본 금		기 술 자	사무실
	법 인	개 인		
주택건설 사 업 자	자 본 금 1억원이상	자산평가액 2억원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33 ㎡이상
대지조성 사 업 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3. 등록공고기간 : '90.4.3 ~ '90.4.12 (10일간)

4.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90.4.13 ~ '90.4.19 (6일간)

※ 공휴일제외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5. 등록신청서 교부 : 경기도청 주택과

6. 〃 접수 : 〃 민원실

7. 등록신청제출서류 :

가. 등록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1부

다. 법인 및 개인의 신원증명서 (법인인 경우는 임원도 포함)

라.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원본대조) 및 고용계약서와 당해 기술자의 주민등록초본,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 각 1부
(다만,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치 못할 시는 고용계약서로 갈음하되 등록증을 교부받을 날로부터 증빙서류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할것)

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타인 소유는 등기부등본과 임대계약서사본 및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향후 1년간차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사. 등록수수료 (건당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

아.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법인은 자본금,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의 1000분의 2) 1부

8. 도청민원실에 등록신청서 접수전에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경기도지회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38-7411 ~ 2, 수원시 권선구 교동 130-9)

9. 기타사항

가. 상기 사항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되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하고 원본을 제시하기 바라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주택과 (수원 42-5101-9 (교환), 42-4970) 또는 시·군의주택, 도시 건설과,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경기도지회 (수원 38-7411 ~ 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경기도공고제 109호

대통령 령 제 12,923호(90.2.12)로 군포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및 직인 인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포소방서 분임경리관 인



군포소방서 세입세출 외 연금 출납 공무원 인



군포소방서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인



군포소방서 물품출납 공무원 인



군 포 소 방 서 장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군포 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경기도 군포소방서 분회장 인



군포소방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인



군포소방서 분임 세입 징수관 인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경기도공고제 110 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을 휴(폐)지한 경우에는 30 일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동신고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동법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토록 되어있어 동신고없이 제조업을 휴(폐)지한 아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공문이 반송되었기 공시송달 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기한내 의견이 없을경우 허가 취소 됩니다.

1990. 4. 2.

경 기 도 지 사

1.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내용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주)일진 전기	조용구	3-5-35 3-10-61 3-12-46 3-16-4	소형단상 변압기류 광원응용기계 기구류 기타교류용 전기기계기구류 금속제 전선관부속품류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837-1

2. 의견제출 기한 : 90. 4.10.

경 기 도 보

제 2341 호

양주군공고제 27 호

공 고

경기도고시 제 77 -11 (77.1.27)호로 도시계획결정(도로)및 경기도 고시 제 78-266 (78.6.21)호로 지적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동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공람 공고합니다.

1990. 3.

양 주 군 수

1. 사업시행내용

지구명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연 장	사업시행지	시행자
신 산	중 로	3	4	12	202	남면신산리 287 번지 외 5 필지	양주군수
방 성	중 로	3	1	12	770	백석면오산리 93 번지 외 78 필지	〃

2. 공람기간 : 1990.3.28-4.11 (15일간)

3. 공람장소 : 양주군청 새마을과

4. 기 타 :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양주군청 새마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광주군제 29 호

1. 광주군 공인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광주군 공인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사용개시일시 : 1990.4.1

○ 개각인영 및 폐기인영 : 아래와 같음

1990. 4. 1.

광 주 군 수

구 분	민원사무전용 광주군수인	민원사무전용 광주군계인
폐 기 인 영		
구 분	민원사무전용 광주군수인	민원사무전용 광주군계인
폐 기 인 영		

안성군공고제55호

공 고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요청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3.30.

안 성 군 수

1. 건 명 : 농지조성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일부 변경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안성군 이죽면 두교리 산176번지 일원

나. 면 적 : 30,785㎡ (9312 평)

다. 변경용도지역 : 산림보전지역 - 개발촉진지역 (농지개발지구)

라. 변경사유 : 농지조성 (과수원 및 관리사 조성)

마. 변경도면 : 안성군청 도시과 및 이죽면사무소에 비치

3. 의 견

본 국토이용계획 일부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42 호
1990년 4 월 9 일(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32호 사료성분등록 변경사항 고시 2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14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3
○경기도공고 제 115호 차량통행의 금지(제한)에 관한공고 4

시 군 행 정

○파주군고시 제 9호 금촌도시계획시설(소로2류9호선)사업시행 허가고시..... 5
○의정부시공고제 50호 공인신조 공고 6
○구리시공고 제 24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27
○구리시공고 제 26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27
○군포시공고 제 26호 공인신조 공고 29
○의왕시공고 제 25호 공인신조 공고 30
○하남시공고 제 20호 공인신조 공고 32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 기 도 보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32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4. 6.

경 기 도 지 사

사 료 성 분 등 록 변 경 사 항

o 공 장 명 :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

o 소 재 지 :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89-6

o 대 표 자 : 변경전 : 유 만 희
변경후 : 신 세 근

구분	사료			등록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 사료	어린병아리외 22종	산란 6주이하	1-1-1		변경전	등록사항과		같음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14 호

K . 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4. 6.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동진산업㈜ 신갈공장
2. 소 재 지 : 용인군 구성면 언남리 392-1
3. 대 표 자 : 이 명 수
4. 허 가 번 호 : 제 4374 호, 제 4375 호
5. 규 격 번 호 : KSF 4301, KSF 4302
6. 품 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전주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정종류 등급
8. 취 소 일 자 : '90. 4. 6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 제 115 호

차량통행의 금지(제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53 조 및 동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1990. 4. 7.

공고자 : 경 기 도 지 사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지방도 328 호(대신 - 단월선)
2. 구 간 :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 양동면 고송리(14 ㎞)
3.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상 : 8 톤이상 화물차량
4. 기 간 : 1990. 4.10 - 1991. 8.10 (16개월)
5. 통행을 금지 또는(제한)하는 이유 : 교량(삼가 1 교, 삼가새마을교)노후
6. 우회도로 : 양평. 청운. 용두리 - 청운. 갈운 - 양동. 금왕리(26 ㎞)
7. 기 타 : 상기 사항을 위반할시는 도로법 제 84 조에 의거 고발 조치

고 시

파주군고시 제 9 호

금촌도시계획시설(소로 2류 9호선)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거 시행허가하고 동법 제 24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4. 2.

파 주 군 수

다 음

1. 사업시행내용

등급	류별	번호	사업량(M)	폭 원(M)	시 점	종 점
소로	2	9	65	8	금촌리 67-3	금촌리 65-17

2. 사업시행자 : 서울시 구로구 궁동 204번지 김인택 외 1인

3. 사업기간 : 1990. 4. 2 - 1990.12.31

4. 공람장소 : 파주군청 도시과 도시개발계

5.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동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의정부시공고 제 50 호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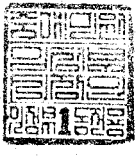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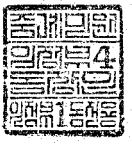
의정부시 공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동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3.

의 정 부 시 장

○ 사용일시 : 1990. 4. 3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 1 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 4 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 2 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 3 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송산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 2 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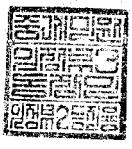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자금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의정부시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시장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2동장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효원동장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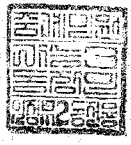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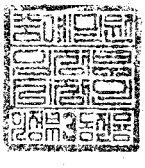
경 기 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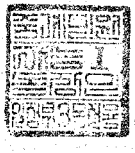
제 234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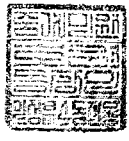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 월 3 일 현 재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 월 3 일 현 재
의정부3동장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장 곡 동 장 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송 산 동 장 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가 능 2 동 장 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자 금 동 장 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가 능 3 동 장 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가 능 1 동 장 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녹 양 동 장 인 (의정부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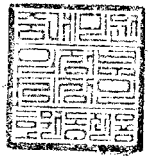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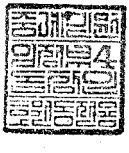
경 기 도 보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월 3일 현 재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월 3일 현 재
의정부시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송산동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2동장인 (의정부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자금동장인 (의정부2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의정부2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의정부2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의정부2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시장인 (의정부3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의정부3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의정부3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의정부3동 증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 2 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송산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 2 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자금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 3 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 1 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의정부 3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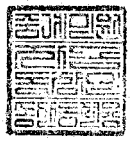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시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2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송산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2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자금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의정부4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시장인 (호원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호원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호원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호원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2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송산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2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자금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호원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시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2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송산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2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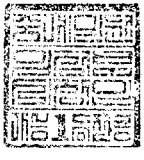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자금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장곡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시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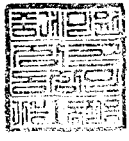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2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2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자금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송산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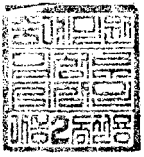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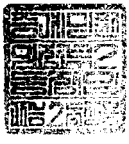
경 기 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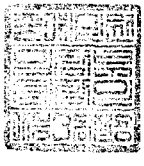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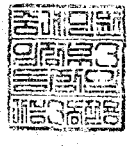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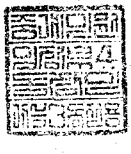
제 2342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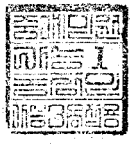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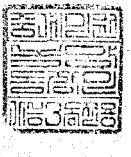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 월 3 일 현 재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 월 3 일 현 재
의정부시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의정부3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의정부1동장인 (자금동중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의정부4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의정부2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호원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장곡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가능2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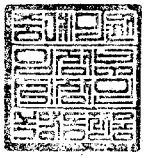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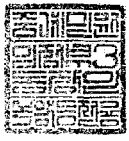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송산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자금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시장인 (가능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가능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가능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가능1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 월 3 일 현 재	날인년월일 / 공 인 명	1990년 4 월 3 일 현 재
의정부 2 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호원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장곡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가능 2 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송산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가능 3 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자금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녹양동장인 (가능 1 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 월 3 일 (신 조) 개 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시장인 (가능2동 중계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2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송산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자금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가능2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시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 2 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송산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2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자금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녹양동장인 (가능3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공인명 \ 날인년월일	1990년 4월 3일 현재	공인명 \ 날인년월일	1990년 4월 3일 현재
의정부시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3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1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4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의정부2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호원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장곡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1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날인년월일 / 공인명	1990년 4월 3일 현재
송산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2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자금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가능3동장인 (녹양동 중계 민원 전용)	 1990년 4월 3일 (신조) 개각
	1990년 월 일 (신조) 개각		1990년 월 일 (신조) 개각
	1990년 월 일 (신조) 개각		1990년 월 일 (신조) 개각

구리시 공고 제24호

공인개각사용 및 폐공인공고

구리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사용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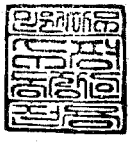
1990. 4. 2.

구 리 시 장

다 음

1. 개각사용 및 폐기일 : '90. 4. 16

2. 개각 및 폐기공인

공 인 명	구리시수평동장민원사무전용인	
	개 각 사 용 인	폐 기 인
인 영		

구리시 공고 제26호

신조 및 폐기인영공고

구리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6.

구 리 시 장

○ 사용 및 폐기일 : 90.4.16

신 조 및 폐 기 인 영

○ 신조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구리시환경사업소장인	구리시환경사업소계인	구리시환경사업소 분임경인관인
인 영			
공인명	구리시환경사업소 전도자금출납원인	구리시환경사업소 물품출납원인	구리시환경사업소세입세 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영			

○ 폐기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구리시하수종말처리 사업소장인	구리시하수종말처리 사업소계인	구리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영			

경 기 도 보

제 2342 호

공 인 명	구리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전도자금출납원인	구리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물품출납원인
인 영		

군포시공고 제 26 호

공 고

군포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동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3.

군 포 시 장

ㅇ 사용일시 : 1990 년 4 월 6 일

군포시보건소장인	군포시보건소계인	군포시보건소분임경리관인	군포시보건소물품출납원인
			

제 2342 호 경 기 도 보

군포시보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군포시보건소물품관리관인	군포시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	군포시보건소전도자금출납원인
			
군포시보건소보건사회부소관일반회계인	군포시보건소국민저축조합장인		
			

의 왕 시

의왕시공고 제 25호 1990.4.3

의왕시보건소 개소에 따른 신조공인의 인영을 의왕시 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용개시일 : 90.4.2

1990. 4. 3.

의 왕 시 장

의왕시보건소장인	의왕시보건소계인	의왕시보건소 분임경리관인	의왕시보건소 물품관리관인
			
의왕시보건소전도 자금출납원인	의왕시보건소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의왕시보건소 물품출납원인	의왕시보건소 수입금출납원인
			
의왕시보건소보건 사회부소관 일반 회계인	의왕시보건소국민 저축조합장인		
			

공 고

하남시 20호

90년 3월 17일자로 신설된 하남시보건소 공인에 대하여 하남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하 남 시 장

○ 신조공인 ○ 신조공인사용일시 : 1990년 4월 2일

하남시보건소장인	하남시보건소 전도자금출납 원인	하남시보건소 수입금출납원인	하남시보건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하남시보건소 물품출납원인
				
하남시보건소 물품관리관인	하남시보건소 분임경리관인	보건사회부소관 하남시전도자금 출납원인	하남시보건소 계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43 호
1990년 4 월 16 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21호 경기도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 2
○경기도조례 제2022호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중 개정조례 2
○경기도조례 제2023호 경기도 청소년상 조례 3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64호 경기도 청소녀 자립지원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5
○경기도조례 제2022호 경기도 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13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72호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중 개정규정 20
○경기도훈령 제 873호 북부출장소 사무위임 규정중 개정규정 21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37호 배합사료 성분등록 고시 24
○경기도고시 제 139호 반월도시계획시설(시장 주차장)지적승인 및 고시 26
○경기도고시 제 140호 '9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세입세출 예산고시 ... 27
○경기도고시 제 141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40
○경기도고시 제 142호 골재채취허가(한강개발제2공구)고시 41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20호 K.S 표시허가 취소공고 41
○경기도공고 제 123호 K.S 표시허가 취소공고 42
○경기도공고 제 125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에 대한의견제출 공고..... 43

시 군 행 정

○의정부고시 제 54호 공인신조 공고 44

조 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4월 13일

경기도조례 제 2021 호

경기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6 조중 "시장(군수)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4월 13일

경기도조례 제 2022 호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위원회 기능)중 제 3 호 "지급대상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시군 지원사업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기금관리) 제3항 본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에 관하여는 그 출연기금의 범위안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사업계획수립) ①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도에 제출한다.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원계획은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③ 확정된 년간 지원계획이 연도중 사업기금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원사업 수정계획을 작성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청소년상조례를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4월 13일

경기도조례 제2023호

경기도청소년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장한 청소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경기도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대상

2. 근로부문
3. 효행부문
4. 봉사부문
5. 나라사랑부문
6. 면학부문
7. 과학기술부문
8. 예·체능부문
9. 개척부문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시상일을 기준하여 2년이상 경기도내에 거주한 자로서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로 한다.

제4조(수상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도단위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자 결정) ①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결과 수상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상) ①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4월 13일

경기도규칙 제 2064 호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 2조(추천대상자 신청절차) 조례 제 7조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한 자립지원금 지급신청시에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학자금지원희망자)
3. 사업계획서 1부(농·어촌 정착희망자, 별지 제 2호서식)
4. 서약서(별지 제 3호서식)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대상자선발 및 지급신청) 시장·군수는 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발한 후 읍·면·동에 통보하고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지급정원) 자립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정원은 자립기금 한도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 5조(지급방법 및 한도액)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립지원금에 대하여 도지사는 당해 시군에 자립지원금을 송금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이나 위탁교육훈련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5조 다음에 제 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지급실적보고)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금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자립지원금집행상황을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익년 1월 20까지 년간 자립지원금 지급실적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자립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5조 제2항중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립지원금지급한도액및지급기간

구 분	1인당 지원기준	지급기간	지 급 방 법	비 고
중·고등학교 수업료	공납금전액 (납부고지금액)	3개년간	도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를 통하여 매분기별로 지급	
직업훈련비	기술, 직업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	1개년간 이내	도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를 통하여 월별, 분기별로 지급	
농어촌정착 자립지원금	사업자금일부	일 시	도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를 통하여 일시 지급	
기 타	자립자금일부 (교육비)	분할또는 일 시	도위원회 또는 시군위원회를 통하여 분할 또는 일시지급	

* 약어 ┌ 도 위원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 시군위원회 : 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별지 제1호서식)

자립지원금지원신청(추천)서	지원구분	( ) 학자금지원 ( ) 직업(기술)훈련 ( ) 농어촌정착 ( ) 기타

신청인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학 력	19 학교 □ 졸 업 □ 졸업예정	
지원사업	학과훈련기관 또는 사업장		학과, 분야 또는 종목		지원신청액
	기 간	19 . . . ~ 19 . . 년(개월)			원

가 족 상 황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연 령	교육정도	건강상태	직 업 (구체적으로)	월평균소득 (근로소득)

주거상황	□ 자가 □ 전세 □ 월세 □ 친척 기타	월간총소득액	(천원)

재산상황		
	부동산	·주택 천원 ·모지(전답) 천원(전: 평, 답: 평)
	동 산	·임대보증금 천원 ·기타 천원

본인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립지원금을 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보호자(성명) ㊞

위 사람을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19 년 월 일

음 면 동 장 ㊞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학자금지원자에 한함) 1부
3. 사업계획서(농어촌지원정착자에 한함) 1부
4.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1. 주 소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3. 지원희망과목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본인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으며 앞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것을 보호자와 연명으로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본인 성명 ㊞

보호자 성명 ㊞

(본인과의 관계 :)

시 장 · 군 수 귀하

(별지 제 4 호 서식)

청소년자립지원기금교부신청서 (　　분기)

분서번호

수신

발신

(단위 : 천원)

과 목	① 연간계획		② 기교부		③ 금회교부		②+③ 교부총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학 자 금									
농어촌정착금									
교 육 수 련 비									
연 장 아 지 원 금									

위와 같이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 교부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읍면동장
시장·군수　　㊞

시 장 · 군 수 귀하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별지 제 5 호 서식)

청소년자립지원기금집행상황(분기)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단위 : 원)

지원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학교 또는 훈련기관명	지원대상자 지 급 액	지원대상자 지급액누계	비 고
과 목	종 목						

위와 같이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집행상황을 보고합니다.

19 년 월 일

읍면동장

시장·군수 ㊞

시 장 · 군 수

경 기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년월일	적 요	예 탁 금 내 역					인출액	예탁금 잔 액	이 자 발생액	이 자 수납액	비 고
		금 액	종 별	계좌번호	이 율	기 간					

(별지 제 7 호 서식)

자립지원금지급대장

년월일	적 요	채 주	지 급	비 고

(별지 제 8 호 서식)

현 금 출 납 대 장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을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4월 13일

경기도규칙 제2065호

경기도청소년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청소년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대상 : 각 부문 수상후보자중 행실이 가장 뛰어나 여타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2. 근로부문 : 근면과 성실로 산업체에서 보람을 갖고 정진하는 청소년
3. 효행부문 : 웃어른과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행실이 뚜렷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청소년
4. 봉사부문 :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러운 이웃을 돕는 청소년
5. 면학부문 : 역경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
6. 과학기술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
7.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 체육활동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청소년
8. 나라사랑부문 :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9. 개척부문 : 농어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보람을 갖고 정진함으로써 농어촌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부 (별지제2호서식)
3. 현지확인서 1부 (별지제3호서식)
4. 기타 공적관계 증빙자료 (사진, 신문기사 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호육성계장이 된다.

제6조(심사결과의 작성)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수상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확인)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기도청소년상후보자추천서

피추천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을 년도 경기도청소년상 수상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진하오니 심사 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공적조서 3부

2. 현지확인서 1부

3. 기타 공적관계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추 천 자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별지 제 2 호서식)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자 원명)		
②주민등록 번 호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생년월일)			
④국 적			
⑤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 (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 (50 자 내외)		⑫ 공적 분야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	
⑰직 급		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19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직인

1202-2 (2-1) 일(1)
1984.1.26 승 인

190 ㎜ × 268 ㎜ 신문용지 54 g/㎡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⑲ 년 월 일	⑳ 이 력	㉑ 년 월 일	㉒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 월 일	㉔ 내 용	㉕ 년 월 일	㉖ 내 용

㉗ 공 적 사 항

(별지 제 3 호서식)

현 지 확 인 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학 년)	성 별 (세)	성 명	비 고

2. 현지확인사항

주 소		수공기간	년 월
현지확인내용			
확인의견			

3.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별지 제 4 호서식)

경기도청소년상심사결과

부문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심사대상자명	심 사 의 견	선 정 결 과

경 기 도 보

경기도훈령 제872호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 정원) 제13항 "별표5"중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위생시험소의 계난 6을 5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을 5로, 7급의 소계 4를 3으로, 수의사보 4를 3으로 하며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계난 1을 3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을 3으로 하고, 7급의 소계와 수의사보에 각각 2를 삽입하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의 계난 8을 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8을 7로, 7급의 소계 6을 5로, 수의사보 6을 5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훈령 제873호

북부출장소 사무위임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북부출장소사무위임규정중개정규정

북부출장소 사무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위임사항) "별표"중 위생과소관 위임사무중 "제4호 식품제조업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을 "식품제조업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하고 "제5호 식품제조업 위생검사(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제조업 위생검사(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하며 "제6호 식품제조업 품목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제조 품목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제7호 식품제조품목 조건부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제조품목 조건부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제8호 식품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 병조림)"를 "식품제조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제9호 식품제조영업소 상호, 주소, 성명,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제조영업소 상호, 주소, 성명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제10호 식품제조영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제조영업 휴업(폐업, 재개업)신고(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제11호 식품 위생관리인 선임신고(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

식품)"로 "제12호 식품제조 영업허가증 재교부(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제조 영업허가증 재교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하며, "제18조 식품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를 "식품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아이스크림, 통·병조림, 유가공품, 식육제품, 인스탄트식품)"로 하고 "제19"호 내지 "제22호"를 삭제한다.

상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5호" 내지 "제12호"를 "제6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13호" 내지 "제17호"를 "제15호" 내지 "제19호"로 하며 "제18호" 내지 "제19호"를 "제24호" 내지 "제25호"로 하고 "제20호"를 제2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14호", "제20호" 내지 "제23호"와 "제26호" 및 "제28호"를 신설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계량기 제작(수리)업 정지처분 및 취소

14. 수출용 원자재 단위소요량 책정

20. 무역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21. 무역업자 지위 승계신고

22. 무역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23. 과태료 부과징수

26. 실량표시 상품에 대한 조치

28. 계량기(LPG)의 수리 검정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3호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운임인가(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는 "관할 군지역의 시내버스

운임인가 및 변경허가(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로 하고" "제 4호 운송약관 인가"는 "운송약관 인가 및 변경인가"로 하며 "제 55호" 내지 "제 59호"를 "제 63호" 내지 "제 67호"로 하며 "제 55호 내지 제 62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55. 자동차 정비사업 위치 및 시설변경허가

56. 자동차 정비사업 변경신고

57. 자동차 정비사업 개시신고

58. 자동차 정비사업 휴지(폐지)신고

59. 자동차 정비사업 개선명령

60. 자동차 정비사업 개선명령 이행신고

61. 자동차 정비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62. 자동차 정비사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농어촌개발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1호" 다음에 "제 2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전용 협의(도 농지전용 조정심의대상은 제외)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37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별표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4 월 13 일

경 기 도 지 사

(별 표)

배합사료성분등록 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번호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퓨리나 코리아 (송탄공장)	송탄시 장당동 85-1	폴반웰레검	배합사료	오리 1	새끼오리 (0~2주)	5-42-1	20.5	2.5	0.6	0.4	6.0	9.0
					〃 2	육성오리 (3~8주)	5-42-2	16.0	2.5	0.6	0.4	6.0	9.0
					〃 3	육성오리 (9주~산란1개월전)	5-42-3	14.0	2.5	0.6	0.4	7.0	9.0
					〃 4	종계오리 (전산란기간)	5-42-4	18.0	2.5	2.5	0.4	7.0	14.0
					종 계	수닭종계용	5-10-22	12.0	2.0	0.6	0.4	8.0	9.0
	세한유통	의왕시 고천동 234-6	배 주 혁	수입배합사료	개사료 7	개사육용 (생후3주~8개월)	90-40-7	11.4	4.9	0.5	0.3	0.7	2.5

경 기 도 보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39 호

1. 건설부고시 제 96 호('90.2.27로 변경결정된 반월 도시계획시설(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가. 반월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계		31,027	
	19	소 매 시 장	안산시 초지동	22,000	
	23	제 23 주차장	상 동	9,027	

나. 시설별 토지조서 : 별 첨

다.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경기도 고시 제140호

199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고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0년도 제 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 회계별(총괄)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1회추경	비고
합계	763,388,545	621,859,771	141,528,774	
일반회계	656,144,873	540,726,259	115,418,614	
특별회계	107,243,672	81,133,512	26,110,160	
주택사업	4,090,548	4,479,271	△388,723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1,765,175	1,552,175	213,000	
의료보호기금	11,679,130	10,667,019	1,012,111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9,320	68,320	1,000	
치수사업	21,010,074	15,160,290	5,849,784	
시화지구개발지원	28,700,000	18,000,000	10,700,000	
한강개발	36,843,373	28,449,660	8,393,713	
공유임야관리	2,257,390	1,857,913	399,477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828,662	898,864	△70,202	

1.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1 회 추 경	비 고
합 계	656,144,873	540,726,259	115,418,614	
지 방 세	316,888,000	291,888,000	25,000,000	
세 외 수 입	159,364,401	64,369,661	94,994,740	
경상적세외수입	13,671,564	10,654,349	3,017,215	
재산임대수입	12,253	12,253	-	
사 용 료 수 입	1,770,094	1,794,354	△24,260	
수 수 료 수 입	7,141,830	7,141,830	-	
사 업 장 수 입	1,022,387	980,912	41,475	
징 수 교 부 금	-	-	-	
이 자 수 입	3,725,000	725,000	3,000,000	
임시적세외수입	145,692,837	53,715,312	91,977,525	
재산매각수입	12,445,775	10,350,000	2,095,775	
이 월 금	56,570,736	30,903,000	25,667,736	
기 부 금	-	-	-	
융자금 회수 수입	2,000,000	2,000,000	-	
전 입 금	-	-	-	
부 담 금	69,144,821	5,942,436	63,202,385	
잡 수 입	5,531,505	4,519,876	1,011,629	
과 년 도 수 입	-	-	-	
지 방 교 부 세	22,901,000	21,711,000	1,190,000	
보통교부세	-	-	-	
특별교부세	16,789,000	15,599,000	1,190,000	
증액교부세	6,112,000	6,112,000	-	
보 조 금	152,952,472	158,718,598	△5,766,126	
지 방 채	4,039,000	4,039,000	-	

나.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 회계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1 회 추 경	비 고
합 계	656,144,873	540,726,259	115,418,614	
제 1 장 의 회 비	4,632,589	4,407,629	224,960	
선 거 비	2,957,380	2,957,380	-	
의 회 운 영	1,675,209	1,450,249	224,960	
제 2 장 일 반 행 정 비	50,176,207	41,719,704	8,456,503	
기 획 행 정 비	6,804,461	6,410,605	393,856	
내 부 행 정 비	21,334,969	19,544,250	1,790,719	
재 무 행 정 비	22,036,777	15,764,849	6,271,928	
제 3 장 사 회 복 지 비	90,202,396	86,930,825	3,271,571	
복 지 사 업 비	54,677,734	52,737,596	1,940,138	
보 건 위 생 비	35,524,662	34,193,229	1,331,433	
제 4 장 산 업 경 제 비	100,237,446	95,534,401	4,703,045	
농 수 산 비	68,386,114	62,249,656	6,136,458	
임 업 비	14,677,044	12,918,715	1,758,329	
상 공 운 수 비	17,174,288	20,366,030	△3,191,742	
제 5 장 지 역 개 발 비	238,861,480	152,984,742	85,876,738	
도 시 개 발 비	46,559,544	44,335,921	2,223,623	
도 로 치 수 사 업 비	151,738,666	73,775,066	77,963,600	
지 역 개 발 사 업 비	40,563,270	34,873,755	5,689,515	
제 6 장 문 화 및 체 육 비	29,986,716	26,644,093	3,342,623	
문 화 예 술	18,452,109	16,574,214	1,877,895	
체 육	10,118,888	8,674,317	1,444,571	
교 육	1,415,719	1,395,562	20,157	
제 7 장 민 방 위 비	4,409,287	3,678,606	730,681	
민 방 위 비	2,889,188	2,596,523	292,665	
소 방 비	1,520,099	1,082,083	438,016	
제 8 장 지원및기타경비	137,638,752	128,826,259	8,812,493	
지 방 채 상 환	16,518,398	16,518,398	-	
제 지 출 금	1,594,830	1,739,420	△144,590	
징 수 교 부 금	114,838,670	104,175,111	10,663,559	
조 정 교 부 금	-	-	-	
예 비 비	4,686,854	6,393,330	△1,706,476	

住宅事業 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수입	사업수입	3,293	322,448	△319,155	
사업외수입	이월금	230,000	230,000	-	
	융자금회수수입	601,823	601,823	-	
	전입금	2,910,000	3,300,000	△390,000	
	잡수입	345,432	25,000	320,432	
세입합계		4,090,548	4,479,271	△388,723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비	농어촌주택	4,027,286	4,418,130	△390,844	
예비비	예비비	63,262	61,141	2,121	
세출합계		4,090,548	4,479,271	△388,723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외수입	이월금	1,112,111	100,000	1,012,111	
	융자금회수수입	60,000	60,000	-	
	전입금	10,292,018	10,292,018	-	
	잡수입	215,001	215,001	-	
세입합계		11,679,130	10,667,019	1,012,111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관리비	기금운영비	294,677	293,677	1,000	
사업비	의료보호비	10,258,916	10,258,916	-	
예비비	예비비	1,125,537	114,426	1,011,111	
세출합계		11,679,130	10,667,019	1,012,111	

道路補修 重機運營 管理 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수입	사업수입	950,705	950,705	-	
사업외수입	이월금	551,470	551,470	-	
	전입금	213,000	-	213,000	
	잡수입	50,000	50,000	-	
세입합계		1,765,175	1,552,175	213,000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관리비	중기사업관리	571,876	569,797	2,079	
사업비	중기운영관리	1,132,097	749,714	382,383	
예비비	예비비	61,202	232,664	△171,462	
세출합계		1,765,175	1,552,175	213,000	

새마을 所得 特別支援 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수입	사업수입	320	320	-	
사업외수입	이월금	9,000	9,000	-	
	융자금회수수입	60,000	59,000	1,000	
세입합계		69,320	68,320	1,000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관리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관리	776	776	-	
사업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0,320	59,320	1,000	
예비비	예비비	8,224	8,224	-	
세출합계		69,320	68,320	1,000	

治 水 事 業 特 別 會 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수입	사 업 수 입	7,624,554	7,624,554	-	
사업외수입	이 월 금	5,949,784	100,000	5,849,784	
	전 입 금	5,165,736	5,165,736	-	
	잡 수 입	2,270,000	2,270,000	-	
세 입 합 계		21,010,074	15,160,290	5,849,784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관 리 비	치수 사업 관리	3,263,237	3,263,237	-	
사 업 비	치 수 사 업	17,537,490	11,776,808	5,760,682	
예 비 비	예 비 비	209,347	120,245	89,102	
세 출 합 계		21,010,074	15,160,290	5,849,784	

제 2343 호

始華地區開發支援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수입	사 업 수 입	28,682,000	17,982,000	10,700,000	
사업외수입	잡 수 입	18,000	18,000	-	
세 입 합 계		28,700,000	18,000,000	10,700,000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관 리 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관리	600,792	555,994	44,798	
사 업 비	시화지구개발지원	27,914,765	17,259,563	10,655,202	
예 비 비	예 비 비	184,443	184,443	-	
세 출 합 계		28,700,000	18,000,000	10,700,000	

漢江開發事業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수입	사업수입	19,710,000	15,660,000	4,050,000	
사업외수입	이월금	7,776,663	3,437,000	4,339,663	
	전입금	2,500,000	2,500,000	-	
	잡수입	34,710	30,660	4,050	
지방채	지방채	6,822,000	6,822,000	-	
세입합계		36,843,373	28,449,660	8,393,713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관리비	한강개발사업관리	458,125	311,604	146,521	
	한강개발사업	32,343,510	25,604,170	6,739,340	
	지방채상환	2,200,000	2,200,000	-	
	예비비	1,841,738	333,886	1,507,852	
세출합계		36,843,373	28,449,660	8,393,713	

公有林野管理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수입	사업수입	1,590,979	1,151,226	439,753	
사업외수입	이월금	666,411	706,687	△40,276	
세입합계		2,257,390	1,857,913	399,477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비	공유림조성사업	2,238,810	1,839,333	399,477	
예비비	예비비	18,580	18,580	-	
세출합계		2,257,390	1,857,913	399,477	

八堂上水源 保護區域 管理 特別會計

□ 세 입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사업외수입	전입금	34,725	106,725	△72,000	
	이월금	148,346	-	148,346	
	잡수입	645,591	792,139	△146,548	
세입합계		828,662	898,864	△70,202	

□ 세 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당초	1회추경	비고
관	항				
관리비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	716,073	782,139	△66,066	
사업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사업	34,725	106,725	△72,000	
예비비	예비비	77,864	10,000	67,864	
세출합계		828,662	898,864	△70,202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공 고 문

경기도 고시제 141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 4 . 16 .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ha	ha	ha			
용인	이동	서	산212	임야	37.02	0.01	0.01			
		//	// 238	//	13.69	4.96	4.96		서울시강남구방배동	
		//	// 239	//	13.00	5.20	5.20	골프장 조성	759-3 삼호APT10동 802호	
		//	// 239	//	12.29	2.00	2.00			
		//	// 240	//	14.99	8.00	6.77		이준호외 1인	
		//	// 240	//	//	5.00	5.00			
	계					25.17	23.94			

2. 해제신청자 : 주 소 용인군 이동면 서리 772 - 1

성 명 뉴경기관광㈜ 대표 이 동 준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경기도 고시제 142 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구역내 '90 골재채취를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 4 . 16 .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2 공구

(2) 면 적 : 54,744 ㎡

(3) 물 량 : 603,000 ㎥

(4) 점 용 료 : 1,748,700,000 원

(5) 허가기간 : '90.4.17 - '90.8.27 (132일간)

(6) 피허가자 : 공영토건㈜ 관리인 최 원 석

공 고

경기도 공고제 120 호

K · S 표 시 허 가 취 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 4 . 10 .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1. 업 체 명 : 안 강 유 리

2. 소 재 지 : 광주군 실촌면 수양2리 269-1

3. 대 표 자 : 신 극 순

4. 허가번호 : 제 6131 호 , 제 6132 호

5. 규격번호 : KSL 2002, KSL 2007

6. 품 명 : 강화유리 , 자동차용 안전유리

7. 종류및등급 : 평면강화유리 , 접합유리 A , B

8. 취소일자 : '90. 4. 10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 공고제 123 호

K·S 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90 . 4 . 11 .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1. 업 체 명 : 극동금속공업㈜

2. 소 재 지 : 부천시 중구 내동 222

3. 대 표 자 : 신 명 찬

4. 허가번호 : 제 2808 호

5. 규격번호 : KSD 5301

6. 품 명 :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판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취소일자 : '90.4.11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고제 125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을 휴(폐)지한 경우에는 30일이내 신고하여야하며, 동신고를 이행치 않을때에는 동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토록 되어있어 동신고없이 제조업을 휴(폐)지한 아래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의견을 청취코자하였으나 공문이 반송되었기 공사송달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기한내 의견이 없을경우 허가 취소됩니다.

1990 . 4 . 9 .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1.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내용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제조구분	소재지
미광조명사	김진태	3-- 9 -44	전구류제조사업	광주군 오포면 추자리 213 - 4

2. 의견제출기한 : '90.4.24

공 고

의정부시 제 54 호

의정부시 공인조례제 4조 및 제 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개각 및 신조사용을 공고합니다.

1. 사용개시일 : 1990.4.10 (09:00)
2. 공 인 명 : 별 표
3. 개각및신조사유 : 공영개발사업추진 및 마모

1990 . 4 . 10 .

의 정 부 시 장

공 인 신 조 및 개 각 인 영

(별표)

구분 / 공인명	신조인영	개각인영	폐기인영
양곡관리 특별회계 의정부시 전도자금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 의정부시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수입원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유가증권 출납원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지출원인			

경 기 도 보

제 2343 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자 산 출 납 원 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분 임 자 산 출 납 원 인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기 업 출 납 원 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의정부시 분임세입 징 수 관 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의정부시 분임양곡 관 리 관 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44 호

1990년 4 월 23 일(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43호 골재채취허가(팔당호수)고시 2
○경기도고시 제143-1호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3
○경기도고시 제 146호 배합사료 성분등록 고시 3
○경기도고시 제 147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4
○경기도고시 제 148호 사료성분등록 사항 고시 5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26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6
○경기도공고 제 128호 품질관리 등급상품 일부취소 공고 7
○경기도공고 제 129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신조 공고..... 8
○경기도공고 제 130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제출공고..... 9
○경기도공고 제 132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 취소공고..... 10

회 람								
					0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시군행정

○동두천시공고 제 6호 상우주택건설사업 승인고시..... 11
○고양군 공고 제 47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12
○미금시 공고 제90-32호 공인신조 공고 15

경기도 고시 제 143 호

고 시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호수 준설사업지구내 '90년 골재채취를 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0 . 4 . 17 .

경 기 도 지 사

위 치 (공 구)	허가목적	면 적 (천 ㎡)	허 가 량 (천 ㎥)	허가기간	피 허 가 자
계			400		
남양주군조안면조안리 양평군양서면양수리 (2-1-1 공구)	골재채취	234	200	'90. 4.17 '90.12.31	재향군인회 소 준 열
남양주군조안면송촌리 양평군양서면양수리 (1-2 공구)	〃	380	200	〃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이 상 익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143-1 호

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4 월 17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돼 지 고 기	박 피 품 (정육 500 g 당)	1,850 원
	미박피품 (〃)	1,650 원

○ 시행일 : '90. 4.20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146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4 월 20 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

○ 공 장 명 : ㈜퓨리나코리아

○ 소 재 지 : 부천시 중구 오정동 114~5

○ 대 표 자 : 폴 반웰레겜

구분	사료			등록번호	사료성분 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사료	착유 1-1	비유량 15 kg이하 (사시기조사료 부족시)	13-28-1	6.0	1.0	0.3	0.1	40.0	10.0
		갓난 돼지 2	4주이하	13-12-3	19.5	6.0	0.5	0.4	6.0	9.0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147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년 4 월 20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면적	사유		
포천	영북	운천	산 117-1	임야	*ha* 40.86	*ha* 0.65	*ha* 0.65	골프장조성	포천군영북면산정리 558-1 ㈜동우	
	계					0.65	0.65			

2. 해제신청자 : 주소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 558-1

성명 ㈜동우 백 승 관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148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4 월 23 일

경 기 도 지 사

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

○ 공 장 명 : ㈜ 미원 이천공장

○ 소 재 지 :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766-1

○ 대 표 자 : 김 채 방

구분	사료			등록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사료	육계후기Ⅱ	출하 7 일전 ~ 출하시	11-9-1	17.0	2.5	0.7	0.5	5.5	8.0

경 기 도 보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126 호

K . S 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년 4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극동전선공업㈜
2. 소 재 지 :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600-3
3. 대 표 자 : 최 병 철
4. 허 가 번 호 : 3833 , 4148
5. 규 격 번 호 : KSC 3321, 3311
6. 품 명 : 용접용케이블, 자동차용 저압전선
7. 종류및등급 : 전종류 및 등급
8. 취 소 일 자 : 1990. 4.18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128 호

품질관리등급상품일부취소

공산품품질관리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등급사정 상품중 일부 품목을 취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년 4 월 19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엔젤악기
2. 대 표 자 : 조 광 호
3.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 135~139
4. 사정등급 : 2 갑
5. 사정번호 : G마 2-43
6. 취소품목 : 자연학습교재(전기회로)
7. 취소일자 : '90. 4.19
8. 취소사유 : 생산중단

경 기 도 보

경기도 공고 제 129 호

공 인 신 조 사 용 공 고

일반회계 산림청소관 경기도 임업시험장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하였기 경기도 공인조례 제 9 회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 : 1990 년 4 월 26 일

1990 년 4 월 20 일

경 기 도 지 사

일반회계 산림청소관 경기도 임업시험장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30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제조업을 휴(폐)지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동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토록 되어있어 동 신고없이 제조업을 휴(폐)지한 아래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시 송달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허가 취소합니다.

1990. 4. 20

경 기 도 지 사

1. 전기용품 제조업허가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코린코리아	안 순 옥	3-8-218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부천시 중구내동258번지
대 흥 기 업	김 향 숙	3-3-95 3-6-45 3-8-225	배선기구류 소형교류전동기류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 270-1번지
삼 환 조 명	고 려 환	3-10-69	광원응용기계기구류	〃 72-4번지
삼 흥 기 기 산 업 사	조 동 호	3-8-207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 79-3번지

2. 의견제출기한 : 1990. 5. 4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32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23.

경 기 도 지 사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일진전기	조용규	3-5-35	소형단상 변압기류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837-1
		3-10-61	광원응용기계기구류	
		3-12-46	기타교류용 전기기계기구류	
		3-16-4	금속제 전선관 부속품류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고 시

동두천시고시 제 6 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제 1 항에 의하여 상우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동두천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볼수 있게하고 있읍니다.

1990. 4. 16.

동 두 천 시 장

1. 사업인정조서

사업종류	사업주체	사업위치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민영분양 주택건설	상우건설㈜ 유 상 우	생연동 산 74-2, 76-4	사업면적 : 25,444.98 ㎡ (대지면적 : 8,268.87 ㎡) * 건설규모 : 민영주택분양 아파트 2 동 267 세대	'90.4 - '91.12

2. 도시계획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48	8	140	소 1-7 생연 290-7	소 2-47 생연 산 74	아파트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2	48	8	133	〃	〃	
기정	소로	3	84	6	117	소 2-47 생연산 76-4	소 3-67 생연 296	아파트구간 내연장축소(폐지)
변경	소로	3	84	6	30	생연 266	소 3-67 생연 296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고양군 공고 제 4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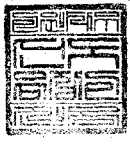
고양군 공인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신조하였기 공고함.

o 사용개시일 : 1990 년 4 월 20 일

1990 년 4 월 17 일

고 양 군 수

o 신 조 인

공 인 명	신 조 인	공 인 명	신 조 인
고 양 군 수 인 (도시민원사무전용)		원 당 읍 계 인 (민원사무전용)	
고 양 군 계 인 (도시민원사무전용)		신 도 읍 장 인 (민원사무전용)	
고 양 군 수 인 (민원사무전용)		신 도 읍 계 인 (민원사무전용)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공 인 명	신 조 인	공 인 명	신 조 인
고양군계인 (민원사무전용)		벽제읍장인 (민원사무전용)	
원당읍장인 (민원사무전용)		벽제읍계인 (민원사무전용)	
지도읍장인 (민원사무전용)		지도읍계인 (민원사무전용)	

o 폐기인영

공 인 명	폐 기 인 영	공 인 명	폐 기 인 영
고양군수인 (민원사무전용)		신도읍계인 (민원사무전용)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공 인 명	폐 기 인 영	공 인 명	폐 기 인 영
고양군계인 (민원사무전용)		벽제읍장인 (민원사무전용)	
원당읍장인 (민원사무전용)		벽제읍계인 (민원사무전용)	
원당읍계인 (민원사무전용)		지도읍장인 (민원사무전용)	
신도읍장인 (민원사무전용)		지도읍계인 (민원사무전용)	

공고 제 90-32 호

공 인 신 조 공 고

미금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미금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년 4 월 18 일

미 금 시 장

- 사용개시일 : 90. 4.18
- 공인 모형

미금시 보건소장인	미금시 보건소분임경리관인	미금시 보건소물품관리관인	미금시 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
			
미금시 보건소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미금시 보건소전도자금 출납원인	미금시 보건소물품출납원인	보건사회부소관일반회계미금시보건소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미금시 보건소계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45 호
1990년 4 월 30 일(월)

차 례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74호 경기도 방위지원 본부 운영규정..... 2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49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고시..... 9
○경기도고시 제 150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고시..... 9
○경기도고시 제 1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11
○경기도고시 제 152호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고시..... 12
○경기도고시 제 153호 경기도 지정문화재 지정고시..... 16
○경기도고시 제 154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고시..... 17
○경기도고시 제 155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고시..... 17
○경기도고시 제 156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고시..... 18
○경기도고시 제 157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고시..... 18
○경기도고시 제 159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35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36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19
○경기도공고 제 137호 경기도 여성회관 설치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공고..... 20
○경기도공고 제 140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 공고..... 23
○경기도공고 제 142호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 갱신신청 요령공고..... 24
○경기도공고 제 143호 KS표시 정지처분 공고..... 26
○경기도공고 제 144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27

시 군 행 정

○안산시고시 제 16호 반월 도시계획 시설(시장)사업 시행허가 고시..... 28
○수원시공고 제 55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30
○안양시공고 제 116호 공인신조 공고..... 31
○광명시공고 제 61호 공인신조 공고..... 32
○이천군공고 제 45호 공인신조 공고..... 33
○옹진군공고 제 75호 공인신조 공고..... 34

훈 령

경기도방위지원본부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 년 4 월 17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훈령 제 874 호

경 기 도 방 위 지 원 본 부 운 영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 제 28 호 세부시행규칙에 의거 경기도 방위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

로써 대비정규전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지원본부는 경기도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협의회 안에 설치한다.

제 3 조(구성) ①지원본부장은 부지사가 된다.

②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 그리고 8개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그 기구는 별표와 같다.

③지원본부의 각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군, 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가. 구 성

군, 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군, 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과 군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수도군단 작전참모 또는 경찰국 작전과장이 된다.

나. 운용책임

1) 평 시 : 경찰국장

2) 사태발생시 : 지역군부대장

2. 종합상황실

가.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내에 설치한다.

나. 종합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감독한다.

3. 분야별 지원반

가.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나.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내 제소요가 공동참여하며 지원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

제 4조(통제)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보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지원본부장 : 부지사

가.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 감독

나.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다. 산하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지휘감독

라. 각 분야별 업무의 협조 및 조정통제

마. 상하 인접지원기관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바.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시 즉응 지원태세 유지

2. 군,경 정보,작전상황실(장) : 수도군단 작전참모 또는 경찰국 작전과장

가.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

나.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판단 및 조치

라.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마. 군 및 경찰작전상황을 종합지원상황실(장)에 통보 및 협조

바. 주민신고 업무관장

사. 작전 및 대비정규전 사태에 대비키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3. 종합지원상황실(장) : 기획관리실장

가. 각종 상황파악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조정 통제

나.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지시

라. 대비정규전 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협의회에 건의

마. 산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종합지원상황실 지휘 감독

바.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계획조정통제

4. 총괄지원반(장) : 내무국장

가. 지원본부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용되는 지원회의 관장

5. 인력동원지원반(장): 민방위국장 또는 지방병무청 동원과장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관장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가료구호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집행 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관장

6. 건설수송지원반(장) : 건설국장 또는 지역경제국장

가. 산업, 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대비정규전 작전지원 차량 소요 판단 및 확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운용

다.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관장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관장

7. 의료, 구호지원반(장) : 보건사회국장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의 수립, 시행과 동지원 업무관장

나. 의료구호조를 편성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

라.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수행

8. 통신지원반(장) : 전기통신공사 경기사업본부 시설운용국장

가. 통신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동지원 업무관장

나. 지원본부통신망 구성운용

다.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시행감독

라. 통신지원조편성, 운영 및 통신시설가설 복구

마. 국가동원계획의 통신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9. 보급(급식)지원반(장) : 식산국장 또는 가정복지국장

가.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동원 병력급식 및 보급지원 업무관장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집행준비

10. 홍보지원반(장) : 공보관

가.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계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및 홍보(계몽)반편성, 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수립 시행

11. 재정지원반(장) : 기획담당관 또는 재무(회계)국장

가. 예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동지원 업무관장

나. 지원본부 운용예산 확보 및 집행결산

다.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제 6조(직무)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부장 : 지원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2. 종합상황실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 부재시 본부장을 대행한다.

3. 지원반장 : 지원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종합상황실장 부재시에는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원반원 :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시에는 그반의 선임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근무)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 운용한다.

제 8조(회의소집) ①지원본부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부대 합동훈련시 또는 방위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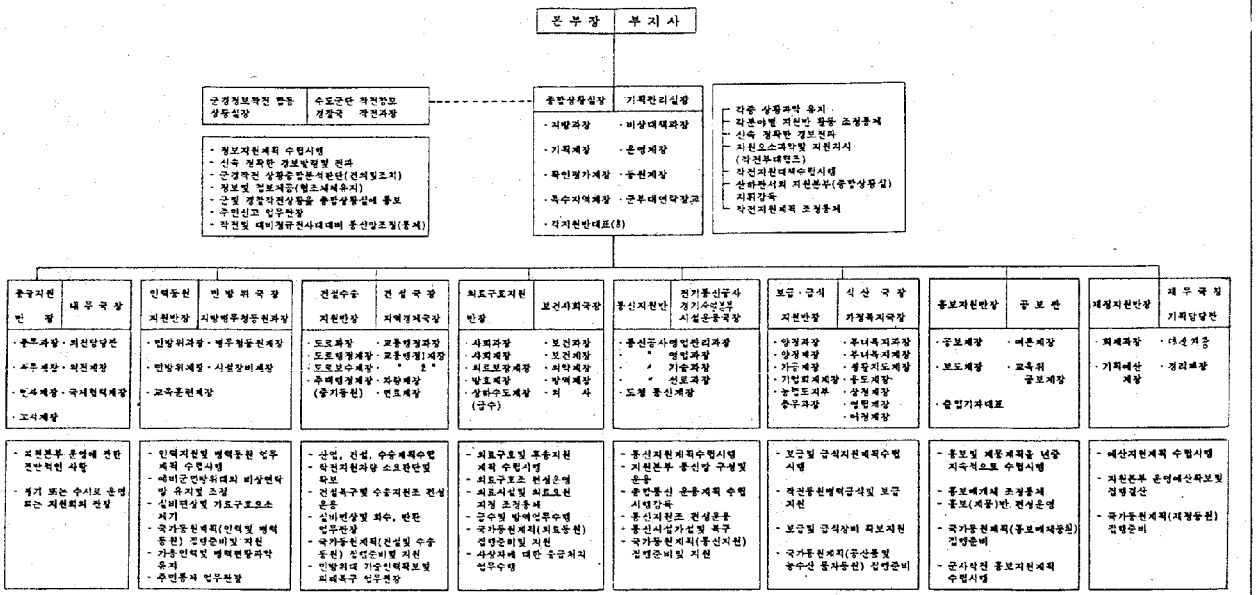
②지원본부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과 종합상황실요원 전원 및 각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종전의 경기도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경기도훈령 제 695호 : 84. 4.16)은 이 규정발령과 동시에 폐지한다.

경기도 방위지원본부 구성



고 시

경기도 고시제 149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마전지구
2. 구 역 : 시흥시 군자동 마전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시흥시장
4. 환지계획총면적 : 803,114 ㎡
5. 환 지 내 용 : 마전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4. 30.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제 150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장곡지구
2. 구 역 : 파주군 조리면 장곡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파주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51,040 ㎡
5. 환 지 내 용 : 장곡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 4 . 30 .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고 시

경기도 고시제 151호

시흥시 거모동 1632-1번지외 10필지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5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한다.

1990 . 4. 26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분양주택)

나. 사업주체 : 부천시 남구 중동 917-2 동 상가 4층 1호

㈜ 동원건설 대표 이 호 연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632-1번지외 10필지

라. 대지면적 : 11,734 ㎡ (사업시행면적 12,994)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5층 3동 416세대

바. 사 업 비 : 12,767,657천원

사. 사업기간 : 1990.4 - 1990.9.30

2. 사용할토지조서 : 별첨

3. 도면 : 별첨과 같음 (생략)

4. 기타 :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에 비치보관. 끝.

사 용 할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사업면적			토지소유자	
시	동				계	대지	도로	주소	성명
시흥시	거모동	1632 - 1	임	2,958.0	2,377.0	2,196.0	181.0	부천시남구중동 917-2 동원상가 4층 1호	㈜동원건설
〃	〃	1632 - 8	임	965.0	656.0	656.0		〃	〃
〃	〃	1632 -14	전	1,309.0	1,076.0	908.0	168.0	〃	〃
〃	〃	1632 -16	임	3,058.0	2,696.0	2,099.0	597.0	〃	〃
〃	〃	1632 -17	임	2,237.0	1,565.0	1,565.0		〃	〃
〃	〃	1632 -21	임	3,464.0	2,953.0	2,895.0	58.0	〃	〃
〃	〃	1632 -22	임	1,710.0	1,435.0	1,415.0	20.0	〃	〃
〃	〃	1566 - 1	대	23.0	23.0		23.0	안산시선부동산 129-1	정 규 창
〃	〃	1566 - 5	대	327.0	72.0		72.0	〃	〃
〃	〃	1566 -16	대	308.0	140.0		140.0	부천시역곡동 28-9	김 철 호
〃	〃	1575 - 5	대	471.0	1.0		1.0	안산시선부동산 129-1	정 규 창
계				16,830 0	12,994.0	11,734.0	1,260.0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고 시

경기도 고시제 152호

문화재보호법 제55조5항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내동 한산이씨 묘역외 6건에 대하여 경기도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구역을 고시한다.

1990 . 4. 26 .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문 화 재 보 호 구 역 고 시

면적단위 : m^2

시 군	문화재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지 적	문화재 구 역	보 호 구 역	소 유 자	범 위
성남시	기념	116	수내동한산이씨묘역					계	22	11,619	한산이씨봉화공파종중	
			〃 가. 지역(비)	중원구	수내동			소 계	13	351		
				〃	〃	산 1-2	임	23,681	3	152	〃	
				〃	〃	62-1	구	289	10	199	국(건설부)	
			나. 지역 (묘)	〃	〃	산 1-2	임	23,681		2,864	한산이씨봉화공파종중	
			다. 지역 (묘)	〃	〃	〃	〃	23,681		4,029	〃	
			라. 지역	〃	〃	〃	〃	소 계	6	4,015	〃	
			(비)	〃	〃	〃	〃	23,681		3,765	〃	
			(비)	〃	〃	〃	〃	23,681	6	250		
			마. 지 역 (경계표석)	〃				소 계	3	360		
			서측표석 (세장지산)	〃	〃	산 1-2	임	23,681	1	120	〃	
			동측표석 (입수비)	〃	서현동	산 84-3	〃	99,409	1	120	국(국방부)	
			북측표석 (세장지산)	〃	〃	산 84-4	〃	13,584	1	120	한산이씨봉화공파종중	

성남시	기념	117	정자동전주이씨서원군파묘역					계		3,308	전주이씨서원군파종중	14-46m
			이신성선생묘	중원구	수내동	산 28-1	임	4,195		1,932	〃	
			이지항선생묘	〃	〃	〃	〃	〃		1,152	〃	
			이신·이목신도비	〃	〃	〃	〃	〃		209	〃	
				〃	〃	283-1	전	149		15	〃	
성남시	기념	118	정자동전주이씨태안군파 묘역					계		2,584		34-38m
			이팽수선생묘	중원구	정자동	산 11-1	임	45,521		1,292	이 방 우	
			이경인선생묘	〃	〃	산 34-2	임	150,249		1,292	이 연 행	
성남시	문자	78	한산이씨(이택구)종가					계	95	1,385		37-40m
				중원구	수내동	84	대	658	95	563	이 택 구	
				〃	〃	산 1-2	임	23,861		159	한산이씨봉화공파종중	
				〃	〃	81	대	99		52	소유자미복구	
				〃	〃	97-3	도	466		20	국	
				〃	〃	85	대	555		142	소유자미복구	
				〃	〃	36	〃	331		183	이 호 규	
				〃	〃	97-7	〃	1,745		266	이 세 규	

광주군	기념	119						계		9,821	개 원	
				중부면	산성리	198-1	전	2,062		2,062	개 원 사	
				〃	〃	198-2	답	1,467		1,467	〃	
				〃	〃	198-5	전	703		703	〃	
				〃	〃	198-6	전	2,738		2,738	〃	
				〃	〃	산32-1	임	298,145		1,960	경 기 도	
				〃	〃	1211	구	1,904		891	국	
양주군	기념	120	이 준선생묘	남 면	신산리	산1-1	임	753,004	750	2,850	전주이씨전성부원군파종중	60 m
고양군	문자	79	월산대군 사당					계	240	2,896	전주이씨월산대군파 종중	56 m
				원당읍	신원리	산16-4	임	18,942	23	1,088	이재명외 27 인	
						426	전	1,648	2	430	이 윤 우	
						426-2	잡	6,791	13	876	〃	
						426-3	전	248		248	김 영 범	
						427	대	456	202	254	전주이씨월산대군파 종중	

고 시

경경기도고시 제 153호

문화재보호법 제 55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기도지정문화재 사항을 동법조례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 4 . 30 .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지정문화재지정고시

문화재				소재지	문화재 구역	토지소유자	문화재소유자 및 관리자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기념물	121	이기조선생묘	일 원	군포시 산본동 산 16		한씨이씨 종친회	한산이씨 종친회
〃	122	전주이씨 안양군묘	〃	군포시 산본동 산 27		전주이씨 안양군파 종친회	전주이씨 안양군파 종친회

경기도고시 제 154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판부지구

2. 구 역 : 연천군 장남면 판부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연천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353,766 ㎡

5. 환 지 내 용 : 판부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4. 30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고시 제 155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검산지구

2. 구 역 : 파주군 금촌읍 검산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파주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425, 120 ㎡

5. 환 지 내 용 : 검산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4. 30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경기도고시 제 156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옥계지구
2. 구 역 : 연천군 군남면 옥계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연천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600,630 ㎡
5. 환 지 내 용 : 옥계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4. 30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고시 제 157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목동지구
2. 구 역 : 파주군 교하면 목동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파주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968,655 ㎡
5. 환 지 내 용 : 목동지구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4. 30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36 호

K.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4. 25.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동남건재공업㈜
2. 소 재 지 :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7
3. 대 표 자 : 이 문 순
4. 허가번호 : 제 2942 호, 제 3158 호
5. 규격번호 : KSF4001, KSF4006
6.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취소일자 : 90.4.25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공고 제 137 호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회관을 이용하시는 여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25.

경 기 도 지 사

1. 조례제명 :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개정취지 : '89.11.30 여성회관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시설에 적합한 사업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

3. 주요내용

가. 여성회관의 시설이용 및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명문화 함.

나. 현 여성회관 이용 및 사용수수료가 현시설 및 실정에 부적합하므로 부합되도록 조정(여성회관 수가기준액 참조)

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능력 배양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와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의 여성회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토록 함.

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수당 지급을 명문화 함.

* 여성회관 수가기준액

현행				개정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강당(예식장)				1. 강당			
가. 평일				가. 평일			
1) 주간	1 회	6,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에는 매 1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한다.	1) 주간	1 회	2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야간	〃	7,000		2) 야간	〃	25,000	
나. 휴일				나. 휴일			
1) 주간	〃	〃		1) 주간	〃	〃	
2) 야간	〃	8,000		2) 야간	〃	30,000	
2. 예식장				2. 예식장			
가. 평일 (주간)	1 회	6,000	〃	가. 평일 (주간)	1 회	10,000	
나. 휴일	〃	7,000	〃	나. 휴일	〃	12,000	
3. 어린이수탁	1인1회	5,000		3. 어린이수탁	1인1월	8,000	수강시간중에만 수탁한다.
4. 미용실				4. 미용실			
가. 고데	1 회	800		가. 고데	1 회	1,500	
나. 파마	〃	2,000-4,000		나. 파마	〃	6,000	
다. 마사지	〃	2,000		다. 마사지	〃	2,000	
라. 메니큐어	〃	800		라. 메니큐어	〃	1,000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마. 신부화장	1 회	6,000		마. 신부화장	1 회	10,000	
바. 커트	〃	800		바. 커트	〃	1,000	
사. 드레스	〃	8,000 - 16,000		사. 드레스	〃	20,000	
5. 기술교육	1인/월	3,000		5. 기술교육	1인/월	4,000	
6. 사진촬영		12,000		6. 사진촬영		12,000	
7. 전시				7. 전시			1회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하고 1일사용은 12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가. 평일	1 회	7,000		가. 평일	1 회	7,000	
나. 휴일	〃	8,000		나. 휴일	〃	8,000	
8. 피아노사용	1일30분	2,000		8. 피아노사용	1 시 간	3,000	
9. 취미클럽	1인1월	4,000		9. 취미교육	1인1월	5,000	
10. 주부학교	〃	3,000		10. 주부대학	〃	5,000	
11. 도서실사용		50		11. 도서실	1 회	100	
				12. 폐백실 사용	〃	7,00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여성은 90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부녀복지과장, 여성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부녀복지과 42-7580, 여성회관 38-93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40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26.

경 기 도 지 사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미광조명사	김진태	3-9-44	전구류제조사업	광주군오포면추자리 213-4

공 고

경기도공고 제142호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갱신 신청요령공고

전기공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갱신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1

경 기 도 지 사

1. 면허의 종류 :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
2. 신청서 접수기간 : '90.6.1-6.8(6일간)
3. 면허갱신신청서 교부처 : 경기도 공업과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지부
4. 면허갱신신청서 접수처 : 경기도 종합민원실
5. 면허갱신대상 : '90.7.9로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2종 전기공사업체
6. 신청서류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가. 전기공사업 면허갱신신청서
   나.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다.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에게 등록 및 개업신고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라야 한다.
   라. 전기기술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마. 전기공사용 장비명세서

바. 사무실의 평면축적도 및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아. 면허증 및 면허수첩

7. 수수료 : 경기도 수입증지 15,000원

8. 기 타

가. 제 6항의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만료일전 90일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90.4.30)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의 경우 신청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에 한한다.

다. 본 면허를 갱신신청함에 있어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때는 관계법에 의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한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43 호

KS표시 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4. 30.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극동기연
2. 소 재 지 : 안산시 성곡동 630-2
3. 대 표 자 : 신 용 하
4. 허가번호 : 제 6126 호
5. 규격번호 : KS B 6232
6. 품 명 : 체인브록
7. 종류및등급 : L급 1 ½ ton
8. 처분기간 : '90.4 - '90.7.(3개월)
9. 처분사유 : KS규격 미달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144 호

K • S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4.30.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은성철망공업(주)

2. 소 재 지 : 화성군 반월면 괄곡1리 504

3. 대 표 자 : 정 대 규

4. 허가번호 : 제 5231,5232,5233 호

5. 규격번호 : KSD3552,7017,7018

6. 품 명 : 철선, 용접철망, 체인링크철망

7. 종류및등급 : 허가된전종류 및 등급

8. 취소일자 : 90. 4.30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345 호

고 시

안산시고시제16호

반월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선부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4.24.

안 산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반월신도시(선부동) 109브럭 12-7

나.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시장용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매시장
- 명 칭 : 안산종합시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6,800 ㎡
  - 건축면적 : 4,645.17 ㎡
  - 건축연면적 : 13,993.21 ㎡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안산시 반월신도시(선부동) 109블럭 12-7필지
- 성 명 : (주) 안산종합시장 대표 김용태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 토지소유자 : (주) 안산종합시장 대표 김용태
- 건물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대전직할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1990.4. 。일
- 준공예정일 : 1991.9.30일까지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수원시공고제 55호

수원시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인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20.

수 원 시 장

1. 신규사용인

수원시장안구화서1동장인


2. 폐 기 인

수원시장안구화서1동장인


안양시공고제 116 호

공 인 신 조 공 고

안양시 시정과 시설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의 공인을 안양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28.

안 양 시 장

1. 사용개시일 : 1990. 5. 1.

2. 신조사용인

안양시시정과전도자금출납원의인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광명시공고제 61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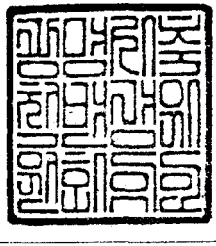
광명시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으로 광명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 사용하게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 4. 23.

광 명 시 장

1. 사용개시일 : 1990.5.1 09:00

2. 신조공인명 및 인영

광명시축척변경위원회의 인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이천군공고제 45 호

공 인 신 조

이천군 공인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 사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25.

이 천 군 수

1. 신공인 사용일시 : 1990. 4.30. 00:00

2. 신공인 인영



이천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옹진군공고제 75 호

옹진군 공인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23.

옹 진 군 수

1. 사용개시일 : 90. 5. 7.

2. 신조사용인

옹진군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출납공무원인



옹진군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출납명령관인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고 시

경기도고시제 159 호

의왕시 오전동 205-2 번지외 8 필지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사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0. 4.30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 (분양주택)

나. 사업주체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87-9 번지

신안건설 박 순 석

다. 사업위치 : 의왕시 오전동 205-2 번지외 8 필지

라. 대지면적 : 10,287.0 ㎡

마. 사업규모 : 15 층 2 동 360 세대

바. 사업비 : 14,026,520 천원

사. 사업시행기간 : 1989. 9. . - 1999. 12. 31.

2. 지적 승인 및 사용할 토지조서 (별첨과 같음)

3. 도 면 : 별첨과 같음 (생략)

4. 기 타 :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에 보관.

끝.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지적승인 및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제 외 면 적	사 업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의왕시 오전동	205-2	답	739	0	739	의왕시오전동 324	마홍길	대지사용승락서첨부
	216-1	〃	5870	0	5870	서울시중랑구 묵동 122-1	박순석	본인소유
	216-3	〃	582	0	582	〃	〃	〃
	217	전	1924	0	1924	〃	〃	〃
	220	답	133	0	133	〃	〃	〃
	222-1	임	524	0	524	〃	〃	〃
	222-2	답	416	0	416	〃	〃	〃
	223-3	임	94	0	94	〃	〃	〃
	223-4	〃	5	0	5	〃	〃	〃
합 계			10,287		10,287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46 호
1990년 5 월 7 일(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58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편입결정고시..... 2
○경기도고시 제 160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2
○경기도고시 제 161호 배합사료 성분등록 고시 3
○경기도고시 제 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5
○경기도고시 제 163호 사방지정지 해제 고시 7
○경기도고시 제 164호 사방지정지 해제 고시 8
○경기도고시 제 165호 '90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고시 9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50호 KS정지처분공공고 11

시군행정

○수원시공고 제 60호 공인신조 공고..... 12
○부천시공고 재 84호 공인신조 공고..... 14
○양주군공고 제 48호 외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 사전 공람공고..... 15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 기 도 보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58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덕은지구
2. 구 역 : 파주군 월롱면 덕은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파주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804,469 ㎡
5. 환 지 내 용 : 덕은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5. 1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0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4. 30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6 호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돼 지 고 기	박피품(정육 500 g당)	2,000 원
	미박피품(〃)	1,750 원

○ 시행일 : '90.5.4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1 호

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5. 1

경 기 도 지 사

첨부 : 사료성분등록사항 1부. 끝.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역

사료공장			사료			등록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보거사료	오산시궐동 30	곽치섭	배합사료	육계후기Ⅱ	출하7일전~출하시	7-9-1	17.0	2.5	0.7	0.5	5.5	8.0
				비육돈전기	조기용	7-16-1	15.0	2.5	0.6	0.4	6.0	8.0
한일사료	용인군기흥읍하갈리 213	최병덕	〃	육계후기Ⅱ	출하7일전~출하시	15-9-1	17.5	2.5	0.7	0.4	7.0	8.0
				육계전기 2	0~2주	15-7-2	22.0	2.5	0.9	0.6	5.0	7.0
천광산업	김포군검단면마전리 609-1	김만호	〃	젖먹이돼지 1	4~6주	12-13-1	19.5	2.7	0.6	0.4	5.5	8.0
				육성돈 1	2~4개월	12-14-1	16.0	2.7	0.6	0.4	5.5	8.5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2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6외 6필지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성남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0. 5. 3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분양주택 및 직장조합주택)

나. 사업주체 : 현대건설㈜ 대표 정 훈 목

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이발우외 6인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6번지외 6필지

라. 대지면적 : 59,828.5㎡(사업시행면적 60,447.5㎡)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5층 14동 1258세대

바. 사 업 비 : 64,433,332천원

사. 사업기간 : 1990.4 - 1992.4.30

2. 사용할 토지조서 : 별 첨

3. 도 면 : 별첨과 같음(생략)

4. 기 타 :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주택과에 비치 보관. 끝.

경 기 도 보

제 2346 호

사 용 할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사업면적(㎡)			토지소유자	
시구	동				계	대지	도로	주소	성명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32-6	잡종지	47,150	47,150	47,096	54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 및 직장 주택조합
〃	〃	1934	대지	2,711.7	2,711.7	2,476.95	234.75	〃	〃
〃	금광동	3953	〃	4,745.1	4,745.1	4,519.95	225.15	〃	〃
〃	〃	3955	〃	2,624.1	2,624.1	2,624.1	-	〃	〃
〃	〃	4860	도로	17,065.2	2,351.2	2,265.5	85.7	-	성남시
〃	〃	3954	〃	362.3	362.3	362.3	-	-	〃
〃	〃	1933	구거	503.1	503.1	483.7	19.4	-	〃
계				75,161.5	60,447.5	59,828.5	619		

경 기 도 보

제 2346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3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5. 4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면적	사유		
					ha	ha	ha			
여주	북내	덕산	산3-1	임야	137.88	5.60	5.60		여주군 북내면	
								골프장	덕산리산 3-1번지	
			6-1	〃	34.46	2.53	2.53		삼공개발㈜	
								조 성	홍 준 기	
			3-1	〃	136.74	0.90	0.90			
	계						9.03			

2. 해제신청자 : 주 소 :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 산 3 - 1 번지

성 명 : 삼공개발㈜ 홍 준 기

경 기 도 보

제 2346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4 호

사방사업법 제 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5. 4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ha	ha	ha			
포천	일동	사직	산59-2	임야	20.57	0.20	0.17	토석채취	포천군일동면사직리 산59-2 진광수	
	계						0.17			

2. 해제신청자 : 주 소 :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 산 59-2

성 명 : 진 광 수

경기도 고시 제165호

1990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고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0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년 5월 3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예산

o 사업예산 수익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1회추경	비고
관	항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	영업수익	7,076,947	6,984,000	92,947	
	영업외수익	1,000,001	1,000,000	1	
	특별이익	-	-	-	
수익합계		8,076,948	7,984,000	92,948	

o 사업예산 비용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1회추경	비고
관	항				
지역개발기금	영업비용	3,320,312	3,304,728	15,584	
사업비용	예비비	33,624	114,122	△80,498	
비용합계		3,353,936	3,418,850	△64,914	

□ 자본예산

o 자본예산 수익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1회추경	비고
관	항				
자본적수입	투자자산수입	6,319,375	6,319,375	-	
	고정부채수입	60,000,000	60,000,000	-	
	잉여금수입	4,630,000	4,630,000	-	
수입합계		70,949,375	70,949,375	-	

o 자본예산 지출

(단위 : 천원)

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1회추경	비고
관	항				
자본적지출	투자자산지출	80,314,000	78,969,000	1,345,000	
	고정부채상환금	9,349,168	9,402,000	△52,832	
	기타자본적지출	10,000	10,000		
	예비비	892,473	883,525	8,948	
지출합계		90,565,641	89,264,525	1,301,116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150 호

KS표시 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5. 7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한진철망공업㈜
2. 소 재 지 : 부천시 중구 내동 77
3. 대 표 자 : 조 영 환
4. 허가번호 : 제 6162 호
5. 규격번호 : KSD 7036
6. 품 명 : 염화비닐 피복철선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정종류 등급
8. 처분기간 : '90.5.7 - '90.7.6 (3개월)
9. 처분사유 : KS 규격 미달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수원시 공고 제 60 호

수원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 9 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30

수 원 시 장

○ 신조공인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장 인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 인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계 인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계 인
			
수원시권선구보건소 물품관리관인	수원시장안구보건소 물품관리관인	수원시권선구보건소 분임경리관인	수원시장안구보건소 분임경리관인
			
수원시권선구보건소 물품출납원인	수원시장안구보건소 물품출납원인	수원시권선구보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원시장안구보건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보건사회부소관일반회계수원시권선구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보건사회부소관일반회계수원시장안구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수원시권선구보건소 전도자금출납원인	수원시장안구보건소 전도자금출납원인
			

경 기 도 보

제 2346 호

수원시 공고 제 61 호

수원시 공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 11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4. 30

수 원 시 장

o 폐기 공인

수원시보건소장인	수원시보건소계인	수원시 보건소 물품관리관인	수원시 보건소 분임경리관인
			
수원시 보건소 물품출납원인	수원시보건소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보건사회부소관일반 회계 수원시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인	수원시 보건소 전도자금출납원인
			
수원시 보건소 세류지소장인	수원시 보건소 세류지소계인		
			

경 기 도 보

제 2346 호

부천시 공고 제 84 호

부천시 공인조례 제 9 조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년 5월 3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인신규사용
2. 사용일시 : 1990년 5월 3일
3. 공인인영

공 인 명	인 영
건설부 소관 도로사업 특별회계 부천시 분임재무관	
건설부 소관 도로사업 특별회계 부천시 분임지출관	

양주군 공고 제 48 호

공 고

1.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일부 선형변경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읍니다.

1990년 5월 4일

양 주 군 수

가) 사업시행지 : 양주군 주내면 540-6번지외 106필지

나) 공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로

명 칭 : 중로 3-8호선

라) 사 업 개 요 : 연장 1,560미터, 폭원 12미터, 포장폭 7.5미터

마) 사업시행자 : 양 주 군 수

바) 사업착공 및 준공 예정일

착공예정일 : 1990년 5월 일

준공예정일 : 1990년 12월 31일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47 호
1990년 5 월 14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24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중 개정 조례..... 3
○경기도조례 제2025호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4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66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 규칙..... 5
○경기도규칙 제2067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중 개정 규칙..... 6
○경기도규칙 제2068호 경기도 가축위생 시험소 직제 규칙중 개정 규칙..... 8
○경기도규칙 제2069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중 개정 규칙..... 9
○경기도규칙 제2070호 경기도 직제 규칙중 개정 규칙..... 11
○경기도규칙 제2071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 규칙..... 13
○경기도규칙 제2072호 경기도 광고물등 관리규칙중 개정 규칙..... 15
○경기도규칙 제2073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 규칙..... 16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75호 경기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중 개정 규정..... 16
○경기도훈령 제 876호 경기도 경찰관서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 규정..... 19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6호 사료성분 등록사항 고시..... 22
○경기도고시 제 167호 사료성분 등록사항 고시..... 23
○경기도고시 제 168호 부천도시계획시설(고강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25
○경기도고시 제 169호 수원도시계획시설(제24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25
○경기도고시 제 170호 수원도시계획시설(제26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26
○경기도고시 제 171호 수원도시계획시설(제27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26
○경기도고시 제 172호 부천도시계획시설(도당제2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 27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51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공고..... 28
○경기도공고 제 152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공고..... 29
○경기도공고 제 153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 공고..... 30
○경기도공고 제 154호 공인신조 공고..... 30

시 군 행 정

○안산시고시 제 20호 반월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변경시행공고..... 31
○안산시고시 제 21호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허가고시..... 33
○성남시공고 제 99호 공인신조 공고..... 34
○부천시공고 제 85호 공인신조 및 폐기 공고..... 35
○안양시공고 제 128호 공인신조 공고..... 37
○안양시공고 제 131호 공인폐기 공고..... 41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5월 12일

경기도조례제 2024호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탁사항) "별표"중 일련번호 제3호 제9목 다음에 제10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일련번호	실 과 명	위탁사무명	위탁할자	근거법규
3	상 정 과	⑩특정열사용 기자재설치·시공확인	한국열관리 시공협회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5월 12일

경기도조례제 2025 호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 1 항중 "내구년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 물품구입에"를 "소모품에"로 한다.

제 11 조(기증품의 취득) 제 2 항중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5월 8일

경기도규칙제 2066호

경기도담당관 및 과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담당관 및 과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지역경제국 관광과 소관사무의 관광계 분장사무중 "제 9호"를 "제 10호"로 하고 "제 9호 관광협회 지도감독"을 신설하며 관광시설계 분장사무중 제 3호"내지 "제 7호"를 삭제하고 관광지도계 분장사무중 제 2호를 삭제하며 "제 7호"내지 "제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지 지정 및 해제

8.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진달)

9.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지적고시 포함)

10. 관광지 개발

11. 관광지 사후관리 및 지도

도시국 도시개발담당관 소관사무의 도시개발계 분장사무중 "제 6호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삭제하고 건설국 주택과 소관사무의 주택행정계 분장사무중 제 8호"내지 "제 9호"를 "제 9호"내지 "제 10호"로 하며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방위국 비상대책과 소관사무의 동원계 분장사무중 제 2호 도청 직장예비군 및 청원경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및 "제 3호 자체방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내무국 총무과 소관사무의 서무계 분장사무중 제 16호"를 제 18호"로 하고 "제 16호"내지 "제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도청 직장예비군 및 청원경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5월 8일

경기도규칙제 2067호

경기도기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정원) 제1항 "별표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합계(총괄)의 기능직난8등급의 소계 45를 48로 하고, 지방교환원에 1, 지방운전원에 1, 지방방호원에(1(방호1)을 각각 삽입하고, 9등급의 소계 80을 79로, 지방운전원 59를 58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522를 520으로, 지방교환원 7을 6으로, 지방사무보조원 265(조무 134, 타자 87, 전산 32, 제도 4, 필기 7, 편집 1)를 266(조무 134, 타자 88, 전산 32, 제도 4, 필기 7, 편집 1)으로 지방방호원 25(방호 20, 경비 5)를 23(방호 18, 경비 5)로 한다.

동조제 2항 "별표 2"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본청)의 계난 1,043을 1,041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95를 693으로, 8급의 소계 113을 111로, 지방보건기원 28을 26으로 하고 기능직난 8등급의 소계 12를 15로하며 지방교환원에 1, 지방운전원 35를 34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243을 241로, 지방교환원 5를 4로, 지방방호원 8(방호 8)을 7(방호 7)로 하고 총무과의 계난 125를 134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84를 93으로, 8등급의 소계 1을 3으로 하고 지방교환원에 1, 지방방호원에 1(방호 1)을 각각 삽입하며, 10등급의 소계 79를 86으로, 지방교환원 5를 4로, 지방사무보조원 58

(조무36, 타자3, 전산18, 필기1)을 59(조무37, 타자3, 전산18, 필기1)로 하고, 지방방호원에 7(방호7)을 삽입하며

회계과의 계난118을 110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91을 83으로, 8등급의 소계4를 5로로 하고, 지방운전원에 1을 삽입하며, 9등급의 소계38을 37로 지방운전원34를 33으로 하며 10등급의 소계47을 39로 하고, 지방방호원8(방호8)을 삭제하며

위생과의 계난32를 30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31을 29로, 8급의 소계23을 21로, 지방보건기원23을 21로 하고

주택과의 계난18을 1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16을 17로 하고 7급의 소계6을 7로, 지방행정주사보2를 3으로 하며

도시개발담당관의 계난18을 1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17을 16으로, 7급의 소계7을 6으로, 지방행정주사보5를 4로하고,

비상대책과의 계난9를 8로 하며, 기능직난소계2를 1로 하고, 10등급의 소계2를 1로, 사무보조원2(조무1, 타자1)를 1(타자1)로 한다.

동조 제3항 "별표3"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직속기관)의 계난307을 30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113을 115로 8급의 소계14를 16으로 지방보건기원1을 3으로 하며

북부출장소 보건사회과의 계난12를 14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11을 13으로 8급의 소계1을 3으로 하고 지방보건기원에 2를 삽입한다.

동조 제4항 "별표4"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사업소)의 기능직난10등급의 지방방호원10(방호5, 경비5)을 9(방호4, 경비5)로 지방사무보조원55(조무34, 타자21)를 56(조무34, 타자22)

으로 하며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의 계난2를 3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에 1을 삽입하고 10등급소계에 1,지방사무보조원1(타자1)을 각각 삽입하며

도로관리사업소의 계난145를 144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112를 111로 10등급의 지방방호원3(방호3)을 2(방호2)로 하며,본소의 계난124를 123으로 하고,기능직난 소계100을 99로 하며,10등급 소계45를 44로,지방방호원3(방호3)을 2(방호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4월28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5월8일

경기도규칙제 2068 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 지소에 서무계와 방역계,검사계를 두며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방역계장은 지방농업연구사 또는 지방수의사로,검사계장은 수의사 또는 지방수의사로 보한다.

제3조(사무분장)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지소 소관사무의 "사업계 분장사무"난을 삭제하고 "서무계 분장사무"난 다음에 "방역계"와 "검사계"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계 별	분 장 사 무
지 소	방 역 계	1. 가축전 병의 검진 2. 가축 기생충 구제

		3. 가축 방역 관리지도 4. 시험동물의 사양관리 5. 지방병 조사 6. 가축 질병의 병성 감정 7. 기타 가축 방역에 필요한 사항
지 소	검 사 계	1. 원유 및 도축검사 2. 착유목장 위생검사 3. 도축장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4.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5월 8일

경기도규칙제 2069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공무원정원) 제 1항 "별표 1"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총괄)의 일반직난 소계 1,074를 1,073으로 하고, 6급의 소계 298을 302로, 지방행정주사 130을 134로 하며, 7급의 소계 354를 349로, 지방행정주사보 158을, 154로, 지방수의사보 11을 10으로 하고, 연구직난 소계 91을 92로 하며, 연구사의 소계 74를 75로, 지방농업연구사 27을 28로 한다.

동조 제 4항 "별표 4"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사업소)의 일반직난 소계 266을 265로 하며, 6급의 소계 78을 82로, 지방행정주사 28을 32로 하고, 7급의 소계 95를 90으로, 지방행정주사보 26을

22로, 지방수의사보 10을 9로 하며, 연구직난 소계 28을 29로 하고 연구사의 소계 24를 25로, 지방농업연구사 24를 25로 하며,

가축위생시험소(본소)의 계난 12를 13으로 하고, 연구직난 소계 2를 3으로 하며, 연구사의 소계 2를 3으로, 지방농업연구사 2를 3으로 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일반직난 6급의 소계 1을 2로, 지방행정주사에 1을 신설하고, 7급의 소계 3을 2로, 지방행정주사보 1을 삭제하며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의 계난 8을 9로 하고, 일반직난 6급의 소계 1을 2로 지방행정주사에 1을 신설하며, 7급의 지방행정주사보 1을 삭제하고 지방수의사보 1을 2로 하며,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계난 11을 8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8을 5로하며 6급의 소계 1을 2로, 지방행정주사에 1을 신설하고, 7급의 지방행정주사보 1을 삭제하며, 지방수의사보 1을 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5월 10일

경기도규칙제 2070 호

경기도직제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1 조(경찰국)

①항 내용중 "경찰국에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를 "경찰국에 …… 수사과, 강력과, 정보과"로 하고,

②항 내용중 "제 2 담당관은 보안, 수사, 형사, 정보"를 "제 2 담당관은 보안 수사, 강력, 정보"로 하며,

⑩항 내용중 "형사과의 분장사무는"을 "강력과의 분장사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규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 11 조(경찰국) ①경찰국에 경찰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관2인과 경무과, 보안과, 교통과, 경비과, 작전과,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대공과 통신과를 두고 경찰국장 소속하에 정부제2청사경비대, 형사기동대를 둔다.	제 11 조(경찰국) ①경찰국장의 업무를 보좌 - - -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년 5월 10일

경기도규칙제 2071호

경기도담당관 및 과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3조의 2 (형사과) 형사과에 형사1계, 형사2계를 두고"를 "제 43조의 2 (강력과) 강력과에 형사계, 강력계, 폭력계를 두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규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 43조의 2 (형사과) 형사과에 형사1계, 형사2계를 두고, 각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제 43조의 2 (강력과) 강력과에 형사계, 강력계, 폭력계를 두고, 각 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경기도광고물등 관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1990 년 5 월 12 일

경기도규칙 제 2072 호

경기도광고물등관리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광고물등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등) 제 1 항 (별표 11) 의 옥상광고물규격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광고물의 높이는 건축물 높이의 1 / 2 이하, 다만 공업지역은 6 m 이하

제 13 조 제 1 항 (별표 11) 의 옥상광고물 설치방법 3 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건축법 시행령에 정한 건축면적) 의 1 / 8 이하시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 / 8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물의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 수직면으로부터 돌출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1990년 5월 12일

경기도규칙 제 2073 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위임사무) "별표"중 문화예술과란 제 10호 다음에 제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11	종교의식용품 면세용도 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제 1호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조 및 제 49조 제 14항제 1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경찰국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훈령 제 875 호

경기도경찰국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경찰국 사무분장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사무분장) ①항 "별표" 경찰국 각 과, 계, 실 사무분장중 "형사과 형사 1계, 형사 2계"를 "강력과 형사계, 강력계, 폭력계"로 하고 분장사무내용을 별첨과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찰국사무분장 규정

과	계	일련번호	분 장 사 무
강력과	형 사 계	1	과내 직원복무 및 인사
		2	지능범죄수사 (네다바이, 사기, 도박 포함)
		3	형사경찰 기본자료 수집
		4	공무원 범죄수사
		5	통화 및 유가증권 위, 변조사범 수사
		6	병역법 및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특별법 위반 사건처리
		7	컴퓨터이용 범죄수사
		8	선거에 관한 범죄수사
		9	국제형사 (인터폴) 관련업무 처리
		10	출입국 규제업무
		11	범칙 군수물자 단속지도
		12	역사상사고, 도조차량, 과실범죄수사
		13	마약사범수사
		14	절도범죄수사자료 및 검거대책수립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과	계	일련번호	분 장 사 무
강력과	형사계	15	절도범죄수사
		16	치기사범수사
		17	기소중지자 수사 및 용의자 면접수사
		18	장물품표 작성배부 및 수사
		19	수법공조 제보운영 및 주요지명 피의자 수사
		20	차량도난사건 및 외국인 도난사건수사
	강력계	1	강력범(살인, 강도, 강간, 방, 실화)수사 및 지도
		2	변사사건의 수사 및 지도
		3	초동수사 및 수시비상배치 훈련지도
		4	현장감시, 자료수집 및 현장감시차량(기재)
		5	거짓말탐지기, 현장감식 감정자료 수집(채취)관리운영
		6	강력범죄의 수사본부설치 운영과 수사계획 수립시행
		7	총기사용 범죄등 돌발 강력사건수사
		8	형사기동대 운영
	폭력계	1	조직 및 상습폭력범죄수사 및 지도
		2	폭력사범 검거대책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
		3	착취(갈취)등 폭력수단 범죄수사
		4	사회보호법 위반사범 처리
		5	윤락행위사범 수사
		6	외국인 주둔기지촌 주변의 범죄단속 지도
		7	화약류 기타 위험물의 폭발관련범죄의 수사 및 지도
		8	청소년 범죄수사 및 특별범죄 수사자료 수집
		9	우범자 관찰업무 지도
		10	인질, 유인약취, 유괴범죄 수사
		11	실종사건수사
		12	특별수사기동대 운영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경기도경찰서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훈령 제 876 호

경기도경찰관서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경찰관서 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전결사항) "별표 1" 국장, 부장, 과장, 계장 전결사항중 "수사과 형사계, 강력계 위임전결사항"을 "강력과 형사계, 강력계 폭력계"로 하고 위임전결 사항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부장, 과장, 계장 전결사항

주관	기능	업무	일련번호	항목	계장	과장	부장	국장	지사
강력	형사	형사	1	형사시책수립 및 업무개선				○	
			2	정부시책, 정치적 사회문제로 야기된 사건수사				○	
			3	저명인사 및 언론인 관련수사				○	
			4	외국인 관련 중요사건수사				○	
			5	사회의 물의를 야기할만한 중요사건수사				○	
			6	5급이상 공무원 범죄사건수사				○	
			7	국영기업체 및 준공무원수사				○	
			8	경찰관 범죄사건처리				○	
			9	특명사건 수사처리				○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주관	기능	업부	일련번호	항목	계장	과장	부장	국장	지사
강력		형사	10	다액도난사건 수사본부설치				○	
			11	기소중지자 일제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				○	
			12	지능, 도범수사계획수립 및 지도			○		
			13	공무원범죄단속 계획수립지도			○		
			14	6급이하 공무원 범죄사건처리			○		
			15	각종 선거법위반 사건수사 및 지도			○		
			16	특수층 빙자사범수사 및 지도			○		
			17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사건수사			○		
			18	외국환관리법 위반사범수사			○		
			19	범죄첩보수집 및 처리		○			
			20	형사민원사건 접수처리 및 조사		○			
			21	내사 및 수사지휘사건 처리		○			
			22	각종 영장신청 및 집행		○			
			23	송치기록작성 및 사건송치		○			
			24	일반사건 수사보고		○			
			25	사건이첩(인도, 인수)		○			
			26	도난사건 수사지도 및 검거		○			
			27	사기, 횡령, 기타 지능범죄수사 및 지도		○			
			28	군용물품 범죄 및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건수사		○			
			29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수사		○			
			30	마약법 및 습관성 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위반사건 수사		○			
			31	병무사범 단속		○			
			32	산림법 위반사범 수사		○			
			3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수사		○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주관	기능	업무	일련번호	항목	계장	과장	부장	국장	지사
강력	형사계	형사	34	기타특별법 위반사건수사		○			
			35	폭발물등 기타 과실치사상 사건수사	○				
			36	출석요구서 발부	○				
			37	처리결과통지	○				
			38	구속통지	○				
			39	압수금품 관리	○				
			40	참고인 여비지급	○				
			41	수배 및 기타 공조업무	○				
	강력계	강 력	1	강력사건 수사본부설치				○	
			2	강력사범 단속계획수립 및 지도			○		
			3	수사비상배치			○		
			4	수도권 공조수사 운영			○		
			5	중요 강력사건 수사검거		○			
			6	중심화 사선수사지도		○			
			7	변사사건 수사지도		○			
			8	강력사건 추세분석		○			
			9	초동수사 및 형사기동대 운영		○			
			10	강력범죄 수사자료 파악정비	○				
	폭력계		1	폭력사범 단속계획 및 지도			○		
			2	중요 폭력사건 수사검거		○			
			3	우범자 관찰보호 업무지도		○			
			4	폭력범죄 추세분석		○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6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5 월 9 일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 장 명 : ㈜ 동 영

○ 소 재 지 :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206

○ 대 표 자 : 박 용 부

구분	사료			등록	사료성분등록내역		사용방법
	종 류	명 칭	용 도	번 호	향 미	부 형 제	사료톤당
등록	보조사료 (향미제)	후레이버 프리믹스 MIS	진배합사료용	13-8-31	오랜지향 조합향	실리카	250 g ~ 500 g
		데저트 골드	〃	13-8-32	데저드골드향 조합향	사카린, 코코아박, 실리카 탄산칼슘, 소맥분Mgo 효모	500g ~ 3000 g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7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고시합니다.

1990 년 5 월 9 일

경 기 도 지 사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및 취 소 내 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번호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부천축협	부천시남구 소사동 30-1	황만수	배합사료	육계후기 2	출하 7 일전 ~출하시	3-9-1	19.0	3.0	0.7	0.5	5.5	8.0
	한일사료	용인군기흥읍 하갈리 213	최병덕	〃	어린 병아리 2	산란계용 6 주이하	15-1-12	19.0	3.0	1.0	0.7	6.0	8.0
					큰 병아리 2	〃 13주 ~산란개시전	15-3-12	14.0	2.5	1.0	0.7	6.0	8.0
					산란중기	백색계 41~60 주	15-5-11	16.0	2.5	3.5	0.4	6.0	15.0
					산란말기	〃 61 주이상	15-6-11	14.5	2.5	3.5	0.4	6.0	15.0
					종계 4	육계용 (더위 질병,스트레스 기간중종계)	15-10-22	16.0	2.5	3.7	0.5	6.0	15.0
					종계 5	육용종계	15-10-23	14.5	2.5	3.7	0.5	6.0	15.0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8 호

○ 부천 도시계획시설(고강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하고 동법 제12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결정 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5. 11

경 기 도 지 사

○ 부천 도시계획시설(고강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 별첨

○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승 인 조 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본 법 이외의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한후 사업시행할것. 끝.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69 호

○ 수원 도시계획시설(제 24 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 12조 제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결정도서는 수원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5. 11

경 기 도 지 사

o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제 24 호 어린이공원)조성계획 조서 : 별첨

o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o 승 인 조 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것이며 본법이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한후 사업시행할것. 끝.

고 시

경기도 제 170 호

o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제 26 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거 조성계획결정하고 동법 제 12 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o 결정도서는 수원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5. 11

경 기 도 지 사

o 수원 도시계획시설(제 26 호 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첨

o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o 승 인 조 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것. 끝.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71 호

o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제 27 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하고 동법제 12 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o 결정도서는 수원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5. 11

경 기 도 지 사

o 수원 도시계획시설(제 27호 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별첨

o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o 승 인 조 건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것이며 본법이외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한 후 사업시행할것. 끝.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72 호

o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당제 2 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4 조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하고 동법제 12 조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o 결정도서는 부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5. 11

경 기 도 지 사

o 부천도시계획시설(도당제 2 호 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 별첨

o 조성계획 결정도면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o 승 인 조 건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본법이외의 타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이행후 사업시행할것. 끝.

공 고

경기도공고 제151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을 휴(폐)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토록 되어있어 동 신고없이 제조업을 휴(폐)지한 아래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공문이 반송되었기 공시 송달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허가 취소됩니다.

1990. 5. .7

경 기 도 지 사

1.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주) 이원전자	정 용 재	3-8-194	전동력응용기계 기구류	부천시중구도당동 245-4

2. 의견제출기한 : 1990. 5.22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공 고

경기도공고 제152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에대한의견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을 휴(폐)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토록 되어있어 동 신고없이 제조업을 휴(폐)지한 아래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공문이 반송되었기 공시 송달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허가 취소됩니다.

1990. 5. 9

경 기 도 지 사

1.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대호전자공업(주)	강길태	3-11-44	전자응용기계기구류	부천시남구송내동 500
삼환전자	김중기	3-11-63	〃	부천시남구송내동 500-2

2. 의견제출기한 : 1990. 5.24

경 기 도 보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5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9

경 기 도 지 사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크린코리아	안 순 옥	3-8-218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부천중구내동 258
대 흥 기 업	김 향 숙	3-3-95	배선기구류	〃 〃 270-1
		3-6-45	소형교류 전동기류	
		3-8-225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삼 환 조 명	고 려 환	3-10-69	광원응용기계기구류	〃 〃 72-4
삼흥기기사업사	조 동 호	3-8-207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 〃 793

끝.

경기도공고 제 154호

공 인 신 조 공 고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신설에 따라 동 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신조사용함을 경기도 공인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990.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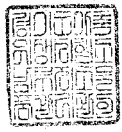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1. 사용개시일 : 1990 년 5 월 15 일

2. 인 영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장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계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장수관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분임경리관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물품관리관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전도자금출납원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물품출납원인
				

안산시고시 제 20 호

고 시

반월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시행 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1990. 5. 7

안 산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원곡동 994-5 번지일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 유통업무설비
└명칭 : 안산유통단지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 성 명 : 광문도시개발산업 대표 배명갑 외 1인

라.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78,902.1 ㎡(변경없음)
- 규 모
  - 건 축 면 적 45,188.56 ㎡(변경없음)
  - 건축연면적 : 156,287.23 ㎡(〃)
  - 일부점포용도변경
    - 당초 : 업무 및 판매시설 : 105,692.67 ㎡
    - 변경
      - 판매 및 업무시설 : 103,498.73 ㎡
      - 근린생활시설 : 14 개소 : 2,193.94 ㎡
        (중) 2개소 : 178.25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 토지소유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8 대표 배 명 갑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대표 김 종 벽
- 건물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광문종합유통 대표이사 강 형 복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허가일로부터 (변경없음)

준공예정일 : 1991.12.31 까지 (변경없음)

안산시 고시 제 21 호

고 시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여객자동차 정류장)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성포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5. 11

안 산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성포동 590 번지

나.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자동차정류장부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여객자동차 정류장
- 명칭 : 안산종합여객자동차 정류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71,464.6 ㎡
- 규 모
  - 건축부지 : 13,801 ㎡
  - 부대시설부지 : 41,819 ㎡
  - 조경 및 휴게녹지부지 : 15,846.6 ㎡
- 건축면적 : 22,514 ㎡
- 건축연면적 : 113,596 ㎡
  - 지상 : 70,143 ㎡ (지상 6 층)
  - 지하 : 43,453 〃 (지하 2 층)
- 사업비 : 70,233 백만원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안산시 성포동 590 번지

성 명 : ㈜화성 대표 박상준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토지소유자 : ㈜화성 대표 박상준

건물소유자 : 〃

이해관계인 : 대전직할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시행허가일로부터

준공예정일 : 1991. 9. 30 일까지

성남시 공고 제99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성남시 공인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90. 5. 8

성 남 시 장

○ 신조공인

건설부소관도로사업특별회계성남시분임재무관인	건설부소관도로사업특별회계성남시분임지출관인
	

부천시 공고 제 85 호

공 인 사 용 및 폐 기 인 공 고

부천시 공인조례 제 9 조 1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년 5월 1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인신규사용 및 폐기인

2. 사용 및 폐기일자 : 1990년 5월 1일

3. 공고인영

(신규사용인)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보건소장인	
부천시 남구 보건소계인	
부천시 남구 보건소분임경리관인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공 인 명	인 영
부천시 남구 보건소물품관리인	
부천시 남구 보건소전도자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	
보건사회부소관 일반회계 부천시 남구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인	
부천시 남구 보건소물품출납원인	
부천시 남구 보건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공 인 명	인 영
보건사회부소관 일반회계 부천시 남구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인	
(폐 기 인)	
보건사회부소관 일반회계 부천시 진도자금 출납 공무원인	

안양시 공고 제128호

공 인 신 조 사 용 공 고

안양시 비산3동, 관양1동, 관양2동의 신설에 따라 안양시장인(민원사무전용) 각동장 직인 및 회계관계 공인을 안양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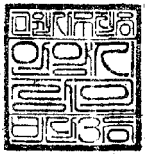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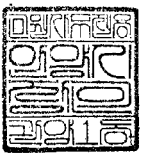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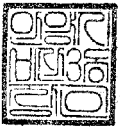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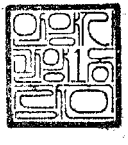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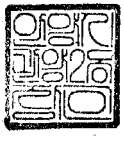
안 양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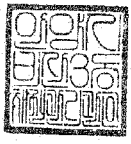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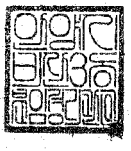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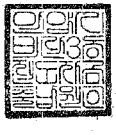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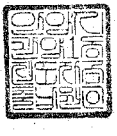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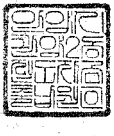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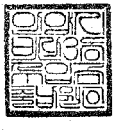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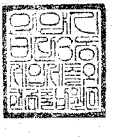
1. 사용개시일 : 1990. 5. 21

2. 신조사용인

안 양 시 장 인 (민원사무전용, 비산3동)	안 양 시 장 인 (민원사무전용, 관양1동)	안 양 시 장 인 (민원사무전용, 관양2동)	안산시비산3 동장인
			
안양시관양1동장인	안양시관양2동장인	안양시비산3동계인	안양시관양1동계인
			
안양시관양2동계인	안양시 비산3동 물품관리관인	안양시 관양1동 물품관리관인	안양시 관양2동 물품관리관인
			

경 기 도 보

제 2347 호

안양시 비산3동 분임징수관인	안양시 관양1동 분임징수관인	안양시 관양2동 분임징수관인	안양시 비산3동 채권관리관인
			
안양시 관양1동 채권관리관인	안양시 관양2동 채권관리관인	안양시 비산3동 분임경리관인	안양시 관양1동 분임경리관인
			
안양시 관양2동 분임경리관인	안양시 비산3동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1동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2동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비산3동 수입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1동 수입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2동 수입금출납원인	안양시 비산3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1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2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 비산3동 지출원인	안양시 관양1동 지출원인
			
안양시 관양2동 지출원인	안양시 비산3동 물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1동 물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2동 물품출납원인
			
안양시비산3동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안양시관양1동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관양2동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전도자금 출납원인	
			

안양시 공고 제 131 호

폐 공 인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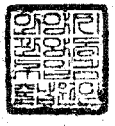
안양시 비산3동, 관양1, 2동의 신설에 따라 안양시 관양동의 직인 및 회계 관계 공인을 안양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11

안 양 시 장

1. 폐기일 : 1990. 5. 21

2.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안양시장인 (민원사무전용, 관양동)	안양시관양동장인	안양시관양동계인	안양시 관양동 물품관리관인
			
안양시 관양동 분임징수관인	안양시 관양동 분임경리관인	안양시 관양동 전도자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동 수입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동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양시 관양동 물품출납원인	안양시관양동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전도자금출납원인
	(공 란)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48 호
1990년 5 월 21일(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73호 '90년도 제1회 경기도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고시..... 2
○경기도고시 제 174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6
○경기도고시 제 178호 경지정리 환지계획 인가 고시..... 6
○경기도고시 제 179호 경지정리 환지계획 인가 고시..... 7
○경기도고시 제 180호 사료 성분등록 고시..... 7
○경기도고시 제 181호 사료 성분등록 고시..... 9
○경기도고시 제 182호 경지정리 환지계획 인가 고시..... 10
○경기도고시 제 183호 경지정리 환지계획 인가 고시..... 11
○경기도고시 제 184호 경지정리 환지계획 인가 고시..... 12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55호 '90학년도 전문대학학생 현장실습산업체 지정공고..... 13
○경기도공고 제 157호 주택건설및 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 해제공고..... 27
○경기도공고 제 159호 지방도 노선인정에 관한 공고..... 29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기도교육
위원회공고 제 36호 '9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공고.... 30
○경기도교육
위원회공고 제 37호 '9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공고.... 37

시 군 행 정

○수원시공고 제 73호 공인신조 공고..... 47
○수원시공고 제 74호 공인폐기 공고..... 48
○광명시공고 제 73호 공인신조 공고..... 49
○미금시공고 제 49호 국토이용계획 에고..... 51

경기도 고시 제 173호

'90년도 제 1회경기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고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0년도 제 1회 경기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12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고시함.

1990 년 5 월 14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90년도 제1회경기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

○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구분	관 항 별	예 산 액	비 고
수익의부	공영개발사업수익	14,465,648	
	영 업 수 익	14,248,398	
	영 업 외 수 익	161,937	
	특 별 이 익	55,313	
비용의부	공영개발사업비용	85,586,758	
	영 업 비 용	82,394,108	
	영 업 외 비 용	1,292,365	
	특 별 손 실	0	
	예 비 비	1,900,285	

○ 자 본 예 산

구분	관 항 별	예 산 액	비 고
수입의부	자 본 적 수 입	78,882,099	
	고정자산매각수입	1	
	투자및기타자산수입	0	
	고 정 부 채 수 입	78,413,098	
	잉 여 금 수 입	424,000	
	기 타 자 본 적 수 입	45,000	
지출의부	자 본 적 지 출	32,144,193	
	임대주택건설사업비	2,042,555	
	가 동 설 비 자 산	26,740	
	비 가 동 설 비 자 산	0	
	무 형 고 정 자 산	0	
	이 연 자 산	0	
	투 자 및 기 탄 자 산	480	
	고 정 부 채 자 산	0	
	기 타 자 본 적 지 출	29,390,000	
	예 비 비	684,418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 자금예산

구분	항 별	예 산 액	비 고
수입자금	계	117,856,386	
	영 업 · 수 입	14,248,398	
	영 업 외 수 입	161,937	
	특 별 수 입	55,313	
	전 년 도 미 수 금	8,250,000	
	고 정 자 산 매 각 수 입	1	
	투 자 및 기 타 자 산 수 입		
	고 정 부 채 수 입	78,413 ,098	
	잉 여 금 수 입	424,000	
	전 년 도 이 월 금 수 입	16,258,639	
	기 타 자 본 적 수 입	45,000	
지출자금	계	117,856,386	
	영 업 비 용	82,394,108	
	영 업 외 비 용	1,292,365	
	미 지 급 비 용	106,519	
	미 지 급 금	18,916	
	용지및분양주택건설사업비	2,042,555	
	임 대 주 택 건 설 사 업 비		
	가 동 설 비 자 산	26,740	
	비 가 동 설 비 자 산		
	무 형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투 자 및 기 타 자 산	480	
	고 정 부 채 상 환		
	기 타 자 본 적 지 출	29,390,000	
	예 비 자 금	2,584,703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채 무 부 담 행 위 내 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채무부담 행위내역	채무부담 행위액	지출행위액 (1991년)	사유
관	항	세 항				
계				44,790	44,790	
700 공영개발사업비용				3,000	3,000	
	710 영업비용			3,000	3,000	
		713 용지조성사업비	교문2지구택지개발사업 용지조성사업비	3,000	3,000	사업비가 미확보된 용지조성사업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91분양금으로 상환하고자 함.
100 자본적지출				41,790	41,790	
	230 기타자본적지출			41,790	41,790	
		232 기타자본적지출	유료고속화 도로 공사비	41,790	41,790	공사비 550억원중 관급자재 및 부대비는 기채로 시행하고 잔여분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후 일반회계지원 및 차량통행료로 상환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174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5 월 14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돼 지 고 기	박 피 품 (정육 500 g 당)	2,100 원
	미박피품 (〃)	1,850 원

○ 시 행 일 : '90. 5.17

경기도 고시 제 178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석곡지구
2. 구 역 : 양평군 양동면 석곡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양평군수
4. 환지계획 총면적 : 463,207 ㎡
5. 환 지 내 용 : 석곡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년 5 월 14 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경기도 고시 제 179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궁평지구
2. 구 역 : 연천군 청산면 궁평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포천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032,170 ㎡
5. 환 지 내 용 : 궁평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년 5 월 15 일

경 기 도 지 사

고 시

경기도 고시제 180 호

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5 월 16 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및 취 소 내 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보거사료	오산시 궐동 30	곽치섭	배합사료	착유 1-1	비유량 15 kg이하	7-28-1	13.0	2.0	0.7	0.6	10.0	10.0
					착유 1-2	〃	7-28-2	15.5	2.0	0.7	0.6	10.0	10.0
					착유 2-1	〃 16-17 kg	7-29-1	17.5	2.0	0.7	0.6	10.0	10.0
					착유 2-2	〃	7-29-2	15.5	2.0	0.7	0.6	9.0	9.0
					착유 3-1	〃 18-19 kg	7-30-1	17.5	2.0	0.7	0.6	9.0	9.0
					착유 4-1	〃 20 kg이상	7-31-1	19.5	2.0	0.7	0.6	10.0	10.0
					착유 4-2	〃	7-31-2	16.0	2.0	0.7	0.6	10.0	10.0
					착유 4-3	〃	7-31-3	18.0	2.0	0.7	0.6	10.0	10.0
					착유 4-4	〃	7-31-4	21.0	2.0	0.7	0.6	10.0	10.0
	흥성사료	안산시 목내동 490-1	정태원	〃	오리사료	육성용 8주 산란개시전	18-42-1	14.0	2.5	0.7	0.5	6.0	9.0
					〃	산란용	18-42-2	15.0	2.5	2.6	0.5	6.0	15.0
	두산곡산	부천시 중구 삼정동 15-6	안기영	〃	산란말기	백색계 61주 이상	17-6-11	13.0	2.5	3.0	0.5	6.0	14.5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181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5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배합사료성분등록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한일사료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13	최병덕	배합사료	착유 1	비유량 15kg이하	15-28-1	13.0	2.0	0.7	0.6	10.0	10.0
					〃 1-1	〃	15-28-2	15.5	2.0	0.7	0.6	10.0	10.0
					〃 2-2	〃 16-17 kg	15-29-3	17.5	2.0	0.7	0.6	10.0	10.0
					〃 3-1	〃 18-19 kg	15-30-2	15.5	2.0	0.7	0.6	9.0	9.0
					〃 4-2	〃 20kg이상	15-31-3	17.5	2.0	0.7	0.6	9.0	9.0
					〃 4-3	〃 25kg이하	15-31-4	19.5	2.0	0.7	0.6	10.0	10.0
					〃 4-4	〃 30kg이하	15-31-5	16.0	2.0	0.7	0.6	10.0	10.0
					〃 4-5	〃 35kg 이하	15-31-6	18.0	2.0	0.7	0.6	10.0	10.0
					〃 4-6	〃 40 kg이하	15-31-7	21.0	2.0	0.7	0.6	10.0	10.0
	퓨리나 코리아 (부천)	부천시 중구 오정동 114-5	폴반웰래 겜	〃	육계 후기2	출하7일 전 출하시	13-9-1	18.0	2.5	0.6	0.4	6.5	8.0
					비육돈 후기	후기용	13-17-1	13.0	2.5	0.4	0.3	9.0	10.0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경기도 고시 제 182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초월지구
2. 구 역 : 광주군 초월면 초월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광주농지개량조합장
4. 환지계획총면적 : 190,116 ㎡
5. 환 지 내 용 : 초월지구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년 5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경기도 고시 제 183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제령지구

2. 구 역 : 가평군 북면 제령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가평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637,675 ㎡

5. 환 지 내 용 : 제령지구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년 5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경기도 고시 제 184 호

경지정리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 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신하지구
2. 구 역 : 가평군 하면 신하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가평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216,341 ㎡
5. 환 지 내 용 : 신하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년 5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155 호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8 조의 2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38 조 제 1 항 11 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90 학년도 전문대학학생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하였음으로 이를 공고함.

1990 년 5 월 15 일

경 기 도 지 사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시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면허허가기관	관할중앙행정기관	
인덕공업전문대학	서울시노원구월계동 산 76 번지	기계설계과	5	90.6.25 ~ 7.29	국립공업시험원	과천시중앙동 2	전병식	과천시	상공부	
〃	〃	기계과	5	〃	〃	〃	〃	〃	〃	
〃	〃	기계설계과	5	〃	두산기계(주)	화성군태안읍병정리 465-2	이병수	화성군	〃	
〃	〃	〃	5	〃	현대전자(주)	이천군부발면아미리 산 131-1	정몽헌	이천군	〃	
〃	〃	기계과	5	〃	〃	〃	〃	〃	〃	
〃	〃	전자과	8	〃	〃	〃	〃	〃	〃	
〃	〃	기계과	5	〃	경원세기(주)	부천시중구내동 222-22	원윤희	부천시	〃	
〃	〃	〃	5	〃	삼성전자(주)	수원시권선구매탄동 416	강진구	수원시	〃	
〃	〃	전자과	8	〃	〃	〃	〃	〃	〃	
서일전문대학	서울시중랑구 면목 6 동 49-3	〃	6	90.7.1 ~ 7.31	현대전자(주)	이천군부발면아미리 산 131-1	정몽헌	이천군	〃	
명지실업전문대학	서울시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	5	90.11.1 ~ 11.30	한일계전(주)	부천시남구송내동 341-1	황종구	부천시	〃	
영남공업전문대학	대구시남구대명동 1737	〃	10	90.7.2 ~ 8.1	삼보컴퓨터(주)	안산시원시동 772-4	김종길	안산시	〃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습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면허가기관	관할중앙행정기관	
영남공업전문대학	대구시남구대명동 1737	전자계산기과	3	90.7.2 ~ 8.1	삼보컴퓨터(주)	안산시원시동 772-4	김종길	안산시	상공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시남구용현동 253	공업화학과	4	90.7.2 ~7.31	동선특수재료(주)	〃 목내동 407-1	정우영	〃	〃	
인천전문대학	인천시남구도화동 235	기계과	5	90.6.25 ~ 8.19	쌍용자동차(주)	송탄시칠괴동 150-3	손명원	송탄시	〃	
〃	〃	기계설계과	10	〃	기아자동차(주)	광명시소하동 781-1	이범창	광명시	〃	
〃	〃	통신과	5	〃	아함전자	부천시춘의동 205-2	양영석	부천시	〃	
안양전문대학	안양시안양동 산39-1	전자과	5	90.6.26 ~8.25중 (1개월간)	화성통신공업(주)	안양시안양7동 197-11	이건종	안양시	〃	
〃	〃	〃	5	〃	우진전자통신	〃 호계동 908-2	조태웅	〃	〃	
〃	〃	〃	10	〃	금성통신(주)	〃 호계1동 600	김용선	〃	〃	
〃	〃	〃	2	〃	인터소닉	부천시송내동 500-1	오경민	부천시	〃	
〃	〃	〃	3	〃	대유통신공업	군포시당정동 77-2	이만영	군포시	〃	
대림공업전문대학	안양시비산동 526-7	기계과	3	90.7.2 ~ 7.28	대우중공업(주)	광명시철산1동 120-3	이경훈	광명시	〃	
〃	〃	〃	3	〃	호성기계공업(주)	〃 철산동 123-1	정재석	〃	〃	

대림공업 전문대학	안양시비산동 526-7	기 계 과	3	90.7.2 ~ 7.28	기아자동차(주)	광명시소하동 781-2	이범창	광 명 시	상공부	
〃	〃	〃	3	〃	삼기기공(주)	안산시원시동 726-4	김영기	안 산 시	〃	
〃	〃	〃	3	〃	광진상공(주)	〃 목내동 394-1	권영직	〃	〃	
〃	〃	〃	3	〃	삼아알미늄(주)	시흥시논곡동 160	한상구	시 흥 시	〃	
〃	〃	〃	3	〃	(주) 도 루 코	〃 〃 162-3	노재룡	〃	〃	
〃	〃	〃	3	〃	삼 화 특수금속(주)	〃 미산동 288-2	강문준	〃	〃	
〃	〃	〃	3	〃	대우통신(주)	〃 대야동 360-2	박성규	〃	〃	
〃	〃	〃	3	〃	대우중공업(주)	의왕시삼동 462-2	이경훈	의 왕 시	〃	
〃	〃	〃	3	〃	신흥특수기계공업(주)	〃 고천동 231-1	최충식	〃	〃	
〃	〃	〃	3	〃	금성전선(주) 중기공장	군포시당정동 200	홍종선	군 포 시	〃	
〃	〃	〃	3	〃	대한제작소(주)	〃 522	최득수	〃	〃	
〃	〃	〃	3	〃	삼성중공업(주)	〃 240-1	최관식	〃	〃	
〃	〃	〃	3	〃	신창공업(주)	〃 11-1	오용휘	〃	〃	
〃	〃	〃	3	〃	신성정공(주)	〃 78-2	유기만	〃	〃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시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면허허가기관	관할중앙행정기관	
대림공업전문대학	안양시비산동 526-7	기계과	3	90.7.2 ~ 7.28	대우전자부품(주)	군포시당정동 543	김용원	군포시	상공부	
〃	〃	〃	3	〃	명성(주)	〃 135	조규남	〃	〃	
〃	〃	기계설계과	3	〃	서원풍력기계(주)	안양시관양동 791-2	최창신	안양시	〃	
〃	〃	전기과	3	〃	대한전선(주)	〃 785	유채준	〃	〃	
〃	〃	기계설계과	3	〃	〃	〃 785	〃	〃	〃	
〃	〃	〃	3	〃	합동메틸(주)	〃 954-1	남승진	〃	〃	
〃	〃	〃	3	〃	회림기계(주)	안양시호계동 907	이정길	〃	〃	
〃	〃	〃	3	〃	금성전선(주)	〃 55	박원근	〃	〃	
〃	〃	전기과	3	〃	〃	〃 55	〃	〃	〃	
〃	〃	기계설계과	3	〃	금성통신(주)	〃 600	김용선	〃	〃	
〃	〃	전자과	3	〃	〃	〃 600	〃	〃	〃	
〃	〃	기계설계과	3	〃	혜성공업(주)	〃 898-2	김인동	〃	〃	

대림공업전문대학	안양시비산동 526-7	기계설계과	3	90.7.2 ~ 7.28	광성기업(주)	안양시호계동 911-2	채능석	안양시	상공부	
〃	〃	〃	3	〃	대우공업사	〃 〃 900-4	오돈영	〃	〃	
〃	〃	〃	3	〃	한선전자통신	〃 안양동 205-7	이의종	〃	〃	
〃	〃	전기과	3	〃	〃	〃 〃 205-7	〃	〃	〃	
〃	〃	기계설계과	3	〃	신풍정밀	〃 안양7동 204-12	김동섭	〃	〃	
〃	〃	〃	3	〃	태광산업(주)	〃 안양동 191-1	이기화	〃	〃	
〃	〃	전기과	3	〃	〃	〃 〃 191-1	〃	〃	〃	
〃	〃	기계설계과	3	〃	삼성정공(주)	〃 안양7동201-18	김동규	〃	〃	
〃	〃	〃	3	〃	삼화왕관(주)	〃 평촌동 126-1	안영진	〃	〃	
〃	〃	〃	3	〃	의성실업(주)	안산시원시동 824-1	정화영	안산시	〃	
〃	〃	〃	3	〃	동진기계공업(주)	〃 〃 779-3	신동철	〃	〃	
〃	〃	〃	3	〃	동아정공(주)	〃 목내동 447-1	이범항	〃	〃	
〃	〃	〃	3	〃	서해공업(주)	〃 성곡동 609-3	김재복	〃	〃	
〃	〃	〃	3	〃	일진(주)	〃 목내동 472-1	성낙준	〃	〃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시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면허가기관	관할중앙행정기관	
대림공업전문대학	안양시비산동 526-7	기계설계과	3	90.7.2 ~ 7.28	코리아씨키트(주)	안산시성곡동 606-4	송동효	안산시	상공부	
〃	〃	전기과	3	〃	국제전기(주)	안양시평촌동 160-1	김준철	안양시	〃	
〃	〃	〃	3	〃	프린스산업사	〃 안양동 204	유헌준	〃	〃	
〃	〃	〃	3	〃	우성전기공업(주)	〃 관양동 947-5	노관호	〃	〃	
〃	〃	〃	3	〃	협신전기(주)	〃 박달동 157-1	박배근	〃	〃	
〃	〃	〃	3	〃	국제전선(주)	군포시금정동 166	구자성	군포시	〃	
〃	〃	〃	3	〃	(주)세기전동	〃 당정동 78-11	박용길	〃	〃	
〃	〃	〃	3	〃	한국삼협정기(주)	의왕시고촌동 405	다끼기와시게오	의왕시	〃	
〃	〃	〃	3	〃	동양사(주)	시흥시은행동 286-6	원민희	시흥시	〃	
〃	〃	전자과	3	〃	금성광통신(주)	안양시호계동 596-3	박정도	안양시	〃	
〃	〃	〃	3	〃	금성정밀(주)연구소	〃 〃 533	안치한	〃	〃	
〃	〃	〃	3	〃	대덕전자부품(주)	〃 안양7동 200-14	염상호	〃	〃	
〃	〃	〃	3	〃	삼우공업(주)	〃 〃 197-6	김순영	〃	〃	

수 원 전문대학	화성군봉담면와우리 산 2-18	기 계 과	10	90.7.4 ~8.20중 (1개월)	유성기업(주)	부천시남구송내동 372	유홍우	부 천 시	상공부	
〃	〃	용 접 공 업 과	5	〃	만도기계(주)	안양시박달동 120	정몽원	안 양 시	〃	
〃	〃	열처리과	5	〃	〃	〃 120	〃	〃	〃	
〃	〃	기 계 설 계 과	10	〃	〃	〃 120	〃	〃	〃	
〃	〃	〃	5	〃	동양기공(주)	〃 771	선충호	안 산 시	〃	
〃	〃	전 자 과	5	〃	삼성전자(주)	수원시권선구매탄동 416	강진구	수 원 시	〃	
〃	〃	〃	2	〃	현대전자(주)	이천군부발면아미리 산 131-1	정몽헌	이 천 군	〃	
〃	〃	〃	5	〃	삼화콘덴서 공 업 (주)	용인군남사면북리 124	오세종	용 인 군	〃	
〃	〃	〃	5	〃	삼보컴퓨터 (주)	안산시원시동 772-4	김종길	안 산 시	〃	
대유공업 전문대학	성남시수정구복정동 425	〃	5	90.6.25 ~8.25	삼 영 전 자 공 업 (주)	성남시신흥동 2460-1	변동준	성 남 시	〃	
〃	〃	전 자 통 신 과	5	〃	〃	〃	〃	〃	〃	
유한공업 전문대학	부천시남구역곡동 61-6	기 계 과	5	90.7.1 ~7.31	만도기계(주)	안양시박달동 120	정몽원	안 양 시	〃	
〃	〃	기 계 설 계 과	5	〃	유 일 (주)	안산시목내동 390-3	감귀주	안 산 시	〃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시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면허허가기관	관할중앙행정기관	
유한공업전문대학	부천시남구역곡동 61-6	기계설계과	10	90.7.1 ~7.31	동양진공업(주)	부천시중구도당동 176-1	이영환	부천시	상공부	
〃	〃	〃	2	〃	흥진기연	부천시남구소사동 28-11	김종수	〃	〃	
〃	〃	〃	3	〃	제일베어링공업사	부천시중구춘의동 65-5	박명준	〃	〃	
〃	〃	〃	5	〃	반도정밀	부천시삼정동 24-5	최훈학	〃	〃	
〃	〃	〃	5	〃	동진정밀	의왕시오전동 260-6	장병국	의왕시	〃	
〃	〃	〃	3	〃	삼성전기(주)	수원시권선구매탄동 314	서주인	수원시	〃	
〃	〃	금형설계과	5	〃	〃	〃	〃	〃	〃	
〃	〃	기계설계과	5	〃	동영(주)	부천시북구삼정동 267-3	양윤환	부천시	〃	
〃	〃	기계과	5	〃	만도기계(주)	안양시박달동 120	정몽원	안양시	〃	
〃	〃	기계설계과	5	〃	〃	〃 120	〃	〃	〃	
〃	〃	금형설계과	3	〃	〃	〃 120	〃	〃	〃	
〃	〃	전자과	3	〃	대륙전선(주)	안산시원시동 731-9	안재문	안산시	〃	

유한공업전문대학	부천시남구역곡동 61-6	전자과	3	90.7.1 ~ 7.31	태광전자산업	안양시안양동 191-1	이영우	안양시	상공부	
〃	〃	〃	3	〃	뉴코토이	부천시남구소사동 137	문남식	부천시	〃	
〃	〃	〃	3	〃	강호전자	〃 괴안동 167	명영화	〃	〃	
〃	〃	〃	3	〃	통일전자	시흥시대야동 418-27	유재준	시흥시	〃	
〃	〃	〃	3	〃	대림전자	부천시남구괴안동 169-26	이정숙	부천시	〃	
〃	〃	〃	3	〃	풍원전자	부천시중구도당동 28-3	명시복	〃	〃	
〃	〃	금형설계과	2	〃	풍국공업	부천시남구역곡동 24-7	최진식	〃	〃	
〃	〃	〃	3	〃	서해공업(주)	안산시성곡동 609-3	김재복	안산시	〃	
〃	〃	〃	2	〃	퍼시픽콘트롤즈(주)	수원시권선구원천동 288	이종록	수원시	〃	
〃	〃	〃	2	〃	명성 (주)	군포시당동 135	조규남	군포시	〃	
〃	〃	〃	2	〃	기아자동차(주)	광명시소하동 781-1	이범창	광명시	〃	
〃	〃	기계과	5	〃	〃	〃	〃	〃	〃	
오산전문대학	오산시청학동 17-1	〃	3	〃	만도기계(주)	안양시박달동 120	정몽원	안양시	〃	
〃	〃	〃	3	〃	삼성전자(주)	수원시권선구매탄동416	강진구	수원시	〃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시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면허 허가기관	관할중앙 행정기관	
오산전문대학	오산시청학동 17	전자과	5	90.7.1 ~ 7.31	삼성전자(주)	수원시권선구매탄동 416	강진구	수원시	상공부	
〃	〃	기계과	3	〃	두산기계(주)	화성군태안읍병점리 465-2	이병수	화성군	〃	
〃	〃	〃	3	〃	현대산업(주)	이천군부발면아미리 산 131-1	정몽헌	이천군	〃	
〃	〃	전자과	3	〃	〃	〃	〃	〃	〃	
〃	〃	기계과	3	〃	경동기계(주)	평택시세교동 137	박성철	평택군	〃	
〃	〃	〃	3	〃	대우중공업(주)	의왕시삼동 162-1	이경훈	의왕시	〃	
〃	〃	〃	3	〃	신흥특수기계공업(주)	〃 고천동 231-1	최충식	〃	〃	
〃	〃	〃	3	〃	기아자동차(주)	광명시소하동 781-1	이범창	광명시	〃	
〃	〃	기계설계과	3	〃	대한수지공업(주)	의왕시고천동 247-3	강경원	의왕시	〃	
〃	〃	〃	3	〃	영신산업(주)	군포시당정동 2-5	권오혁	군포시	〃	
〃	〃	〃	3	〃	서울피스톤(주)	화성군봉담면와우리 211-53	홍상기	화성군	〃	
〃	〃	〃	3	〃	일진(주)	안산시목내동 472-1	성낙준	안산시	〃	

오 산 전문대학	오산시청학동 17	기 계 설계과	3	90.7.1 ~ 7.31	법 양 냉방공업(주)	군포시금정동 101-1	손진관	군 포 시	상공부	
〃	〃	〃	3	〃	우 진 계기공업(주)	용인군기흥읍구갈리 199	이근우	용 인 군	〃	
〃	〃	〃	5	〃	삼성전기(주)	수원시권선구매탄동 314	서주인	수 원 시	〃	
〃	〃	전 기 과	3	〃	〃	〃	〃	〃	〃	
〃	〃	〃	5	〃	장안공업(주)	평택군진위면갈곶리 224-1	장시룡	평 택 군	〃	
〃	〃	〃	3	〃	금호전기(주)	화성군태안읍병점리 690	박형구	화 성 군	〃	
〃	〃	〃	3	〃	대 한전선(주)	안양시관양동 785	유채준	안 양 시	〃	
〃	〃	〃	3	〃	일신전기(주)	화성군태안읍안녕리 71	장홍수	화 성 군	〃	
〃	〃	〃	3	〃	국제전기(주)	안양시평촌동 160-1	김준철	안 양 시	〃	
〃	〃	〃	5	〃	금성산전(주)	오산시오산동 736	이희종	오 산 시	〃	
〃	〃	전 자 과	5	〃	〃	〃	〃	〃	〃	
〃	〃	〃	5	〃	금 성 사 (주)	평택군진위면청호리 산 19-1	이헌조	평 택 군	〃	
〃	〃	〃	3	〃	금성통신(주)	안양시호계동 600	김용선	안 양 시	〃	
〃	〃	〃	3	〃	대 우통신(주)	시 흥시대야동 360-2	박성규	시 흥 시	〃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시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면허가기관	관할중앙행정기관	
오산전문대학	오산시청학동 17	전자과	3	90.7.1 ~ 7.31	삼화전자공업㈜	화성군동탄면장지리 211-1	오찬서	화성군	상공부	
〃	〃	〃	3	〃	삼보컴퓨터㈜	안산시원시동 772-4	김종길	안산시	〃	
〃	〃	〃	3	〃	대영전자공업㈜	군포시당정동 352	정대영	군포시	〃	
〃	〃	〃	3	〃	삼영전자공업㈜	성남시신흥동 2460-1	변동준	성남시	〃	
천안공업전문대학	천안시부대동 275-1	전기과	6	〃	㈜금성사	평택군진위면청호리 19-1	이헌조	평택군	〃	
예산농업전문대학	예산군예산읍예산리 527	농업기계과	15	〃	금성전선㈜ 농기사업부	군포시당정동 200	홍종선	군포시	〃	
전주공업전문대학	전주시남노송동 72	전자과	4	90.7.9 ~ 8.8	삼성전자㈜	수원시권선구매탄동 416	강진구	수원시	〃	
〃	〃	전자통신과	3	〃	〃	〃	〃	〃	〃	
〃	〃	〃	3	〃	현대산업㈜	이천군부발면아미리 산 131-1	정몽헌	이천군	〃	
〃	〃	전자과	5	〃	〃	〃	〃	〃	〃	
〃	〃	금형과	3	〃	공화금속산업	안산시원시동 601-19	정구룡	안산시	〃	
〃	〃	〃	3	〃	광성기업㈜	안양시호계 2 동 911-2	채능석	안양시	〃	

전주공업전문대학	전주시남노송동 72	금형과	3	90.7.9 ~ 8.8	삼성전기㈜	수원시권선구매탄동 314	서주인	수원시	상공부	
〃	〃	〃	3	〃	만도기계㈜	안양시박달동 120	정몽원	안양시	〃	
〃	〃	〃	3	〃	서해공업㈜	안산시성곡동 609-3	김재복	안산시	〃	
〃	〃	〃	3	〃	신풍정밀	안양시안양7동 204-12	김동섭	안양시	〃	
〃	〃	〃	3	〃	신흥정밀㈜	부천시중구춘의동 154-2	정규형	부천시	〃	
〃	〃	〃	3	〃	아일공업㈜	화성군봉담면와우리 211-5	장복선	화성군	〃	
〃	〃	〃	3	〃	영창산업㈜	안산시원시동 778-6	김영호	안산시	〃	
〃	〃	기계과	5	〃	현대산업㈜	이천군부발면아미리 산 131-1	정몽헌	이천군	〃	
〃	〃	금형과	3	〃	대덕산업	안산시목내동 475	김정식	안산시	〃	
〃	〃	〃	2	〃	계양전기	〃 원시동 823-2	박희석	〃	〃	
〃	〃	〃	3	〃	㈜금성사	평택군진위면청호리 19-1	이헌조	평택군	〃	
진주농림전문대학	진주시칠암동 150	농업기계과	2	90.7.2 ~ 8.2	금성전선㈜	군포시당정동 200	홍종선	군포시	〃	

경 기 도 표

현장실습학교					현장실습대상업체					비고
학교명	소재지(시·군)	실습학과	실습학생수	실시기간	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및변허허가기관	관할중앙행정기관	
울산전문대학	울산시남구무거동 산 29	기계과	5	90.7.1 ~ 8.20	현대산업(주)	이천군부발면아미리 산 131-1	정몽헌	이천군	상공부	
〃	〃	전자과	5	〃	〃	〃	〃	〃	〃	
〃	〃	전자계산과	5	〃	〃	〃	〃	〃	〃	
〃	〃	기계과	3	〃	삼성전기(주)	수원시권선구매탄동314	서주인	수원시	〃	
〃	〃	전기과	3	〃	〃	〃	〃	〃	〃	
〃	〃	금형설계과	5	〃	〃	〃	〃	〃	〃	

공 고

경기도공고제 157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해제공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 7 조에 의거 영업정지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를 해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 5 . 16 .

경 기 도 지 사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영업정지해제현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해제일자	해제사유
88-5	한일공영건설㈜	백 훈 기	안양시호계동 915-24	90.3.15 - 90.5.14 (2개월간)	90.5.15	영업정지기간만료
88-12	광원주택	천 영 일	고양군원당읍성사리 676-3	〃	〃	〃
89-2	대신주택㈜	한 규 남	의정부시가능동 603-28	〃	〃	〃
89-17	㈜미리	김 용	용인군남사면북리 557-1	〃	〃	〃
89-20	보명건설산업㈜	남 궁 창 호	의정부시의정부동 185-1	〃	〃	〃
89-34	대성주택건설	박 승 현	부천시중구내동 222-68	〃	〃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해제일자	해제사유
89- 38	뉴한신주택	노 해 용	안양시비산동 218브럭 6 - 1 롯트	90.3.15-90.5.14 (2개월간)	90.5.15	영업정지기간만료
89- 39	동양섬유산업㈜	박 광 진	고양군원당읍성사리 519-11	〃	〃	〃
89- 47	남향건설㈜	엄 정 일	안양시안양동 202-7	〃	〃	〃
89- 74	영진기업㈜	유 경 선	부천구중구삼정동 34-8	〃	〃	〃
89- 75	남경건설㈜	김 창 택	안산시고잔동 542-3	〃	〃	〃
89- 77	㈜성남건설	정 규 인 외 1 인	고양군원당읍주교리 602-9	〃	〃	〃
89- 85	삼호주택	박 관 용	안양시관양동 289-1	〃	〃	〃
89-106	태원건설㈜	김 중 태	구리시수택동 542-5	〃	〃	〃
89-112	㈜삼원	이 결 휘	포천군포천읍신읍리 35-6	〃	〃	〃
89-116	우신토건㈜	김 성 완	부천시중구내동 128	〃	〃	〃
89-121	금강주택건설㈜	강 중 순	광명시광명동 102-13	〃	〃	〃
89-126	원신건설㈜	박 은 규	부천시중구심곡동 476-9	〃	〃	〃
89-130	대지건설산업공사	정 팔 수	부천시중구심곡동 87-3	〃	〃	〃
89-135	(합)이화건설	김 수 영	이천군이천읍중리 119-4	〃	〃	〃
89-136	대원건설㈜	이 종 복	안산시고잔동 542-2	〃	〃	〃
89-137	신창건설㈜	육 창 수	수원시장안구정자동 48-8	〃	〃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기간	영업정지해제일자	해제사유
89-139	미성건설	신현제	가평군가평읍읍내리 496-1	90.3.15-90.5.14 (2개월간)	90.5.15	영업정지기간만료
89-146	대지조성산업공사	정팔수	부천시중구심곡동 171-16	〃	〃	〃
89-149	서흥건설	조남원	부천시중구여월동 48-7	〃	〃	〃

경기도 공고제 159 호

지방도 노선인정에 관한공고

도로법 제 19 조(노선인정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도의 노선을 인정하였기에 이에 공고한다.

1990 . 5. 19 .

경 기 도 지 사

노선의종류(번호)	구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km)	중용구간
지방동 312 호선	신규	의왕-과천	의왕시 고천동 375-3	과천시 문원동 542	의왕·왕곡동 학의동·청계동 과천·갈현동 문원동	10.852	
지방도 315 호선	〃	행주대교-자유다리	고양군 지도읍 행주외리 224-1	파주군 문산읍 마정리 509-1	고양·송포면 행주대교 파주·탄현면 문산읍·오두산	46.600	

경기도교육위원회 공고제 36호

공 고

199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 . 5 . 15 .

경기도교육위원회 검정고시위원회 위 원 장

동고시결과 통지서는 개별통지함.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명단

경기도교육위원회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1001	송재영	여	74.01.03	747.0	83.00	동성여중	퇴 학
1007	김선애	여	71.01.24	581.0	64.55	논산여중	퇴 학
1008	김민호	남	71.02.04	631.0	70.11	방배동	퇴 학
1009	조진양	여	74.02.08	675.0	75.00	경화여중	퇴 학
1010	이경주	남	73.02.09	576.0	64.00	성남동중	퇴 학
1011	강해성	남	74.02.10	736.0	81.77	안성중	퇴 학
1014	박은주	여	72.02.19	705.0	78.33	오주중	퇴 학
1015	김복자	여	58.02.21	640.0	71.11	성동국교	졸 업
1016	장광규	남	69.02.23	648.0	72.00	경윤중	퇴 학
1018	김태일	남	73.03.11	634.0	70.44	무산중	퇴 학
1022	황선호	남	75.03.29	726.0	80.66	서라벌중	퇴 학
1026	이철행	남	71.04.07	576.0	64.00	덕소중	퇴 학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1028	심미라	여	69.04.12	703.0	78.11	금광국교	졸 업
1029	전영숙	여	71.04.12	675.0	75.00	중앙국교	〃
1042	이미영	여	75.05.20	640.0	71.11	경민여중	퇴 학
1043	양점순	여	73.05.25	615.0	68.33	동계국교	졸 업
1044	장영훈	남	73.06.02	625.0	69.44	소년의집국교	〃
1049	김정영	남	74.07.05	580.0	64.44	이목중	퇴 학
1050	박지경	여	74.07.10	565.0	62.77	동부국교	졸 업
1051	김전농	남	72.07.10	650.0	72.22	송림중	퇴 학
1052	박용국	남	72.07.12	667.0	74.11	경산중	〃
1055	장인석	남	75.07.29	586.0	65.11	구리중	〃
1056	오혜미	여	71.08.01	713.0	79.22	대원여중	〃
1063	황광훈	남	72.08.24	674.0	74.88	영림중	〃
1064	박미선	여	71.08.24	754.0	83.77	창곡여중	〃
1065	강기덕	남	63.08.26	660.0	73.33	대북국교	졸 업
1066	김미라	여	70.09.02	630.0	70.00	검정고시	합 격
1068	이명자	여	73.09.08	600.0	66.66	관산중	퇴 학
1070	손왕국	남	61.09.11	645.0	71.66	청산중	〃
1072	김용현	남	72.09.20	685.0	76.11	대강중	〃
1073	김진용	남	59.09.29	745.0	82.77	삼척국교	졸 업
1074	김천규	남	75.09.29	634.0	70.44	삼괴중	퇴 학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1075	김미영	여	73.10.02	633.0	70.33	성남여중	퇴 학
1076	팽현진	여	74.10.08	580.0	64.44	영성여중	〃
1078	신공님	여	73.10.13	558.0	62.00	창곡여중	〃
1080	김민수	남	74.10.17	707.0	78.55	선린중	〃
1084	김만산	남	68.11.29	622.0	69.11	수원북중	〃
1085	김상환	남	73.11.30	593.0	65.88	장항중	〃
1086	최미진	여	73.11.30	596.0	66.22	창곡여중	〃
1087	이혜윤	여	71.12.01	610.0	67.77	숭신여중	〃
1088	이상철	남	57.12.10	642.0	71.33	창호국교	졸 업
1089	박수현	여	73.12.11	641.0	71.22	군자중	퇴 학
1091	엄태형	남	75.12.22	660.0	73.33	의왕중	〃
1092	노재춘	남	73.12.26	646.0	71.77	낙생국교	졸 업
1093	박은숙	여	68.10.02	729.0	81.00	성문여중	퇴 학
1094	손경화	여	72.10.12	587.0	65.22	안양서여자중	〃
1098	이은숙	여	69.11.23	621.0	69.00	운주중	〃
1103	박문자	여	71.01.16	627.0	69.66	수원여중	〃
1137	황순화	여	73.10.06	760.0	84.44	경천중	〃
1146	손미진	여	69.12.04	653.0	72.55	구포여중	〃
1153	홍인표	남	74.01.23	754.0	83.77	동두천중	〃
1154	전순덕	여	65.01.23	669.0	74.33	왕남국교	졸 업
1155	이영자	여	53.02.01	677.0	75.22	월성국교	〃
1156	김성은	여	71.02.02	649.0	72.11	동일여중	퇴 학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1159	최 율 자	여	69.02.10	650.0	72.22	유등국교	졸 업
1160	박 정 순	여	54.02.11	632.0	70.22	당북국교	〃
1161	김 보 경	여	74.02.12	618.0	68.66	원곡중	퇴 학
1164	김 인 철	남	67.02.26	697.0	77.44	부산금성중	〃
1170	최 대 용	남	74.03.20	643.0	71.44	오주중	〃
1171	유 형 식	남	74.03.23	724.0	80.44	묵호중	〃
1172	김 종 우	남	73.03.26	776.0	86.22	안서중	〃
1179	김 만 제	남	74.05.15	628.0	69.77	서 중	〃
1181	송 정 선	여	70.05.23	653.0	72.55	혜인여중	〃
1182	장 혜 숙	여	69.05.24	588.0	65.33	가평국교	졸 업
1184	김 종 섭	남	70.06.15	628.0	69.77	공덕국교	〃
1185	송 경 미	여	73.06.20	640.0	71.11	모가국교	〃
1186	지 영 봉	남	75.06.21	563.0	62.55	법성동국교	〃
1187	임 정 빈	여	70.06.25	617.0	68.55	덕정국교	〃
1193	남 미 랑	여	71.07.27	769.0	85.44	자명국교	〃
1200	윤 옥 자	여	58.09.12	684.0	76.00	옥터국교	〃
1207	이 해 인	남	74.03.02	610.0	67.77	봉의국교	〃
1209	이 진 규	남	73.04.28	601.0	66.77	대언중	퇴 학
1214	서 은 숙	여	74.06.10	654.0	72.66	대명여중	〃
1218	강 영 란	여	74.08.14	636.0	70.66	의성여중	〃
1220	박 애 순	여	74.09.19	552.0	61.33	청주동중	〃
1228	예 대 완	남	69.02.14	556.0	61.77	영동중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1248	이귀병	남	51.08.28	806.0	89.55	세류국교	졸 업
1252	이순이	여	54.01.23	446.0	89.20	원곡고등공민	〃
1253	정병선	남	69.01.25	596.0	66.22	고한중	퇴 학
1260	류남길	남	60.03.01	630.0	70.00	광명국교	졸 업
1261	박지연	여	73.03.01	685.0	76.11	수성여중	퇴 학
1263	김민숙	여	53.03.20	595.0	66.11	어정국교	졸 업
1268	이영숙	여	52.06.02	674.0	74.88	검정고시	합 격
1271	배영두	남	51.07.06	691.0	76.77	화양국교	졸 업
1272	설진영	남	57.07.08	574.0	63.77	마곡국교	〃
1285	송병완	남	48.09.16	606.0	67.33	서면국교	〃
1294	김양희	여	61.11.05	548.0	60.88	부발국교	〃
1296	김영도	남	71.11.27	614.0	68.22	산의국교	〃
1297	한재용	남	63.11.28	596.0	66.22	정금국교	〃
1299	이태관	남	66.12.12	625.0	69.44	상동중	퇴 학
1305	최기용	남	67.01.18	626.0	69.55	이천국교	졸 업
1310	오백순	여	55.03.03	733.0	81.44	영광서국교	〃
1311	박석재	남	55.03.20	608.0	67.55	삼덕국교	〃
1312	차영숙	여	55.03.21	552.0	61.33	검정고시	합 격
1314	함금균	남	66.04.13	616.0	68.44	오산중	퇴 학
1316	홍정화	여	70.04.20	613.0	68.11	화산국교	졸 업
1317	심승국	남	72.05.09	631.0	70.11	화광중	퇴 학
1318	유동술	여	57.05.20	627.0	69.66	검정고시	합 격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1321	김영균	남	74.06.10	620.0	68.88	동화중	퇴 학
1325	이종철	남	61.07.28	549.0	61.00	동봉국교	졸 업
1326	채영주	여	75.08.08	624.0	69.33	오정중	퇴 학
1327	백순임	여	58.08.15	717.0	79.66	현덕국교	졸 업
1329	김현정	여	71.09.01	569.0	63.22	충북여중	퇴 학
1332	김학태	남	72.09.16	565.0	62.77	발안중	〃
1334	김성예	여	73.10.01	571.0	63.44	오산여중	〃
1336	최영미	여	75.10.06	718.0	79.77	검정고시	합 격
1341	이선미	여	74.10.18	608.0	67.55	청리국교	졸 업
1345	박영지	여	59.11.16	624.0	69.33	송신국교	〃
1353	박경옥	여	75.04.30	619.0	68.77	입탄국교	〃
1359	박우수	남	61.01.04	540.0	60.00	장선국교	〃
1370	강영옥	여	65.04.14	576.0	64.00	학성국교	〃
1385	이경애	여	69.08.18	680.0	75.55	평택여중	퇴 학
1393	김영국	여	69.11.27	619.0	68.77	상신국교	졸 업
1396	박선화	여	74.12.04	660.0	73.33	동탄중	퇴 학
1397	남형주	남	73.12.10	640.0	71.11	백양중	〃
1430	이미희	여	59.09.11	624.0	69.33	영복여중	〃
1445	박종하	남	59.02.17	611.0	67.88	임기국교	졸 업
1466	황민수	남	75.02.26	560.0	62.22	창룡국교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1467	최인숙	여	60.02.28	424.0	84.80	제일고등공민	졸 업
1484	문도철	남	72.12.21	560.0	62.22	남성중	퇴 학
1485	김현정	여	72.12.28	708.0	78.66	대안여중	〃
1486	최명숙	여	52.12.25	660.0	73.33	천안국교	졸 업
1488	김근식	남	72.09.23	603.0	67.00	연무중	퇴 학
1489	김유순	여	72.11.03	600.0	66.66	용인여중	〃
1494	유성미	여	74.01.28	594.0	66.00	현산중	〃
1500	오민귀	남	67.04.08	338.0	67.60	천호고등공민	졸 업
1508	유진순	여	71.04.11	362.0	72.40	광명고등공민	〃
1518	조현자	여	71.09.05	612.0	68.00	문현여중	퇴 학
1521	이명성	남	72.05.15	641.0	71.22	과천중	〃
1527	최현철	남	73.04.13	616.0	68.44	장위중	〃
1546	신미정	여	75.04.05	572.0	63.55	율곡중	〃
1547	박현영	남	75.04.24	548.0	60.88	안양남국교	졸 업
1552	김원곤	남	55.07.15	624.0	69.33	일대국교	〃
1555	김승열	남	62.02.09	672.0	74.66	전주남국교	〃
1557	김창중	남	62.12.28	620.0	68.88	금화국교	〃
1558	서해준	남	65.02.17	660.0	73.33	결성국교	〃
1561	손진호	남	66.01.13	656.0	72.88	부흥국교	〃

경기도교육위원회 공고 제 37 호

공 고

1990년도 제 1 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년 5월 15일

경기도교육위원회검정고시위원회 위 원 장

동 고시결과 통지서는 개별 통지함.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명단

경기도교육위원회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 신 학 교	비 고
5009	김 원 필	남	73. 1. 8	581.0	64.55	동원고	퇴 학
5011	이 규 운	남	〃	709.0	78.77	〃	〃
5019	박 종 훈	남	69. 1.21	635.0	70.55	원광고	〃
5025	이 명 선	남	74. 2. 6	618.0	68.66	영생고	〃
5026	원 선 희	남	70. 2. 8	638.0	70.88	주덕중	졸 업
5027	김 성 옥	남	67. 2. 8	570.0	63.33	검정고시	합 격
5030	정 완 석	남	70. 2.24	592.0	65.77	인천기계공고	퇴 학
5037	이 종 만	남	72. 2.27	651.0	72.33	전북 〃	〃
5039	이 상 화	남	72. 2.28	670.0	74.44	검정고시	합 격
5045	반 종 득	남	73. 3. 7	627.0	69.66	성남동중	졸 업
5060	황 인 석	남	72. 3.19	691.0	76.77	성일중	〃
5070	최 민 호	남	71. 4. 4	557.0	61.88	검정고시	합 격
5081	신 철 수	남	71. 4.18	568.0	63.11	경성고	퇴 학
5084	김 재 경	남	72. 4.18	592.0	65.77	금파화학공고	〃
5085	조 관 규	남	73. 4.19	742.0	82.44	성남서고	〃
5086	최 정 식	남	72. 4.20	645.0	71.66	의성중	졸 업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5087	민정홍	남	73. 4.21	564.0	62.66	원덕고	퇴 학
5099	유영표	남	64. 5.10	561.0	62.33	검정고시	합 격
5100	이 호	남	72. 5.11	566.0	62.88	이천고	퇴 학
5105	유하용	남	69. 5.22	555.0	61.66	신라고	〃
5108	김미선	여	72. 6. 7	703.0	78.11	검정고시	합 격
5110	김진관	남	69. 6.10	594.0	66.00	풍생고	퇴 학
5137	박승완	남	72. 8. 8	628.0	69.77	신흥중	졸 업
5139	임성용	남	69. 8. 8	585.0	65.00	풍생고	퇴 학
5144	김병수	남	72. 8.16	600.0	66.66	대동고	〃
5148	고재혁	남	71. 8.21	650.0	72.22	제일고	〃
5150	김병근	남	71. 8.25	593.0	65.88	영등포중	졸 업
5161	이기남	남	66. 9.10	629.0	69.88	평택고	퇴 학
5162	우승대	남	72. 9.12	557.0	61.88	평택기계공고	〃
5163	김명철	남	71. 9.14	598.0	66.44	삼일공고	〃
5165	김기용	남	71. 9.15	574.0	63.77	성일고	〃
5167	조혜정	여	72. 9.20	622.0	69.11	성남여고	〃
5172	최갑병	남	65. 9.27	547.0	60.77	대월중	졸 업
5176	구인수	남	72.10. 1	582.0	64.66	풍생고	〃
5180	김경태	남	72.10. 8	640.0	71.11	방송통신고	퇴 학
5191	김순정	여	65.10.22	743.0	82.55	숭신여중	졸 업
5197	강민기	남	64.10.30	735.0	81.66	포항제철공고	퇴 학
5209	오미환	여	71.11.20	763.0	84.77	성보여상	〃
5215	강대영	남	71.11.25	652.0	72.44	동일공고	〃
5216	권영민	남	71.11.26	571.0	63.44	인월중	졸 업
5227	서대원	남	73.12.12	747.0	83.00	태인종고	퇴 학
5230	김희제	남	72.12.16	675.0	75.00	신일고	〃
5240	양은이	여	69.12.14	652.0	72.44	용인여중	졸 업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 신 학 교	비 고
5252	이 심 호	남	73. 1. 5	582.0	64.66	광명공고	퇴 학
5256	이 영 옥	여	67. 1.10	611.0	67.88	검정고시	합 격
5259	김 상 규	남	68. 1.17	555.0	61.66	〃	〃
5263	임 영 아	여	71. 1.28	606.0	67.33	〃	〃
5267	서 현 경	여	73. 2. 1	666.0	74.00	난곡중	졸 업
5269	이 경 은	여	72. 2. 4	558.0	62.00	남인여상	퇴 학
5276	김 성 균	남	57. 2.22	628.0	69.77	공주북중	졸 업
5304	박 맹 일	남	73. 5. 5	623.0	69.22	학다리중	〃
5307	김 학 국	남	72. 5.16	600.0	66.66	운암중	〃
5309	우 건 명	남	67. 5.25	588.0	65.33	검정고시	합 격
5310	임 희 숙	여	57. 5.28	664.0	73.77	동대문여중	졸 업
5314	임 종 훈	남	73. 6.15	681.0	75.66	수성고	퇴 학
5323	이 용 국	남	71. 7.27	648.0	72.00	수원고	〃
5327	이 지 영	여	72. 8.10	618.0	68.66	근화여실고	〃
5329	남 은 미	여	71. 8.11	638.0	70.88	판교중	졸 업
5334	김 영 필	남	70. 8.21	617.0	68.55	유신고	퇴 학
5336	황 운 희	남	56. 8.27	714.0	79.33	안덕중	졸 업
5344	이 규 호	남	71. 9.15	618.0	68.66	안법고	퇴 학
5345	김 종 표	남	64. 9.15	601.0	66.77	호남고	〃
5349	최 경 미	여	59. 9.26	698.0	77.55	검정고시	합 격
5354	홍 민 태	남	71.10. 2	555.0	61.66	양명고	퇴 학
5363	이 종 승	남	72.11. 9	588.0	65.33	제천광산공고	〃
5365	홍 성 춘	여	70.11.12	577.0	64.11	함열여중	졸 업
5368	양 순 자	여	72.11.18	642.0	71.33	검정고시	합 격
5381	김 경 순	여	72.12.20	644.0	71.55	혜천중	졸 업
5384	한 경 숙	여	70.12.30	550.0	61.11	수여고부설방통고	퇴 학
5386	이 남 숙	여	72. 2.20	553.0	61.44	신갈고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 신 학 교	비 고
5408	최 세 경	여	70. 2.14	596.0	66.22	영복여고	퇴 학
5436	권 영 미	여	72. 8.12	743.0	82.55	대구여고	〃
5444	백 장 미	여	73. 9.29	627.0	69.66	검정고시	합 격
5452	신 승 일	남	72. 1. 1	774.0	86.00	상문고	퇴 학
5457	오 금 성	남	73. 1.25	615.0	68.33	성일고	〃
5469	양 화 승	남	68.3. 3	578.0	64.22	검정고시	합 격
5477	현 종 훈	남	71. 4. 6	823.0	91.44	유신고	퇴 학
5482	최 진 호	남	71. 5. 1	654.0	72.66	분진중	졸 업
5500	이 장 호	남	70. 7.18	545.0	60.55	수원공고	퇴 학
5505	고 영 미	여	71. 3. 5	667.0	74.11	동원고	〃
5508	이 구 용	남	68. 3.10	576.0	64.00	수성고	〃
5510	박 원 선	남	73. 4. 9	724.0	80.44	효원고	〃
5514	민 병 권	남	72. 5.12	676.0	75.11	유신고	〃
5515	심 태 범	남	68. 5.18	581.0	64.55	동광중	졸 업
5522	김 홍 근	남	70. 7.22	606.0	67.33	성일고	퇴 학
5531	조 복 남	남	71.10.15	797.0	88.55	수성고	〃
5535	김 대 성	남	71.11.25	544.0	60.44	한인고	〃
5536	장 성 일	남	68.11.27	585.0	65.00	관악고	〃
5537	장 만 석	남	63. 7.27	556.0	61.77	삼일중	졸 업
5540	이 찬 복	남	72. 8. 7	788.0	87.55	낙생고	퇴 학
5541	마 성 현	남	71. 8.12	744.0	82.66	창현고	〃
5544	정 영 애	여	70. 8.19	541.0	60.11	진천농업고	〃
5546	원 형 실	남	71. 9.10	599.0	66.55	삼일상고	〃
5601	채 을 순	여	62. 1. 1	580.0	64.44	검정고시	합 격
5602	이 은 순	여	51. 1.13	636.0	70.66	검정고시	〃
5608	김 만 경	남	65. 2. 7	590.0	65.55	효명중	졸 업
5609	고 재 복	남	61. 2.13	711.0	79.00	검정고시	합 격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 신 학 교	비 고
5611	이 근 주	남	71. 2.19	566.0	62.88	검정고시	합 격
5612	변 기 원	남	70. 2.19	597.0	66.33	양명고	퇴 학
5613	이 홍 례	여	71. 2.20	669.0	74.33	검정고시	합 격
5619	안 정 희	여	65. 3.24	572.0	63.55	팔봉중	졸 업
5625	한 덕 기	남	62. 4.16	673.0	74.77	검정고시	합 격
5627	유 미 종	여	68. 5. 5	720.0	80.00	〃	〃
5631	강 재 신	남	48. 5.15	649.0	72.11	〃	〃
5633	노 귀 현	남	63. 5.17	602.0	66.88	〃	〃
5637	정 은 경	여	72. 6.18	633.0	70.33	가평고	퇴 학
5642	오 명 근	남	71. 8. 4	666.0	74.00	북중	졸 업
5643	배 덕 인	남	67. 8. 7	572.0	63.55	검정고시	합 격
5644	장 천 재	남	71. 8. 7	593.0	65.88	낙생고	퇴 학
5645	박 경 식	남	58. 8.10	650.0	72.22	수성중	졸 업
5648	한 상 복	남	68. 9. 1	635.0	70.55	송악중	〃
5649	박 은 경	여	69. 9. 2	628.0	69.77	숭신여고	퇴 학
5654	문 공 달	남	72. 1.20	586.0	65.11	옥산중	졸 업
5655	김 대 균	남	67. 2. 2	624.0	69.33	수성고부설방통고	퇴 학
5673	염 병 호	남	68. 6.12	584.0	64.88	성동중	졸 업
5674	김 상 균	남	65. 6.14	595.0	66.11	한광고	퇴 학
5678	신 훈 수	남	63. 6.25	559.0	62.11	정남중	졸 업
5679	고 진 수	남	55. 7.12	689.0	76.55	검정고시	합 격
5684	유 경 무	남	66. 7.30	659.0	73.22	수성고	퇴 학
5687	이 기 미	여	63. 8.18	618.0	68.66	검정고시	합 격
5696	박 정 달	남	66.10.11	673.0	74.77	〃	〃
5701	장 준 모	남	70.11.24	606.0	67.33	〃	〃
5702	전 병 채	남	70.11.27	656.0	72.88	효천고	퇴 학
5703	송 기 병	남	66.12. 4	590.0	65.55	검정고시	합 격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5718	박선웅	남	72. 3. 1	200.0	66.66	소사공업고등기술	졸 업
5749	김창은	남	67.11. 8	624.0	69.33	대동공고	퇴 학
5750	김명섭	남	65.11.13	582.0	64.66	성도중	졸 업
5753	주윤극	남	65. 1. 9	616.0	68.44	검정고시	합 격
5760	윤정희	여	72. 2. 8	657.0	73.00	이포중	졸 업
5761	장순옥	여	65. 2.18	559.0	62.11	검정고시	합 격
5764	박용수	남	71. 2.26	602.0	66.88	동강중	졸 업
5771	김정범	남	73. 5.31	663.0	73.66	효명중	〃
5772	이성현	여	71. 6. 2	725.0	80.55	수원여고	퇴 학
5773	김임곤	남	73. 6.20	617.0	68.55	전북기계공고	〃
5775	이문호	남	71. 7. 4	608.0	67.55	신안중도중	졸 업
5783	이정미	여	73.10. 2	698.0	77.55	정명여중	〃
5788	최애란	여	73.11. 4	543.0	60.33	금정중	〃
5792	곽숙희	여	66.11.18	632.0	70.22	성일여고	퇴 학
5799	황금선	여	72.12.25	721.0	80.11	마차고	〃
5801	한희삼	남	72. 1. 1	550.0	61.11	검정고시	합 격
5807	방상희	여	70. 2. 7	663.0	73.66	영신여고	퇴 학
5809	한정식	남	71. 2.20	592.0	65.77	태하중	졸 업
5819	한성갑	남	72. 3.11	545.0	60.55	남한중	〃
5832	김숙배	여	60. 6.15	540.0	60.00	검정고시	합 격
5842	임성규	남	70. 7.26	698.0	77.55	명륜고	퇴 학
5866	김응란	여	69. 8.10	565.0	62.77	영신여고	〃
5876	이용수	남	51. 2. 5	623.0	69.22	광주상업고	〃
5886	정광택	남	71. 5. 6	637.0	70.77	서신중	졸 업
5907	정현홍	여	68. 9.28	588.0	65.33	수원여고	퇴 학
5927	정태원	남	71.10. 9	771.0	85.66	동화고	〃
5941	김윤정	여	70.12.21	541.0	60.11	숭신여고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5944	서상훈	남	72.12.30	740.0	82.22	성일고	퇴 학
5946	김인석	남	64.10. 7	585.0	65.00	성일상고	〃
5957	이은선	남	68. 3.27	554.0	61.55	사범부속고	〃
5958	김연례	여	59. 4. 9	577.0	64.11	검정고시	합 격
5961	맹영주	남	65. 5. 3	572.0	63.55	서화중	졸 업
5962	최현규	남	66. 5.18	604.0	67.11	충주농고	퇴 학
5968	이재규	남	70. 6.27	581.0	64.55	삼일고	〃
5969	강정호	남	71. 6.30	581.0	64.55	수원고	〃
5973	차병철	남	66. 8.10	564.0	62.66	검정고시	합 격
5975	김좌용	남	63. 8.23	592.0	65.77	수원농림고	퇴 학
5977	김재선	남	71. 9.27	572.0	63.55	남한중	졸 업
5981	박정숙	여	51.12. 5	619.0	68.77	검정고시	합 격
5982	김진권	남	69.12. 8	637.0	70.77	삼일공고	퇴 학
5987	권영학	남	65.12.25	576.0	64.00	풍생고	〃
5988	정애경	여	69. 4.28	627.0	69.66	검정고시	합 격
5991	박일성	남	67. 2.21	596.0	66.22	한양고	퇴 학
5992	유진오	남	72. 2.22	629.0	69.88	울산상고	〃
5995	이은애	여	70.12. 1	707.0	78.55	안성여중	졸 업
5996	김재수	남	70.12. 3	596.0	66.22	남원농고	퇴 학
5999	김성현	남	71.11.30	596.0	66.22	광주북성중	졸 업
6000	김순희	여	66.12. 1	576.0	64.00	검정고시	합 격
6027	서환석	남	62. 9.22	647.0	71.88	부석고	퇴 학
6035	김군호	남	70.11.28	551.0	61.22	서령고	〃
6043	전경아	여	69. 1.25	604.0	67.11	검정고시	합 격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 신 학 교	비 고
6044	손 우 경	여	68. 8.17	613.0	68.11	영복여고	퇴 학
6047	유 병 협	남	68. 9.15	540.0	60.00	문정중	졸 업
6058	황 기 영	남	70. 4. 9	601.0	66.77	검정고시	합 격
6060	권 순 희	여	69. 5.20	756.0	84.00	일직중	졸 업
6062	이 미 녀	여	71. 6. 8	643.0	71.44	함백여중	〃
6065	서 귀 자	여	61. 7.24	574.0	63.77	검정고시	합 격
6069	김 종 화	남	70.10. 8	595.0	66.11	유신고	퇴 학
6151	김 미 자	여	72. 1.21	648.0	72.00	검정고시	합 격
6152	이 경 희	남	69. 2. 2	585.0	65.00	〃	〃
6153	황 세 원	남	72. 2.14	653.0	72.55	전북기계공고	퇴 학
6156	장 준 국	남	71. 5. 9	718.0	79.77	성남서고	〃
6159	정 승 준	남	56. 7.11	643.0	71.44	영광중	졸 업
6162	김 혜 자	여	60. 9.19	623.0	69.22	농남중	〃
6163	김 규 용	남	69.11. 9	568.0	63.11	삼일중	〃
6164	명 순 희	여	60.11.21	620.0	68.88	태안여중	〃
6166	백 승 호	남	67.12.18	637.0	70.77	영동중	〃
6168	김 진 희	여	68. 1.12	569.0	63.22	검정고시	합 격
6174	김 민 식	남	71. 7.20	649.0	72.11	동신중	졸 업
6175	윤 선 한	남	66. 7.27	602.0	66.88	골약중	〃
6180	최 문 호	남	70.10. 3	556.0	61.77	삼일상업고	퇴 학
6181	박 진 모	남	65.10. 5	585.0	65.00	검정고시	합 격
6182	심 정 기	남	66.10.14	620.0	68.88	인창고	퇴 학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6186	배영구	남	69. 8.15	598.0	66.44	검정고시	합 격
6187	차재문	남	70. 5.15	639.0	71.00	동성고	퇴 학
6188	최선애	여	70.10. 2	600.0	66.66	사직여자중	졸 업
6189	진은경	여	71. 1. 6	592.0	65.77	제주상업고	퇴 학
6191	온영덕	남	71. 5. 4	644.0	71.55	광성고	〃
6192	윤서영	여	71. 6.10	636.0	70.66	영도여중	졸 업
6193	서경임	여	71.12. 3	604.0	67.11	동호여자상업고	퇴 학
6194	양종화	남	72. 2.27	652.0	72.44	대경상업고	〃
6195	이현정	여	72. 2.28	629.0	69.88	검정고시	합 격
6196	지수야	남	72. 3.17	628.0	69.77	〃	〃
6197	안태석	남	72. 4. 4	624.0	69.33	동산고	퇴 학
6199	오창록	남	72. 6. 1	636.0	70.66	북성중	졸 업
6201	김덕상	남	72. 6.23	644.0	71.55	경기기계공고	퇴 학
6202	박정환	남	72. 8.14	632.0	70.22	낙생고	〃
6203	이윤형	남	72.10.17	621.0	69.00	한일고	〃
6204	강용호	남	72.12. 1	649.0	72.11	전곡중	졸 업
6205	김찬기	남	73. 2.7	661.0	73.44	수원공업고	퇴 학
6206	이상천	남	73. 8.21	657.0	73.00	영월고	〃
6207	김미라	여	74. 1.22	649.0	72.11	광주여상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총 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6209	남석봉	남	57. 5. 5	540.0	60.00	검정고시	합 격
6211	문경준	남	59. 1. 5	652.0	72.44	〃	〃
6212	서충선	남	63.10.14	650.0	72.22	〃	〃
6213	김현준	남	64. 4.27	624.0	69.33	창안공고	퇴 학
6215	신두현	남	65. 5.19	656.0	72.88	숭실고	〃
6217	조세운	남	66. 6. 7	668.0	74.22	거창농업고	〃
6221	김기억	남	67. 8. 6	625.0	69.44	포항수산고	〃
6223	정경수	남	67.11.25	589.0	65.44	검정고시	합 격
6228	송의정	남	68. 3. 1	639.0	71.00	〃	〃
6229	강용순	남	68. 4. 8	588.0	65.33	서상상고	퇴 학
6230	전용근	남	68.10. 8	610.0	67.77	숭덕공고	〃
6231	현재호	남	68.11. 3	621.0	69.00	경기상업고	〃

수원시공고제 73 호

수원시 공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21

수 원 시 장

□ 신조공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계인	수원시 장안구청장인 (송죽동사무소 전용)	수원시 장안구 계인 (송죽동 전용)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분임 경리관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물품관리자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물품 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분임 징수관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전도자금 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수입금 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장인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계인	수원시 장안구청 장인(조원동사무소 전용(	수원시 장안구 계인 (조원동 전용)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분임 경리관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물품 관리관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물품 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분임 징수관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전도자금 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입금 출납원인		
			

수원시 공고 제 74 호

수원시 공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 11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21

수 원 시 장

○ 폐기 공인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장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계인	수원시장안구청 장인 (송원동사 무소전용)	수원시 장안구 계인 (송원동 전용)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분임 경리관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물품 관리관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물품 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분임 징수관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전도자금 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인	수원시 장안구 송원동 수입금 출납원인	
			

광명시 공고 제 73 호

광명시 조례 제 601 호 ('90.5.7) 에 의거 설치된 하안 1 , 2 동 공인을 광명시 공인 조례 제 6 조에 의거 신조 사용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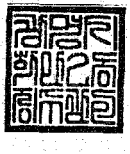
○ 사용개시일 : '90,5,21 09:00

1990. 5.

광 명 시 장

경 기 도 보

공 인 신 조 인 영

광명시장 인 (하안1동전용)	광명시장 인 (하안2동전용)	하안1동장인	하안2동장인
			
하안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하안2동장인 (민원사무전용)	광명시하안1동 징 수 관 인	광명시하안2동 징 수 관 인
			
광명시하안1동 경 리 관 인	광명시하안2동 경 리 관 인	광명시하안1동 채권관리관인	광명시하안2동 채권관리관인
			
광명시하안1동 지 출 원 인	광명시하안2동 지 출 원 인	광명시하안1동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광명시하안2동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광명시하안 1 동 수입금출납원인	광명시하안 2 동 수입금출납원인	광명시하안 1 동 물품출납원인	광명시하안 2 동 물품출납원인
			
하안 1 동계인	하안 2 동계인	하안 1 동계인 (민원사무전용)	하안 2 동계인 (민원사무전용)
			

국 토 이 용 계 획 예 고

미금시 공고 제 49 호

국토이용관리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도시지역)변경 요청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15

미 금 시 장

1. 건명 : 호평, 평내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도시지역)

2. 주요내용

가. 위치 : 경기도 미금시 호평, 평내동 일원

나. 면적 : 15.820 ㎢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다. 변경 용도지역

구 분	내 용	면 적	변 경
국토이용계획변경	취락지역	0.538 ㎢	15.82 ㎢ (도시지역)
	경지지역	5.188 ㎢	
	산림보전지역	6.239 ㎢	
	자연환경보전지역	2.932 ㎢	
	개발촉진지역	0.297 ㎢	
	관광휴양지역	0.476 ㎢	

라. 변경사유

미금 시승격에 따라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켜 효율적 도시관리 도모

마. 변경도면 : 생 략

3. 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본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제 2349 호
1990년 5 월28 일(월)

선람	기관의 장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26호 지방공사 경기지역개발공사에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 3
○경기도조례 제2027호 경기도 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4
○경기도조례 제2028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5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74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중 개정규칙..... 7
○경기도규칙 제2075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16
○경기도규칙 제2076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 17
○경기도규칙 제2077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18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77호 경기도 위임전결중 개정규정..... 19
○경기도훈령 제 878호 경기도 자동차정비업허가처리 절차규정..... 23
○경기도훈령 제 879호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평가판리 규정..... 26

회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88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고시..... 39
○경기도고시 제 189호 환지계획인가와 국유지 무상양여 및 편입결정 고시..... 39
○경기도고시 제 190호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지적 정정승인 및 고시..... 40
○경기도고시 제 191호 육류 연동가격 고시..... 41
○경기도고시 제 192호 사료성분등록 고시..... 41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61호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43
○경기도공고 제 162호 K.S 표시 허가 취소 공고..... 57
○경기도공고 제 164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 취소 공고..... 57
○경기도공고 제 166호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 58
○경기도공고 제 168호 공인신조 공고..... 59
○경기도교위공고 제 46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공고..... 61

시군행정

○부천시공고 제 98호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처분) 공고..... 64
○용인군공고 제 89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66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 년 5 월 21 일

경기도조례 제 2026 호

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세면제) ①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사업용재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업용재산을 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로부터 5 년이내에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재산이 된 경우

제 3 조(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과세면제사무는 당해 과

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면제신청) ①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불균일과에 관한 조례를 이에 제정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 년 5 월 21 일

경기도조례 제 2027 호

경기도다가구주택에 대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경기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불균일과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불균일과세) 건축물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제곱미터 이하로 건축(1세대에 한하여 85 제곱미터 이하로 구획

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에 용도·구조등을 변경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규정의 사치성재산이 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제3조(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5월 24일

경기도조례 제2028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위임사항) "별표"중 위생과 소관 위임사무 "제4조 조리사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및 "제5조 이·미용사 교부 및 재교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주택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8 호 증기등록변경"을 "증기등록의 말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생과 소관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위사무명	근거및적용법률	수임기관
4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재교부는 최초 교부시도에서 교부하고, 83.7이후 교육기관이수후 면허증을 발급 받은자의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함)		식품위생법제 36 조 동법시행규칙 제 46 조 및 제 47 조	
5	이·미용사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시도와 현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의 재교부는 최초교부시도에서 교부하고, 83.7이후 교육기관이수후 면허증을 발급 받은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함)		공중위생법제 9 조 동법시행령제 17 조 내지 제 20 조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 년 5 월 21 일

경기도규칙 제 2074 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별표"중 공보관실 소관 위임사무중 "1. 출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 인쇄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간행물 납본"을 삭제하고 "제 5 호"를 신설하여 별지 1 과 같이 한다.

회계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7 호"내지 "제 8 호"를 신설하여 별지 2 와 같이 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위임사무중 "4. 사회단체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며 "제 12 호"내지 "제 15 호"를 신설하여 별지 3 과 같이 한다.

사회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8 호"를 신설하여 별지 4 와 같이 하고 환경보호담당관 소관 위임사무중 "제 3 호" 내지 "제 4 호"를 신설하여 별지 5 와 같이 한다.

농어촌개발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7 호" 내지 "제 8 호"를 신설하여 별지 6 과 같이 하고 농지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15 호" 내지 "제 18 호"를 신설하여 별지 7 과 같이 하며 영림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16 호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승인"으로 하고 제 19 호"를 신설하여 별지 8 과 같이 하며 식수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4 호"를 신설하여 별지 9 와 같이 한다.

축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2 호"를 신설하여 별지 10 과 같이 하며,

상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11 호"를 신설하여 별지 11과 같이하고, 공업과 소관 위임사무중 "9. 공업배치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중 "⑥" 내지 "⑧"을 "⑦" 내지 "⑨"로 하고, 제"⑥"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동 위임사무명 "제 22 호" 내지 "제 25 호"를 신설하여 별지 12와 같이 하고,

관광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7 호" 내지 "제 10 호"를 신설하여 별지 13과 같이 한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임사무중 "3.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중 "㉕"를 "4.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에 "⑬"을, "6. 일반 구역화물자동차(개별화물)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 "⑧"을, "7. 자동차운송 알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에 "②"를, "8. 자가용 자동차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에 "②"를, "15.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에 "②"를 신설하여 각각 별지 14와 같이 한다.

치수과 소관 위임사무중 "제 4 호" 내지 "제 6 호"를 신설하여 별지 15와 같이 하고 도시개발담당관 소관 위임사무중 "제 3 호" 내지 "제 4 호"를 신설하여 별지 16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1 (공보관실)				
1	사회단체(시군단위 본부에 한함)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등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9조제14항 제4호 및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시장·군수
		②등록증교부, 재교부	동법제4조제1항 및 제5조	〃
		③변경등록	동법 제5조	〃
		④정기보고처리	동법 제6조	〃
		⑤해산신고	동법 제7조	〃
		⑥등록취소	동법 제8조제1항	〃
		⑦등록대장의 비치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
#2 (회계과)				
7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국유재산법제51조	〃
8	은익 국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 제53조 동법시행령제57조	〃
#3 (문화예술과)				
12	지방문화원(사단법인)사무의 검사감독(임원의 취임승인 정관의 변경 허가 포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9조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13	출판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등록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시장·군수
		②등록증교부, 재교부	동법시행령 제3조	〃
		③등록사항변경	〃	〃
		④동 폐업 신고처리	동법 제5조	〃
		⑤등록취소	동법 제5조의2	〃
14	인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등록	동법 제3조	〃
		②등록증교부, 재교부	〃	〃
		③등록사항변경	〃	〃
		④동 폐업 신고처리	동법 제5조	〃
		⑤등록취소	동법 제5조의2	〃
15	간행물의 납본		동법 제4조	〃
#4 (사회과)				
8	직업소개 종사자 교양 및 및 훈련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44조 제5항	〃 〃
#5 (환경보호담당관)				
3	연료사용의 제한, 변경명령 사업장의 감독		환경보전법 제27조	〃
4	유류생산판매 및 사용제한 등을 명한 유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		환경보전법 제27조의2 제2항	〃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6 (농어촌개발과)				
7	산림사업용 농지전용추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8호	시장·군수
8	불법전용 농지등의 조사 및 전용협의 또는 허가농지의 사후관리		동법시행령 제11조	〃
#7 (농지과)				
15	응급공사의 시행(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응급공사제외)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9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1항제12조	〃
16	종전의 농경지 조성법에 의한 사무중	①타인 소유지의 개간후 분배 ②허가의 양도, 상속 자격 ③개간준공허가 ④허가의 취소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부칙 제3조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1항제4호	〃 〃
17	농지확대개발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소규모 지역개발에 대한 대집행 권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12조 및 제14조	〃
18	개발대상지역의 선정조사	①사유미개간지 매수개발	〃 및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9조	〃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8 (영림과)				
16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승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1호	시장·군수
19	국립공원 구역안에서 육림을 위한 간벌 및 수종갱신을 위한 피해목 벌채(개별) 및 고사목, 피해목의 택벌의 승인		자연공원법 제50조 제2항의 동법시행령 제10조	〃
#9 (식수과)				
4	사방지 안에서 행위제한		사방사업법제 14조 동법시행령제 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10 (축정과)				
2	초지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전업, 기업목축업자의 등록	초지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
#11 (상정과)				
11	아스팔트 및 윤활유 판매업신고		석유사업법제 12조 제1항(단서규정)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12 (공업과)				
9	공업배치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⑥공장이전명령 및 이전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공업배치법 제12조	시장·군수
22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의 보안담당자 사업허가 및 신고		전기사업법 제49조	〃
23	채광재개신고		광업법 제45조	〃
24	조광권의 휴지·인가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
25	광업대리인 선임신고		〃 제88조 제2항	〃
#13 (관광과)				
7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및 등록증 교부(국내음식점업, 국내여행업에 한함)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및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제외)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8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개선명령 ②양도양수 신고수리 ③등록취소(종합휴양업, 골프장업제외) ④약관등의 신고수리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⑤과징금부과		
9	관광지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도단속		관광진흥법 제 36 조	시장·군수
10	관광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국내 여행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제 19 조	〃
		②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 59 조	〃
#14 (교통행정과)				
3	시내버스 운수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㉕사고보고의 수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7 조	〃
4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⑬ 〃	〃 제 17 조	〃
6	일반구역화물자동차(개별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⑥ 〃	〃 제 17 조	〃
7	자동차 운송알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⑫보고검사	〃 제 70 조	〃
8	자가용 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⑦ 〃	〃 제 70 조	〃
13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사고보고의 수리	〃 제 17 조	〃
15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② 〃	〃 제 17 조	〃
#15 (치수과)				
4	다목적댐 내하천법 제 25 조의 1 제 1 항제 9 조의 선박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 20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운항허가(2개시군을 경유 운항하는 선박 운항허가 제외)			
5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16조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공익을 위한 감독 손실 보상 ②법령위반자 감독단속 조사상 필요한 처분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내지 제16조	시장·군수
6	공사의착착수 및 준공신고 허가기간, 연장신청, 귀속등의 절차 사용제한등의 공고, 국가사업등에 대한 협의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
#16 (도시개발담당관)				
3	전용수도인가 및 변경인가 (시설용량 1일 5,000㎥ 미만)		수도법 제26조	〃
4	전용수도(시설용량 1일 5,000㎥미만) 준공검사		수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6조	〃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 년 5 월 24 일

경기도규칙 제 2075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공무원정원) 제 1 항 "별표 1 "중 합계(총괄)의 계난 1,928을 1,935로하고, 별정직난 소계 74를 75로하며, 7 급의 소계 30을 31 로 하고, "부녀행정요원 1 " 다음에 "동물사육사 1 "을 삽입하며, 기능직난 소계 678을 684로 하고, 10 등급의 소계 520을 526으로 하며, 운전원 92를 99로, "위생 47 (사역 46, 위생 1)"을 위생 46 (사역 45, 위생 1)"로 하고, "사무보조(조무 134)"를 "(조무 135)"로, "사무보조(필기 7)"을 "(필기 6)"으로 한다.

동조 제 2 항 "별표 2 "중 합계(본청)의 기능직 10 등급난 "사무보조(조무84)"를 "조무(85)"로 하고, "사무보조(필기 5)"를 "필기(4)"로 하며,

총무과의 기능직 10 등급난 "사무보조(조무 37)"을 "조무(38)"로 하고 "사무보조(필기 1)"을 삭제한다.

동조 제 3 항 "별표 3 "중 합계(직속기관)의 계난 309 를 311 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109 를 111 로 하며, 10 등급의 소계 89 를 91 로, 운전원 22 를 24 로 하고,

공무원교육원의 계난 95 를 97 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35 를 37 로 하고, 10 등급의 소계 32 를 34 로, 운전원 7 을 9 로 하며,

공무원교육원 서무과의 계난 48 을 50 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30 을 32 로 하며, 10 등급의 소계 27 을 29 로, 운전원 7 을 9 로 한다.

동조 제 4 항 "별표 4 "중 합계(사업소)의 계난 578 을 583 으로 하고, 별정직난 소계 18 을 19 로 하며, 7 급의 소계 15 를 16 으로 하고, "부녀상담원 1 " 다음에 "동물사육사 1 "을 삽입하며, 기능직난 소계 266 을 270 으로하고, 10 등급의

소계 190을 194로 하며, 운전원 53을 58로, "위생 26 (사역 26)"을 "위생 25 (사역 25)"로 하고,

도유림사업소의 일반직난 다음에 별정직난을 신설하여 소계를 1로 하며, 7급의 소계에 1을, 동물사육사 1을 삽입하고, 기능직난 소계 8을 7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6을 5로, 위생원(사역) 2를 1로 하고,

종축장의 계난 31을 34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20을 23으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20을 23으로, 운전원 2를 5로 하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계난 20을 22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11을 13으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5를 7로, 운전원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4월 27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5월 24일

경기도규칙 제2076호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위생과)중 "식품위생계" 다음에 "위생감시계"를 삽입한다.

제3조(계의 분장사무)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위생과 환경위생계 분장사무중 "제7호 환경위생업자 지도감독"을 삭제하고 "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며,

식품위생계 분장사무중 "제3조 불량식품의 단속에 관한 사무" 및 "제6호 무허가 식품단속"을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4호"로 하며 제7호를 제5호로 하고,

식품위생계 다음에 위생감시계 난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위생과	위생감시계	1. 위생감시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위생업자 지도감독 3. 불량식품의 단속에 관한 사무 4. 무허가 식품단속 5. 위생업소의 심야영업단속 6. 그 밖의 위생감시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1990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 년 5 월 24 일

경기도규칙 제 2077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공무원정원) 제 1 항 "별표 1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총괄)의 계난 1,935 를 1,938 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73 을 1,076 으로 하며, 5 급의 소계 216 을 217 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 2 를 3 으로 하고, 6 급의 소계 302 를 303 으로, 지방보건기사 9 를 10 으로 하며, 7 급의 소계 349 를 350 으로, 지방보건기사보 13 을 14 로 한다.

동조 제 2 항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본청)의 계난 1,041 을 1,044 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93 을 696 으로 하며, 5 급의 소계 156 을 157 로, 지방행정사무관 도는 지방보건기좌에 1 을 삽입하고, 6 급의 소계 192 를 193 으로, 지방보건기사 7 을 8 로 하며, 7 급의 소계 228 을 229 로, 지방보건기사보 10 을 11 로 하고,

위생과의 계난 30 을 33 으로 하고, 일반직 소계 29 를 32 로 하며, 5 급의 소계 2 를 3 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에 1 을 삽입하고, 6 급의 소계 2 를 3 으로, 지방보건기사 2 를 3 으로 하며, 7 급의 소계 4 를 5 로, 지방보건기사보 3 을 4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훈령제 877 호

경기도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5 월 12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 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단위업무의 전결사항) ①항 "별표"중 공보관실 단위사무중 "제 1 호" 내지 "제 41 호"를 별지와 같이 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단위사무중 "제 39 호 한미친선 협의회 운영"을 삭제하고 "제 40 호"를 "제 39 호"로 하며 법무담당관실 소관 단위사무중 "제 11 호"다음에 "제 12 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국 소관 총무과 단위사무중 "제 1 호 및 "제 11 호와 "제 36 호"를 삭제하고 "제 2 호" 내지 "제 10 호"를 "제 1 호"내지 "제 9 호"로, "제 12 호" 내지 "제 35 호"를 "제 10 호"내지 "제 33 호"로 하며 "제 33 호"다음에 "제 34 호"내지 "제 36 호"를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총무과란 다음에 의전담당관실란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문화예술과 단위사무중 "제 1 호 사회단체 등록 및 취소"를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민방위국 소관 비상대책과 단위사무중 "제 10 호"내지 "제 12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구분			비 고
	공보관	부지사	지 사	
(공보관실)				
1. 국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강연회계획	○			
2. 정부 종합 홍보계획 추진	○			
3. 월중 홍보지침 계획 시달	○			
4. 도 홍보위원 위촉 및 해촉			○	
5. 중요행사계획 자료수집 및 보고안작성	○			
6. 홍보반 운영	○			
7. 정기간행물 등록관리	○			
8. 도보발간	○			
9. 간행물 배부	○			
10. 새겨기 원고 및 편집 발간		○		
11. 반공계도 업무	○			
12. 사회단체 등록 및 취소	○			
13. 지역홍보 대책협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14. 지역홍보 대책협의회 운영	○			
15. 광고영화 제작 신고 검열	○			
16. 대한뉴스 및 문화영화 배포	○			
17. 시정에 관한 보도 및 주간보도분석	○			
18. 신문구독 계획	○			
19. 도정홍보판 전시	○			
20. 방송모니터 운영	○			
21. 유선(중계·음악)방송사업 허가			○	
22. 〃 재허가	○			
23. 〃 변경허가	○			
24. 자가유선방송 사업허가	○			
25. 〃 재허가	○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단 위 사 무 명	결재구분			비 고
	공보관	부지사	지 사	
26. 자가유선방송 변경허가	○			
27. 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			○	
28. 유선방송 관리법 위반자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와 변경 등	○			
29. 유선방송관리법 위반자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변경 등	○			
30. 유선방송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31. 유선방송 사업자 지위승계 허가	○			
32. 유선방송사업 양도·양수 허가	○			
33. 유선방송 준공기한 연기	○			
34. 유선방송 사업변경 신고	○			
35. 유선방송 사업 실시결과 보고	○			
36. 월별 홍보계획 시달	○			
37. 보도자료 작성	○			
38. 도정영화제작 및 관리운영			○	
39. 청내의 행사마이크 시설	○			
40. 영화상영 현황 보고	○			
41. 홍보사업 및 홍보기자재 활용 보고	○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단 위 사 무 명	결 재 구 분				비 고
	과장	국장	부지사	도지사	
(법무담당관)					
12.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재결				○	
(총무과)					
34. 직장예비군 자체방호 계획 수립			○		
35. 직장 방위협의회 운영					
가. 의안작성	○				
나. 협의회운영			○		
36. 청원경찰 근무 감독	○				
(의전담당관실)					
1. 의 례					
가. 주요의식				○	
나. 경미한의식	○				
다. 국경일 경축행사				○	
2. 공무원 해외여행					
가. 해외여행 승인					
• 5급이상				○	
◦ 6급이하			○		
나. 해외여행기간 변경	○	○			
다. 해외여행허가 통보	○				
라. 해외여행 출장 명령	○	○			
마. 해외여행 귀국 보고	○				
3. 국제 자매결연 협의 및 조인				○	
4. 한미 친선 협의회 운영				○	
(문화예술과)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				

경기도훈령제 878 호

경기도자동차정비업허가처리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한다.

1990 년 5 월 14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자동차정비업허가처리절차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38 조 내지 제 140 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허가 및 변경허가(이하 "자동차정비업허가등"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허가처리절차를 정하므로서 민원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허가신청등) ①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 76 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사업장의 도시계획확인원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사업장에 비치할 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② 자동차정비업자가 사업장의 시설(대지,건물)의 면적이나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8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위치 및 시설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도면

2.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와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5일(변경허가는 3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심의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북부출장소 관할 시·군은 북부출장소장,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등)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9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설 및 인력확보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허가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허가증을 교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정비업 허가신청에 따른 관계법 저촉 검토의견서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검 토 의 견

관계법령	지역(용도)구분	저촉내용	가·부	검토자	서 명
자동차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건 축 법					
도시계획법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 로 법					
학교보건법					
소 방 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					
기 타 법 령					
종 합 의 견 (주무부서)					

경기도훈령제 879 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5 월 23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평가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평가 방법 및 평가실시 절차·사후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평가의 종류) 평가의 종류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학습평가(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2. 분임연구평가(분임원개별평가, 분임별종합평가)
3. 개인별 과제토의, 실습, 실기 평가
4. 연구논문평가(정예실무자 양성반에 한함)
5. 근태평가
6. 기타평가

제 3 조(평가요령) 평가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1. 학습평가 : 사전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각 과정별 평가 문제형은 택일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전 평가는 생략할 수 있고, 해당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단답형 또는 논문형을 병행할 수 있다.

가. 사전평가는 교육기간이 2주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예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중간평가는 3주 이상되는 과정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중간에 이수완료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종합평가는 모든 이수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료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수가 많을 경우에는 중간평가 이후 이수과목만을 평가할 수 있다.

라. 2주미만의 과정과 특수시책과정은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실시할 수 있다.

2. 실습 및 실기평가

가. 각 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실습 및 실기과제를 부여하고 담당 외래강사 또는 교관이 평가한다.

나. 실습 및 실기는 주산, 타자, 서예, EDPS, 운전 또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행할 수 있다.

3. 근태평가

가. 학생의 학습태도 내부생활 기타 원내생활에 대한 규율과 성실도를 평가한다.

나. 근태평가의 채점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한 배점의 만점을 채정한다.

다. 학생개인별 감점내역을 교학과에서 평가담당관에게 수료 전일까지 통보한다.

4. 기타평가

학생임원단(학생장, 부학생장, 악장)에게는 다음과 같이 가점할 수 있다.

○ 3주이상반 : 만점의 2%이내

○ 3주미만반 : 만점의 1%이내

제4조(평가배점비율) ① 평가종류별 배점비율은 다음표에 의하되 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교육원장이 적절하게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5주 이상반	3주이상5주 미만반	2 주 반
1. 학 습 평 가	65	70	80
○ 중 간 평 가	30	35	
○ 종 합 평 가	35	35	80
2. 실 습 평 가	15	10	10
3. 분 임 평 가	10	10	5
4. 근 태 평 가	10	10	5
계	100	100	100

② 평가과목별 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최다순 배정비율에 의한다.

단, 교육과정의 형편상 분임토의 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과정은 실습평가 또는 학습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평가담당관) ① 평가관리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담당관을 둔다.

평가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평가담당관은 평가문제출제, 보관, 시험감독 및 채점등 전반적인 평가관리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학습평가문제작성) ① 평가문제는 매과정별 교재 및 교안, 강의내용등을 참작하여 각 과목 담당교관(또는 외래강사)은 별표1에 의거 담당과목 1시간당 3문이상의 학습평가문제를 평가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평가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과목에 대한 출제 문제는 교육원장이 지정하는자가 출제할 수 있다.

② 시험문제의 작성은 기제출된 은행식문제중에서 시험문제분석표의 난이도 판별도를 감안하여 출제문제수의 2배이상의 문제를 추출한 다음에 평가담당관이 선정한다.

③ 전항의 은행식 문제중 보완을 요하는 과목은 담당 교관 또는 외래강사에게 의뢰하여 강의한 범위내에서 2배수이상의 문제를 출제받아 보완 실시할수 있다.

제7조(평가항목) ① 5주미만 과정의 학습평가대상과목은 교과목별 강의시간 최다순으로 10개과목내외의 과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5주이상 과정의 학습평가 대상과목은 교과목별 강의시간 최다순으로 20개 과목내외의 과목에 한하여 평가한다.

③ 교육원장은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습능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과목외의 과목을 지정 평가할 수 있다.

④ 교육원장은 실습 및 연구활동 평가에서 통산 10시간 미만인 과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실습평가를 할 수 있다.

제8조(학습평가문제의 보관 및 출제) 평가담당관은 제6조의 은행식 문제를 2중 시정용기에 엄중히 보관하고 평가실시 1일전 교수부장의 지시를 받아 문제를 선정 출제한다.

제9조(평가문제의 인쇄) ① 출제가 확정된 문제는 평가담당관 책임하에 타자 및 필경 등사를 하여 검인 봉인한후에 이중 시정용기에 엄중 보관하고 열쇠는 평가담당관이 관리한다.

② 타자, 필경 및 등사중의 파지와 보관용 이외의 평가문제는 평가담당관 책임하에 소각한다.

제 10 조(학습평가의 감독) ① 시험감독은 시험실시 당일 평가담당관이 지명한다.

② 지명을 받은 시험감독관은 평가담당관으로부터 시험 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고 수량을 확인한 다음 감독상 유의사항(별표 2)을 듣고 시험기간 10분전에 시험장에 입장하여 유의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교육을 하고 문제집을 개봉한다.

③ 감독관은 공정하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감독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자와 교체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유의사항을 주지하고 시험감독관으로서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을 적발한 때에는 즉시 퇴장시키고 학칙에 따라 조치한다.

제 11 조(답안지의 서식) 답안지의 서식은 별표 3과 같다.

제 12 조(응시자의 유의사항) 학생은 시험기간 10분전까지 수험장의 지정좌석에 참석하고 시험감독의 지시사항과 답안지 이면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학습평가의 채점) ① 평가담당관은 평가종료 즉시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채점 및 검사자를 지명채점토록하고 문제지는 수량확인후 즉시 소각한다.

② 논문형 학습평가의 채점은 출제교관이 담당한다.

제 14 조(추가평가) ① 모든 과정에 있어서 추가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반 피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와 제 3호에 해당할때에는 종합병원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전염병으로 와병중인 때

3. 본인이 질병으로서 집도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받을때

4. 기타 교육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전항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학생장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 응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2호, 3호의 경우라 하더라도 완치후 계속훈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결강일수가 총교육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추가평가의 성적평점은 그 득점의 90%를 인정 점수로 산정한다. 다만 실습, 실기평가등 기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배점 비율에 의한 최하위 점수를 인정점수로 산정한다.

제15조(모범답안공개) 평가실시후 필요한때에는 모범답안을 게시할 수 있다.

제16조(성적발표) 평가결과 성적은 수료식이 끝날때까지 이를 발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기간이 2주 이상되는 과정에 대하여는 중간평가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답안지의 보관) 평가답안지는 1년간 평가담당관이 보관한다.

제18조(성적의 만점기준) ① 성적의 만점기준은 100점으로 한다.

② 학생임원단에 대한 가점은 종합성적의 90점이상을 득한자는 가점할 수 없으며 또한 가점후 9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점기준 점수의 산정은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사사오입 단수 처리한다.

제19조(성적일람표작성) ① 평가담당관은 평가 종류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근태평가의 점수를 포함하여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 및 수료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석차는 성적순에 의하며 성적이 동점인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 한다.

가. 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나. 중간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다. 사전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라. 연령이 많은 자

③ 가점대상자의 성적이 가점후 동점인경우는 가점전 성적이 우수한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

④ 평가담당관은 확정된 성적 일람표를 수료식 전에 교학과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시상) 시상은 각 과정별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위에 의거 3인이내로 한다.

제21조(수료기준) 각 과정의 수료기준은 득점하여야 할 총점수의 60%이상으로 한다.

제22조(성적부이기) 교학과장은 성적일람표에 의거 학적부에 성적을 이기한다.

제23조(성적통보) 교육원장은 학생의 성적을 소속기관장에게 수료후 10일이내에 기관별로 통보한다.

제24조(평가일지) 평가담당관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상황등 사물의 처리 및 소각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일지에 기록 보관한다.

제25조(보안) 평가에 관한 모든 문서를 취급할때에는 다음의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때에는 평가담당관의 밀봉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3. 우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4. 평가문제의 출제, 편집, 필경 및 등사과정에는 평가담당관이 입회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평가담당관실에 수집 보관된 평가문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당지급) 시험문제 편집, 편찬출제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새마을교육평가) 새마을교육과정 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평가기준

평가분야	전체대비	평가단계	
		수	우
소양평가및수료평가	30%(30점)	20%(30점)	80%(25점)
분임평가	30%(30점)	20%에 해당되는 분임	80%에 해당되는 분임
근태평가	40%(40점)		

2. 평가방법

가. 소양평가 : 입교소감 및 새마을기본소양을 평가함

나. 수료평가 : 수료소감 및 연수기본 사항을 평가함

다. 분임평가 :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규정에 의거 평가함

라. 근태평가 : 별표4의 감점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함

3. 채점 : 소양 및 입교 수료소감 평가의 채점은 과장급 2명이상이 하고 2명이상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득점으로 한다.

제 28 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978.9.23 훈령제 464 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81.3.17 훈령제 572 호 〉

이 규정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982.1.27 훈령제 601 호 〉

이 규정한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날 이후에 입교한 교육과정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별표 1) 시험문제출제카드

일련번호 : 택

과 목 :

출제 년월일	199 . . .	반별		난이도			출제자 ㊞
				상	중	하	

문 제

1	
2	
3	
4	

출제회수	1	2	3	4	5	6	7	8
과정별								
시험종류								

(이 면)

출제회수	학생수	정답수	오답수	곤란도	판별도	특기사항	정 답
1							
2							
3							
4							
5							
6							
7							
8							

처리	검토분석		처리방안	결재		
				담당교관	평가담당관	교수부장
	1 차					
	2 차					

(주) 곤란도 $= \frac{\text{정답수}}{\text{학생수}} \times 100$ (50 %기준)

판별도 $= \frac{\text{상반수의정답} - \text{하반수의정답}}{\text{학생수} \times \frac{1}{2}} \times 100$

(+)일때 양 호
(-)일때 부적당

경 기 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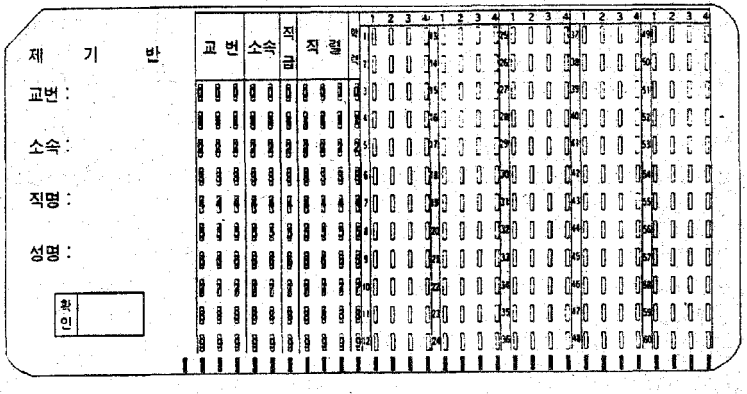
제 2349 호

(별표2)

"평가감독관의 유의사항"

1. 평가감독관은 평가개시 20분전까지 평가담당관실에 집합하여 평가문제를 배부받은후 10분전까지는 담당평가장에 입장하여 교재등 지참물을 별도 보관시킨후 지정좌석에 착석 대기케 한다.
2. 평가감독관은 평가관리규정제12조 응시자 유의사항 및 답안기재 요령을 평가 개시전에 응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3. 평가감독관은 학생들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담당관실로 부터 인수한 평가문제지 및 답안지의 매수와 배수매수 및 잔여매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4. 평가개시 2분전에 평가문제지를 뒤로 돌리게 하고 시작종이 울릴때까지 엎어두게 한다.
5. 평가감독관중 1인은 정면단상에 위치하고 1인은 답안지 확인란에 날인한후 평가장 후측에 정위치한다. 평가감독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위치를 떠날수 없다.
6. 응시자가 평가관리규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였을때는 답안지를 몰수한후 퇴장을 명하고 학번, 성명 및 부정행위내용을 평가담당관실에 보고한다.
7. 평가감독관은 평가감독중 학생들로부터의 질문에 응답할때에는 평가문제에 대한 정정 및 보충사항 이외의 말을 하여서는 않된다.
8. 평가시간에 지참한 학생은 일체 입장할 수 없다.
9. 평가감독관은 평가시간중 답안지와 문제지의 분실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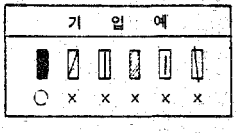
(별표3) 필기시험답안지 (OMR 카드)



(이 면)

소속기관별코드

CODE 기관명	CODE 기관명	CODE 기관명	CODE 기관명
01 : 경 기 도	11 : 과 천 시	21 : 남양주군	31 : 양 평 군
02 : 수 원 시	12 : 구 리 시	22 : 여 주 군	32 : 이 천 군
03 : 성 남 시	13 : 평 택 시	23 : 평 택 군	33 : 용 인 군
04 : 의정부시	14 : 이 금 시	24 : 화 성 군	34 : 안 성 군
05 : 안 양 시	15 : 오 산 시	25 : 파 주 군	35 : 김 포 군
06 : 부 천 시	16 : 시 흥 시	26 : 고 양 군	36 : 강 화 군
07 : 광 명 시	17 : 군 포 시	27 : 광 주 군	37 : 옹 진 군
08 : 승 탄 시	18 : 의 왕 시	28 : 연 천 군	
09 : 동두천시	19 : 하 남 시	29 : 포 천 군	
10 : 안 산 시	20 : 양 주 군	30 : 가 평 군	



유 의 사 항

1.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위의 기입예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3. 교번, 소속, 직급, 직렬, 학력은 정확히 기표해야 합니다.
4. 답안정정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카드를 교환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별표4)

새마을교육근태평가감점기준표

감점사유 \ 감점기준	계산단위	감점기준	비 고
1. 무계결장	시 간 당	6	감점점수20점
2. 무계조퇴	〃	6	이상인 경우
3. 무계지각	〃	6	자진 퇴교
4. 지시항불응	1 회	6	
5. 시험태도불량	〃	10	
6. 학습태도불량	〃	6	
7. 무계외출, 외박	〃	10	
8. 각종보고서 지연	〃	4	
9. 등록지연	시 간 당	2	
10. 아침체조 및 구보불참	1 회	4	
11. 점호불참	〃	4	
12. 허위보고	〃	10	
13. 기 만	〃	10	
14. 질서문란	〃	10	
15. 환경정리불량	〃	4	
16. 흡연(지정장소이외)	〃	10	
17. 불성실	〃	4	
18. 유계결석	〃	10	
19. 유계결강	시 간 당	2	
20. 유계조퇴	〃	2	
21. 유계지각	〃	2	
22. 복장불단정	1 회	2	
23. 유계외박	〃	6	
24. 유계외출	〃	4	
25. 무단면회	〃	4	
26. 제외구역출입	〃	4	
27. 시설사용부주의	〃	6	
28. 표지불패용	〃	2	
29. 생활관내전열기사용	〃	4	
30. 기타 경미한 위반	〃	2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경기도 고시 제188호

경지정리환지계획에 따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송산지구
2. 구 역 : 화성, 평택군 양감, 서탄면 송산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화성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650,883㎡
5. 환 지 내 용 : 송산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5. 22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고시 제189호

경지정리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함.

1. 지 구 명 : 제기지구
2. 구 역 : 화성군 정남면 제기지구내
3. 사 업 시 행 자 : 화성군수
4. 환지계획총면적 : 490,140㎡
5. 환 지 내 용 : 제기지구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990. 5. 22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경기도 고시 제 190 호

1. 경기도 고시 제 246 호 (87.9.11)로 지적승인되고 건설부고시 제 183 호 ('90.4.13)로 변경결정된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정정승인하고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5. 23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가. 학교시설 지저정정 승인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39	고등학교	안산시선부동	16,500㎡	
변 경	39	고등학교	안산시선부동 1053 브럭	18,792.2㎡	도면변경없음 증 2,292.2

나.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다. 시설별 토지조서

지 번	필지수	세부 시설명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안산시선부동 1053	1	고등학교	18,792.2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처분 (실수요자에게 유상인도)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경기도 고시 제 191호

육류연동가격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호 제 9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년 5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동가격	비 고
쇠 고 기	정육 500g당	5,800 원	
돼 지 고 기	박피품 (정육500g당)	2,250 원	
	미박피품(〃)	2,000 원	

o 시행일 : '90.5.29

경기도고시 제 192호

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5 월 28 일

경 기 도 지 사

배합사료성분등록및취소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안양축협	안양시안양7동 200-12	박승민	배합사료	육계후기 2	출하7일전 ~출하시	2-9-1	18.0	3.0	0.7	0.5	6.0	8.0
	퓨리나 코리아 (송탄)	송탄시장당동 85-1	폴 반 웰레겜	〃	육계전기	0~3주	5-7-4	19.5	2.0	0.6	0.4	6.0	8.0
					육계후기 2	출하7일전 ~출하시	5-9-1	18.0	2.5	0.6	0.4	6.5	8.0
					토끼 1	토끼사육용	5-44-1	15.0	2.0	0.8	0.4	15.0	10.0
					토끼 2	〃 (무투약)	5-44-2	15.0	2.0	0.8	0.4	16.0	11.0
					사슴 1	사슴용 (양질의 조사료급여시)	5-41-2	15.0	1.0	0.4	0.25	15.0	10.0
					사슴 2	〃 (조사료부족시)	5-41-3	14.0	1.0	0.4	0.25	25.0	12.0
					말 2	말사육용(양질의조사료급여시)	5-38-1	13.0	2.0	0.4	0.4	10.0	12.0
					말 3	〃 (조사료부족시)	5-38-2	13.0	1.5	0.4	0.3	30.0	14.0
취소	〃	〃	〃	〃	육계전기	0~3주	5-7-1	19.8	2.5	0.6	0.4	6.0	8.0
					주문 육계전기	〃	5-7-3	19.5	2.0	0.6	0.4	6.0	8.0

자치법규 입법예고

경기도공고 제161호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년 5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1. 조례제명 : 경기도건축조례

2. 개정취지

가. 건축법 시행령이 '90.1.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코자 함.

나. 주택공급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용건축물 건축시 용적율을 완화코자 함.

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중 기준미달대지에 대하여 법·령등에서 허용하는 최소기준을 적용토록 완화하여 주택공급촉진으로 주택보급을 향상은 물론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도모코자 함.

3. 주요개정내용

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최소치를 적용토록 개정

(예)

○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범위 60㎡이상, 180㎡이하

○ 현 조례상의 대지최소면적 : 90㎡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60㎡이상으로 개정

나. 일반주거지역내 주거용건축물 건축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율의 최대치를 적용토록 개정

o 법령의 범위 : 200 %이상, 400 %이하

o 현행 : 300 %

* 주거용 건축물 건축시 : 400 %

다. 도로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폐율 및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신설)

o 건폐율 : 최고 90 %까지 완화

o 대지면적 최소한도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까지 완화

라. 오피스텔의 건축가능지역 및 건축기준마련(신설)

o 건축가능구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o 건축기준(주요사항)

- 대지의 소유권 확보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소 2 m 띄어 건축
- 각 사무구획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하되 사무구획면적이 100 ㎡ 초과시에는 100 ㎡마다 1대분의 주차장 확보
- 각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구획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숙식부분의 면적이 30 ㎡를 초과하지 못함
-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비의 100분의 3
-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 ㎡이상인 경우 공사비의 1 %를 사용하여 회화, 조각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규정

마. 연면적 5,000㎡이상으로 5층이상이거나, 11층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보고토록 규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도지사(참조: 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건축조례 현행.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제31조 생략 제11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조-제31조 생략 제11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3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제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3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유토지를 분할함으로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에 맞지 않게 분할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의 최소치를 적용토록

1. 전용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 200㎡ ('87.7.1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50㎡)	1. ……(……및 공유토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와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은 150㎡)	개정하여, 사유재산권보호는 물론 맹지(건축할수 없는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축경기 활성화와 주택보급에 기여코자 함.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90㎡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중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3. 중심상업지역 : 600㎡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300㎡)	
4.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200㎡ ('87.7.1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50㎡). 다만,	4.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	

폭 20 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는 300 ㎡ ('87.7.1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 구역은 200 ㎡	와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50 ㎡)다만, …… ……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200 ㎡)	
5.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330 ㎡ ('87.7.1 이전에 분할된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 구역은 200 ㎡)	5. …… (…… ……및 공유토지분할에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 구역은 200 ㎡)	
6. 보전녹지지역 : 600 ㎡	6.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 350 ㎡)	
7. 자연녹지지역 : 500 ㎡ ('87.7.1이전에 분할된 대지는 400 ㎡)	7.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350 ㎡)	
8. 도시계획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8. …… …… …… ……	

영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역 : 90㎡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 60㎡)	
제12장 용적율	제12장 용적율	
제33조(용적율)법 제40조 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33조(용적율)…… …… …… …… …… .	정부의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촉진시책의 세부시행지침 시달내용중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건축물 건축시 용적율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치로 완화토록 지시되어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
1. 전용주거지역 : 80 % 2. 일반주거지역 : 300 %	1. …… : …… 2. …… : …… (주거용건축물 건축시는 400 %)	
3－13생략	3－13 생략	
제34조—제43조 생략	제34조—제43조 생략	
(신 설)	제15장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신 설)	제44조(적용범위)이 장의 규정은 법제53조의7 제1항 및 영제10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22조의3, 법 제30조, 법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 규정완화 대상건축물 및 대지에	도시계획의 설치로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규정등을 대폭 완화하여 적

(신 설)	대하여 적용한다. 제 45 조(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건폐율=가+(라-가)×$\frac{\text{나-당해대지면적}}{\text{나-다}}$ 가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건폐율 나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 :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라 : 10분의 9 (완화시의 최대허용건폐율)	용하고 있으나 도로의 소요폭이 미달되어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소요폭의 2분의 1을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시 후퇴부분의 면적은 보상없이 사실상 공도로 제공되며 건축법령에서도 건폐율이나 용적율 산정시 대지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있어 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90.1. 18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

(신 설)	제 16장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및 기준	
	제 47조(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영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가능지역은 도시계획구역중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일반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가능구역 및 건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0.1.18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의거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과 건축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신 설)	제 48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법, 령등 관계규정외에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제 17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신 설)	제 4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법 제 7조의 3 및 영 제 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결과의 제출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당해 건축물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 조사 보고기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0.1.18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함.

	의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장 보 칙 제44조(적용의 특례)생략	제18장 보 칙 제50조(적용의 특례)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오피스텔의 건축기준표

건 설 부 기 준	조 례 기 준 (안)	사 유
(건축법령상의 건축허용지역) o 중심상업지역 o 일반상업지역 o 근린상업지역 o 일반공업지역 o 준공업지역 o 준주거지역 (단, 인구 30만이상 시급 도시에 폭 25 m이상의 도로에 10 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기준없음 —	(별표 2)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1. 건축허용지역 오피스텔의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중 다음 각호의 지역에서만 허용한다. 1) 중심상업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준공업지역	오피스텔의 도입은 최근 도시에서 업무와 숙식을 겸하는 실태를 법적으로 허용하여 주기위한 취지인 만큼 건축법·령에서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허용을 하되 도시계획구역에서의 허용은 당초 도입취지와 상반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제한코자 함.
	2. 대지조건 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분양사기등 민원을 방지키 위함.
	나. 대지는 폭 12 m이상의 도로에 6 m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의 건축으로 인한 교통소통관계등을 고려하여 규정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는 건축할수 없다.(법.령	오피스텔의 건축은 대형화가 예상되며, 인접 대지에 대한 민원발생소지를 예방

	의 적용의 특례규정을 적용치 않음)	하기 위하여 대지면적 최대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 규제
	3. 대지안의 공지확보	
- 기준없음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법. 령등 관계규정에 의거 띄어야 할 거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 2 m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인접건물의 손괴, 균열등의 방지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코자 하며 주거용 건축물인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2 m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기준)	4. 주차장확보	
○ 상업지역 :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1대이상	가. 사무구획당(각 실당)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 실당 1대의 차량은 전부 사용하고 있는 실태며, 주차장법 규정보다 좀더 강화하여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여 최근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코자 강화 규정
○ 준공업지역 :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200 ㎡마다 1대이상	나. 사무구획면적이 1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마다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타지역 :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400 ㎡마다 1대이상	5. 각 사무구획별 규모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이어야 함.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이어야 한다.	
- 기준없음 -	나.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00 ㎡이상인	사무구획면적이 넓은 경우 숙식공간이 확대될 우려가

	경우 숙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있어 최소한의 숙식공간만 확보토록 규정
	6. 부대시설 및 설비	
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금지	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못한다.	
나. 각 사무구획내 욕실(샤워기 포함)은 설치금지하되 화장실은 1.5㎡이하로 설치할것.	나. 화장실은 각 사무구획별 1.5㎡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 사무구획내 욕실(샤워기 포함)은 설치하지 못한다.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설치 금지	라.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한다.	
라. 씽크대는 간이탕비용으로 한치	마. 씽크대는 간이탕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타 용도와 복합건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바. 타 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다스트슈트는 각실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각 실로부터 15 m이내에 설치	사. 다스트슈트는 각 실내에 설치하거나 각 실로부터 15 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보증금	
— 기준없음 —	가.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한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하자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같이 하자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하자이행을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규정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의 금액으로 하며 이를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기간이 종료되어 하자검사를 실시한후 환불한다.	
	8. 기 타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건축조례 제31조의 규정에 "건	가. 오피스텔의 규모(타 용도와 복합시 동일 건축물)가, 6층이상	법.령 및 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규정으로 이의 실효를

축비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수 있다"로 강제규정 아님.	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인 경우에는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설치는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오피스텔 건축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코자 함.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162 호

K.S 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5. 23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주)석산실업 의정부공장
2. 소 재 지 :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208
3. 대 표 자 : 유 철 수
4. 허가번호 : 제 5026 호 제 5027 호
5. 규격번호 : KSF 4002, KSF 4004
6. 품 명 : 속빈시멘트블럭, 시멘트벽돌
7. 종류 및 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취소일자 : '90. 5. 23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164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8 조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제조업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제 26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25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이 원 전 자	정 용 재	3-8-194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부천 중구 도당동 215-4
대호전자공업 ㈜	강 길 태	3-11-44	전자응용기계기구류	부천 남구 송내동 500
삼 환 전 자	김 중 기	3-11-63	〃	〃 〃 〃 500-2

벼병충해항공방제실시

경기도 공고 제166호

'90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해당주민들께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군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5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 실시기간 및 면적

- 1 차 : '90. 6.21 - 7. 9 7,461 *ha*
- 2 차 : '90. 7.26 - 8.17 11,035 *ha*

○ 대상지역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김포군 등 8개 시군내 벼 대단위 재배지역

○ 주민 준수사항

- 실시기간중 작업장내 출입제한
- 우물, 장독등 음식물, 양봉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음료수, 가축사료, 채소, 뽕잎 등의 일정기간 채취금지

○ 기타 의문사항은 시·군 농산부서에 문의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168 호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중 개정령(재무부령 1816 호, '90.3.23) 제 3 조 1 항에 의거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일상경비출납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상경비 취급기관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조사용함을 관인규정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90. 3. 23

경 기 도 지 사

1. 공고내용 : 관인 신규사용 및 폐기인

2. 사용 및 폐기일자 : 1990. 3. 23

3. 관인인영

관 인 명	인 영	관 인 명	인 영
경기도경찰국 작전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 수사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 정보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 대공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제 2 종합청사경비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형사기동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관 인 명	인 영	관 인 명	인 영
경기도경찰국기동대 제 1 중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기동대 제 2 중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기동대 제 3 중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기동대 제 5 중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기동대 제 8 중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기동대 제 9 중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경찰국기동대 제 80 중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속도로순찰대제 1 지 구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경기도교위 공고 제46호

공 고

1990년 5월 20일 시행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 6. 5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기도위원회 위원장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1	이현선	30	정승미	48	여복순	70	김성수
3	박성현	31	최석자	49	김선혜	71	이용길
4	정지현	32	허경희	50	안미예	72	전동진
6	권미경	33	김성규	51	한경숙	73	정순철
7	이영분	34	황혜은	52	김성호	74	채운제
8	강민애란	35	최혜경	53	윤성호	75	현은성
9	장은진	36	이춘화	55	유오순	76	이봉우
10	배화성	37	정성필	57	기승도	77	송정용
12	심진구	39	고미숙	58	유동인	78	김종대
14	김경옥	40	신영현	59	김정희	79	오동준
15	이주일	41	정명희	60	김재수	80	김정원
16	김지연	42	임창업	62	이연순	81	이경희
18	홍미경	43	이정월	64	박성진	82	이현우
23	기장도	44	김영철	65	박재진	83	김진희
25	손희수	45	박분남	66	김상만	84	이종화
27	김홍경	46	오정남	67	김종형	86	권기현
29	김효영	47	이숙자	68	이판옥	88	박용수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90	이 영 인	97	방 규 원	103	안 병 훈	108	홍 병 희
91	김 점 수	98	김 주 성	104	권 원 일	114	임 종 대
92	최 성 진	99	주 인 선	105	우 수 희	115	위 영 진
95	정 상 욱	100	신 정 수	106	송 성 용		
96	고 운 관	101	김 지 산	107	이 홍 규		

과 목 합 격 자 명 단

수험번호	성 명	합 격 내 용						
5	하 은 실	도덕	국어	체육	미술	실과		
		95	70	75	60	65		
11	허 영 희	도덕	국어	사회	체육	미술	실과	
		90	80	60	65	65	85	
13	안 복 순	도덕	사회	자연	체육			
		90	70	60	65			
17	노 상 민	도덕	국어	사회	실과			
		95	75	65	60			
19	사 우 영	도덕	국어	사회	자연	체육	미술	실과
		100	90	75	70	65	80	90
21	서 원 자	도덕	국어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90	85	75	60	75	80	65	70
24	방 첨 리	도덕	국어	사회	자연	체육	음악	실과	
		95	75	80	60	60	65	60	
26	송 금 례	도덕	국어	사회	자연	체육	미술	실과	
		90	70	85	60	75	75	85	
28	김 월 순	도덕	사회						
		85	65						
54	장 순 덕	도덕	국어	사회	자연	체육	미술	실과	
		90	80	85	70	75	85	90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수험번호	성 명	합 격 과 목						
56	이 은 영	도덕 90	국어 65	체육 65	미술 60	실과 70		
61	이 명 숙	도덕 95	국어 85	사회 75	체육 75	실과 85		
63	이 명 옥	도덕 95	국어 75	사회 75	자연 80	체육 80	미술 80	실과 80
69	김 영 호	도덕 95	국어 65	사회 75	산수 85	음악 85	실과 75	
85	장 양 순	음악 90						
87	윤 광 순	사회 70	자연 70	체육 80	음악 95	미술 65	실과 85	
93	김 성 호	도덕 80	국어 70	사회 95	음악 70	미술 65	실과 85	
94	유 명 기	국어 100	자연 90	체육 95	음악 65	실과 80		
102	이 종 근	도덕 70	사회 95					
109	김 기 숙	산수 60	체육 65					
110	신 진 용	도덕 85	국어 95	사회 95	산수 70	자연 80	체육 85	미술 90	실과 100
111	김 숙 이	도덕 90	산수 70	자연 90	체육 95	미술 65	실과 70		
113	전 정 희	도덕 60	국어 60	산수 60	자연 80	미술 70			

부천시 공고 제 98 호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5 조, 동법 시행령 제 10 조, 동법 시행규칙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지시 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기한내에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시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폐차처분할 것을 공고 합니다.

1990. 5. 28

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90.5.28 - '90.6.11 (15일간)

2. 차량보관장소 : 부천시 중구 삼정동 71-17 경남산업

전화 : (032) 673-0665

3. 기타 자세한것은 부천시 시민과 차량등록계(전화 : 674-9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대상차량 명부〉

차량번호	차 명	차대번호	소유자	방치장소
경기 7도 3152	1톤와이드로우	03-82-21-32387	김대익	남구 소사국교 담장
경기 1러 3455	포니 1400	10-81-22-42859 대현	강정구	부천공전 정문앞
〃 3688	로얄살룽	13-82-13-16238 대지	손근호	남구 괴안동 3-10
〃 4720	코티나마크 IV	10-77-22-38147 대현	전오식	중구 심곡3동 448-7번지 앞 도로
〃 6080	레코드로얄	03-79-13-00381 대지	한상열	인천 북구 가좌2동 360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차량번호	차 명	차대번호	소유자	방 치 장 소
경기 2 러 7140	코티나 마크 IV 이코노미	10-80-22-23445 대현	최 명 남	중구 심곡동 348-32 번지 앞 도로
경기 3 러 4092	기아세단 1000	03-80-22-10229 대기	김 범 희	중구 심곡 2 동 186 원미국민학교앞
경기 4 러 5658	포니 1400	10-79-22-82428 대현	정 기 호	경인국도변 소명지하도 입구
〃 6113	포니 1400	10-80-22-30876 대현	김 기 수	중구 심곡 2 동 162-21
경남 1 나 2628	〃	10-80-22-23145 대현	김 경 수	한신상가와 소사 3 동 사무소 중간
서울 4 가 8019	〃	10-81-22-25254	김 영 동	중구 심곡 3 동 328-12 번지 앞 도로
서울 1 거 4827	멥시 1300	13-83-22-00568	이 덕 호	중구 심곡 2 동 북부세차장 앞
서울 2 마 3632	레코드로알	03-79-22-01406 대지	신 옥 현	중구 약대동 138 번지
서울 1 머 5211	로알디젤	13-83-13-31938	(주)미 동 건 설	남구 상동 296 번지 앞 도로
미 상	마크 V	미 상	미 상	경인고속도로변 이육전기 앞
미 상	포니 2	미 상	미 상	남구 소사 2 동

경 기 도 보

제 2349 호

용인군 공고 제89호

용인군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개각 및 폐기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18

용 인 군 수

1. 사용 및 폐기일시 : 1990. 5. 28 09:00

공 인 명 및 인 영

1. 신규사용인

민원사무전용 용인군수인	민원사무전용 용인군계인	민원사무전용 기흥읍장인	민원사무전용 기흥읍계인
			

2. 폐 기 인

민원사무전용 용인군수인	민원사무전용 용인군계인	민원사무전용 기흥읍장인	민원사무전용 기흥읍계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50 호
1990년 6 월 4 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29호 경기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2
○경기도조례 제2030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3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78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4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80호 경기도 민원실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5
○경기도훈령 제 881호 경기도 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 13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93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15
○경기도고시 제 195호 '90골재채취(한강개발 제3공구)허가고시..... 16
○경기도고시 제 196호 '90골재채취(한강개발 제4공구)허가고시..... 17
○서울특별시고시 제139호 도시가스사업허가 기준변경고시..... 17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69호 어업면허처분공고..... 18
○경기도공고 제 173호 K.S표시허가취소 공고..... 19
○경기도공고 제 174호 K.S표시허가취소 공고..... 20

시 군 행 정

○수원시고시 제 27호 수원도시계획시설(일단의공업용지조성)변경시행허가고시... 21
○연천군고시 제 22호 전곡도시계획시설(소로)사업시행허가고시..... 23
○성남시공고 제 97호 성남도시계획시설(운동장)실시계획인가 사전공람공고..... 24
○평택시공고 제 59호 공인신조 공고..... 25
○광명시공고 제 92호 공인신조 공고..... 25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 년 5 월 29 일

경기도조례제 2029 호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군·구당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 7%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0 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 년 5 월 29 일

경기도조례제 2030 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 1 항 "별표 2 "중 제 6 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시험항목중 "미흡수경제봉합사"다음에 아래항목을 신설한다.

구 분	수 수 료	비 고
보건용 마스크	9,100 원	
의약품등건조감량	1,300 원	

제 10 호 시험성적사본등 교부수수료액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의약품등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 1 통	1,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0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 사 빈

1990 년 6 월 1 일

경기도규칙제 2078 호

경기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의 1 . 신규채용의 비고란 및 8 . 휴직 및 복직의 비고란중 "국·공립종합병원장"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지제 1 호서식 〕 공무원 인사기록카아드 (갑 - 2)면의 ②본관란중 "본관"을 삭제하고, 동면의 ⑤본적란중 "본적"을 삭제하며, 공무원 인사기록카아드 (갑 - 4)면의 27 주의사항란의 제 2 호중 "②본관 ⑤본적"을 삭제한다.

〔별표제 34 호서식 〕중 갑 - 2 및 갑 - 3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 13 호서식 〕, 〔별지제 18 호서식 〕, 〔별지제 37 호서식 〕중 "본적"란 및 〔별지 제 13 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요령 5 . 원서기재요령중 "(8)본적"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경기도훈령제 880 호

경기도 민원실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6 월 1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 민원실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민원실 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장구) 제 2 항중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 4 조(즉결위임) 중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창 구 즉 결 민 원 업 무

창 구 별	즉 결 민 원 업 무 명
1	1. 민원통제 및 검열 2. 공인관리(전용직인 및 철인)
2	1. 일반민원 상담 및 행정안내 2. 민원 각종서식 관리 및 제공
3	1. 광고물 표시 허가 2. 군납업 등록 신청 3. 군납업 등록 기재사항 변경
4	1. 민원접수 및 배부 2. 무료복사 창구 운영
5	1. 사실증명(자동차등록 관계 및 사실확인) 2. 민원 온라인 처리 및 민원안내

6	1. 무역업 허가
	2. 무역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3. 무역업자 지위승계 신고
	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증명 발급(G.S.P)
7	1. 재직증명
	2. 경력증명
	3. 공사실적 및 납품증명(공사·거래, 용역)
	4.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재교부
	5. 방화관리자등 수첩 발급 신청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7.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8.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9. 영사기사 면허 신청
	10. 영사기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1. 영사기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12.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3. 제사업, 견방업, 생산시설 개설신고 (훈령제 880호 '90.6.1)
	14. 잠종생산업 휴업, 폐업신고(훈령제 880호 '90.6.1)
	15. 견방업 휴업, 폐업신고(훈령제 880호 '90.6.1)
	16. 정기간행물 휴(폐)간 신고(훈령제 880호 '90.6.1)
8	1.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신청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및 등록재장 정정
	3. 안마사 자격증 재교부
	4. S.O.F.A(주한미군)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5. S.O.F.A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6. S.O.F.A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7. S.O.F.A 자동차 이관등록 신청
	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9. 식품 제조업 휴업, 재개업 신고

	10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11 . 마약구입서 (판매서) 교부 신청
	12 . 배출시설 관리인 선임 (변경) 신고
	13 . 식품위생 관리인 선임(신규,변경) 해임 신고
	14 .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 중단 신고(훈령880호 '90.6.1)
	15 . 자동차 임시운행 개선명령 (전세버스) (훈령제880호 '90.6.1)
9	1 . 증기 등록 신청
	2 。증기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증기 등록말소 신고
	4 。증기 저당등록 (말소) 신청
	5 。증기 등록이관 신고
	6 。증기 등록 번호표 재교부 신청
	7 。증기 등록증 재교부 신청
	8 。증기 등록원부 등,초본 교부 (열람) 신청

별표 1

창 구 단 순 민 원 사 무

(훈령제 880호 '90.6.1)

창구번호	민 원 사 무 명	법정처리기간	창구처리기간	비 고
3	1. 광고물 표시 허가	10	7	
	2. 군납업 등록 신청	5	2	
	3. 군납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5	즉 시	
6	1. 무역업 허가	5	2	
	2. 무역업 허가 사항 변경허가	4	즉 시	
	3. 무역업자 지위승계 신고	5	2	
7	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5	즉 시	
	2. 영사기사 면허 신청	3	즉 시	
	3.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5	즉 시	
8	1. 중기등록 신청	10	2	
	2. 중기등록 번호표 재교부 신청	12	12	

별표 2

창 구 업 무 즉 결 위 임 사 항

창구 번호	일련 번호	창 구 민 원 업 무 명	결재구분		
			담당자	계 장	담당관
1	1	1. 민원통제 및 검열			○
	2	2. 공인관리(전용직인 및 철인)	○		
2	3	1. 일반민원상담 및 행정안내	○		
	4	2. 민원 각종서식관리 및 제공	○		
3	5	1. 광고물 표시허가		○	
	6	2. 군납업 등록신청	○		
	7	3. 군납업 등록 기재사항 변경	○		
4	8	1. 민원접수 및 배부	○		
	9	2. 무료복사 창구운영	○		
5	10	1. 사실증명(자동차등록관계 및 사실확인)	○		
	11	2. 민원 온라인처리 및 민원안내	○		
6	12	1. 무역업허가		○	
	13	2. 무역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		
	14	3. 무역업자 지위승계 신고		○	
	15	4. 관세양허대상 수출품 원산지증명발급(G.S.P)	○		
7	16	1. 재직증명	○		
	17	2. 경력증명	○		
	18	3. 공사실적 및 납품증명(공사,거래용역)	○		
	19	4.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		
	20	5. 방화관리자 수첩발급신청	○		
	21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	○		
	22	7.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23	8. 영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	○		
	24	9. 영사기사 면허신청	○		
	25	10. 영사기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26	11. 영사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		
	27	12.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경 기 도 보

제 2350 호

창구 번호	일련 번호	창 구 민 원 업 무 명	결재구분 담당자	계 장	담당관
	28	13. 제사업, 견방업, 생산시설 개설신고 (훈령제 880호 '90.6.1)	○		
	29	14. 잠종생산업 휴업, 폐업신고 (훈령제 880호 '90.6.1)	○		
	30	15. 견방업 휴업, 폐업신고 (훈령제 880호 '90.6.1)	○		
	31	16. 정기간행물 휴(폐)간 신고 (훈령제 880호 '90.6.1)	○		
8	32	1. 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		
	33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및 등록대장 정정	○		
	34	3. 안마사 자격증 재교부	○		
	35	4. S.O.F.A (주한미군)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		
	36	5. S.O.F.A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37	6. S.O.F.A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38	7. S.O.F.A자동차 이관등록 신청	○		
	39	8. 이,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	○		
	40	9. 식품제조업 휴업, 재개업 신고	○		
	41	10.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신청	○		
	42	11. 마약구입서 (판매서) 교부신청	○		
	43	12. 배출시설 관리인선임 (변경)신청	○		
	44	13. 식품위생관리인선임 (신규, 변경)해임신고	○		
	45	14.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중단신고 (훈령제 880호 '90.6.1)	○		
	46	15. 자동차 임시운행 개선명령 (전세버스) (훈령제 800호 '90.6.1)	○		
9	47	1. 중기등록신청		○	
	48	2. 중기등록사항 변경신고	○		
	49	3. 중기등록 말소신고	○		
	50	4. 중기 저당등록 (말소)신청	○		
	51	5. 중기 등록이관 신고	○		
	52	6. 중기등록번호표 재교부 신청		○	
	53	7. 중기등록증 재교부신청	○		
	54	8. 중기등록원부 등, 초본 (열람)신청	○		

경기도훈령 제 881 호

경기도인사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6 월 2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인사관리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 인사관리 규정중 제 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의 1 (발탁) ①도 지방 5급공무원중 도본청 국가 5급(과장) 직위 및 시군 지방 4급 직위로의 발탁은 선발예정인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0 조 제 1항 별표 4의 5급의 승진임용 범위내의 자중에서 선발 임용한다.

다만, 과거 국가 5급 또는 지방 4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위 법정 배수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②도지방 6급 공무원중 도지방 5급(계장)직위 및 시군지방 5급(과장) 직위로의 발탁은 별표 5 보직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5 조 제 2항 승시배수 범위내에 있는자를 임용한다.

③다만, 상기 ①②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도본청과 시군간의 인사형평성 유지와 지방행정 발전 기여도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해 직급에서 특별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주요 격무부서 근무경력자, 특별한 연고지가 있는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원수에 따라 다음의 서열 범위내의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도자체 지방 5급직대시에는 시험요구 배수범위내의 자 이어야 한다.

- 결원 1명의 경우 :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10 %이내인자
- 결원 2 - 5명의 경우 : 〃 〃 20 % 〃
- 결원 6명이상의 경우 : 〃 〃 30 %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시·군 지방 5급직위결원시 보직기준)

결원요인별	기준	고려사항
○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에 의한 결원	시·군 자체승진	• 조직의 신진대사 유지
○ 직제기구 개편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직위	도 및 시·군간 균형 고려 안배 (상호협의)	•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능력 향상 • 인사교류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 과면, 해임, 직권면직등 해당 기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결원	도에서 교류 배치	• 조직의 분위기쇄신

고 시

경기도 고시 제193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 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5. 29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		소유자주소 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용인	원삼	죽능	산 33-1	임야	2.96	0.15	0.15			
		〃	34	〃	1.35	0.31	0.31			
		〃	38	〃	3.04	1.85	1.85			
		〃	40	〃	3.97	3.15	0.15			
		〃	42	〃	36.38	1.58	3.58			
		〃	44	〃	19.29	0.29	1.29	골프장	서울시영등포구	
		〃	46	〃	1.33	0.38	0.38	조성	여의도동 10-2	
		〃	48-1	〃	1.07	0.31	0.31		㈜태영레저	
		〃	-2	〃	1.25	0.30	0.30		대표 윤세영외	
		〃	-3	〃	1.32	0.90	0.90		1인	
		〃	-5	〃	1.53	0.40	0.40			
		〃	-6	〃	1.29	0.30	0.30			
		〃	-7	〃	1.43	0.68	0.68			
		〃	-8	〃	1.29	0.64	0.64			
		〃	-9	〃	1.22	0.50	0.50			
		〃	-10	〃	1.74	0.54	0.54			
		〃	49	〃	6.23	0.43	0.43			

경 기 도 보

제 2350 호

용인	원삼	죽능	산 49	임 야	6.28	0.18	0.18			
		〃	53	〃	7.22	0.60	0.60			
		목신	24-1	〃	2.43	1.06	1.06	골프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주) 태영레저 대표 윤세영외 1인	
		〃	-2	〃	4.11	0.54	0.54	조성		
		〃	30-1	〃	10.56	1.18	0.88			
		〃	31-1	〃	1.54	0.58	0.58			
	계					16.85	16.55			

2. 해제신청자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성명 : (주)태영레저 대표 윤세영외 1인

경기도 고시 제 195 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골재채취를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5. 20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한강개발 제 3 공구

2. 면 적 : 21,840 ㎡

3. 물 량 : 350,000 ㎥

4. 점 용 료 : 1,015 백만원

5. 허가기간 : '90.5.26 — '90.10.31

6. 피허가자 : 삼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기석

경기도 고시 제196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골재채취를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5. 30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제4공구
2. 면 적 : 75,901 ㎡
3. 물 량 : 780,000 ㎥
4. 점 용 료 : 2,262백만원
5. 허가기간 : 90. 5.26 — 90.11.30
6. 피허가자 : 한국중공업㈜ 대표이사 안천학

서울특별시 고시 제139호

도시가스사업허가 기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304호('83.6.13), 제366호('83.7.18), 제133호('89.3.17) 및 제437호('89.9.27)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 기준중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권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1990. 5. 17

서 울 특 별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50 호

1. 제1조중 "권역명 및 지역중 동부권"을 다음과 같이한다.

현 행		변 경	
권역명	지 역	권역명	지 역
동부권 (151)	종로구일부(19), 중구전역(18), 용산구일부(10), 성동구전역(35), 동대문구전역(26), 중랑구전역(17) 성북구일부(17), 서대문구일부(3) 구리시전역(6)	동부권 (159)	종로구일부(19), 중구전역(18), 용산구일부(10), 성동구전역(35), 동대문구전역(26), 중랑구전역(18) 성북구일부(17), 서대문구일부(3), 구리시전역(6), 미금시전역(6), 남양주군일부(1)

* 기존 행정동내에서 동분할로 행정동수변동

* ( )행정동(읍, 면)수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 공고 제169호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합니다.

1990. 5. 30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양식품종 (채포물)	어 장		어 업 권 자		면허기간
		위 치	면적	주 소	성 명	
경기공동어업면허 제9호	붕어, 잉어 기타	평택군 오성면, 고덕면, 팽성읍지선 (아산호)	ha 615	평택군팽성읍 석봉리 105	아산호세마을양식계장 김용섭	90. 5.30 95. 5.29

* 제한 및 조건

1. 매월 생산실적을 익월 5일까지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귀하가 수락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다음 동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의조건)

o 공동어업면허를 받은 지선(아산호수면)이 추후 국가개발계획상 필요시는 어업면허취소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3. 어업면허를 받은 아산호 수면이 농지개량시설물로 등록이 될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 고

경기도 공고 제173호

K·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6. 2.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삼성전자㈜
2. 소 재 지 : 수원시 매탄동 416
3. 대 표 자 : 강진구
4. 허가번호 : 1561
5. 규격번호 : KSC 9301
6. 품 명 : 선풍기

7. 종류및등급 : —

8. 취소일자 : 1990. 6. 2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공고 제174호

K.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6. 2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유전양행

2. 소 재 지 : 부천시 내동 202-1

3. 대 표 자 : 박 영 원

4. 허가번호 : 제 3496 호

5. 규격번호 : KSB 1527

6. 품 명 : 파이프행거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취소일자 : 1990. 6. 2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시고시 제 27 호

고 시

수원시고시 제 17 호('90. 3. 28)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변경시행허가 하고 동법 제 24 조의및 3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과와 권선구청 건설과, 화성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5. 31.

수 원 시 장

아 래

1. 사업변경시행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수원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명 칭 : 삼성전자㈜ 공업용지조성사업

나) 위 치(변경없음)

-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416-2번지외 49필지
- 화성군 태안읍 신리 391번지외 59필지

다)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변경없음)
  - 결정면적 : 832,146 ㎡
  - 사업시행면적 : 832,146 ㎡

경 기 도 보

○ 규 모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계	공장건축부지	운동장부지	주차장부지	도 로 부 지	녹 지 부 지	비 고
당 초	832,146	446,174	23,124	23,040	147,998	191,810	
변 경	832,146	430,960	23,124	28,640	157,949	191,473	
증 감	-	- 15,214	-	+ 5,600	+ 9,951	- 373	

- 건축계획

○ 연 면 적 : 당초 : 기존건물 : 543,150.07㎡

계획건물 : 87,416.19㎡

변경 : 기존건물 : 577,546.71㎡

계획건물 : 211,020.11㎡

○ 바닥면적 : 당초 : 기존건물 : 282,020.11㎡

계획건물 : 54,109.73㎡

변경 : 기존건물 : 272,848.46㎡

계획건물 : 78,746.53㎡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416번지

○ 삼성전자㈜ 대표 강 진 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허가일로부터 '90.12.30

○ 변 경 : 〃 '91.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 첨 (생 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없 음

경 기 도 보

제 2350 호

고 시

전곡도시계획시설(소로)사업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하였기 고시합니다.

다 음

1. 사업시행자의 위치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24-4, 324-2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전곡도시계획시설 소로개설 및 포장
- 명 칭 - 소로 2류30호선 소로3류30호선

3. 사업개요

- 시설결정면적 : 소로2 - 30호선 : 3,304㎡ (L = 413 m, B = 8 m)
  소로3 - 30호선 : 672㎡ (L = 112 m, B = 6 m)
- 사업시행면적 : 소로2 - 30호선 : 638㎡ (L = 84 m, B = 8 m)
  소로3 - 30호선 : 212㎡ (L = 36 m, B = 6 m)

4. 사업시행자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6-6 최 복 남

5. 토지소유자주소 :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1990. 5.
- 준공예정일 : 1990.12.31

1990. 5. 30.

연 천 군 수

공 고

성남시공고 제 97 호

1. 성남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5 조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자 동법 제 15 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 공람공고 하오며,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과와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5. 29.

성 남 시 장

가. 시설의 명칭 및 위치

ㅇ 성남공설운동장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62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ㅇ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425번지

ㅇ 성 명 : 성남시장

다. 면적 및 규모

ㅇ 결정면적 - 102,000㎡ ㅇ 시행면적 - 102,000㎡

ㅇ 규 모

구 분	면 적 (㎡)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주 경 기 장	24,937.53	35,367	롤러스케이트장		10,839
실 내 체 육 관	5,176.96	-	주차장 및 광장		12,520
보 조 경 기 장	-	20,952	녹 지	56,619.81	12,550
필 드 하 키 장	-	9,772			

라.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90.12.31

마. 공 람 기 간 :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평택시공고 제 59 호

평택시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 공인을 신조하여 사용함을 동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년 5월 28일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인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계인	평택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유가증권출납원

광명시공고 제 92 호

광명시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조사용하게된 광명시 공유임야관리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5. 31.

광 명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50 호

1. 사용개시일 : 1990. 6. 1. 09:00

2. 신조공인명 및 인영

광명시 공유임야관리자의 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51 호
1990년 6 월 11 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31호 경기도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2
○경기도조례 제2032호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3
○경기도조례 제2033호 경기도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4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82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위임전결사항규정중 개정규정..... 4

고 시

○경기도고시 제 199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22
○경기도고시 제 200호 사료성분변경등록사항 고시..... 22
○경기도고시 제 203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24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77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공고..... 24
○경기도공고 제 178호 KS표시 정지처분 공고..... 25
○경기도공고 제 180호 품질관리 등급상품 일부 취소공고..... 26
○경기도공고 제 181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27
○경기도공고 제 183호 의료보호대상자 제2차진료기관 추가지정고시..... 28

시 군 행 정

○수원시고시 제 29호 수원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시행 허가고시..... 29
○성남시고시 제 124호 공인신조 공고..... 31
○동두천시공고 제44호 공인신조 공고..... 32
○평택군공고 제 64호 공인신조 공고..... 33
○평택군공고 제 65호 공인신조 공고..... 33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6 월 4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조례 제 2031 호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기금의 관리) 제 1 항중 "은행에"를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 또는 신탁회사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6 월 9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조례 제 2032 호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별표"중 통계담당관실란 앞에 공보관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보관실 소관)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사회단체에 대한 다음의 권한(시군단위의 지부에 한함)	1. 등 록	사회단체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2 항	시장·군수
		2. 등록증 교부 재교부	동법 제 4 조제 1 항 및 제 5 조	〃
		3. 변경등록	동법 제 5 조	〃
		4. 정기보고처리	동법 제 6 조	〃
		5. 해산신고	동법 제 7 조	〃
		6. 등록취소	동법 제 8 조제 1 항	〃
		7. 등록대장의 작성비치	동법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건축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6 월 9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조례 제 2033 호

경기도건축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3 조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 일반주거지역 : 300 퍼센트 다만, 주거용건축물은 400 퍼센트

부 칙

1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기도훈령 제 882 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위임전결사항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기 1990 년 6 월 7 일

경기도지사 임 사 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위임전결사항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위임전결사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사업단의 사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한다.

제 3 조(일반적인 전결사항)중 "기술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하고, 제 1 항중 "(경기지역한강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 4 조(단위업무전결사항) 제 1 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5 조(전결사항의 합의) 단서중 "단장의"를 "차상급자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위 업 무 별 전 결 구 분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관 리 과	1. 의식집행계획			○
	2. 직제 및 정원관리			○
	3. 복무에 관한 기본계획		○	
	4. 보안업무			
	가. 계획수립 및 비밀문서 취급		○	
	나. 신원조사 의뢰	○		
	다. 비밀소유현황 및 취급인가자 보고		○	
	5. 당직명령 및 확인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관 리 과	6. 포상업무		○	
	7. 6급이하 공무원 단내 전보			○
	8. 고용직공무원 임용			○
	9. 기타 인사업무	○		
	10. 직원후생 및 체위향상		○	
	11. 연금 및 의료보험 관련 업무	○		
	12. 공문서 수발 및 보존문서 정리보관	○		
	13.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포함)관리	○		
	14. 사무인계 인수결과 보고			○
	15.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지시사항			
	가. 지시사항 통보	○		
	나. 추진계획 수립			○
	다. 진도보고		○	
	라. 최종결산 보고			○
	16.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			○
	17. 주요업무 계획서 작성			○
	18.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		○	
	19.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	
	20. 월중 역점시책 통보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21. 확대 간부회의 자료보고			○
	22. 공영개발 사업홍보 및 기록보존 유지		○	
	23. 예산(안) 자료제출			○
	24. 실행예산 편성		○	
	25.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배정			
	가. 예산배정 계획 수립		○	
	나. 예산배정 통지	○		
	다. 예산절감계획 수립	○		
	26.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
	27.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	
	28. 국정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가. 중요사항			○
	나. 경미사항		○	
	29. 각종 월보 및 분기보고 사항	○		
	30. 회계직 공무원 임명			○
	31.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		
	32. 회계 직인관리	○		
	33.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		
	34. 자금운영(정기예금 및 해지)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35.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가.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	
	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36. 결산서작성 및 보고			
	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월말결산보고			○
	나.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	
	37. 전도자금 교부			
	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나.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	
	다. 전도자금 집행상황 확인	○		
	38. 금고계약			
	가. 금고계약 체결			○
	나. 금고업무 감사	○		
	39. 청사유지 및 기본관리 계획			○
	40. 물품 및 차량관리	○		
	41. 미지급금 지급			○
	42. 지방공기업 및 한강개발사업에 관한 조례 규칙제정 및 개·폐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43. 기업관리규정중 훈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제정 및 개·폐			○
	44. 기업관리자의 업무대행자 지정			○
	45.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 위임			○
	46. 사업단의 지방공사로의 전환			
	가. 지방공사화 추진 기본계획			○
	나. 정관의 확정			○
	다. 지방공사 설립인가 신청			○
	라. 사장의 임명 승인신청 및 임명			○
	마. 부사장, 이사, 감사의 임명승인			○
	바. 지방공사로의 업무 인계			○
	47. 공영개발사업 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
	48. 신규 공영개발사업의 시행 결정			○
	49. 반기별 업무상황 보고			○
	5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가. 예산의 편성 및 승인요청			○
	나. 수정예산의 제출			○
	다. 예산의 이월(건설개량비, 사고, 계속비) 승인 및 보고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라. 예산의 확정 및 재의요구			○
	마. 계속비 정산보고			○
	바. 세출예산의 유용이·전용 및 통보			○
	사. 예비비 지출 결정 및 통보			○
	아. 성립전 예산편성			○
	자. 지방채의 발행 승인 신청			○
	차. 기채 및 채무부담승인 신청			○
	카. 지방채의 발행			○
	타. 예산의 고시		○	
	51.공영개발사업 이익금의 배분 결정			○
	52.회계년도 개시전 계약			○
	53.공영개발사업 계리상황 보고			○
	54.수익금 마련 지출승인			○
	55.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승인			○
	56.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계약 및 등기		○	
	57.결산보고 및 승인신청			○
	58.한강종합개발사업 교부공채의 발행 및 상환			○
	59. 한강종합개발사업 교부공채의 양도양수 신고수리		○	
	60. 골재채취 점용료의 분납결정			○
	61. 기타 사업단 업무중 법률행위를 법인격으로 하여야할 사항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용 지 과	1. 토지조서작성 및 실태조사		○	
	2. 감정평가 보상가격결정 사정			○
	3. 용지보상에 관한 계획 수립			○
	4. 용지보상의 기준 및 지침작성			○
	5. 유관기관 보유택지 매수		○	
	6. 공시송달			○
	7. 기타 보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8. 지장물(지장물, 작물, 분묘등) 기본실태 조사 및 조서작성	○		
	9. 무연분묘개장 및 화장	○		
	10. 지장물 감정의뢰 및 보상금지급		○	
	11. 간접보상(영업권, 어업권, 광업권)에 관한 자료조사 및 보상금 사정		○	
	12. 지장물 철거 및 보상에 관한 일반사항	○		
	13. 이주대상자 실태조사	○		
	14. 이주대책계획수립 시행			○
	15. 세입자 이사비 지급		○	
	16. 이농비 및 실농비 자료조사 및 보상금 사정		○	
	17. 지장물 이전에 관한 사항	○		
	18.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기준 및 지침 작성			○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19. 분양 및 임대업무에 관한 공급계획 수립			○
	20. 공급가격 산정 및 정산			○
	21. 선분양 업무지침수립 및 협약체결			○
	22. 공급(분양)용지 및 시설물 관리	○		
	23.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일반사항	○		
	24.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가. 위원의 위·해촉			○
	나. 위원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다. 부의안건 결정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	
	25. 토지에의 출입허가 및 고시			○
	26. 토지등의 매수 및 수용			
	가. 협의매수 계약		○	
	나. 재결신청			○
	다. 재결물건의 보상금 공탁		○	
	라. 기업자 의견 제출			○
	마. 제증명의 출원		○	
	바. 매수토지의 등기신청		○	
	2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분묘의 정리			
	가. 이장 또는 이전명령			○
	나. 이장·이전 불이행 분묘에 대한 대집행			○
	다. 무연분묘공고			○
	28. 택지공급계획 승인신청			○
	29. 미개발용지에 대한 환매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30. 공급조건 불이행 택지 및 주택등의 환수			○
	31. 선수금 징수 승인신청			○
	32. 택촉법 제21조에 의한 서류의 열람 및 송달		○	
	33. 택촉법 제22조에 의한 자료제공 요청		○	
	34. 공공시설의 귀속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귀속 협의			○
	나. 귀속용지에 대한 등기촉탁		○	
	35. 택지개발계획 승인내용의 통지		○	
	36.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내용의 통지		○	
	37. 분양공급업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약			○
	나. 분양 및 공급계약			○
	다. 분양에 따른 부동산 등기		○	
	38. 용지보상 업무의 위·수탁 협약			○
	39. 완성용지, 건물등의 공부정리 및 등기		○	
	40. 공시송달의 승인 및 공고			○
자 제 과	1.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	
	2. 골재채취 및 수급계획 수립			○
	3.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관계	○		
	4. 골재채취 점용료 결정			○
	5. 통제소 운영 계획 수립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6. 골재반출 통제소 승인	○		
	7. 골재반출 통제소 감시원 인명 승인	○		
	8. 골재운반 적재량 검측	○		
	9. 골재반출보고서 처리(일보, 월보)	○		
	10. 골재채취 반출지도 단속	○		
	11. 골재반출로 관리	○		
	12. 골재채취 및 반출에 따른 감독 처분		○	
	13. 골재채취 장비투입 승인	○		
	14. 골재채취량 안전관리	○		
	15. 골재채취 현장여건 변동사항 보고		○	
	16. 감리과업지시		○	
	17. 감리용역 기성		○	
	18.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리감독	○		
	19. 준설 및 관리업체 선정			○
	20. 일반민원		○	
	21. 법정사항 협의	○		
	22. 석산골재 수급계획 수립			○
	23. 구역별 골재량 조사 측량 설계	○		
	24. 골재채취 및 반출지도 감독	○		
	25. 석산개발업체 선정 및 허가			○
	26. 사업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		
	27. 석산골재 원가산정 및 고시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28. 석산골재 원석채굴 대행계획			○
	29. 사업지구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		
	30. 석산원석채굴 및 반출승인			○
	31. 석산원석대(모암) 산정조정			○
	32. 석산구역조정	○		
	33. 석산골재가격 통보	○		
	34. 석산골재 수급실적보고	○		
	35. 석산골재 원석채굴량 연말정산			○
	36. 석산지도 감독지정	○		
	37. 석산 주간화약사용 계획 조정	○		
	38. 석산발파지도	○		
	39. 석산진입로 청소관리	○		
	40. 석산골재 운반차량 지도감독	○		
	41. 석산 불법행위 감시 단속	○		
	42. 석산 안전관리지도	○		
	43. 화약류 사용량 통보	○		
	44. 석산 민원대책 추진		○	
	45. 공유재산부지 사용허가			○
	46. 공유재산 토지가격 산정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47. 팔당호 골재채취			○
	가.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 채취허가			○
	나. 골재반출증 교부	○		
	다. 하천산출물 채취허가 취소			○
	라. 기타 "하천산출물 채취"와 관련한 처분		○	
	48. 팔당호 준설사업			
	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
	나. 상수보호구역내			○
	다. 기타 인·허가 신청		○	
	49. 사업구역내 토지 및 지장물의 사용협의			○
	50. 관련기관과의 준설업무 협의			○
	51. 석산개발사업			
	가. 석산개발 기본계획			○
	나. 관련 인·허가 협의등의 요청			○
	다. 원석대 단가의 결정 및 고시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장	담당관	단 장
건 축 과	1. 택지개발계획 용역		○	
	2. 택지개발계획 의견청취	○		
	3. 택지개발계획 공람	○		
	4. 택지개발실시계획 용역		○	
	5.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
	6. 택지개발실시계획 의견청취	○		
	7.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			○
	8. 택지개발 지적고시			○
	9. 택지개발 설계변경		○	
	10. 공단개발(공업용지)계획 용역		○	
	11. 공단개발(공업용지)의견청취	○		
	12. 공단개발(공업용지)공람	○		
	13. 공단개발(공업용지)실시계획 용역		○	
	14. 공단개발(공업용지)실시계획 의견청취	○		
	15. 공단개발(공업용지)실시계획 승인고시			○
	16. 공단개발(공업용지)지적고시			○
	17. 공단개발(공업용지)공사설계 및 감독		○	
	18. 공단개발(공업용지)설계변경		○	
	19. 공단개발(공업용지)준공			○
	20. 주택건설사업 후보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	
	21. 아파트형 공장설치 예정지조사 선정		○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22. 주택건설사업 계획 수립			○
	23. 아파트형 공장설치 계획 수립			○
	24. 사업별 운영계획 및 예산수립	○		
	25. 공사시행에 따른 용역과업 실시		○	
	26. 용역설계 발주의뢰 감독 검사		○	
	27. 공사발주 의뢰		○	
	28. 공사착공 감독 및 검사		○	
	29. 공사설계변경 및 준공		○	
	30. 공사·시공기술 전반 분석 조정		○	
	31. 공사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		
	32. 건물유지 및 하자보수	○		
	33. 건축설계(안) 현상 공모			○
	34.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의			○
	35. 설계(기본, 실시)심의 신청		○	
	36. 택지개발사업			
	가. 예정지구 지정 신청			○
	나. 예정지구의 조사 및 보고			○
	다.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			○
	라. 준공검사 및 통보			○
	마. 토지에의 출입허가 및 공시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바. 공공시설의 귀속 협의			
	사. 사업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아. 자료제공의 요청			
	37.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
	가. 예정지조사 및 계획 수립			○
	나. 지방공업 장려지구 지정신청			○
	다. 기본계획 승인 신청			○
	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마. 관련 인·허가 협의 승인등의 요청		○	
	38. 아파트형 공장건설 사업			
	가. 아파트형공장 설치 신고(협의)			○
	나. 공장건축 협의			○
	39. 국민주택 건설사업			
	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
	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관련기관간 협의		○	
	40. 관광지 개발사업			
	가. 관광지(단지)지정 신청의견 제출			○
	나.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다.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
	라.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 결 구 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마. 조성계획의 시행			○
	바. 관광지 관리운영 위탁허가			○
한강개발과	1.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		○	
	2. 한강개발사업 골재 채취계획 수립		○	
	3. 골재반출 통제소 운영	○		
	4. 골재반출통제소 감시원 임면 승인	○		
	5. 골재운반 적재량 검측	○		
	6. 골재반출량 보고서처리 (일보,순보,월보)	○		
	7. 골재채취 및 반출지도 단속	○		
	8. 골재채취 및 반출에 따른 감독처분		○	
	9. 골재 반출로 관리	○		
	10. 골재채취량 안전관리	○		
	11. 골재채취 현지여건 변동사항 보고		○	
	12. 한강종합개발사업 공정계획 수립		○	
	13.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기한 보고	○		
	14.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기한 연기		○	
	15. 토목시험 의뢰	○		
	16. 토목시험결과 불합격에 대한 조치		○	
	17.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 방제계획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과 별	단 위 업 무 명	전결구분		
		과 장	담당관	단 장
	18. 공사현장여건 변동사항 보고		○	
	19. 감리단운영 및 지도감독			
	가. 인력승인		○	
	나. 감리용역비 설계변경		○	
	다. 감리용역기성 준공검사		○	
	라. 장비비품등 자산취득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		○	
	마. 과업지시		○	
	바.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		
	20. 한강종합개발사업구역내 골재채취			○
	가. 토석·사력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		
	나. 하천산출물 반출			○
	다. 하천산출물 채취허가의 취소			○
	라. 하천산출물 채취허가와 관련한 처분			○
	21. 한강종합 개발사업			
	가. 개발계획의 변경			○
	나. 관련 인·허가 협의등의 요청			○
	다. 토지에의 출입허가			○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고 시

경기도 고시제 199 호

사방사업법 제 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90. 6. 7.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주소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면적	사유	성명	
					ha	ha	ha			
용인	원삼	맹리	산 29-7	임야	1.19	0.02	0.02	골프장	이천군마장면 해월리산 9-2	
		평창	〃 66	〃	12.72	0.45	0.15	조성	지산개발㈜	
		평창	〃 67	〃	16.51	0.51	0.08		대표이사	
		계				0.98	0.25		홍호정외 11인	

2. 해제신청자 : 주소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 산 9 - 2

성명 지산개발㈜ 대표 홍 호 정

고 시

경기도 고시제 200 호

사료관리법 제 22조제 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변경등록사항을 고시합니다.

1990. 6. 7

경 기 도 지 사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변 경 내 역									
구분	사 료 공 장			사 료			등록번호	등 록 내 역					
	공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종류	명 칭	용 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 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당초	선 진 축 산	이천군대월면 사동리114-1	이 원 복	배 합 사 료	젖뗀돼지	6 ~ 8 주	9-14	17.0	3.0	0.7	0.5	5.0	6.5
변경	〃	〃	〃	〃	〃	〃	〃	18.0	3.0	0.7	0.5	5.0	6.5
당초	〃	〃	〃	〃	육성돈 3	2 ~ 4 개월	9-15-3	14.5	3.0	0.65	0.4	6.0	8.0
변경	〃	〃	〃	〃	〃	〃	〃	14.5	3.0	0.7	0.4	6.0	8.0
등록	〃	〃	〃	〃	말사료	〃	9-38-1	12.0	1.5	0.7	0.4	12.0	9.0
등록	㈜대봉	부천시중구 내동 122-4	박종호	수입 배합 사료	양어사료 광어 1	자어용 (부화 후~ 2.5 cm)	90-1	55.0	8.0	2.5	1.7	3.0	15.0
					〃 광어 2	자어용 (11 cm이하)	90-2	47.0	10.0	2.5	1.7	2.0	17.0
					〃 광어 3	자어용 (14 cm이하)	90-3	47.0	10.0	3.0	1.7	2.0	17.0
					〃 광어 4	치어용	90-4	50.0	7.0	2.2	1.5	2.0	15.0
					〃 광어 5	성어용	90-5	48.0	6.0	2.2	1.5	2.0	15.0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03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6 월 8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돼 지 고 기	박피품(정육500g당)	2,300 원	
	미박피품(〃)	2,050	

o 시행일 : 90.6.12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77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2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기 공고함.

1990년 6 월 5 일

경 기 도 지 사

1. 인 가 번 호 : 제 40 호

2. 설 립 조 합 명 : 시화공단 계면활성제 협동사업조합

3. 주 소 : 군포시 당정동 239-7

4. 대 표 자 : 신 포 균

5. 설립인가일자 : 1990.6.4

6. 설 립 목 적 : 계면활성제 및 접착제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조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78 호

KS표시 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년 6 월 5 일

경 기 도 지 사

제 2351 호

업체명 / 구분	일신경금속공업㈜	㈜세본금속	㈜부광금속	태광동관공업㈜
소 재 지	안산성곡 604-1	김포검단원당 487-4	김포검단원당 197-1	부천춘의 134-1
대 표 자	김 근 식	장 건 순	방 태 용	김 근 식
허가번호	제 6409 호	제 6075 호	제 3854 호	제 3826 호
규격번호	KSD5301	좌 동	좌 동	좌 동
품 명	이음매없는 등 및 동합금관	〃	〃	〃
종류및등급	허가된 전종류 및 등급	〃	〃	〃
처분기간	'90.6.5 - '90.9.4 (3개월)	〃	〃	〃
처분사유	KS규격기준 미달	〃	〃	〃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80 호

품질관리 등급상품 일부취소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 등급사정 상품중 일부 품목을 취소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년 6 월 8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동아건직㈜

2. 대 표 자 : 송 영 배

3. 소 재 지 : 안산시 성곡동 601 번지

4. 사정등급 : 1등급

5. 사정번호 : D마 1 - 110

6. 취소품목 : 여자용 견직물제 내의류, 넥타이, 스카프

7. 취소일자 : '90.6.8

8. 취소사유 : 생산중단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81 호

K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년 6 월 9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아세아벤드

2. 소 재 지 :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

3. 대 표 자 : 민 신 웅

4. 허 가 번 호 : 제 6058 호

5. 규 격 번 호 : KSB 1549

6. 품 명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이음쇠

7. 종류및등급 : —

8. 취 소 일 자 : 1990.6.9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83 호

의료보호법 제 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 동법시행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제 2 차 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지정 합니다.

1990 년 6 월 11 일

경 기 도 지 사

o 제 2 차 진료기관 추가지정

지정번호	진료지구	진료기관명	대표자	소 재 지
1- 18 - 1	하 남 시	고 려 병 원	이 남 훈	하남시 덕풍동 362

고 시

수원시고시 제29호

수원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1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 및 권선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6. 4

수 원 시 청

1. 변경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1번지외 10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학 교

— 명 칭 : 아주대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산5번지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김준엽

라. 면적 및 규모

— 면 적(변경없음)

- 결정면적 : 446,635 ㎡
- 시행면적 : 446,635 ㎡

경 기 도 보

— 규 모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46,635	446,635		
학 교 부 지	89,991	89,327	감 664	
운 동 장 부 지	64,200	49,972	감 14,228	
주 차 장 부 지	5,880	9,463	증 3,583	
도 로 부 지	33,417	35,514	증 2,097	
녹 지 부 지	253,147	262,359	증 9,21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 부터

— 준공예정년월일 : 1993. 12.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 토지수용법 제 4조 3 항에 의한 토지소유자 권리명세서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계인 주소,성명
					기 정	변 경	주 소	성 명	
원천동	산 20	임	5,851	5,851	5,851	5,851	서울마포도화 1	지운홍	
〃	산 25	〃	3,868	3,868	3,868	3,868	영등 9	박용근	
〃	산 26-1	〃	11,702	11,702	11,702	11,702	지동 412	박상원	
계			21,421	21,421	21,421	21,421			

경 기 도 보

제 2351 호

성남시공고 제124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성남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7

성 남 시 장

○ 신조공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장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기입출납원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수입원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지출원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자산출납원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자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유가증권출납원인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계인			
			

제 2351 호

공 고

동두천시 제 44 호

동두천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 및 폐각된 공인을 동조례 제 9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신조사유 : 공인마모
2. 사용개시 년, 월, 일 : '90.6.10
3. 공인인영

신 규 사 용 인		폐 기 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동 두 천 시 민 원 실 계 인		동 두 천 시 민 원 실 계 인	

동 두 천 시 장

평택군공고 제 64 호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칙의 개정에 따라 평택군 공인조례 제 6 조에 의거 개각된 공인을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8.

평 택 군 수

개 각 인

양곡관리특별회계평택군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평택군일상 경비출납공무원
	

평택공고 제 65 호

평택군 공인조례 제 11 조에 의거 폐기된 관인을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

폐 기 인 평 택 군 수

양곡관리특별회계평택군 전도자금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평택군전도자 금출납공무원의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52 호
1990년 6 월 18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34호 경기도 여성회관 설치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2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79호 경기도 여성회관 운영규칙중 개정규칙..... 6
○경기도규칙 제2080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20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83호 경기도 사무내부위임중 개정규정..... 21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05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23
○경기도고시 제 208호 사료성분등록및 변경등록고시..... 23
○경기도고시 제 209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26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89호 용인군 국토이용계획 변경공고..... 28
○경기도공고 제 193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제출공고..... 28
○경기도공고 제 194호 K.S표시허가 취소..... 29
○경기도공고 제 195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공고..... 30
○경기도공고 제 196호 주택건설및 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 해제공고..... 31

시 군 행 정

○의정부공고 제 92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33
○안양시공고 제 153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34
○송탄시공고 제 75호 송탄도시계획시설 재변경시행 사전공람공고..... 35
○평택시공고 제 73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36
○오산시공고 제 53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37
○안성군공고 제 106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37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6월 15일

경기도조례 제2034호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설치)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9에 둔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여성상담과 취업알선

3. 새마을 여성상의 보급과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5.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4조(관장) ①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여성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회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의 수가 기준액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예식장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9조(강사초빙) ①여성회관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전 사용계약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가기준(계약당시 기준)에 의한다.

"별표"

여 성 회 관 수 가 기 준 액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강 당			
가. 평 일			
1) 주 간	1 회	2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야 간	〃	25,000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일때에는
나. 휴 일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주 간	〃	25,000	
2) 야 간	〃	30,000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예식장			
가. 평 일			
1) 주 간	1 회	10,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일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휴 일	1 회	12,000	
3. 어린이 수탁	1인1월	8,000	수강시간중에만 수탁한다.
4. 미용실			
가. 고 데	1 회	1,500	
나. 파 마	〃	6,000	
다. 마사지	〃	2,000	
라. 메니큐어	〃	1,000	
마. 신부화장	〃	10,000	
바. 컷 트	〃	1,000	
사. 드레스	〃	20,000	
5. 기술교육	1인1월	4,000	
6. 취미교육	〃	5,000	
7. 주부대학	〃	5,000	
8. 전 시			
가. 평 일	1 회	7,000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하고 1일 사용은 12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휴 일	〃	8,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도서실	1 회	100	
10. 폐백실사용	〃	7,000	
11. 피아노사용	1시간	3,000	
12. 사진촬영 칼라	8 × 10 1판	12,000	

경기도여성회관운영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6월 15일

경기도규칙 제2079호

경기도여성회관운영규칙개정규칙

경기도여성회관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여성회관은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교육

가. 교육대상은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다만, 할머니대학은 60세 이상으로 한다.

나.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 시행한다.

다. 정기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수시교육은 여성회관장이 여성의 교양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라. 정기교육은 기술교육, 취미교육, 주부대학, 할머니대학으로 구분 운영한다.

마. 기술 및 취미교육은 양재, 미용, 기계자수, 염색, 수편, 한복, 도배, 표구, 데꼬빠쥬, 등공예, 지점토, 요리, 꽃꽂이, 분재, 동양란, 일본어, 영어, 서예, 사군자, 컴퓨터 과정으로 하며 여성회관장이 필요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변경 운영할 수 있다.

바. 주부대학, 할머니대학의 교과는 여성회관장이 편성한다.

사. 과정별 교육인원은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여성회관장이 정한다.

2. 도서실운영

가. 도서실 이용자는 경기도내에 주소를 가진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나. 도서실에는 서가실과 열람실을 설치하며 서가실에는 교양서적, 기술서적, 기타일반서적을 비치한다.

다. 여성회관장은 비치된 도서의 목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 비치한다.

3. 예식부 운영

가. 예식부에는 예식장과 폐백실을 운영한다.

나. 예식부는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시범예식장으로 운영한다.

4. 상담실 운영

가. 상담실에서는 여성의 고충사항, 취업지도 및 알선, 파출부알선등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나.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에 의하여 실시하며 상담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미용실운영

가. 미용실에서는 여성의 파마, 컷트, 드라이(고데), 맛사지, 화장등을 행한다.

나. 미용실에서 드레스를 관리하고 이를 대여한다.

6. 유아실 운영

가. 유아실에서는 수강생의 자녀를 수탁 보호한다.

나. 수탁보호자녀의 연령은 3세이상 5세이하로 한다.

7. 향토문화진흥사업

가. 여성회관장은 여성의 문화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여성의 문화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8. 강당 등 부대시설의 대여

가. 여성회관장은 회의, 전시, 교육등을 위하여 강당을 대여할 수 있다.

나. 여성회관장은 피아노 등 여성회관의 부대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제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붙인다.

2. 도서실을 이용코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서실 이용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또한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자는 도서실에 비치된 열람부에 등록하여 관리담당자 책임아래 열람한다.

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교육, 취미교육, 주부대학, 할머니대학등 정기교육을 희망하는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입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식장을 사용코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예식장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유아를 수탁코자하는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유아수탁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관장은 제3조 각호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허가 하여야 한다.

1. 강당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2. 도서실을 이용하는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이용권을 교부하고 도서의 열람은 도서실에 비치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열람부에 기록한 후 열람토록 한다.

3. 예식장의 사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예식접수 및 사용대장에 등재한다.

4. 여성회관 이용자중 유아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아 수탁증을 발급한다.

제5조(사용 및 사용허가) ①여성회관의 사용 또는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강 당 : 5일이내(전시 또는 교육목적일때는 1월 이내)

2. 도서실

가. 하절기 : 09:00 - 18:00(토, 일요일은 휴관)

나. 동절기 : 09:00 - 17:00(〃)

3. 예식부

가. 하절기 : 09:00 - 18:00

나. 동절기 : 09:00 - 17:00

4. 미용실 : 09:00 - 17:00

5. 유아실 : 09:00 - 17:00

②전항의 사용 또는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퇴관조치)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때

2. 이용 및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그밖에 관장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때

제 7 조 (소지물의 제한) 관장은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손해배상) 이 규칙 제6조제 1 호의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보고) 관장은 반기별로 사업실적과 예산집행상황을 반기 익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별지제 1 호서식)

강 당 사 용 신 청 서

사용기간	19 . . . 부터 19 . . . 까지 (일 시 분간)		
사용목적			
이용인원수	명	참석범위	
사 용 료	명	사용료 면제여부	

위와 같이 귀 회관 강당을 사용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 기 도 여 성 회 관 장 귀 하

(별지제 2 호서식)

강 당 사 용 대 장

일련번호	허가일자	사용기간	신청자 성명	이용 인원수	사용목적	사용료	사용료 납부 여부	확인	
								담당자	관 장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별지제 3 호서식)

강 당 사 용 허 가 서

제 호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2. 사용기간

19 년 월 일 (일 시 분간)

19 년 월 일

3. 사용목적

위와 같이 강당사용을 허가합니다.

19 년 월 일

경 기 도 여 성 회 관 장

(별지제 4 호서식)

도 서 목 록

분류번호	저 자	도 서 명	발 행 처	발행년도	비 고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별지제 5 호서식)

도 서 실 이 용 권	도 서 실 이 용 권
번호 : 요금 원 19 년 월 일 경기도여성회관장 * 여성회관 비치	번호 : 요금 원 본 소지자에 한하여 도서실 사용을 허가함. 19 년 월 일 경기도여성회관장 인

(별지제 6 호서식)

도 서 열 람 부

일련번호	년월일	열람자				열람기간	열람도서명	회수확인	
		주 소	성 명	연령	직 업			담당자	관 장

(별지제7호서식)

입 소 원 서

현 주 소				전 화 번 호	D.D.D ( ) -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	
혼인관계	기혼( ) 미혼( ) 특 기			취 미		나 이	세
최종학력				교육신청과목	과		
교 통 편	버스, 전철, 도보, 기타 ( )			통 학 시 간	편도 (분)		
경 력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가 족 상 황

관 계	성 별	연 령	성 명	직 업	관 계	성 별	연 령	성 명	직 업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기 도 여 성 회 관 장 귀 하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제 8 호서식)

예 식 장 사 용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보호자		관계		신랑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관계		신부		주소		
						전화		

거행일시 199 년 월 일 시 분 층 실

사용료		
합계액		원
계약금		원
잔 액		원

종 별	수량및규모	금 액
예식실		원
폐백실		원
드레스		원
사 진	4판 장	원
미 용		원
기 타		

1.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것을 굳게 약속함.
   - ○인쇄물로 청첩을 하지 아니함.
   - ○식장내 화환, 화분은 2개를 초과하여 진열하지 아니함.
   - ○하객에게 답례품을 주지 아니함.
   - ○하객에게 가정이나 대중음식점에서 간소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음. 단 지나친 음식이나 호텔등에서는 음식접대를 하지 아니함.
   - ○혼인신고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함.
   - ○함잽이 놀이를 하지 아니함.
   - ○계약후 예식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반환 받지 아니함.
2. 예식장측은 혼례복장으로 한복치마, 저고리등 평상복을 권유하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드레스등 부대용품의 사용이나 사진촬영등을 강요하지 아니함.

년 월 일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9

사업자등록번호 : 124 - 83 - 01991

예식장명 : 경기도여성회관

전화번호 : 38 - 9301

대표자성명 : 경기도여성회관장

계약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성 명 :

(별지제 9 호서식)

예 식 접 수 및 사 용 대 장

예식장사용일 : 월 일

계약번호	계약일자	예식시간	신랑성명	신부성명	계약금(사용료)	드레스	신부화장	사진(칼라) 8 × 10	계	연락처(주소및전화)	비 고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별지제 10 호서식)

유 아 수 탁 원 서

수탁유아	성 명		성 별	
	나 이			
수탁의뢰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유아와의관계		전 화 번 호	
	수 강 과 목			
수탁기간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월)			

위와 같이 수탁코자 합니다.

19 년 월 일

수탁의뢰자 (인)

경 기 도 여 성 회 관 장 귀 하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별지제 11 호서식)

유 아 수 탁 증

기 간				
주 소				
유 아	성 별		나 이	
	이 름			
보호자성명			유아와의관계	
수탁시간				

19 . . .

경 기 도 여 성 회 관 장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 년 6 월 15 일

경기도규칙 제 2080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공무원정원) "제 4 항"중 "별표 4 "를 "별표 5 "로 하고, 동항을 "제 5 항"으로 하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경기도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4 "와 같다.

동조 제 1 항"별표 1 .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의 계난 1,938을 1,931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76을 1,069 로 하며, 8 급의 소계 188을 181 로, 지방보건기원 30 을 23 으로 한다.

동조 제 2 항"별표 2 .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의 계난 1,044를 1,03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96 을 689로 하며, 8 급의 소계 111을 104 로, 지방보건기원 26 을 19 로 하고,

위생과의 계난 33을 26 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32 를 25 로 하며, 8 급의 소계 21 을 14 로, 지방보건기원 21 을 14 로 한다.

동조 제 3 항"별표 3 . 직속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 1 "과 같이하고, 동조 제 4 항"별표 4 . 출장소의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별지 2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훈령 제 883 호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6 월 14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별표중 주택과소관 제 4 호 다음에 제 5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주택과 소관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위사무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5	중기등록번호표 봉인	중기등록번호표 봉인 및 개봉인	중기관리법 제8조 등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시장·군수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고 시

경기도 고시제 205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6. 12.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ha	ha	ha			
용인	원삼	맹	산29-7	임야	1.19	0.02	0.02	골프장 조성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 산9 - 2 지산개발㈜ 대표이사 홍호정외 11인	
		평창	66	〃	12.72	0.45	0.15			
		〃	67	〃	16.51	0.51	0.08			
계						0.98	0.25			

2. 해제신청자 : 주소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 산9 - 2

성명 지산개발㈜ 대표 홍 호 정

고 시

경기도 고시제 208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및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1990. 6. 18.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배 합 사 료 성 분

구 분	사 료 공 장			사	료	
	공장명	소 재 지	대표자	종 류	명 칭	용 도
당초	한일사료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13	최병덕	배합사료 및수입 배합사료	어린병아리 외 66 품목	6 주이하
					종계 4	육계용 (더위 , 질병 , 스트레스기간중)
					종계 5	육용 종계용
변경			차두홍		어린병아리 외 66 품목	6 주이하
					종계 4	육계용 (더위 , 질병 , 스트레스기간중)
					종계 5	육용 종계용
등록	보거사료	오산시 철동 30	곽치섭	배합사료 (양어용)	양어사료 잉어 1	치어용
					// 잉어 2	육성어용
					// 송어 1	먹이 붙임용
					// 송어 2	치어용
					// 송어 3	육성어용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등 록 및 내 역

등록번호	등 록 내 역					
	조단백%이상	조지방%이상	칼슘%이상	인%이상	조섬유%이하	조회분%이하
15-1-1	기등록 내용과 같음					
15-10-22	16.0	2.5	3.7	0.5	6.0	15.0
15-10-23	14.5	2.5	3.7	0.5	6.0	15.0
15-1-1	기등록 내용과 같음					
15-10-24	16.0	2.5	3.7	0.5	6.0	15.0
15-10-25	14.5	2.5	3.7	0.5	6.0	15.0
313-6-1	42.0	3.0	1.5	1.0	4.0	16.0
313-6-2	38.0	3.0	1.5	1.0	5.0	15.0
313-6-3	45.0	3.0	2.0	1.0	3.0	18.0
313-6-4	43.0	3.0	2.0	1.0	4.0	18.0
313-6-5	40.0	3.0	1.5	1.0	5.0	16.0

제 2352 호

고 시

경기도 고시제 209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 6. 18.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 정지 해정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ha	ha	ha			
군포		산본	산 3	임야	1.98	0.62	0.62″			
			〃 8	〃	4.39″	0.54″	0.54″			
			〃 11	〃	2.27″	0.18″	0.18″			
			〃 16	〃	4.1 ″	0.91″	0.91″			
			〃 17-2	〃	3.9 ″	0.13″	0.13″			
			〃 31-2	〃	6.8 ″	0.15″	0.15″			
			〃 51	〃	17.62″	0.75″	0.75″	군포		
			〃 74-1	〃	1.36″	0.08″	0.08″			
			〃 76	〃	1.4 ″	0.1 ″	0.1 ″	산본지구		
			〃 77-1	〃	1.47″	0.06″	0.06″			
			〃 88	〃	1.72″	0.11″	0.11″	택지개발		
			〃 89	〃	0.4 ″	0.03″	0.03″			
			〃 90	〃	3.08″	0.04″	0.04″			
			〃 99	〃	3.68″	0.02″	0.02″			
			〃 101	〃	3.76″	0.07″	0.07″			
			〃 103	〃	1.3 ″	0.05″	0.05″			
			〃 123	〃	0.9 ″	0.04″	0.04″			
			〃 124	〃	1.8 ″	0.14″	0.14″			
			〃 125	〃	1.2 ″	0.03″	0.03″			
			〃 126	〃	1.6 ″	0.04″	0.04″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임야소재지				지목	지 적	지 정 면 적	해 제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 번				면 적	사 유		
군포		산본	산 139	임 야	0.61 ha	0.06 ha	0.06 ha			
			〃 140	〃	2.15 〃	0.04 〃	0.04 〃			
			〃 162-4	〃	3.63 〃	0.02 〃	0.02 〃			
			〃 180	〃	1.79 〃	0.05 〃	0.05 〃			
			〃 104-1	〃	0.92 〃	0.04 〃	0.025〃			
			〃 208	〃	1.4 〃	0.08 〃	0.065〃			
			〃 39-2	〃	2.94 〃	0.09 〃	0.012〃			
			〃 48	〃	15.28〃	612㎡	20㎡			
			〃 49-1	〃	11.18〃	4,865〃	3,700〃			
			〃 484	〃	1.4 〃	1,040〃	1,040〃			
			〃 487-3	전	0.12 〃	20〃	20〃			
			〃 487-1	〃	0.16 〃	30〃	30〃			
			〃 963	전	4.98 〃	805〃	700〃			
		금정	〃 23-1	〃	1.69 〃	0.03 ha	0.02 ha			
			〃 33-8	〃	6.36 〃	0.42 〃	0.04 〃			
			〃 -12	〃	8.93 〃	0.23 〃	0.07 〃			
			〃 -10	〃	2.93 〃	0.02 〃	0.02 〃			
			〃 -5	〃	2.72 〃	0.18 〃	0.14 〃			
		당	〃 6-1	〃	1.16 〃	0.04 〃	0.04 〃			
			〃 11-1	〃	1.93 〃	0.23 〃	0.08 〃			
계			40 필지				2,912ha 5,510㎡			

2. 해제신청자 : 주소 . 대한주택공사 사장

성명 김 한 종

공 고

경기도 공고제 189 호

우리도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일원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공원묘지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 내용을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0. 6. 14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일원
2. 면 적 : 0.165 ㎢
3. 용도지역
   - 기 정 : 산림보전지역
   - 변 경 : 개발촉진지역(집단묘지지구)
4. 공고기간 : '90.6 - '90
5. 열람장소 : 경기도 지역계획과, 용인군 도시과
6. 관계도서 : 별첨과 같음 (생략) . 끝.

공 고

경기도 공고제 193 호

전기용품제조업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제조업을 휴(폐)지 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이행치 않을때에는 동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토록 되어있어 동 신고없이 제조업을 휴(폐)지한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아래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치 않아 공사 송달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기한 내 의견이 없을경우 허가 취소됩니다.

1990. 6. 15

경 기 도 지 사

1.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에이원전자	나용수	3-7-210	전동력응용기계 기구류	부천시 중구 춘의동 70-3

2. 의견제출기한 : 1990. 6.30

공 고

경기도 공고제 194 호

KS 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K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6. 16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신태양
2. 소 재 지 : 부산시 중구 삼정동 50-12

3. 대 표 자 : 오 준 섭

4. 허 가 번 호 : 제 2993 호

5. 규 격 번 호 : K S E 7006

6. 품 명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7. 종류및등급 :

8. 취 소 일 자 : '90.6.16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 공고제 195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16

경 기 도 지 사

허 가 번 호		10 - 나 - 11 - 6	허가년월일	90.6.16
신청인	성명	전 윤 종	주민등록번호	480202-1074313
	주소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137-2	상 호	칠 보 산 업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137-2		

비료의종류와 품 목	보 증 성 분 량 (%)		기타의규격	생산능력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부산물비료 (부숙왕겨및 톱밥)	—	—	—	1일 : 7톤 이상

공 고

경기도제 196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 영업정지 해제공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 7 조에 의거 영업정지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를 해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6,15

경 기 도 지 사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영업정지 해제현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 기 간	영업정지 해제일자	해제사유
84-33	(주)진흥건설	이동호	안성군안성읍낙원리 80-6	'90.3.15-'90.6.14 (3개월간)	'90.6.15	영업정지 기간만료
84-62	명성주택건설(주)	고전일	의정부시의정부동 198-1	〃	〃	〃
84-102	두승주택	최승수 외 4 인	미금시금곡동 404-74	〃	〃	〃
85-19	신한건설(주)	김죽남	수원시중동 41	〃	〃	〃
85-28	범양주택건설(주)	김종익	부천시송내동 393	〃	〃	〃
85-85	(주)국경주택	이계진	부천시중구심곡동 378-1	〃	〃	〃
86-4	(주)동우주택건설	한진호 외 1 인	화성군향남면평리 76-13	〃	〃	〃
86-35	(주)원촌주택	이덕형	안양시안양동 239-19	〃	〃	〃
86-59	동오건설(주)	한문교	수원시지동 354-222	〃	〃	〃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86-91	동진건설	김순희	용인군용인읍김량장리 314-11	'90.3.15-'90.6.14 (3개월간)	'90.6.15	영업정지 기간만료
86-111	신성토건	신수용	수원시영화동 334-5	〃	〃	〃
86-113	해원건설(주)	김우상	이천군이천읍창전리 77-3	〃	〃	〃
86-146	(주)중평	김용찬	동두천시생연동 445-28	〃	〃	〃
87-4	성우건설(주)	곽선권	구리시수택동 460-1	〃	〃	〃
87-23	대도건설(주)	김찬호	부천시중구원미동 92-1	〃	〃	〃
87-27	덕흥주택	임현수	수원시신풍동 109-2	〃	〃	〃
87-30	보우건설	오구해	부천시중동 765-7	〃	〃	〃
87-42	금영건설	김평현	안산시원곡동 779-2	〃	〃	〃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의정부공고제 92 호

공 고

의정부시 공인조례 제 4 조 및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개각 사용을 공고합니다.

1 . 사용개시일 : 1990. 5.24 (09:00)

2 . 개각사유 :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3 . 개각 및 폐기 인영

구 분	양곡관리 특별회계 의정부시 일 상 경 비 출 납 공 무 원	양곡관리 기금 의정부시 일상경비 출납 공무원
개 각 인 영		
폐 기 인 영		

1990. 6.14.

의 정 부 시 장

안양시공고제 153호

공인개각사용 및 폐공인공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양곡관리 기금 공인의 개각 및 폐기 공인을 안양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년 6월 12일

안 양 시 장

1. 개각사용 및 폐기일 : 1990.6.15

2. 개각사용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안양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양곡관리 기금 안양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3. 폐 기 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안양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양곡관리 기금 안양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송탄시제 75 호

공 고

송탄도시계획시설(도로,여객 자동차 정류장)사업에 대하여 재변경 시행허가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를 송탄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볼 수있게하고 있읍니다.

1990년 6월 12일

송 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위치 : 송탄시 지산동 773-7외 25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규모 : 변경없음

- 도 로 : 3개노선 228 ㎡
- 여객 자동차 정류장 : 4,416 ㎡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성명 : 변경없음

- 주소 : 송탄시 지산동 770-6
- 성명 : (주)다원산업 대표이사 김효순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기	정	변	경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90. 6.30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90.12.30

마.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변경없음

바. 공람기간 : 90.6.12-90.6.23

공 고

평택시공고제 73호

평택시공인조례 제9조1항에 의거 개각공인 및 폐기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18

평 택 시 장

1. 사용개시일 : 1990. 6.25

2. 개각공인 및 폐기공인인영

가. 개각공인

양곡관리 특별회계평택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평택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
	

나. 폐인공인

양곡관리 특별회계평택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평택시기금전도자금 출납공무원
	

공 고

오산시 공고 제53호

오산시 공인조례 제2조에 의거 신조 사용할 공인 및 폐인을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15

오 산 시 장

다 음

ㅇ 사용개시일 : '90.6.15

ㅇ 공인명 및 인영

양곡관리특별회계오산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오산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ㅇ 폐인명 및 인영

양곡관리특별회계오산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오산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안성군 공고 제106호

공인개각사용 및 폐공인 공고

안성군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사용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각사용 및 폐기일 : 90.6.25

1990. 6. 16

안 성 군 수

경 기 도 보

제 2352 호

공 인 명	개 각 인 영	폐 기 인 영	비 고
안성군수인			
안성군보건소장인			
안성군보건소계인			
양곡관리특별회계 안성군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농수산부 훈령 제 706 호에 의거
양곡관리기금 안성군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53 호
1990년 6 월 25 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35호 경기도 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2
○경기도조례 제2036호 경기도 지역개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4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84호 경기도 소방교육대 운영규정..... 11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11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19
○경기도고시 제 227호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지적승인 정정고시..... 20
○경기도고시 제 239호 사료성분등록사항 고시..... 21
○경기도고시 제 240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24
○경기도고시 제 24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25
○경기도고시 제 242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7

공 고

○경기도공고 제 198호 중용하천구간 변경공고..... 28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기도공고 제 199호 하천정비 기본계획 결정공고..... 29
○경기도공고 제 200호 K.S표시 정지처분 공고..... 30

시 군 행 정

○성남시고시 제 138호 성남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공고..... 31
○안산시고시 제 2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 변경허가 고시..... 39
○김포군고시 제 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41
○수원시공고 제 93호 공인신조 공고..... 42
○성남시공고 제 139호 공인신조 공고..... 43
○성남시공고 제 140호 공인신조 공고..... 43
○광명시공고 제1092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44
○미금시공고 제 68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45
○양평군공고 제 89호 공인신조 공고..... 46
○용진군공고 제 131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47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6월 19일

경기도조례 제 2035 호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경기도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 3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

구분 / 사업명	기준	
	직원수	사업규모
시장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	5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축장사업	5인 〃	1일평균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10인 〃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	10인 〃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이상
중기관리사업	10인 〃	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개발사업	10인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검정사업	5인 〃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사업	10인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	10인 〃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원조성사업	10인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10인 〃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도시조성, 정비등도시계획사업	10인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 (석산개발포함)	5인 〃	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포함)	5인 〃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사업	5인 〃	〃 〃
통합공과금사업	10인 〃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	3인 〃	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1990년 6월 19일

경기도조례 제 2036 호

경기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경기지역개발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경기지역개발공사"를 "경기도지역개발공사"라 한다.

제 1 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역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법인격)중 "경기지역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제 1 항중 "사무소의 소재지는 "을"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두고, 그 소재지는"으로 한다.

제 4 조(자본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600 억원으로 하고, 경기도가 100 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

②공사의 납입자본금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제5조(주식의 발행등)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5조의2(주식의 발행)를 신설한다.

제5조(주식)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0만주로 한다.

②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통주

2. 우선주(이익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청산시 잔여재산을 그 출자액의 범위내에서 우선 배분하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

③주권의 종류, 교부방법, 주주명부, 명의개서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의 2(주식의 발행) ①공사가 발행하여야 할 주식의 총수는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수(종류별 주식의 수를 포함한다)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주식의 발행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과 적립)을 삭제한다.

제9조(업무) 제1항 각호의 1을 다음과 같이한다.

1. 택지개발, 공업용지의 조성등 토지개발사업
2. 관광지의 조성 및 관리
3. 공동주택의 건설 및 관리
4. 건설자재의 생산과 공급
5. 업무시설(창고시설 포함)의 건설 및 관리
6. 공원사업의 시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의 위탁사업

9. 위 1호 내지 8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 10 조(임원)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 10 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이사와 2인이내의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면한다.

③부사장,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 11 조(임기 및 직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1 조의 2(직무)를 신설한다.

제 11 조(임기) ①사장, 부사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의 2(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⑤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부사장이 공사를 대표한다.

제 15 조(이사회)중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항"을 "제 5 항"으로, "제 5 항"을 "제 6 항"으로 하여 제 4 항을 신설한다.

제 15 조(이사회) ③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공사의 이사중에서 호선하여 도지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되거나 감사가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감사가 소집한다.

제16조의 2(공무원의 파견) 및 제16조의 3(대리인의 선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공무원의 파견) ①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 및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도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 3(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중 "1월전에"를 "2월전에"로 한다.

제20조(결산) 제1항중 "4월이내에"를 "1월이내에"로 한다.

제21조(계리의 원칙)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1조(계리의 원칙) ①공사의 계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거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월 말일 현재의 자금 수지상황 및 사업성과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 보전

2. 이익 준비금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4. 사업준비금 적립

②공사가 결산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금에서의 보전

2. 이익준비금에서의 보전

3. 차기 이월

③공사가 매년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의 금액, 기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 2 (기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기금) 공사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 2 (차입금)을 신설한다.

제23조의 2 (차입금) ①공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도는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년도에 상환할 수 있다.

조례 제1961호 부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설립위원) 제1항중 "합병 및"을 삭제한다.

제3조(권리 의무의 승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인의 합병) ①공사는 공사설립등기후 1년이내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 및 도내 시·군이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이하 "합병소멸회사"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코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합병소멸회사의 재산, 권리, 의무 및 합병전 행위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합병소멸회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⑤합병소멸회사에 출자한 주주의 재산은 이를 공사에 재출자한 것으로 본다.

⑥합병소멸회사의 주식중 도 및 도내 시군이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는 공사의 우선주를 교부한다.

제4조(설립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립비용) 공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하고 공사 설립후 이를 변제한다.

제5조(임직원의 임용특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사장임명의 특례) 공사의 최초의 사장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7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8조(우선주의 배당)은 이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026호 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제목 "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를 "경기도지역개발공사"로, 제1조(목적)중 "지방공사경기지역개발공사"를 "경기도지역개발공사"로 개정한다.

경기도훈령 제884호

경기도 소방교육대 운영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임 사 빈

경 기 도 소 방 교 육 대 운 영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소방교육대(이하 "교육대"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대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자를 말한다.
2. "학습평가"라 함은 강사 및 교관이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담당과목에 대하여 실시한 강의 및 기타교육의 평가를 말한다.
3. "생활평가"라 함은 학습지도 이외의 모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교관"이라 함은 소방간부공무원중에서 교관요원으로 임명된자를 말하며, "강사"라 함은 소방공무원 이외의 자로서 강사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교육훈련입교

제 4 조(등록) ①교육훈련 명령을 받은자는 소방교육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입교 예정자는 제 1 항의 등록을 필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된다.

③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기피하였을 경우에 대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입교식) 입교식은 입교일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이 시작된 후에 거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선서) 학교에 입교한 교육생은 입교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경기도 소방교육대에 입교함에 있어 공무원 윤리헌장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생의 본분을 깊이 인식하고 규정을 지키며, 교육훈련에 정진할것을 굳게 선서합니다."

제 3 장 교 육 훈 련 과 정

제7조(종류) 교육훈련과정은 신임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수탁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제8조(교육훈련내용) ①소양교육은 국가이념과 시책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투철한 국가관을 정립한다.

②신임교육과정은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임용 이전에 실시한다.

③직무교육과정은 직무와 직결되는 전문지식, 기술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④수탁교육과정은 위탁기관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특별교육과정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9조(교육훈련방법)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강의, 실기, 토의, 사례연구, 분임연구, 시청각교육, 견학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4장 교육훈련대상

제10조(대상자) 교육훈련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2. 내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교육훈련인원) ①교육훈련 인원은 관계기관의 교육훈련 수요자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대장은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기간 기타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관별 교육훈련인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대장은 교육대상자가 확정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학 사 관 리

제12조(교육생 차출) ①대장은 교육개시 20일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교육생 차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교육대상자 차출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교육대의 차출계획인원 및 그 대상 기준을 고려하여 각 교육훈련과정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대상자 명단을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대장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체, 연기, 취소) 교육생으로 차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체 연기, 취소를 하고자 할때에는 등록개시 전일까지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기 또는 취소를 요청할때에는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 대체자를 차출 통보하여야 한다.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때

2. 본인이 신병중일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수업시간 및 휴무일등) ①교육생의 수업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1일 수업시간은 평일에는 7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3시간으로 한다.

3. 매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하고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②교육생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개교 기념일

3. 전염병 또는 기후관계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때

제15조(퇴학) ①대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병 기타 교육생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때

2. 교육생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한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때

5.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때

6. 고의로 교육훈련 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피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행위를 한때

7. 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음이 판명된때

8. 기타 교육대 제규정에 퇴학사유로 명시된 경우

②전항 제1호의 경우는 국·공립 병원장의 진단서 및 기타 특수사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유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낙제) ①교육훈련성적을 100점 만점(이하같다)으로 하여 과목당 득점이 60점 미만인자에 대하여 낙제조치한다.

②낙제조치된자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료) ①각과정별 교육에 있어서 전체 수업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고 교육훈련 성적이 60점 이상을 득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로 처리한다.

②각 과정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 기타 학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평 가 관 리

제19조(평가) ①교육훈련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성적은

종합하여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훈련 성적평가는 평가항목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평가대상) 교육성적 평가는 학교에 입교한 모든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간이 2주 이하인 경우와 수탁교육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1 조(평가구분 및 배점비율) ①교육생에 대한 교육성적평가는 학습평가, 실기평가 및 생활평가로 구분한다.

②교육성적 평가의 배점비율은 학습평가 및 실기평가의 경우 합숙시 90%, 비합숙시 95%로 하고 생활평가는 합숙시 10%, 비합숙시는 5%비율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과정별로 학습평가 및 실기평가의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제 22 조(평가방법) ①교육성적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학습평가는 객관식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논문형과 단답형 또는 기입형)문제를 가미할 수 있다.

③실기평가는 실기를 직접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생활평가는 기본점수에서 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 23 조(성적통보) 교육훈련 성적은 수료후 10일 이내에 해당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위임) 평가의 구체적 방법, 절차, 평가별 배점비율, 평가과목, 평가기준 등 평가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실시후의 성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교 육 생 관 리

제 25 조(일반준수사항) ①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과시간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소정의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 기타의 사정으로 필요한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은후에 출입할 수 있다.

3. 교육시설은 질서있게 이용하여야 한다.

4. 교육생의 면회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②교육훈련기간중 교육생의 생활준수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수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수업태도) 교육훈련기간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과는 수업시간으로 간주하며, 교육생은 수업시간중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업시간은 엄수하여야 한다.

2. 수업중 무단이석, 잡담, 수면 기타 불성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3. 지정석이 있을때에는 지정된 자리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4. 수업시간중 강사 및 교관에게 공손하여야 한다.

5. 수업시간중 질문은 해당과목에 관계되는 범위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6. 강사 및 교관에 대한 경의는 교육생 대표가 표시한다.

제 27 조(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중 결강할 수 없다.

다만, 신병이나 기타 특수사정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결강할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제 28 조(교재심의위원회) ①교육대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대장이 되고 간사는 자체교관중에서 임명한다.

③교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내지 7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기도 소속 간부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과정별 교과목의 적합성 여부

2. 당해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내용의 적합여부

3. 기타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제 29 조(시설물 이용) 교육시설물을 소중히 취급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 30 조(수탁교육) ①수탁교육에 필요한 급식비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으로 운영되는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②수탁교육생의 교육에 필요한 제반시설의 이용에는 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학교 교육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중 부주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청사관리 유지를 위하여 제반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수탁교육과정의 제반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고 시 문

경기도고시 제 211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6. 20

경 기 도 지 사

1 .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주소 · 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면적	사유		
					ha	ha	ha			
평택	청북	옥길	산 81	임야	7.14	5.15	1.43	양계장 부지조성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2-10 신혜윤	
계					7.14		1.43			

2 . 해제신청자 : 주소 평택군 포승면 홍원리 82-8

성명 양승덕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27 호

1. 경기도고시 제 246 호(87.9.11)로 지적승인되고 건설부고시 제 39 호(89.4.12)로 준공된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고 정정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6. 21

경 기 도 지 사

가. 학교시설지적 승인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결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49	대학교 (한양대)	안산시사동 396 브럭	1,381,824	
변 경	49	〃	〃 1271 외 3 필지	1,338,139.8	감 43,684.2

나.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다. 도시계획시설(학교)승인조서

구분	위치	용도	지목	면적 (㎡)	비고
기정	안산시사동 396 브럭	학교용지		1,381,824	자연녹지지역
변경	소계	학교용지		1,338,139.8	〃
	안산시사동 1271		학교용지	1,053,885.4	(건설부고시 제 39:89.4.12 로 조성사업 준공인가에 따른 면적감소 43,684.2)
	〃 〃 1271-1		임야	157,051.6	
	〃 〃 1271-2		〃	21,289.8	
	〃 〃 1271-3		〃	105,913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39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고시합니다.

1990 년 6 월 23 일

경 기 도 지 사

배합사료성분등록및취소내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번호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퓨리나 코리아 (부천)	부천시중 구오정동 114-5	폴반웰 레갬	수입 배합 사료	개사료 7	소형견 ―성견	13-40-7	27.0	7.0	1.1	0.9	5.0	9.0
					〃 8	〃	13-40-8	18.0	7.0	0.8	0.7	3.0	9.0
					〃 9	〃	13-40-9	21.0	8.0	0.8	0.5	4.5	8.0
	홍성 사료	안산시 목내동 490-1	정태원	배합 사료	착유 1 - 1	비유량 15 kg이하	18-28-2	13.0	2.5	0.5	0.4	15.0	10.0
					육성돈 3	2 ― 4개월	18-15-4	14.0	2.5	0.6	0.4	7.0	8.0
					오리사료	육용오리 3-8주	18-42-3	16.0	2.5	0.7	0.5	6.0	9.0
					개사료	육성후기용	18-40-3	14.0	3.5	0.7	0.5	8.0	9.0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번호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퓨리나 코리아 (송탄)	송탄시 장당동 85-1	폴반웰 레겜	배합 사료	젖소 특수사료 1	착유우용	5-33-3	14.0	6.0	2.0	1.0	8.0	30.0
					젖소 특수사료 2	축우용 (큰송아지이상)	5-33-4	2.0	0.2	5.0	2.0	5.0	50.0
					젖소 특수사료 3	착유우용	5-33-5	5.0	1.0	1.0	0.5	10.0	40.0
					착유 4-4	비유량 30 kg이상	5-31-5	15.0	8.0	0.7	0.4	10.0	10.0
					젖먹이돼지 3	4 - 6주	5-13-4	18.0	4.5	0.6	0.4	6.0	8.0
					육성돈 3	2 - 4개월	5-15-4	15.5	4.5	0.6	0.4	6.0	8.0
					포유돈 1	포유기간중	5-19-1	14.5	4.5	0.6	0.4	5.0	7.0
	선진 축산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114-1	이원복	〃	육성돈 5	2 - 4개월	9-15-5	16.0	3.0	0.7	0.4	5.0	7.0
					임신돈 2	임신기간중	9-18-1	13.5	3.0	0.7	0.4	6.0	8.0
					포유돈 2	포유기간중	9-19-1	15.5	3.0	0.7	0.4	6.0	8.0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고 시 문

경기도고시 제 240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6. 23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본			면적	면적	사유		
안성	삼죽	내장	산 60-5	임야	ha 2.75	㎡ 3,000	㎡ 3,000	초지조성	서울시중랑구 면목1동92-4 박영정외 4인	
계						㎡ 3,000	㎡ 3,000			

2. 해제신청자 : 주소 서울시 중랑구 면목1동 92-4

성명 박영정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41 호

의왕시 오전동 205-2번지외 3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사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5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왕시청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0. 6. 23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업명 : 주택건설사업 (분양주택)

나. 사업주체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9-5

신안종합건설 : 박순석

다. 사업위치 : 의왕시 오전동 205-2번지외 3필지

라. 대지면적 : 10,287.0 ㎡

마. 사업규모 : 15층 2동 360세대

바. 사 업 비 : 15,587,734천원

사. 사업시행기간 : 1989. 9 - 1990.12.31

2. 지적승인 및 사용할 토지조서 (별첨과 같음)

3. 도 면 : 별첨과 같음 (생략)

4. 기 타 :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에 보관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지적승인 및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제외 면적	사업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의왕시 오전동	205-2	답	739	0	739	서울시 중랑구 묵동 122-1	박순석	본인소유
	216-1	〃	7,001	0	7,001	〃	〃	〃
	217	전	1,924	0	1,924	〃	〃	〃
	222-1	임	623	0	623	〃	〃	〃
합 계			10,287	0	10,287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고 시 문

경기도고시제 242 호

경기도 고시 제 82-360 호로 지정된 다음 보호수에 대하여 산림법 제 69 조 및 동 시행령 제 5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구분 / 품격별	위 치	수 종	지정 번호	수령	소유자	
					주 소	성 명
면나무	용인군 모현면 동림리	느릅나무 (1본)	5-25 -3-19	넌 200	용인군 모현면 동림리 50 번지	이인희

1990. 6.25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공 고

경기도공고제 198 호

준용하천인 순창천 및 곡릉천의 하천구간을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였기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 6.19

경 기 도 지 사

하천명	구 분	시 점	종 점	하천연장 km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km²	비 고
순창천	당 초	고양군신도읍 용두리 E126°-54′-4″ N37°-36′-4″	고양군신도읍 용두리 창릉천합류점	2.55	2.60	6.70	
	변 경	고양군신도읍 용두리 E126°-53′-50.5″N N37°-37′-25.5″	〃	2.00	3.50	4.30	기준이하 하천구간 축소
곡릉천	당 초	양주군장흥면 부곡리 E126°-59′-30″N37°-43′-22″	고양군벽제읍 내유리 파주군조리면 의면계	25.00	30.50	253.05	
	변 경	양주군장흥면 부곡리 E126°-58′-36″ N37°-42′-58″	〃	26.00	30.05	125.67	기준이상 하천구간 연장

공 고

경기도공고제 199 호

창릉천수계 5개하천, 곡릉천수계 17개하천 및 문산천수계 4개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 6.19

경 기 도 지 사

1. 결정조서

수계명	위 치	하천수	하천연장 (km)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km²)	비 고
창릉천	고 양 군	5 개	32.10	41.00	75.10	
곡릉천	양주, 파주, 고양군	17 〃	94.55	118.40	125.67	
문산천	양주, 파주군	4 〃	36.35	42.57	68.42	

2. 목 적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기본사항을 정하므로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일관성있는 개발로 하천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함

3. 기본계획결정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경기도 치수과와 양주군, 파주군, 고양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200 호

K S 표 시 정 지 처 분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6.21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삼화정밀
2. 소 재 지 : 구리시수택동 548-108
3. 대 표 : 문 양 식
4. 허 가 번 호 : 제 7501 호
5. 규 격 번 호 : KSF4533
6. 품 명 : 피벗힌지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처 분 기 간 : '90.6.21-'90.9.20 (3개월)
9. 처 분 사 유 : K S규격 미달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남시고시제 138 호

고 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한성 1 , 2지구 및 자혜지구)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기 동법 제 6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6.22

성 남 시 장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계획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230,791.0	
한성 1 지구	중원구은행 2 동 1223-1 번지 일원	75,243.7	
한성 2 지구	〃 은행 2 동 753 번지 일원	84,904.7	
자 혜 지 구	〃 은행 1 동 1988번지 일원	70,642.6	

2. 사업시행기간

○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 1990.6. - 1992.12.31

○ 자력 건축물 개량 : 1990.6. - 1999.12.31

3. 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

○ 성 명 : 성 남 시 장

4. 주거환경개선 계획의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	한성1지구	%	한성2지구	%	자혜지구	%
계	230,791.0	100	75,243.7	100	84.904.7	100	70,642.6	100
단독주택용지	137,992.3	59.8	48,307.4	64.2	45.547.6	53.7	44,137.3	62.5
공동주택용지	25,019.4	10.8	9,780.0	13.0	14.153.4	16.6	1,086.0	1.5
근린공공시설	3,894.4	1.7	516.4	0.7	1,515.7	1.8	1,862.3	2.6
공원, 녹지	2,303.0	1.0	1,410.0	1.9	893.0	1.1		
도 로	61,581.9	26.7	15,229.9	20.2	22,795.0	26.8	23,557.0	33.4

나. 공공시설의 정비

구 분	단 위	계	한성 1 지구	한성 2 지구	자혜지구
계	건	52/10,011	24/4,250	12/2,546	16/3,215
도로개설	건 / m	6/1,010	4/650	1/170	1/190
도로확·포장	〃	6/991	4/417	1/99	1/475
도로정비	〃	11/1,310	2/240	4/746	5/344
상수도급수공사	〃	17/5,110	8/1,910	4/726	5/1,760
가압펌프장	개소/ HP	1/(20)			1/(20)
하수도시설공사	건 / m	8/1,446	4/980	2/111	2/355
하수관경확장	〃	3/144	2/53		1/91

다. 주택건설계획

1) 단독주택

○ 과소토지 활용방안으로 합동주택 건설 유도

— 대지규모 60 ㎡ (18평)이하는 합동주택으로 개량

— 대지규모 60 ㎡ (18평)이상은 단독개량

○ 건축선 후퇴의 적용으로 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 자력개발 (현지개량)의 원칙으로 하되 조례에 의거 개발

2) 공동주택

단위 : 세대

지 구 명	위 치	계	11.5평	13 평	16 평	18 평	비 고
계		294	114	114	42	24	
한성 1 지구	소 계	252	102	102	30	18	
	은행동 1220-1	18	6	6	6	-	
	1230-1	18	-	-	-	18	
	1417-1	32	16	16	-	-	
	1417-2	72	24	24	24	-	
	1932-2	48	24	24	-	-	
	1932-3	64	32	32	-	-	
한성 2 지구	은행동 1178	24	6	6	6	6	
자 혜 지구	은행동 2036	18	6	6	6	-	

라. 건축물 개량계획 : 자력개량 - 융자지원

지 구 별	단 위	개 량 대 상	비 고
계		1,403	
한성 1 지구	동	436	
한성 2 지구	〃	557	
자 혜 지구	〃	410	

마. 재해방지대책

구 분	단 위	길 이 (L)	높 이 (H)	비 고
계		453		한성 1지구
옹벽 (중력식)	m	247	2-4	
옹벽 (역 형)	〃	206	〃	

바.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구 분	단 위	계	한성 1지구	한성 2지구	자혜지구
계	건	8	4	2	2
복지회관건립	동/평	3/450	1/90	1/80	1/80
노인정건립	〃	3/270	1/90	1/90	1/90
어린이놀이터	개소/㎡	1/300	1/300	-	-
녹지시설	〃	1/1,110	1/1,110	-	-

사. 인구수용계획

지 구 별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비 고
계	4,750	19,000	
한성 1 지 구	1,850	7,400	
한성 2 지 구	1,500	6,000	
한성 3 지 구	1,400	5,600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아.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자금조달계획

가.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한성1지구		한성2지구		차혜지구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854.4		6,277.2		1,403.9		2,173.3	
조사업무비		28	1식	9	1식	11	1식	8	
보 상 비		1,906	〃	985	〃	75	〃	846	
공사비		1,054.3		560.6		191.9		301.8	
토 공	㎡ 26,900	64.2	21,400	40.7	3,000	6.2	3,500	17.3	
배수공	m 3,810	517.7	2,020	277.8	710	91.4	1,080	148.5	
구조물공	m 460	36.8	460	36.8					
포장공	a 75.3	112.8	56.3	79.8	10	15	11.72	18	
상수도공	m 5,080	262.8	1,910	95.5	1,410	64.3	1,760	103	
조경공	1식	30	1식	20	1식	5	1식	5	
부대공	〃	30	〃	10	〃	10	〃	10	
아파트건립	평 3,896	4,615.9	3,303	3,963.6	350	385	243	267.3	
공공건축	평 810	840.2	270	279	270	261	270	300.2	
주택개량	동 1,403	1,410	436	480	557	480	410	450	

나.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9,854.4	
일반회계	2,747.0	일반회계 지원
주택분양금	4.456.4	13-18평형
사유지매각비	2,651.0	평당 110 만원

5. 도시계획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지구별	등급	류별	폭원	기 정		신 설		변 경		비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16	3,916	63	5,966	4	1,548	
한성1지구	소 계			4	927	19	1,750	3	928	
	소 로	2	8	2	381	1	69	-	-	
	〃	3	4-6	2	546	18	1,681	3	928	
한성2지구	소 계			4	1,093	14	1,738	1	620	
	소 로	2	8	-	-	1	45	-	-	
	〃	3	4-6	4	1,093	13	1,693	1	620	
자혜지구	소 계			8	1,896	30	2,478	-	-	
	중 로	2	15	1	475	-	-	-	-	
	소 로	2	8	1	137	-	-	-	-	
	〃	3	4-6	6	1,284	30	2,478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나. 건축후퇴선 적용 토지

지 구 명	로선번호	위 치	비 고
한성 1 지구	소로 3-361	은행동 1772- 은행동 1867	
	소로 3-407	〃 1830-7- 〃 1839-3	
한성 2 지구	소로 3-352	〃 1169-1- 〃 1201	
	소로 3-358	〃 776- 〃 1081	
	소로 3-369	〃 883- 〃 896-1	
	소로 3-370	〃 907-3- 〃 921	
자 혜 지 구	소로 3-380	〃 2347- 〃 2351	
	소로 3-375	〃 2331- 〃 2339	
	소로 3-376	〃 2329- 〃 2337	
	소로 3-377	〃 2315- 〃 2321	
	소로 3-374	〃 2296- 〃 2289	

6. 주거환경개선계획도 : 생략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안산시고시 제 23 호

고 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 동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시행변경 허가하고 동법 제 24 조 3 항 규정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수암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6.

안 산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안산시 부곡동 산 42-1 번지외 75 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로
- 명칭 :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1-1
- 성명 : 한국도로공사 사장

라. 면적 및 규모

- 면적
  - 당초 : 111,901 ㎡
  - 변경 : 113,105 ㎡ (증) 1,204 ㎡
- 규모 : 대로 3 류 17 호선 L = 1,730 m (B = 24.4 m ~ 50 m)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으로 관계인의 성명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1	당초	안산시부곡동	산 9-13	임	4,632	3,009	서울관악구신림 1 동 1567-9	윤욱희
	변경	〃	산9-25	임	4,632	3,046	상 동	〃
2	당초	〃	64-1	전	4,973	648	경기안산시부곡동 66-12	이경우
	변경	〃	64-2	전	900	900	상 동	〃
3	당초	〃	64-1	전	4,016	0	경기안산시부곡동 66-12	이경우
	변경	〃	64-1	전	4,016	138	상 동	〃
4	당초	〃	66-5	전	1,520	0	경기안산시부곡동 261	유선형
	변경	〃	66-5	전	1,520	332	상 동	〃
5	당초	〃	525	도	8,304	1,581	국	
	변경	〃	525	도	8,304	1,609	국	
6	당초	〃	75-4	전	999	0	경기시흥군수암면수암리 179-2	김충영
	변경	〃	75-4	전	999	417	상 동	〃

* 기고시된 안산시 부곡동 산 42-1 유승용외 65 필지 111,901 ㎡ : 변경없음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변경없음)

착 수 일 : 허가일로부터 15 일이내

준공예정년월일 : 착수일로부터 1991.12.31 까지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김포군고시 제1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 제4항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32의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년 6 월 14 일

김 포 군 수

아 래

1. 사 업 명 : ㈜연진건설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연진건설 대표 오 달 수
3. 위 치 :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산175-1, 435-1
4. 규 모 : 대지면적 : 3,469.6 ㎡
   건축면적 : 855.63 ㎡
   건축연면적 : 5,767.09 ㎡
   층수및동수 : 지하1층, 지상6층(아파트3동, 84세대 화장실 1동)
   세대수 : 84세대
5. 사업시행기간 : 90.6 - 91.4
6.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1) 건축법 제5조 및 제47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 산림법 제90조에 의한 임목벌채등의 허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군 건설과(84-0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보

수원시공고 제93호

수원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16

수 원 시 장

o 신조공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관리자의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기업출납원의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출원의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수입원의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자산출납원의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유가증권출납원의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소장인
			
수원시공영개발사업 소계인	양곡관리기금수원시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원시 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성남시공고 제 139 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성남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18

성 남 시 장

o 신조공인

중원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민원사무전용 중원구계인


성남시공고 제 140 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 6 조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성남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18

성 남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 신조공인	
양곡관리특별회계성남시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성남시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광명시공고 제 109 호

광명시 공인조례 제 6 조, 제 11 조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된 광명시 양곡관리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 6. 19

광 명 시 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 : '90.6.20. 09:00

2. 신조 및 폐기공인인영

신조공인	양곡관리특별회계광명시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광명시일상경비 출납공무원
		
폐기공인	양곡관리특별회계광명시 전도자금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광명시전도자금 출납공무원
		

미금시공고 제 68 호

공인사용 및 폐기인 공고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출납공무원사무처리 규칙의 개정에 따라 미금시 공인조례 제6조2항에 의거 개각된 공인 및 동법 제11조에 의거 폐기된 공인을 미금시 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21

미 금 시 장

○ 사용 및 폐기일 : 90.6.21

○ 공인명 및 인영

— 개각인영

양곡관리특별회계미금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미금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인영

양곡관리특별회계미금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미금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양평군공고 제 89 호

공 고

양평군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양평군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18

양 평 군 수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1. 신규사용인

양곡관리특별회계양평군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양평군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2. 폐기인

양곡관리특별회계양평군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양평군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옹진군공고 제 131 호

농수산부훈령 제 706 호 규정에 의거 옹진군 양곡관리 출납공무원인 관직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을 신조, 폐기하였기 공고합니다.

아 래

1. 사용 및 폐기일시 : 90.7.2

2. 신조 및 폐기인영

경 기 도 보

제 2353 호

가. 신조인영

공 인 명	양곡관리특별회계옹진군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옹진군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인 영		

나. 폐기인영

공 인 명	양곡관리특별회계옹진군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옹진군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인
인 영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54 호
1990년 7 월 2 일(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43호 '90골재채취허가(한강개발1공구)고시..... 2
○경기도고시 제 244호 아산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2
○경기도고시 제 246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3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02호 전기용품제조업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제출공고..... 4
○경기도공고 제 204호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공고..... 4
○경기도공고 제 207호 K.S표시 정지처분공고 5
○경기도공고 제 208호 K.S표시 정지처분공고 5
○경기도공고 제 209호 K.S표시 정지처분해제 공고..... 6
○경기도공고 제 210호 시화염료안료공업사업 협동조합 설립인가공고..... 7
○경기도공고 제 211호 시화한일도금공업사업 협동조합 설립인가공고..... 8
○경기도공고 제 212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9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시군행정

○동두천고시 제 9호 동두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허가고시..... 10
○안산시고시 제 24호 반월도시계획시설(공업용지조성)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11
○수원시공고 제 102호 공인신조공고..... 12
○동두천공고 제 50호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13
○군포시공고 제 76호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13
○의왕시공고 제 73호 공인신조 공고..... 14
○하남시공고 제 88호 신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16
○고양군공고 제 114호 공인신조 공고..... 17
○용인군공고 제 118호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18

경기도고시 제 243 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골재채취를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6. 26

경 기 도 지 사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제1공구
2. 면 적 : 57,846 ㎡
3. 물 량 : 340,000 ㎥
4. 점 용 료 : 986,000,000 원
5. 허가기간 : '90.6.27 - 90.10. 5
6. 피허가자 : 대림산업㈜ 대표이사 이원현

경기도고시 제 244 호

아산 산업기지개발구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한다.

1990. 6. 27

경 기 도 지 사

다 음

1. 사업의 명칭 : 자동차주행시험장 건설부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당초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514-5
   성명 - 기아산업㈜ 대표 김선홍

경 기 도 보

제 2346 호

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992-28
성명 - 기아자동차㈜ 대표 이범창

3.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수출전략형 자동차생산에 따른 주행시험장 건설
나) 개요 (당초와 변동없음)

4. 사업시행지구의 위, 면적 (당초와 변동없음)

5. 사업시행기간
당초 : 1987.1 - 1990. 6.30
변경 : 1987.1 - 1990.12.31(6개월)

6. 서류의 송달 (당초와 변동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당초와 변동없음)

8.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는 화성군청 및 기아자동차㈜ 주행시험장 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경기도고시 제 246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지 고시한다.

1990. 6. 29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		소재지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ha	ha	ha			
여주	강천	부평	산 47-1	임야	70.22	0.05	0.05			
			〃	〃	16.44	0.25	0.25			
			산 47-3	〃	16.44	0.27	0.27	골프장	서울시양천구목동	
			〃	〃	68.91	1.20	1.20	조 성	904 목동신시가지	
			〃	〃	68.91	0.42	0.42		APT 410 동 1303	
			산51-3	〃	20.73	0.63	0.38		조진구외 6인	
계			3필지			2.82	2.57			

2. 해제신청자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1
성명 정일관광㈜ 안부치

경 기 도 보

제 2354 호

공 고

경기도공고 제202호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을 휴(폐)지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토록 되어있어 동 신고없이 제조업을 휴(폐)지한 아래 전기용품제조업체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공문이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허가 취소됩니다.

1990. 6. 25

경 기 도 지 사

1.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허가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동해산업㈜	김 재 국	3-8-154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성남시상대원동 5443-1

2. 의견제출기한 : 1990. 7. 10

경기도공고 제204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27

경 기 도 지 사

허가번호	10-가-미량요소3-1		허가일자	88. 4. 19
생산업자	성 명	한 정 근	상 호	한 창 산 업
	주 소	서울.강남.개포동 654현대A 207/803	상표	크 로 바 표
제조장소재지	화성군 양감면 요당리 566-4		비료의 종류 및 품목	미량요소비료 (황산아연비료)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생산업자명의변경	한 정 숙 211206- 2005416	한 정 근 230622- 1023815	대표자 변경

공 고

경기도공고제 207 호

KS표시 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6.28

청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대일화학공업(주)
2. 소 재 지 : 오산시 세모동 26
3. 대 표 자 : 박 대 식
4. 허가번호 : 2491
5. 규격번호 : KSA 1514
6. 품 명 :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점착 테이프
7. 종류및등급 : 1종
8. 처분기간 : 1990.6.28-1990.9.27
9. 처분사유 : KS규격 미달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208 호

KS표시 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 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6.28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세영화학공업사
2. 소 재 지 : 동두천시 내행동 303-1
3. 대 표 자 : 김 창 수
4. 허가번호 : 4866

5. 규격번호 : KS2302

6. 품 명 : 전기절연용 면고부 점착 테이프

7. 종류및등급 : -

8. 처분기간 : 1990.6.28-1990.9.27

9. 처분사유 : KS규격 미달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209 호

KS표시 정지처분 해제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 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6.29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주)타이프통상

2. 소 재 지 : 부천시 중구 삼정동 48-40

3. 대 표 : 양 창 화

4. 허가번호 : 제3437호

5. 규격번호 : KSF3109

6. 품 명 : 목재문 및 문틀

7. 종류및등급 : 목재문

8. 해제일자 : 90.6.29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21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기 공고함

1990.6.

경 기 도 지 사

1. 인 가 번 호 : 제 호
2. 설 립 조 합 명 : 시화염료안료공업사업협동조합
3. 주 소 :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683-3
4. 대 표 자 : 정 홍 기
5. 설립인가일자 : 1990.6
6. 설 립 목 적 : 염료안료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211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2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기 공고함

1990. 6.

경 기 도 지 사

1. 인 가 번 호 : 제 호
2. 설립조합명 : 시화한일도금공업사업협동조합
3. 주 소 : 안산시 팔곡2동 50-10
4. 대 표 자 : 안 경 준
5. 설립인가일자 : 1990.6
6. 설 립 목 적 : 도금 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212호

K.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7. 2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한진철망공업㈜,	서광공작㈜
2. 소 재 지 : 부천 중구 내동 77	성남 삼형 514-129
3. 대 표 자 : 조 영 환	설 기 철
4. 허가번호 : 제6162호	제3331호
5. 규격번호 : KSD7036	KSB2332
6. 품 명 : 염화비닐 피복철선	수도용 제수 밸브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좌 동
8. 취소일자 : 1990.7.2	〃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동두천고시 제 9 호

고 시

동두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 및 동안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6. 22

동 두 천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위치 : 동두천시 동두천동 523-1번지선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나) 면적 및 규모

면적및규모 / 노선별	결 정 규 모	시 행 규 모	비 고
소로1-1호선	L : 340 M B : 10 M	L : 37 M B : 10 M	
소로3-1호선	L : 305 M B : 6 M	L : 102 M B : 6 M	
소로3-5호선	L : 230 M B : 6 M	L : 19 M B : 6 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의정부시 가능동 15-416 김 정 석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210일이내

바)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토지소재지 : 동두천시 동두천동 523-1번지
- 토지소유자 : 동두천시 생연동 820-7 김 형 호

경 기 도 보

제 2344 호

안산시고시 제 24 호

고 시

반월도시계획시설(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변경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 24 조 3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반월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6. 29

안 산 시 장

1. 변경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팔곡동 85-1 번지외 14 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종류 :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명칭 : 고려피혁공업(주)
- 변경
  - 종류 :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명칭 : (주)고려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초
  - 주소 :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646 번지
  - 성명 : 고려피혁공업(주) 대표이사 서재필
- 변경
  - 주소 :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고림리 646 번지
  - 성명 : (주)고려 대표이사 서재필

라. 면적 및 규모

- 면적 : 40,317 ㎡
- 규모 :
  - 건축면적 : 13,592 ㎡
  - 건축연면적 : 20,217 ㎡

(변경없음)

경 기 도 보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 없음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당 초 : 허가일로부터 1990.12.31

변 경 : 허가일로부터 1991.12.31

수원시공고 제102호

수원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6. 26

수 원 시 장

o 신조공인

수원시장안구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	수원시권선구보건소수입금출납원인

공 고

동두천시 제 50 호

동두천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 및 폐각된 공인을 동조례 제 9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신조사유 :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관직 및 임면 규정 개정
2. 사용게시연월일 : '90.6.18
3. 공인인영

공 인 명	신규사용인	폐 기 인
양곡관리특별회계 동두천시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 동두천시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동 두 천 시 장

공 고

군포시 공고제 76 호

군포시 공인조례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년 6 월 30 일

군 포 시 장

제 2345 호

경 기 도 보

○ 사용개시일 : 1990 년 7 월 16 일

개 각 인 영	폐 인 인 영
보건사회부소관 일반회계 군포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군포시 보건소 보건사회부소관 일반회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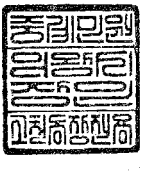
공 고

의왕시 공고제 73 호

의왕시공인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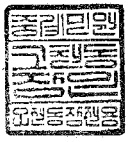
1990. 6. 27 .

의 왕 시 장

중 계 민 원 의왕시장인 (고천동장전용)	중 계 민 원 의왕시장인 (오전동장전용)	중 계 민 원 고천동장인 (부곡동장전용)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중계민원 고천동장인(오전동장전용)	중계민원 고천동장인(내손1동장전용)	중계민원 고천동장인(내손2동장전용)
		
중계민원 고천동장인(청계동장전용)	중계민원 고천동장인(의왕시장전용)	중계민원 부곡동장인(고천동장전용)
		
중계민원 부곡동장인(오전동장전용)	중계민원 오전동장인(의왕시장전용)	중계민원 오전동장인(고천동장전용)
		
중계민원 오전동장인(부곡동장전용)	중계민원 오전동장인(내손1동장전용)	중계민원 오전동장인(내손2동장전용)
		
중계민원 오전동장인(청계동장전용)	중계민원 내손1동장인(고천 동장전용)	중계민원 내손1동장인(오전동장전용)
		

제 2375 호

경 기 도 보

중계민원 내손2동장인(고천동장전용)	중계민원 내손2동장인(오전동장전용)	중계민원 청계동장인(고천동장전용)
		
중계민원 청계동장인(오전동장전용)		
		

공 고

하남시 공고제 88 호

건설부고시제 714 호('87.12.24)로 결정되어 경기도고시 제 157 호('88.6.22)로 지적 승인되어 하남시고시 제 14 호('89.6.7)로 시행허가한 신장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에 사업을 변경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공람 공고합니다.

1990 . 7. 2 .

하 남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45 호

1. 사업시행변경내용

시설명	세부시설명	규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로	대로 3 류 10 호선	B= 24.4 -44 m L= 5,640 m A= 326,641 ㎡	B= 24.4 -44 m L= 5,640 m A= 334,115 ㎡	증 7,474 ㎡	면적증가 또는누락
	대로 3 류 11 호선	B= 24.4 m L= 120 m A= 6,886 ㎡	B= 24.4 m L= 120 m A= 6,886 ㎡	-	
광장	서부교통광장	A= 101,471 ㎡	A= 101,959 ㎡	증 488 ㎡	면적증가 또는누락
	신장교통광장	A= 168,450 ㎡	A= 169,051 ㎡	증 601 ㎡	〃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공람기간 :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과

5. 사업변경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있으신 분은 우리시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양군 공고제 114 호

고양군 공인조례제 6 조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하였기 공고함.

○ 사용개시일 : 1990 년 6 월 29 일

1990 년 6 월 29 일

고 양 군 수

경 기 도 보

신 조 인 영

공 인 명	신 조 인	공 인 명	신 조 인
고양군공영개발 사업소장인		고양군공영개발 사업소계인	
고양군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관리자인		고양군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징수관인	
고양군공영개발 사업소관리과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인		고양군공영개발 사업소개발과 일상경비출납 공무원인	

용인군 공고제 118 호

용인군 공인조례 제 6 조에 의거 신조개각 및 폐인된 공인을 같은조례 제 9 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폐기공고 합니다.

1990 . 6 . 26

용 인 군 수

경 기 도 보

제 2348 호

1. 사용및폐기일시 : 1990. 7. 1 09:00

2. 공인명 및 인영

가. 신규사용인

양곡관리특별회계 용인군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 용인군일상경비 출납공무원인
	

나. 폐 기 인

양곡관리특별회계 용인군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 용인군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의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55 호
1990년 7 월 9 일(월)

차 례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81호 경기도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 입·면허처리및 공급기준 책정기준중 개정규칙..... 2
○경기도규칙 제2082호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13
○경기도규칙 제2083호 경기도 자동차 운전학원 운용규칙중 개정규칙..... 16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85호 경기도 경찰국 사무분장규정중 개정규정..... 19
○경기도훈령 제 886호 경기도 경찰관서 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 21
○경기도훈령 제 887호 경기도 수사본부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27
○경기도훈령 제 888호 경기도 현장감식 실시규정중 개정규정..... 29
○경기도훈령 제 889호 경기도 수사 비상배치 규정중 개정규정..... 30
○경기도훈령 제 890호 방범기동순찰차(C^3)운영규정..... 32

예 규

○경기도예규 제 593호 경기도 경찰국 건문수집및 처리요강중 개정요강..... 41

회 람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47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45
○경기도고시 제 249호 소고기 연동가격고시..... 46
○경기도고시 제 250호 경기도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지정병원고시 개정 개정고시..... 47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14호 제2종전기공사업 면허갱신업체 명단공고..... 50
○경기도공고 제 216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61
○경기도공고 제 217호 제1종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취소공고..... 62

시 군 행 정

○송탄시공고 제 92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63
○화성군공고 제 77호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변경)사전공람공고..... 64
○양주군공고 제 82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65
○옹진군공고 제 163호 공인신조 및 폐기공고..... 66

경기도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사무처리 및 공급기준책정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1990 년 7 월 5 일

경기도규칙제 2081 호

경기도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사무처리및공급기준책정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인·면허사무처리 및 공급기준책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처분의 제한) 4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택시성실업체평가 및 증차처분의 제한) ① 택시운송사업자가 공익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승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는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별지 2"의 택시성실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관내 택시업체의 성실여부를 평가하되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근거와 자료는 관할 시군에 비치된 관계서류나, 업체가 제시한 자료 또는 현지 확인등을 통해 가능한 한 명확한 근거에 의거 평가한다.

② 평가대상 기간은 최근 3년간을 대상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별지 2"의 평가 항목중 2호와 7호중 도지사 소관사항에 속하는 교육에 불참시킨 불성실업체(증차배제 대상사)명단을 작성하고, 잔여 항목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자체 평가결과를 기초로 불성실업체를 확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택시성실업체 평가결과 불성실업체로 판정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증차처분을 제한한다.

1. 1년간 불성실업체 지정시 - 1년간(당해년도) 증차배제
2. 2년간 불성실업체 지정시 - 2년간(당해년도+익년도) 증차백제
3. 3년간 불성실업체 지정시 - 3년간(당해년도+이후 2년간) 증차배제

⑤ "별지 2"에 의한 평가 서식은 "별지 3"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90년도 택시 증차시 적용할 성실업체 평가는 "별지 2"의 평가

기준중 항목순위 1 , 2 , 3 , 7번 항목에 한한다.

③ (평가기간) 90년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간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1차년도(90년도) : '89년도 1년간(1.1~12.31)성실여부평가
- 2차년도(91년도) : '89, '90년도 2년간 성실여부 평가
  (기 평가된 89년도분 평가결과+90년도분 신규평가 결과)
- 3차년도(92년도) : '89, '90, '91년도 3년간 성실여부평가
  (기 평가된 '89,90년도 평가결과+91년도분 신규평가 결과)
- 이후 년도(93년도 이후) : 전년도 3년도분 성실여부평가
  (기 평가된 2년분 결과+전년도분 신규평가 결과)

(별지 2)

택 시 성 실 업 체 평 가 기 준

항목순위	제 재 항 목	제재대상 위반내용	확인근거서류	제재구분
1	법정기준시설 미달 업체	○ 대상시설 : 차량, 차고, 부대시설 ○ 확보기준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의한 기준시설확보 ○ 확보상태확인 : 시·군 관계 공무원이 분기별로 1회이상 불시 방문하여 현지확인 ○ 제재기준 : 불시 확인시 년1회이상 기준시설 미달시	○ 차량, 차고, 부대시설 : 시장·군수가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시설 확인복명서	○ 당해업체 증차배제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항목순위	제 재 항 목	제재대상 위반내용	확인근거서류	제재구분
2	교통사고지수와 질서위반지수가 높은업체	○ 지수계산방법 • 교통사고지수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 10 • 질서위반지수 위반건수 / 보유대수 × 10 ○ 제재기준 : 매년말 (12.31) 현재 교통사고지수와 질서위반지수가 2년연속하여 총업체수의 최하위 5 %에 해당하는업체 (소수점 이하는 사사 오입)	○도·시·군에서 계산한 교통사고지수 및 질서위반지수 계산내역서	○당해업체 증차배제
3	노사협조 불량업체	○ 업체가 노사문제로 년 1회 이상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경우 그 원인이 업체장에게 있을때	○벌금이상 처분내역서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 , 법원등에 조회확인)	○당해업체 증차배제
4	시트 , 카바 불량업체	○ 확보기준 : 온카바 2벌이상 반카바 4벌이상 ○ 세탁된 시트카바 비치기준 : 온카바 1벌 , 반카바 2벌은	○현지조사 공무원출장 복명서	○당해업체 증차배제

항목 순위	제 재 항 목	제재대상 위반내용	확인근거서류	제재구분
		항시 세탁된 상태로 교체가 가능토록 업체내에 진열대 설치 비치 o 비치상태확인 : 시·군 관계 공무원이 분기별로 1회 이상 불시 방문하여 현지 확인 o 제재기준 : 불시 확인시 년1회이상 비치기준위반시		
5	배차시 차량 상태 확인점검 불량업체	o 확인시점 : 배차시 (오전·오후 배차시간) o 확인자 : 업체장 o 기준근무기간 : 년중 홀수월에는 홀수일에, 짝수월에는 짝수일에 근무 (매월 15일이상) o 근무상태기록보존 :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근무상태 기록보존 o 업체장 근무상태확인 : 시·군에서 업체별로 미리 오전·오후 배차시간을 보고토록	o현지조사 관계 공무원 출장 복명서	o당해업체 증차배제

항목순위	제 재 항 목	제재대상 위반내용	확인근거서류	제재구분
		한후, 관계 공무원이 분기별로 1회이상 불시방문하여 현지확인 o 제재기준 : 년 1회이상 미근무사실 적발시		
6	후생복지시설 불량업체	o 확보기준 • 휴게실 : 안락의자, T•V, 바둑, 장기, 도서 30권 이상 비치 • 목욕탕 : 2인이상 동시사용 가능토록 욕조, 샤워시설 완비 • 화장실 : 수세식으로 시설 • 시설확인 : 시•군 관계공무원이 분기별로 1회이상 불시 방문하여 현지확인 o 제재기준 : 불시 확인시 년 1회이상 기준시설에 미달하거나 작동불량시	o 현지조사 공무원 출장복명서	o 당해업체 증차배제
7	운전원 교육 차출에 부성실한 업체	o 차출기준 : 도, 시군, 조합으로부터 교육대상자 차출요청시 대상자 전원 차출	o 시군에 비치된 업체별 교육 불참자 명단	o 당해업체 증차배제
		o 교육대상자통보 : 업체별로 교육대상자 명부를 비치하고 교육대상자 본인	o 업체에 비치된 교육명령 개인별 통보대장	o 당해업체 증차배제

항목 순위	제재항목	제재대상 위반내용	확인근거서류	제재구분
		에게는 최소한 3일이내에 교육대상자임을 개별통지한 후, 통지해준 일시와 내용에 대하여는 본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둘것. o 제재기준 : 업체에서 통지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고의적으로 교육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여 년 3인이 교육에 불참했을때		
8	과징금, 과태료를 납기내에 미납한 업체	o 납부기준 : 매월말 현재 납기 도래 과징금, 과태료 전액 납부 o 납부여부확인 : 금고에서 시·군에 통보되는 영수필 통지서 * 영수필통지서 미도착시 미납부자에게 납부여부를 문의하여 영수증 제출시 납부인정 o 제재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년 2건이상 납기내 미납시	o 영수필통지서 또는 납부자가 소지한 납부 영수증	o 당해업체 중차배제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택시성실업체평가자료보고

○○ 년도분 ○○시군

1. 법정 기준시설 확보상태

순번	업체명	대표자	확인 시기	면허 대수	시설내역				제재대상 업체(기준 미달시설)
					차고		부대시설		
					기준	확보	기준	확보	
			1/4		㎡				
			2/4						
			3/4						
			4/4						
			1/4						
			2/4						
			3/4						
			4/4						

첨부 : 분기별 부대시설 확인내역서 1부.

○○년도 ○/○분기 부대시설확인내역서

순번	업체명	대표자	부대시설		기준미달여부
			총면적	시설별내역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2. 시트카바 세탁비치상태

온카바/반카바

순번	업체명	대표자	세 탁 비 치 상 태								제재대상 업체/(기준미달비치분기)
			1/4		2/4		3/4		4/4		
			면허대수	비 치	면 허	비 치	면 허	비 치	면 허	비 치	

3. 업체장의 배차시 차량상태 확인점검 근무 상태

순번	업체명	대표자	업체장 근무상태 확인결과								제재대상업체(미근무적발업체)
			1/4		2/4		3/4		4/4		
			오 전	오 후	오 전	오 후	오 전	오 후	오 전	오 후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4. 후생복지시설 확보상태

순번	업체명	대표자	확인 시기	휴게실					목욕탕		화장실		제재대상업체(기준미달시설)
				의자	T·V	바둑	장기	도서	욕조	샤워	구조	변기수	
			1/4										
			2/4										
			3/4										
			4/4										
			1/4										
			2/4										
			3/4										
			4/4										

5. 운전원교육 차출상태

순번	업체명	대표자	교육차출기관	교육대상자	참석자	불참자	불참사유	
							업체귀책사유	본인귀책사유
			계					
			도					
			시·군					
			조합					
			계					
			도					
			시·군					
			조합					

첨부 : 교육불참자 개인별 명단 1부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교 육 불 참 자 개 인 별 명 단

순번	업 체 명	대 표 자	불참자성명	불참귀책구분		불 참 사 유
				업 체	개 인	
계						

6. 과태료, 과징금 납부상태

단위 : 건, 천원

순번	업체명	대표자	구 분	월별부과징수내역													제재대상업체(납기위반건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부과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도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 납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부과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기도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 부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 납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표시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 년 7 월 6 일

경기도규칙 제 2082 호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경찰서 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경찰지서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별표 2" 경기도 경찰지서, 경찰관 파출소, 경찰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표중 평택경찰서 현덕지서의 관할구역의 "현화리"를 삭제하고, 안중지서 관할구역의 학현리 다음에 현화리를 삽입하며, 연천경찰서 백학지서 관할중 원당리의 18 개리를 장남면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 대 비 표

"별표 2" 경기도 경찰지서, 경찰관파출소, 경찰관출장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 구역표

현행			조정		
경찰서명	명 칭	위 치	경찰서명	명 칭	위 치
평택경찰서	현덕지서	현덕면도대리, 화양리, 운정리 인광리, 방축리, 권관리 북산리, 황산리, 대안리 덕목리, 신왕리, 장수리 송담리, 현화리	평택경찰서	현덕지서	현덕면도내리, …… …… …… …… 송담리
	안중지서	오성면숙성리, 교포리, 신리, 안화리, 양교리, 죽리, 길음리, 당거리, 청내리 안중면금곡리, 대반리, 안중리 학현리, 삼정리		안중지서	오성면숙성리, …… …… …… 안중면금곡리, …… 학현리, 현화, 삼정리

경찰서명	명 칭	위 치
연천경찰서	백학지서	백학면두일리, 백령리, 노곡리 학곡리, 구미리, 통구리 전동리, 원당리, 두현리 자작리, 판온리, 오음리 사시리, 고음리, 항동리 하리, 상리, 중리, 매현리 두매리, 석왕원리, 포춘리 반정리, 고랑포리, 갈현리 석장리

경찰서명	명 칭	위 치
연천경찰서	백학지서	백학면두일리, 백령리, 노곡리 학곡리, 구미리, 전동리 석장리 장남면원당리, 자작리, 판온리 오음리, 고랑포리, 통구리 두현리, 사시리, 고음리 항동리, 하리, 상리, 중리 매현리, 두매리, 석왕원리 포춘리, 반정리, 갈현리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경기도 자동차 운전학원 운용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 년 7 월 6 일

경기도규칙 제 2083 호

경기도 자동차 운전학원 운용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 자동차 운전학원 운용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시설기준) 1항 7 호 나목(1)중 "안전표지 5 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를 "안전표지중 보조표지, 노면표지를 제외한 표지판 5 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9 조의 2(설립인가등의 제한) "동규칙 제 7 조 및 제 8 조에 의거 학원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1. 도지사는 학원난립으로 인한 불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1항 1 호중 "2년 이상의 임대기간 설정 …… (제 7 조 …… 제 2 항 2 호)"를 "5년 이하의 임대기간 설정(제 7 조 …… 제 2 항제 2 호 라목)"으로, "2.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제한함에 있어 직업분포도, 운전면허자 현황등 지역 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성있게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27 조(행정처분) 1항 7 호중 "기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기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 5 호, 제 27 호, 제 28 호, 제 29 호 서식중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 대 비 표

자동차 운전학원 운용규칙

현 행	개 정
제6조(시설기준) ①……	**제6조**(시설기준) ①……
1. ……	1. ……
7. ……	7. ……
가. ……	가. ……
나. 실습설비 및 장비	나. 실습설비 및 장비
(1) 도로교통법 …… 안전표지 5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 안전표지중 보조표지, 노면표지를 제외한 표지판 5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설립인가등의 제한) 동규칙 제 7조 및 제8조에 의거 학원을 인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설립인가등의 제한) ①도지사는 학원 난립으로 인한 불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재산인 경우에는 2년이상의 임대기간설정(제7조 제①항 6호 및 제9조 제2항2호)	1. 타인재산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임대기간설정(제7조 제①항 제6호 및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2. ……	2. ……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현 행	계 정
	②도지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제한함에 있어 직업분포도, 운전면허자현황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성있게 제한하여야 한다.
제 27 조(행정처분) ①……	제 27 조(행정처분) ①……
1. ……	1. ……
7. 기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7. 기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별지 제 5 호, 제 27 호, 제 28 호, 제 29 호 서식중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별지 제 5 호, 제 27 호, 제 28 호, 제 29호 서식중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경기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 년 7 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훈령 제 885 호

경기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경찰국 사무분장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사무분장) 1 항 "별표" 경찰국 각과, 계, 실 사무분장표중 교통과 교통계 분장사무 내용중 12 호 내지 13 호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별첨" 경찰국 각과 계·실 사무분장표

과	계	일련번호	분 장 사 무
교통과	교통계	12	자동차학원 인허가 및 지도단속
		13	지방비 예산편성 및 집행 o 지출증빙서 청산 o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및 보관 o 봉급, 수당 여비 지출 o 예산 및 경비에 관한 보고 o 유가증권보관 및 출납 o 시설공사 o 물품구매 o 입찰사무에 관한 업무 o 공사설계 및 감독 o 청사보수(면허시험장) o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업무 o 결산에 관한 업무 o 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시행 o 물품의 구매요구와 보관 및 출납(통신장비 제외) o 물품의 기록유지 o 장비관리운용(통신장비 제외) o 유류구입 출납 o 차량부속 출납 o 정비요원 지도감독 o 차량운행 및 정비관리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경기도 경찰관서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 년 7 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훈령 제 886 호

경기도 행정관서 위임전결 규정중 개정규정

경기도 경찰관서 위임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전결사항) "별표 1 "국장, 부장, 과장, 계장 전결사항중 교통과 교통계, 자동차학원 및 통신과 위임전결 사항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장, 부장, 과장, 계장 전결사항

주 관	기 능	업 무	일련번호	항 목	계장	과장	부장	국장	지사
교통과	교통계	교통	1	.....					
			↓	↓					
			26	.....					
			27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		
			28	세출예산전용 및 증감 요청			○		
			29	세출예산 결산보고			○		
			30	예산편성 자료수집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31	제급여에 관한 사항		○			
			3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			
			33	유가증권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항		○			
			34	계약의 협의 및 승인신청				○	
			35	각 관서 상호간 계약		○			
			36	지출증빙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보고		○			

			37	예산절약 계획수립 및 실적보고			○		
			38	물품의 구매 및 제조계약(2,000 만원이상)				○	
			39	〃 (500 만원이상)			○		
			40	〃 (500 만원미만)		○			
			41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000 만원이상)				○	
			42	〃 (1,000 만원이상)			○		
			43	〃 (1,000 만원미만)		○			
			44	청사 신개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	
			45	지출원인행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46	경리관계 정례보고		○			
			47	일용직 사역결의		○			
			48	일용직 퇴직금에 관한 사항		○			
			49	회계사무에 따른 제증명 조회 및 처리	○				

주 관	기 능	업 무	일련번호	항 목	계장	과장	부장	국장	지사
	면 허	자동차 학원	1	.....					
			↓	↓					
			11	.....					
			12	자동차 운전학원 행정처분 결정				○	

통신과	통신과	공통	1	유·무선통신 시설 신·증설계획				○	
			2	유·무선통신 기자재 배정		○			
			3	유·무선통신 기재 기술감정 및 검수		○			
			4	통신시설 피해상황 보고				○	
			5	유·무선기기 고장처리		○			
			6	근무일지		○			
			7	통신훈련 및 고양		○			
			8	통신시설장비 보수유지		○			
			9	통신기기 시설 철거		○			
	통신 관리계	서무 자재	10	통신예산 집행		○			
			11	비소모품 폐기 승인 신청		○			
			12	통신기재 출납		○			
		무선	13	무선국 허가업무 관리		○			

결 기 도 표

주 관	기 능	업무	일련번호	항 목	계장	과장	부장	국장	지사
		보안	14	통신보안자재 관리 운용		○			
			15	통신보안 관리 운용		○			
			16	무선전화 호출부호 및 약호 제정 및 개정			○		
	기술계	유선	17	부외 경비전화 이설 및 철거			○		
			18	전화가설 신청 및 이설		○			
			19	체신회선 청약 및 해지		○			

경기도수사본부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년 7월 6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훈령 제887호

경기도수사본부운영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수사본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수사본부장이 되는 자 및 임무) 1항1호 "경찰국 주무과장"을 삭제하고 "2호, 3호"를 "1호, 2호"로 한다.

제6조(수사본부장, 수사집행관이 되는 자 및 그 임무) 6항 다음에 "⑦수사본부 설치시 경찰국 강력계장은 수사지도관이 되어 수사 전반에 걸쳐 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⑧경찰국 강력주임은 분석관이 되어 사건분석 및 검토, 판단을 하여 수사방향(계획) 에 관하여 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를 신설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 대 비 표

경기도 수사본부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제5조(수사본부장이 되는 자 및 그임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본부장이 된다.	**제5조**(수사본부장이 되는 자 및 그임무) ①다음 각호의 .....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현 행	개 정
1. 경찰국 주무과장 2. 관내에서 3개이상의 본부설치 대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국 주무과장으로 3. 관할지 경찰서의 서장	1. 관내에서 3개이상의 본부설치 대상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국 주무과장으로 2. 관할지 경찰서의 서장
제6조(수사본부장 수사전임관이 되는 자 및 그 임무) ① ② ③ ④ ⑤ ⑥	**제6조**(수사본부장 수사전임관이 되는 자 및 그 임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수사본부 설치시 경찰국 강력계장은 수사지도관이 되어 수사전반에 걸쳐 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⑧경찰국 강력주임은 분석관이 되어 사건분석 및 검토, 판단을 하여 수사방향(계획) 설정에 관하여 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경기도현장감식실시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년 7월 6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령기도훈령 제888호

경기도현장감식실시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현장감식실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자료등의 취급) 1항중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 지편을 첨부할것"을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 첨부할것"으로 하고 3항 다음에 4항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자료는 명세표작성 관리하고 물품의 소재(관장)를 분명히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 대 비 표

경기도 현장감식 실시규정

현 행	개 정
제22조(자료등의 취급) 자료의 취급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자료가 치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채취할 자료에는 채취대나 용기에 사건명, 품목, 채취년. 월. 일, 시, 장소, 기타참고사항을 기입한 지편을 첨부할것. ②..... ③.....	**제22조**(자료등의 취급) 자료의 취급에 .... ①채취할 자료에는 채취대나 용기에 사건명, 품목, 채취년. 월. 일, 시, 장소,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 첨부할것. ②..... ③..... ④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는 명세표 작성 관리하고 물품의 소재(관장)을 분명히 한다.

경기도수사비상배치규정중 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년 7월 6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훈령 제889호

경기도수사비상배치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수사비상배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통신지령실의 조치) 경찰국은 비상배치의 추진에 있어 ……중 "경찰국은"을 "경찰국 통신지령실은"으로 하고, 1항 "사건개요 및 도주차량등을 C³ 차량에 즉시 하달한다."를 신설 삽입, 현행 1항 내지 7항을 2항 내지 8항으로 한다.

제19조(서장의 기초계획)중 "2항" 다음에 "③ C³ 차량운영"을 신설 삽입, 7항 "현장에 …… 연락협조방법" 다음에 "(현장수사를 외근형사 전담)"을 삽입하고 현행 3항 내지 10항을 4항 내지 10항으로 한다.

제21조(경계배치의 구분)중 8항 "무선자동차 근무자는"을 C³ 차량 및 무선자동차 근무자는"로 한다.

제30조 "(훈련실시보고)서장은 제25조 1항에 의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경찰국장에게 개요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훈련실시및 결과보고) 서장은 제25조 1항에 의한 훈련을 실시할때에는 사전에 경찰국장에게 개요를 보고하고 실시한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신 구 대 비 표

경기도 수사 비상배치 규정

현 행	개 정
제 12 조(통신지령실의 조치) 경찰국은 비상배치 추진에 있어	**제 12 조**(통신지령실의 조치) 경찰국 통신지령실은 비상배치 추진에 있어…
①사건개요를 즉시 관계서장과 각계각과에 하달한다.	①사건개요 및 도주방향등을 C³ 차량에 즉시 하달한다. ②사건개요를 즉시 관계서장과 각계각과에 하달한다.
⑦	⑧ .....
제 19 조(서장의 기초계획) 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제 19 조**(서장의 기초계획) .....
①	① .....
	② .....
	③ C³ 차량운영
⑥	⑦ .....
⑦현장에 있어서의 본서 및 본국 각과, 계와의 연락 협조방법	⑧현장에 있어서의 본서 및 본국 각과, 계와의 연락 협조방법(현장수사는 외근형사 전담)
⑩	⑪ .....

현 행	개 정
제 21 조(경계배치의 구분)	**제 21 조**(경계배치의 구분) .....
①	① .....
↓	↓
⑦	⑦ .....
⑧ 무선자동차 근무자는 통신지령실 책임자의	⑧ C³ 차량 및 무선자동차 근무자는 통신지령실 책임자의 .....

방범기동순찰차(C³)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0년 7월 6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훈령 제890호

방범기동순찰차(C³) 운영규정

방범기동순찰차(C³)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범기동순찰차(이하 "순찰차"라 한다)의 관리, 근무방법, 지도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내의 완벽한 방범활동과 신고 즉응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순찰차 운영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찰차를 운영하는 경찰서, 파출소 및 승무경찰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관리지침) 경찰국장 및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순찰차의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순찰차는 1개 파출소 관할구역을 순찰담당구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대의 순찰차가 2개이상의 파출소를 담당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파출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순찰차의 활동구역은 담당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찰서장은 관내치안여건 등을 감안하여 방범권역별로 순찰차를 통합운영 할 수 있다.

3. 순찰차의 근무자는(이하 "순찰근무자"라 한다) 운전요원 1명과 승무요원 1명, 도합 2명으로 하며, 승무요원도 제2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순찰근무자중 운전요원은 파출소 소속으로 하고 승무요원은 파출소 당번근무자의 일일근무지정에 의하여 근무에 당한다.

5. 순찰근무자의 근무방법은 2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6. 순찰차는 제4조에 규정한 이외의 다른 업무에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7. 경찰서장은 순찰근무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순찰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고사건에 대한 즉응처리
2. 담당구역의 방범기동순찰
3. 사람과 차에 대한 검문검색
4. 우범지대 거점배치
5. 기타 경찰서장이 관내 치안상황에 따라 지정한 특수근무

제2장 근 무

제5조(근무계획) ① 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순찰차의 월중근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월중근무계획 수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차량순찰선의 재책정

2. 순찰차의 거점조정

3. 우범권역별 순찰구역의 재조정

제 6 조(근무지정 및 근무일지) ①파출소장은 순찰근무자의 일일근무를 지정한다.

②순찰차 마다 별표 1의 근무일지를 비치하고 순찰근무자는 근무중 취급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순찰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첩을 휴대하고 검문검색 실시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7 조(근무교대) ①근무교대는 매일 일과시작 10분전(08:50)에 파출소장 책임하에 취급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장비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 계속성을 유지,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파출소장은 근무교대시 당번자에 대하여 용모, 복장, 휴대품에 대한 점검과 업무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신고사건처리) ①순찰근무자는 신고사건, 사고에 대하여 즉응 처리하여야 한다.

②순찰근무자는 현장출동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지령실에 즉시 무전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 인접한 순찰근무자가 지원 출동하여야 한다.

제 9 조(순찰계획수립) 경찰서장은 관할구역의 면적, 순찰거리, 도로상태, 범죄발생 상황, 계절등을 감안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순찰구역, 순찰회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순찰선 책정 및 순찰함 설치) 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순찰차마다 우범지역이 서로 연결되도록 2 - 3개의 순찰선을 책정하고 1개

순찰선에 5 - 6개의 순찰함을 설치하여 2시간마다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약시간대에는 매시간마다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순찰근무요령) ①순찰근무자는 관내 우범지역에 순찰차의 거점을 지정하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순찰선을 책정 순찰을 실시하며 순찰중 취약장소(순찰함 설치장소)에서는 하차하여 대인대사 검문검색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순찰근무자는 1회 순찰을 순찰선사에서 1시간이상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순찰차에는 관내약도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 12 조(근무보고) 승무원은 매 2시간마다 그 위치를 지령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또는 범죄인지시에는 신속 정확하게 현장에서 즉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피의자호송) ①순찰근무자는 검거한 피의자에 대하여 자해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한다.

②순찰근무자는 호송중에 반말, 욕설, 가혹행위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순찰근무자는 피의자가 많을 때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순찰차의 지원을 받아 안전에게 호송하여야 한다.

④순찰근무자는 피의자를 소속경찰서 형사과(수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14 조(복장) 순찰근무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장 비 관 리

제 15 조(차의 도장 등) 순찰차의 도장과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 16 조(휴대장비) 순찰근무자는 권총, 가스총, 3단경찰봉, 무전기와 기타 필요

한 개인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7조(정기점검) 경찰서장은 순찰차 및 휴대장비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고장수리) 순찰근무자는 순찰차 또는 무전기등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서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주무부서에서는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교 육

제19조(정례교양) 파출소장은 매일 근무시작 10분전, 외근계장은 주1회, 보안과장은 2주1회, 경찰서장은 월1회 이상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내용) 순찰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한다.

1. 신고출동시 초동조치요령
2.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요령
3. 도주로 차단 및 통신망 운영요령
4. 기타 치안상황에 대처한 근무요령

제5장 지휘감독

제21조(지휘체계) 근무자에 대한 1차감독자는 파출소장, 2차는 외근계장, 3차는 보안과장으로 하고, 경찰서장은 총지휘 책임을 진다.

제22조(근무확인) 경찰서장은 순찰차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현지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안과장은 2주 1회 이상
2. 외근계장은 1주 1회 이상
3. 파출소장은 매일 1회 이상

4. 순시관은 파출소 순시시

제 6 장 포 상

제 23 조(표창) 각급 지휘관은 방범순찰운영요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표창을 하거나 표창 상신하여야 한다.

1. 강력사건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현장에서 검거한 때

2. 중요범죄 검거 및 예방임무 완수로 타의 귀감이 된 때

3. 기타 범죄검거실적이 우수하거나 순찰차 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때

제 7 장 보 칙

제 24 조(준용규정) ①통신종합지령실 운용규정은 순찰근무자에 이를 준용한다.

②경찰업무지침 중 경찰차량 관리, 무기탄약관리, 무선통신운용에 관한 규정은 순찰차에 이를 준용한다.

③외근경찰관 근무규칙 제 21조(순찰표), 제 23 조(순찰근무자의 유의사항)의 규정은 순찰근무자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별표 1

방범순찰차근무일지

경찰서 파출소 호차

년 월 일 요일 감독자 파출소장 정 ㊞

근 무 자

순번	계급	성명	날인	순번	계급	성명	날인
1				4			
2				5			
3				6			

순찰(주행)거리	총거리	어제	금일	급유량	장비	권총	칼빈	실탄	가스총	
	km	km	km	ℓ	현황	정	정			
중요지시 및 하명사항										

시간별근무지정내용

시간 / 근무종별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21-22	22-23	23-24	24-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8
순찰																								
검문검색																								
지원근무																								

취급사항통계

종별 / 구분	계	형사범								보안사범				교통					봉사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특별법	기타	소계	소란	방치	기타	소계	사고	차량	보행	기타	소계	안전	민원	화재	기타
계																							
사고처리																							
자체활동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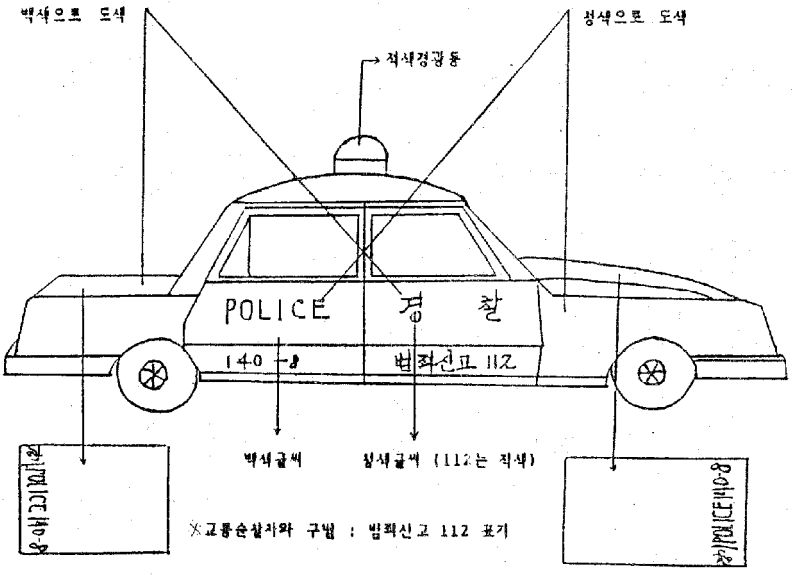
별표 2

검 문 수 첩

연번	일시	검문 장소	본적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조치	확인

별표3

방범순찰차 도장·표식



경기도경찰국 견문수집 및 처리요강중 개정요강을 이에 발령한다.

1990년 7월 6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 예규 제 593 호

경기도경찰국, 견문수집 및 처리요강중 개정요강

경기도경찰국 견문수집 및 처리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근거 및 목적)중 "제 537 호 81.8.11에 의거"를 "제 699 호 88.12.26에 의거"로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4호중 "중요보고"를 "특별보고"로, 5호중 "일보"를 "중요정보 보고서류"로 하고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호는 삭제)

10. 참고자료라함은 단순히 정보업무 수행에 참고가 될뿐 사용가치가 없는 견문을 말한다.

제 4 조(수집 기준량) 1항중 "정보외근 직원중 대공요원과 수사 및 외사외근 요원"을 "수사 및 대공, 외사외근직원"으로,

제 2 항 3 호의 "경대 경찰학교 입교자"를 "경찰대학 및 교육기관 입교자"로,

제 3 항중 "월간정보 및"를 삭제한다.

제 5 조(수집) 제 1 항중 "견문서식(별지서식 제 1 호 - 제 3 호)"를 "견문보고서식"으로, 2 항 1 호의 "내색"을 "대상"으로 한다.

제 6 조(분석평가) 1항중 1호 "중요보고자료"를 "특별보고자료"로, 2 호 "일보 보고자료"를 "중요정보 보고자료"로 한다.

제 7 조(생산)중 "중요보고서, 일보"를 "특별보고서, 중요정보 보고"로 한다.

제 9 조(성적평가) 1항중 1호 "상보 20점, 10점, 5점"를, "특보 및 판단 보고자료 10점"으로, 2호 "일보"를 "중보"로, 3호 "통보 3점"을 "2점"으로, 5호 "하달"을 "조사"로, 6호 "참고"를 "참고A"로, 2항중 1호 "16~20점"을 "20점"으로, 2호 "11~15점"을 "15점"으로, 3호 "6~10점"을 "10점"으로, 4호 "3~5점"을 "5점"으로 하고,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건발생 1시간이후 5점

제 10 조(시상) 1항2호중 "도지사표창 2명(정보1, 일반1)"을 "도지사표창 3명(정보1, 일반2)"로, "경찰국장 표창 4명(정보2, 일반2)"를 "경찰국장 표창 6명(정보2, 일반4)"로 한다.

제 2 조(업무관장)중 "정보계에서"를 "정보2계에서"로 한다.

별지서식 1호중 "부국장"을 "부장"으로 "일보"를 "중보"로 서식2호 및 5호중 "일보"를 "중보"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이 요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규 대 비 표

견문수집 및 처리요강

현 행	개 정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요강은 내무부 예규 제537호 81.8.11에 의거……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요강은 내무부 예규 제699호 88.12.26에 의거……
1. ……제 첩보를 말한다.	1. ……필요한 견문수집을 말한다.
3. ……	3. ……
4. 중요보고 자료라 함은……	4. 특별보고 자료라 함은……
5. 일보보고 자료라 함은……	5. 중보 보고자료라 함은……
6. ……	6. ……
9. ……	9. ……
10. ……당해 첩보의 ……	10. ……당해 견문보고서의 ……
제4조(수집기준량) ①……	제4조(수집기준량) ①……
수사 및 대공 외사 외근직원 4건	수사 및 대공 외사 외근직원 4건
지·파출소 직원 4건	상황실 요원 2건
……	지·파출소 직원 4건
②……	……
③경찰국 및 경찰서의 월간상보 및 ……	③경찰국 및 경찰서의 월간특보 및 ……
제6조(분석평가) ①……	제6조(분석평가) ①……
1. 중요 보고자료	1. 특별 보고자료

현 행	개 정
2. 일보 보고자료	2. 중요 보고자료
7. 하달자료	7. 조사자료
제 9 조(성적평가) ……①……	제 9 조(성적평가) ……①……
1. 상보……	1. 특보……
2. 일보 5점	2. 중보 5점
5. 하달 1점	5. 조사 1점
6. 참고 1점	6. 참고(A) 1점
②……	②……
1. 허위(조작)보고 16 - 20 점	1. 허위(조작)보고 20점
2. 보고결략 11 - 15 점	2. 보고결략 15점
3. 보고지연(……) 6 - 10 점	3. 보고지연(……) 10점
4. 오 보 3 - 5 점	4. 오 보 5점
③……첩보원의 증감, ……	③……견문수집 보고자료의 증감, ……
제 10 조(시상) ……①……	제 10 조(시상) ……①……
1. ……	1. ……
2. 반기별 표창	2. 반기별 표창
……	……
도지사표창 2명(정보1, 일반1)	도지사표창 3명(정보1, 일반2)
경찰국장표창 4명(정보2, 일반2)	경찰국장표창 6명(정보2, 일반4)
제 12 조(업무관장) ……	제 12 조(업무관장) ……
…… 정보과	…… 정보과
정보계에서 ……	정보2계에서 ……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현 행	개 정
별지 1 호 서식중 "부국장" "일보" 별지 2 호, 5 호 서식중 "일보"	별지 1 호 서식중 "부상" "중보" 별지 2 호, 5 호 서식중 "중보"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247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7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돼 지 고 기	박피품(정육 500 g 당)	2,250 원	
	미박피품(〃)	2,000 원	

o 시행일 : 90.7.5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249 호

쇠고기 연동가격 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쇠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7 월 4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쇠 고 기	정 육 500 g 당	5,650 원	

○ 시 행 일 : 90.7.9

경기도 고시 제 250 호

경기도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규칙 제 3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거 고시한 경기도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신체검사 지정병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0 년 7 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지정병원고시 개정고시

경기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지정병원 고시

연 번	병 원 명	병 원 소 재 지
1	경기도립병원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49
2	동수원병원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441
3	성심병원	안양시 안양 3 동 679-207
4	중앙병원	안양시 안양동 산 160
5	동산병원	안양시 안양 4 동 676-115
6	양친회 종합병원	성남시 단대 3 동 3001
7	김행식 피부비뇨과의원	과천시 별양동 1-11
8	서광 외과의원	광명시 광명 4 동 158-788
9	광명병원	광명시 철산동 389
10	평택보건소	평택시 비전동 625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연번	병 원 명	병 원 소 재 지
11	송탄보건소	송탄시 신장동 191-1
12	오산 성심병원	오산시 원동 751-17
13	용인보건소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54
14	광주보건소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115
15	안산의료원	안성군 안성읍 당왕리 455
16	이천의료원	이천군 이천읍 관교리 산44-1
17	여주보건소	여주군 여주읍 하리 199-10
18	용인신체검사의원	용인군 기흥읍 신갈 225-1
19	포천103야정병원	포천군 회현3 33-10
20	의정부신체검사의원	의정부 금오동 산25-35
21	의정부의료원	의정부시 의정부동 226
22	강화병원	강화군 관교리 173-1
23	평화의원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375-17
24	혜성의원	고양군 고양읍 삼송리 47
25	수도의원	연천군 연천읍 전곡1 16
26	서울병원	동두천시 생연동 611
27	성모병원	남양주군 구리 수택 469
28	성심병원	가평군 가평읍내 349

경 기 도 보

제 2355 호

연 번	병 원 명	병 원 소 재 지
29	양평보건소	양평군 양평읍 창대 701
30	부천제일병원	부천 송내 577-2
31	카톨릭의대부속 성가병원	부천시 소사 2
32	부천 대성병원	부천시 심곡 110-6
33	포천 도립병원	포천군 포천신읍 164
34	지방공사 금촌의료원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101
35	안산의원	안산시 원곡동 826-12
36	안산 동부의원	안산시 와동 29-2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기도 고시 194 호(89.7.15)는 폐지한다.

공 고

경기도 공고 제 214 호

전기공사업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갱신 발급한 업체와 동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동 면허가 실효된 업체를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년 7 월 5 일

경 기 도 지 사

제2종 전기공사업 면허갱신업체 명단

면허유효기간: '90.7.10 -'95.7.9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344	파주조명전기	김상록	파주군 금촌읍 금촌리 311-30
345	은광전기	김완식	수원시 우만동 508-14
346	한상산업전기	한상득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06-5
347	은행전력공사	표무경	광명시 광명동 12-183
348	한국전설	조재철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151
350	삼풍전기	강한순	수원시 권선구 교동 64-2
351	금강전설공사	윤수한	안양시 안양4동 711-117
353	성우전기건설	양영태	광명시 광명동 290-52
354	동양전기	박함균	평택시 통복2동 76-1
355	금화상공	진효근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603-7
356	태성전기공사	문태수	의정부시 기능1동 646
357	유천전기	김영순	안산시 고잔동 520-3
358	성진전기공사	김진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7-3
359	천우전기	김현모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98-1
360	삼진토건	최석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0-11
361	동양전기	윤대원	안양시 관양동 1488-41
362	유신전기	권영익	수원시 중동 14
363	금아전기(주)	김제천	부천시 중구 심곡동 155-17
364	비봉전설	김홍원	안성군 안성읍 인지리 184-1
365	충남종합상사	이근연	성남시 수진1동 1292
366	고려전업공사	강원기	안양시 호계동 928-6
367	상원전설	이상천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52-1
368	대림전기공사	임능수	수원시 매교동 127-4
369	제일전업사	문국열	용인군 용인읍 마평리 657-3
370	명지통신공사	오복순	수원시 조원동 642-4
371	성스테이지앤지니어링	성낙균	안양시 안양동 817-38
372	신일전기	조긍묵	수원시 매산로3가 53-9
373	서부전기	김수영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71-106
374	일양전기	오동수	수원시 정자동 51-54

경 기 도 보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375	성호전기공사	이성곤	오산시 원동 762-22
376	선진전기	이종윤	수원시 교동 163-8
377	단성전력(주)	김천호	수원시 장안구 파송지구104BL3LT
378	지현전기	박상규	수원시 인계동 1008-16
379	문성전기	박문수	수원시 세류3동 873-7
380	대영전기	이영구	용진군 대부면 동리 1519-4
381	평강전기공사	김진설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141-6
382	태흥전력건설공사	김완기	안양시 안양동 552-10
383	대산전기	고민선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169-1
384	정우전기	박연옥	수원시 권선구 매탄1지구 1181-9
385	영도전기	김구영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38-5
386	삼우전업사	김택수	수원시 남수동 54-4
387	동남전기	김형남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87-33
388	중앙전업사	홍척기	수원시 권선동 941-8
389	대흥전기	오목근	수원시 인계동 750-63
390	두성전기시스템	이의용	수원시 북수동 141
391	영일전업사	윤여형	송탄시 신장동 279-19
392	덕영전기건설공사	양대석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4-7
393	제일전업사	김수원	안성군 안성읍 서인동 55-3
394	협동전업사	변승옥	수원시 영화동 424-33
395	고려전기공사	주정애	용인군 포곡면 전대리 361-2
396	태성산업전기	유인춘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722-4
397	해동전업사	강진열	용인군 용인읍 유방리 501-3
398	동해전설공사	오동훈	수원시 세류동 281-4
399	대광전기	이석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62
400	수원종합전기공사	김함석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44-1
401	동연전업사	정종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70-13
402	수전사	안재승	수원시 매향동 30
403	태극전기공사	이해상	의정부시 가능2동 726-23
404	동부전기	이규홍	수원시 권선동 1053-14
405	영진전기	이의인	수원시 교동 132-4
406	부광전기공사	강희창	수원시 우만동 523
407	연화전설	김명래	수원시 권선동 955-9
408	삼영전업사	박현수	수원시 교동 134-2
409	동양전업사	박영식	안성군 안성읍 연지리 98
410	대진전기	송대현	수원시 정자동 72-9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411	부광전기공사	이기원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14-13
412	대광전기	홍순식	수원시 인계동 969-14
413	광진전기	이진남	안산시 원곡동 994-5
414	한진건설	백창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4
415	동아전업사	양덕석	군포시 산본동 97-43
416	동일전기공사	이보은	안산시 원곡동 786-17
417	동신전업사	이석근	수원시 인계동 966-3
418	서일전기	신천식	평택군 팽성읍 안정리 산18
419	새마을전업사	이대희	송탄시 서정동 843-9
420	한일계전	이선영	오산시 원동 786-20
421	경일전기공사	조민목	미금시 도농동 299
422	성남소방전기(주)	권수용	성남시 신흥동 2485
423	신흥전기조명공사	심광진	성남시 신흥3동 4126
424	일만전기	임한술	성남시 태평동 2659
425	한진전기	박용태	성남시 신흥2동 1772
426	대한전업사	임종철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759
427	서원건설(주)	이원민	성남시 신흥동 5513
428	신한전기	박승희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290-6
429	여흥전기공사	민영화	성남시 신흥3동 2573-1
430	(유)돌마전설	이강귀	성남시 금광2동 3131
431	우수전기공사	최갑수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22-2
432	연합전기공사	송광철	성남시 태평3동 3773-3
433	정우전기공사	박홍식	성남시 신흥동 5761
434	강남전기	백승오	성남시 중동 2471
435	정광전기공사	정광복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9-2
436	한성전기공사	하준용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76-1
437	현대전기공사	김지환	성남시 신흥1동 5183
438	명문전기공사	이종문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219-7
439	평화전업사	이성익	성남시 금광1동 686
440	삼일전기공사	오세원	성남시 단대1동 3794
441	경기전업사	이기천	성남시 단대동 4011
442	일만전기조명공사	이명열	안산시 본오동 343브럭 6-21
443	성음전업사	홍현석	성남시 산성동 1288
444	(주)인천종합전력	송인석	성남시 상대원1동 1494-2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445	한일전기공사	이영구	성남시 상대원2동 2999-10
446	경일전기공사	송상열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54-1
447	대명전기공사	최명수	성남시 수진2동 3042
448	동양전기공사	이구락	성남시 신흥1동 5493-6
449	원일전기공사	이용익	성남시 하대원동 135-5
450	옥산전기공사	엄옥섭	성남시 성남동 15-77
451	풍성전기건설공사	임명수	부천시 중구 고강동 404-5
452	우진전업사	정연득	성남시 금광2동 4314
453	동북전기공사	이성환	성남시 성남동 1309-7
454	경우안전산업(주)	채양석	성남시 신흥동 3436-2
455	명신전기공사	박광흥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71
456	국제전기공사	이창표	의정부시 의정부4동 215-25
457	대광전기	정연용	의정부시 가능2동 743-20
458	형제전기건설	조원길	의정부시 의정부4동 8-46
459	환영전기	우영환	의정부시 가능1동 652-49
460	신흥전기건설공사	백운봉	의정부시 의정부동 214-8
461	백경전기	김제중	의정부시 의정부4동 7-1
462	동서전기공사	임창빈	의정부시 가능1동 352-15
463	(주)금아산업	이홍진	고양군 지도읍 토당리 292-1
464	원전사	이성호	남양주군 진접읍 팔야리 789-10
465	동식전기공사	구자익	동두천시 생연동 725-8
466	동양전기공사	김창남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36-8
467	덕성전기공사	이장훈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4-2
468	동서전설(주)	이무형	송탄시 지산동 864-3
469	신현대전력공사	백인성	의정부시 신곡동 603-1
470	동우전기	성낙환	안양시 안양6동 504-21
471	유성전기건설공사	이동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5-2
473	성원전력공사	장태성	안양시 석수3동 770
474	명지전업사	강효중	안양시 호계동 924-24
475	성민전기건설	변용민	여주군 여주읍 창리 29브럭1호
476	삼일전기	서원기	안양시 호계2동 924-28
477	대우개발	이명구	오산시 원동 776-26
478	태일기업	홍성우	안양시 안양4동 676-146
479	대영건업(주)	정영창	안양시 비산동 570-11
480	국제전력공사	김범수	부천시 역곡1동 221-13
481	조경전기	조경현	안양시 안양4동 711-167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482	아산전기	신의섭	안양시 안양1동 622-189
483	동아전업사	신성원	안양시 비산동 547-5
484	내외전기건설공사	김학배	안양시 안양6동 505-16
485	세원전기	조명석	안양시 안양4동 782-1
486	아남전기건설공사	서진구	광명시 철산동 142
487	영성전업사	윤동간	안양시 안양7동 147-56
488	화양전업사	최종길	안양시 안양동 710-57
489	북부전기건설	이종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424-11
490	영원전업사	최종하	안양시 박달동 68-39
491	현대전력공사	정송문	안양시 관양동 1428-44
492	을지전기	이영수	안양시 호계2동 924-7
493	우진전설	신달법	안양시 안양6동 492-1
494	광운전기공사	조규응	안양시 안양동 산155-2
495	한일전기공사	김춘섭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74-19
496	대진전력공사	이상천	구리시 수택동 290-2
498	미성전기	김학준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961-7
500	삼일전기	송덕영	수원시 화서동 71-22
501	(주)형진건설	강판호	성남시 태평2동 3429-4
502	오성전기건설공사	오성택	안양시 호계2동 904-12
503	남경개발(주)	오영환	안양시 안양6동 585-15
504	신성전기	신영성	안양시 안양6동 471-17
505	우신전기공사	김장수	이천군 이천읍 중리 193-12
506	형제전업사	고영복	안양시 안양동 753-46
507	백송전기	박경순	안양시 안양6동 492-1
509	신성전기	김응배	수원시 권선동 957
510	용문전기공사	김용주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27-9
511	관동전업사	유동호	안산시 와동 189-1
512	지구전업사	최승복	안양시 관양동 1491
513	영흥전기	조영재	안양시 호계2동 925-24
515	신광전설	신봉섭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648-77
516	두원전기	이성호	안산시 원곡동 994-5
517	백제전력건설공사	정양채	광명시 광명동 338-30
518	영진전기건설공사	전시현	안양시 안양6동 529-5
519	경신전기공사	김영섭	광명시 광명6동 산 87-5
520	광일전기공사	최중길	송탄시 신장동 251-1
521	신성전기공사	양재옥	안성군 안성읍 석정리 29-2

경 기 도 보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522	한승전기	김상만	송탄시 서정동 840
523	성광전기	박미선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90-5
524	정암전기통신	성규암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666
525	팔팔전업사	봉근종	송탄시 서정동 314-5
526	대성전업사	최굉용	송탄시 지산동 736-1
527	안전사	안순교	송탄시 지산동 811-15
528	희망전기공사	신명배	동두천시 생연동 426-21
529	한성전업사	강병인	동두천시 생연동 665-8
530	입석전공사	권영상	부천시 도당동 253-8
531	조양전기공사	문형관	시흥시 수암동 427-8
532	상명전기공사	강연숙	안산시 원곡동 994-5
533	태백전기공사	손광식	안산시 원곡동 828
534	부성전기	안효응	안산시 원곡동 764-1
535	성남전기공사	이선숙	안산시 원곡동 994-5
536	군자전업사	김희태	안산시 원곡동 994-5
537	안전전업공사	손도영	안산시 원곡동 994-5
538	일성엔지니어링	강경옥	송탄시 서정동 854-6
539	광명전기공사	채창만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2-117
540	산업전기공사	이기용	동두천시 생연4동 586-15
541	금곡전업사	송영규	미금시 금곡동 430-36
542	신영전기	최향수	구리시 수택동 504-2
543	아주전기	조병구	구리시 수택동 268-1
544	세양전기공사	이문희	미금시 도농동 133
545	삼화전기공사	허성윤	구리시 수택동 488-4
546	성부전설	한용선	구리시 수택동 437-38
547	신일전기공사	김용권	미금시 도농동 117
548	광명전력공사	장성섭	구리시 수택동 423-17
549	대성전기공사	김완수	남양주군 화도면 창현리 469
550	광성전기공사	함창규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3-4
551	극동전기공사	김영길	여주군 여주읍 창리 29브럭2롯트
552	세종전업사	김종든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6-1
553	성일전기	김광원	안양시 비산1동 547-25
554	여흥전업사	윤홍철	여주군 여주읍 창리 101-3
555	보성전기공사	정낙두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463-17
556	세원전업사	오세익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305-5
557	대한전기	김태환	하남시 신장2동 450-23
558	한림전기공사	권달수	평택시 통복동 111-12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559	오성전기	김흥래	평택군 오성면 숙성리 137-11,12
560	청북전업사	백승혁	평택군 청북면 현곡리 298-16
561	광양전공사	오문효	광명시 철산2동 463-17
562	태평양전업사	김완재	평택시 비전동 561-2
563	아남주택전기	문길남	평택시 통복동 287-5
564	서원건설산업(주)	송순선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6-6
565	동화전기	김만천	평택시 평택동 72-16
566	의정부전기건설공사	임광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6-9
567	세건전업사	박해용	평택시 비전동 621-13,21
568	남양전업사	김창수	평택시 통복동 97-2
570	대광전기공사	이재홍	오산시 오산동 859-3
571	유신토건(주)	김동길	안양시 안양동 548-1
572	성원전기	윤영록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17-11
574	삼성전력공사	권상경	부천시 남구 소사2동 41-22
575	삼일전기	양승남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 267-12
576	삼흥전업사	이형구	오산시 오산동 880-8
577	유성전척	유석환	광명시 광명동 158-75
578	광일전업사	박경택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 259-4
579	승연전기	장영자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662-2
580	일광전기	박희자	화성군 반월면 건전리 548-4
581	유진전기	김명호	부천시 원종동 277
582	형제전업사	정규용	오산시 오산동 877-28
583	경기전업사	이택선	오산시 원동 750-2
585	신라전기	이용길	군포시 당동 128
586	우신전기	임인숙	안산시 원곡동 779-17
587	대일전업공사	허종배	시흥시 신천동 66BL39LT
588	삼일전업공사	김선길	의왕시 오전동 52-1
589	광영전기	진창수	군포시 산본동 97-6
591	광성전기공사	김중신	안양시 안양동 428-2
592	동아전업사	김희용	동두천시 생연동 427-15
593	동아전기전업사	김태성	안양시 호계1동 946-38
594	범일전기공업	이계성	안양시 호계동 926
596	신신전기공사	문재업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204-15
597	동아전기	김홍균	부천시 오정동 572
598	중부전기	임규선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464-29

경 기 도 보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599	고양전기공사	황재선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552-24
600	문일전기공사	고영민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453-10
601	한국전기공사	방종문	의정부시 의정부4동 8-53
602	이화전기공사	박철호	성남시 중원구 태평1동 5568
603	광주전기공사	이지용	광주군 광주읍 역2리 27-28
604	태양전기	한상준	하남시 덕풍동 465-18
605	금성전력공사	서한석	안양시 관양동 1502-6
606	대광전기공사	최승차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83-6
607	삼오전기공사	이왕규	이천군 마장면 오천리 282
608	신일전기개발공사	강충구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83-48
609	우성전기공사	최용규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78-26
610	신우전업사	이일우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97-1
611	신영전기	박진용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141-17
612	동아전기	전순곤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213-5
613	신일전기	나범식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73-4
614	대원전기	민영봉	포천군 가산면 마산리 152-6
615	한양전기	김용국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509-13
616	대일전기공사	김종호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452-2
617	삼성전기	백승복	파주군 적성면 구읍리 587-1
618	동양전기	호완식	가평군 상면 연하리 181
619	삼흥전업사	남궁재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432-30
620	선미전업사	오성근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438-3
621	희망전기공사	전희영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178-3
622	미림전기공사	염운학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80-4
623	명진전설	안영군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880
624	광덕전기공사	김용배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5-4
625	삼흥전기공사	정희덕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51-1
626	현대전기소방건설공사	정현준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51-15
627	광명전기공사	이근수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115-4
628	국제전업	심용수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464
629	설봉전기	임광수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2-1
630	남부전기공사	서은석	이천군 이천읍 증리 225-1
631	명성전기	김명호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68-10,11
632	세광전업사	송진원	이천군 이천읍 중2리 191-4
633	동양전기	이석원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146-1
634	일류전기공사	이홍범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113-1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635	삼원전기공사	허진행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61-13
636	용인전업사	김찬수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24-4
637	삼성전기	송주봉	성남시 수진동 2932
638	평강전업사	김종용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85-1
639	삼성전기공사	이강우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18
640	국제전기공사	김재종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45-22
641	신갈전기	박남철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75-21
643	백암전기	구본호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418-1
644	동아전업사	김창복	평택시 합정동 733-8
645	아세아전기공사	유재경	안성군 안성읍 서인리 106.107
646	한일전업사	유영규	안성군 안성읍 인지동 390-6
647	일죽전기	신재동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28-6
649	경성전업사	송중서	안성군 이죽면 죽산리 428-1
651	대일전기공사	이명호	구리시 수택동 516-12
652	명보전기	정영기	부천시 원종동 297-3
653	창우전기설비공사	이창우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409-3
654	동우전력공사	십만복	시흥시 대야동 37BL3-5LT
655	대호전기공사	조대호	김포군 하성면 미곡리 633
656	상신전기공사	임영재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718
658	대명전기	박시걸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230-14
659	정우전기공사	채수윤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408
660	대원전기	최중기	김포군 통진면 서암리 761-3
661	대성전기공사	오세영	성남시 단대동 4312-2
662	신대림전업공사	임용을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0-4
663	동일전업공사	오세명	부천시 송내동 425-1
664	김포전력공사	여운환	김포군 고촌읍 신곡리 573
665	유신전업사	이면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4-3
666	대성전기공사	이형근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0-4
667	광우전기	김종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25-8
668	명성전업사	명상국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1-5
669	강한전기공사	한윤수	이천군 이천읍 중리 217-2
670	강화전기공사	이종희	부천시 상동 245-37
672	신호전자(주)	김동한	군포시 금정동 46-2
673	동신전기건설공사	박노중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5-6
674	공단전업사	이광원	부천시 송내동 500-7
675	(주)영일	김근희	광명시 광명동 374-137
	대광전업사	이종분	용인군 외사면 근창리 19-1

경 기 도 보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676	정화전기통신공사	김기택	부천시 심곡동 348-33
677	대기전기건설공사	윤진호	광명시 철산2동 76-19
678	일광전기공사	진성철	부천시 심곡3동 330-50
679	성주전업사	김용기	부천시 춘의동 122-4
680	강원전력공사	손경두	구리시 수택동 504-4
681	성원전기공사	조성국	부천시 중동 805-2
682	용진건설(주)	석정용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0-4
683	명성전업건설공사	김철환	부천시 중동 805-1
684	태광전기	신동희	성남시 신흥동 3436-1
685	인재전기	김종석	부천시 심곡동 188-5
686	세진전기건설공사	장석권	구리시 교문동 229-16
687	동명전기	박동우	부천시 중구 내동 191-1
688	영백전업	유정신	부천시 심곡동 163-2
689	경인전기공사	김만중	부천시 심곡동 408-7
691	화신전업사	이상혁	부천시 남구 소사동 91-28
692	한성전기	김우영	이천군 마장면 오천리 281-9
693	대우전업공사	정태득	부천시 송내동 393
695	한양전기	김맹수	구리시 수택동 521
698	범신전기건설공사	조병윤	광명시 광명동 94-3
699	칠용전기공사	한복동	부천시 심곡동 394-1
700	삼우전기(주)	정영화	수원시 매탄동 153-3
701	범진산업(주)	김상봉	안양시 안양동 622-175
702	부여전기공사	엄성순	안산시 원곡동 782-8
703	삼정전기건설공사	이석하	부천시 삼정동 298-6
704	현대전기건설공사	김원기	부천시 상동 315-10
705	신한전기	김춘구	부천시 원종동 276
706	고려전기공사	구남출	부천시 내동 192
707	토탈전기공사	최규철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602-9
708	부일전기공사	이하수	부천시 심곡동 93-13
709	성진전기공사	김귀석	부천시 심곡3동 93-3
711	양곡전기	배철기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 238-9
713	반도전설	김연태	부천시 심곡동 353-8
714	영광전력	김진홍	안양시 박달동 102-7
715	대신전기건설공사	김용각	의정부시 의정부3동 372-4
716	무일전기건설공사	황무일	부천시 원미동 72-12
717	정화전기건설공사	박용호	시흥시 대야동 38BL8LT

경 기 도 보

제 2335 호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718	상명전기공사	안상규	부천시 원미동 72-9
719	(주)부천종합전기	김두일	부천시 원미동 66-5
720	사강전업사	김홍식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 682
계	354개업체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실효업체 명단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실 효 사 유
650	대광전업사	이종분	용인군 외사면 근창리 19-1	면허갱신미신청
계	1개업체			

경기도공고 제 216 호

공인신조사용 및 폐인공고

경기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전도자금 출납원인 신조사용 및 구 출납원인에 대하여 폐기함을 경기도 공인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사용개시일 및 폐인일시 : 1990년 7월 12일

1990 년 7 월 6 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1. 신조공인명 및 인영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제 1 전도자금출납원인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제 2 전도자금출납원인
	

2. 폐기공인명 및 인영

경기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전도자금출납원인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17 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제 1 종 전기용품제조업등록을 취소하였기 동법 제 26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7. 9

경 기 도 지 사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제 조 구 분	소 재 지
에이원전자	나용수	3-7-210	전열기구분	부천구 중구 춘의동 70-3

공 고

송탄시 산업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인을 개각공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공고번호 : 92

2. 법규근거 : 송탄시 공인조례 제 9 조

3. 사용개시일 : '90.7. 9

4. 개각공인명 : 송탄시 산업과 양곡관리 특별회계인

○ 신조인

양곡관리기금송탄시일상경비출납 공무원	양곡관리특별회계송탄시일상경비출납공무원
	

○ 폐기인

양곡관리기금송탄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	양곡관리특별회계송탄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
	

제 2339 호

경 기 도 보

화성군공고 제77호

공 고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 공람공고 합니다.

1990. 7. .

화 성 군 수

1. 사업내용

구분	도시계획법	위 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당초	반월도시계획	화성군 반월면 진건, 대야미, 둔대리 일원	신갈-반월간 도시계획사업 (대 3류 17호선, 중 2류 117호선 대야미리 교통광장)	• 대로3류 17호선 L = 4,600 m B = 24.4 m A = 278,263 m² • 중로2류 117호선 L = 580 m B = 16.2 m A = 74,380 m² • 대야미 교통광장 A = 99,074 m
변경	〃	〃	〃	• 대로3류 17호선 L = 4,600 m B = 24.4 m A = 279,956 m² • 중로2류 117호선 L = 580 m B = 16.2 m A = 74,380 m² • 대야미 교통광장 A = 99,350 m²

2.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화성군청 도시과

4.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6. 기타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화성군청 도시과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 사업부에 비치하고 있으니 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군청도시과 및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없이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양주군공고 제82호

1. 양주군 공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공인을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 : '90.7.2

1990. 7. 2

양 주 군 수

○ 폐기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양곡관리특별회계양주군전도자금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양주군진도자금출납공무원
		

○ 개각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양곡관리특별회계양주군일상경비출납공무원	양곡관리기금양주군일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옹진군공고 제 163 호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에 따라 옹진군 공인조례 제 6 조 및 제 11 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였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인사용 및 폐기일시 : '90.7.23

2.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

○ 신조공인

옹진군농촌지도소 남부지구지소장인	옹진군농촌지도소 남부지구지소	옹진군 농촌지도소 서부지구지소장인	옹진군농촌지도소 서부지구지소
			

o 폐기공인

북도지소옹진군농촌지도소장인전용	옹진군농촌지도소북도지소계인	송림지소옹진군농촌지도소장인전용	옹진군농촌지도소송림지소계인
			
백령지소옹진군농촌지도소장인전용	옹진군농촌지도소백령지소계인	대청지소옹진군농촌지도소장인전용	옹진군농촌지도소대청지소계인
			
덕적지소옹진군농촌지도소장인전용	옹진군농촌지도소덕적지소계인	영흥지소옹진군농촌지도소장인전용	옹진군농촌지도소영흥지소계인
			
대부지소옹진군농촌지도소장인전용	옹진군농촌지도소대부지소계인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56 호
1990년 7 월 23 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37호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침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2
○경기도조례 제2038호 경기도도유림사업소 농가생산 잣재배업및 포장판매에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3
○경기도조례 제2039호 경기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 4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84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정..... 4
○경기도규칙 제2085호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13
○경기도규칙 제2086호 경기도 담당관및 과규칙중 개정규칙..... 20
○경기도규칙 제2087호 경기도 임업시험장 직제규칙중 개정규칙..... 21
○경기도규칙 제2088호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21
○경기도규칙 제2089호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23
○경기도규칙 제2090호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 24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53호 '90골재채취(한강개발 제5공구)허가고시..... 25
○경기도고시 제 254호 남한산성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고시..... 26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기도고시 제 255호 사료성분등록및 취소사항 고시..... 27
○경기도고시 제 257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28
○경기도고시 제 262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고시..... 29
○경기도고시 제 263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29
○경기도고시 제 264호 신갈공원 조성계획 고시..... 32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19호 '90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공고..... 32
○경기도공고 제 220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35
○경기도공고 제 223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36
○경기도공고 제 224호 주택건설및 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해제 공고..... 37

시 군 행 정

○구리시고시 제 76호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 허가고시..... 38
○수원시공고 제 110호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41
○안산시공고 제 133호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시행 사전공람공고..... 42
○평택시공고 제 114호 도시계획사업(알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및 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 44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년 7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조례 제 2037 호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 (장장, 병원장, 학교장) 제 1 항중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기좌로"를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임업기정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잣매입및포장판매에 관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년 7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조례 제 2038 호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및포장판매에 관한 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 조(목적) 농가에서 생산되는 잣을 지방토산품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킴으서 잣가격의 안정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유림사업소농가생산잣매입 및포장판매에관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2 조(자금조성) 이 특별회계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잣을 매입 및 가공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제 3 조(세입) 이 특별회계는 제 2 조의 기금으로 사들인 피잣을 포장, 판매하여 회수되는 원금과 이익금 그리고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 4 조(세출) 농가에서 생산되는 피잣의 매입자금과 잣포장 및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출로 한다.

제 5 조(준용) 이 특별회계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6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7 월 20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조례 제 2039 호

경기도도세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5 조 제 9 항 제 1 호 (2)목중 "관광사업법"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 년 6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년 7 월 9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규칙 제 2084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공무원 정원) 제 1 항 별표 1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총괄)의 계난 1,931 을 1,906 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69 를 1,053 으로 하며, 2 급의 소계 2 를 1 로하고, 지방이사관 2 를 1 로하며 8 급의 소계 181 을 170 으로 하고, 지방행정서기 70 을 67 로, 지방전산처리원 6 을 4 로 지방농업기원 6 을 5 로, 지방임업기원 12 를 9 로, 지방보건기원 23 을 22 로, 지방토목기원 32 를 31 로 하며, 9 급의 소계 4 를 0 으로 하고, 지방농업기원보 2 를 0 으로, 지방임업기원보 2 를 0 으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684 를 675 로 하고, 7 등급의 소계 23 을 25 로 하며, 지방통신장 2 를 1 로, 지방전기장 2 를 3 으로, 지방기계장 13 (기계 12, 영사 1)을 14 (기계 13, 영사 1)로 하고, 8 등급의 소계 48 을 46 으로 하며, 지방기계원 33 (기계 31, 영사 2)을 31 (기계 29, 영사 2)로 하고, 9 등급 소계 79 를 82 로 하며, 지방운전원 58 을 61 로 하고, 10

등급의 소계 526을 514로 하며, 지방토목원 8을 7로, 지방통신원 18을 17로, 지방기계원 31 (기계 28, 영사 3)을 28 (기계 25, 영사 3)로, 지방난방원 7을 6으로, 지방운전원 99를 100으로, 지방농림원 11 (영림 8, 원예 3)을 10 (영림 7, 원예 3)으로, 지방위생원 46 (사역 45, 위생 1)을 44 (사역 43, 위생 1)로, 지방사무보조원 226 (조무 135, 타자 88, 전산 32, 제도 4, 필기 6, 편집 1)을 262 (조무 131, 타자 88, 전산 32, 제도 4, 필기 6, 편집 1)로 한다.

동조 제 2 항 별표 2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 (본청)의 계난 1,037을 1,02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89를 682로 하며, 8급의 소계 104를 101로 하고, 지방전산처리원 6을 4로, 지방보건기원 19를 18로 하며, 9급의 소계 4를 0으로 하고, 지방농업기원보 2를 0으로, 지방임업기원보 2를 0으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303을 300으로 하고, 7등급의 소계 6을 8로 하며, 지방통신장 2를 1로, 지방기계장 4 (기계 3, 영사 1)를 5 (기계 4, 영사 1)로 하고, 지방전기장에 1을, 지방난방원에 1을 각각 삽입하며, 8등급의 소계 15를 13으로 하고, 지방기계원 9 (기계 8, 영사 1)를 7 (기계 6, 영사 1)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241을 238로 하고, 지방통신원 16을 15로, 지방기계원 5 (기계 5)를 3 (기계 3)으로, 지방운전원 17을 18로, 지방사무보조원 177 (조무 85, 타자 53, 전산 32, 제도 3, 필기 4)를 176 (조무 84, 타자 53, 전산 32, 제도 3, 필기 4)로 하며, 전산담당관의 계난 55를 53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42를 40으로 하며, 8급의 소계 9를 7로 하고, 지방전산처리원 6을 4로 하고, 총무과의 일반직난 소계 39를 40으로 하며, 8급의 소계 10을 11로 하고, 지방행정서기 7을 8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93을 92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86을 85로 하며, 지방통신원 16을 15로 하고, 회계과의 기능직 7등급난 소계에 3을 삽입하며, 지방전기장에 1, 지방기계장에 1, 지방난방원에 1을 각각 삽입하고, 보건과의 계난 29를 28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27을 26으로 하며, 8급의 소계 5를 4로 하고, 지방보건기원 3을 2로 하며, 식수과의 계난 12를 10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1을 9로 하며, 9급의 소계 2를 0으로 하고, 지방임원기원보 2를 0으로 하며, 잠업특작과의 계난 15를 13으로 하고, 지방농업기원보 2를 0으로 하며, 상정과의 계난 25를 24로 하고, 기능직

난 소계 3을 2로 하며, 10등급의 소계 3을 2로 하고, 지방사무보조원 3(조무 2, 타자 1)을 2(조무 1, 타자 1)로 하며 민방위과의 계난 21을 20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4를 3으로 하며, 7등급의 소계 1을 0으로 하고, 지방통신장 1을 0으로 하며, 비상대책과의 계난 8을 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7을 6으로 하며, 8급의 소계 1을 0으로 하고, 지방행정서기 1을 0으로 한다.

동조 제 3항 별표 3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직속기관)의 계난 225를 223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50을 49로 하며, 2급의 소계 1을 0으로 하고, 지방이사관 1을 0으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93을 92로 하고, 9등급의 소계 6을 7로 하며, 지방운전원 6을 7로 하고, 10등급의 소계 73을 71로 하며, 지방위생원 9(사역 8, 위생 1)를 8(사역 7, 위생 1)로 하고, 지방사무보조원 24(조무 12, 타자 8, 제도 1, 필기 2, 편집 1)를 23(조무 11, 타자 8, 제도 1, 필기 2, 편집 1)으로 하며, 농촌진흥원의 계난 44를 43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41을 40으로 하며, 9등급 소계 5를 6으로 하고, 지방운전원 5를 6으로 하며, 10등급 소계 27을 25로 하고, 지방사무보조원 14(조무 10, 타자 3, 필기 1)를 13(조무 39, 타자 3, 필기 1)으로 하며, 공무원교육원의 계난 97을 95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41을 40으로 하며, 2급의 소계 1을 0으로 하고, 지방이사관 1을 0으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37을 36으로 하고, 10등급 소계 34를 33으로 하며, 지방위생원 7(사역 7)을 6(사역 6)으로 하고 서무과의 계난 50을 49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32를 31로 하고, 10등급 소계 29를 28로 하며, 지방위생원 7(사역 7)을 6(사역 6)으로 하고, 교학과의 계난 47을 46으로 하며, 일반직난 소계 24를 23으로 하고, 2급 소계 1을 0으로 하며, 지방이사관 1을 0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소의 계난 84를 85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15를 16으로 하고,

10등급 소계 12를 13으로 하며, 지방운전원 4를 5로 한다.

동조 제4항 별표4중 다음과 같이한다.

북부출장소의 기능직난 9등급 소계0을 2로 하고, 지방운전원2를 삽입하며, 10등급 소계18을 16으로 하며, 지방운전원5를 3으로 하고, 총무과의 기능직난 9등급 소계 0을 2로 하며, 지방운전원에 2를 삽입하고, 10등급 소계14를 12로 하며, 지방운전원5를 3으로 한다.

동조 제5항 별표5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사업소)의 계난583을 570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265를 257로 하며, 8급의 소계61을 53으로 하고, 지방행정서기 18을 15로, 지방농업기원3을 2로, 지방임업기원12를 9로, 지방토목기원18을 17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270을 265로 하고 10등급 소계194를 189로 하며, 지방토목원8을 7로, 지방기계원22(기계22)를 21(기계21)로, 지방난방원 4를 3으로, 지방운전원 58을 60으로, 지방농림원10(영림8, 원예2)을 9(영림7, 원예2)로, 지방위생원 25(사역25)를 24(사역24)로, 지방사무보조원56(조무34, 타자22)을 54(조무32, 타자22)로 하고, 문화회관 건설사업소의 계난 9를 8로 하며, 일반직 소계 7을 6으로 하고, 8급의 소계1을 0으로 하고, 농민교육원의 계난 36을 35로 하며, 일반직난 소계22를 21로 하고, 8급의 소계5를 4로 하며, 지방농업기원2를 1로 하고, 농산물원종장의 계난 23을 22로 하며, 일반직난 소계8을 7로 하고, 8급 소계1을 0으로 하며, 지방행정서기1을 0으로 하고, 도유림사업소의 계난33을 31로 하며, 일반직

소계 25를 24로 하고, 8급 소계 7을 6으로 하며, 지방임업기원 7을 6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7을 6으로 하며, 10등급 소계 5를 4로 하고, 지방기계원 2(기계 2)를 1(기계 1)로 하며, 치산사업소의 계난 25를 23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3을 12로 하며, 8급소계 5를 4로 하고, 지방임업기원 3을 2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12를 11로 하고, 10등급 소계 12를 11로 하며, 지방농림원 7(영림 7)을 6(영림 6)으로 하고, 종축장의 계난 34를 33으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23를 22로 하고, 10등급 소계 23을 22로 하며, 지방사무보조원 17(조무 16, 타자 1)을 16(조무 15, 타자 1)으로 하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계난 48을 49로 하며, 기능직난 소계 16을 17로 하고 10등급 소계 15를 16으로 하며, 지방운전원 4를 5로 하고, 남부지소의 계난 8을 9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2를 3으로 하며, 10등급 소계 2를 3으로 하고, 지방운전원에 1을 삽입하며, 잠종장의 계난 15를 14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7을 6으로 하며, 10등급 소계 5를 4로 하고, 지방사무보조원 3(조무 2, 타자 1)을 2(조무 1, 타자 1)로 하며, 잠업검사소의 계난 14를 13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7을 6으로 하며, 10등급 소계 5를 4로 하고, 지방난방원 1을 0으로 하며, 도로관리사업소의 계난 144를 142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111을 109로 하며, 10등급 소계 56을 54로 하고, 지방토목원 8을 7로, 지방위생원 2(사역 2)를 1(사역 1)로 하며, 본소의 계난 123을 122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99를 98로 하며, 10등급 소계 44를 43으로 하고, 지방토목원 4를 3으로 하며, 북부지소의 계난 21을 20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12를 11로 하며, 10등급 소계 12를 11로 하고, 지방위생원 1(사역 1)

을 0(사역 0)으로 하며,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계난 34를 32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26을 24로 하며, 8급 소계 7을 5로 하고, 지방행정서기 4를 2로 하며, 공영개발사업단의 계난 78을 79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20을 21로 하며, 10등급 소계 20을 21로 하고, 지방운전원 8을 9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이 감축된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때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되, 초과된 현원은 전직 또는 특별채용등으로 조속한 기간내 정원과 일치되도록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요구중에 있는 정원은 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개 정 사 유 서

1. 개정사유

- 내무부지기 01210-5427(90.6.19)호에 의거 읍·동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도 본청인력 감축지시 및 도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보강, 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확보, 기능직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조정, 공무원교육원 한시정원 행정2급 감축등으로 인하여 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코자 함.

2. 개정내용

- 읍·동 일선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도 공무원 정원감축 28명

  (일반직 15명 , 기능직 13명)

  - 결원으로 인한 정원감축 : 17명 (일반직 8급 6명, 기능직 11명)
  - 정원이관 : 11명 (일반직 8급이하 9명, 기능직 2명)

- 도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보강 및 정원 불부합 해소를 위한 정원조정

o 회계과(기능직)

구분 \ 등급	계	6 등급	7 등급	8 등급	9 등급	10 등급
현 행	12	2 전기 1 난방 1	0	4 전기 1 기계 2 난방 1	4 전기 1 기계 1 난방 2	2 기계 2
조 정	12	2 전기 1 난방 1	3 전기 1 기계 1 난방 1	2 전기 1 난방 1	4 전기 1 기계 1 난방 2	1 기계 1
증 감	0	0	증 3 전기 1 기계 1 난방 1	△2	0	△1 기계 1

-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 확보 : 4명(기능 10 등급)
  - 회계과 : 기능 10 등급 1명
  - 보건환경연구소 : 기능 10 등급 1명
  -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기능 10 등급 1명
  - 공영개발사업단 : 기능 10 등급 1명

- '90.7.1 자 하위직 공무원 근속승진에 따른 기능직 정원 조정
  - 농촌진흥원 기능 10 등급 1명 → 기능 9 등급 1명
  - 북부출장소 총무과 기능 10 등급 2명 → 기능 9 등급 2명

- 도 자체방호계획 및 예비군 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이관

  • 비상대책과 행정8급 1명 → 총무과 행정8급 1명

- 공무원교육원 한시정원(행정2급 1명, 90.6.30까지 한시정원)감축

  • 공무원교육원 행정2급 감축 1명

3. 개정규칙(안) : 별 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5. 관 계 법 규 : 해당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경기도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 년 7 월 10 일

경기도규칙 제 2085 호

경기도직제규칙중개정규칙

제 4 조(내무국) 제 6 항(국민운동지원과의 분장사무)중 "제 9 호 사회정화운동의 기획조정"을 삭제하고, "제 9 호" 및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바르게살기 운동의 기획 조정

10.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제 5 조(보건사회국) 제 6 항(환경보호담당관의 분장사무)중 "제 1 호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제 2 호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 3 호" 내지 "제 7 호"를 "제 1 호" 내지 "제 5 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국민운동지원과	새 마 을 계	10. 국토공간 유휴지 녹화사업 추진지도
		11. 농로교량사업
		12. 새마을 도로포장
		13.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
		14.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연보호계	1.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 수립
		2. 자연보호운동 추진
		3.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4. 자연보호 책임구역 지정관리
		5.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
		6. 비닐류 및 폐자원 수집운동
		7. 자연보호 협의회 운영
		8. 자연환경의 보전(자연환경조사등)
		9. 특정야생동물,식물의 보호
		10. 한국자원 재생공사와 관련된 업무
		11. 폐합성수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
	사회지도계	1. 바르게살기운동의 기획지도
		2. 바르게살기에 관한 교육홍보
		3. 바르게살기운동의 확인평가
		4.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
		5. 순화자 사후관리
		6. 외국인 홍보마을 육성
		7. 새마을교육
		8. 행락질서 지도단속
		9. 농민교육원 지도감독
		10. 기타 국민정신 계발에 관한 사항

보건사회국 소관사무의 환경보호담당관 "자연보호계" 분장사무난을 삭제하며, 환경보호담당관의 "환경관리계" 분장사무난에 "제 13 호 그밖에 담당관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계" 분장사무난에 "제 10 호 농어촌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명 : 경기도담당관 및 과규칙	제명 : 경기도담당관 및 과규칙
제 13 조(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계, 사회지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13 조(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계, 자연보호계, 사회지도계를 두고, 각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 18 조의 2 (환경보호담당관) 환경보호담당관에 자연보호계,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와 폐기물처리계를 두고, 자연보호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기좌로, 환경지도계장과 폐기물처리장은 지방환경기좌로 보한다.	제 18 조의 2 (환경보호담당관) 환환경보호담당관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와 폐기물처리계를 두고,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기좌로, 환경지도계장과 폐기물처리장은 지방환경기좌로 보한다.
제 3 조(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 3 조(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별지"와 같다.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현 행			개 정		
(별표1) 계의분장사무			(별지) 계의분장사무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	1. 새마을가꾸기사업 2. 새마을운동 활력화 3. 새마을협동권사업 4. 농로교량사업 5. 새마을 도로포장 6. 새마을 공동재산관리 7. 새마을 소득금고사업관리 8. 경제동향 보고마을 육성 9.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10. 저소득마을 육성 11. 마을금고(법인설립인가 및 감독) 12. 도시새마을 운동 13. 새마을교육 14. 외국인 홍보마을 육성 15. 새마을지도자관리 16. 국토공원화 운동 추진계획의 수립 17.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및 지도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	1. 새마을운동활력화 2. 새마을 공동재산관리 3. 새마을 소득금고사업관리 4. 마을금고(법인설립인가및감독) 5. 도시새마을운동 6. 새마을지도자관리

현 행			개 정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	18. 유관기관 민간단체 추진계획의 종합조정 19. 국토공간, 유휴지 녹화사업추진지도 20. 농민교육원 지도감독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	7. 유관기관 민간단체 추진계획의 종합조정 8. 국토공원화운동추진계획의 수립 9. 국토공원화사업의 추진및지도 10. 국토공간 유휴지 녹화사업 추진지도 11. 농로교량사업 12. 새마을도로포장 13. 새마을소규모숙원사업
		21.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신 설)		자연보호계	1.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 수립 2. 자연보호운동추진 3.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4. 자연보호 책임구역 지정관리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현 행			개 정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국민운동지원과	(신설)	(신 설)		자연보호계	5.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6. 비닐류 및 폐자원 운동 7.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8. 특정 야생동물, 식물의 보호 10.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관련된 업무 11. 폐합성수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
	사회지도계	1. 사회정화운동의 기획지도 2. 사회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3. 사회정화운동의 확인평가 4. 사회정화협의회 운영지원 5. 순화자 사후관리		사회지도계	1. 바르게살기운동의 기획지도 2. 바르게살기에 관한 교육홍보 3. 바르게살기운동의 확인평가 4.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지원 5. 순화자 사후관리 6. 외국인홍보마을 육성 7. 새마을교육 8. 행락질서 지도단속 9. 농민교육원 지도감독 10. 기타 국민정신계발에 관한사항
환경보호담당관	자연보호계	1. 자연보호운동 기본계획 수립 2. 자연보호운동 추진 3. 자연보호시설물 관리	환경보호담당관	(삭제)	1 ~ 13 (삭제)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현 행			개 정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4. 자연보호책임구역 지정관리 5.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 6. 비닐류 폐기물 수집운동 7. 자연보호협의회 운영 8. 행락질서지도단속 9.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환경조사 등) 10. 특정야생물, 식물의 보호 11. 한국자원재생공사와 관련된 업무 12. 폐합성수지의 처리에 관한 사무 13. 그밖에 담당관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관리계	1-12 (생략)		환경관리계	1-12 (종전과동일) 13. 그밖에 담당관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환경보호 담당관	폐기물 처리계	1-9 (생략)	환경보호 담당관	폐기물 처리계	1-9 (종전과동일) 10. 농어촌쓰레기처리에 관한 사무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해 창

1990 년 7 월 10 일

경기도 규칙 제 2086 호

경기도담당관및과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담당관 및 과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 (국민운동지원과) 중 "새마을계" 다음에 "자연보호계"를 신설한다.

제 18 조의 2 (환경보호담당관) 중 "자연보호계"와 "자연보호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를 삭제한다.

제 3 조 (계의 분장사무) "별표 1"중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국 소관사무의 국민운동지원과 분장사무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당관·과	계	분 장 사 무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	1. 새마을운동 활력화 2. 새마을 공동재산 관리 3.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관리 4. 마을금고(법인설립인가 및 감독) 5. 도시새마을운동 6. 새마을지도자관리 7. 유관기관 민간단체 추진계획의 종합조정 8. 국토공원화운동 추진계획의 수립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및 지도

경기도 임업시험장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1990 년 7 월 10 일

경기도규칙 제 2087 호

경기도임업시험장직제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임업시험장 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하부조직) 제 1 항중 "서무계"를 "연구담당관, 서무계"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서무계장"앞에 "연구담당관은 시험연구에 관하여 장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연구관으로"를 삽입하고 "서무계장은"다음의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보하고"를 "지방행정주사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1990 년 7 월 10 일

경기도규칙 제 2088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공무원정원) 제 1 항 "별표 1"중 다음과 같이 한다.

총괄 합계의 계난 1,906을 1,90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053을 1,055로, 4급의 소계 9를 10으로, 지방임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 1을, 5급의 소계 217을 216으로, 지방행정사무관 117을 116으로, 6급의 소계 303을 304로, 지방수의사 2를 3으로 하며, 연구직난 소계 92를 93으로, 연구사의 소계 75를 76으로, 보건연구사 47을 48로 한다.

동조 제2항"별표2"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본청 합계의 계난 1,027을 1,02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682를 684로 6급의 소계 193을 194로, 지방수의사 2를 3으로, 7급의 소계 229를 230으로 하며, 지방선박기사보에 1을 신설하고,

국민운동지원과의 계난 15를 18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3을 16으로, 5급의 소계 2를 3으로, 지방행정사무관 2를 3으로, 6급의 소계 2를 3으로, 지방행정주사 2를 3으로, 7급의 소계 6을 7로, 지방행정주사보 4를 5로 하며,

환경보호담당관의 계난 20을 17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9를 16으로, 5급의 소계 5를 4로, 지방행정사무관 1을 0으로, 6급의 소계 4를 3으로, 지방행정주사 1을 0으로, 지방행정주사보 1을 0으로 하며,

축정과의 계난 18을 19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6을 17로, 6급의 소계 5를 6으로, 지방수의사 2를 3으로 하며,

치수과의 계난 15를 16으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14를 15로, 7급의 소계 5를 6으로 하며, 지방선박기사보에 1을 신설한다.

동조 제3항 "별표3"중 다음과 같이 한다.

직속기관 합계의 계난 223을 224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49를 48로, 5급의 소계 17을 16으로, 지방행정사무관 13을 12로 하며, 연구직난 소계 63을 65로, 연구사의 소계 50을 52로, 지방농업연구사 3을 4로, 지방보건연구사 47을 48로 하고,

공무원 교육원 교학과의 계난 46을 45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23을 22로 5급의 소계 14를 13으로, 지방행정사무관 10을 9로 하며,

보건환경연구소의 계난 85를 87로 하고, 연구직난 소계 63을 65로, 연구사의 소계 50을 52로, 지방농업연구사 3을 4로, 지방보건연구사 47을 48로 한다.

동조 제5항 "별표5"중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 합계의 일반직난 소계 257을 258로, 4급의 소계 5를 6으로 하고, 지방임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 1을 신설하며, 연구직난 소계 29를 28로 연구사의 소계 25를 24로, 지방농업연구사 25를 24로 하고, 임업시험장의 일반직난 소계 8을 9로하고, 4급의 소계에 1을, 지방임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 1을 각각 신설하며, 연구직난 소계 8을 7로, 연구사의 소계 7을 6으로, 지방농업연구사 7을 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년 7월 19일

경기도규칙 제2089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사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중 문화예술과 소관 위임사무 제12호 "지방문화원(사단법인)사무의 검사감독(임원취임승인, 정관의 변경허가 포함)"을 "지방문화원(사단법인)사무의 검사감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년 7월 20일

경기도규칙 제 2090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중 교통행정과 소관 제17호, 제18호, 제29호 및 제3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고시 제 253 호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구역내 90 골재채취를 하천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1990. 7. 10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1. 위 치 : 경기지역 한강개발 제 5 공구
2. 면 적 : 40,500 ㎡
3. 물 량 : 250,000 ㎥
4. 점 용 료 : 725,000,000 원
5. 허가기간 : '90.7.11 — '90.12.31
6. 피허가자 : 유원건설㈜ 황 성 열

경 기 도 보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54 호

○ 남한산성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 1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 1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광주군 도시과 및 중부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7. 11

경 기 도 지 사

1. 공원의 명칭 : 남한산성 도립공원
2. 공원의 면적 : 36,447 ㎢
3. 문화재 보호지 변경 : 별첨
4. 공원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면생략

세부시설	당초		변경	
	위 치	규 모	위 치	규 모
사적탐방로	산성리산 27 -산 11-1	L = 425 m B = 4.0 m A = 1,700 ㎡	산성리 34-1 - 산 19	L = 500 m B = 5.0 m A = 2,500 ㎡
등 산 로	산성리 33 - 273	L = 5,460 m B = 2,5 m A = 14,100 ㎡	산성리산 27 - 산 25-2	L = 600 m B = 3.0 m A = 1,800 ㎡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55 호

사료관리법 제 22조 제 3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7. .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및취소사항

- 공 장 명 : ㈜미원(이천공장)
- 소 재 지 :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766-1
- 대 표 자 : 김 채 방

구분	사료			등록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하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사료	종계사료	산란종계용	11-10-11	15.5	2.5	3.0	0.5	7.0	15.0
		〃	육용종계용	11-10-21	15.0	2.5	2.5	0.5	7.0	15.0
		〃	수탉종계용	11-10-22	12.0	2.5	0.7	0.5	7.0	15.0
취소	〃	〃	종계용	11-10-1	15.5	2.5	3.0	0.5	7.0	15.0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57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7. 14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ha	ha	ha			
안양		안양	산 58-1	임야	2.75	0.02	0.02	연립주택 부지조성	안양시 비산동 459-1 주공아파트 104 동 204 호 안영일외 6 인	
						ha	ha			
		계		1 필지		0.02	0.02			

2. 해제신청자 : 주소 : 안양시 비산동 459-1 주공아파트 104 동 204 호

성명 : 안 영 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제 262 호

공유수면매립법 제 9 조의 2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2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사항을 고시합니다.

1990 년 7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1. 공사명 :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2. 피면허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번지
   한국화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재 덕
3. 매립면적 : 화약종합개발시험장 및 성능시험장 부지 조성
4.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6-10번지선
5. 면적 : 372,586 ㎡
6.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 년 이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고시제 263 호

공유수면매립법 제 9 조의 2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1990 년 7 월 18 일

경 기 도 지 사

1. 공사명 : 군자지구공유수면 매립공사
2. 피면허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번지
   한국화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재덕 (변경없음)
3. 매립목적 : 화약종합개발시험장 및 성능시험장 부지조성 (변경없음)
4.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876-10 번지선 (변경없음)
5. 면적 : 4,452,881 ㎡ (변경없음)
6. 사업변경내역 : 별첨
7. 공사비 : 44,369,851,000 원 (당초 42,739,620,000 원)
8. 공사시행기간 : '87.5.29 ~ '92.5.28 (변경없음)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변경사업물량〕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1. 호안공			
1) 호안공			
○ 연장	8,085.8 m	5,501.3 m	(감) 2,584.5 m
— A지구	4,145.8 m	2,904.1 m	(감) 1,241.7 m
— B지구	3,940.0 m	2,597.2 m	(감) 1,342.8 m
○ 구조	사 석 제	사 석 제	
○ 천단고	EL.(+) 11.50 m	EL.(+) 12.00 m	상치 CONC. 변경
2) 가호안공	2,355.0 m	2,355.90m	변경없음
○ A지구	600.0 m	600.90m	
○ B지구	1,755.0 m	1,755.0 m	
3) 배수로 호안	3,562.5 m	3,912.1 m	(증) 349.6 m
○ A지구	2,776.0 m	2,851.7 m	(증) 75.7 m
○ B지구	786.5 m	1,060.4 m	(증) 273.9 m
4) 체절제 호안	210.0 m	210.0 m	변경없음
○ A지구	130.0 m	130.0 m	
○ B지구	80.0 m	80.0 m	
2. 도로공			
○ 도로면적	272,497 m	196,209 m	(감) 76,288 m²
— A지구	190,531 m	132,971 m	(감) 57,560 m²
— B지구	81,966 m	63,238 m	(감) 18,728 m²
○ 계획고	EL.(+) 10.00 m 및 10.50 m	EL.(+) 11.00 m	(증) (+) 0.5 m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3. 매립공			
○ 매립면적	4,452,881 ㎡	4,452,881 ㎡	○ 변경없음
— A지구	2,397,459 ㎡	2,397,459 ㎡	○ 〃
— B지구	2,055,422 ㎡	2,055,422 ㎡	○ 〃
○ 매립고	EL.(+) 10.00 m	EL.(+) 10.00 m	○ 〃
○ 매립재료	산토 및 준설토	산토 및 준설토	○ 〃
4. 배수공			
1) 부지내배수공			
○ THP부설공	1 식	1 식	
○ U형측구	〃	〃	
2) 중앙배수로공			추가 매립에 반영
○ 폭	150.0 m	삭 제	
○ 연 장	1,200.0 m		
3) 후면배수로공			
○ 폭	30.0 m	9 m , 25 m	
○ 연 장	3,562.5 m	3,912.1 m	(증) 349.6
— A지구	2,776.0 m	2,851.7 m	(증) 75.7
— B지구	786.5 m	1,060.4 m	(증) 273.9
5. 기타 부대공	1 식	1 식	변 경 없 음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년	착공일로부터 5년	〃
7. 총공사비	42,739,620,000 원	44,369,851,000 원	증 1,630,231,000 원

고 시

경기도고시제 264 호

- 상갈공원(신갈도시계획시설)조정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결정도서는 용인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90. 7.18

경 기 도 지 사

- 상갈공원(신갈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결정조서 : 별첨
- 조성계획결정도면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승인조건 : 본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것이며 본법이외 타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이행후 사업시행할것

경기도공고제 219 호

'90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90년도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계획
   - 융자한도액 : 5천만원 이내(업체당)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금 리 : 년8%(단, 금리변동에 따른 연동제적용)
   - 융자기간 : 1년(만기일 전액일시상환)
   - 융자시기 : '90.8월 부터
2. 신청자격(융자대상)
   1) 공통조건
      - 공고일현재 주사무소와 공장이 모두 도내에 소재한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공장등록업체

○ 본자금을 '87년이후 융자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위 공통조건을 갖춘 업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새마을운동 참여우수업체

○ 공예품생산 업체

○ 새마을 공장

○ 기타 도지사(시장·군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3. 융자신청 접수

○ 접수기간 : 1990.8.13-8.25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업체 주사무소 관할 시·군청

(공업업무담당 주관과)

○ 신청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부수	비 고
1)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	○ 접수처에 비치
2) 중소기업 입증자료(소득세징수액집계표)	1	○ '90.6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종업원수를 명기)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을것
3) 공장등록증 사본	1	
4) 기타(해당업체에 한하여)		
○ 공장새마을운동 참여우수업체 추천서	1	○ 공장새마을운동 추진지부(각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을것
○ '90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증서(사)	1	
○ 공예품 전문생산업체 지정서(사)	1	
○ 새마을공장 지정서(사)	1	
○ 기타 유망중소기업 입증자료(사)	1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4. 융자대상업체 선정

o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함

5. 융자금 상환방법

o 융자금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등은 당도와 협약한 경기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기 타

o 상세한 사항은 당 도 공업과(수원 42-5101~9(교) 392,6392) 또는 당해 시·군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0. 7.20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공고제 220 호

K·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7.16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동진산업(주)
2.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358
3. 대 표 자 : 이 명 수
4. 허 가 번 호 : 제 238 호
5. 규 격 번 호 : KSF 4302
6. 품 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전주
7. 종류및등급 : 허가된 전종류 등급
8. 취 소 일 자 : 1990. 7.16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제 223 조

K • S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7.19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시흥용사촌안흥합성복지공장
2. 소 재 지 : 군포시 금정동 139
3. 대 표 자 : 김 만 술
4. 허 가 번 호 : 5970
5. 규 격 번 호 : KSM 5322
6. 품 명 : 도로표지용 도료
7. 종류및등급 :
8. 취 소 일 자 : 1990.7.19
9.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24 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 영업정지 해제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에 의거 영업정지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를 해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0 조의 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7. 19

경 기 도 지 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영업정지 기 간	영업정지 해제일자	해 제 사 유
86-79	천보건설㈜	홍천유	수원시매산로 3 가 31-4	'90.3.15~ '90.7.14 (4개월간)	'90. 7.16	영업정지 기간만료
87-4	유림건설㈜	유동웅	광명시광명동 150-11	〃	〃	〃
87-50	바우건설㈜	김인수	평택시비전 1 동 633-5	〃	〃	〃

경 기 도 보

고 시

구리시고시 제76호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을(변경) 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도시과 및 수택, 수평동사무소와 미금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7. 16

구 리 시 장

1. 사업시행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사항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사항 없음.

다. 면적 또는 규모(도로개설)

- 대로3류 6호선 : 폭24.4-102미터, 연장2,970미터, 면적162,201㎡
- 대로3류 7호선 : 폭24.4미터, 연장470미터, 면적22,97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번지
- 성명 : 한국도로공사사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사항 없음.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사항과 동일함.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리시토평동	48-137	도	866	253	구리시 토평동 48번지 김 희 구
구리시수택동	250-1	전	88	88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5 김 기 홍
미금시도농동	141-8(원지번141-3)	답	4,393	276	미금시 도농동 105번지 이 진 희
〃	141-9(원지번141-3)	답	7	7	상 동
〃	141-10	답	1,798	1,086	상 동

지 장 물 조 서

소 재 지	지 번	물건종류	구조,규격	수 량	소 유 자
구리시수택동	250-1	은행나무		95 주	구리시 수택동 344 김 길 만
〃 토평동	120-1 120-2	〃		3,684 주	상 동
미금시도농동	210-251	주 택		40.21 ㎡	미금시 도농동 210-184 고 재 희
		가 추		24.5 ㎡	
		〃		26.2 ㎡	
		저 장 고		6.0 ㎡	
		창 고		18.3 ㎡	
		견 사		1 식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 량	소 유 자
		펌 프	모 타	1 식	
		창고 및 화장실		36.0 ㎡	
미금시도농동	210-260 외 42 필지	주 목		1 주	미금시 도농동 210-184 고 재 희
		〃		5 주	
		선 주 목		1,823 주	
		원 주 목		1,245 주	
		회 양 목		1,473 주	
		라 일 락		1,119 주	
		조 향		356 주	
		측 백		7 주	
		백 송		2 주	
		황 철 죽		49 주	
		왜향나무		2 주	
		개 나 리		15 주	
		입 철 죽		839 주	
		산 철 죽		2 주	
		능 소 화		11 주	
		무 궁 화		1 주	
		상고스기		3 주	
		철 엽 수		4 주	
		사철나무		63 주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종류	구조, 규격	수 량	소 유 자
		고 부 시		142 주	
		왕벚나무		2 주	
		은수원사시		1 주	
		은행나무		476 주	
		단풍나무		140 주	
		후박나무		11 주	
		배 추		500	
		비닐하우스		500 ㎡	
		펌 프		2 식	

수원시공고 제 110 호

수원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된 공인을 관인규정 제 11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7. 10

수 원 시 장

o 폐기공인

양곡관리특별회계수원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양곡관리기금수원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안산시공고 제 133 호

공 고

1. 건설부고시 제 399 호('85.9.11)로 결정하고 경기도고시 제 246 호('87. 9.11)로 지적고시된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동 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7. 10

안 산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일동 산 24-27 번지외 103 필지

나. 지 역 : 자연녹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학교
- 명 칭 :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라. 사업의 규모 : 지하 1 층, 지상 5 층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구 분	면 적	단 위	비 고
계	144,200	㎡	
시 설 면 적	21,630	㎡	
잔 여 면 적	122,570	㎡	
시 설 면 적			
┌ 교 사 부 지	7,950	㎡	
├ 운 동 장 부 지	6,840	㎡	
├ 도 로 부 지	3,994	㎡	
└ 기 타 부 지	2,846	㎡	

마. 사업시행자 : 인천직할시 중구 율목동 237 번지

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 문창모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90.7—1992.12.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토지조서(생략)

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및 성명

┌ 토지소유자 : 인천직할시 중구 율목동 237번지

학교법인 새빛학원이사장 문창모

├ 건물소유자 : 신축계획

└ 이해관계인 : 충남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번지

한국수자원공사

자. 공람일시 : 관보(도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공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과

경 기 도 보

제 2356 호

평택시공고 제 114 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

평택도시계획사업(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도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행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개 요	사업시행자
평택공업단지 조성사업	평택시세교동산 43-1 일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 534,162 ㎡	평 택 시 장
대 1-1 호선 (국도1호선) 확, 포장공사	평택시세교동 428-8 일대	도로개설 및 포장 연장=300 m	〃

1. 공 람 기 간 : 1990년 7월 24일 - 8월 6일 (14 일간)

2. 공 람 장 소 :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

(전화 51-5052)

3. 편입토지조서 : 공람장소에 비치

1990년 7월 23일

평 택 시 장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2357 호
1990년 7 월 30 일(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66호 사료성분등록 변경고시..... 2
○경기도고시 제 268호 성남주택건설사업 승인고시..... 3
○경기도고시 제 270호 쇠고기 연동가격 고시..... 5
○경기도고시 제 271호 사방지정지 해제고시.....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25호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7
○경기도공고 제 226호 K·S표시허가취소 공고..... 8
○경기도공고 제 228호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9

시 군 행 정

○하남시고시 제 13호 신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변경시행고시..... 10
○성남시공고 제 166호 공인신조공고..... 20
○성남시공고 제 167호 공인신조공고..... 20
○의왕시공고 제 96호 공인신조및 폐기공고..... 21

※정정 경기도규칙 제2084호(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중 정정)..... 22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66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90 . 7 . 23 .

경 기 도 지 사

사 료 성 분 등 록 현 황

○ 공 장 명 : 승 화 기 업

○ 대 표 자 : 백 연 수

○ 소 재 지 :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418-12

구분	사료			등록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유황	순도		
당초	단미사료	광물질첨가물 (황산나트륨) $NaSO_4$	배합사료 원료용	9-5-10	%이상 20.0	%이상 97.0		
변경				〃	18.0	85.0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268 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226 번지외 8 필지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성남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0 . 7 . 24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425

성 남 시 장

다. 사업위치 :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226 번지외 8 필지

라. 대지면적 : 11,453.50 ㎡

마. 사업규모 : - 아파트 5 - 6 층 9 동 312 세대 (장기임대)

바. 사 업 비 : 8,808,685 천원

사. 사업기간 : 1990.7 - 1991.5.30

2.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3. 도 면 : 별첨과 같음

4. 기 타 :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주택과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비치 보관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

소재지 시구동	지 번	지목	지 적	사 업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계	대 지	도 로	주 소	성 명
계	9 필 지		11993.5	11453.5	10623.6	829.9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226	대지	1574.2	1574.2	1574.2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9-425	성남시장
〃	3309-128	〃	1469.1	1469.1	1469.1		〃	〃
〃	3309-132	〃	1304	1304	1304		〃	〃
〃	3309-149	〃	1545.7	1545.7	1545.7		〃	〃
〃	3309-230	〃	1584.5	1578.5	1578.5		〃	〃
〃	3309-243	〃	1584.2	1584.2	1584.2		〃	〃
〃	3309-247	〃	1567.9	1567.9	1567.9		〃	〃
〃	3309-242	도로	690.9	690.9	-	690.9	〃	〃
〃	3309	〃	679	139	-	139	〃	〃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70 호

쇠고기연동가격고시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제 9 조 규정에 의거 쇠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년 7 월 25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구 분	단 위	연 동 가 격	비 고
쇠 고 기	정육 500 g 당	5,500 원	

○ 시 행 일 : '90. 7.28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고 시 문

경기도 고시 제 271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년 7 월 26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유		
					ha	ha	ha			
평택	청북	고잔	산 151	임야		0.10	0.10	축사부지 조성	평택시평택동 58 이학재	

2. 해제신청자: 주소 평택시 평택동 58

성명 이 학 재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경기도 공고 제 225 호

○ 단지 30254-12677(89.6.5) 호로 실시계획 승인한 아산산업기지개발구역내 자동차 제조공장 154 KV 송전선로 공사가 준공되었기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 8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공고한다.

○ 공고내용은 화성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다 음 —

1. 업 명 : 자동차 제조공장 154 KV 송전선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992-28

기아자동차㈜ 대표 이 범 창

3. 사업시행위치 :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4. 사업시행면적 : 1,875.6 *m*

5. 준공년월일 : '90. 7

6. 처분사항 : (시설물 , 토지 , 관리처분) - 토지세목조서 : 별첨

시 설 물	토 지	관 리 처 분 사 항
송전철탑 18 송전선로 2574 *m* 지 선 0.7 *km*	1,875.6	시설물 및 토지사업시행자 관리

경 기 도 보

경기도 공고 제 226 호

K . S 표시허가 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년 7 월 26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 한양공업
2. 소 재 지 : 하남군 창우동 323
3. 대 표 자 : 곽 영 진
4. 허가번호 : 제 2871 , 3111 호
5. 규격번호 : KSG2010 , KSG 2016
6. 품 명 : 학생용 책상 및 걸상, 학용책상(2인용)
7. 종류및등급 : -
8. 취소일자 : 90. 7.26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공고 제 228 호

공인신조사용 및폐인공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기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신조사용 및 구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에 대하여 폐기함을 경기도공인조례 제 9 조 및 제 11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사용개시일 및 폐인일시 : 1990 년 8 월 1 일

1990 년 7 월 27 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조공인명 및 인영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기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인


2. 폐기공인명 및 인영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기도전도자금출납공무원인


경 기 도 보

하남시고시 **제13호**

고 시

신장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내용과 같이 변경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 및 한국도로공사건설사업부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년 7 월 23 일

하 남 시 장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o 시 점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산57-23번지

o 종 점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37-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도로 및 교통광장건설공사

o 명 칭 :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건설공사(대로 3류 10호선, 대로 3류 11호선, 서부 및 신장교통광장)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o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o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번지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라. 면적 및 규모

시설명	세부시설명	면적 및 규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로	대로3류 10호선	B = 24.4 ~ 44 m L = 5,640 m A = 326,641 ㎡	B = 24.4 ~ 44 m L = 5,640 m A = 334,115 ㎡	증 7,474 ㎡	
	대로3류 11호선	B = 24.4 m L = 120 m A = 6,886 ㎡	B = 24.4 m L = 120 m A = 6,886 ㎡		
광장	서부 교통광장	A = 101,471 ㎡	A = 101,959 ㎡	증 488 ㎡	
	신장 교통광장	A = 168,450 ㎡	A = 169,051 ㎡	증 601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바. 사업의 준공예정일 년월일 : 91.12.31 까지

2. 허가조건 : 생 략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감일동	376-47	376-93	잡	잡		59		59
2	〃	산 25-1	산 25-18	임	임	9,917	2,088	1,915	2,088
3	〃	173-3	173-6	대	대		8		8
4	〃		142-4	답	답		307		307
5	광암동		산 34-7	임	임		2,300		2,300
6	〃		산 34-8	〃	〃		1,362		1,362
7	〃		산 34-9	〃	〃		125		125
8	〃		산 34-10	〃	〃		1,696		1,696
9	춘궁동	산 44-10	산 44-44	〃	〃	2,678	566	202	566
10	〃	33	33-4	〃	〃	741	279	259	279
11	〃		33-3	〃	〃		508		508
12	〃	산 44-39	산 44-43	〃	〃		998		998
13	〃		321-7	수	수		119		119
14	〃		132-1	답	답		267		267
15	〃		132-5	〃	〃		184		184
16	덕풍동		530-8	도	도		73		73
계								2,376	10,939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면적 :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강남구 신사동 173 브럭 2	변 이 여			
강동구 천호동 447-14	전 영 진			
노원구 상계동 주공A 617-1312	김갑이외 2			
강동구 둔촌동 85-2 삼익B 2-305	고 진 환			
하남시 광암동 240	윤 현 중			
경남 양산 동면 가산리 1091	안 선 조			
성동구 구의동 77-56	주종덕외 2			
〃	〃			
종로구 명륜동 2가 69	홍 길			
강남구 논현동 124-21	이 진 우			
〃	〃			
강동구 둔촌동 70-5 현대A 102-906	이병학외 2			
동대문구 전 동 152-112	민정기외 2			
하남시 춘궁동 193	방 현 규			
강남 도곡동 934-10 우성A 1-1407	이 증 언			
영등포구 노량진동 114-5	대화금속㈜	중구남대문로1가130	한일은행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지 장 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용 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1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산 25-18 (산25-1에서 분할)	산 25-1	〃	브 럭 스레트 〃 〃	브 럭 스레트 〃 〃	주 택 창 고 〃 화장실	주 택 축 사 창 고 - 가 추 〃 우 물 담 장 비 닐 하우스 잣나무 개나리 자목련
2	경기도 하남시	170-3	170-3	브럭기와 〃 브 럭 스레트 〃 〃 〃		담 장 주 택 공 장 〃 〃 〃	담 장 주 택 공 장 〃 - -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규모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관리
당초	변경	주소	성명	
63.3 ㎡	50 ㎡		전광순 (전영진)	
18.6 ㎡	22.4 ㎡			
14.6 ㎡	10 ㎡			
3.2 ㎡	-			
-	6 ㎡			
-	3.5 ㎡			
-	1 식			
-	36.9 ㎡			
-	28.8 ㎡			
-	1 주 (30년생)			
-	10 주 (6년생)			
-	1 주 (15년생)			
176 m	203 m		강기만	
54.9 ㎡	49.6 ㎡			
92.8 ㎡	96 ㎡			
68.8 ㎡	264.3 ㎡			
47.6 ㎡				
86.9 ㎡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용 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브 럭		창 고	창 고
							화장실
							가 추
							〃
							대 문 (철제)
							우 물
							향나무 외 3 종
							동 력 (7kw)
3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73-3		-	철 재	-	대 문
						-	담 장
4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64-5				주 택	주 택
						-	가 추
						-	〃
						-	〃
					브 럭 스레트	-	화장실
						-	우 물
				함 석	-	담 장	-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규모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당초	변경	주소	성명	권리
15.2 ㎡	10.5 ㎡			
	1.8 ㎡			
	67.5 ㎡			
	140.7 ㎡			
	2 식			
	2 식			
-	1 식			
-	1 식	하남시 감일동 173-3	김 기 복	
-	20 m			
105.6 ㎡	105 ㎡	하남시 감일동 164-5	임 진 학	
-	40 ㎡		임 춘 홍	
-	42.4 ㎡		〃	
-	96 ㎡		〃	
-	1.95 ㎡		〃	
-	2 식		〃	
49.3 ㎡	-		이 은 자	이 경 식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번호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용 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5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64-3		벽돌와가	벽돌와가	주 택	주 택
						〃	〃
						-	견 사
						-	가 추
						-	〃
						-	우 물
				함 석	-	담 장	-
6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297-2		목 조 스레트		주 택	
				브 럭 스레트		창 고	
				브 럭		담 장	
							가 추
							〃
							〃
7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235				-	화장실
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산 28-4		-	망부석		
				-	비 석		
				-	상 석		
				-	밤나무		
9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440-1				-	노관주
						-	단풍나무

경 기 도 보

제 2357 호

규 모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권 리
104 ㎡	52 ㎡	하남시 감일동 164-3	임 진 국	
-	52 ㎡			
-	24 ㎡			
-	52 ㎡			
-	19.5 ㎡			
-	2 식			
68 ㎡	-			
80 ㎡	65.13 ㎡	하남시 광암동 197-2	이 승 연	
13.9 ㎡				
30.6 ㎡	37.8 ㎡			
-	24 ㎡			
-	9 ㎡			
-	5.1 ㎡			
-	3.24 ㎡	하남시 광암동 235	이 병 철	
-	2		이 순 재	
-	1			
-	1			
-	19			
-	675 주	하남시 춘궁동 440	조 형 원	
-	29 주			

제 2357 호

성남시 공고제 166 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공인 조례제 9 조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7. 28.

성 남 시 장

○ 공인모형

2.0 *cm*

성남시 장학기금 출납명령관인	2.0 *cm*
	

2.0 *cm*

성남시 장학기금 출 납 원 인	2.0 *cm*
	

성남시 공고제 167 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공인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7. 28.

성 남 시 장

o 개각공인

성남시수정구 태평2동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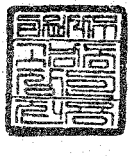
의왕시 공고제 96 호

공인개각사용 및 폐공인 공고

의왕시 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사용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각사용 및 폐기일 : '90.7.27

2. 개각 및 폐기공인

공 인 명	고천동장인 (민원사무전용)	
	개 각 사 용 인	폐 기 인
인 영		

1990. 7. 26

의 왕 시 장

경 기 도 보

정 정

경기도보 제2356호('90.7.23)에 게재된 경기도규칙 제2084호('90.7.9) 경기도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중 개정규칙 내용중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0년 7월 24일

○ 제2조(공무원정원)제2항 별표2중

"회계과의 기능직7등급난 소계에3을 삽입하며,지방전기장에1,지방기계장에1,지방난방원에1을 각각 삽입하고" 다음에 "8등급의 소계5를 3으로 하며 지방기계원2(기계2)를 0(기계2)를 0(기계0)으로 하고,10등급의 소계39를 38로 하며,지방기계원2(기계2)를 0(기계0)으로 하고,지방운전원 17을 18로 하고"를 삽입

○ 동조제3항 별표3중

"농촌진흥원의 계난44를43으로 하고,기능직난 소계41을 40으로 하며, 9등급 소계5를 6으로하고,지방운전원5를 6으로 하며,10등급 소계27을 25로 하고,지방사무보조원14(조무10,타자3,필기1)를"다음에 "13 (조무39,타자3,필기1)으로 하며"를 "13(조무9,타자3,필기1)으로" 로 하며 다음에 "지방운전원6을 5로하며"를 삽입.

○ 동조제5항 별표5중 "도유림사업소 계난33을 31로 하며,일반직소계25를 24로 하고 8급 소계7을 6으로 하며,지방임업기원 7을6으로 하고,기능직난 소계7을 6으로 하며,10등급 소계5를4로하고 지방기계원2(기계2)를1 (기계1)로 하며"다음에 "임업시험장의 계난24를 23으로 하고,일반직난 소계9를 8로하며,8등급의 소계3을2로하고 지방임업기원2를 1로하며,를 삽입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람	기관의 장

제 2358 호
1990년 8 월 6 일(월)

차 례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40호 경기도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3

규 칙

○경기도규칙 제2091호 경기도 도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 8
○경기도규칙 제2092호 경기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17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74호 평택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18
○경기도고시 제 27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29
○경기도고시 제 277호 평택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32
○경기도고시 제 278호 외사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34
○경기도고시 제 280호 사료성분등록사항고시..... 36
○경기도고시 제 281호 사료성분등록및 취소사항고시..... 37
○경기도고시 제 2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39
○경기도고시 제 283호 '89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승인고시..... 41

회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29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42
○경기도공고 제 230호 경기도종축장보유농기계사용료징수조례(안)제정입법예고... 43
○경기도공고 제 231호 K.S표시허가 취소공고..... 45

시 군 행 정

○용인군고시 제 39호 이동도시계획시설(운동장:리버사이드골프장)사업시행 허가 고시..... 46
○군포시공고 제 93호 공인신조공고..... 47
○의왕시공고 제 97호 공인신조공고..... 48
○하남시공고 제 94호 도시계획시설(하천:한강)사업 사전공람공고..... 49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건축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년 7월 28일

경기도조례 제2040호

경기도건축조례중 개정조례

경기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영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 200㎡('87.7.1이전에 분할된 대지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와 읍·면의 도시계획 구역은 150㎡)

2.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90㎡(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중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3. 중심상업지역 : 600㎡(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300㎡)

4.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200㎡('87.7.1이전에 분할된 대지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와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은 150㎡). 다만, 폭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는 300㎡('87.7.1이전에 분할된 대지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200㎡)

5.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300㎡('87.7.1이전에 분할된 대지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와 읍·면 도시계획구역은 200㎡)

6. 보전녹지지역 : 600㎡(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350㎡)

7. 자연녹지지역 : 500㎡(87. 7. 1 이전에 분할된 대지는 40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350㎡)

8.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과 영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역 : 9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분할된 대지는 60㎡)

제15장 "보칙"을 제18장으로 하며 제44조(적용의 특례)를 제50조로 하고 제1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건축선 후퇴로 인한 기준미달 건축물 및 대지

제44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53조의7 제1항 및 영 제102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 22 조의 3, 법 제 30 조, 법 제 39 조 및 제 39 조의 2 의 규정 완화대상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5 조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다음식에 의한 건폐율로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0 분의 1 을 가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text{건폐율} = \text{가} + (\text{라} - \text{가}) \times \frac{\text{나} - \text{당해 대지면적}}{\text{나} - \text{다}}$$

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

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다.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라. 10 분의 9 (완화시의 최대허용 건폐율)

제 46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16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6 장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및 건축기준

제 47 조 (오피스텔의 건축가능구역) 영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가능지역은 도시계획구역중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 48 조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법령등의 관계규정외에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17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7 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 49 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 7 조의 3 및 영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3 년이 되는 날의 30 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1. 건축허용지역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제 66조 및 별표에서 허용하는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2. 대지조건

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폭 12 m이상의 도로에 6 m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다.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건축할수 없다.

(법령의 적용의 특례 규정을 적용치 않음)

3. 대지안의 공지확보

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법령등 관계규정에 의거 띄어야 할 거리에 적합하여야 한며 최소 2 m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4. 주차장 확보

가. 각 사무구획당(각 실당)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무구획면적이 1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마다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각 사무구획별 규모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숙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3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 부대시설 및 설비

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못한다.

나. 화장실 각 사무구획별 1.5㎡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 사무구획내 욕실(샤워기 폭함)은 설치하지 못한다

라.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한다.

마. 씽크대는 간이탕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타 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다스트슈트는 각 실내에 설치하거나 각 실로부터 15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가.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100분의 3의 금액으로 하며 이를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기간이 종료되어 하자검사를 실시한후 환불한다.

8. 기 타

가. 오피스텔의 규모(타 용도와 복합시 동일 건축물)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인 경우에는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회화조각등의 미술장식품 설치는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공사비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년 7월 28일

경기도규칙 제 2091 호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중 개정규칙

경기도도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0 조(도세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면제)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 30 조(도세의 징수금 망실에 대한 납입의무면제) 법 제 5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무의 면제처분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내에 면제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면제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5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미수납액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 92 조(위원회의 조직) 제 2 항 제 3 호중 "공인감정사·평가사·사법서사"를 감정평가사·법무사"로 한다.

별지 제 5 호 서식(ㅇㅇ세 부과내역서 및 수납부)를 별지와 같이하고 제 11 호서식(망실징수금 납입의무면제신청서)을 폐지하며 제 12 호서식(징수촉(수탁)정리부)내지 제 67 호서식(마권세표)을 제 11 호서식 내지 제 66 호 서식으로 하되 제 16 호서식(체납처분표), 제 21 호서식(부동산 압류통지서), 제 33 호서식(교부청구서), 제 55 호서식(결손처분표). 제 63 호서식(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별지 제 5 호서식〕

○○세 부과내역서 및 수납부

고지서발부일	19 . . .
납기	19 . . .

고지번호	납세의무자		전소유자		물건소재지	종류 및 구조 용도	면적 (수량)	취득 (등기) 원인	과세표율	세액			취득 (등기) 년월일	수납 년월일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본세	가산세(방위세)	계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별지제 16호서식〕

체 납 처 분 표

확 인	번 호

(전년)

주 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영업장소				
과세물건			전 화 번 호	
상 호		납세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년도	납기	독촉		체납세액						합계
			발부일	납기한	본세	가산금					
						1차	2차	3차	4차	……	

1. 체납사유	체납자 주소지 약도
2. 조 치	
3. 처리전망	

190 ㎜ × 268 ㎜ (신문용지 54 g / ㎡)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별지제 16 호서식 이면〕

체 납 정 리 보 고			처 리 전 망	조사자인
과 장	계 장	년월일		

주거확인

1. 주민등록 유 무
2. 거주사실 유 무
3. 행 선 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19 . . .

읍·면장 인

재산확인

1. 가옥대장 . 유 무
2. 토지대장 유 무
3. 차량대장 유 무
4. 과세구분자료 : 신고직권

19 . . .

소속

직 성명 ㊞

극빈자확인

1. 가옥, 자가, 세방, 세가
2. 생활상황,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19 . . .

읍·면장 인

재조사자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소속

직 성명 ㊞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별지 제 21 호서식〕

부 동 산 압 류 통 지 서

주소 :

성명 : 귀하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명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 국세징수법 제 45 조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190 ㎜ × 268 ㎜ (신문용지 54g/㎡)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별지제 33 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귀하 (사건번호 :)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교부청구액	금 원정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비 고

지방세법 제 34 조제 2 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제징수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19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190 ㎜ × 268 ㎜ (신문용지 54 g / ㎡)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별지제 55 호서식〕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징수관	과 장	계 장

지방세법 제 29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 결손처분코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직 성명 ㊞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지서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거 주 조 사					
재 산 조 사					
허가사항및기타사항					

확 인 및 조 치

거주사실확인				조회사항	
읍·면·동장	부읍면장 (사무실)	지역담당 직 원	통·리장	조회 요지	
				회신 요지	

190 ㎜ × 268 ㎜ (신문용지 54 g/㎡)

감면근거 / 세목별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외자도입법		감면조례		조세감면규제법		기 타	
		건수	세 액	건수	세 액	건수	세 액	건수	세 액	건수	세 액	건수	세 액
합 계													
취득세	소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등 록 세													
면 허 세													
마 권 세													
주 민 세													
재산세	소 계												
	건 물												
	기 타												
자 동 차 세													
농 지 세													
도 축 세													
담 배 소 비 세													
종 합 토 지 세													
도 시 계 획 세													
소방공동시설세													
사 업 소 세													

(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동법에 직접 규정되어 감면된 것에 한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마 권 세 표

구 분	합 계			차진납부분			직권고지분		
	발매매수	과 표	금 액	발매매수	과 표	금 액	발매매수	과 표	금 액
합 계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이 재 창

1990년 7월 31일

경기도규칙제 2092 호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공무원정원) 제 1 항 "별표 1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총괄)의 일반직난 소계 1,055 를 1,045 로, 8 급의 소계 170 을 169 로, 지방전산처리원 또여 8 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 을 삭제하고, 별정직난 소계 75 를 76 으로, 8 급상당의 소계 7 을 8 로 하며, 회계관리요원에 1 을 삽입한다.

동조 제 2 항 "별표 2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본청)의 일반직난 소계 684 를 683 으로, 8 급의 소계 101 을 100 으로, 지방전산처리원 또는 8 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 을 삭제하고, 별정직난 소계 34 를 35 로, 8 급상당의 소계 5 를 6 으로 하며, 회계관리요원에 1 을 삽입하고 기능직난 9 등급의 소계 38 을 37 로, 지방운전원 34 를 33 으로, 10 등급의 소계 238 을 239 로, 지방운전원 18 을 19 로 하며,

전산담당관의 계난 53 을 52 로 하고, 일반직난 소계 40 을 39 로, 8 급의 소계 7 을 6 으로, 지방전산처리원 또는 8 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 을 삭제하며, 총무과의 계난 134 를 135 로 하고, 별정직난 소계 2 를 3 으로, 8 급상당의 소계 0 을 1 로 하며, 회계관리요원에 1 을 삽입하고,

회계과의 기능직난 9 등급의 소계 37 을 36 으로, 지방운전원 33 을 32 로, 10 등급의 소계 38 을 39 로, 지방운전원 18 을 19 로 한다.

동조 제 4 항 "별표 4 "중 다음과 같이 한다.

합계(출장소)의 기능직난 9 등급의 소계 2 를 3 으로, 지방운전원 2 를 3 으로, 10 등급의 소계 16 을 15 로, 지방운전원 3 을 2 로 하고,

북부출장소 총무과의 기능직난 9 등급의 소계 2 를 3 으로, 지방운전원 2 를 3 으로 10 등급의 소계 12 를 11 로, 지방운전원 3 을 2 로 한다.

동조 제 5 항(사업소정원) "별표 5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여성회관의 계난 25 를 26 으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9 를 10 으로, 10 등급의

소계 7을 8로, 지방운전원 1을 2로 하며,
도로관리사업소의 계난 142를 141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109를 108로, 10등급의 소계 54를 53으로, 지방운전원 20을 19로 하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계난 122를 121로 하고, 기능직난 소계 98을 97로, 10등급의 소계 43을 42로, 지방운전원 18을 1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25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경기도고시제 274호

1. 경기도고시 제 120호('90.4.2)로 결정고시된 평택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조 규정에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7.30.

경 기 도 지 사

가. 실시계획인가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평택시 통복동 280번지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
- 명칭 : 소로 2류 172호선

3) 규모 및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면적(㎡)	시 점	종 점
결 정	소 로	2	172	223	1,784	평택시 통복동 149-6	평택시 통복동 269-2
시 행	〃	2	172	182	1,472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평택시 평택동 평 택 시 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90.9

○ 준공예정일 : '90.11.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관계인 주소, 성명

나. 실시계획인가 도면은 별첨과 같음(생략) 끝.

제 2358 호

경 기 도 표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통복	263-6	전	1,393	2 × 421/440		추금성	통복동 264			
					2 × 19/440		한상협	〃 271			
2		263-7	전	62	33 × 421/440		추금성	〃 264			
					33 × 19/440		한상협	〃 271			
3		279	대	198	100 × 20/60		김종환	〃 281			
					100 × 40/60		한지수	〃 280-2			
4			대	1,792	186 × 3/542		정규순	〃 90			
					× 54/542		윤수봉	〃 279			
					× 75/542		곽대영	〃 279			
					× 75/542		오복환	안성군공도면			
							김기호	마정리 94			
					× 39/542		주필순	통복동 222			
					× 30/542		유창열	〃 279			
					× 4/542		김학천	〃 280			
							정성근	〃 279			
							최주성	〃 279			

	통복	279	대	1,792	186 × 65/542		이동자	통복동 281			
					× 1/542		김교호	〃 279			
					× 39/542		이재옥	〃 279			
					× 14/542		김종환	〃 281			
					× 20/542		신현철	〃 139-4			
					× 3/542		정규순	〃 90			
					× 81/542		김용혜	〃 279			
					× 22/542		박상기	평택동 103-10			
					× 20/542		서정자	화성군태안읍			
								신리 518번지			
5		280-9	답	86	8		정규순	통복동 90			
6		280-12	대	162	4		최주성	〃 279			
7		-13	〃	63	48		이달수	〃 286-3			
8		-15	〃	129	55		김학천	〃 280-15			
9		-14	〃	119	5		박강희	아산군둔포면			
		-7						심법리 270			
10		-6	답	179	116		조희재	통복동 280-4			
11		281-3	〃	175	25		유선옥	〃 280-6			
12		286-6	도	126	31		안종순	〃 264			

13	통복	286-6	대	321	1		김현천	통복동 286	채무자 (김종호)	고덕면방축리 220-2	근저당설정 '88.2.15 금 삼천만원
									채무자 (평택지구축산업협동조합)	통복동 52-5	
14		281-1	대	314	201		김성배	통복동 221			
15		281-2	답	298	20		김종환	〃 281			
16		285-3	대	225	54 × 93/225		우신암	〃 99-34			
					54 × 132/225		이정남	〃 285-3			
17		285-4	대	106	51		홍칠복	유천동 100-1			
18		285-1	〃	116	3		유병진	통복동 152			
19		285-2	〃	106	61		문영식	〃 284-2			
20		130-2	〃	134	18		배홍조	〃 130-2			
21		130-1	답	145	11		명노례 한우상	〃 -1			
22		149-2	대	585	155 × 521/585		홍철화	〃 149-2			
					64/585		홍순기	〃 149-2			
23		127-4	대	165	3		신송우	〃 287-5			

24	통복	149-7	답	126	7 × 100/126		홍철화	통복동 149-2			
					7 × 26/126		홍순기	〃 〃			
25		149-6	〃	1,543	42		이은기	〃 86-1			
							장거수	평택동 26-2			
							한광섭	비전동 500-14			
							이현구	통복동 90번지			
26		127-6	대	568	17 × 354/369		이병수	평택동 104			
					× 15/369		신형우	비전동 615-1			
27		486	도	4,056	34	도	국유지				
28		269-2	〃	99	38	〃	〃				
29		267-4	〃	338	1	〃	〃				
30		266-2	〃	33	16	〃	평택시				
31		286-4	〃	20	5	〃	국유지				
32		475	〃	397	67	〃	〃				
계		32필지		14,179	1,418						
					이 하 여 백						

물 건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1	통복동	263-7	사무실	함석스레트	6.48		추금성	통복동 264				전파
			창고	골함석	50.4							
2		280-5	정미소	브럭스레트	6.75		김종환	〃 281				
3		280-2	주택	벽돌기와	55.86		〃	〃 281				전파
			창고	브럭스라브	5.88							
			화장실	〃	1.69							
			〃	〃	1.32							
			대문	철재	1식							
			담장	브럭	3.7							
			주택	브럭기와	30.6		신현철	〃 139-4				전파
4		279	〃	〃	0.075							
			〃	브럭스레트	13.96							전파
			담장	조립식	3.0							

	통복동		담 장	브 럭	4.8							
5		280-9	화장실	브럭스레트	2.38		정규순	통복동 90				전파
6		279	주 택	벽돌기와	43.02		박상기	평택동 103-10				전파
			대 문	철 재	1식							
7		279	주 택	적벽돌기와	1.04		김용혜	통복동 279				
8		280-15	〃	벽돌기와	59.4		김학천	〃 280-15				전파
			화장실	브럭스라브	1.3							
			대 문	철 재	1식							
			담 장	조 립 식	4.0							
9		280-13	주 택	목조기와	41.04		이달수	〃 286-3				전파
			〃	브럭스라브	20.8							전파
				(2층)								
10		280-7	〃	벽돌기와	48.91		조희제	〃 280-4				전파
			〃	벽돌스라브	6.82							〃
			〃	〃	36.96							〃
			화장실	〃	1.56							〃

경 기 도 표

11	통복동	280-6	주 택	적벽돌기와	59.71		유선옥	통복동 280-6				전과
			세면장	브럭스라브	1.96							
			대 문	철 재	1식							
			담 장	조 립 식	7.3							
				브 럭	8.1							
12		281-1	주 택	벽돌기와	67.41		김성태	〃 221				〃
				〃	53.12							〃
				벽돌스라브	7.4							〃
				〃	7.14							〃
			창 고	〃	9.9							〃
				〃	1.47							〃
			대 문	철재(2개소)	1식							〃
			담 장	브 럭	10.5							
13		281-2	주 택	브럭기와	14.79		김종환	〃 281				
				브럭스레트	0.3							
14		285-3	주 택	브럭기와	12.75		우신암	〃 99-34				

	통복동		화장실	브럭스라브	1.44							전파
			담 장	함 석	2.7							
			대 문	철 재	1식							
15		285-3	화장실	브럭스레트	1.68		이정남	통복동 285-3				
			대 문	철 재	1식							
16		285-4	주 택	브럭기와	44.02		홍철복	유천동 100-1				
17		285-2	〃	벽돌스레트	29.52		문영식	통복동 284-2				전파
			〃	목조스레트	17.76							
			담 장	함 석	9.7							
			대 문	〃	1식							
18		149-2	주 택	브럭기와	83.44		홍철화	〃 149-2				전파
				〃	9.66							〃
			창 고	브럭스레트	7.35							〃
				〃	9.92							〃
			화장실	〃	1.82							〃
			담 장	브 럭	5							

19	통복동		주 택	브럭기와	41.19		홍순기	통복동149-2				전파
			창 고	브럭스레트	11.0							
			화장실	〃	0.96							
			대 문	철 재	1식							
20		130-2	화장실	브럭스레트	2.76		배홍조	통복동130-2				〃
			담 장	브 럭	1.6							
			대 문	철 재	1식							
				이 하 여 백								
				공부대조필								
				지방토목기원								
				최 승 덕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76 호

구리시 토평동 672 번지외 26 필지(구리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상에 경기도지사가 승인신청한 주택건설 사업변경 계획을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제 32조의 5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구리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0. 8. 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국민주택건설사업(분양 및 임대주택)

나. 사업주체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산 1 번지

경 기 도 지 사

다. 사업위치 : 구리시 토평동 672 번지외 26 필지

(구리 교문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라. 대지면적 : 21,998 ㎡

마. 사업규모 : 12층 5동 608 세대

— 분양아파트 : 408 세대

— 임대아파트 : 200 세대

바. 사 업 비 : 17,856,968 천원

사. 사업시행기간 : 1990.7 - 1991.9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

3. 설계도면 : 별첨과 같음(생략)

4. 기 타 :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에 보관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토 지 편 입 면 적 조 서

번호	토지소재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계					42,984	21,998			
1	구리	토평	672	잡	3,306	69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7-3	최성호	
2	〃	〃	672-4	〃	1,653	173	서울시 서대문 북가좌 431 한양(아) 2／601	서덕운	
3	〃	〃	672-5	〃	1,322	185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35-46	강순구	
4	〃	〃	672-10	〃	661	145	〃	〃	
5	〃	〃	672-11	〃	1,322	213	〃	〃	
6	〃	〃	672-12	〃	1,069	198	〃	〃	
7	〃	수평	700	답	764	291	서울시 동대문 신설동 119-11	송금례	
8	〃	〃	702	〃	1,005	870	〃	〃	
9	〃	〃	703	〃	1,073	235	〃	〃	
10	〃	〃	705	〃	1,027	70	〃	〃	
11	〃	〃	713	〃	949	701	〃	〃	
12	〃	〃	701	〃	2,489	1,404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27	오인규	
13	〃	〃	706	〃	1,997	1,557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123	송금순	
14	〃	〃	707-1	〃	3,091	2,782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16-6	김문식	
15	〃	〃	707-2	도	172	172	〃	〃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16	구리	수택	709	답	1,322	1,322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40-7	임효빈	
17	〃	〃	709-1	〃	975	975	서울 성동 상왕십리 759	유한종 외 2 인	
18	〃	〃	709-2	〃	830	830	〃	〃	
19	〃	〃	784-3	임	7,858	5,307	서울시 송동구 신당동 377-52	조병세 외 1 인	
20	〃	〃	711	답	2,050	804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654	임경호	
21	〃	〃	712	〃	922	60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99 -2 신반포 1 차 216/190	김영호	
22	〃	〃	779	〃	1,792	95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617	서성복	
23	〃	토평	672-1	구	2,126	1,276	-	국 (건설부)	
24	〃	〃	672-2	잡	502	326	-	구리시	
25	〃	수택	688-1	도	552	3	-	국 (건설부)	
26	〃	〃	707-3	〃	588	300	-	〃	
27	〃	〃	784-1	구	1,567	1,087	-	〃	

경 기 도 보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77 호

1. 경기도고시 제 353 호(89.11.29)로 실시계획인가된 평택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8. 2

경 기 도 지 사

가.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

1)규모 및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	시 점	종 점
당초	중로	1	5	20	545	10,900	평택시 합정동 652-4	평택시 합정동 549-3
변경	〃	1	5	20	552	11,040	〃	〃

2)사업시행기간

- 당초 : '89.12.10 - '90. 6.30
- 변경 : '89.12.10 - '90.12.30

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명세

4)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5)관계도면은 별첨과 같음(생략)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토 지 조 서

단위 : ㎡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평택시 합정동	652-10	대	201	3	3	평택시합정동 652-3	조창순	통복동 89-1	평택농업협동조합 (근저당)
〃	652-11	〃	134	134	115	〃	〃	〃	〃
〃	652-5	〃	132	132	132	평택시합정동 652-5	임선철		
〃	654-13	〃	392	218	184	평택시합정동 654-5	유우상	평택시비전동 623-1	〃
〃	654-12	〃	119	62	46	평택시합정동 654-4	채규희		
〃	524-11	전	664	373	339	평택시합정동 502	최정용		
〃	524-1	답	73	54	73	〃	〃		
〃	603-1	답	555	555	55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현대 Ⓐ 123-702호	최경자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278 호

1. 경기도고시 제 78-360 호('78.8.7)로 결정고시된 외사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용인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8. 3

경 기 도 지 사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용인군 외사면 근창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로개설
- 사업의 명칭 : 중로 2류 2호선

다. 규모 및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연장(m)	면적(㎡)	시 점	종 점
결정	중로	2	2	15	480	7,200	용인군외사면근창리 101-8	용인군외사면근창리 270-3
시행	중로	2	2	7.5	390	2,402	용인군외사면근창리 40	용인군외사면근창리 270-3

라. 사업시행자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86 용인군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90.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아. 관계도면은 별첨과 같음(생략)

토 지 조 서

백암-군계간

No	소재지		지목	원지적 ㎡	편입지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결정	시행	법면	주소 군 면 리 번지	성명	
1	용인외사근창	산 4-1	임	2,700	18	11	18	백암리 403	홍순창	
2	〃	40	답	4,192	510	196	620	서울시마포구 성수동 158-4	최태섭 외 4인	
3	〃	41-1	답	1,590	18		18	근창리 27	유병관	
4	〃	4-3	임	68,804	2,512	1,575	3,700	이천군설성면 상봉리 197	박노수 외 6인	
5	〃	41-6	답	4,526	6.0		6.0	수원시세류동 145-18	유태순	
6	〃	41-6	답	(4,526)	4		4	〃	〃	
7	〃	65	전	1,683	48	3	48	안양시비산동 572 삼익Ⓐ 1동 902	김영숙	
8	〃	64	전	1,428	719	602	117	근창 117	김승동	
9		62	전	1,590	15	15		안양시비산동 572 삼익Ⓐ 1동 902	김영숙	
계		8 필지			3,850	2,402	4,531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지 장 물 조 서				
번 호	지장물명	수 량	위 치	비 고
1	체 신 주	2	용인군 외사면 근창리	
2	한 진 주	8	〃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80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8. 3.

경 기 도 지 사

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

- 공장명 : ㈜ 동양금속화학
- 소재지 :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521-8
- 대표자 : 이 명 교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구분	사료			등록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나트륨(Na) %이상	마그네슘(Mg) %이상	칼슘(Ca) %이상	황(S) %이상	
등록	단비사료	혼합광물질 (Na+Mg+Ca+S)	배합사료첨가용	9-4-12	11.0	10.0	3.0	1.5	
취소	〃	혼합광물질 (Na+Mg)	〃	9-4-2	20.0	14.0			
	〃	혼합광물질 (Mg+S)	〃	9-4-9		52.0		2.1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81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및 취소사항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8. 4

경 기 도 지 사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및 취 소 내 역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번호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천광산업	김포군검단면 마전리 609-1	김만호	배합사료	착유1호	비유량 15 kg 이하	12-28-1	14.0	2.5	0.6	0.4	22.0	10.0
취소					〃	〃	〃	14.0	2.5	0.6	0.4	13.0	10.0
등록	안양축협	안양시안양7동 200-12	박승민	〃	임신우	임신후~분만전	2-27-1	13.0	2.5	0.6	0.4	8.0	8.0
					큰소비육1	생체중 300-400kg	2-35-21	12.0	2.5	0.5	0.4	8.0	8.0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82 호

광명시 철산동 356-3 번지 일원(광명하안택지개발 사업지구)상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광명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한다.

1990. 8. 4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분양주택)

나. 사업주체 : 한신공영㈜ 대표 박 명 남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56-3 번지 일원
(광명하안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중형주택부지)

라. 대지면적 : 60,724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8 - 25 층 12 동 1,568 세대

바. 사 업 비 : 121,951,911 천원

사. 사업기간 : 1990. 8 - 1992.10.30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2. 사용할 토지조서

3. 도 면 : 별첨과 같음(생략)

4. 기 타 : 관계도서는 광명시청 주택과에 비치 보관

사 용 할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번	사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광명시	철산동	356-3번지 일원 (광명하안택지개발 사업지구 중형주택 부지)	60,724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	대한주택 공사	

고 시

경기도 고시제 283 호

'8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8. 4.

경 기 도 지 사

(단위 : 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 산 액		691,787,814,278	519,955,323,000	171,832,491,276
결산액	세 입	747,378,720,434	571,085,619,201	176,293,101,233
	세 출	621,859,205,010	495,902,005,780	125,957,199,230
이월액	계	125,519,515,424	75,183,613,421	50,335,902,003
	명시이월	5,815,714,350	5,487,493,770	328,220,580
	사고이월	20,667,410,930	13,125,383,120	7,542,027,810
	계속비이월	0	0	0
	보조금집행액	184,543,400	184,543,400	0
	순세계잉여금	98,851,846,744	56,386,193,131	42,465,653,613

*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경 기 도 보

공 고

경기도 공고제 **229** 호

K·S 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7. 31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신진기계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416-4
3. 대 표 자 : 박 민 선
4. 허가번호 : 제 2687 호
5. 규격번호 : KSE 7006
6. 품 명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7. 종류및등급 :
8. 취소일자 : '90.7.31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종축장보유농기계사용료징수조례 (안) 재정입법예고

경기도 공고제 230 호

경기도종축장 보유농기계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도내 양축농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년 7 월 31 일

경 기 도 지 사

1. 조례제명 : 경기도종축장 보유농기계 사용료 징수조례 (안)

2. 제정취지 : 종축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 기계화 축산경영사업단을 운영 축산경영의 기계화보급 유도하며 날로 발전하는 축산업을 선도하고 공업화 및 국민경제 성장에 따른 농촌인력 감소에 의한 축산 경영인력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축산 폐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ㅇ본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양축 농가에 유상으로 지원하므로서 가동율 향상과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유도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농가 대외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골자

가. 도내 양축농가에서 축산경영에 필요한 농기계 및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종축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 양축농가에서 유상으로 사용케하는 것임.

나.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계작업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사업

1. 초지조성 (경사 15 ° 미만)

2. 사료작물재배관리(경사 15°미만)

3. 조사료의 생산조제(엔시레지, 건초등)

4. 가축 분뇨의처리(분뇨 저장탱크 설치 농가)

5. 기타 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농기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유류대)로한 최소한의 실비로 지원(작업공정별 농기계 사용료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양축농가는 90년8월 1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할것)를 경기도지사(참조:축정과장, 종축장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축정과(0331)42-4624 종축장(0347)62-6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별표1호

작업공정별농기계사용료

시간당/원

작업공정별	작업내용	소 요 장 비	사용료	비 고
자급사료재배	경 운	트랙타+쟁기	3,530	
	쇄 토	트랙타+쇄토	3,710	
	파 종	트랙타+파종기	3,600	종자·잡부는 자부담
건 초 제 조	예 초	산지형트랙타	4,880	
	뒤집기	트랙타+헤이레키	4,150	잡부 및
	결 속	트랙타+결속기	4,830	끈은 자부담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작업공정별	작업내용	소 요 장 비	사용료	비 고
엔시레지제조	캇 트	트랙타+콘히베스타+트레일러	6,380	
	운 반	트랙타+트레일러	3,110	진압인부는 자부담
분뇨처리	수 거	탱크로리차량	6,670	
	살 포	트랙타+살포기	6,280	
장비운반		트 럭	4,690	

o 1일 기준 가동시간은 8시간으로 함.

o 사용료=감가상각비+잡품비+소모성부품비 및 정비비+유류대

공 고

경기도 공고제 231 호

K·S 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KS 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8. 4.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대명산업사
2. 소 재 지 :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570-1
3. 대 표 자 : 김 진 하
4. 허가번호 : 제5704 호
5. 규격번호 : KS F 4902

6. 품 명 : 아스팔트루우핑

7. 종류및등급 : 35 kg , 45 kg

8. 취소일 자 : '90.8.4

9. 취소사 유 : 자진반납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용인군 고시제39호

이동 도시계획시설(운동장 : 리버사이드골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용인군청 도시과 및 이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7. 31 .

용 인 군 수

아 래

가. 사업시행지

이동면 송전리 산56번지외 18필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류 : 운동장
- 명칭 : 용인 리버사이드골프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11 용송개발㈜
- 성명 : 대표이사 윤 인 술

라.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90.7
- 준공예정일 : 1992. 3. 31.

마. 면적 및 규모

- 결정면적 : 293,617 ㎡
- 시행면적 : 293,617 ㎡

◦ 규모(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계	293,617	단위 : ㎡
건 축 부 지	5,140	
홀 코 스 부 지	213,410	
도 로	14,000	
녹 지	53,567	
묘 목 장	7,500	

바. 도면 : 생략(용인군청 도시과 및 이동면사무소에 비치)

공 고

군포시공고제 93 호

군포시 공인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기 도 보

제 2358 호

1990 년 7 월 28 일

군 포 시 장

o 사용개시일 : 1990 년 8 월 1 일

공 인 인 영

군포시 지역경제과분임 경 리 관 인	군포시 지역경제과 전도자금출납원 인	군포시 지역경제과 분인물품출납원 인
		

의왕시 공고제 97 호

공 고 문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의왕시 공인조례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사용개시일 : '90. 7. 31.

2. 공인명 및 인영

1990.7.31

의 왕 시 장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자산출납원인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기업출납원인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수입원인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출원인	의왕시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자산출납원인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 회계유가증권출납원인	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 회계유가증권출납원인	
		

하남시공고제 94 호

공 고

경기도 고시 제 311 호('87.11.21)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경기도 고시 제 214 호('88.8.25)로 실시계획인가된 신장도시계획시설(하천 • 한강)에 대한 사업을 변경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공람공고합니다.

1990. 7.14.

하 남 시 장

1. 사업시행변경 내용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폭 원 (m)	연 장 (m)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하 천	한강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	하남시 선동 -배알미동	100 -1,800	13,500	8,510,237	8,523,817	13,580

2.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3. 공람기간 : 공보(도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과 및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

5. 사업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 및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한강개발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 있으신분은 우리시에 의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	기관의 장
람	

제 2359 호
1990년 8 월 13 일(월)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84호 양평및 용문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2
○경기도고시 제 28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7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고시제 54호 포천 - 신철원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 편입토지및 지장물
세목고시..... 8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고시제 59호 문산 - 전곡간 도로개수및 포장공사 편입토지및 지장물
세목고시..... 14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32호 K.S표시정지처분 해제공고.....17
○경기도공고 제 234호 비료생산업 품목추가공고.....18
○경기도공고 제 235호 어업면허 처분공고.....19

시군행정

○수원시고시 제 34호 수원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여객정류장)사업시행
변경허가고시..... 19

회 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부천시고시 제 24호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21
○부천시고시 제 26호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22
○부천시고시 제 27호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26
○안양시고시 제 203호 서울,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시행허가고시..... 34
○안산시공고 제 158호 공인신조공고.....128
○안산시공고 제 162호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처분)공고.....128
○화성군공고 제 34호 신왕-수직간 도로확장·포장공사 편입토지 세목고시..... 129
○김포군공고 제 152호 자동차 강제처리공고..... 129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284 호

1. 경기도고시 제 58 호(85.3.13)로 결정된 양평도시계획건설(도로 : 대로 3류 6 호) 및 경기도고시 제 31 호(88.2.13)로 결정된 용문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류 1 호)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평군청 및 양평읍, 용문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년 8 월 7 일

경 기 도 지 사

다 음

가. 양평도시계획시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

2) 시설의 종류및명칭 : 종류 - 도로
명칭 - 대로 3류 6 호

3)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명 칭	폭	연장(m)	면적(㎡)	비 고
도시계획결정	대로3류6호	25	2,035	50,875	
실시계획인가	〃	〃	140	3,500	

나. 용문도시계획시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일원

2) 시설의 종류및명칭 : ┌ 종류 - 도로
└ 명칭 - 중로1류1호

3)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명 칭	폭(m)	연장(m)	면적(㎡)	비 고
도시계획결정	중로1류1호	20	485	6,700	
실시계획인가	〃	〃	100	2,000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 소 : 양평국 양평읍 양근리 448번지

성 명 : 양평군수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 공 : 인가일로 부터

준 공 : 1990.12.31

마.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및 지목과 소유자이외의 주소, 성명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사. 도면 : 별첨과 같음 (생략) 끝.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성 명	
1	양평읍 양근리	183-4	대	1,127	305	양평군양평읍양근리 184-5	심 응 래	
2	〃	184-7	〃	590	191	〃 184	김 기 영	
3	〃	186-9	〃	89	80	〃 186	신 정 한	
4	〃	192-81	〃	545	3	〃	〃	
5	〃	192-17	〃	3,590	81	서울종로구세종로 100	한국전기 통신공사	
6	〃	183-23	도로	17	17	양평군양평읍양근리 184	천 정 조	
7	〃	184-4	대	56	56	〃 184-5	심 응 래	
8	〃	186-8	〃	69	69	〃 291	장 재 찬	
9	〃	186-7	〃	30	30	〃	〃	
10	〃	192-169	〃	69	69	〃	〃	
11	〃	192-168	〃	79	79	〃	〃	
12	〃	192-167	〃	36	36	〃	〃	
13	〃	186-6	〃	50	50	〃	〃	
14	〃	186-5	〃	70	70	〃	〃	
계		14		㎡ 6,417	㎡ 1,136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편 입 지 장 물 조 서

일련번호	지장물 소재지	지 번	편입면적	용 도	구 조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1	양평읍 양근리	184-7	3 ㎡	주 택	세멘브럭 세멘기와	양평군양평읍 양근리 184	김기영	
2	〃		2	화장실	세멘브럭 스레트	〃	〃	
3	〃		4	창 고	〃	〃	〃	
4	〃	186-9	4	〃	세멘브럭 스라브	〃 186	신정한	
5	〃		7	〃	세멘브럭 스레트	〃	〃	
6	〃	183-4	1 식	정화조	콘크리트 조	〃 184-5	심응래	
7	〃		25	담 장	조적조	〃	〃	

편 입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1	용문면 다문리	707-2	대	205	159	양평군용문면다문리 706	남순임	
2	〃	707-9	〃	69	8	〃	〃	
3	〃	707-10	〃	50	1	〃	〃	
4	〃	708-1	〃	142	97	〃	〃	
5	〃	708-7	〃	331	118	〃	〃	
6	〃	708-2	〃	225	85	〃 화전리 190	김봉열	
7	〃	708-6	〃	341	49	〃 다문리 706	남순임	
8	〃	709-3	〃	367	102	〃	양평군 (다문국교)	
9	〃	710-4	〃	122	8	〃	〃	
10	〃	710-5	〃	268	268	〃 832	이종배	
11	〃	626	학교용지	15,947	847	〃	양평군 (다문국교)	
계		11		18,167㎡	1,842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편 입 지 장 물 조 서

일련번호	지장물 소재지	지 번	편입면적	용 도	구 조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1	용문면 다문리	710-4	2	주 택	목 조 스레트	양평군용문면 다문리 710-4	최 종 운	
2	〃	710-5	64	〃	세멘브럭 세멘트	〃 832	이 종 배	
3	〃		22	축 사	〃	〃	〃	
4	〃	626	4	창 고	〃	〃	용문테니스 크 럽	
5	〃	707-2	14	〃	목 조 스레트	〃 707-2	박 원 태	
6	〃		1	주 택	세멘브럭 스레트	〃	〃	
7	〃		7	〃	〃	〃	〃	
8	〃	709-9	53	〃	목 조 스레트	〃 707-9	김 선 영	
9	〃	708-1	53	〃	목조브럭 스레트	〃 708-1	박 재 한	
10	〃	708-2	36	〃	세멘브럭 세멘기와	〃 708	정 종 해	
11	〃		16	〃	세멘브럭 스레트	〃	〃	
12	〃	626	2	화장실	〃	〃 626	다문국교	
13	〃	626	2 면	테니스 장		〃	용문테니스 크 럽	

고 시

경기도 고시 제 287 호

광명시 철산동 245 번지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 33 조의 5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광명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0 년 8 월 10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분양주택 및 직장조합주택)

나. 사업주체 : 쌍마물산㈜ 대 표 장 수 동

대신증권직장주택조합 조합장 두 현 대

동서증권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이 완 희

흥국생명직장주택조합 조합장 변 영 래

통일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조 웅 식

대우통신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주 성 채

세일로직장주택조합 조합장 우 명 균

철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 성 찬

다. 사업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45 번지

라. 대지면적 : 12,350.20 ㎡ (사업시행면적 : 12,350.20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2-15 층 3 동 384 세대

바. 사 업 비 : 17,900,011 천 원

사. 사업기간 : 1990.9.1 - 1991.12.30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2.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사업면적 (㎡)			토지소유자	
구	동			(㎡)	계	대지	도로	주소	성명
광명시	철산동	245	학교용지 ('90. 1.5 폐지결정)	12,350.2	12,350.2	12,350.2		동대문구 답십리동 488-327	쌍마물산(주) 장수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직장주택조합외 6개주택조합
계				12,350.2	12,350.2	12,350.2			

3. 도면 : 별첨과 같음 (생략)

4. 기타 : 관계도서는 광명시 주택과에 비치 보관.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54 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51 호 (1990.7.5) 로 변경 고시된 포천-신철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토지수용법 제 1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가. 편입토지 세목조서(경기도구간)

※ ( ) : 당초지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공부	편입	주소	성명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46-1 (46)	전	8,423	173	포천군신북면기지리 266	조만형
					〃 〃 〃 318	조득형
					〃 〃 〃 314	조운형
					〃 〃 〃 342	조덕형
					〃 〃 〃 311	조보형
					〃 〃 〃 316	조관형
					〃 〃 〃 264	조찬형
					〃 〃 〃 342	조언형
					〃 〃 〃 315	조국형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60-3 (60-1)	전	625	521	서울시관악구노량진동산 11	김원기
	326-4 (326-1)	전	2,036	32	포천군·읍·신읍 4 리 42	강경희
					포천군·읍·신읍 3 리 41-2	신읍 3 리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설정)
					포천군·읍·신읍리 160	포천대건 신용협동 조합 (근저당 설정)
	328-6 (328-3)	전	5,117	51	포천군신북면기지리 51	김시복
	365-1 (365)	〃	2,225	243	충남천안시문화동 2 가 102	청송심씨 제주목사 공종중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195-1 (195)	전	4,582	886	포천군시북면만세교리 192	이 동 수
	197-1 (197)	〃	1,468	537	〃	이 동 수
	198-1 (198)	〃	3,514	905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47	홍 종 환
	199-2 (199)	〃	4,840	611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38	홍 종 현
					포천군·읍·신읍리 191-6	포천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201-3 (201-2)	전	750	161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38	홍 학 수
					포천군·읍·신읍리 29	포천단위농 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정)
					서울시중구충정로1가 75 번지 (포천군지부)	농업협동 조 합 중 앙 회 (근저당권 설정)
	63-21 (63-13)	대	801	2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38	홍 종 현
					포천군·읍·신읍리 191-6	포천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 권설정)
	63-20 (63-14)	전	545	79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38	홍 종 현
	63-19 (63- 9)	대	367	239	〃	홍 종 현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소 유 자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63-18 (63-5)	대	245	156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38	홍종현
	47-11 (47-5)	〃	615	526	〃 47	홍봉길
	47-10 (47-4)	전	734	445	〃	〃
	45-11 (45-4)	대	423	88	〃	홍종환
	45-10 (45-3)	전	1,240	146	〃	〃
	52-9 (52-8)	답	2,116	20	〃 37	조남천
	52-10 (52-8)	〃	2,116	20	〃	〃
	57-2 (57-2)	〃	116	116	〃 45	최정희
	53-12 (53-3)	〃	988	88	〃 37	조남천
	53-9 (53-7)	〃	2,034	1,185	〃	〃
	326-5 (326-2)	〃	529	2	포천군·읍·신읍리 42	강경희
					〃 41-2	신읍3리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설정)
					포천군·읍·신읍리 160	포천대건 신용협동 조합 (근저당권 설정)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53-11 (53- 3)	답	988	3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37	조남천
	917-21 (917-15)	〃	598	564	〃 609	신현창
	917-20 (917- 8)	〃	919	5	〃	신현창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m^2)		소유자	
			공부	편입	주소	성명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917-19 (917-12)	답	466	433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609	신현창
	917-18 (917-16)	〃	532	60	〃	〃
	899-1 (899-1)	〃	347	347	〃	〃
	900-3 (900-3)	대	23	23	〃 900	임진호
					〃	임연호
	938-7 (938-2)	임	8,562	65	서울시마포구염리동 170-4 진주아파트 3 동 610 호	김병호
					서울시도봉구미아동 302-42	김성규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369 현대아파트 63-402 호	김병일
	904-4 (904-1)	임	3,954	159	포천군영중면금주리 900	임연호
					〃	임진호
	905-4 (905-2)	전	3,537	2,268	〃	임연호
					〃	임진호
	904-3 (904-1)	임	3,954	212	〃	임연호
					〃	임진호
	906-4 (906-3)	전	1,864	432	〃	임연호
					〃	임진호
	879-1 (879)	임	5,131	3,573	포천군영중면금주리 900	임연호
					〃	임진호
	873-5 (873-2)	잡	2,312	2,160	서울시강남구논현동 89-8	양재규
	873-1 (873-1)	〃	267	267	〃	〃
	874-8 (874-2)	하천	2,476	1,289	〃	〃
	870-17 (870-12)	임	1,014	1	〃	〃
	870-16 (870-11)	〃	613	25	포천군영중면금주리	황관복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소유자	
			공부	편입	주소	성명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870-16 (870-11)	임			서울시강남구논현동 89-8	양재규
	870-15 (870-4)	〃	548	76	서울시강남구논현동 89-8	〃
	874-6 (874-1)	잡	740	410	〃	〃
	874-7 (874-4)	〃	966	315	〃	〃
	917-11 (917-11)	도	36	36	포천군영중면금주리 609	신현창

나. 편입지장물 세목조 경기도구간

소재지	지 번	지장물명	규 격	확정	수 량	소유자	
						주 소	성명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915-15	자두나무	4년생		6주	포천군영중면금주리 917	신현창
	915-12	난	5년생		4주	〃	〃
		주목	8년생		8주	〃	〃
	904-1	잣나무	25년생		67주	포천군영중면금주 3리900	임정호
	904						
	906-3						
	888	분묘	유연단장		1기	포천군영중면금주 3리 900	임정호
	917-15	간이주차장	비닐천막		32.4 ㎡	포천군영중면금주리 917	신현창
	-12	분수대	조경용		1식	〃	〃
		화단	〃		471.7 ㎡	〃	〃
		간판	체제아크릴		1식	〃	〃
		회양목	10년생		29주	〃	〃
		단풍나무	17년생		4주	〃	〃
		향나무	30년생		36주	〃	〃
		철쭉나무	5년생		35주	〃	〃
		목련나무	5년생		3주	〃	〃
		벚나무	10년생		2주	〃	〃
		은수원사시	10년생		2주	〃	〃
		복숭아	3년생		2주	〃	〃
		전나무	5년생		1주		
포천 신북 만세교리	63-6	담장	브럭		30 m	포천군신북면만세교리	홍종춘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59 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51 호(90.7.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문산-전곡간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토지수용법 제 1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당 청 국도과(02-752-8117) 및 현장사무실(0355-32-034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1990 년 월 일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 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적성면장현리	79-5	전	127	파주군적성면장현리 325	채 수 혁	
〃	79-8	전	1,093	파주군적성면장현리 325	채 수 혁	
〃	79-15	전	3,983	동 소 347	김 성 제	
〃	77-7	전	88	동 소 342	정 갑 수	
적성면적암리	133-5	전	90	인천시북구효성동 261-3	이 순 호	
				근저당설정	채 무 자	
				적성면적암리 29	한 귀 녀	
				근저당권자 : 적성면	단위농협	
〃	132-3	전	450	인천시북구효성동 261-3	이 순 호	
전곡읍양원리	484-4	전	919	전곡읍양원리	이 춘 혜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전곡읍양원리	484-3	하천	102	전곡읍양원리	김형재	
〃	363-1	전	1,837	연천군청산면초성리 450	이상옥	
〃	산 16-1	임야	983	성동구행당동 322-338	김의식	
〃	373-6	잡종지	1,506	의정부시의정부동 259	조경호	
〃	산 18-4	임야	132	연천읍차탄리 8	정동필	
	-5			연천읍차탄리	정관해	
				동 소 462	정동훈	
				전곡읍양원리	정동주	
〃	361-3	전	1,447	동 소 53	김경균	
〃	361-5	전	318	동 소 53	〃	
〃	산 29- 5	임야	113	동 소 53	〃	
〃	산 29- 6	〃	40	동 소 53	〃	
〃	산 29- 7	〃	244	동 소 53	〃	
〃	산 24- 6	〃	930	성북구보문동 271-61	박상채	
				가등기 설정		
				권리자 : 강남구압구정동 40	장순원	
				한양아파트 3 3 동 601 호		
〃	산 21-3	임야	208	양주군광적면덕도리 113	황영주	
전곡읍고능리	산 57-3	〃	738	전곡읍전곡리 336	염동식	
〃	119-1	전	79	경북경산군안심면동호동 6	강윤옥	
〃	118-1	〃	320	전곡읍전곡리 326	정원명	
〃	산 63-4	임야	2,379	동 소 326	박동근	
〃	산 61-3	〃	311	전곡읍고능리산 64-1	최현봉	
〃	산 62-3	〃	529	전곡읍전곡리	박동근	
〃	117-1	전	175	〃 〃 326	정원명	
〃	116-1	답	110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지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전곡읍고능리	산 64-4	임야	1,977	전곡읍고능리산 64-1	최현봉	
〃	산 65-3	〃	163	〃 〃 604	천선봉	
〃	85-2	답	66	〃 〃 336	김만두	
	-3				국방부	

지 장 물 조 서

* 소재지 :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장현리

지번	지장물명	규격	수량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80 - 4	인삼밭	3년생	29 칸	파주군적성면장현리 102-3	이동우
〃	〃	2년생	35 칸	동 소 348-3	김향근

* 소재지 :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어유지리

27 - 1	인삼밭	3년생	21 칸	인천시동구송림 5 동 98-1	정수웅

* 소재지 :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

133-5	인삼밭	5년생	59 칸	김포군하성면양택리 270	김세제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32 호

KS 표시정지처분해제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정지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8. 8.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극동기연
2. 소 재 지 : 안산시 성곡동 630-2
3. 대 표 자 : 신 용 하
4. 허가번호 : 제 6126 호
5. 규격번호 : KS 6232
6. 품 명 : 체인블록
7. 종류및등급 : L급 1½톤
8. 해제일자 : 1990. 8. 7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34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1 항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품목추가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8. 9

경 기 도 지 사

허 가 번 호		10 - 가 - 복합 4 - 2		허가년월일	90. 8. .
신청인	성 명	임 용 우		주민등록번호	380706 - 1009727
	주 소	광주군 실촌면 신대리 16번지		상 호	㈜ 비 왕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신대리 16번지			

비료의종류와 품목	보증성분량 (%)		기타의 규격	생산능력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제 4 종복합비료 (엽면시비용) (8 - 0 - 3) (액 체)	질소전량 : 8 수용성인산 : 0 수용성카리 : 3 수용성붕소 : 0.15 수용성동 : 0.05	질소, 인산, 카리 각각의 최대주성분량의 합계량의 함유율 1 %에 대하여 황청산화물 : 0.005 비 소 : 0.004 아 질 산 : 0.02 뷰렛태질소 : 0.01 설 파 민 산 : 0.005		1.8 ㎘ (1 일) (1,500 ℓ)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35 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처분하였기 수산업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합니다.

1990. 8. 6.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양식품종 (채포물)			어업권자		면허기간
		위 치	면 적	주 소	성 명	
경기공동어업 면허제 10 호	붕어, 잉어 기타	화성군우정면 이화리지선 (남양호)	㎡ 25,000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925-2	이화새마을 양식계장 송헌섭	90.8.6 93.5.7

* 제한 및 조건

○ 매월 생산실적을 익월 5 일까지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고 시

수원시고시 제 34 호

1. 수원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와 권선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7. 30.

수 원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가. 사업시행 변경 허가내용

1) 사업시행지

- 당초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381 외 6필
- 변경 : 〃 37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수원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 명칭 : 수원여객㈜

3)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 당초 : 12,696 ㎡ - 변경 : 12,536 ㎡

○ 규모 - 건축면적 ; 당초 : 397.62 ㎡
변경 : 496.59 ㎡
건축연면적 ; 당초 : 438.12 ㎡
변경 : 537.09 ㎡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 분	계	건축부지	주차및정류장	승·하차부지	녹지부지
당 초	12,696	544	6,985	84	5,083
변 경	12,536	643	6,726	84	5,083

4) 시행자의 주소·성명

- 당초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6 ㈜수원여객 대표이사 양 원 철
- 변경 : 〃 〃 이 승 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 '90.12.30

6)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7)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8) 기타 관계도면 : 생략

나. 허가조건 (생략). 끝.

부천시고시 제 24 호

고 시

경기도고시 제 312 호('88.11.26)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0. 8. 10.

부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담구 역곡동 산 33 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부천도시계획시설(수도)
- 명칭 : 역곡배수지

3. 면적 또는 규모

o 면적 : 9,542 ㎡

o 규모 - 배수지 : Q = 5,000 ㎥ × 2 지

- 관리사 : A = 87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o 주소 : 부천시 중구 원미동 71 번지

o 성명 : 부천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 수 : 인가일로부터 7 일이내

o 준공예정 : '90.12.31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역곡	산33		50,877	9,542	역곡 165	죽산박씨 능암공파 종중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6항과 동일)

8. 도면은 별첨표시와 같음(도면생략)

9. 관계도서는 부천시 건설국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공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고시 제26호

고 시

1. 경기도고시 제338호('87.8.29)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8. 8.

부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중구 고강동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류 : 부천도시계획시설

o 명칭 : 도로(중로3류17호선)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3.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연	장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결 정	금회실시계획인가
중 로	3	17	12	912	48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소 : 부천시 중구 원미동 71

○ 성명 : 부천시장(중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인가일로부터 7일이내

○ 준공예정 : '90.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별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8. 도면의 별첨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제 2359 호

경 기 도 표

편 입 용 지 조 서

단위 : ㎡

도면일련번호	소재지 동명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비고
합계					8,058/16필지					
1	중구고강동	257-2	전	1,237	104	부천 중구 고강 319	변 호 면			
2	〃	495	도로	4,190.6	101	부천 중구 원미 87-2	부 천 시			
3	〃	256	답	3,438	5	부천 중구 고강 243	변 석 호			변석호외 5인 (공 유)
	〃	〃	〃	〃	5	〃	원 남 순			
	〃	〃	〃	〃	5	〃	변 명 옥			
	〃	〃	〃	〃	5	〃	변 명 화			
	〃	〃	〃	〃	5	〃	변 명 숙			
	〃	〃	〃	〃	5	〃	변 명 애			
4	〃	257-4	〃	1,138	453	부천 중구 고강463	곽 노 첨			
5	〃	257-1	〃	2,931	1,239	〃	〃	중구 원종 233	오정단위농협	근 저 당 권
6	〃	250-4	〃	1,642	21	부천 중구 고강 244	변 호 근			
7	〃	250-3	〃	2,249	741	〃	〃			

8	중구고강동	250-2	답	218	49	경성 당산정 237-37	신 용 길			
9	〃	251-1	전	1,742	199	부천 중구 고강 244	변 충 원			
10	〃	253	〃	747	94	〃 142	정 진 성			
11	〃	254	〃	1,293	92	〃 244	변 호 칠			
12	〃	541	도로	6,415	21	국	농림수산부			
13	〃	243	대	1,071	33	부천 중구 고강 243	연 복 운			
14	〃	산 45-11	임	27,342	2,177	서울시강서구목동신시가지(A) 326동 403호	변 호 근			변호근외 1인 (공유적분)
	〃	〃	〃	〃	〃	〃 502호	변 충 원			
15	〃	산 45-7	〃	1,304	37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88-4	이 경 환			
16	〃	산 33-2	〃	5,405	2,355	서울시강서구외발산동 196번지	경주최씨 인동파 종중			
				이	하	여	백			

부천시고시 제 27 호

고 시

1. 경기도고시 제 237 호('87.8.29)로 변경 결정 및 경기도고시 제 97 호 ('88.4.13)로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 26 조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 건설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8. 8.

부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중구 오정동, 삼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류 : 부천도시계획시설

o 명칭 : 도로(중로 1 류 3 호선)

3.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연 장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결 정	금회실시계획인가
중 로	1	3	20	2,850	1,66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o 주소 : 부천시 중구 원미동 71

o 성명 : 부천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 수 : 인가일로부터 7일이내

o 준공예정 : '91.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진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8. 도면은 별첨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공구)									
1	부천시중구오정동 189-2	도로	879	879		건설부			
2	〃 190-2	〃	380	380		부천시			
3	〃 190-4	〃	509	509		〃			
4	〃 181-10	〃	180	180		철도청			
5	〃 181-11	전	146	146		〃			181-5 에서 분할
6	〃 181-12	도로	247	247		〃			181-6 에서 분할
7	〃 181-13	전	330	330		〃			181-7 에서 분할
8	〃 181-14	도로	70	70		부천시			187-6 에서 분할
9	〃 187-15	〃	118	118		철도청			187-11 에서 분할
10	〃 187-12	〃	7	7		건설부			
11	〃 187-13	〃	52	52		〃			187-1 에서 분할
12	〃 186-10	〃	28	28		철도청			186-2 에서 분할
13	〃 182-9	〃	396	396		부천시			182-6 에서 분할
14	〃 182-8	〃	59	59		산림청			182-7 에서 분할

경 기 도 표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비고
15	부천시 중구 오정동 산 32-4	임야	397	397		철도청			
16	〃 182-4	전	357	357		재무부			
17	〃 산 32-2	임야	198	198		철도청			
18	〃 110-2	도로	717	717		〃			
19	〃 110-3	전	182	182		〃			
20	〃 110-30	도로	800	800		건설부			
21	〃 111-9	〃	69	69		철도청			
22	〃 111-32	전	20	20		부천시			
23	〃 103-8	도로	245	245		철도청			
24	〃 103-11	〃	172	172		〃			
25	〃 103-9	구거	747	747		〃			
26	〃 103-6	도로	717	717		〃			
27	〃 103-12	〃	975	975		〃			
28	〃 102-2	〃	17	17		〃			
계	28 필지		9,014	9,014					

(2공구)										
1	부천시중구삼정동	22-22	도로	50	50	부천시중구심곡동 586-12	부평수리조합			
2	〃	22-19	〃	4,374	4,374		건설부			
3	〃	143-4	구거	20	20	김포군김포읍사우리 288	한강농지개량조합			
4	〃	143-1	도로	1	1		건설부			
5	〃	25-4	〃	264	264		〃			
6	〃	25-6	〃	63	63	〃	한강농지개량조합			
7	〃	25-3	〃	264	264		건설부			
8	〃	20-10	〃	3,419	3,419		〃			
9	〃	28-7	〃	555	555		〃			
10	〃	128-2	〃	750	750		〃			
11	〃	122-2	〃	1,180	1,180		〃			
12	〃	120-2	〃	443	443		〃			
13	〃	68-5	〃	5,791	5,791		〃			
14	〃	91-7	〃	274	274		〃			
15	〃	91-1	〃	93	93	부천시내동 182	이유제			

경 기 도 보

일련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지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비고
16	부천시중구삼정동 91-1	전	165	165		재무부			
17	〃 354-24	도로	881	881		건설부			
18	〃 70-1	〃	20	20	김포군김포읍사우리 288	한강농지개량조합			
19	〃 70-26	〃	126	126		건설부			
20	〃 70-3	구거	6,865	800	〃	한강농지개량조합			
21	〃 70-24	도로	188	188		국세청			
22	〃 70-18	대지	30	30		재무부			
23	〃 70-16	도로	231	231	인천시중구해안동 2가 5	인천시농협협동조합			
24	〃 70-11	〃	1,785	1,785	〃	〃			
25	〃 71-5	구거	1,296	180	김포군김포읍사우리 288	한강농지개량조합			
26	〃 71-23	도로	942	942		건설부			
27	〃 72-1	구거	1,140	160	〃	한강농지개량조합			
28	〃 353-20	도로	474	474		건설부			
29	〃 49-6	구거	1,078	100		〃			

30	부천시중구삼정동48-54	도로	3,008	3,008		건설부			
31	〃 48-63	〃	3	3	서대문구만리동2가202-18	신병연	중구을지로 2가 36-1	중소기업은행	
32	〃 48-16	〃	109	109		건설부			
33	〃 48-62	〃	294	294		〃			
34	〃 352-11	하천	74	74		〃			
35	부천시중구내동 222-43	도로	3,822	200		〃			
계	35 필지		40,072	27,311					

경 기 도 보

일련번호	소재지 동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저축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비고
(1공구)										
1	부천시중구오정동	181-7외1필 (181-7)	주택	브럭스레트	57	중구오정동 181	최도영			
2	〃	산 32-4	창고	〃	40	〃 112	최승오			
3	〃	산 32-4	주택	〃	156	〃 산 32-3	서정웅			
4	〃	111-30외1필 (111-31)	〃	〃	154	〃 111-31	강경수			
5	〃	111-30외2필 (111-16, 111-24)	〃	〃	123	〃 111-30	김윤자 한진규 현영근			
6	〃	111-30외2필 (111-23, 111-24)	〃	〃	18	〃 111-23	윤명운			
(2공구)										
1	부천시중구삼정동	222-38	수위실및 사무실	연와스라브및 브럭스레트	35.6㎡	중구내동 222-38	태양연와			
2	〃	48-17	콘크리트 문주	ϕ = 0.8 = 2.0	2개	중구삼정동 48-17	부천무역			
3	〃	48-24	경비실및 식당	스럭스라브및 브럭스레트	42.3	〃 48-24	도일제강			
4	〃	48-54	공장	브럭,스레트	50.3	서초구방배동 2877-24, 126호	박명웅			
5	〃	48-59	사무실	조립식	30.0	중구삼정동 48-59	제우산기			

6	부천시중구삼정동	48-59	공 장	브럭 , 천막	16.8	중구춘의동 205-5	유 재 택			
7	〃	48-60	창고및 수위실	철골 , 천막 브럭 , 스라브	27.8	〃 48-59	제우산기			
8	〃	70-13	공 장	스레트 , 천막	28.5	중구삼정동 85-61	이 인 청			
9	〃	70-60	주 택	브럭 , 스레트	19.7	중구내동 11-9	〃			
10	〃	〃	점 포	〃	57.5	〃	안 성 재			
11	〃	79-19	창 고	적 연 와 , 스 레 트	21.0	중구원종동 233	오정농협			
12	〃	71-24	계 량 기	철 조 물	10×3	인천시북구부평동 70-90	임 산 묵			

경 기 도 보

고 시

안양시고시 제 203 호

1. 건설부고시 제 250 ('90.5.3)호로 결정 및 경기도고시 제 269 ('90.7. 25)호로 지적승인된 서울,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허가하고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 허가내용 및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8. 1.

안 양 시 장

가. 서울,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시행 허가내용

1) 사업시행지 : 안양시 고천동~과천시 문원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 광장
- 명칭 : 대 1-8 호선, 대 1-65 호선, 제 12,185 호광장

3)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산 1번지 경기도지사

4)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구간(결정구간)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 도 로

단위 : m

명 칭	폭	연 장	시 점	종 점	비 고
대 1 - 8 호선	35-176.40	7,400	도시계획구역계 포일동 산 1 - 1	제 12 호 광장	
대 1 - 65 호선	35	1,910	과천시 문원동 제 185 호 광장	도시계획구역계	

— 광 장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m^2)	비 고
제 12 호 광장	교 통 광 장	의왕시 왕곡동 376 번지 일원	82,058	
제 185 호 광장	〃	과천시 문원동	47,458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허가일로부터 500 일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용지 및 물건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 성명

나. 도면은 별첨과 같음 (도면생략)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39 - 3	전	562	507	전	이희주	왕곡리 384
2	39 - 2	도	350	26	도		의왕시
3	39 -1	전	1,058	1,048	전	이희주	왕곡리 384
4	38 - 2	전	1,339	8	전	전주이씨 태성순공 파종회	오전리 299
5	38 - 1	전	2,704	1,769	전	〃	〃
6	40 - 4	도	112	112	도	김용진	왕곡리 485
7	40 - 2	전	1,597	1,597	전	〃	〃
8	40 - 1	전	1,976	1,976	전	이삼욱	고천리 13-7
9	40 - 3	도	73	73	도	〃	의왕시
10	40 - 6	전	140	140	전	이삼욱	〃 40
11	40 - 7	전	82	82	전	〃	〃
12	41	전	682	682	전	엄근원	293
13	41 - 1	전	317	317	전	〃	〃
14	41 - 2	전	287	287	전	〃	〃
15	42 - 5	전	25	25	전	김세영	왕곡리 384
16	42 - 4	전	1,327	1,327	전	〃	〃
17	42 - 3	도	175	175	도	〃	〃
18	43 - 2	답	4	4	답	엄근원	고천리 293
19	44 - 3	답	137	137	답	조명학	〃 496-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고천 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근저당권설정) 왕곡새마을금고	
	〃		
	〃		
	〃		
	〃	(가압류/근저당권설정) 대한보증보험, 의왕농협	
	〃		
	〃		
	미 등 기		
	〃		
	좌 동	(압류)시흥군	
	미 등 기		
	〃		
지목상이 (답)	좌 동	(근저당권설정) 왕곡새마을금고	
	〃		
	미 등 기		
	좌 동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0	49 - 16	답	11	11	답	오세용	서울용산구용문동 1-69
21	49 - 15	답	81	81	답	〃	〃
22	49 - 9	전	671	671	전	이홍욱	고천리 13-2
23	49 - 10	답	558	558	답	오세용	서울용산구용문동 1-69
24	49 - 6	대	106	1,275	대		시 흥 군
25	49 - 11	대	474	474	대	고려합섬주식회사	서울을지 2 가 199-46
26	52 - 2	묘	505	318	묘	〃	61
27							
28							
29	439 - 4	천	462	172	천	국	건 설 부
30	439 - 97	천	19,093	3,268	천	국	〃
31	49 - 17	제	164	164	제	국	〃
32	49 - 18	천	22	22	천	오세용	서울용산구용문동 1-69
33	44 - 2	답	471	471	답	조명학	496-2
34	43	답	1,685	1,685	답	엄근원	고천리 293
35	45	천	1,098	1,098	천		미 등 기
36	46	전	321	321	전	고려합섬주식회사	서울중구태평로 2 가 70-5
37	37 - 1	답	3,395	259	답	이경식	안양시석수동주공APT 18-402
38	47 - 3	전	572	572	전	한상훈	강남구역삼동 740-4
39	48 - 4	전	1,812	770	전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고천 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미 등 기		
	좌 동	(압류)시흥군	
(도)	32평 의왕시	도면공부상의면적상이함	
	좌 동	(지상권, 근저당권설정) 한일은행외	
	〃	〃	
	〃		
	〃		
	〃		
	〃		
	〃		
	〃		
	미 등 기		
	좌 동	(근저당권설정)한일은행외	
	〃	(가등기) 한 상 훈	
	좌 동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이용사항 재	소유자 성 명	소유자 주 소
40	439 - 5	대	331	331	대	고려합섬 주식회사	고천리 61
41	47 - 1	대	17	17	대	〃	〃
42	47 - 2	전	10	10	전	〃	〃
43	48 - 2	대	180	164	대	〃	〃
44	48 - 1	대	2,230	180	대	〃	〃
45	48 - 3	전	155	39	전	〃	서울중구태평로 2가 70-5
46	44 - 4	답	281	281	답	조명학	496 - 2
47							
48	441	도	1,051	268	도		미 등 기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고천 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근저당지상권설정) 한일은행외	
	좌 동	(근저담지상권설정) 한일은행외	
	〃	(근저당권설정) 한일은행외	
	〃	〃	
	〃	〃	
	〃		
국	미 등 기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산 107	임	68,500	605	임	조명학	496-2
2	463-2	대	282	282	대	박상엽	460-3
3	463-1	대	121	121	대	〃	〃
4	463	대	133	133	대	〃	〃
5	460-8	답	116	111	답	〃	〃
6	460-7	답	258	210	답	〃	〃
7	462-3	전	1,570	1,570	전	이철우	고천리 13
8	462-2	도	66	66	도		시 흥 군
9	461	답	618	618	답	이철우	고천리 13
10	462-1	도	23	23	도		의 왕 시
11	460-3	답	5,369	4,934	답	박상엽	460-3
12	459	답	212	212	답	〃	〃
13	460-2	답	17	17	답	〃	중구필동 3 가 39
14	460-4	답	2,522	115	답	박동현	서초구서초동 570 무지개 APT 17-801
15	458-2	전	529	317	전	장영숙	중구필동 3 가 39-2
16	458-3	전	1,412	1,366	전	〃	〃
17	458-1	전	483	483	전	〃	〃
18	457	전	9,831	1,425	전	이흥국	고천리 277
19	산 106	임	89,100	273	임	배건혁	486
20	산 105-2	임	82,310	454	임	현종엽	강남구압구정동 현대 APT 24-206
21	산 104-8	임	20,012	326	임	맹인학원	수원시인계동 249-1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왕곡 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	근저당권설정	
	〃	〃	
	〃		
	〃		
	〃		
	〃		
	〃	〃	
	〃		
	〃		
	〃		
	〃		
	〃		
이 상 욱	고원리 13		
	좌 동		
	〃		
	〃		
학교법인 광인학원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2	494-2	대	536	110	대	조명학	인계동 496-2
23	477-1	잡	10,843	38	임	김응규	484-1
24	566-15	구	14,884	57	구	국	(건설부)
25	482-4	임	393	20	전	김응규	484-1
26	482-3	임	387	199	대	〃	〃
27	482-2	잡	4,268	379	전	〃	〃
28	482-1	대	496	189	대	〃	〃
29	486-1	대	377	365	대	배진혁	486
30	488-2	전	1,517	56	전	〃	〃
31	568-3	도	444	30	도	국	건 설 부
32	490-3	대	426	131	대	배선철	486
33	490-1	대	1,217	282	대	조명학	496-2
34	489	전	1,805	26	전	〃	〃
35	470-5	전	526	68	전	김희영	485
36	470-4	전	74	23	전	조명학	496-2
37	566-16	구	806	114	구	국	(건설부)
38	469-1	답	4,142	162	답	김영주	485
39	468-9	전	1,134	664	전	김영환	오전리 349-2
40	468-10	임	1,646	541	전	최은순	485
41	457-2	도	982	216	도	한국아구르트유업㈜	중구산각동 115
42	457	답	9,831	2,606	답	이홍국	고천동 277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왕곡 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		
	〃		
	〃	소유권일부이전	
	좌 동		
	〃		
	〃		
	〃		
	좌 동		
	〃		
	좌 동	근저당권설정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43	457-1	답	268	148	답	백훈기	안양시호계동 715-7
44	456-1	답	182	180	답	〃	〃
45	460-1	답	866	116	답	〃	〃
46	456	전	1,074	705	전	조용태	20-6
47	566-4	구	940	67	구	국	미 등 기
48	566-3	구	694	189	구	국	〃
49	455	전	304	188	전		〃
50	566-29	구		166	구		미 상
51	379	답	119	116	답	박덕조	378-2
52	380	답	545	90	답	김상현 외 1 인	고천리 198-2
53	570	도	307	71	도		미 등 기
54	무지번	도		705	도	국	
55	376-3	전	826	386	전	박덕근	378-2
56	378-3	대	423	245	대	이홍욱	378
57	378-1	대	324	324	대	박진성	378-1
58	378-2	대	426	230	대	박덕조	378-2
59	377	전	1,233	739	전	전주이씨 선신한인 육파종중	고천리 13
60	산 42-1	임	275,700	230	임	양재석	중구충무로 3 가 57-8
61	374-4	잡	11,814	2,794	잡	한일기기 주식회사	374-4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왕곡 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		
	〃		
	미 등 기		
	좌 동		
	〃		
	〃		
	〃	근저당권설정	
	〃		
박덕조	좌 동		
	〃		
	〃	근저당권설정	
	〃		
	〃		
국	(산림청)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62	산 41-2	임	18,840	173	임	국	(산림청)
63	374-1	전	2,625	2,625	전	이병택	오전리 298
64	374-2	전	2,393	2,393	전	이성우	고천리 13
65	374-3	전	995	995	전	이원국	376
66	375-1	전	2,179	2,179	전	양제석 외 1 인	산 42
67	375-2	대	1,111	295	대	김윤배	강남구방배동 441-8
68	373-1	전	969	399	전	한국부레이크공업㈜ 외 2인	산 41
69	372	전	1,438	1,282	전	〃	374-4
70	362-2	전	466	346	전	한일기기 주식회사	374-4
71	362-1	전	3,243	3,243	전	전병훈	서울종로구혜화동 13-25
72	371	전	1,415	1,415	전	한일기기 외 2 인	374-4
73	370-1	전	3,240	2,657	전	이재곤	서울종로구혜화동 13-25
74	363-2	답	1,960	288	답	장두우 외 1 인	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357-1
75	369-2	전	2,010	1,206	전	박형석 외 1 인	서울동대문구제기동 1147-21
76	369-1	전	1,855	393	전	〃	〃
77	368-2	전	1,187	1,014	전	〃	〃
78	312-1	전	22,651	2,002	전	오유덕	종로구혜화동 163-25
79	363-1	답	2,585	1,771	답	이택우 외 2 인	안양시관양동 600-3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오전리 354		
	좌 동		
김택수	83	압류권리자아양세무소	
	좌 동		
	〃		
	좌 동		
	〃	근저당권설정	
	〃		
	〃	근저당권설정	
좌 동	혜화동 163-25		
	좌 동		
	〃		
	좌 동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80	360-2	전	1,283	662	전	임종수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721 진주B-1003
81	360-1	전	2,549	1,253	전	이봉욱	안양시안양동 432-3
82	산 39	임	9,818	5,054	임	정정숙 외 3 인	당리 293
83	산 41-1	임	38,610	1,397	임	한일기기(주)	374-4
84	산 40-2	임	27,190	5,602	임	구본완	중구신당동 292-35
85	347	전	1,636	504	전	국정자 외 3 인	345
86	346-1	답	4,231	1,267	답	김창묵	345
87	341-1	답	3,679	3,319	답	최효선	영광군백수읍하사리 847
88	340	전	278	105	전	이치우	144-1
89	341-2	답	2,241	907	답	국정자 외 1 인	345
90	342	대	10,231	5,832	대	김창묵	345
91	334	답	2,602	590	답	안광원	345
92	565-20	천	738	345	천	국	(국방부)
93	565-19	제	696	43	제	국	(건설부)
94	565-1	천	516,960	916	천	국	(건설부)
95	256-16	천		17	천		미 상상
96	586	도	1,197	134	도	국	미 등 기
97	276-1	전	724	265	전	나재훈	345
98	266-2	도	473	59	도	금곡운영 외 2 인	179
99	266-3	전	3,950	3,140	전	김윤영 외 2 인	179
100	565-1	도	51,696	296	도	국	(건설부)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왕곡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구자두	좌 동		
	〃		
	〃		
박정희	345		
	좌 동	청구권 가등기	
	〃		
	좌 동		
	〃		
	〃		
	미 등 기		
	좌 동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01	272-1	답	2,060	1,812	답	소대현	오전리 352
102	272-2	답	1,504	198	답	김정수	283-1
103	267	답	2,869	2,869	답	김오영	83
104	263-3	답	3,431	3,431	답	김규재	158
105	265	답	2,988	2,385	답	김문영	180
106	263-2	답	1,808	1,808	답	정윤용	155
107	264-2	답	2,621	2,621	답	표춘식	156
108	264-1	답	1,369	1,369	답	〃	156
109	259	답	4,291	3,831	답	김대영	137-4
110	257	답	853	87	답	함태복	고전리 279-3
111	256	답	1,759	1,755	답	김진철	197
112	254-1	답	2,932	2,404	답	김기덕	오전리 345
113	251	답	1,983	35	답	이재훈	345
114	253	답	572	572	답	심건섭	198
115	230-1	답	1,511	1,185	답	김진숙	군자면성곡리 83
116	229	답	770	321	답	이주일	서울용산구한남동 11-331
117	255	답	473	473	답	심건섭	198
118	260	답	3,468	3,468	답	손대현	오전리 352
119	263-1	답	2,737	2,737	답	청풍김씨 청풍군파	40
120	268	답	1,484	1,104	답	이관원	148
121	262	답	813	732	답	김진명	서울동대문구상봉동 87-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왕곡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동		
	〃		
	〃		
	〃		
	〃	근저당권설정의 왕농협동조합	
	〃		
	〃		
	〃		
	〃		
김진묵	〃		
	〃		
	〃		
	〃		
	〃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22	271-1	답	2,033	480	답	김대식	오전리 343
123	271-2	답	1,729	230	답	이형상	오전리 351
124	270-2	답	2,820	96	답	김명선	고천리 276
125	270-1	답	2,668	336	답	이춘식	156
126	261	전	635	635	전	권경점	과천시중앙동 77 주공 APT 1026-106
127	산 35	임	129,920	2,592	임	김인화	경기도고양군중면백성리 507
128	산 34	임	7,736	1,292	임	박동현 외 1 인	서울용산구이촌동 302-28
129	산 33	임	33,719	8,020	임	이주일	서울용산구한남동 11-331
130	227	전	1,144	1,036	전	〃	〃
131	226	전	420	420	전	〃	〃
132	225	전	393	393	전	〃	198
133	224-1	답	2,575	1,912	답	김훈영	103
134	584	도	1,554	190	도		미 등 기
135	217-1	답	2,340	98	답	이주일	서울용산구한남동 11-331
136	216	전		2,843	전		미 등 록
137	215-3	답	1,871	393	답	이주일	서울용산구한남동 11-331
138	215-4	답	1,025	257	답	〃	〃
139	215-2	답	1,643	657	답	〃	〃
140	215-1	답	1,435	402	답	〃	〃
141	212-2	답	3,550	410	답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왕곡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좌 동		
	〃		
	〃		
	〃		
	〃	시흥군압류	
	〃		
	〃		
	〃		
김주일	서울용산구한남동11-331		
김상국	시흥군의왕읍왕곡리39		
	좌 동		
	〃		
	미 등 기		
	좌 동		
	〃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 계 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42	212-1	답	347	347	답		대한민국
143	211	전	631	631	전	이주일	서울용산구한남동 11-331
144	210	답	496	340	답	〃	〃
145	207	답	2,334	21	답	박순길	고천리 276-2
146	산 32	임	75,370	4,082	임	이계영	서울용산구이촌동 301-160
147	산 31	임	89,260	5,618	임	〃	〃
148	376	전	1,230	654	전	이원욱	왕곡리 376
149							
150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왕곡 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이정수 외 3 인	서울용산구이촌동 300-9		
	좌 동	시흥군압류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산 137-2	임		2,045	임		미 등 기
2	441	대	1,094	288	대	황금옥	안양시 안양동 834
3	445	답	291	216	답	백광녀	오전동산 137-8
4	442	답	737	737	답	유지영	555
5	791	도	1,068	321	도		미 등 기
6	446	전	1,494	563	전	정관연	137-7
7	443	답	119	325	답	정관영	오전리 137-7
8	444	전	1,064	63	전	유지영 외 4 인	〃 55
9	789	구		263	구		미 등 기
10	250	대	447	87	대	성일통상 주식회사	196-3
11	251	답		247	답		미 등 록
12	산 137-7	임	4,264	1,742	임	노순성 외 2 인	안양호계리 668
13	452-1	대		446	대		미 상
14	792	도	455	99	도	국	미 등 기
15	산137-5	임	298	298	임	장덕길	441
16	산137-1	임	69,818	6,310	임	박응순 외 1 인	서울용산구용산동2가1-535
17	454-3	전	932	817	전	국	(재무부)
18	452-2	답		605	답		미 등 기
19	454-6	전	109	109	전	박무학	527
20	454-1	전	1,623	1,438	전	〃	〃
21	454	전	1,296	430	전	〃	695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오전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미 등 기		
	좌 동		
	〃		
유지영 외 4 인	555		
	국(건설부)		
	좌 동		
	〃		
	〃		
	미 등 기		
	미 등 기		
	좌 동		
	미 등 기		
	국(건설부)		
	좌 동		
김영철	종로구충신동 179-3	(공 유)	
	미 등 기		
	〃		
	좌 동	(근저당권설정)의왕농협	
	〃	〃	
조재생	안양시안양동 833-1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2	454-5	전	565	559	전		527
23	453-2	답	182	182	답		〃
24	453-1	전	512	422	전	박무학	〃
25	453	전	846	843	전		미 등 기
26	790	도	1,812	568	도	국	(건설부)
27	산 128	임	7,934	1,245	임	고준식	서울강남구삼성동 68-6 호
28	산 129	임	9,719	1,590	임	윤한수	수암면 월암리 127
29	산 134-2	임	8,231	771	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종로구명륜동 3 가 53
30	631-3	전	393	393	전	유지학	594
31	631-2	전	165	165	전		미 등 기
32	산 133-3	임	4,364	562	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종로구명륜동 3 가 53
33	631-1	전	311	194	전		미 등 기
34	산 132	임	7,835	310	임	김복순 외 3 인	김포군양촌면구태리 376
35	631	전	962	962	전	유기학	594
36	625-1	답	3,441	725	답	〃	〃
37	630	전	271	180	전	김전식	서울영등포구노량진동 282
38	산 131	임	3,868	547	임	박응순	서울용산구용산동 2 가 1-535
39	632	답	4,403	2,170	답	이기남	산 19-1
40	787	구	350	172			미 등 기
41	634	전	99	76	전	김이곤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 247-131
42	산 19-1	임	35,901	5,626	임	이기남	산 19-1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오전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근저당권설정) 의왕농협	
	〃	〃	
	〃	〃	
자곡백태탕	인천 충정 정옥		
	좌 동		
	〃		
	〃	노인숙외 6인 (가처분)	
	〃		
	〃		
	미 등 기		
	좌 동		
	미 등 기		
	차경호, 김경기, 김수자(공유)		
	좌 동		
	〃		
	〃		
	〃		
	미 등 기		
	좌 동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43	642	전	2,684	2,382	전	이 태 한	서울동대문구망우동 525-16
44	643	전	1,243	988	전	유송열 외 5 인	서울관악구노량진동 294-162
45	827	도	2,571	294	도	국	(건설부)
46	641	전	2,337	649	전	유필열	556
47	734-11	전	2,664	1,350	전	이 기 남	산 19-1
48	778	도	1,840	312	도	국	건 설 부
49	646-8	답	2,519	655	답	이 정 의	670
50	646-9	답	2,760	2,760	답	이 병 훈	357
51	734-9	전	823	80	전	국	(재무부)
52	734-8	전	678	584	전	이 기 남	산 19-1
53	734-7	전	96	21	전	국	(재무부)
54	733-1	답	1,983	1,717	답	이 희 덕	안양시비산동 35
55	785	도	1,696	642	도	국	(건설부)
56	산 140	임	13,587	172	임	김 경 왕	서울시서대문구갈현동 480-45
57	647	답	1,560	290	답	이 태 한	서울동대문구망우동 525-16
58	648-1	임	668	107	임	홍 진 표	군포읍금정리 290-1
59	721-4	답		383	답		미 등 록
60	727-3	답	945	945	답	박 본 규	731
61	728	묘	403	403	답		미 등 기
62	734-1	전	1,745	16	전	이 기 남	산 19-1
63	737	답	1,983	813	답	이 희 덕	안양시비산동 35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오전 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좌 동		
	〃		
	〃		
	〃		
	국(건설부)		
	좌 동		
	〃		
	〃	(압류)안양세무서	
	〃		
	〃		
	〃		
	좌 동		
	좌 동		
	미 등 기		
	좌 동	(압류)시흥군	
	미 등 기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64	731-1	임	601	601	임	박본규	731
65	729	전	500	180	전	이태한	서울동대문구망우동525-16
66	731	임	1,297	1,161	임	김영숙	서울서초구서초동산189-1 한양APT 3-902
67	732	답	2,879	2,426	답	이희철	안양시비산동35
68	733-3	답	707	187	답	허광은	394-2대방 다동101호
69	726	답	949	115	답	이희철	안양시비산동35
70	776	구	48,798	3,186	답		미 등 기
71	723	전	1,005	743	전	최성희 외 1인	남양주군화도면마석우리 520-1
72	722	전	1,170	778	전	허광석	745
73	무	수		1,568	수		미 등 기
74	723-1	답	304	304	답	이태한	서울동대문구망우동525-16
75	721-2	답	2,489	2,489	답	이진세	750
76	723-2	전	403	403	전	이태한	서울동대문구망우동525-16
77	721-1	답	2,407	2,407	답	노장선	750
78	720	답	6,185	1,399	답	유신열	539
79	693-2	답	1,732	768	답	이규칠	610-3
80	693-1	답	575	336	답	〃	〃
81	698	답	364	364	답	유병열	오전동 551
82	782	도	684	374	도	국	(건설부)
83	699	답	2,595	2,595	답	유병열	오전리 551
84	산 34-9	임	825	431	임	노순복 외 2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1-1 서울APT 1-1203
85	산 34-8	임	1,853	244	임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오전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근저당권설정) 의왕단위농협	
	〃		
김영배	도봉구미아동 125-55		
	좌 동		
	〃	(근저당권설정) 의왕농협	
	〃		
박천규 최성희	미 등 기		
	수원장안화서동 249-35		
	좌 동		
	좌 동	지목상이(대)	
	〃		
	〃		
	〃		
	〃		
	〃		
	〃		
	〃		
	〃		
	〃	(근저당권설정) 의왕농협	
	미 등 기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86	산 34-5	임	5,554	5,144	임	김 갑 수	서울미포구망원동 399-9
87	700-2	답	2,975	2,825	답	노 장 선	오전동 724
88	산 34-7	임	5,455	130	임	김 춘 관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 263
89	719	답	3,907	87	답	오 형 진	안양시호계동 97-4
90	34-2	임	1,884	119	임	이 인 덕	서울영등포구대방동 산 5
91	34-1	임	4,463	351	임	최 종 국	서울영등포구노량진동 277
92	산 34-4	임	2,083	1,873	임	〃	〃
93	700-1	답	3,937	1,353	답	양 희 윤	수원시권선구매탄동 896 주공 4단지 APT 420-303
94	701	답	1,190	78	답	오 형 진	수원시권선구교동 97-4
95	702	답	2,344	683	답	이 재 호	안양시평촌동 615
96	산 33	임	6,545	6,296	임	국	(산림청)
97	산 32-2	임	14,678	2,833	임	김 연 봉	서울용산구갈월동 7-83
98	704	전	1,071	79	전		미 등 기
99	산 32-1	임	20,826	1,338	임	유 지 혁	서울도봉구수유동 291-77
100	703	전	50	25	전	이 재 호	안양시평촌동 615
101	776	구	48,798	24	구	국	(건설부)
102	697	전	1,613	18	전	유 정 현	오전 555
103	645	전	585	585	전	김 한 구	671
104	730	전	506	308	전	진 유 원	산 41
105	785	도	1,696	180	도	국	(건설부)
106	776	구	48,798	296	구		미 등 기
107	788	도	516	394	도	국	(건설부)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오전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근저당권설정)의왕농협	
	//		
	좌 동		
	//		
	//		
	//		
	//	(근저당권설정)수원농협	
	//		
	//		
	//		
	미 등 기		
	좌 동		
	//		
	미 등 기		
	좌 동		
	//		
	//		
	국(건설부)		
	미 등 기		
	국(건설부)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952	전	908	461	임	고건철	서울종로구수송동 73-2
2	951	답	2,995	2,995	답	이진우	내손동 150
3	950	〃	4,585	2,297	〃	나주정씨장공파종중	충남서천군화양면기복리409
4	948	임	1,223	8	〃	강원선	〃 642
5	산 96-4	〃	99,174	11,356	임	이병칠 외 2인	서울시종로구동자동164-12
6	923-3	잡	704	632	전	이범순	684
7	923-2	전	793	706	〃	〃	684
8	923-1	답	883	82	답	〃	684
9	965	구	10,073	726	하 천	국	미 등 기
10	925-2	답	1,719	88	답	이범순	684
11	925-1	〃	4,238	2,314	〃	강원선	642
12	산 96-1	임	71,405	4,671	임	정은표	서울관악구봉천동900-19
13	산 96-6	이	1,983	420	〃	〃	〃
14	940	전	641	274	전	이교광	용인군모현면일산리 267
15	939	답	2,889	1,767	답	김영운 외 3인	903
16	936-2	〃		5	〃		미 등 기
17	936-1	〃		449	〃		〃
18	937	전	1,392	92	전	강원선	915
19	936	답	1,627	691	답	〃	915
20	산 92	임	33,719	2,604	임	〃	〃
21	산 90	〃	26,975	10,042	〃	홍경선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학의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지목상이)임	
	〃		
	〃		
	〃	(지목상이)답	
	군포시산본동 357	(공유)	
	〃 232-1		
	좌 동	(지목상이)전	
	〃		
	〃		
	미 등 기		
	좌 동		
	〃		
	〃		
	〃		
	〃		
정옥화	김영숙, 김경식	(공유)	
	미 등 기		
	〃		
	좌 동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2	935-3	전	3,193	921	전	최의정	강남구반포동 1-8 경남APT 6-608
23	934	〃	2,288	75	〃	이하영	내손동 704-12
24	산 89-2	임	33,720	4	임	심경섭	안양동 599-18
25	산 83	〃	6,347	1,580	〃	전주이씨임영대군손동진종종	198
26	263-3	전	588	588	전	이영호	267
27	266	답	1,385	108	답	손순덕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573-74
28	265-2	〃	340	340	〃	이원일	267
29	265-1	전	1,008	903	전	〃	〃
30	263-5	〃	2,972	1,626	〃	〃	〃
31	산 82-4	임	66,248	20,931	임	광주이씨이천현감공파종종	767
32	산 82-2	〃	7,140	261	유지	흥안농지개량조합	안양리 631
33	산 82-1	구	1,983	561	구	〃	〃
34	338	전	545	105	하천	안금만	청계리 808
35	335-3	구	1,455	204	구	흥안농지개량조합	안양리 631
36	334-3	〃	1,061	56	구	〃	〃
37	965	천	10,073	840	천		미 등 기
38	965-5	답	138	25	답	국	〃
39	240-2	임	655	229	임	김상순	안양시석수동 344-35
40	340-13	전	4,175	817	전	이 함	포일리 77
41	349	임		133			미 등 기
42	340-4	전	248	78	전	국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학의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최의정	강남구반포동 1-8 경남APT 6-608	(3,193 ㎡)	
	좌 동		
	〃		
	〃		
	〃		
	〃		
	〃	(구저당권설정) 의왕농협	
	〃	〃	
	〃	〃	
	〃		
	〃		
	〃		
	〃		
	〃		
	미 등 기		
	〃		
	좌 동		
	〃	(지목상이) 답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43	1024	도	1,121	144	도		미 등 기
44	341-4	전	575	247	전	이 항	포일리 77
45	341-2	〃	2,780	154	〃	구무식	청계리 823
46	341-10	〃	1,537	558	〃	이 항	포일리 77
47	342-1	답	2,192	30	답	박제의 외3인	청계리 791
48	342-2	구	1,835	225	구거	홍안농지개량조합	안양시안양동 631
49	343-2	〃	307	58	〃	〃	〃
50	343-1	전	3,064	770	전	이도재	산 82-4
51	산 78-4	임	893	225	임야	최연웅	서울시구로구시흥동 271-6
52	산 78-3	도	793	175	도	소빈기구	경성부길야성 1 성주 63
53	산 78-1	임	30,843	6,149	임	김영인 외 1 인	서울시성동구구의동 257-26
54	산 32	〃	3,319	721	〃	박상귀 외 7 인	서울시동작구사당동 443-20
55	285-1	전	90	144	전	이종직 외 7 인	학의리 284
56	285-2	도	109	14	도	홍안농지개량조합	안 양읍안양리 631
57	995	〃	754	24	〃	국	
58	283-1	전	269	108	전	이종직 외 7 인	284
59	283-2	도	27	23	도	홍안농지개량조합	안양읍안양리 631
60	262	천	661	264	전	광주이씨이천현감공파종중	767
61	259-3	전	4,562	754	〃	나주정씨직장공파종중	서울시용산구한강로 3 가 40-518
62	257-1	임	86	4	임		의 왕 시
63	257-2	도	63	18	도		〃
64	257-3	임	3,191	139	전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학의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지목상이)답	
	〃	〃	
	〃	〃	
박용길, 박성근, 박학근		(공유)	
	좌 동		
	〃	(근저당, 지상권설정)신품제지	
이도재	학의동산 88-4		
	좌 동	지목상이(임야)	
김용상	송파구송파동 119 한양 6-705	(공유)	
김진태, 손태익, 천희덕, 최지원, 장복도, 김상우, 음인숙			
	좌 동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산 151-1	임		13,104	임		미 등 기
2	67	전	1,888	989	전	이은규 외 5인	내손리 180
3	557	구	2,175	138	구	미등기	
4	553	도	4,417	462	도	〃	
5	66-2	답	3,074	979	답	강신영	안양시안양 699
6	65-2	〃	3,524	1,173	〃	전주이씨감영 대군파손동문중양회	226
7	53	전	2,241	414	전	김임수	서초구우면동 603-46
8	65-1	답	1,269	1,269	답	이무호	59
9	52	〃	714	117	〃	이종백	33
10	51	〃	1,934	1,739	〃	이성호	147
11	66-1	〃	3,511	2,860	〃	이세호	32
12	50	〃	1,230	1,230	〃	이원진	58-1
13	49	〃	1,980	1,980	〃	이광호	〃
14	47	〃	1,180	1,092	〃	이성호	143
15	48	〃	2,013	2,013	〃	이기호	35
16	55	〃	3,362	1,632	〃	전주이씨 능안종친회	
17	46	〃	3,892	1,846	〃	이관호	59
18	555	구	628	81	구	미등기	
19	39	답	1,250	186	답	강신영	안양시안양 699
20	554	구	274	274	구	국	미 등 기
21	41	답	542	310	답	전주이씨 능안종친회	35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내손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의의권리의종류및내용	
	미 등 기		
이철호, 이명규, 이종화, 이용규, 이창호			
	미 등 기		
	국(건설부)		
	좌 동		
	〃		
	〃		
	〃		
	〃		
	〃		
	〃		
	〃		
	〃		
	〃		
	〃		
	〃		
	〃		
	〃	(가등기)김기만	
	미 등 기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2	40	전	542	542	전	이세호	안양시안양 699
23	산 150-1	임	630,740	15,014	임	이기호 외 221 호	고양군용강면신수철리 208
24	551	천	5,650	1,353	천	국	미 등 기
25	10-4	답	2,238	759	답	이도재	학의리 267
26	11-1	〃	2,618	2,483	〃	이종환	144-3
27	9-1	〃	1,792	1,405	〃	안양농지개량조합	안양시안양동 631
28	11-3	〃	1,187	1,157	〃	이종환	144-7
29	11-2	〃	1,134	1,134	〃	〃	〃
30	12	〃	4,129	262	〃	이완행	포일리 87
31	산 149-5	임		4,712	임		미 등 기
32	561	도	1,660	249	도	국	〃
33	산 157	구	754	347	구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내손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좌 〃 동	
		〃	
		〃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산 111	임	50,380	5,251	임	정해용	814
2	817-2	답	3,329	671	답	〃	〃
3	816	전	1,474	902	전	김현숙	814
4	산 110	임	47,702	8	임	정해용	814
5	946	천		390	천		미 등 록
6	814-4	답	2,559	1,116	답	이성주 외 1 인	811-3
7	814-2	〃	499	4	〃	김용의	544-1
8	814-3	〃	1,831	315	〃	이성주	811-3
9	803-3	임	776	424	임	정해용	814
10	803-2	답	2,327	136	답	〃	〃
11	803-1	전	975	25	전	〃	〃
12	911-4	도	672	107	도	국	(건설부)
13	803-6	〃	34	8	〃	정해용	814
14	802-3	전	75	250	전	국	
15	802-1	〃	670	350	〃	이창국	포일리 127-1
16	산 106	임		9,560	임		미 등 록
17	산 108	임	1,521	78	〃	이창국 외 3 인	포일리 127-1
18	802-2	도	350	6	도		미 등 기
19	산 106-1	임	17,256	4,952	임	권순택	서울강남구학동 2-9
20	796	전	3,514	58	전	박제협	562
21	795	〃	3,474	2,620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청계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		
전동수	811-3	(공유)	
	좌 동		
전동수	811-3	(공유)	
	좌 동		
	〃		
	〃		
	〃		
	미 등 기		
국	(경기도)		
	좌 동		
	미 등 기		
	좌 동	백석기, 이정옥, 백명호	
	미 등 기		
	좌 동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2	760	전	5,121	535	전	양재철	포일리 243-9
23	758-1	〃	5,170	2,548	〃	전주이씨 자용성우	이양군공파총회 338
24	762	〃	5,544	562	〃	이금희	717
25	761-2	〃	1,140	1,140	〃	박제완	562
26	761-1	답	813	813	답	김세래	693
27	763	전	4,314	2,692	전	이세근	서울관악구남현동 1075-2 일신연립 C-202
28	758-2	〃	430	78	〃	전주이씨양군자용성종공파총회	338
29	770	〃	1,831	616	〃	김덕산	769
30	757	〃	3,597	2,454	〃	유태준 외 1인	인천시남구학익동 225-23
31	771-1	답	655	550	답	전덕중	769
32	771-2	전	2,050	432	〃	〃	서울영등포구양재동 8-1
33	913	도	1,177	306	도	국	(건설부)
34	756	전	618	618	전	이필원	과천년문원리 15-49
35	755	〃	3,709	518	〃	신정식	서울은평구녹번동 156-42
36	754	답	1,117	1,117	답	박천규 외 3인	서울동대문구제기동 66-1
37	753	〃	2,400	1,728	〃	박제협	562
38	772	임	1,653	1	이	이필원	과천면문원리 15-49
39	752	전	2,172	201	전	박석호	562
40	865-20	천	241	141	천		미 등 기
41	865-19	천	2,625	957	〃		〃
42	554-5	전	4,170	63	전	김현구 외 1인	강남우면 210-27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청계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가등기)김명우	
	〃	면적상이(5,170㎡)	
	좌 동		
	〃	(압류)의왕시	
	좌 동	(지목상이)대	
	〃		
유광준	서대문구중산동 14-14	(공유)	
	좌 동	(근저당권설정)의왕농협	
지목상이(답)	〃		
	〃		
	〃		
	〃	(근저당권설정)의왕농협	
	박광덕, 박천숙	(공유)	
박석호	좌 동		
	562		
	미 등 기		
	〃		
김현주 김기배	강남우편 210-27 554-41	(근저당)최익숙 한국디자인포장센타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43	865-18	천	728	271	천		미 등 기
44	751	답	744	424	답	김순희	718
45	750-1	〃	2,268	316	〃	이문용	622-1
46	710	〃	202	202	〃	이철영	450
47	909	도	2,645	49	도	국	(건설부)
48	709	답	3,610	2,653	답	유봉근	699
49	565-2	〃	483	280	〃	박차현	안양시호계동 990-2
50	565-1	〃	380	144	〃	〃	
51	707	〃	2,688	2,276	〃	한기학	719
52	706	〃	1,736	1,681	〃	창녕성씨 청계가문회	624
53	865	천	124,639	3,118	천		미 등 기
54	705-1	답	975	834	답	김현우	693
55	569	〃	764	89	〃	박제영	일왕면청계리 544
56	908	도	6,826	646	도	국	건설부
57	564	천	823	20	천	이귀영	285
58	865-1	제	21	21	제		국
59	704	답	43	43	답	윤석길	702-2
60	703	〃	50	50	〃	〃	〃
61	702-3	도	139	131	도	〃	〃
62	702-1	답	364	212	답	〃	〃
63	702-1	도	1,412	1,412	〃	김선길	699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청계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미등기		
	좌동		
	〃	(근저당권설정)의왕농협	
	〃		
	〃		
좌동	699-2		
	좌동		
	좌동		
	〃		
	미등기		
	좌동		
	〃		
	〃		
	〃	(지목상이)전	
	미등기		
	좌동		
	〃		
	〃		
	〃		
윤석길	702-2	(지목상이)답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64	702-2	전	506	237	전	윤석길	702-2
65	691-1	대	985	985	대	송을분 외 1인	693
66	691-2	도	99	99	도		서흥군
67	690-1	답	2,902	1,785	답	김현철 외 1인	693
68	693-1	대	536	1	대	유복순	인천시남구주안동 93
69	692	〃	476	389	대	이정인	698
70	689-2	도	86	62	도	김갑수	692
71	688	대	707	546	대	윤석길	702-2
72	689-2	전	618	521	전	최정숙 외 1인	691
73	701-1	답	1,412	48	답	김선길	699
74	산 54	임	6,050	3,606	임	장 록	서울용산구이촌동 301-170
75	산 35	〃	108,595	3,380	〃	박명채 외 27인	665
76	685	대	496	496	대	이재규	685
77	686	전	2,635	273	전	〃	〃
78	산 55	임	17,157	5,428	임	한길수	서울사직동 87-2
79	684	전	354	354	전	최종현	군포읍당정리 467-3
80	678	〃	883	871	〃	정건부	693
81	676	〃	5,521	2,406	〃	〃	서울강남구논현동 187-7
82	665	대	555	279	대	박달현 외 4인	562
83	914	도	3,878	572	도	국	건설부
84	656-2	답	3,613	3,498	답	박정순	693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청계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김현규	안양평촌 89-5		
	좌 동	(공유)	
안양농지개량조합			
	좌 동	(공유)	
	좌 동		
김갑수	693	(공유)	
손 홍	좌 동		
	〃		
이부현	685		
〃	〃		
	좌 동	압류(시흥군)	
	〃		
	〃		
	〃	(근저당권설정)의왕농협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85	656-1	답	3,980	288	답	박정순	339
86	656-3	〃	3,183	1,411	〃	〃	693
87	657	〃	2,433	893	〃	박재근	포일리 87
88	659-2	〃	5,107	2,207	〃	박재영	644
89	675	전	6,096	677	전	변옥선	서울강남구청담동115-13
90	674	대	364	172	대	〃	〃
91	656-4	답	185	2	답	박정순	693
92	673	전	357	288	전	박재석	224
93	672	〃	377	236	〃	〃	224
94	915	도	417	124	도	국	건설부
95	671	전	2,013	1,568	전	박달현 외 4인	562
96	959-1	답	1,802	1,036	답	안호성	내손동 706-12
97	660	〃	2,426	576	〃	박제천	649
98	662	전	714	59	전		미 등 기
99	663	〃	1,002	221	〃	박제천	649
100	666	〃	757	14	〃	박달현 외 4인	56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의왕시 청계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동		
	〃		
	〃		
	〃		
	〃		
	〃		
	〃		
	〃		
	〃		
	〃		
	〃		
	〃	근저당권설정(김수자)	
	〃		
	미등기		
	좌동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194	답	397	397	답	박선규	178
2	산 45	임	9,818	5,198	임	맹인재	안양동 678
3	산 46	임	8,529	2,271	임	변세현	서울서대문구창천동 67-28
4	188	답	79	79	답	맹준호	안양시안양동 676-143
5	187	전	364	364	전	〃	〃
6	186	임	3,279	1,243	임	맹인재	안양시안양동 678
7	195	전	2,073	208	전	박선규	178
8	196	답	3,332	2,053	답	맹천호	181
9	610	구	16,502	1,736		국	
10	620	도	182	99		국	(건설부)
11	183	전	744	744	전	맹천호	181
12	184	전	1,125	1,083	전	〃	〃
13	185-1	전	853	102	전	편재원 외 1 인	서울강남구개포동 189 주공 Ⓐ 447-307
14	181	전	734	734	전	맹천호	181
15	197	답	1,789	270	답	〃	〃
16	182-2	전	1,230	825	전	맹태호	181
17	182-3	대	846	846	대	〃	〃
18	182-1	대	155	13	대	〃	〃
19	609	도		284	도		미등기
20	180	전	790	790	전	맹천호	181
21	178-3	답	93	93	답	박선규	178
22	178-2	전	1,812	1,058	전	〃	〃
23	178-1	대	952	952	대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과천시 갈현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좌 동		
	〃	(지목상이)답	
	〃		
맹원호	용산구효창동 3-7		
	좌 동		
	〃	(지목상이)답	
	〃	면적 17,286	
	좌 동		
	〃		
	박동순	(공유)	
	좌 동		
	〃		
	〃		
	〃		
	〃		
	좌 동		
	미등기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4	179	대	1,002	429	대	편재원 외 1 인	강남구개포동 189 주공Ⓐ 447-307
25	176	임	10,840	4,120	임	이석연 외 8 인	강릉시임당동 180-170
26	175-1	전	1,494	6	전	정 구 옥	서울동작구상도동 331-149
27	174	임	7,527	3,333	임	〃	〃
28	171-1	임	2,169	587	임	정 의 자	강남구학동 92-60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과천시 갈현동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박 동 순	청주시시창동 246-2		
문서민, 이석주,	이석자, 이석경, 이석환, 이석우, 이석훈, 이석원 좌 동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1	산 79-15	임	15,868	4,113	임	김진국 외 3 인	910
2	산 79-7	임	198	198	임	김병용	〃
3	1022	전	370	350	전	김희향	산 72
4	1021	전	1,405	1,405	전	안금성	1019
5	1019-3	대	926	419	대	이제영 외 1 인	남면산본리 343
6	6019-2	대	658	263	대	홍기성	서울강남구반포동 591
7	1020	전	2,089	2,089	전	이옥순	1020
8	산 79-1	임	3,067	1,128	임	최옥봉 외 3 인	서울중구신당동 80-164
9	1016	전	2,691	1,037	전	김상후	원문동 4 주공Ⓐ 252-407
10	1017-3	전	797	797	전	권창득	1018
11	1017-2	전	1,550	537	전	고창호	921
12	1017-1	전	1,706	1,706	전	이성임	1018
13	1018	대	1,005	282	대	권창득	1018
14	1006	임	3,035	1,134	임	김희향	산 72
15	1007	전	602	562	전	김경수	924
16	1008	대	1,240	1,240	대	권창득	1018
17	1009-1	전	1,012	339	전	〃	〃
18	1009-2	전	893	893	전	〃	〃
19	1010	답	1,402	995	답	안정준	1019
20	1011	답	1,243	788	답	〃	〃
21	913	답	1,369	296	답	함정숙	서울성동구자양동 650-17
22	912-2	답	2,945	2,256	답	김완섭	문원동 2 주공Ⓐ 201-308
23	912-1	도	96	96	도	김명준	94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과천시 문원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김진태,	김한경, 김진용	(공유)	
	미등기		
	좌동		
	〃		
	〃		
	〃		
	〃		
	좌동		
	〃	(근저당권설정)과천농협	
	〃		
	좌동		
	〃		
	〃		
	〃	지목상이(전)	
	〃		
	좌동	(가등기) 김복례	
좌동	서울강동구 265-25	(근저당권설정)산의 농협	
	좌동	(근저당권설정)이용산	
김완섭	144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24	1012-2	답	3,253	1,018	답	석 완 식	안양시안양동 598-1
25	1055	도	6,152	904	도	국	(건설부)
26	901-2	답	651	504	답	김 진 성	910
27	901-1	도	13	13	도	김 향 문	910
28	902-6	도	20	20	도	〃	〃
29	902-3	전	3,412	648	전	김 진 성	〃
30	902-10	도	188	74	도	김 향 문	〃
31	900-2	도	20	20	도	안 혜 준 외 4 인	994
32	900-1	전	179	179	전	〃	〃
33	899-3	도	53	53	도	〃	〃
34	899-1	답	2,089	475	답	김 도 향	과천시갈현동 5
35	896-1	전	5,302	4,039	전	은 규 택	서울서초동 1455-1 서초맨션 103
36	899-2	답	1,798	1,238	답	안 혜 준 외 4 인	994
37	1012-1	도	347	108	도	석 완 식	안양시안양동 598-1
38	890	전	4,592	2,088	전	윤 재 노	847
39	891	전	2,922	2,519	전	김 철 권	과천시갈현리 9
40	895-1	전	2,340	979	전	신 관 선	안양시안양동 658
41	892-2	전	1,531	1,396	전	강 홍 거	부천시소사동 181-10
42	885-1	전	1,365	218	전	윤 규 하	서울강남구포이동 10
43	892-1	전	724	724	전	조 원 우	원문동 4 주공 Ⓐ 237-303
44	893-1	답	2,076	1,486	전	석 준 식	906
45	894-1	답	664	106	답	석 준 식 외 1 인	안양시안양동외 1 인
46	882	답	443	71	답	석 준 식	906-3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과천시 문원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미 등 기		
	〃		
	〃		
	좌 동	(근저당권설정)과천농협	
	〃		
좌 동	서울종로구숭인동 569		
	좌 동		
	〃		
	〃		
	〃		
	〃	(근저당권설정)유제영	
	〃		
석예식	안양시호계동 962-2	(공유)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47	884	답	443	302	답	석준식	906-3
48	1023-11	구	22,155	1,368	구	국	(농수산부)
49	523-3	전	1,167	979	전	신태분	110
50	524	답	1,084	734	답	고창호	921
51	526	전	1,752	1,022	전	임재영 외 2 인	206
52	528	전	1,732	1,312	전	석현식	544
53	527	답	1,448	1,058	답	석명식 외 1 인	안양시안양동 97
54	533-2	전	3,498	834	전	홍성우	584
55	533-6	전	1,345	1,282	전	홍승용	서울종로구창성동 128
56	532	전	1,547	1,261	전	이경오 외 1 인	48
57	531	전	3,511	1,051	전	이범학	847
58	533-5	전	803	388	전	홍성우	554
59	533-1	전	2,053	1,428	전	김태만 외 4 인	화성군향남면 128
60	534	전	3,326	3,137	전	조영하	의왕시내손동 703-7
61	535	전	1,719	634	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서울마포구공덕동 370-4
62	538	전	2,671	576	전	이범재	원문동 4 주공Ⓐ 245-102
63	547	전	863	863	전	윤민식	관문리 125-15
64	546	임	4,793	1,454	임	한영빈 외 1 인	포항시덕수동 31
65	548	전	3,028	3,028	전	김정자	서울성동구자양동 659 한양Ⓐ 6-501
66	551	전	823	823	전	〃	〃
67	552-1	전	1,217	903	전	이성근	452
68	552-2	전	1,283	199	전	정종기 외 1 인	554
69	550	전	1,222	1,222	전	고명숙 외 1 인	서울성북구삼선동 5 가 298-3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과천시 문원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		
	〃		
임은진,	임재성	(공 유)	
	좌 동		
석예식	안양호계 962-2	(공 유)	
좌 동	554		
	좌 동	(가등기)김숙자	
이금만	469	(공 유)	
	좌 동		
	〃		
김길월,	김길수, 김원호, 김갑권	(공 유)	
	좌 동		
	〃		
	〃	(근저당권설정) 과천농협/국가보훈처	
	〃		
한동수	강남서초동 1477-1	(공 유)	
	좌 동		
	〃		
	〃		
이종하	안양안양동 632-60	(공 유)	
박의웅	서울성북구삼선동 2-8	(공 유)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70	553	전	2,294	600	전	문병무	안양시안양동 473-4
71	554	저	2,698	3	전	홍성대	554
72	545	전	1,299	806	전	윤 영 외 1 인	서울용산구서빙고동 241-21 신동아Ⓐ 7-1001
73	544-2	수	115	115	수	국	(건설부)
74	544	대	389	389	대	윤영주 외 1 인	서울용산구서빙고동 241-21 신동아Ⓐ 7-1001
75	541-2	수	357	357	수	김충원 외 1 인	용인군원삼면고당리 71-5
76	540-1	답	3,698	705	답	이규원 외 1 인	과천동 363
77	540-12	수	65	65	수	〃	〃
78	541	답	2,161	2,161	답	이충원 외 1 인	용인군원삼면고당리 71-5
79	473-2	도	79	79	도	염석언	473
80	540-5	답	1,547	5	답	석현식	544
81	1043	도		79	도	국	
82	474-1	답	1,048	244	답	이주하	473
83	474-2	도	17	17	도	〃	469
84	473-3	대	535	527	대	염석언	473
85	1023-12	구	297	297	구	국	(농수산부)
86	473-1	대	559	380	대	박귀영	473
87	540-3	도	83	8	도	이범재	서울영등포구서초동 763
88	473-4	대	126	126	대	김영범	471
89	472-6	대	130	130	대	라금순	이천군설성면제요리 617-2
90	472-5	전	943	244	전	〃	〃
91	472-1	임	2,675	2,075	임	나금순 외 1 인	〃
92	472-9	대	449	6	대	국	(건설부)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과천시 문원동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대의자(국)	면적상이(1,551)	
	좌 동	대위자(국)	
윤승구	용산구후암동 389-3	(공 유)	
	좌 동		
	미 등 기		
(국)	건 설 부	(공 유)	
〃	〃	〃	
〃	건설부(공유)	면적상이(2,518㎡)	
	좌 동		
	〃		
	좌 동	(근저당권설정)과천농협	
	〃	지목상이(답)	
	〃		
	〃		
	좌 동		
	〃		
김충원	원삼면고당리 71-5	(공 유)	
	좌 동		

제 2359 호

경 기 도 보

용 지 조 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사항	소유자	
						성 명	주 소
93	386	전	1,087	460	전	신 수 재	서울마포구연남동 482-2
94	산 107-2	임	49,263	300	암	김 영 무	서울성북구우이동 90-4
95	1047-1	도		70	도		미 등 기
96	385	전	1,005	64	전	이 주 하	469
97	389	도	16,273	22	도	국	건설부
98	387	전	1,207	321	전	임 경 외 4 인	서울종로구숭인동 202-24
99	381	전	1,605	205	전	〃	〃
100	1023-13	구	1,283	20	구	국	농 수 산 부
101	380-1	답	1,439	374	답	장 은 수	서울강남구서초동 590 무지개 Ⓐ 2-206
102	549	도	24	24	도	국	건설부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과천시 문원동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좌 동		
	〃		
	좌 동		
	〃		
	〃	(대위자) 국	
	〃	〃	
	〃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시·군	읍·면	동·리				
				물건			
1	의왕		고천	건물	브럭기타	46.7	거주
				〃	브럭스래트	38.0	창고
				〃	SLAB	108.5	거주
				수도	개		3
				펌푸	개		1
				유실수	주		10
				관상수	주		1
2	의왕		고천	건물	SLAB	40.0	주거
				〃	브럭스래트	108.0	〃
				〃	〃	40.5	
				담	브럭	L = 32.0 H = 1.8	
				관상수	주	16	
3	의왕		왕곡	건물	목조기와	90.0	주거
				담	브럭	L = 10.0 H = 1.6	
				수도	개	1	
4	의왕		왕곡	건물	브럭스래트	28.0	축사
5	의왕		왕곡	건물	목조기와	164.4	주거
				〃	〃	21.0	축사
				담	브럭	L = 35.5 H = 1.6	
				수도	개	4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이 삼 욱	고천동 13-7	이 삼 욱	고천동 40		
고려합섬	고천동 61				
배 건 택	왕곡동 486				
배 건 봉	왕곡동486				
배 수 봉	왕곡동 486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시·군	소재지 읍·면	소재지 동·리	물건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6	의왕		왕곡	담	브럭	L = 20.0 H = 1.4	
				펌푸	개	1	
				수도	개	1	
				관상수	주	1	
				유실수	주	1	
7	의왕		왕곡	건물	브럭기와	45.0	거주
				건물	스레트기와	8.0	〃
				담	브럭	L = 8.0 H = 1.6	
				수도	개	2	
				우물	개	1	
8	의왕		왕곡	건물	SLAB	50.0	주거
				〃	〃	6	W.C
				수도	개	2	
				펌푸	개	1	
9	의왕		왕곡	건물	브럭기타	74.0	주거
				〃	브럭스래트	33.0	견사
				담	브럭	L = 12.0 H = 1.4	
				수도	개	3	
				펌푸	개	1	
10	의왕		왕곡	건물	브럭기와	120.4	주거
				〃	〃	12.0	창고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마 행 길	왕곡동 493				
배 복 능	왕곡동 496				
배 금 용	왕곡동 496	김 기 하	왕곡동 496		
김 광 무	왕곡동산 105-1				
박 상 엽	왕곡동 463-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물건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수 도	개	1	
				담	벽 돌	L = 121 H = 1.6	
				철 망	M	300	
				양 어 장		324.0	
				건 물	목조스레트	3.3	수 위 실
				관 상 수	주	3,223	
				유 실 수	주	3	
11	의 왕		왕 곡	건 물	목조기와	108.0	주 거
				〃	〃	12.0	창 고
				〃	목조스레트	10.0	〃
				담	브 럭	L = 70.0 H = 1.8	
				수 도	개	4	
				우 물	〃	1	
				유 실 수		7	
				관 상 수		3	
12	의 왕		왕 곡	건 물	목조기와	35.6	주 거
				수 도	개	1	
				펌 푸	개	1	
				담	브 럭	L = 7.5 H = 1.6	
				유 실 수	주	5	
				관 상 수	〃	5	
13	의 왕		왕 곡	건 물	브럭기와	118.8	주 거
				수 도	개	4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이 철 우	왕곡동 462				
김 종 수	왕곡동 485	김 응 진	왕곡동 485		IBRD 도로보상 〃 〃 〃
배 건 혁	왕곡동 486				IBRD 도로보상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시·군	소재지 읍·면	소재지 동·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담	브 럭	L = 8.0 H = 1.6	
				유 실 수	주	1	
14	의 왕		왕 곡	건 물	목조기와	60.5	주 거
				〃	〃	119.0	〃
				〃	〃	20.2	창 고
				〃	〃	41.7	〃
				〃	〃	20.2	W . C
				담	브 럭	L = 31.5 H = 1.6	
				펌 푸	개	1	
				우 물	개	2	
				수 도	자갈펌푸	1	
				유 실 수		3	
				관 상 수		2	
15	의 왕		왕 곡	건 물	기와 SLAB	90.0	주 거
				〃	〃	18.0	〃
				〃	브럭스레트	36.0	창 고
				〃	SLAB	8.0	W . C
				〃	〃	6.0	창 고
				담	브 럭	L = 28.0 H = 1.6	
				수 도	자가펌푸	5	
				우 물	개	1	
				유 실 수		4	
				관 상 수		6	
16	의 왕		왕 곡	건 물	목조기와	56.0	주 거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IBRD 도로보상
이원욱	왕곡동 376				〃
박진성	왕곡동 378-1				
박덕조	왕곡동 378-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			
	시·군	읍·면	동·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	실제이용상황
				건 물	목조기와	71.9	주 거
				〃	목조스레트	62.0	〃
				〃	〃	8.0	W.C
				장독대	CON'C	30.0	장독대
				수 도	개		1
				관상수	주		9
				유실수	〃		18
17	의왕		왕곡	건 물	목조기와	112.7	주 거
				〃	〃	16.0	창 고
				〃	〃	10.0	W.C
				담	CON'C 조립	L=19.0 H=1.8	
18	의왕		왕곡	가건물	비닐하우스	2,925	비닐하우스
19	의왕		왕곡	가건물	비닐하우스	510	비닐하우스
20	의왕		왕곡	건 물	브럭스레트	57.0	주 거
				〃	〃	28.0	〃
				우 물	개	1	
				펌 프	〃	2	
				유실수	주	315	
				관상수	〃	2,147	
21	의왕		왕곡	건 물	목조스래트	74.3	거 주
				담	브 럭	L=14.0 H=1.4	
				펌 프	개	1	
22	의왕		왕곡	건 물	브럭스래트	175.8	주 거
				〃	〃	232.8	축 사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의권리	
이 흥 욱	378-2				
담					
이 병 택	오전동 298	김 일 산	왕곡동 374-1		
전 병 훈	안양시안양동 707-215	김 일 산	왕곡동 362-1		
이 상 석	왕곡동 370-1				
김 진 욱	왕곡동 266				
이 주 일	서울용산구한남동 11-331	이 주 일	왕곡동 22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			건
	시·군	읍·면	동·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	실제이용상황
				건 물	브럭스래트	18.0	주 거
				가건물	비닐하우스	176.7	비닐하우스
				수 도	개	1	
				펌 푸	〃	1	
23	의왕		왕 곡	가건물	비닐하우스	70.7	주 거
24	의왕		오 전	건 물	브럭스래트	171	축 사
25	의왕		오 전	건 물	SLAB	101.5	교 회
				〃	〃	3.4	W.C
				정 화 조	CON'C	4.0	정 화 조
				우 물	개	1	
				수 도	〃	2	
				유 실 수	주	5	
				관 상 수	〃	17	
26	의왕		오 전	건 물	브럭스래트	33.4	주 거
				〃	SLAB	4.8	W.C
				수 도	개	1	
				유 실 수	주	3	
				관 상 수	〃	5	
27	의왕		오 전	건 물	브럭스래트	24.0	주 거
				가건물	비닐하우스	40.0	비닐하우스
				수 도	개	2	
				유 실 수	주	143	
				관 상 수	〃	56	
28	의왕		오 전	건 물	목조스래트	54.0	주 거
				수 도	개	2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이 주 일	서울용산구한남동 11-331	강 태 호	왕곡동 223		
황 금 옥	안양시안양동 834	황 금 옥	오전동 441		
이 병 규	오전동 452				
한 순 철	서울서대문구신촌동 26	윤 성 천	오전동 137-1		
박 무 학	오전동 453				
홍 진 호	오전동 648-1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			
	시·군	읍·면	동·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	실제이용상황
29	의 왕		오 전	건 물	브럭, 기와	59.4	주 거
				〃	브럭, 스래트	28.7	창 고
				〃	〃	2.3	W.C
				수 도	개	4	
				우 물	〃	1	
				유실수	주	13	
30	〃		〃	건 물	브럭, 기와	72.0	주 거
				〃	브럭, 스래트	8.8	창 고
				〃	〃	7.2	W.C
				수 도	개	3	
				유실수	주	1	
				관상수	〃	5	
31	〃		〃	건 물	목조, 스래트	42.0	주 거
				〃	〃	31.2	〃
				〃	SLAB	2.2	W.C
				담	브 럭	L = 25.0 H = 1.6	
				펌 프	H = 10.0	1	
				수 도	개	1	
				유실수	주	6	
32	〃		내 손	건 물	기와, 목조	7.5	W.C
				담	브 럭	L = 21.3 H = 1.6	
				유실수	주	2	
				관상수	〃	1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박 본 규	오전동 73	박 춘 식	오전동 731		
김 영 배	서울도봉구미아동 125-55	김 재 동	오전동 731		
박 철 규	오전동 산 157-3	박 철 우	오전동 723		
기 광 희	서울성동구성수동 2가 36-485	안 광 호	내손동 53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시·군	소재지 읍·면	소재지 동·리	물건 물건의종류	물건 구조및규격	물건 수량 (㎡)	실제이용상황
36	의 왕		청 계	가건물	비닐하우스	456	화 원
				화 초	엽 란	9,000	
37	〃		〃	가건물	비닐하우스	1,236.6	화 원
				화 초	천낭금	3,000	
				〃	벤쟈민	300	
				〃	〃	300	
				〃	몬스트리아	2,000	
				〃	〃	3,800	
				〃	벤쟈민	300	
				〃	실 란	2,000	
38	〃		〃	건 물	브럭, 스래트	408	축 사
39	〃		〃	건 물	〃	122.5	〃
				〃	〃	26.5	주 거
				〃	판자스래트	10.0	〃
				수 도	개		1
40	〃		〃	건 물	비닐하우스	60.5	주거, 화원
				〃	판자스래트	1.5	W . C
				펌 프	개	1	
				화 초	죠 지	2,000	
41	〃		〃	건 물	브럭, 스래트	91.0	주 거
				〃	〃	70.0	축 사
				수 도	개	1	
				담	브 럭	L= 42.0 H= 1.4	
				유실수	주	6	
42	〃		〃	건 물	목조, 기와	72.0	주 거
				〃	브럭, 스래트	32.0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박 제 협	청계동 796	허 덕 근	청계동 563		3년
박 제 협	청계동 795	강 석 천	청계동 775		3년 4년 1년 1.5년 1년 2년
전 덕 명	청계동 778				
전 덕 중	청계동 771-1				
박 준 양	청계동 757				
김 백 옥	과천시문원동 662	이 필 원	청계동 756		
박 제 윤	청계동 563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시·군	읍·면	동·리				
				물건			
42	의왕		청계	건 물	SLAB	2.4	W。C
				〃	브럭, 스래트	1.0	〃
				담	브 럭	L = 49.0 H = 1.8	
				수 도	개	3	
				우 물	모과나무	1	
				유실수		1	
				관상수		1	
43	〃		〃	건 물	비닐하우스	187.9	거주및화원
				수 도	개	1	
44	〃		〃	건 물	목조, 기와	74.0	주 거
				〃	브럭, 기와	101.4	축 사
				〃	SLAB	2.1	W。C
				〃	목조, 스래트	8.0	창 고
				〃	〃	10.0	〃
				우 물	모타, 펌프	1	
				관상수	주	16	
45	〃		〃	건 물	목조, 기와	48.0	주 거
				〃	목조, 스래트	19.5	〃
				〃	브럭, 스래트	45.5	〃
				담	브 럭		L = 10.0
				수 도	자가펌프		5
				유실수			4
46	〃		〃	건 물	목조, 기와	110.0	주 거
				〃	〃	82.0	〃
				〃	SLAB	2.2	W . C
				수 도	자가펌프	4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박 제 윤	청계동 563				
박 제 협	청계동 554-2	김 대 한	청계동 554-2		
윤 종 건	청계동 702-2	윤 석 길	청계동 702-2		
김 현 철	청계동 693				
김 형 규	청계동 693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물	건		
46	의왕		청계	유실수	주	9	
				관상수	〃	40	
47	〃		〃	건물	목조, 기와	38.0	주거
				〃	〃	54.0	〃
				〃	브럭, 스레트	21.0	〃
				〃	〃	15.0	창고, WC
				담	브 럭	L = 42.0 H = 1.6	
				수도	자가펌프	4	
				유실수	주	13	
				관상수	〃	2	
48	〃		〃	건물	목조, 스레트	49.5	주거
				〃	브럭, 스레트	40.0	〃
				〃	〃	10.0	창고
				〃	SLAB	10.0	W.C
				담	브 럭	L = 20.0 H = 1.6	
				수도	개	1	
				유실수	주	19	
				관상수	〃	6	
49	〃		〃	건물	목조, 기와	69.0	주거
				〃	〃	56.0	〃
				〃	비닐하우스	24.0	하우스
				〃	SLAB	5.2	W.C
				수도	자가펌프	1	
				우물	H = 6.0	1	
				담	브 럭	L=46.8 H=1.8	
				유실수	주	28	
				관상수	〃	15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송 을 분	청계동 693	이 동 호	청계동 693		
박 제 현	청계동 688	박 형 근	청계동 688		
이 종 안	청계동 685	이 규 현	청계동 685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물 건			
50	과천		갈현	건 물	비닐하우스	60.0	하우스
51	〃		〃	건 물	브럭, 스레트	224.0	주거및축사
				〃	〃	3.0	W.C
				〃	〃	4.0	창 고
				우 물	H=5.0		
				관상수	주	1,120	
52	〃		〃	건 물	목조, 기와	64.0	주 거
				〃	〃	40.0	〃
				〃	목조, 스레트	8.0	W.C
				담	브 럭	L=21.0	
				수 도	자가펌프		1
				유실수	주	82	
				관상수	〃	48	
				건 물	비닐하우스	90	
53	〃		〃	건 물	목조, 기와	56.0	주 거
				〃	〃	55.0	〃
				〃	SLAB, 벽돌	108	축 사
				〃	판재, 스레트	26.0	창 고
				장독대	CON'C	4.9	
				우 물	모타펌프	3	식 수
				축 대	CON'C	28.0	
				〃	벽 돌	21.0	
				유실수	주	121	
				관상수	〃	628	
54	〃		〃	건 물	브럭, 스레트	17.5	창 고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맹 인 재	갈현동 186				
신 장 근	〃 174				
맹 천 호	〃 182-3				
박 선 규	〃 178				
맹 창 호	안양시안양동 676-143	편재원	갈현동 179	임 대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실제이용상황
	시·군	읍·면	동·리				
55	과천		문원	건물	비닐하우스	156.0	주거
				수도	자가펌프	6	취수
56	〃		〃	건물	비닐하우스	126.0	주거
				〃	판재, 스레트	17.5	견사
				수도	자가펌프	2	
57	〃		〃	건물	비닐하우스	116.0	펑사육장
58	〃		〃	〃	브럭, 스레트	84.8	주거
				〃	〃	114.0	축사
				〃	〃	114.0	〃
				〃	〃	36.0	창고
				수도	자가펌프	3	
				유실수	주	2	
				관상수	〃	1	
59	〃		〃	건물	브럭, 스레트	9.0	창고
60	〃		〃	건물	비닐하우스	584	화원
				〃	〃	54.0	주거
61	〃		〃	〃	〃	672.0	하우스
				〃	〃	144.0	주거
				〃	〃	32.0	창고
62	〃		〃	〃	〃	977.9	하우스
				〃	〃	84.0	축사
				〃	〃	55.0	견사
				열풍기	대	1	
				수도	자가모타	6	
63	〃		〃	건물	비닐하우스	120.0	하우스
				〃	〃	84.0	〃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김숙정	문원동 산 72	기진석	문원동 산 72		
조성덕	〃 1022				
안금성	〃 1021				
이옥순	〃 1020	이면복	〃 1020		
안금성	〃 1019	안장수	〃 1019	임대	
〃	〃 1019	정막래	〃 1019	〃	
이동후	〃 896-1				
예태해	〃 534				
이강연	〃 546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			
	시·군	읍·면	동·리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	실제이용상황
63	과 천		문 원	건 물	비닐하우스	28.0	하우스
				〃	〃	250.0	〃
64	〃		〃	건 물	브럭, 스레트	45.5	주 거
				담	브 럭	L=9.0 H=1.6	
				수 도	개	1	
65	〃		〃	건 물	브럭, 스레트	124.1	축 사
				담	브 럭	L=8.0 H=1.6	
66	〃		〃	건 물	목조, 기와	47.6	주 거
				〃	목조, 스레트	72.4	〃
				수 도	자가펌프	1	
67	〃		〃	건 물	목조, 기와	66.2	주 거
				〃	〃	65.6	〃
				〃	목조, 스레트	3.0	W.C
				우 물	H = 5.0	1	취 수
				펌 프		1	
				유실수	주	3	
				관상수	〃	8	
68	〃		〃	건 물	브럭, 스레트	49.3	주거및축사
				〃	〃	6.6	W.C

경 기 도 보

제 2359 호

조 서

소유권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의권리	
이 강 연					
장 성 학	문원동 470-3				
이 흥 선	별양동 50-2	이 주 학	문원동 474-1		
염 석 원	문원동 473				
박 귀 영	〃 473				
진 수 역	서울강서구신정 314 목동신시가지(A)810-607	신 춘 식	문원동 386		

안산시 공고 제 158 호

안산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을 동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8. 4

안 산 시 장

공 인 영	인 영	공 인 영	인 영
안산시공영개발 사 업 소 장 인		안산시공영개발 사 업 소 계 인	

안산시 공고 제 162 호

자동차강제처리 (폐차처분)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 25 조 동법시행령 제 10 조 동법시행규칙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지시 하오니 해당차량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고기한내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시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폐차 처분할것을 공고합니다.

1990. 8. 9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90.8.17 - '90.8.31 (15 일간)

2. 차량보관 장소 : 안산시청

3. 기타 자세한것은 안산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 (전화 : 811-345, 3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군 고시 제34호

관보 제11259호(89.6.20)에 게재된 화성군 고시 제38호 도로구역 변경 고시 군도 274호(수직-오가) 신왕-수직간의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년 7월 24일

화 성 군 수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양감 송산	85-2	도	278	29	화성 향남 수직 145	정지환
〃	85-3	임	1,190	314	〃	〃
향남 수직	126	대	727	371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95	진경섭

공 고

김포군 공고 제152호

자동차강제처리공고

1. 목 적 :
   -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 저해요소 제거
   - 폐부품의 재사용 방지 및 자동차 안전도 확보
   - 교통장애 해소

경 기 도 보

제 호

2. 강제처리 대상자동차

차량번호	차 종	차 명	발생일시	발 생 장 소
-	승용차	피아트	89.12	김포읍 사우리 186 (로얄장옆)
서울 4 나 6467	〃	마크파이브	90. 4	〃 〃 452 (청수탕옆)
-	〃	제미니	90. 7	〃 〃 329 (사우리병원앞)
-	버 스	현대 170	89. 5	고촌면 신곡리 584
-	승용차	포 니	89.11	검단면 마전리 666 (면사무소옆)
경기 1 러 1348	〃	스텔라	88. 1	통진면 서암리 758
경기 7 더 9848	화 물	2.5	89.11	하성면 마곡리 584-1

3. 폐차일시 및 장소

○ 일 시 : '90. 8. 24

○ 장 소 : 김포종합폐차장 (김포읍 사우리 136-1)

90. 8. 6

김 포 군 수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람 | 기관의 장

제 2360 호
1990년 8 월20 일(월)

차 례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92호 경기도 사무 내부위임 규정..... 2
○경기도훈령 제 893호 경기도 민방공 경보통제소 운영규정..... 5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88호 동두천도시계획시설(수도)실시계획 인가고시..... 22
○경기도고시 제 289호 동두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 23
○경기도고시 제 290호 오산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 27
○경기도고시 제 291호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 32
○경기도고시 제 292호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고시와실시계획..... 38
○경기도고시 제 29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시..... 71
○경기도고시 제 295호 사료성분등록사항고시..... 73
○경기도고시 제 296호 사료성분등록변경사항고시..... 73
○경기도고시 제 297호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74
○경기도고시 제 299호 사료성분등록사항고시..... 75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36호 K.S표시 정지처분공고..... 75

회람

발행 : 경기도 편집 : 공보관실

○경기도공고 제 239호 비료생산업 휴업처리사항 공고..... 76
○경기도공고 제 240호 K.S표시 허가취소공고..... 77
○경기도공고 제 241호 어업면허 처분공고..... 78

시 군 행 정

○부천시고시 제 25호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79
○안산시고시 제 25호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시행허가고시..... 80
○용인군고시 제 40호 신갈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시행허가고시..... 82
○옹진군고시 제 208호 서포리국민관광지조성 변경계획 입안공고..... 83
○성남시공고 제 179호 공인신조공고..... 84
○성남시공고 제 180호 공인신조공고..... 85
○구리시공고 제 82호 강제폐차 예정공고..... 85
○양주군공고 제 90호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공람공고..... 87
○양평군공고 제 137호 양평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승인취소공고..... 88
○과천시공고 제 103호 강제폐차 예정공고..... 90

경기도 훈령 제 892 호

경기도 사무내부위임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8 월 14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사무내부위임규정중개정규정

경기도 사무내부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위임사항) "별표" 내부위임 사항중 운수과 소관을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하고 일련번호 7호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교통행정과 소관)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7	자동차관리사업의관리	①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 이전 시설변경허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함)	자동차관리법제49조	시장 · 군수
		②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신고 수리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함)	〃 제 51조	〃
		③ 자동차 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함)	〃 제 52 조	〃
		④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명령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함)	〃 제 53 조	〃
		⑤ 자동차 관리사업의 취소, 정지, 휴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함)	〃 제 60 조	〃
		⑥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청문 (중고자동차매매업에 한함)	〃 제 67 조	〃
		⑦ 불법자동차 관리사업행위 등 단속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 149 조	〃

신 구 대 비 표

현행					개정				
일련번호	수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일련번호	수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7	자동차관리사업의관리	①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 이전, 시설변경 허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 49 조	시장 군수	7	자동차관리사업의관리	① 좌 동	좌 동	시장 군수
		②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신고수리 (중고차 매매업에 한함)	〃 제 51 조	〃			② 〃	〃	〃
		③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한함)	〃 제 52 조	〃			③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 52 조	〃
		④자동차관리사업의 취소정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한함)	〃 제 53 조	〃			④ 좌 동	좌 동	〃
		⑤자동차 관리사업의 취소정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한함)	〃 제 60 조	〃			⑤ 〃	〃	〃
		⑥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청문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자동차폐차업에 한함)	〃 제 67 조	〃			⑥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청문 (중고자동매매업에 한함)	〃 제 67 조	〃
							⑦불법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등 단속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49 조	〃

경 기 도 보

경기도 훈령 제893호

경기도 민방공경보통제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년 8 월 14 일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민방공경보통제소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민방공경보통제소(이하 "통제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보통제소는 도청 구내에 둔다.

제3조(근무요원) ①통제소에는 통제소장 및 경보반장과 그외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②통제소장은 통신기좌 또는 전산처리관으로 경기도지사가 임명하고 경보반장은 통제소장의 제청으로 민방위국장이 지정한다.

제2장 임 무

제4조(임무) 통제소의 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이하 "중앙통제소"라 한다.)로 부터 전달되는 경보와 도지사 및 지역군부대장이 발령하는 화생방경보의 전파
2. 경보전달체계를 항시 유지하기 위한 유.무선 경보장비,기타 부대설비등의 시험점검 및 관리
3. 지역통제상황 발생시 중앙통제소에 경보방송 요청
4. 통제소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유지

5. 산하 시·군 경보단말에 대한 경보방운영의 지도·감독

6.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시

7. 그밖에 민방공경보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지휘 및 보고

제 5 조(지휘체계) ①민방위국장은 통제소를 지휘 감독한다.

②민방위과장은 통제소운영에 관하여 민방위국장을 보좌한다.

③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임무를 통할하며 근무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경보반장은 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경보반장이 부재시에는 통제소장이 차하급자를 지정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보고체계) ①경보반장은 통제소의 중요사항과 인원,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시설장비계장 및 중앙통제소 근무자에게 매일 09:00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보반장은 통제소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통제소장에게 보고하며 통제소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주 월요일에 민방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경보전달체계

제 7 조(선조치 후보고) ①중앙통제소로부터 민방공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통제소장 부재시에는 경보반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방위과장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통제소장(통제소장 부재시는 경보반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주의보발령시 조치) 경보반장은 중앙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 민방공경보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의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요원의 정위치 배치 및 임무 재확인
2. 중앙통제소 및 도종합상황실, 지역군부대로 부터의 상황파악
3. 유·무선 경보전달장비 작동준비
4. 지역상황인경우 중앙통제소에 경보방송요청 준비
5. 상황보고 및 전파
6. 근무요원 전원비상소집
7. 그밖에 필요한 조치

제 9 조(경보발령시 조치) 경보반장은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통제소 및 도 종합상황실, 지역군부대로 부터의 정확한 경보접수
2. 유·무선망에 의한 경보단말 싸이렌취명. 다만, 자동취명을 할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말별로 자체 취명토록 조치
3. 경보발령이 지역상황인경우 중앙통제소에 경보방송 요청
4. 경보전달후 지체없이 이를 중앙통제소장 및 민방위과장(일과이후 또는 휴무일에는 당직반장)에게 보고

제 10 조(경보오보시 조치) 경보반장은 경보발령후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으로 부터의 경보발령 오보확인
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통보 및 중앙통제소에 해명방송 요청
   (민방공 경보전달요강의 해명방송문안 참고)
3. 선조치후 지체없이 이를 중앙통제소장 및 민방위과장(일과 이후 또는

휴무일에는 당직반장)에게 보고

4. 오 경보발령 이외의 오취명발생시는 위의 3항 및 〈별표1-1,1-2〉에 의거 조치

제5장 통제소운영 및 복무

제11조(운영) 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제12조(근무반편성) ①근무요원은 상황근무반과 정비반으로 구분 편성, 운영한다.

②상황근무반은 3명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며 1회근무는 24시간으로 하고 근무교대시간은 매일 오전09:00로 하며 교대근무반은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후 인수,인계한다.

1. 경보발령유무
2. 유·무선 경보장비 및 산하 시·군 경보단말장비의 이상유·무
3. 그밖의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③정비반은 2명 1개반으로 편성,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시설장비를 순회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소 유·무선 경보장비(매주 1회이상)
2. 시·군 경보시설 순회점검(분기 1회이상)
3. 시·군 분배,중계,수신단말장비 정비지원(수시)

④통제소장은 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근무반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야간 2명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3조(비상소집 및 근무) ①통제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 근무요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내에서 교대근무하도록 할수 있으며 그 요령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중앙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의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있을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3.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

4. 기타 통제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통제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전 근무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상황처리 및 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무선망 운영 및 경보전달

2. 지역상황발생시 중앙통제소에 경보방송요청

3. 유·무선 경보장비 점검

4. 비상전원 및 비상발전기 운영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근무자 복무) ①근무요원은 통제소장의 허가없이 통제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근무요원은(별표2)에 정한 근무수칙을 숙지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공경보체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근무요원은 근무복(명찰부착)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관리) ①통제소장은 시설별 통신보안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통제소장은 자체 경보시설에 대해 매월1회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통제소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제한구역표지를 매 출입구마다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로 표시하며 창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주변지역은 외부침입방지를 위해 건물구조와 높이에 따라 1.5m이상 높이로 이중철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통제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상황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급식비등 지급)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급식비, 수당등을 지급한다.

제6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제17조(물품관리) ①통제소장은 통제소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통제소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장비정기점검) ①통제소장은 자체경보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매주1회이상 산하 시·군 경보단말에 대해서는 분기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 및 순회 점검하여야 한다.

1. 경보시설장비의 운영관리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2. 경보시설장비의 점검, 정비상태

3. 운영관리요원의 복무상황

4. 경보업무에 대한 보안점검

5. 기타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도 점검표에 기록유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그 주요사항은 중앙통제소장 및 민방위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경보망점검) ①근무요원은 중앙통제소와 자체경보시설장비 및 산하경보단말간의 경보망 회선점검과 경보시험을 정기적으로 매일 1회 실시하고 장비이상유무와 근무상황을 매일 5회이상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보망 점검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제20조(장비고장시 조치) ①통제소장은 경보시설장비의 고장시에 근무요령으로 하여금 즉시 예비품으로 수리, 복구토록 하고 불가능시에는 정비반의 현지출장 수리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발견된 고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00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자체 수리 불가시에는 전문업체에 의뢰 보수조치하여야 한다.

③통제소장은 경보시설장비 고장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3. 복구예정일시 등

제21조(기록유지) 통제소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소통일지〈별지제 1-1,1-2호서식〉

2. 출입자통제기록부〈별지제 2호서식〉

3. 무선국 검사부〈별지제 3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제 4호서식〉

5.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제 5호서식〉

6. 경보시설 순회점검표〈별도 점검표〉

7. 민방공경보싸이렌 오취명발생시 조치사항〈별표 1-1,1-2〉

8. 민방공 경보망 운영관리요원 근무수칙〈별표 2〉

제22조(관계기관과의 협조)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관리와 민방공경보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중앙통제소,지방방송사,지역군부대, 기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민방공경보망 관리운영요령(경기도 예규 제573호, 1988년 10월 31일)은 폐지한다.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별지제 1 - 1호 서식)

소 통 일 지

19 년 월 일

반 장	소 장	과 장	결재

근무자	
소통대상	중 앙 경 보 통 제 소

	점검시간	점검결과		점검시간	점검결과
유선장비	:		무선장비	:	
	:			:	
	:			:	
	:			:	
	:			:	

소통대상	분 배 단 말						
지역별	근무자	점검시간 / 장비별	점 검 시 간				
			10:00	16:00	23:00	08:00	비 고
의정부시		분배, 중계					
		수신 장치					
안양시		분배, 중계					
		수신 장치					
부천시		분배, 중계					
		수신 장치					
송탄시		분배, 중계					
		수신 장치					

특기사항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일 일 점 검 기 록 부

(고장시에만 기록)

장 비 명	시군명(장소)	고장일시	고장 및 조치내용	비 고
도통제장비	도 통제소			
분배 장치	도 통제			
싸 이 렌				
S S B				
전 용 선 로				
특기사항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출입자통제기록부

구분 / 월일	출입자						안내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용무	출입시간	성명	서명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table>
<tr><td colspan="4">무 선 국 검 사 부</td></tr>
<tr><td rowspan="2">검 사 년 월 일</td><td rowspan="2">년 월 일</td><td>검사관소속</td><td></td></tr>
<tr><td>검사관성명</td><td></td></tr>
<tr><td rowspan="2">판
정</td><td>합 격 여 부</td><td colspan="2"></td></tr>
<tr><td>불합격 사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지 시 사 항</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전말</td><td colspan="2"></td></tr>
</table>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 모 품 대 장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주 용 도

년 월 일	수 입	사 용	재 고	사용목적	사용자 인	비 고

제 2360 호

경 기 도 보

중 요 물 품 이 력 카 - 드

장 비 명	
설 치 장 소	시 • 군 동 , 건물명 :
계 약 년 월 일	19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19 년 월 일
시 설 비	천원 (도비 , 시군비)
제 조 회 사 명	

장 비 구 성 품

품 명	규 격	단 위	비 고

수 리 내 용

품 명	년 월 일	금 액	고 장 내 용

기 타 사 항

* 장비별로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무실에 1부는 각 장비에 부착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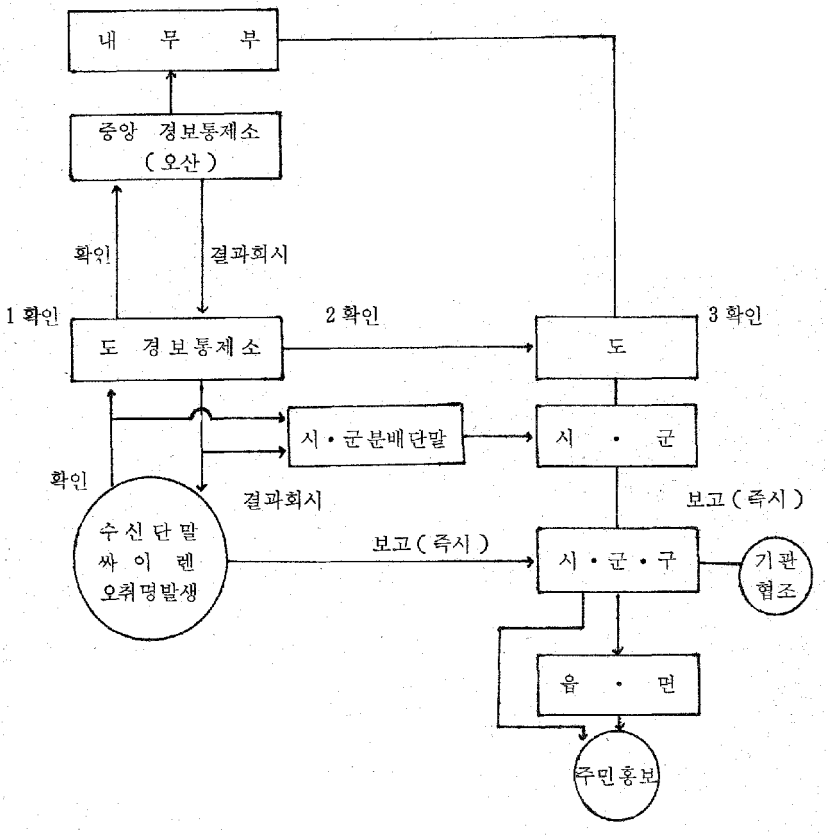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별표1 - 1)

민방공경보싸이렌 오취명발생시 조치사항

o 보 고 체 계



* 상황보고책임자

— 주간(09:00 - 18:00) : 민방위과장(읍·면·동 : 읍면동장 , 담당계장)

— 야간 및 공휴일(18:00 - 익일 09:00) : 일숙직 감독관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별표1 - 2)

○ 보고내용(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 일 시 :
- 장 소 :
- 경보의종류 : 공습 또는 경계
- 가 청 지 역 :
- 오취명원인 :
- 오취명당시 조치사항 :
- 향후 조치계획 :

○ 경보싸이렌 오취명 발생시 해명 방송문안(예시)

○○ 시(군)에서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조금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취명된(공습 또는 경계) 싸이렌은(장비 또는 선로등)고장으로 인하여 오취명된 것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함이 없이 평상생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앰프방송 및 가두방송 2 - 3회 반복 실시)

(별표 2)

민방공경보망 운영관리요원 근무수칙

- 민반공경보망 근무요원은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우리 근무자는 삼천만의 불침번임을 자각하고

- ○ 시대적 사명감과
- ○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 ○ 민방위 기수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 충직하게 근무한다.

1. 경보망 근무요원은 지휘계통과 중앙경보통제소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2. 근무교대자는 30분전까지 출근 합동근무하여야 한다.
3. 근무교대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야한다.
4. 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이를 완벽하게 유지한다.
5. 근무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여하한 경우라도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6. 근무자는 근무중 취침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근무자는 근무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유지에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8. 근무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9. 근무자는 장비 및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고 시

경기도고시제 288 호

1. 동두천도시계획시설(수도:배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제 26 조 규정에 따라 동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동두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8. 11.

경 기 도 지 사

가) 도시계획시설(수도) 실시계획인가사항

(1) 사업의시행지 : 동두천시 광암동 산 102-2 번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 류 : 수도
- 명 칭 : 배수지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동두천시 생연1동 438번지
- 성 명 : 동두천시장

(4)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결정면적 : 2723 ㎡
- 시행면적 : 2723 ㎡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공 : 1990 (인가일로부터)
- 준 공 : 1991. 6. 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적 (㎡)	결정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광암동 102-2	임	7,907	2,358	서울시강동구고덕동 670 시영아파트 16동102호	이성연외 1인
2	광암동522-4	도	694	365		동 두 천 시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89 호

1. 경기도고시 제 79-435 (79.10.19) 호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동두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대로 1 류 1 호) 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 인가내용 및 관계도면을 동두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8. 13.

경 기 도 지 사

가. 동두천도시계획 (도로) 실시계획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 : 동두천시 보산동 361 번지외 27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류 — 도로

o 명칭 — 대로 1 류 1 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o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o 성명 : 동두천시장

4) 사업실시면적 및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연 장	시 점	종 점
결정	대 로	1	1	35 m	10,520 m	송내동 814	상봉암동 38-1
시행	〃	1	1	8 m	270 m	보산동 361	보산동 392-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공 : 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
- 준공예정 : 91.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나. 도면은 별첨과 같음(도면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동두천시

일련	소 재 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번호	동(리)	지 번		(㎡)	(㎡)	주 소	성 명	권 리
1	보산	361	대	324	187.8	동두천시보산동316	황경근	
2	〃	358-13	〃	46	1.3	〃 353	이장식	
3	〃	358-11	〃	136	131.9	〃 358	김봉덕	
4	〃	390-6	도	869	261.0		국 (건설부)	
5	〃	358-16	도	73	51.3	동두천시보산동353	이장식	
6	〃	355-4	전	2,555	54.3		국	
7	〃	354-10	대	40	14.9	인천남구도화동401-3	유긍열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일련 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
8	보산	354-6	대	109	55.3	인천남구도화 401-3	유긍열	
9	〃	354-5	〃	119	57.8	동두천보산동 354	김기순	
10	〃	353-10	〃	185	118.0	〃 생연동 570-43	박인택	
11	〃	353-41	〃	329	105.1	〃 보산동 353	이장식	
12	〃	353-15	〃	321	263.6	〃 353-13	김금동	
13	〃	391-4	〃	301	87.0	〃 428	윤정오	
14	〃	391-8	〃	231	65.7	〃	〃	
15	〃	391-2	〃	407	127.6	〃	문강희	
16	〃	391-7	〃	469	129.7	서울구로구고척동 225-7(옥련연립)	최병훈	
17	〃	392-5	〃	420	162.4	동두천보산동392-5	채정숙	근저당설정농업협동조합 보산지점
18	〃	360-2	〃	274	41.1	〃 360-2	이하자	근저당설정 경기은행 양회지점
19	〃	360-7	〃	132	10.4	〃	〃	근저당설정 상업은행 군포지점
20	〃	359-1	〃	129	70.7	〃 358	김봉덕	
21	〃	358-10	〃	139	74.2	〃 358	김정례	근저당설정 자동차보험 대전지점
22	〃	358-9	〃	175	33.3	영일군대보면구만리 364-27	고현옥	근저당설정 자동차보험 대전지점
23	〃	358-8	〃	221	12.2	동두천시보산동 358-8	김선예	근저당설정 동두천농협
24	〃	354-4	〃	400	46.3	경주군양남면수렴리 523	김장원	가등기 관악구신림동98-28 유정임
25	〃	353-3	도	268	27.0	동두천시보산동 353	이장식	
26	〃	391-3	답	116	32.8	〃 363	정동욱	
27	〃	391-5	도	69	11	〃	〃	
28	〃	391-6	〃	149	149	〃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동두천시

일련 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성명
1	보산동	361	가옥	벽돌, 기와	12.1	동두천시보산동 361	황경근	
	〃	〃	〃	〃	14			
	〃	〃	〃	〃	41			
2	〃	360-7	〃	〃	24	동두천시보산동 360-7	이화자	
3	〃	359-1	〃	〃	32	〃 358	김봉덕	
	〃	〃	〃	〃	47			
	〃	〃	〃	브럭, 스레트	64			
	〃	〃	〃	벽돌, 스라브	7			
4	〃	358-10	〃	〃	62	동두천시보산동 358	김정례	
5	〃	358-9	〃	브럭, 스레트	13	영일군대보면구만리 364-27	고현옥	
	〃	〃	〃	〃	9			
6	〃	358-8	〃	브럭, 기와	1	동두천시보산동 358	김선례	
	〃	〃	〃	벽돌, 스라브	2			
7	〃	354-6	〃	브럭, 기와	20	인천남구도화동 401-3	유긍열	
	〃	〃	〃	〃	39			
8	〃	354-5	〃	〃	38	동두천시보산동 354	김기순	
9	〃	353-10	〃	〃	80	〃 생연동 570-43	박인택	
10	〃	353-41	〃	브럭, 스레트	62	보산동 358-13	이장식	
11	〃	353-13	〃	벽돌, 스라브	36	〃 353	김금동	
	〃	〃	〃	브럭, 스레트	48			
12	〃	391-4	〃	벽돌, 기와	59	보산동 429	박정옥	
	〃	〃	〃	벽돌, 스라브	19			
13	〃	391-8	〃	〃	26	보산동 429	박정옥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일련 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성명
14	보산동	391-4	가 옥	브럭, 기와	12	동두천시보산동 428	윤정오	
	〃		〃		14			
15	〃	391-2	〃	벽돌, 스라브	58	동두천시보산동 428	문강희	
	〃		〃	〃	26			
16	〃	391-8	〃	〃	84	동두천시보산동 429	박정옥	
17	〃	392-5	〃	브럭, 기와	103	〃 392-5	채정숙	
18	〃	361	담 장	브 럭	8 m	〃 361	황경근	
19	〃	355-4	〃	〃	25 m		미군부대	
20	〃		통 신 케이블		39 m		통신공사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90 호

1. 경기도고시 제 158 호(88.6.22)로 시설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된 오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23 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8. 13.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가. 오산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 : 오산시 오산동 50-3-42외 28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로(소로3-23호)

명칭 : 오산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개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50-1

성명 : 오산시장

4)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소로	3	23	6 m	구획 도로	300	대로 3-2 오산 609-105 (대)	소로 1-12 오산 502-42 (대)
금회실시 계획인가	〃	〃	〃	〃	〃	〃	〃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 인가일로부터 5일이내

준공 : 199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나. 도면은 별첨과 같음(도면생략)

• 토지조서

순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권 리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	503-42	대	182	55	김동수	오산시원동 784-10			
					안정희	오산시오산동 508-9			
2	503-47	〃	235	32	양규태	평택시통복동 78-3			
3	503-43	〃	195	92	박대만	오산시오산동 614	㈜경기은행	인천시중구사동 9-1	근저당설정 ₩86,000,000
4	502-38	전	762	680	박순금	오산시오산동 502-11			
5	502-6	대	172	45	문종환	〃 〃 〃			
6	502-11	〃	198	9	〃	〃 〃 〃			
7	503-21	〃	251	17	함정화	오산시오산동 503-9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8	503-22	전	284	168	김용천	〃 〃 503			
9	502-7	대	36	6	문종환	〃 〃 502-11			
10	503-25	전	116	17	김홍천	〃 〃 503			
11	508-1	〃	671	82	황재선	〃 〃 448-5			
					서강욱	〃 〃 517			
					유의섭	〃 〃 503-39			
12	523-10	대	175	59	국	재 무 부			
					김홍배	오산시오산동 523-10			

순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3	523-11	대	20	11	국	재무부			
14	523-20	도	76	4	국	건설부			
15	523-6	대	208	1	심홍섭	화성군동탄면송리 556			
16	523-22	〃	261	1	이덕수	오산시오산동 523			
17	523-23	〃	261	104	국	재무부			
18	522-1	〃	175	47	국	〃			
19	522-2	〃	142	16	이만윤	오산시오산동 522-2			
20	522-3	〃	106	36	이동윤	〃 〃 522			
21	522-7	〃	116	34	문말순	〃 〃 522-7	조창연	오산시오산동 522-7	가처분신청
22	522-8	〃	486	176	조규혁	〃 〃 522-4			
					임복순	〃 〃 522-8			
23	609-49	전	179	114	국	재무부			
24	609-19	대	76	42	선세영	오산시오산동 609-19			
25	609-84	〃	79	37	민정근	〃 〃 609-84			
26	609-85	〃	93	48	문창식	〃 〃 609-58			
27	609-48	〃	204	1	박찬국	〃 〃 609			
28	523-7	도	60	24	국				
29	822-18	〃	5,835	45	국	건설부			

건물조서

순번	지 번	용도	구 조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권 리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1	503-42	주택	세멘브럭 세멘기와	25	김 동 수	오산시원동 784-10			
					안 정 희	〃 오산동 508-9			
2	503-47	〃	세멘브럭 스레트	3	양 규 태	평택시통복동 78-3			
3	502-2	〃	〃	12	상 동	상 동			
4	503-22	〃	세멘브럭 세멘기와	24	김 용 천	오산시오산동 503			
5	502-25	〃	세멘브럭 스레트	28	상 동	상 동			
6	523-10	〃	〃	7	국	재무부			
					김 홍 배	오산시오산동 523-10			
7	523-23	〃	세멘브럭 세멘기와	23	국	재무부			
8	522-1	〃	〃	3	국	〃			
9	522-8	〃	흙벽돌 세멘기와	33	조 규 혁	오산시오산동 522-4			
					임 복 순	〃 〃 522-8			
10	609-19	〃	세멘브럭 세멘기와	21	선 세 영	〃 〃 609-19			
11	609-84	〃	세멘브럭 세멘기와	17	민 경 근	〃 〃 609-84			
12	609-85	〃	〃	16	문 창 식	〃 〃 609-58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91 호

1. 경기도고시 제 304 호(75.9.26)로 지적 승인된 안양도시계획(도로 : 소로 2-307 호선)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 인가내용 및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및 관할 출장소와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8. 13

경 기 도 지 사

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 : 안양시 박달동 48-8 - 80-2 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ㅡ도로
└ 명칭ㅡ소 2-307 호선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소ㅡ안양시 안양 6 동 519 번지

성명ㅡ안양시장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4) 사업실시면적 및 규모

(단위 : m^2)

명 칭	폭	연 장	기 점	종 점	금회시행	차후시행
소 2-307 호선	8 m	458m	박달동 소 1-236 호선	박 달동 2 지 구계	145 m	313 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 인가일로부터 7 일이내

준공 : 90.9.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나. 도면은 별첨과 같음(도면생략)

○ 토지조서

번호	토지조서 시	토지조서 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유자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1	안양시	박달동	48-8	전	35	35	안 양 시	
2	〃	〃	48-9	도	49	49	〃	
3	〃	〃	49-8	도	1	1	〃	
4	〃	〃	49-9	도	101	101	박달동 49 김인자외 9인	
5	〃	〃	50-9	도	87	87	안 양 시	
6	〃	〃	841-3	구	588	16	〃	
7	〃	〃	79-20	도	96	96	〃	
8	〃	〃	79-17	도	1	1	인천시북구부평동 756-44안우원	근저당권 설정(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
9	〃	〃	79-22	도	71	71	안 양 시	
10	〃	〃	80-25	도	23	23	〃	
11	〃	〃	80-26	도	79	79	성남시단대 3 동 681-1 강해순외 1인	
12	〃	〃	80-28	도	14	14	〃	

13	안양시	박달동	80-37	도	92	92	안 양 시	
14	〃	〃	80-30	도	59	59	〃	
15	〃	〃	80-34	도	3	3	동대문구전농동 127 홍승균	
16	〃	〃	80-35	도	129	129	안 양 시	
17	〃	〃	80-32	도	14	14	〃	
18	〃	〃	80-22	답	40	40	국 방 부	
19	〃	〃	80-2	답	38	38	〃	
20	〃	〃	101-10	답	10	10	〃	
21	〃	〃	844-3	도	4,458	22	안 양 시	
22	〃	〃	80-33	도	72	72	〃	
23	〃	〃	79-19	도	43	43	〃	
계			23 필지			1,103		

o 물건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시	동					
1	안양시	박달 48-8	주 택	브럭기와	34.34	안 양 시	
			창 고	브럭스레트	8.47	〃	
2	〃	〃 49-9	주 택	브럭기와	36	박달동 49 김인자외 4인	
		〃 〃	〃	〃	8 (1식)	〃	
		〃 〃	장독대	1.5 × 3	1식	〃	
		〃 〃	주 택	브럭스레트	14	〃	
3	〃	〃 841-3	〃	〃	6.24 (1식)	안 양 시	
4	〃	〃 79-20	〃	〃	72	〃	
		〃 〃	수 목		1식	〃	
5	〃	〃 79-19	주 택	브럭기와	14.3	〃	
		〃 〃	〃	브럭스레트	5.20		

6	안양시	박달 79-22	주 택	벽돌기와	36	안 양 시	
		〃	자가수도	1 식			
7	〃	〃 79-3	주 택	브럭기와	14.30	〃	
8	〃	〃 79-5	〃	벽돌기와	36	〃	
9	〃	〃 80-25	〃	브럭기와	84	〃	
10	〃	〃 80-4	〃	〃	41.8	성남시단대 3 동 681-1 강해순	
		〃	〃	〃	11.7	〃	
11	〃	〃 49-9	〃	브럭스레트	1	박달동 49 김인자	
		〃	〃	브럭기와	90		
12	〃	〃 80-4	〃	〃	36.2	성남시단대 3 동 681-1 강해순	
		〃	〃	〃	29.10		
13	〃	〃 80-37	〃	〃	89.40	안 양 시	
14	〃	〃 80-30	〃	〃	58.50	〃	

번호	소재지 시	소재지 동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15	안양시	박달 80-35	주 택	벽돌기와	36	안 양 시	
		〃	장독대	1.6 × 1.7	1 식		
16	〃	박달80-33	주 택	벽돌스레트	11.4	〃	
				〃	53.40		
17	〃	박달48-3	목욕탕	브럭스라브	5.12	박달동 49 구 학 서	
			담 장	브 럭	9		
			철대문		1 식		
			상수도		〃		
18	〃	박달80-32	주 택	벽돌기와	1.40	안 양 시	
19	〃	〃 79-17	철대문	1 식		인천시북구부평동 756-44	근저당권설정(국민은행)
			담 장	브 럭	4	안 우 원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 - 1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92 호

1. 건설부고시 제 618 호('87. 12. 1)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 152 호('88. 6. 21)호로 지적승인된바있는 안양도시계획도로 대로 3－8 호선과 대로 3－12 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 같은법 제 26 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안양도시계획 도로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관계도면을 안양시청과 관할출장소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8. 13

경 기 도 지 사

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사항

(1) 사업시행지 : 안양시 박달동 136-3 에서 안양시 박달동 911 (계획구역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로

명 칭 : 대 3－8 호선 및 대 3－12 호선

(3) 사업시행자 : 안양시장

(4)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공 : 인가일로부터 7일이내

준 공 : '90. 12. 31

(5)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단위 : m)

명 칭	폭	연 장	기 점	종 점	기시행	금회시행	차후시행
대 3－8 호선	25	3,900	중 1－3	계획구역계	－	1,780	2,120
대 3－12 호선	25	3,400	대 3－3	대 3－4	－	1,032	2,36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나. 도면은 별첨과 같음(도면생략)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 용지기본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 번				
1	박달	136-3	도 로	856	251.5	
2		-8	〃	370	101	
3		-7	전	661	228.3	
4		135-2	도 로	241	267.7	
5		-5	답	264	72.0	
6		137-2	도 로	641	409.5	
7		-13	답	116	108	
8		-5	〃	1545	15.1	
9		138-9	〃	1263	85.5	
10		-5	도 로	259	251.4	
11		141-1	〃	238	235.8	
12		-5	전	585	128.9	
13		-8	대 지	247	15.3	
14		133-7	〃	238	137.6	
15		132-3	〃	1299	144.7	
16		128-5	전	1537	369.4	
17		-3	도 로	1187	897	
18		127-9	전	696	381.2	
19		-3	도 로	932	932	
20		134-2	〃	271	335.6	
21		133-2	〃	1345	1430.2	
22		132-1	〃	43	43	
23		128-1	전	208	208	
24		126-2	도 로	575	637.7	
25		127-2	〃	2013	2176.3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 소	성 명	종류 및 내용
	미 복 구	좌 동
	안 양 시	〃
50-2	김현중외 1인	〃
	안 양 시	〃
50-2	김현중외 1인	〃
경성구 수량동 153	김 현 배	〃
49	이 병 권	〃
128-2	김 성 수	〃
49	이 병 권	〃
	안 양 시	〃
안양동 654-11	서 원 오	〃
141-5	김 천 복	〃
〃	〃	〃
647	변 재 덕	근저당권자 : 서울성동구205-205 세일석유(주)
〃	〃	〃
128-3	장 세 희	좌 동
	국 (건설부)	〃
군포시 산본동 236-6	(주)신안 주택건설	〃
	국 (건설부)	〃
99	추 선 동	〃
	안 양 시	〃
안양동 815	박 노 성	〃
25-9	김옥순외 1인	〃
	안 양 시	〃
592	인순갑외 1인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번				
26	박달	852	도로	246	138.8	
27		123-3	〃	8	8	
28		123-2	〃	126	134.6	
29		838-14	하천	772	139.6	
30		124-2	도로	737	761.6	
31		-3	〃	222	222	
32		-6	전	147	84.8	
33		128-3	답	2	2	
34		157-21	대지	1748	278.8	
35		-3	도로	1168	1168	
36		-2	〃	2628	3152.5	
37		-18	〃	76	65	
38		157-8	〃	331	88.5	
39		258-7	답	365	118.2	
40		838-37	천	19688	425.4	
41		602-1	도로	7	7	
42		-4	〃	36	10.4	
43		무지번	〃		148.7	
44		607-11	대지	155	15	
45		-10	〃	20		
46		-7	도로	37	8.3	
47		607-3	대지	69	69	
48		-4	〃	36	17.7	
49		-6	도로	59	16.7	
50		607-2	대지	1762	1041.8	
51		-14	도로	515	561.5	
52		-1	대	11388	65.9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국 (재무부)	좌 동
서울 종로구 다동 96	김 성 집	〃
〃	〃	〃
	국 (건설부)	〃
86	박 유 선	〃
	국 (건설부)	〃
86	박 유 선	〃
	미 복 구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47	(주) 우 영 석 유	〃
	국 (건설부)	〃
	안 양 시	〃
	국 (건설부)	〃
	〃	〃
서울 중랑구 목동 122-1	박 순 석	〃
	국 (건설부)	〃
	〃	〃
안양동 823-27	주 영 하	〃
		〃
605-6	김 문 치	〃
〃	〃	〃
	국 (건설부)	〃
	〃	〃
	〃	〃
	〃	〃
	국 (국방부)	〃
	국 (건설부)	〃
삼신 607-1 3동 403호	김인수외 228인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 번				
53	박달	608-2	도 로	96	96	
54		619-17	〃	225	124.5	
55		604-1	〃	106	31	
56		산 26-2	〃	182	6	
57		-1	〃	496	411	
58		산 27-9	〃	661	570	
59		608-6	〃	499	499	
60		산 27-8	임 야	3868	88	
61		608-7	도 로	205	205	
62		615-11	대 지	565	201	
63		608-11	도 로	265	106	
64		615-7	〃	9355	9057	
65		614-20	〃	17	17	
66		608-5	〃	40	40	
67		-26	〃		335	
68		산 27-10	임 야	1740	153	
69		-3	도 로	946	941	
70		산 28-3	〃	111	976	
71		-6	〃	33	33	
72		616-6	〃	304	304	
73		616-8	임 야	258	34	
74		616-7	도 로	932	932	
75		산 30-3	임 야	13081	240	
76		-1	도 로	198	198	
77		-7	임 야	323	81	
78		-8	〃	323	20	
79		617-12	장	5624	32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종로구 청진동 159-1		좌 동
	국 (건설부)	〃
	〃	〃
	〃	〃
604-1	주식회사 삼영기업	〃
	구 구	〃
	국 (건설부)	〃
	국 (산림청)	〃
	국 (건설부)	〃
615	대한잉크페인트 제조주식회사	근저당 : 한일장기신용은행
	국 (건설부)	〃
	〃	〃
615	대한잉크페인트 제조주식회사	근저당 : 한일은행 증구남대로 2가 130
86	박 삼 선	좌 동
		〃
	국 (산림청)	〃
	국	〃
	국	〃
	국 (건설부)	〃
	국 (육군성)	〃
	〃	〃
	〃	〃
강서구 내발산동 715-2	김 을 묵	〃
	국	〃
안양동 437-6	안 병 진	〃
강남구 방배동 825-5	김 상 윤	〃
701-12	〃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 번				
80	박달	617-14	장	10	10	
81		-2	도 로	1517	1517	
82		-3	〃	978	978	
83		-6	〃	413	299	
84		615-8	〃	271	271	
85		616-2	〃	46	46	
86		614-28	〃	3	3	
87		-29	〃	7	7	
88		617-9	제 방	172	172	
89		-7	〃	92	25	
90		617-8	전	13	11	
91		618-4	도 로	79	7	
92		617-10	잡종지	301	66	
93		-11	도	245	245	
94		620-12	도 로	109	109	
95		617-5	잡	238	234	
96		620-2	도 로	737	701	
97		617-4	〃	73	73	
98		산 32-9	〃	499	329	
99		산 32-4	〃	1263	1103	
100		산 32-3	〃	3114	3028	
101		-12	임 야	16088	1221	
102		-10	도 로	76	76	
103		-8	임 야	420	411	
104		산 32-6	〃	1474	137	
105		689-33	도 로	13	13	
106		702-4	대	76	13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 소	성 명	종류 및 내용
강남구 방배동 825-5	김 상 윤	좌 동
종로 삼청동 62-17	성익환외 4 인	〃
	국 (건설부)	〃
	〃	〃
	〃	〃
석수동 238	태 범 엽	〃
	국 (건설부)	〃
615	대한잉크페인트 제조주식회사	근저당 : 한일은행
강남구 방배동 825-5	김 상 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고양 지로면 대당리 김광
〃	〃	〃
〃	〃	좌 동
618-4	임연택외 1 인	〃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 52 주공 621 동 304 호	김 상 윤	〃
	국 (건설부)	〃
	〃	〃
강남구 방배동 825-5	김 상 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자 : 김추갑외 1 인
774	임 종 성	좌 동
시흥군 과천면 별양동 52 주공 621 동 304 호	김 상 윤	〃
620-5	동아유리공업(주)	근저정권자 : 경기은행 (안양지점)
	국 (건설부)	좌 동
	〃	〃
620-5	동아유리공업(주)	근저정권자 : 경기은행 (안양지점)
	국 (건설부)	좌 동
688-1	동서유리공업(주)	근저당 : 조흥은행
〃	〃	〃
	국 (건설부)	좌 동
영등포구 가리봉동 130-2	박 봉 현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번				
107	박달	689	도로	112	112	
108		산 33-6	〃	298	180	
109		690-2	〃	212	212	
110		691-1	〃	69	69	
111		692-11	〃	50	50	
112		-12	〃	383	383	
113		693-7	〃	202	202	
114		693-3	〃	370	370	
115		695	〃		44	
116		693-5	〃	156	43	
117		695-4	〃	129	45	
118		-2	〃	519	519	
119		-3	〃	235	227	
120		688-3	대지	628	43	
121		-5	도로	3	3	
122		-4	〃	96	96	
123		-7	〃	10	10	
124		864-48	천	32486	1941	
125		산 33-3	임야	992	334	
126		690-1	잡종지	66	60	
127		-3	도로	30	30	
128		692-2	〃	66	54	
129		-13	〃	79	79	
130		-10	〃	205	205	
131		691-4	대지	7	7	
132		-16	도로	8	8	
133		-7	〃	7	7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국 (건설부)	좌동
	〃	〃
	〃	〃
	〃	〃
시흥시 거모동 1605-1	김병두	지상권점령지상권 : 서울신탁은행
	국 (건설부)	좌동
화성군 반월면 팔곡리 367	이관치	〃
	국 (건설부)	〃
		〃
	국 (건설부)	〃
	〃	〃
서대문구 고남동 67	김도자	〃
	국 (건설부)	〃
688-1	동서유리공업(주)	근저당 : 조흥은행
	국 (건설부)	좌동
	〃	〃
	안양시	〃
	국 (건설부)	〃
영등포구 영등포동 6-30	이량상	〃
688-1	동서유리공업(주)	근저당 : 조흥은행
	국 (건설부)	좌동
688-1	동서유리공업(주)	〃
	국 (건설부)	〃
	〃	〃
시흥시 거모동 1605-1	김병두	지상권 : 서울신탁은행
〃	〃	〃
	국 (건설부)	좌동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번				
134	박달	693-2	도로	482	96	
135		692-14	〃	17	17	
136		무지적	〃		61	
137		694-2	대지	66	257	
138		693-4	〃	2631	297	
139		696-2	도로	304	304	
140		693-6	〃	83	83	
141		696	〃		18	
142		702-2	〃	731	731	
143		-5	〃	185	185	
144		-1	답	727	91	
145		701-23	〃	565	15	
146		705-3	대지	902	39	
147		701-5	도로	1201	1201	
148		701-7	〃	30	20	
149		701-28	전	23	8	
150		706-3	〃	215	9	
151		701-27	〃	26	10	
152		701-3	대지	20	4	
153		707-7	답	238	14	
154		-4	도로	10	4	
155		-5	〃	10	3	
156		895	〃	139	57	
157		748-2	〃	23	23	
158		702-6	〃	43	43	
159		702-21	〃	20	20	
160		701-4	〃	307	306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시흥군 거모동 693-1	대일실업(주)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266	손익동	좌동
	무지적	〃
	미복구	〃
693-4	성훈경금속(주)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종로구 서린동 97	백유진외 1인	좌동
서대문구 연희동 514-1	김성수	〃
	대장무	〃
773	임항규	〃
	국 (건설부)	〃
송파구 오금동 44 가락 3 차현대아파트 32 동 1001 호	고창승외 1인	〃
강서구 목동 807-1	한주석유(주)외 1인	〃
〃	〃	근저당 : 쌍용정유(주)
	국 (건설부)	좌동
강서구 목동 807-1	한주석유(주)	〃
〃	〃	〃
〃	〃	〃
〃	〃	〃
〃	〃	〃
699	김영선외 2인	〃
	국 (건설부)	〃
	〃	〃
	〃	〃
	미복구	〃
	국 (건설부)	〃
	〃	〃
여주군 여주읍 송월리 1266	손익동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 번				
161	박달	701-22	도 로	69	62	
162		705-4	〃	307	306	
163		701-24	답	13	9	
164		-6	도 로	350	350	
165		-25	〃	33	23	
166		707-6	〃	53	45	
167		707-2	〃	456	456	
168		892	〃	526	340	
169		748-1	〃	63	63	
170		747-1	〃	149	149	
171		-2	답	145	80	
172		산 75-2	임 야	21223	129	
173		749-2	도 로	301	301	
174		산 75-3	〃	694	675	
175		893	〃	863	333	
176		749-3	〃	40	40	
177		898	〃	1653	1603	
178		749-4	〃	179	161	
179		750-2	〃	73	73	
180		-1	〃	241	241	
181		-4	답	145	23	
182		-6	수도요지	2523	1727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국 (건설부)	좌동
여주군 여주읍 송월리 773	임 종 록	〃
종로구 평창동 456-3	김 로 석	〃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266	손 익 동	〃
	국 (건설부)	〃
	〃	〃
마산시 교방동 355-1 주공아파트 6 동 501	노 승 민	〃
	국 (건설부)	〃
	미 복 구	〃
서울시 중구 다동 96	김 성 집	〃
	국 (건설부)	〃
서초구 서초동 산 192-3 삼풍아파트 25 동 801 동	김덕진외 1 인	〃
	안 양 시	〃
	국 (건설부)	〃
	〃	〃
종로구 청진동 159-1	박 정 빈	〃
	국 (건설부)	〃
	〃	〃
	국 (국방부)	〃
마산시 교방동 355-1 주공아파트 6 동 501 호	노 승 민	〃
	국 (국방부)	〃
대전시 동구면 축동산 6-2	한국수자원공사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편입목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 번				
183	박달	750-3	도 로	205	205	
184		-5	답	457	9	
185		751-3	〃	2330	773	
186		-2	도 로	307	307	
187		-1	〃	496	496	
188		-4	〃	20	20	
189		752-1	〃	473	473	
190		-2	〃	83	83	
191		산 74-4	〃	595	5	
192		752-8	답	1368	538	
193		-4	〃	1853	90	
194		-14	〃	78	78	
195		-5	〃	1051	59	
196		-6	〃	322	81	
197		-3	도 로	93	93	
198		753-13	답	6198	155	
199		-20	〃	62	62	
200		-5	〃	194	194	
201		-2	도 로	969	952	
202		-3	답	1190	41	
203		-17	〃	946	39	
204		-4	도 로	13	13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 소	성 명	종류 및 내용
	국 (건설부)	좌 동
안양동 436-1 삼익아파트 303 호	신 필 영	〃
안산시 고잔동 286-11	신 관 선	〃
	국 (건설부)	〃
773	이 정 순	〃
	국 (건설부)	〃
종로구 서린동 97	박남진외 1 인	〃
	국 (건설부)	〃
	〃	〃
774	임 애 영	〃
안양동 936-12	원 진 상	〃
774	임 애 영	〃
서초구 반포동 1184 반포아 파트 65 동 503 호	유 용 규	〃
안양동 936-12	원 진 상	〃
종로구 서린동 97	박남진외 1 인	〃
753-13	차일무외 1 인	〃
서초구 반포동 1184 반포아파트 65 동 503 호	유 용 규	〃
마포구 합정동 358-4 홍익주택 106 호	염동호외 3 인	〃
종로구 서린동 97	박남진외 1 인	〃
서초구 반포동 1184 반포아파트 65 동 503 호	유 용 규	〃
〃	〃	〃
	국 (건설부)	〃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리, 동	지 번				
205	박달	753-14	도 로	195	65	
206		620-6	공장용지	14774	12	
207		770-5	도 로	172	154	
208		769-1	〃	886	881	
209		770	전	1838	304	
210		770-2	도 로	1521	1451	
211		769-2	〃	618	145	
212		산 110-1	임 야	34413	2	
213		-4	〃	198	198	
214		-6	도 로	198	198	
215		산 111-2	〃	94	99	
216		-1	〃	297	74	
217		753-15	〃	532	457	
218		산 110-5	임 야	3669	348	
219		산 73-2	도	1091	117	
220		911	〃	1488	707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원인자
주 소	성 명	종류 및 내용
종로구 서린동 97	백 성 수	좌 동
620-5	동이유리공업㈜	〃
	국 (건설부)	〃
	미 복 구	〃
시흥시 수암동 양산리 21	유 용 규	〃
마포구 염리동 21-166	염 재 식	〃
	국 (건설부)	〃
시흥군 의왕읍 청계리 285	이귀영외 10인	〃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38	전오희외 2인	〃
	국 (건설부)	〃
동대문구 제기동 819	구덕희외 4인	〃
	국 (건설부)	〃
	〃	〃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 38	전오희외 2인	〃
중구 명동 2가 88-2	손 승 방	〃
	국 (건설부)	〃

○ 물건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m^2)	소유자 주소, 성명	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시	동					
1	안양시	박달135-5	담장	브럭조	70 m	박달동 137-15 김현중	좌동
2	〃	〃	〃	파이프	45 m	〃 새한자동차	〃
	〃	〃	마당	콘크리트	37.35	〃	〃
	〃	〃	교통신호기		1—식	〃	〃
	〃	〃	경사로		1—식	〃	〃
3	〃	〃	주택	벽돌, 스타	11.38	박달동 138-1 진영식	〃
4	〃	〃	담장	브럭조	23 m	박달동 99 주선동	〃
5	〃	〃	가로화단	적벽돌	5.61	박달동 111-2 한상구	〃
	〃	〃	경비실	철근콘크리트스라브	67.2	〃	〃
	〃	〃	야적창고	경량철골조스레트	60.75	〃	〃
	〃	〃	계량창고	파이프조	8.25	〃	〃

	안 양	박달동 133-1	담 장	브 럭 조	36	박달동 111-2 한 상 구	좌 동
	〃	〃	우 물		1 식	〃	〃
	〃	〃	은행나무외		7 주	〃	〃
6	〃	〃 141-5	점 포	벽돌기와조	85	〃 141-5 김 대 호	〃
7	〃	〃	〃	벽돌 스라브	110.25	〃 141-5 김 천 복	근저당 : 안양단위농업협동조합
	〃	〃	욕 탑	브럭 스레트	18.5	〃	〃
	〃	〃	점 포	철판 스레트	40.3	〃	〃
	〃	〃	주 택	적벽돌 스라브	105.05	〃	〃
	〃	〃	욕 탑	브럭조 기와	73.7	〃	〃
	〃	〃	지 하		25	〃	〃
	〃	〃	주 택	적벽돌 스라브	59.22	〃	〃
	〃	〃	지 하 실		16	〃	〃
	〃	〃	화 장 실	브럭 스레트	9.1	〃	〃
	〃	〃	자 동 펌 프		1 식	〃	좌 동
	〃	〃	주 택	브럭 스레트	15.6	〃	〃
	〃	〃	느 티 나 무		1 주	〃	〃
8	〃	〃 133-7	주 택	벽돌 스레트	57.5	〃 133-7 변 재 덕	근저당 : 세일섬유(주)
	〃	〃	점 포	벽돌 기와	48.96	〃	〃
	〃	〃	간 판	(주유소)	1 식	〃	좌 동
	〃	〃	담 장	브 럭 조	18	〃	〃
	〃	〃	마 당	콘크리트포장	300	〃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성명	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시	동					
8	안양	박달동 133-7	캐노피	철근콘크리트	49	박달동 133-7 변재덕	좌동
	〃	〃	폐유유도관		20	〃	〃
	〃	〃	맨홀		1 식	〃	〃
	〃	〃	주유기		3 대	〃	〃
9	〃	〃 128-5	점포	벽돌 스레트	39	〃 128-5 정세겸	〃
	〃	〃	담장	브럭	5.7	〃	〃
10	〃	〃	비닐하우스	파이프	255	〃 124-6	〃
11	〃	〃 133-4	자전거 보관소	파이프 철망 스레트	105	〃 120 정봉원	〃
	〃	〃	초소	철기둥 알미늄	5.6	〃	〃
	〃	〃	철사다리		1 식	〃	〃
	〃	〃	창고	철제 천막	12.75	〃	〃
	〃	〃	담장	브럭 철조망	86	〃	〃
	〃	〃	계단	콘크리트	4	〃	〃
	〃	〃	구판상	경량철골조	109.62	〃	〃
	〃	〃	공장	철파이프, 스레트	20.16	〃	〃
	〃	〃	간판		1 식	〃	〃
	〃	〃	대문		〃	〃	〃
	〃	〃	이동식창고	철파이프, 스레트	110-식	〃	〃

	〃	〃	마 당	콘크리트	400	〃	〃
12	〃	〃 157-21	점포및주택	철근콘크리트 1 층	563.85	〃 157-21 김 해 산	〃
	〃	〃		2 층		〃	〃
	〃	〃		3 층		〃	〃
	〃	〃		옥 탑	20	〃	〃
	〃	〃		지 하	198.45	〃	〃
	〃	〃	사 무 실	철근콘크리트	288.5	〃	〃
	〃	〃	캐 노 피	〃	52.7	〃	〃
	〃	〃	주 유 기		10대	〃	〃
	〃	〃	주유탱크	40000L3 20000L2	1 식	〃	〃
	〃	〃	기 계 실		66.56	〃	〃
	〃	〃	물 탱 크		116.46	〃	〃
	〃	〃	배 전 판		1 식	〃	〃
	〃	〃	세 차 장	콘크리트	93.5	〃	〃
	〃	〃	마 당	콘크리트포장	800	〃	〃
	〃	〃	담 장	콘크리트	11	〃	〃
	〃	〃	사 무 실	경량철골조	59.85	〃	〃
	〃	〃	간 판	(주유소)	2 식	〃	〃
13	〃	박달동 607-20	담 장	벽돌 파이프	28	〃 607-20 김 해 산	〃
14	〃	〃 607-11	점 포	벽돌 기와	102.12	〃 607-11 김 문 치	〃

번호	소재지 시	소재지 동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성명	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안 양	박달동 607-11	담 장	조 립 식	3 칸	박달동 607-11 김 문 치	좌 동
15	〃	〃 606-28	점 포	목조스레트	10	〃 607-28 최 성 남	〃
	〃	〃	보일러실및 화장실	벽돌 스라브	6.4	〃	〃
	〃	〃	철 대 문		1 식	〃	〃
	〃	〃	향나무 외		3 주	〃	〃
16	〃	〃 606-16	공 장	브럭 스레트	77.6	박달동삼신Ⓐ1동 528 구 장 수	〃
17	〃	〃 606-30	담 장	조 립 식	9.1	박달동 606-30 강 태 준	〃
	〃	〃	철 대 문		1 식	〃	〃
	〃	〃	밤나무 외		4 주	〃	〃
18	〃	〃 606-31	주 택	브럭스레트	57.04	박달동 606-31 박 윤 석	〃
	〃	〃	화 장 실	〃	3	〃	〃
	〃	〃	철 대 문		1 식	〃	〃
19	〃	〃 604-25	수 위 실	알 미 늄	10.24	박달동 604-25 삼애리본(주)	〃
	〃	〃	담 장	브 럭	41.8	〃	〃
	〃	〃	철 대 문		1 식	〃	〃
	〃	〃	공 장	철재 스레트	351-9	〃	〃
	〃	〃	담 장	브 럭	220	〃	〃
	〃	〃	동 력 선	17kw	50	〃	〃

	안 양	박달동 604-25	철 대 문		2 식	박달동 604-25 삼애리본(주)	좌 동	
	〃	〃	물 탱 크		〃	〃	〃	
	〃	〃	사 출 기	2.5, 4, 8 OL	3 대	〃	〃	
20	〃	〃 615	초 소 (2)	벽돌 스라브	5.88	〃 615 대한잉크페인트(주)	〃	
	〃	〃	수도계량기 박 스	콘크리트	4.68	〃	〃	
							〃	
	〃	〃	가로화단	적벽돌	3.96	〃		
	〃	〃	담 장	적벽돌파이프	350	〃	〃	
	〃	〃	경 보 기		1 식	〃	〃	
	〃	〃	마 당	콘크리트포장	90	〃	〃	
	〃	〃	휴 게 실	철 파이프	30	〃	〃	
	〃	〃	담 장	브 럭	70	〃	〃	
	〃	〃	휀 스		10	〃	〃	
	〃	〃	살구나무	15년생	100 주	〃	〃	
	〃	〃	〃	30년생	10 주	〃	〃	
	〃	〃	향 나 무		100 주	〃	〃	
	〃	〃	배 나 무	1 주	1 주	〃	〃	
	〃	〃	벚나무 외	5 주	5 주	〃	〃	
	〃	〃	장미나무	30주	30 주	〃	〃	
	〃	〃	찔 레	1 주	1주	〃	〃	

건 축 물 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성명	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시	동					
21	안 양	박달동 618	휴 게 실	파이프 골조	31.48	박달동 818 이 봉 규	좌 동
	〃	〃	등 나 무		4주	〃	〃
	〃	〃	점포및주택	철골 스라브	20	〃	〃
	〃	〃	담 장	브 럭	10	〃	〃
22	〃	〃 617-12	공 장	브럭 스레트	221.2	박달동 617-12 김 상 선	〃
	〃	〃	〃	〃	60.84	〃	〃
	〃	〃	화 장 실	〃	20.54	〃	〃
	〃	〃	수도파이프	22 M/M	480 m	〃	〃
	〃	〃	석 축		24	〃	〃
	〃	〃	초 소	알 미 늄	6.76	〃	〃
	〃	〃	측백나무		300주	〃	〃
23	〃	〃 617	은행나무		10주	〃	〃
	〃	〃	기 숙 사	브럭 스레트	37.8	박달동 617 신 흥 화 학	〃
	〃	〃	공 장	파이프 천막	139.28	〃	〃
	〃	〃	숙 소	브럭 스레트	14.8	〃	〃
	〃	〃	철 대 문		1 식	〃	〃
24	〃	〃 620-6	향 나 무		85주	〃	〃
	〃	〃	공 장	파이프 벽돌 스레트	85	박달동 620-6 한 정 관	〃
	〃	〃	창고화장실	적벽돌스레트	42	〃	〃

	〃	〃	소 각 장	적 벽 돌	18.75	〃	좌 동
	〃	〃	당 직 실	적벽돌스라브	22.8	〃	〃
	〃	〃	창 고	적벽돌스라브 기와 스레트	88	〃	〃
	〃	〃	철 대 문		1식	〃	〃
	〃	〃	담 장	브럭일부벽돌	34.00	〃	〃
	〃	〃	프레스기계		1대	〃	〃
25	〃	박달동 688-1	담 장	브 럭	15	박달동 688-1 서 진 우	〃
	〃	〃	창 고	철파이프천막	43	〃	〃
26	〃	박달동 693-1	휴 게 실	벽돌스라브	11.52	박달동 693-1 대일실업(주)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	공 구 실	벽돌스레트	24.18	〃	〃
	〃	〃	목 욕 실	〃	53.32	〃	〃
	〃	〃	야적창고	기둥파이프 스 레 트	68.1	〃	〃
	〃	〃	담 장	브 럭	86	〃	〃
	〃	〃	철 대 문		1식	〃	〃
27	〃	박달동 693-4	수 위 실	벽돌스라브	23.85	박달동 693-4 성흔경금속(주)	〃
	〃	〃	연탄창고	브럭스레트	23.46	〃	〃
	〃	〃	지하식당	콘크리트 스라브	48.6	〃	〃
	〃	〃	정 화 조	벽돌스라브	11.7	〃	〃
	〃	〃	경유탱크	960 L 콘크리트	8.64	〃	〃

공 기 도 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성명	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시	동					
	안 양	박달동693-1	지하단계		1식	박달동 693-4 성혼경금속(주)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	담 장	브럭2중	80	〃	〃
	〃	〃	철 대 문		1식	〃	〃
	〃	〃	향나무 외		5주	〃	〃
	〃	〃	알미늄제품		200 T	〃	〃
28	〃	〃 692-9	집 수 저	콘크리트	188.6	박달동 692-9 협신식품	좌 동
	〃	〃	기 계 실	벽돌스레트	21.66	〃	〃
	〃	〃	화 장 실		13.2	〃	〃
	〃	〃	정수탱크	철근콘크리트	193.2	〃	〃
	〃	〃	스 크 린		1대	〃	〃
	〃	〃	수중모터		〃	〃	〃
	〃	〃	에 어 콘		2대	〃	〃
	〃	〃	담 장	브 럭	96	〃	〃
29	〃	〃 701	화 장 실	브럭스레트	5식	박달동 701 박 명 수	〃
	〃	〃	창 고	〃	26.68	〃	〃
	〃	〃	숙 소	〃	25.52	〃	〃
30	〃	〃 704-1	시멘트사이로		36 T	박달동 704 한 종 훈	〃
	〃	〃	골 재 장	브럭 옹벽	264	〃	〃
	〃	〃	랙크캐리어		2대	〃	〃

	〃	박달동 704-1	오토로더		2식	박달동 704 한 종 훈	좌 동
	〃	〃	콘베어		90 ㎡	〃	〃
	〃	〃	유입성형기		2대	〃	〃
	〃	〃	믹서기		1식	〃	〃
	〃	〃	선별식		〃	〃	〃
	〃	〃	물탱크		〃	〃	〃
	〃	〃	동력선	매 설	70 m	〃	〃
	〃	〃	양생실	스레트 철골	183.75	〃	〃
	〃	〃	담 장	브 럭	56	〃	〃
	〃	〃	자동펌프		2식	〃	〃
	〃	〃	브 럭		31.5 T	〃	〃
	〃	〃	숙 소	브럭 스레트	36.92	〃	〃
	〃	〃	철대문		1식	〃	〃
	〃	〃	차 양	파이프스레트	290	〃	〃
31	〃	〃 137-7	창고 장독	벽돌스라브	12.24	박달동 137 김 영 화	〃
	〃	〃	주 택	벽돌기와	20.6	〃	〃
	〃	〃	철 대 문		1식	〃	〃
	〃	〃	알미늄대문		〃	〃	〃
32	〃	〃 157-20	휀 스		110	반도기계주차장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성명	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시	동					
33	안 양	박달동 701-2	담 장	함 석	27		
34	〃	〃 702	주 택	벽돌기와	68.25	박달동 702 이 종 수	좌 동
	〃	〃	〃	〃	82	〃	〃
	〃	〃	화장실창고	브럭스레트	23.2	〃	〃
	〃	〃	담 장	조 립 식	12	〃	〃
	〃	〃	철 대 문		1식	〃	〃
	〃	〃	향나무 외		〃	〃	〃
35	〃	〃 701	주 택	벽돌스레트	90.1	박달동 701 황 춘 성	〃
	〃	〃	점 포	〃	47.7	〃	〃
	〃	〃	화 장 실	〃	7.5	〃	〃
	〃	〃	담 장	브 럭	15.7	〃	〃
	〃	〃	자동펌프		1식	〃	〃
	〃	〃	목 대 문		〃	〃	〃
36	〃	〃	캐 노 피		57.6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462-7 대호빌딩 2층 한주석유(주)	〃
	〃	〃	탱 크	철근콘크리트 20000 L 6	154.8	〃	〃
	〃	〃	담 장	브 럭	7	〃	〃
	〃	〃	마 당	콘크리트포장	300	〃	〃
	〃	〃	폐유유도관		30	〃	〃

	〃	〃	맨홀		1식	〃	〃
	〃	〃	간판	(주유소)	2식	〃	〃
	〃	박달동 701-20	마을회관	벽돌 스레트	38	안양시장 새마을과	
	〃	〃 701-12	점 포	벽돌 기와	80.91	박달동 701-12 안 막 순	근저당 : 삼립식품(주)
	〃	〃 707	주 택	〃	86.7	박달동 707 정 계 동	좌 동
	〃	〃	〃	〃	76.36	〃	〃
	〃	773	〃	〃	125.61	박달동 773 김 인 환	〃
	〃	〃	주택 및 창고화장실	브럭 스레트	125.61	〃	〃
	〃	〃	담 장	브 럭	25	〃	〃
	〃	〃	파		51.2	〃	〃
	〃	〃 707-7	이 발 소	벽돌 기와	39.06	박달동 707-7 최 태 평	〃
	〃	〃	주 택	〃	42.78	〃	〃
	〃	〃	부 엌	벽돌 스레트	16	〃	〃
	〃	〃	담 장	브럭조립(2중)	8	〃	〃
	〃	〃	장 독 대	콘크리트	3.84	〃	〃
	〃	〃	자동펌프		1식	〃	〃
	〃	〃 707	주 택	벽돌기와	76.53	박달동 707 김 영 선	〃
	〃	〃	창 고	〃	11.25	〃	〃
	〃	〃	화장실	브럭스레트	8.06	〃	〃

평 기 도 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성명	유권이외의 권리자 및 종류, 내용
	시	동					
	안 양	박달동 707	담 장	브럭(이중)	12	박달동 707 김 영 선	좌 동
	〃	〃	목 대 문		1식	〃	〃
	〃	〃	자동펌프		〃	〃	〃
43	〃	〃 707-7	담 장	브 럭	35	박달동산 30-3 한성빌라 2 동 212 호 장 금	〃
	〃	〃	철 대 문		1식	〃	〃
	〃	〃	창 고	브럭스레트	15	〃	〃
44	〃	〃 620-3	담 장	적 벽 돌	54	박달동 320-3 삼아정공	〃
	〃	〃	수 위 실	철근콘크리트 스 라 브	22.4	〃	〃
	〃	〃	창 고	경량철골조	26.4	〃	〃
	〃	〃	철 대 문		1식	〃	〃
	〃	〃	경유탱크		〃	〃	〃

고 시

경기도고시 제 293 호

시흥시 거모동 1632-1번지외 10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시흥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0. 8. 14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인정조서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 (분양주택)

나. 사업주체 : 부천시 남구 중동 917-2 동원상가 4층 1호

㈜ 동원건설 대표 이호연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632-1번지외 7필지

라. 대지면적 : 당초 - 11.734 ㎡ (사업시행면적 12.994 ㎡)

변경 - 11.727 ㎡ (〃 13.025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5층 3동 416세대

바. 사 업 비 : 12,767,657천원

사. 사업기간 : 1990.4 - 1991. 9.30

2. 사용할 토지조서

3. 도 면 (생략)

4. 기 타 :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과에 비치보관

사용할 토지조서 (시흥시)

구분 변경전후	소재지 (동)	지번 전	지번 후	지목	지적 전	지적 후	사업면적 계 전	사업면적 계 후	대지 전	대지 후	도로 전	도로 후	토지소유자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합 계	거모동				16,830	15,864	12,994	13,025	11,734	11,727	1,260	1,298		
소계	〃				12,682	11,716	10,247	10,278	9,411	9,404	836	874		
변경전·후대비	〃	1632-1	1632-1	임	2,958	11,716	2,377	9,643	2,196	9,404	181	239	부천시남구중동 917-2 동원상가 4층 1호	동원건설㈜
	〃	1632-8	—	〃	965	—	656	—	656	—	—	—	〃	〃
	〃	1632-16	—	〃	3,058	—	2,696	—	2,099	—	597	—	〃	〃
	〃	1632-17	—	〃	2,237	—	1,565	—	1,565	—	—	—	〃	〃
	〃	1632-21	—	〃	3,464	—	2,953	—	2,895	—	58	—	〃	〃
	〃		1632-28	〃	—	635	—	635	—	—	—	635	〃	〃
소계	〃				4,148	4,148	2,747	2,747	2,323	2,323	424	424		
변경전과동일	〃	1632-14	좌 동	전	1,309	1,309	1,076	1,076	908	908	168	168	〃	〃
		1632-22	〃	임	1,710	1,710	1,435	1,435	1,415	1,415	20	20	〃	〃
		1566-1	〃	대	23	23	23	23	—	—	23	23	안산시선부동산 129-1	정규창
		1566-5	〃	〃	327	327	72	72	—	—	72	72	〃	〃
		1566-16	〃	〃	308	308	140	140	—	—	140	140	부천시역곡동 28-9	김철호
		1575-5	〃	〃	471	471	1	1	—	—	1	1	안산시선부동산 129-1	정규창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경기도고시 제 295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년 8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장명 : ㈜ 대호
- 소재지 :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535-1
- 대표자 : 이태일

구분	사료			등록	사료성분 등록내역		사료방법
	종 류	명 칭	용 도	번호	항 미	부 형 제	사료톤당
등록	보조사료 (향미제)	휘시루이 - E	물고기 사료용	13-10 -33	휘시플레이버 E - 26713 휘시플레이버 E - 23877	수퍼낫 22 에스 콘스타치 소 금 사카린 조미료	500- 1000g

경기도고시 제 296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8. 13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장명 : ㈜ 풍 진
- 소재지 : 안산시 팔곡이동 27
- 대표자 : 당초 : 신정수
  변경 : 유한웅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구 분	사 료			등 록 번 호	사료성분 등록내역					
	종 류	명 칭	용 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 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변경 (대표자)	배합 사료	어린병아리외 35종	산란계용 6주이하	14-1-1	기등록사항과 같음					

경기도고시 제 297 호

1. 경기도고시 제 187 호(87.7.14)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 115 호(90.3.26) 로 실시계획인가된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용인군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8. 16

경 기 도 지 사

가. 실시계획변경 인가내용

o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90.3.20 (변경없음)
- 준공예정일 : 당초 - 90.5.19

변경 - 90.12.31

경기도고시 제 299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 8.16

경 기 도 지 사

사료성분등록사항

- 공장명 : 두산곡산㈜
- 소재지 : 부천시 중구 삼정동 15-6
- 대표자 : 안기영

구분	사료			등록 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하	조회분 %이하
등록	배합 사료	어린 송아지 2	3 개월이내	17-23-2	16.0	2.5	0.6	0.4	7.0	7.0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36 호

K·S 표시 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 S 표시정지 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8. 13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구분 \ 업체명	한일흥업㈜ 송탄공장	서보산업㈜
소 재 지	송탄 모석동 산 38	평택 청북 토진리 210-14
대 표	김기수	이장희
허 가 번 호	제 3790 호	제 7623 호
규 격 번 호	K S F 4009	좌 동
품 명	레디믹스콘크리트	좌 동
종류및등급	표 1 (표준품)	좌 동
처분기간	90.8.13-90.11.12	좌 동
처분사유	K S규격미달	좌 동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공고 제 239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휴업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8. 20

경 기 도 지 사

1. 허가번호 : 10- 나 - 1 - 14
2. 상 호 : 원진산업
3. 대표자성명 : 민종선
4. 비료의 종류와 품목 : 부산물 비료 (퇴비)
5. 제조장소 : 안산시 목내동 402-2
6. 휴업기간 : 90.8.20 ~ 91.8.19
7. 휴업사유 :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신고

경기도공고 제 240 호

K S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 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90 . 8 . 20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신일산업㈜

2. 소 재 지 :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79-1

3. 대 표 자 : 김덕현

4. 허가번호 : 5797

5. 규격번호 : 9318

6. 품 명 : 전기탈수기

7. 종류및등급 : —

8. 취소일자 : 1990. 8.20

9. 취소사유 : 자진반납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경기도공고 제 241 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수산업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0 . 8 . 20

경 기 도 지 사

면허번호	양식품종 (채포물)	어장		어업권자		면허기간
		위치	면적	주소	성명	
경기공동어업면허 제 11 호	붕어, 잉어 기타	평택군 청북면 포승면지선 (남양호)	㎡ 157,000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51	남양호새마을양식계장 임석주	90.8.20 93.5.20

* 제한 및 조건

o 매월 생산실적을 익월 5 일까지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고 시

부천시고시 제 25 호

1. 부천시 고시 제 15 호(90.6.4)로 실시계획인가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26 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 중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8. 18

부 천 시 장

가. 실시계획 인가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동없음)

부천시 중구 원미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없음)

- 종류 : 도로

- 명칭 : 소로 2류 4호, 소로 3류 105, 106, 107 호선

3. 면적 또는 규모(변동없음)

규 모				연 장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결 정	실 시 계 획 인 가
소 로	2	4	8	132	81
소 로	3	105	6	107	107
소 로	3	106	4	82	82
소 로	3	107	4	82	8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동없음)

- 주 소 : 부천시 중구 원미동 71
- 성 명 : 부천시장(중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년월일

- 착 수 : 인가일로부터 7일이내(변동없음)
- 준공예정 : - 당초: '90. 7.31
  - 변경: '90.12.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변동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6항과 동일)

8. 도면은 별첨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고 시

안산시고시 제25호

반월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사업시행 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반월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8. 13

안 산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아 래

1.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일동산 24-27 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학교
- 명 칭 :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시 중구 율목동 237 번지
- 성 명 : 학교법인 새빛학원이사장 문창모

라. 면적 및 규모

- 결정면적 : 144,200 ㎡
- 시행면적 : 21,630 〃
  - 토지이용계획
    - 교사부지 : 7,950 ㎡
    - 운동장부지 : 6,840 〃
    - 도로부지 : 3,994 〃
    - 기타부지 : 2,846 〃 (수위실 절개지)
    - 녹지부지 : 122,570 〃
- 건축면적 : 3,425.71 ㎡
- 건축연면적 : 16,764.62 〃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의 성명

- 토지소유자 : 학교법인 새빛학원이사장 문창모
- 건물소유자 : 신축계획
- 이해관계인 : 충남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한국수자원공사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착 수 일 :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

준공예정년월일 : 1992.12.31

고 시

용인군고시 제40호

신갈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1항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용인군청 도시과 및 기흥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

1990. 8. 14

용 인 군 수

아 래

1. 사업시행허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 : 기흥읍 삼갈리 12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시장(소매시장)
- 명칭 : 신갈시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용인읍 역북리 185-5 기룡 (주)
- 성명 : 조인행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 준공 : 1991. 5.30

마. 면적 및 규모

- 결정면적 : 1,655.70 ㎡
- 시행면적 : 1,655.70 ㎡
- 규모(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655.70	단위 : ㎡
건 축 부 지	975.66	
주 차 장	316.25	
도 로 및 공 지	166.65	
녹 지	197.14	

- 건축규모 : 975.66 ㎡ (연면적 6,765.75 ㎡)

바. 도 면 : 생략(용인군청 도시과 및 기흥읍사무소에 비치)

공 고

용진군공고 제 208 호

서포리 국민관광지조성 변경계획을 입안하고 관광진흥법 제 28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토지소유자등 이해 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1990. 8. 20

용 진 군 수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1. 공람내용 : 서포리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결정

위 치	편입토지	변경내용	비 고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 일원	268,000 ㎡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계획	

2. 공람기간 : 1990 년 8 월 20 일 - 1990 년 9 월 2 일 (14 일간)

3. 공람장소 : 경기도 옹진군 문화공보실 (883-7035), 덕적면 (886-7772)

공 고 문

성남시공고 제 179 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공인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용개시일 : 1990. 8.14

1990. 8. 13

성 남 시 장

○ 개각공인

성남시 중원구
금광제 2 동장인



공 고 문

성남시공고 제 180 호

성남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공인조례 제 9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8. 13

성 남 시 장

○ 개각공인

성남시 중원구 금광제 1 동장인	금광제1동계인 성남시중원구
	

공 고

구리시공고 제 82 호

자동차관리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이전명령 불이행 차량 및 소유자를 알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강제폐차를 위한 폐차예정 공고합니다.

1990. 8. 16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90.8.20 - '90. 8.27
2. 폐차예정의 취지 : 계속적인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요인 제거와 폐부품의 재사용 방지 및 번호표 미회수차량 방지를 기하고져 함.
3. 차량의 종류와 주요제원

제 2360 호

경 기 도 보

차량의 종류와 주요제원					
발생일시	발생위치	차량번호	차종	차명	차대번호
90.6.27	사노동(안말)		화물	봉고1톤	
90.5 이전	삼육고교 맞은편	서울4누4176	승용차	마크	
90.5	〃		〃		
90.2	〃		승용	식별불가	
90.5.20	수택동 361-4	서울7머2460	화물	2.5톤	
90.5.15	〃 571-20	서울4라6915	승용차	포니2	
90.6.10	〃 503-20	서울4다7854	〃	마크	
〃	〃 509	경기2거5368	〃	포니왜곤	
90.6.29	수평동원일빌라		〃	로얄쌀롱	
90.5 이후	㈜일화후문앞	경기7거3948	화물	1톤타이탄	
〃	〃		승합	봉고12인승	
90.7.10	수택동 산1	서울3라5873	승용차	포니	

공 고

양주군공고 제 90 호

1.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3 - 8 호선)에 대하여 일부 선형 변경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이해 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읍니다.

1990 년 8 월 16 일

양 주 군 수

가) 사업시행지 :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540-6 번지외 59 필지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369 번지외 45 필지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다) 사업의 종류와 명칭

종 류 : 도로

명 칭 : 중로 3 류 8 호선

라) 사업개요 : 연장 1,560 미터, 폭원 12 미터, 포장폭 7.5 미터

마) 사업시행자 : 양주군수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착공예정일 : 1990 년 9 월 일

준공예정일 : 1991 년 12 월 31 일

경 기 도 보

공 고

양평군공고 제137호

경기도 고시 제79-485 (79.11.19)호로 결정되고 도시 442-2708 (82.5. 25)호로 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여 건설 442-89 (86.6.3)호로 승인 통보된 다음 양평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78조에 의거 승인을 취소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1990. 7. 31

양 평 군 수

1. 승인사항

가. 사업시행지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14번지외 2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명칭 : 양평 주택건설사업

다. 면적 및 규모

— 면적 : 결정면적 : 44,619 ㎡

금회시행면적 : 39,032 ㎡

— 규모

시 설 명	세부시설명	결정면적 (㎡)	금회시행면적 (㎡)	차후시행면적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	44,619	37,032	7,587
	제1공구	25,585	17,998	7,587
	택 지	15,968.50	14,362	1,624.50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시 설 명	세부시설명	결정면적 (㎡)	금회시행면적 (㎡)	차후시행면적 (㎡)
	도 로	9,290	3,636	5,654
	어린이 놀이터	308.50		308.50
	제 2 공구	19,034	19,034	
	택 지	11,770.31	11,770.31	
	도 로	6,944.11	6,944.11	
	어린이 놀이터	319.58	319.58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36번지 이영득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 : '82. 6

— 준공 : '84. 4.30

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2. 승인조건 : 생략

(취소내용)

① 취소사항 : 건설 442-89 (86.6.3) 호로 승인통보된 내용

② 취소일자 : '90. 7.31

③ 근거법규 : 도시계획법 제 78 조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강 제 폐 차 예 정 공 고

과천시공고 제 103 호

자동차관리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폐차예정차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차예정취	2. 차량의종류와주요제원	3. 차량이있는곳	4. 폐차일시및장소
*계속적인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 및 위해요인이 되고 있슴.	• 등록번호 : 서울 0 가 4429 • 차 종 : 승 용 • 차 명 : 도요다크라운 • 차대번호 : 09742220021	별양동 1-13	1990 년 8 월 30 일 일경 군포시 당점동 450 삼창폐차장
	• 등록번호 : 경기 1 더 9571 • 차 종 : 승 용 • 차 명 : 마크V • 차대번호 : 미 상	부림동 49	
	• 등록번호 : 서울 1 더 6490 • 차 종 : 승 용 • 차 명 : 맵 시 • 차대번호 : 13832222031	과천동 454-1	
	• 등록번호 : 서울 4 가 9836 • 차 종 : 승 용 • 차 명 : 포니 1400 • 차대번호 : 10812229619	문원동산 321	

5. 기 타 : 당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과천시청 산업과 (전화 500-6345) 로 신고할것.

1990 년 8 월 14 일

과 천 시 장

경 기 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도 보

선람	기관의 장

제 2361호
1990년 8 월 27일(월)

차 례

훈 령

○경기도훈령 제 894호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자문위원회 규정..... 2

조 례

○경기도조례 제2041호 경기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4

고 시

○경기도고시 제 302호 의정부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인가고시..... 6
○경기도고시 제 303호 사료성분등록사항 고시..... 17
○경기도고시 제 304호 사료성분등록 취소사항 고시..... 18
○경기도고시 제 305호 김포군하성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8
○경기도고시 제 307호 사방지경지 해제고시..... 19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4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공고..... 20
○경기도공고 제 245호 K.S표시허가취소공고..... 21
○경기도공고 제 248호 계량기 제작업체 사업정지공고..... 22
○경기도공고 제 249호 비료생산업 휴업처리사항공고..... 22
○경기도공고 제 250호 K.S표시허가취소공고..... 23

회람								

○경기도공고 제 251호 '90추가어장이용 개발계획공고..... 24
○경기도교위공고 제128호 '90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합격자 공고..... 24
○경기도교위공고 제129호 '90제2회 고등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합격자 공고..... 31

시 군 행 정

○성남시고시 제 182호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 43
○안양시고시 제 212호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50
○안산시고시 제 26호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55
○양평군고시 제 138호 양평도시계획시설(철도부대시설)사업시행변경허가고시..... 56
○미금시공고 제 86호 폐차 강제처리 대상공고..... 57
○의왕시공고 제 108호 공인신조공고..... 58
○성남시공고 제 184호 공인신조공고..... 58
○하남시공고 제 133호 폐차 강제처리 대상공고..... 59
○정 정 61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자문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0. 8. 21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경기도 훈령제 894호

경기도공영개발사업 자문위원회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영개발사업의 시책에 관한사항
2. 발전지향적인 시책건의에 관한사항

3. 공영개발사업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10인 이상 15인 이내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공영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법조계, 업계등의 전문가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 관리자가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대우) ①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관리자는 다음 각호1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전출할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기타 위원회의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제7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자문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안건부의) 안건부의는 회의개최 3일전에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영개발사업단 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준비 및 진행

2. 회의록 작성

3. 자문결과 관계부서 통보자료 작성

4.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의 결과) 관리자는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반영토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기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기 도 지 사 이 재 창

1990 . 8 . 21 .

경기도 조례제2041호

경기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경기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 범위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경기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 관한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한 경기도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방조제의결정) 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관리방조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1천만 입방미터 미만 7백만 입방미터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

로서 대안거리가 4키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입방 미터미만 3백만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키로미터의 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방조제가 아닌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 입방미터 미만 3백만 입방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키로미터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 입방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제3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영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관리 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농림국장, 식산국장, 건설국장, 민방위국장과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농지조성계장으로 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2인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경기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조례제513호 1972.7.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관리 방조제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관리 방조제로 결정된 방조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관리 방조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고 시

경기도 고시제302호

1. 의정부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1-2호선)및 제17호 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 8. 22.

경 기 도 지 사

1) 실시계획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의정부시 녹양동 105-5번지 일원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로(대로1-2) 및 광장
- 명칭 : 금신로 확장개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결정 : 연장8,260 m, 폭 35 m

  실시계획인가 : 연장790 m, 폭원20-35 m
- 광장 결정 : 9,950 ㎡

  실시계획인가 : 2,760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의정부시장

마. 사업의착수, 준공예정년월일

- 착 수 : 1990.8
- 준공예정일 : 1990.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명세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2) 도면은 별첨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
1	녹양동	115-8	임	1,859	959	강남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6-807	배 영 철	
2	〃	115	전	2,466	883	의정부시가능동 205	오 순 웅	
3	〃	110-2	대	278	42	〃 장암동 219	문 재 진	
4	〃	114-10	대	340	153	〃 녹양동 114-10	박 광 규	
5	〃	114-9	전	469	192	〃 〃 산 5	최 차 희	
6	〃	114-3	대	360	40	〃 〃 114-3	김 윤 석	
7	〃	114-8	전	294	43	〃 〃 114-8	전복식외 1인	
8	〃	111	전	1,174	735	〃 〃 32	원 제 희	
9	〃	110	전	2,830	1,857	〃 〃 32	〃	
10	〃	107-14	전	1,931	1,357	〃 가능동 205	오 천 순	
11	〃	107-15	잡	575	473	〃 〃 205	〃	
12	〃	107-16	잡	972	229	서울종로가회동 31-81	신 영 모	
13	〃	105-9	천	1,736	350	의정부시금오동 92-1	정 범 환	
14	〃	105-2	천	509	475	〃 〃 〃	〃	
15	〃	105-3	천	1,279	110	〃 〃 〃	〃	
16	〃	105-19	답	4,869	71	〃 〃 〃	〃	
17	〃	105-17	답	2,040	238	〃 〃 〃	〃	

일련 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
18	녹양동	105-18	답	2,245	985	의정부시금오동 92-1	정 범 환	
19	〃	105-11	답	1,045	820	〃 〃 92-1	〃	
20	〃	105-5	답	1,593	598	서울도봉번동 469-89	김 광 태	
21	〃	105-6	답	5,898	1,645	〃 〃	〃	
22	〃	104-3	대	9,630	1,140	〃 〃	〃	
23	〃	산 4-1	임	19,636	385	의정부시가능동 205	오 천 순	
24	〃	115-35	임	204	28	서울동대문청량리동 253-1미주Ⓐ5-1502	송 이 섭	
25	〃	115-37	임	13,851	235	〃	〃	
26	〃	105-4	답	2,717	123	의정부시금오동 92-1	정 범 환	
27	〃	114-5	대	559	290	〃 녹양동 114	조만승외 1인	
28	〃	114-6	전	1,544	812	〃 〃 114-8	전 복 식	
29	〃	115-26	임	1,340	454	동두천시동두천동 278	이규백외 4인	
30	〃	산 1-3	임	198	122	의정부시가능동 640-16	이 복 용	
31	〃	115-22	임	420	146	〃	〃	
32	〃	115-7	임	3,388	661	서초반포동1-1신반포3지구Ⓐ37-504	승용담외 1인	
33	〃	산 2-11	임	20,132	470	서울도봉미아동 837-862	김 동 분	
34	〃	115-5	대	1,002	177	〃	〃	
35	〃	115-3	답	1,329	84	〃	〃	
36	〃	115-6	전	823	823	〃	〃	

37	녹양동	115-2	대	1,309	344	의정부시녹양동 115-2	백형대외 2인	
38	〃	114-11	대	337	256	〃 〃 산 5	고 복 순	근저당권설정 의정부단위농협협동조합
39	〃	산 5-1	임	161,804	45	서울강남역삼동 668-5	강성종외 3인	
40	〃	114-7	전	202	5	서울서대문구평동 26-32	김 동 호	
41	〃	112	전	2,631	1,216	의정부시의정부동 32-13 서울중구을지로 5 가 270-1	이영치외 1인 (주)동방철강사	근저 당권설정 연하철강
42	〃	113	전	2,807	1,088	서울은평갈현동 262-30	김 명 칠	압류(국)처분청 서부세무서
43	〃	107-25	전	245	77	의정부시녹양동 107	최 성 옥	
44	〃	107-24	전	893	24	서울도봉미아동 217-13	이 향순외 2인	근저 당권설정 녹양새마을금고
45	〃	산 2-9	임	3,074	4	〃 837-862	김 동 분	
46	〃	산 1-4	임	3,174	3,174		의 정 부 시	
47	〃	115-42	천	1,485	863		국(건설부)	
48	〃	115-41	천	1,119	78		〃	
49	〃	115-9	도	407	407		〃	
50	〃	111-1	도	1,121	780		〃	
51	〃	106-3	천	10,695	1,435		〃	
52	〃	105-21	구	258	133		〃	
53	〃	104-13	도	1,177	512		의 정 부 시	
54	〃	100-1	도	231	10		〃	
55	〃	115-36	임	1,121	611		국(건설부)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주소성명
	동(리)	지번				주소	성명	
1	녹양동	115-42천	양수장	블럭, 스라브	11.2	의정부시녹양동 115-7	마을대표 백수영	관리자
			양수시설	모타 및 펌프	1개소			
			관정		〃			
2	〃	114-10	주택	연와조, 양와집	90.81	의정부시녹양동 114-10	박광규	
			창고	세부조, 스라브	16.69			
			축사	〃	43.90	세입자 4가구		
			대문	철재	1 식	전곡열 1		
			〃	〃	〃	주영만 2		
			자가수도		〃	전제순 1		
			나무	향나무외 1종	3 그루	정수정 5		
			화장실	블럭, 스라브	4.2			
			정화조	일반가정용	1개소			
			담장	블럭	19.5			
			〃	조립식	14.6			
			창고	세부조, 스라브	5.76			
3	〃	114-5	대문	철재	1 식	의정부시녹양동 114-5	조봉호	
			담장	블럭	22.1	세입자 김관순외 4명		

			부속사	블럭, 스라브	10.8			
			담장	조립식	18			
			나무	향나무외 1 종	4 그루			
			주택	조적조	67.9			
4	녹양동	115-22	대문	철재	1 식	의정부시녹양동 115-22	이 복 용	
			나무	향나무 4 종	10 그루			
			계단	콘크리트	1 식			
			정원석	자연석	〃			
4	〃	115-22	담장	적벽돌	44 m	의정부시녹양동 115-22	이 복 용	
			정화조	가정용(콘크리트)	2 개소			
5	〃	115-42	화장실	적벽돌, 스레트	1.7	의정부시녹양동114-8 4/1	박 종 태	
			주택	블럭, 스레트	31.62	세입자 김호봉외 6 명		
			부엌	〃	27.54			
			주택	〃	9.6			
			창고	목조, 스레트	5.1			
			헛간	목재	6.3			
			자가수도		1 식			
			담장	블럭	10.2 m			
			〃	조립식	43.3 m			
			장독대	석재	2.89			

경 기 도 보

일련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6	녹양동	115-42천	가설사무소	목재, 마도	11.25	의정부시녹양동 114-8 산 5 번지	박 종 태 (광일목재)	
			대문	목재	1 식			
			담장	조립식	73.6			
7	〃	115-42천	대문	철재	1 식	의정부시녹양동산 5 번지 4／1	강 수 길	
			펌프		〃			
			자가수도		〃			
			주택	블럭, 스레트	45.51			
			양계장	〃	117.65			
			창고	목재+비닐 지붕스레트	16.66			
			화장실	블럭, 스레트	6.5			
			담장	블럭	15.7			
			지붕	목재, 스레트	24.05			
8	〃	115-5	담장	블럭	18.4	의정부시금오동 288-1 KSCⒶ1 동 207 호	장 은 희	
8	〃	115-5	대문	철재	1 식	〃	〃	
			주택	블럭, 스레트	44.20	세입자 박경식 (3 명)		
			창고	세부조, 스레트	14.79			
			〃	블럭	4.35			
			부화장	블럭, 스레트	84	도봉구미아동 837-862	김 동 분	

9	녹양동	115-5	창고	블럭, 스레트	127.1	도봉구미아동 837-862	김 동 분	
			담장	블럭	41.8			
			〃	조립식	28.3			
			화장실	목재	2.55			
			〃	〃	1.12	115-2	세 입 자 김 용 수	
			대문	철재	1 식	도봉구미아동 837-862	김 동 분	
10	〃	115-2	펌프		2개소	의정부시녹양동 115-2	김 문 기	
			담장	블럭	24.3			
11	〃	114-11	주택	연와조, 양와즙	68.93	의정부시녹양동 114-11	고 복 순	
		115	창고	조립식담장,스레트	62.72	세입자 백대현 3 명 오경석 4 명		
		114-11	자가수도		2개소			
			대문	철재	2 식			
			나무	향나무외 2 종	6그루			
			부속사	블럭, 스레트	7.68			
12	〃	114-11	자가수도		1개소	의정부시녹양동 114-10	박 광 규	
13	〃	〃	담장	골함석	21.2 m	〃 114-11	고 복 순	
			담장	블럭	17.9			
14	〃	114-5	〃	〃	28 m	의정부시녹양동 114-5	조 만 승	
			대문	철재	1 식			
			화장실	벽돌, 스라브	2.47			

일련 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14	녹양동	114-5	창고		13.86	의정부시녹양동 114-5	조 만 승	
			대문	철재(소형)	1 식			
			나무	목련외 7 종	12 그루			
			자가수도		1 식			
			장독대	콘크리트	6.3			
			주택	연와조, 앙와	85.88			
			주택(지하)		23.11			
			정화조	가정용	1 식			
15	〃	112	대문	철재	〃	의정부시녹양동 112	이 영 치	
			〃	골함석(양철)	〃			
			담장	블럭	45.4 m	세입자 김영극 5명 정석명 5명		
			화장실	블럭, 스레트	1.1			
			나무	앵두외 5 종	10 그루			
			장독대	콘크리트	6.2			
			수도	상수도	2 개소			
			주택	세부조, 스레트	34.2			
			부엌	조립식양장, 스레트	11.2			
			장독대	비닐+목재	2.25			

			지붕(테라스)	목재기둥스레트	31.05			
			주택	연와조, 양와	69.72			
			주택(지하)	〃	4.40			
16	녹양동	114-7전	대문	철재	1 식	의정부시녹양동 114-5	조 만 승	
			담장	블럭	8 m			
			부엌	블럭, 스레트	22.8			
			부속사	〃	5.7			
17	〃	114-9	대문	철재	2개소	의정부시녹양동 114-9	최 차 희	
			장독대	콘크리트	5.1	세입자 이덕헌(5명)		
			담장	블럭	8.6 m			
			자가수도		1 식			
			주택	블럭, 스레트	71.65			
			작업장	〃	69.75			
			부엌	〃	12.0			
			화장실및 자가수도	〃	3.3			
			창고	〃	39.75			
18	〃	114-10	담배소매			의정부시녹양동 114-10	박 광 규	영업권보상
			양곡소매					
			잡화소매					
			연탄소매					

일련 번호	소재지 동(리)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19	녹양동	110	주택	블럭, 스레트	42.41	의정부시 녹양동 110	새마을회관	
			펌프		1 식			
			화장실			박상만외 4 명		
20	〃	110-2	담장	조립식	8 m	의정부시녹양동 110-2	문 재 진	
			〃	블럭	10 m			
			대문	철재	1 식			
21	〃	105-9	비닐하우스		315	서울동작사당 4 동 303	이 승 길	
		105-19 105-4	관정	농사용 50 ㎜	1 개소			
22	〃	105-2 외 5 필지	비닐하우스		2,270	의정부의정부동 3동42번지 7/2	배 기 섭	
23	〃	104-3	〃		1,230	서울도봉번 2 동 163 번지	주 세 진	
			관정	농사용 50 ㎜	1 개소			
			관정이음시설	블럭	3.24			

고 시

경기도고시 제 303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사항을 고시합니다.

1990 년 8 월 22 일

경 기 도 지 사

배 합 사 료 성 분 등 록 내 용

구분	사료공장			사료			등록번호	등록내역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상	조회분 %이상
등록	㈜풍진	안산시팔곡이동 27	유한웅	배합사료	육계전기3	0 ~ 3 주	14-7-3	20.0	4.0	0.8	0.5	5.0	8.0
					육계전기4	〃	14-7-4	22.0	4.0	0.8	0.5	5.0	8.0
					산란중기2	백색계 41 ~ 60 주	14-5-11	18.0	3.0	3.0	0.5	6.0	14.0
					육계중기	4 ~ 6 주	14-46-1	18.0	3.0	0.7	0.5	6.0	8.0
					육계후기2	출하 7 일전 ~ 출하시	14-9-1	16.0	3.0	0.7	0.5	5.5	8.0
	신촌사료	김포군검단면 마전리 660-18	김용태	〃	젖먹이돼지2	4 ~ 6 주	10-13-2	21.0	3.0	0.6	0.4	6.5	8.0
					육성돈 3	2 ~ 4 개월	10-15-3	18.0	3.0	0.6	0.4	6.5	8.0
					임신돈 2	임신기간중	10-18-2	14.5	3.0	0.5	0.4	8.0	10.0
					포유돈 3	도유기간중	10-19-3	16.5	3.0	0.6	0.4	7.0	9.0
					번식우	7 개월이후번식우 (고기소용)	10-34-31	10.0	2.0	0.3	0.2	26.0	13.0

고 시

경기도고시 제 304 호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등록취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0년 8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사 료 성 분 등 록 취 소 사 항

- 공장명 : 우성물산
- 소재지 : 의정부시 자일동 218
- 대표자 : 강찬구

구분	사료			등록번호	사료성분등록내역					
	종류	명칭	용도		조단백 %이상	조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섬유 %이상	조회분 %이상
등록취소	단미사료	우모분	배합사료 원료용	6-4-1	75.0					5.0

고 시

경기도고시 제 305 호

1. 경기도고시 제 316 호('89. 11. 13)로 실시계획인가된 김포군 하성도시계획시설(중로 2 - 2 호선)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김포군 건설과와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1990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가. 김포군 하성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2 - 2 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사항

○ 위 치 : 김포군 하성면 마곡리 623-3 외 33 필지

○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로(중로 2 - 2 호선)

• 명 칭 : 마곡~개곡간 도로확장포장공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산 20-10

• 성 명 : 김포군수

○ 사 업 명 : 마곡~개곡간 도로확장포장공사(변경없음)

○ 착공 및 준공(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착 공	인가일('89. 11. 13)로부터 10 일이내	변경인가일로부터 10 일이내
준 공	89. 12. 31	91. 6. 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변경없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변경없음)

공 고 문

경기도고시 제 307 호

사방사업법 제 2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 고시한다.

1990 년 8 월 27 일

경 기 도 지 사

경 기 도 보

제 2360 호

1. 사방지정지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 면적	해제		소유자주소·성명	비 고
군	면	리	산번				면적	사 유		
용인	이동	천	산 131	임야	ha 2.82	ha 2.80	ha 0.5349	공장부지 조 성	용인군용인읍 김량장리 377-2 김황곤외 2인	산 131-3 산 131-1 번지로 분할
	계					ha 2.80	ha 0.5349			

2. 해제신청자 : 주 소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77-2

성 명 김황곤

공 고

경기도 제 244 호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구분 / 사업명	사업시행자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	사업시행 기간	사업구역 위치	사업구역 면적(㎡)
154 Kv 가평변전소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 167	'90.6-'92.5	가평군가평읍하색리일원	23,374
154 Kv 일동변전소	〃	〃	'90.6-'92.2	안산시일동일원	14,829
154 Kv 포천변전소	〃	〃	'90.6-'92.3	포천군신북면가채리일원	32,931
154 Kv 남안양분기송전선	〃	〃	'90.6-'91.9	수원시이목동, 의왕시고천, 이동일원	2,154
154 Kv 가평분기송전선	〃	〃	'90.6-'92.12	가평군가평읍하색리일원	1,345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구분 / 사업명	사업시행자 성명	사업시행자 주소	사업시행 기간	사업구역 위치	사업구역 면적(㎡)
154Kv 영선-광명 송전선	한국전력 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 167	'90.6-'91.12	광명시광명동, 하안동일원	1,003
154Kv 양주관련 송전선	〃	〃	'90.6-'91.9	양주군장흥면삼하리, 고양군신도읍지축, 오금리일원	3,012
154Kv 시화송전선	〃	〃	'90.6-'91.6	안산시신길동일원	1,901
154 Kv 일동분기 송전선	〃	〃	'90.6-'91.10	화성군반월면둔대팔곡1리, 안산시일동일원	2,102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45 호

K. S표시허가취소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KS표시허가를 취소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 년 8 월 21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로켓트보일러공업㈜
2. 소 재 지 : 부천시 도당동 254-6
3. 대 표 자 : 김양수
4. 허 가 번 호 : 제 1612 호
5. 규 격 번 호 : KSE7006
6. 품 명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7. 종류및등급 : '90. 8. 21
8. 취 소 일 자 : 자진반납
9. 취 소 사 유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48 호

계량법을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계량법 제 13 조 및 제 37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정지 하였기 공고합니다.

o 행정처분 업체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허가번호	사업정지기간	위반사항
삼신계기	권상일	부천시남구괴안동 8-1	5-86-216	'90. 9. 10 -9. 19(10일)	임의사업폐지
한일정밀	조현건	안산시원곡동 99-4	5-86-212	〃	〃
영우정공	손승권	김포군양촌면구내리 164-3	5-88-227	〃	〃
신양정밀	송의석	부천시남구송내동 397-4	5-84-192	〃	재반허가사항 미비

1990 년 8 월 24 일

경 기 도 지 사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49 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휴업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년 8 월 24 일

경 기 도 지 사

1. 허 가 번 호 : 10-나-1-7
10-나-9-9
2. 상 호 : ㈜ 흥 농
3. 대 표 자 성 명 : 지 종 호
4. 비료의 종류와 품목 : 부산물비료(퇴비 : 건계분)
5. 제 조 장 소 :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산 37
6. 휴 업 기 간 : '90.8.24 ~ '91.8.23 (1년간)
7. 휴 업 사 유 :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신고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50 호

KS 표시 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정지처분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90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진성전기전자㈜
2. 소 재 지 : 부천시 중구 삼정동 85-24
3. 대 표 자 : 송 인 준
4. 허 가 번 호 : 6387
5. 규 격 번 호 : KSC8104
6. 품 명 : 고압수은램프용안정기
7. 종류및등급 : 고역율 400 Kw
8. 처 분 기 간 : '90.8.24 ~ '90.11.23
9. 처 분 사 유 : KS 규격 미달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경기도공고 제 251 호

수산업법 제 52 조와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90 년도 추가어장 이용 개발계획을 공고합니다.

1990 년 8 월 24 일

경 기 도 지 사

○ '90 추가어장 이용개발계획 확정내역 면적 : 헥타

어업별	품종	시설 방법	어장위치	확정		개발조건
				건수	면적	
합 계				6	79	
양식어업	김	건홍식	강화 길상 선두리지선	1	4	어촌계의 지방비 지원사업에 한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	〃	강화 길상 동검리지선	1	15	
〃	〃	〃	강화 화도 흥왕리지선	1	15	
〃	〃	〃	강화 화도 내리지선	1	15	
〃	〃	〃	강화 삼산 매음리지선(대송도)	1	15	
〃	〃	〃	강화 삼산 매음리지선(어류정)	1	15	

공 고

경기교위공고 제 128 호

1990 년도 제 2 회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 년 8 월 24 일

경기도교육위원회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2001	주성중	남	660317-1227024	603	67.00	평택중 중퇴	
2002	장은숙	여	740428-2168129	640	71.11	성남북국교 졸업	
2004	엄운용	남	720204-1236915	647	71.88	광주중 중퇴	
2015	이은미	여	730405-2320925	566	62.88	홍천여중 〃	
2017	안경숙	〃	700421-2025523	654	72.66	검정고시 검정	
2018	정중호	남	710220-1347925	570	63.33	삼척국교 졸업	
2020	정미경	여	680812-2168216	615	68.33	성일여중 중퇴	
2022	김형근	남	720509-1535213	600	66.66	정읍중 〃	
2023	권봉귀	〃	700119-1328323	703	78.11	함백중 〃	
2024	황광석	〃	670205-1333116	716	79.55	송학국교 졸업	
2025	김효정	여	730327-2178323	635	70.55	영서여중 중퇴	
2028	이주일	〃	751109-2067121	718	79.77	검정고시 검정	
2031	이상윤	남	741222-1168211	584	64.88	창곡중 중퇴	
2032	이원표	〃	720830-1540415	638	70.88	보안중 〃	
2046	김청수	〃	730910-1006816	663	73.66	의왕중 〃	
2053	이충옥	여	740418-2231323	631	70.11	신갈중 〃	
2074	강기안	〃	490113-2475722	608	67.55	온양온천국 졸업	
2075	오세영	〃	750927-2547513	595	66.11	이일여중 중퇴	
2083	정아정	〃	750611-2051126	764	84.88	안양서여중 〃	
2086	김효영	〃	651201-2260512	609	67.66	검정고시 검정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2119	신정례	여	551112-2047641	671	74.55	해남동국교 졸업	
2138	김천하	남	740404-1412011	569	63.22	관양중 중퇴	
2139	이영숙	여	681119-2245416	686	76.22	대신국교 졸업	
2145	최영숙	〃	701010-2466421	627	69.66	광천여중 중퇴	
2146	김경옥	남	730713-1122821	595	66.11	검정고시 검정	
2148	김영철	〃	751115-1074515	588	65.33	〃 〃	
2149	조덕진	〃	750315-1177828	560	62.22	안산중 중퇴	
2216	오경중	〃	650215-1227115	624	69.33	송신국교 졸업	
2219	정인수	〃	740610-1024317	569	63.22	송림중 중퇴	
2222	두병길	〃	580315-1545613	631	70.11	희현중 〃	
2279	김소연	여	700211-2167826	639	71.00	성남제2국교졸업	
2291	윤화자	〃	680120-2167642	548	60.88	검정고시 검정	
2295	강태근	남	620909-1806215	573	63.66	무릉국교 졸업	
2296	임봉락	〃	731125-1813417	590	65.55	대영중 중퇴	
2297	윤춘원	〃	710712-1228311	639	71.00	오산남중 〃	
2319	김기선	〃	741217-1654931	553	61.44	다시국교 졸업	
2325	이대호	〃	721125-1177319	564	62.66	신성중 중퇴	
2334	신현복	여	730329-2463010	561	62.33	산본중 〃	
2350	조휴중	남	560113-1822811	540	60.00	문전국교 졸업	
2353	최찬성	〃	730203-1236716	604	67.11	광주중 〃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2354	홍연화	여	671015-2245312	661	73.44	부안국교	졸업
2356	장성자	〃	721104-2392312	607	67.44	삼원여중	중퇴
2371	박현숙	〃	590115-2639316	597	66.33	낙성국교	졸업
2372	김순화	〃	580823-2543211	615	68.33	화호국교	〃
2374	김은혜	〃	660125-2396527	691	76.77	검정고시	검정
2382	김후례	〃	630527-2241510	560	62.22	금주국	졸업
2383	김미정	〃	660729-2535719	629	69.88	정일국	〃
2385	김명희	〃	700915-2235021	712	79.11	수성여중	중퇴
2389	김영수	남	610307-1233428	704	78.22	노동남국교	졸업
2392	문병대	〃	610520-1319416	586	65.11	지촌국교	〃
2398	김귀옥	여	730505-2379745	636	70.66	중앙여중	중퇴
2399	김연수	남	670315-1538618	613	68.11	성송국교	졸업
2400	오용식	〃	661216-1646012	672	74.66	매송국교	〃
2401	이예순	여	721006-2162412	599	66.55	서호국교	〃
2404	김철배	남	720705-1390614	583	64.77	청천중	중퇴
2407	최강수	〃	560417-1057316	634	70.44	영남제일중	〃
2408	차광례	여	701001-2666012	627	69.66	지산국교	졸업
2416	전미자	〃	690920-2229917	606	67.33	병점국교	〃
2429	최순자	〃	470207-2161917	652	72.44	학성중	중퇴
2432	이맹섭	남	511201-1815210	636	70.66	호산국교	졸업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2349	서정범	여	480705-2177318	628	69.77	대성중 중퇴	
2440	배영순	〃	550218-2920614	609	67.66	하동중앙중 〃	
2445	최순화	여	590913-2066912	584	64.88	신림여중 〃	
2446	노문확	남	621128-1231412	618	68.66	안산국교 졸업	
2447	이민철	〃	750208-1075336	651	72.33	추풍령중 중퇴	
2448	김영숙	여	690510-2805617	553	72.33	화북국교 졸업	
2455	김성숙	〃	730318-2162315	642	61.44	송원여중 중퇴	
2464	박영호	남	750725-1051913	689	71.33	연천중 〃	
2465	김형철	〃	720528-1459811	623	76.55	장항중 〃	
2466	서동선	〃	740701-1046627	689	69.22	배문중 〃	
2467	문정현	〃	740226-1056311	600	76.55	신서중 〃	
2468	박영신	〃	721201-1018120	601	66.66	아현중 〃	
2469	박천명	〃	740803-1002222	669	74.33	보성중 〃	
2470	한강화	〃	710621-1279411	693	77.00	경포중 〃	
2471	한상호	〃	740626-1052217	680	75.55	철원통 〃	
2472	임경식	〃	740612-1001914	641	71.22	경신중 〃	
2473	이용희	〃	740401-1167715	664	73.77	성일중 〃	
2475	공기준	〃	730915-1018531	624	69.33	대경중 〃	
2476	정윤철	〃	730803-1063419	620	68.88	과천중 〃	
2478	박상연	〃	740226-1067134	656	72.88	성남중 〃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2480	이재만	남	731115-1226711	605	67.22	안중중 중퇴	
2481	이동규	〃	720127-1675015	639	71.00	신천중 〃	
2482	이용식	〃	720821-1168112	702	78.00	성일중 〃	
2483	김혜원	〃	740511-1119822	692	76.88	대성중 〃	
2484	오효석	〃	730812-1150315	649	72.11	상인천중 〃	
2485	함성욱	〃	720517-1279815	684	76.00	광주중 〃	
2486	박신호	〃	740523-1476715	656	72.88	광명중 〃	
2487	홍원웅	〃	741207-1005516	616	68.44	면목중 〃	
2488	장시일	〃	740427-1231711	708	78.66	광명중 〃	
2489	신광섭	〃	750222-1058511	620	68.88	개봉중 〃	
2490	백충주	〃	740912-1058517	617	68.55	〃 〃	
2491	유병호	〃	750130-1038014	665	73.88	은평중 〃	
9492	박승희	〃	731124-1148614	694	77.11	송도중 〃	
9493	예순미	여	740208-2221239	609	67.66	구리여중 〃	
9495	김은정	〃	710323-2351711	666	74.00	청주여중 〃	
9498	정영주	〃	730823-2123217	634	70.44	검정고시 검정	
2499	최은진	〃	740202-2462412	717	79.66	유락여중 중퇴	
2501	구은정	〃	720718-2121923	679	75.44	동명여중 〃	
2502	김정아	〃	731025-2474510	645	71.66	동성여중 〃	
2503	문희주	〃	740829-2117311	608	67.55	대연여중 〃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2506	유인자	여	730525-2650621	628	69.77	여의도중 중퇴	
2507	신정숙	〃	720310-2117842	616	68.44	다수국 졸업	
2513	이경진	남	651227-1644211	647	71.88	풍생중 중퇴	
2514	신세일	〃	541120-1067421	690	76.66	당산국교 졸업	
2515	한종석	〃	680720-1236731	637	70.77	신동국교 〃	
2516	구방희	〃	591016-1025213	672	74.66	쌍봉국교 〃	
2517	전만수	〃	661218-1768119	690	76.66	본리국교 〃	
2518	이경만	〃	620823-1231011	663	73.66	삼양국교 〃	
2519	유남희	〃	550117-1231748	663	73.66	혜화국교 〃	
2520	조응구	〃	631213-1245411	620	68.88	실론국교 〃	

경기교위공고 제 129 호

공 고

1990년도 제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90년 8월 24일

경기도교육위원회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경기도교육위원회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고
7002	이 형 렬	남	670415-1650517	676	75.11	검정고시 검정	
7014	김 은 숙	여	730315-2655712	618	68.66	다도중 졸업	
7015	이 익 환	남	600124-1167713	553	61.44	세종중 〃	
7018	유 호 진	남	720210-1167866	567	63.00	풍생고 중퇴	
7019	임 은 정	여	730806-2168314	571	63.44	성남여고 〃	
7027	장 성 철	남	720326-1802823	657	73.00	송림고 〃	
7037	표 재 호	남	710729-1024511	566	62.88	검정고시 검정	
7038	이 기 홍	남	720906-1324327	616	68.44	원주고 중퇴	
7041	이 문 주	여	710927-2168318	568	63.11	성일여자고 〃	
7042	김 형 준	남	721125-1538919	676	75.11	완산고 〃	
7044	김 병 희	남	720206-1652819	588	65.33	현경고 〃	
7046	차 영 숙	여	550321-2001543	596	66.22	검정고시 검정	
7048	최 재 림	남	721021-1951014	642	71.33	제주제일고 중퇴	
7054	김 문 규	남	680515-1319517	612	68.00	춘성고 〃	
7057	윤 재 홍	남	730205-1648211	636	70.66	현상중 졸업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063	정 해 미	여	710315-2640045	554	61.55	조성중 졸업	
7076	박 은 희	여	720209-2390411	584	64.88	숭신여자중 〃	
7084	박 명 준	남	660422-1227143	595	66.11	수성부설방통중퇴	
7090	박 종 현	남	720321-1243317	657	73.00	부천고 중퇴	
7096	김 용 숙	여	690204-2345427	634	70.44	삼육중 졸업	
7112	조 수 연	남	720118-1226125	551	61.22	평택기계공고중퇴	
7124	이 창 수	남	710506-1337312	630	70.00	상서중 졸업	
7131	정 준 욱	남	710126-1010915	569	63.22	배재고 중퇴	
7152	김 진 용	남	590929-1347517	566	62.88	검정고시 검정	
7159	이 상 윤	남	660407-1120113	547	60.77	〃 〃	
7191	권 혁 순	남	660317-1806411	551	61.22	경포고 중퇴	
7194	방 성 민	남	701008-1249216	544	60.44	검정고시 검정	
7199	박 지 식	남	710307-1029818	614	68.22	〃 〃	
7205	최 영 순	여	570214-2162916	619	68.77	〃 〃	
7206	홍 영 표	남	710324-1221122	647	71.88	의정부고 중퇴	
7208	이 경 희	여	641108-2079515	595	66.11	성덕여상 〃	
7211	임 정 용	남	721007-1156825	585	65.00	유신고 〃	
7218	정 혜 련	여	591208-2920711	632	70.22	화계중 졸업	
7222	김 은 석	남	511123-1841312	559	62.11	한양고 중퇴	
7223	김 영 숙	여	710525-2552912	658	73.11	검정고시 검정	
7225	이 현 희	여	740214-2455717	607	67.44	대전여상 중퇴	
7226	김 애 자	여	710514-2178415	704	78.22	풍명실고 〃	
7231	이 경 주	여	721208-2177714	631	70.11	검정고시 검정	
7232	김 만 근	남	720315-1235056	634	70.44	양명고 중퇴	
7235	오 은 미	여	671208-2321615	570	63.33	양덕중 졸업	
7236	장 영 윤	남	730810-1640212	604	67.11	고려고교 중퇴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238	이 지 영	여	720810-2642415	636	70.66	검정고시 검정	
7239	이 영 숙	여	520602-2000920	695	77.22	〃 〃	
7240	김 성 돈	남	711218-1057112	711	79.00	〃 〃	
7241	박 영 지	여	591116-2162716	579	64.33	〃 〃	
7242	마 훈	남	750121-1650611	601	66.77	도포중 졸업	
7243	양 의 표	남	691009-1177418	585	65.00	신성고 중퇴	
7244	강 명 진	남	730825-1063610	675	75.00	양명고 〃	
7245	박 선 희	남	630605-1384815	683	75.88	검정고시 검정	
7246	김 성 훈	남	721003-1332810	663	73.66	한인고 중퇴	
7247	백 석 윤	남	720417-1001212	659	73.22	서라벌고 〃	
7248	곽 봉 상	남	701114-1632113	611	67.88	여수한영고 〃	
7250	강 남 철	남	700604-1637010	681	75.66	금산종합고 〃	
7254	박 희 정	여	720902-2162431	622	69.11	오산여중 졸업	
7255	홍 경 미	여	701207-2148719	634	70.44	영화여중 〃	
7261	조 경 자	여	770410-2661515	600	66.66	삼계중 〃	
7270	김 현 이	여	740824-2120627	643	71.44	수원여중 〃	
7275	오 백 순	여	550303-2155821	596	66.22	검정고시 검정	
7286	강 희 숙	여	690429-2163311	555	61.66	수원여고 중퇴	
7290	김 현 정	여	740721-2148118	605	67.22	진성여중 졸업	
7294	음 지 화	남	730310-1449217	653	72.55	동원고 중퇴	
7308	고 영 단	여	710512-2663519	641	71.22	신성고 〃	
7309	윤 선 희	여	740319-2018023	580	64.44	경남여상고 〃	
7312	장 은 경	여	711230-2231311	621	69.00	계원예술고 졸업	
7317	박 상 화	여	721209-2162622	764	84.88	영복여고 중퇴	
7323	유 순 미	여	721104-2249610	589	65.44	용인상고 〃	
7339	권 재 호	남	660122-1251223	582	64.66	신한고 〃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340	홍범석	남	730104-1249618	584	64.88	동원고 중퇴	
7361	김상복	남	560327-1357417	618	68.66	충일중 졸업	
7384	박종수	남	660614-1162211	742	82.44	삼일고 중퇴	
7396	한유신	남	721121-1623628	686	76.22	안양고 〃	
7397	박종국	남	720910-1814614	714	79.33	영남고 〃	
7404	조재덕	남	721203-1241829	562	62.44	창현고 〃	
7416	이재혁	남	731206-1183411	751	83.44	부천고 〃	
7418	허 돌	남	711005-1227115	709	78.77	동원고 〃	
7429	염문정	여	680110-2651211	664	73.77	과천여고 〃	
7434	박미라	여	730328-2057218	580	64.44	세화여고 〃	
7445	김동환	남	670303-1820519	656	72.88	중앙중 졸업	
7447	강철규	남	710907-1057319	827	91.88	부천고 중퇴	
7468	최현미	여	720229-2388219	585	65.00	진천여중 졸업	
7470	강효정	여	721106-2122618	610	67.77	검정고시 검정	
7472	강재곤	남	720209-1233410	559	62.11	경기기계고 중퇴	
7482	이강일	남	671118-1063912	743	82.55	공항고 〃	
7488	김명희	여	681017-2396915	590	65.55	검정고시 검정	
7497	전택상	남	611104-1251312	588	65.33	〃 〃	
7503	민경범	남	720216-1162013	575	63.88	연무중 졸업	
7506	최성광	남	720218-1173315	623	69.22	의정부고 중퇴	
7513	조용렬	남	670917-1657011	649	72.11	손불중 졸업	
7536	김미숙	여	680925-2471844	550	61.11	수원여중 〃	
7541	지성운	남	720228-1074822	574	63.77	영동중 중퇴	
7545	이용화	남	710724-1018777	583	64.77	창곡중 졸업	
7562	주홍원	남	720812-1167819	588	65.33	성일고 중퇴	
7563	박수영	여	721020-2457810	580	64.44	구로중 졸업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564	박혜련	여	690515-2323415	553	61.44	원주여고 중퇴	
7570	박영수	남	690721-1162330	560	62.22	안중고 〃	
7573	김수길	남	721119-1042134	592	65.77	소년의집중 졸업	
7574	김옥란	여	670907-2069416	602	66.88	검정고시 검정	
7575	장동순	여	741015-2386924	666	74.00	학산중 졸업	
7577	김원식	남	690819-1251315	592	65.77	안법고 중퇴	
7579	김현화	여	720403-2019639	592	65.77	수원여고 〃	
7592	이재욱	남	730922-1380719	573	63.66	신갈고 〃	
7599	김일록	남	730810-1052812	573	63.66	정복고 〃	
7602	김중신	남	670721-1411418	609	67.66	검정고시 검정	
7606	정민영	남	730105-1249110	621	69.00	삼일공고 중퇴	
7608	심주섭	남	731110-1326010	588	65.33	수일중 졸업	
7610	이길자	여	620626-2249811	609	67.66	검정고시 검정	
7612	박은정	여	690408-2490413	625	69.44	유성여자고 중퇴	
7613	박제승	남	721029-1245721	613	68.11	동광중 졸업	
7615	김규형	남	710524-1482417	609	67.66	서중 〃	
7616	엄영일	남	720717-1239111	549	61.00	수원북중 〃	
7623	김상곤	남	711230-1018310	655	72.77	송림고 중퇴	
7625	이호영	남	710910-1391110	585	65.00	충일중 졸업	
7627	김호동	남	561129-1009514	554	61.55	보성중 〃	
7628	이윤근	남	640110-1227135	545	60.55	금오공고 중퇴	
7630	김혜숙	여	720215-2001927	547	60.77	안양여상 〃	
7634	김병모	남	590327-1408513	625	69.44	검정고시 검정	
7636	윤용석	남	720316-1168215	593	65.88	〃 〃	
7637	최중열	남	671227-1162614	585	65.00	수성고 중퇴	
7638	김중만	남	710207-1231320	599	66.55	신성고 〃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639	이태용	남	621110-1829411	552	61.33	부산전자공고중퇴	
7646	정영희	여	640717-2804716	569	63.22	청리중 졸업	
7649	김진석	남	600722-1916619	590	65.55	검정고시 검정	
7651	이희정	여	711010-2056256	590	65.55	한강여중 졸업	
7652	박선남	남	711123-1231736	596	66.22	수원공업고 중퇴	
7655	송미영	여	730808-2222018	604	67.11	검정고시 검정	
7656	장미화	여	610303-2465114	666	74.00	대전여상 중퇴	
7660	이윤영	여	700611-2052111	563	62.55	대림여중 졸업	
7662	김상배	남	720524-1002112	587	65.22	문일고 중퇴	
7669	정윤아	여	720530-2632920	653	72.55	검정고시 검정	
7670	손종일	남	711230-1237419	604	67.11	광주종고 중퇴	
7671	오윤석	남	710905-1462919	595	66.11	청운중 졸업	
7673	강종수	남	691218-1928111	651	72.33	부산기계공고중퇴	
7674	김윤수	남	730418-1163021	639	71.00	검정고시 검정	
7675	이인석	남	680506-1162229	641	71.22	〃 〃	
7676	김종만	남	700521-1522518	718	79.77	전주신흥고 중퇴	
7680	김은중	여	701117-2255716	594	66.00	강남종고 〃	
7687	임승원	여	691019-2149212	637	70.77	검정고시 검정	
7688	정원주	남	720109-1640311	545	60.55	서원중 졸업	
7691	김영무	남	720910-1260711	557	61.88	장항고 중퇴	
7693	홍미정	여	680705-2167914	576	64.00	검정고시 검정	
7694	최동환	남	650608-1056117	589	65.44	당산중 졸업	
7696	김성훈	남	710219-1162519	585	65.00	신갈고 중퇴	
7699	김성재	남	710818-1650514	586	65.11	신북고 〃	
7700	양정훈	남	710505-1454913	597	66.33	보문고 〃	
7705	권청해	남	710804-1624217	599	66.55	종모종고 〃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707	조창오	남	621124-1624217	577	64.11	정윤고 졸업	
7710	강호준	남	720719-1351811	579	64.33	운호중 〃	
7712	이월영	여	540824-2011313	675	75.00	검정고시 검정	
7717	박상규	남	720803-1227112	621	69.00	수성고 중퇴	
7720	박규화	남	720307-1260816	609	67.66	검정고시 검정	
7724	이정희	여	461203-2228313	658	73.11	〃 〃	
7727	나병철	남	610715-1162610	583	64.77	삼일중 졸업	
7730	이원희	남	720616-1850015	637	70.77	양명고 중퇴	
7734	민인자	여	730201-2642216	644	71.55	도곡중 졸업	
7735	주혜정	여	670426-2067519	670	74.44	검정고시 검정	
7736	유철희	남	640611-1168316	682	75.77	〃 〃	
7737	박찬숙	여	710918-2163011	648	72.00	〃 〃	
7739	박상훈	남	701005-1074914	633	70.33	안양공고 중퇴	
7740	김경철	남	710303-1668617	600	66.66	압해상고 〃	
7742	김정욱	남	720505-1231256	624	69.33	소년의집 〃	
7743	추창경	여	700528-2526611	568	63.11	장수중 졸업	
7745	강석락	남	740215-1397115	663	73.66	청주신흥고 중퇴	
7746	조정희	여	711104-2809028	548	60.88	검정고시 검정	
7747	이태영	남	711211-1321317	660	73.33	광명고 중퇴	
7748	오태석	남	711109-1661837	624	69.33	광주종고 〃	
7750	이승용	남	690204-1168211	572	63.55	광주종고 〃	
7752	유형규	남	710502-1011221	653	72.55	부천북고 〃	
7760	이미화	여	610811-2167513	573	63.66	검정고시 검정	
7765	김영준	남	670307-1162112	543	60.33	〃 〃	
7767	민극기	남	720222-1396528	560	62.22	〃 〃	
7773	홍성진	남	681202-1528410	633	70.33	성수중 졸업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774	선정훈	남	690516-1458627	602	66.88	부여고 중퇴	
7778	정은경	여	700523-2224411	576	64.00	원곡고 〃	
7780	박남진	남	671223-1229812	602	66.88	오산고 〃	
7784	정하일	남	701115-1392719	584	64.88	진천고 〃	
7786	조인섭	남	690902-1226110	643	71.44	신한고 〃	
7787	김미경	여	660216-2226314	620	68.88	검정고시 검정	
7797	정일용	남	650310-1386527	599	66.55	〃 〃	
7814	장정환	남	580316-1006516	559	62.11	강현중 졸업	
7817	정영호	남	690521-1229115	583	64.77	검정고시 검정	
7821	윤선원	남	691115-1042335	611	67.88	〃 〃	
7822	김영재	남	710323-1351216	628	69.77	운호고 중퇴	
7823	조성수	남	641014-1228310	585	65.00	검정고시 검정	
7827	고정희	여	700103-2168238	588	65.33	〃 〃	
7828	인동숙	여	730105-2168143	615	68.33	낙생중 졸업	
7830	한미선	여	710405-2009027	667	74.11	성보여상 중퇴	
7832	이정훈	남	670212-1162412	614	68.22	수성중 졸업	
7835	이상덕	남	711020-1326612	581	64.55	원주고 중퇴	
7836	김준수	남	610228-1221924	586	65.11	의정부중 졸업	
7838	박희찬	남	690719-1231217	627	69.66	양명고 중퇴	
7839	김경수	남	570109-1173618	596	66.22	경민중 졸업	
7840	이수미	여	720508-2155511	585	65.00	한광여고 중퇴	
7841	김린철	남	680305-1830319	152	76.00	한독직업훈련졸업	
7847	허진선	남	581123-1156219	578	64.22	장계중 졸업	
7849	이형기	남	670406-1454618	656	72.88	논산고 중퇴	
7930	박동승	남	480508-1029819	585	65.00	동북중 졸업	
7936	윤재필	여	560416-2162720	353	70.60	수원상업전수졸업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938	유재신	남	670610-1227129	620	68.88	평택고 중퇴	
7942	김보순	여	720316-2250117	589	65.44	죽산상고 〃	
7943	김호철	남	730607-1167413	633	70.33	성남동중 졸업	
7944	이계수	남	730103-1236913	568	63.11	인천기계공고중퇴	
7946	조형래	남	690407-1668019	588	65.33	진위상고 〃	
7947	박향숙	여	721010-2024623	589	65.44	검정고시 검정	
7949	손정훈	남	701214-1674618	662	73.55	〃 〃	
7950	원정재	여	710116-2227211	629	69.88	청담중 졸업	
7951	류동형	남	690505-1231745	642	71.00	소사고등기술 〃	
7953	남방현	남	720420-1167536	644	72.00	〃 〃	
7955	김영애	여	580320-2162347	630	70.00	삼일상고 중퇴	
7956	정부도	남	581203-1453219	609	67.66	영명중 졸업	
7957	이영춘	남	460508-1178318	595	66.11	부산전자공고중퇴	
7958	김강수	남	660322-1332729	594	66.00	정산중 졸업	
7959	여성자	여	700923-2260619	711	79.00	성수여상고 중퇴	
7960	양점숙	여	551224-2144312	708	78.66	인성여중 졸업	
7961	김종업	남	680309-1228312	580	64.44	검정고시 검정	
7962	조원근	남	501125-1478828	615	68.33	〃 〃	
7963	김영식	남	570420-1478111	648	72.00	〃 〃	
7964	곽동근	남	580710-1479011	633	70.33	천안농고 중퇴	
7965	오세준	남	701011-1231315	708	78.66	영등포방통고 〃	
7967	안현숙	여	470210-2148718	562	62.44	검정고시 검정	
7968	조영애	여	691103-2251213	641	71.22	명륜여자중 졸업	
7969	강연자	여	601220-2639338	671	74.55	벌교여중 〃	
7970	장정옥	여	730429-2323616	643	71.44	북원여중 〃	
7973	이미영	여	640901-2408018	660	73.33	대전방통고 중퇴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7977	이정경	남	630115-1226261	601	66.77	한광중 졸업	
7979	김경호	남	711115-1162911	579	64.33	수원중 〃	
7980	길성일	남	710305-1168210	613	68.11	검정고시 검정	
7981	이호상	남	640120-1162914	576	64.00	〃 〃	
7982	한광희	남	690508-1534124	596	66.22	구림중 졸업	
7984	김용신	남	671118-1468617	669	74.33	예산고 중퇴	
7988	손종철	남	620119-1239019	694	77.11	검정고시 검정	
7990	최종석	남	711116-1168122	576	64.00	풍생고 중퇴	
7993	김재권	남	650902-1227118	654	72.66	한광고 〃	
7994	김수남	남	680703-1163023	579	64.33	삼일실고 〃	
7995	박승보	남	700128-1447416	599	66.55	검정고시 검정	
7996	신금례	여	581107-2167527	608	67.55	〃 〃	
7998	민춘화	여	661205-2229015	623	69.22	송산중 졸업	
8000	안수진	여	690126-2895017	582	64.66	함안여중 〃	
8003	박순임	여	520415-2167814	625	69.44	한양여중 〃	
8005	배옥자	여	690420-2656925	575	63.88	함평여고 중퇴	
8006	이오영	남	651101-1069313	623	69.22	유신고 〃	
8008	이규선	남	650215-1228336	595	56.11	오산중 졸업	
8030	장현덕	남	620410-1167939	301	60.20	성남상업전수 〃	
8031	박상구	남	680301-1925912	136	68.00	한독직업훈련 〃	
8036	임미옥	여	710509-2474511	613	68.11	송악중 〃	
8039	이은주	여	720930-2162534	674	74.88	창현고 중퇴	
8041	인동신	남	670512-1168113	632	70.22	낙생중 졸업	
8042	윤경이	여	720617-2237411	657	73.00	상북고 중퇴	
8043	김동일	남	580925-1031112	693	77.00	재현중 졸업	
8044	김동분	여	680325-2468818	690	76.66	검정고시 검정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8045	강경순	여	581203-2461012	613	68.11	검정고시 검정	
8046	이필은	남	671128-1162111	742	82.44	수원고 중퇴	
8047	최귀동	남	660120-1482110	596	66.22	상산고 〃	
8048	김영식	여	680515-2351215	622	69.11	검정고시 검정	
8049	장영애	여	540926-2227215	668	74.22	〃 〃	
8054	김선희	여	710727-2696711	540	60.00	〃 〃	
8058	안수철	남	601226-1652813	565	62.77	〃 〃	
8061	권기모	남	550919-1025127	612	68.00	대구상고 중퇴	
8063	박병기	남	690319-1229520	622	61.00	한독직업훈련 졸업	
8064	한득용	남	681108-1925224	644	72.00	〃 〃	
8065	이종태	남	710129-1249520	623	69.22	수성중 〃	
8076	오현수	남	630421-1480818	553	61.44	전주동중 〃	
8077	이치형	남	550425-1228328	557	61.88	계광중 〃	
8080	고경순	여	710428-2222715	637	70.77	동일여상고 중퇴	
8085	임성일	남	730112-1149312	638	70.88	인항고 〃	
8088	김현목	남	730614-1036429	638	70.88	운곡공고 〃	
8089	이길도	남	720206-1019524	630	70.00	광운전자공고 〃	
8092	하진규	남	710710-1024721	614	68.22	도봉상고 〃	
8095	조성민	남	720529-1063117	627	69.66	동양공고 〃	
8098	임호춘	남	640502-1068211	643	71.44	동양중 졸업	
8099	김성철	남	640124-1018418	641	71.22	대경중 〃	
8100	주동일	남	700215-1654512	616	68.44	영산포상고 중퇴	
8101	조재환	남	690815-1380812	649	72.11	부강공고 〃	
8103	고광호	남	681120-1408829	677	75.22	대전중 졸업	
8104	김관석	남	681117-1031618	709	78.77	안흥고 중퇴	
8105	김경호	남	690927-1640117	741	82.33	금당고 〃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명단(예정자제외)

수험번호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총점	평 균	출신학교	비 고
8109	김종빈	남	690218-1182917	622	69.11	소사공고 중퇴	
8112	김춘배	남	670127-1011628	678	75.33	마포고 〃	
8113	김광일	남	671113-1567426	717	79.66	목포기계공고 〃	
8114	조승휘	남	651106-1017231	710	78.88	한영중 졸업	
8115	조우현	남	650310-1469460	694	77.11	예산중앙고 중퇴	
8117	하정길	남	691014-1155819	658	73.11	부평동중 졸업	
8121	김승열	남	620209-1481315	642	71.33	검정고시 검정	
8123	이종율	남	680105-1044119	656	72.88	〃 〃	
8124	이면우	남	581107-1069010	684	76.00	〃 〃	
8125	최우근	남	680202-1162623	702	78.00	〃 〃	
8127	정경진	남	700408-1469115	629	69.88	해미고교 중퇴	
8129	김용식	남	690602-1290910	689	76.55	검정고시 검정	
8180	강영길	남	611201-1346413	580	64.44	〃 〃	

성남시고시 제182호

고 시

성남(한성1.2지구 및 자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변경하였기 같은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8. 22

성 남 시 장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계획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230,791.0	
한성1지구	중원구 은행동 1223-1 번지 일원	75,243.7	
한성2지구	중원구 은행2동 753 번지 일원	84,904.7	
자혜지구	중원구 은행1동 1988 번지 일원	70,642.6	

2.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o 도시기반 및 공공시설 : 1990.6 - 1992.12.31

o 자력 건축물 개량 : 1990.6 - 1999.12.31

3. 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o 주 소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

o 성 명 : 성남시장

4.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내용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	한성 1지구	%	한성 2지구	%	자혜지구	%
계		230,791.0	100	75,243.7	100	84,904.7	100	70,642.6	100
단독주택	변경전	137,992.3	59.8	48,307.4	64.2	45,547.6	53.7	44,137.3	62.5
용 지	변경후	138,106.7	59.8	48,307.4	64.2	45,547.6	53.7	44,251.7	62.6
공동주택	변경전	25,019.4	10.8	9,780.0	13.0	14,153.4	16.6	1,086.0	1.5
용 지	변경후	24,975.4	10.8	9,780.0	13.0	14,109.4	16.6	1,086.0	1.5
근린공공	변경전	3,894.4	1.7	516.4	0.7	1,515.7	1.8	1,862.3	2.6
시 설	변경후	3,379.8	1.5	306.9	0.4	1,559.7	1.8	1,513.2	2.3
공원, 녹	변경전	2,303.0	1.0	1,410.0	1.9	893.0	1.1		
지, 기타	변경후	2,747.2	1.2	1,619.5	2.2	893.0	1.1	234.7	0.3
도 로	변경전	61,581.9	26.7	15,229.9	20.2	22,795.0	26.8	23,557.0	33.4
	변경후	61,581.9	26.7	15,229.9	20.2	22,795.0	26.8	23,557.0	33.3

나. 공공시설의 정비 - 변경없음

구 분	단 위	계	한성 1지구	한성 2지구	자 혜 지 구
계	건	52 / 10,011	24 / 4,250	12 / 2,546	16 / 3,215
도 로 개 설	건/m	6 / 1,010	4 / 650	1 / 170	1 / 190
도로확, 포장	〃	6 / 991	4 / 417	1 / 99	1 / 475
도 로 정 비	〃	11 / 1,310	2 / 240	4 / 746	5 / 344
상수도급수공사	〃	17 / 5,110	8 / 1,910	4 / 726	5 / 1,760
가 압 펌 프 장	개소/HP	1 / (20)			1 / (20)
하수도시설공사	건/m	8 / 1,446	4 / 980	2 / 111	2 / 355
하수도관경확장	〃	3 / 144	2 / 53		1 / 91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다. 주택건설계획 - 일부변경

1)단독주택 - 변경없음

- 과소토지 활용방안으로 합동주택 건설 유도
  - 대지규모 60 ㎡ (18 평) 이하는 합동주택으로 개량
  - 대지규모 60 ㎡ (18 평) 이상은 단독개량
- 건축선 후퇴의 적용으로 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 자력개발(현지개량)의 원칙으로 하되 조례에 의거 개발

2)공동주택

지구별	위치	변경전							변경후				
		계	분양				임대	영구임대	분양				
			소계	13	16	18	11.5	11.5	계	11.5	13	16	18
계		294	180	114	42	24	59	55	294	114	114	42	24
한성1지구	소계	252	150	102	30	18	47	55	252	102	102	30	18
	은행동 1220-1	18	12	6	6		6		18	6	6	6	
	1230-1	18	18			18			18				18
	1417-1	32	16	16				16	32	16	16		
	1417-2	72	48	24	24		24		72	24	24	24	
	1932-2	48	24	24				24	48	24	24		
	1932-2	64	32	32			17	15	64	32	32		
한성2지구	은행동 1178	24	18	6	6	6	6		24	6	6	6	6
자혜지구	은행동 2036	18	12	6	6		6		18	6	6	6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라. 건축물개량(자력)계획 - 변경없음

지 구 별	단 위	개 량 대 상	비 고
계		1,403	
한 성 1 지 구	동	436	
한 성 2 지 구	〃	557	
자 혜 지 구	〃	410	

마. 재해방지대책 : 변경없음

— 역T형 및 중력식 옹벽(H=2-4) : 453 m

바. 인구수용계획 : 변경없음

— 4,750 세대 19,000 명 수용

사. 공동이용시설 확충(기존시설제외) : 변경없음

구 분		단 위	계	한성1지구	한성2지구	자혜지구	비 고
계			8	4	2	2	
복지회관	변경전	건	3/450	1/90	1/180	1/180	
건 립	변경후	동/평	3/720	1/180	1/270	1/270	복합용도건물
노 인 정	변경전	〃	3/270	1/90	1/90	1/90	
건 립	변경후	〃	1/90		1/90		
어 린 이	변경전	〃	1/300	1/300			
놀 이 터	변경후	개소/㎡	2/509.5	2/509.5			
녹 지 ,	변경전	〃	1/1,110	1/1,110			
주 차 장	변경후	〃	2/1,344.7	1/1,110		1/234.7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 '90 사업추진 위치 및 용도변경

지구별	변경전			변경후		
	위치	용도	면적(㎡)	위치	용도	면적(㎡)
한성1지구	은행2동 1242-1 -2	노인정	209.5	은행2동 1242-1 -2	어린이놀이터	209.5
한성2지구	은행2동 1034	복지회관	256.0	은행2동 1034	복합용도건물	300.0
자체지구	은행1동 2020	〃	324.7	은행1동 2020	단독주택	114.4
	2021 2022			2021 2022	복합용도건물	210.3
	은행1동 2254	노인정	234.7	은행1동 2254	노외주차장	234.7

— '90 사업계획에 의한 은행2동 1417-1 (한성1지구) 어린이놀이터를 은행동 1242-1외 1필지로 위치변경 시공하고 1417-1 번지는 '92 대지조성후 시공

아.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자금조달계획 - 일부변경

가. 소요사업비 - 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한성1지구		한성2지구		자체지구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854.4		6,277.2		1,403.9		2,173.3	
조사업무비		28	1식	9	1식	11	1식	8	
보상비		1,906	1식	985	1식	75	1식	846	
공사비		1,054.3		560.6		191.9		301.8	
토공	27,900 ㎥	64.2	21,400	40.7	3,000	6.2	3,500	17.3	
배수공	3,810 m	517.7	2,020	277.8	710	91.4	1,080	148.5	
구조물공	460 m	36.8	460	36.8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구 분	계		한성 1지구		한성 2지구		자 혜 지 구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포 장 공	75.3a	112.8	56.3	79.8	10	15	11.72	18	
상수도공	5,080m	262.8	1,910	95.5	1,410	64.3	1,760	103	
조 경 공	1 식	30	1 식	20	1 식	5	1 식	5	
부 대 공	1 식	30	1 식	10	1 식	10	1 식	10	
아파트건립	3,896평	4,615.9	3,303	3,963.6	350	385	243	267.3	
공 공 건 축	810평	840.2	270	279	270	261	270	300.2	
주 택 개 량	1,403동	1,410	436	480	557	480	410	450	

나. 자금조달계획 - 변경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계	9,854.4	9,854.4	
일 반 회 계	2,747.0	384.4	일반회계지원 13 - 18평형
주 택 분 양 금	4,456.4	6,819.0	평당 110만원
사유지매각비	2,651.0	2,651.0	

5. 도시계획사항 -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변경없음

지구별	등급	류별	폭원	기정		신설		변경		비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16	3,916	63	5,966	4	1,548	
한성1지구	소계			4	927	19	1,750	3	928	
	소로	2	8	2	381	1	69			
	소로	3	4-6	2	546	18	1,681	3	928	
한성2지구	소계			4	1,093	14	1,738	1	620	
	소로	2	8			1	45			
	소로	3	4-6	4	1,093	13	1,693	1	620	
자혜지구	소계			8	1,896	30	2,478			
	중로	2	15	1	475					
	소로	2	8	1	137					
	소로	3	4-6	6	1,284	30	2,478			

나. 건축후퇴선 적용 토지 - 변경없음

지구명	노선번호	위치	비고
한성1지구	소로 3-361	은행동 1772 - 은행동 1867	
	소로 3-407	은행동 1830-7 - 은행동 1839-3	
한성2지구	소로 3-352	은행동 1169-1 - 은행동 1201	
	소로 3-358	은행동 776 - 은행동 1081	
	소로 3-369	은행동 883 - 은행동 896-1	
	소로 3-370	은행동 907-3 - 은행동 921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지 구 명	노 선 번 호	위 치	비 고
자혜지구	소로3-380	은행동 2347 - 은행동 2351	
	소로3-375	은행동 2331 - 은행동 2339	
	소로3-376	은행동 2329 - 은행동 2337	
	소로3-377	은행동 2315 - 은행동 2321	
	소로3-374	은행동 2296 - 은행동 2289	

6. 주거환경 개선계획도 : 생략 - 변경없음

안양시고시 제 212 호

고 시

1. 건설부고시 제 714 호(87.12.24)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 157 호 (88.6.22) 및 경기도고시 제 385 호(89.12.16)로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된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변경허가하고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변경허가 내용 및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의왕시청, 군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90. 8. 21

안 양 시 장

경 기 도 보

제 2361 호

가.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시행 변경허가 사항

1)사업시행지(변경없음)

수원도시계획구역계 - 안산시 도시계획구역계

2)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 도로 및 광장

명칭 : 대 3-13 호선, 중 2-22 호선, 제 9 호광장

3)사업시행자 주소, 성명(변경없음)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사장

4)사업시행 규모

○ 도 로

구 분	폭 (m)	연장(m)	면 적 (㎡)		시 점	종 점	비 고
			기시행	변경시행			
대 3-13 호선	24.40 - 100	3,845	215,224	219,311	의왕시삼동 산 65	안산시도시계획 구역계	
중 2-22 호선	16.20	360	20,765	21,703	의왕시삼동367	대 3-7 호선	

○ 광장(변경없음)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제 9 호광장	교통광장	의왕시삼동 304 일대	93,944	부 고

5)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89.12.26 - 91.12.31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7)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나. 도면은 별첨과 같음(생략)

경 기 도 보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 면적 (㎡)	편입확정 면적 (㎡)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관계인 주소	관계인 성명	비고
1	군포시 부곡동	(원지번 363) 363-1	답	3,094	2,538	2,615	군포시부곡동 116	문덕용			
2	〃	(원지번 375) 375-1	답	4,552	4,045	4,073	안양시안양동 633-7	이완준			
3	〃	(원지번 387-3) 387-7	답	1,293	427	465	군포시당동 565	김동우 외 3			
4	〃	(원지번 528) 528-1	전	5,190	310	342	수원시고등동 160-9	이광수	수원시평동 12	이남수 외 3	가등기
5	〃	(원지번 415-7) 515-14	답	2,155	869	894	군포시포일동 243	이남정			
6	〃	(원지번 415-8) 415-15	답	1,630	828	849	〃	〃			
7	〃	(원지번 415-4 415-11	답	3,696	640	661	군포시부곡동 172	곽호현			
8	〃	(원지번 409-2) 409-7	도	2,142	181	205	〃 520	정근옥	서울강남구서초동216-2 서울중구을지로 6 가 18-172	(주)경농 (주)경북농약	근저당 〃
9	〃	(원지번 458-1) 458-3	도	255	12	17	〃 116	이세현			
10	〃	(원지번 471-1) 471-4	답	1,560	299	371	〃 563	김창호 외 4			

11	의왕시 삼 동	(원지번 24-2) 24-4	대	1,018	107	143	의왕시삼동 24	신동교				
12	//	(원지번산 55) 산 55-1	임	11,901	3,894	4,073	강남구압구정동 216 현대아파트 17동 205	전하우	시흥군	시흥군	압 류	
13	//	(원지번 301) 301-1	답	1,927	1,857	1,862	강서구등촌 2 동 517 -22	변성중				
14	//	(원지번 352-1) 352-3	답	1,663	253	264	9712 레이빈 알리 베에스타 20817	한법석				
15	//	(원지번 397) 397-1	답	2,066	888	927	대전시중구유천동 266-30	안상기	서울중구삼각동 115	한국야쿠르트유업	가등기	
16	//	(원지번 399) 399-1	답	2,007	400	444	의왕시삼동 179-1	//				
17	//	(원지번 462-15) 462-29	대	22,313	6,481	7,053	인천시동구만석동 6	대 우 중공업				
18	//	(원지번 462-1) 462-28	대	7,278	103	115	//	//				
19	//	(원지번산 19-4) 산 19-9	임	2,182	1,673	1,811	//	//				
20	//	(원지번산 19-3) 산 19-6	임	14,777	6,535	7,421	//	//				
21	//	(원지번산 21-1) 산 21-2	임	12,793	5,431	6,070	//	//				
22	//	(원지번산 22-2) 산 22-3	임	7,041	1,891	2,084	//	//				
23	//	(원지번 423) 423-1	전	2,268	10	18	의왕시오전동 82-1	최동흥	서울영등포구시흥동 528-7	신지택	가등기	

경 기 도 보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예정 면적 (㎡)	편입확정 면적 (㎡)	소유자 주 소	소유자 성 명	관계인 주 소	관계인 성 명	비고
24	의왕시 삼 동	(원지번 417-1) 417-3	답	4		4	서울용산구보광동 265-946	김응각	인천시동구망석동 6-6 시흥군	대우중공업 (주) 시흥군	가등기 압 류
25	〃	318	전	1,804		24	의왕시삼동 30	평산신씨 종 중			
26	〃	316	전	802		530	서울신당동 291-13	김혜원			
27	〃	산 41-5	임	367		99	산림청	국유지			
28	〃	산 17	임	13,689		306	삼동 383	안승준	시흥군의왕읍고천리 273-1	의왕단위농 협협동조합	근저당
29	〃	350	전	2,056		96	19	신기수			
30	〃	353	전	2,843		132	27	신준수			
31	〃	351-1	답	4,778		420	19	신기수			
32	〃	363-5	답	228		85	200-19	신화수			
33	〃	363-6	대	314		96	〃	〃			
34	〃	363-2	전	962		36	383	안승준			
35	〃	363-1	대	413		73	〃	〃			
36	의왕시 이 동	(원지번 191-2) 191-6	답	4,123	19	38	영등포구신길동 4903-15	신정수			

안산시 고시 제 26 호

고 시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1 항 같은법 시행령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사업시행변경 허가하고 같은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과 및 수암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990. 8. 21

안 산 시 장

1. 변경 허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산시 와동 산 29-5 번지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공용의 청사
- 명 칭 : 운전면허시험장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수원시 신풍동 123-2 호
- 성 명 : 경기도 경찰국장

라. 면적 및 규모
- 면 적 : 45,808.2 ㎡ (변경없음)
- 규 모
  - 관리 및 편익시설부지 당초 : 1,666.82 ㎡
    변경 : 2,137.10 〃 (증) 470.28 ㎡
  - 교육시설(코스) : 12,461.18 ㎡ (변경없음)
  - 조 경 시 설 : 13,220 〃 (〃)
  - 주 차 시 설 : 2,120 〃 (〃)
  - 기타시설(도로)
    - 당초 : 16,340.20 ㎡
    - 변경 : 15,869.92 〃 (감) 470.28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

- 토지소유자 : 경기도 경찰국장(변경없음)
- 건물소유자 : 〃 (〃)
- 이해관계인 : 없 음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당 초 :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 1989.12.31까지
- 변 경 : 〃 〃 - 1990.12.31까지

양평군 고시 제138호

고 시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양평도시계획사설(철도부대시설) 사업시행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1990. 8. 17

양 평 군 수

가. 사업시행지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26번지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양평도시계획시설(철도부대시설)
- 명칭 : 철도부대시설(시멘트 화물하치장)

다. 사업시행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 성명 : 서울지방 철도청장

라. 토지의 소유자

- 국(철도청) 소유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공 : '90.9
- 준공 : '90.12.31

바. 허가조건

가. 본 계획은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규정과 타법이 적용되는 사항은 관계법의 절차를 이행할 것.

나. 건축물, 공작물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별도 허가를 득할것.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주택지 및 농경지와 기존 공공시설에 피해가 있을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마. 사업시행중이라도 필요한 허가권자가 추가로 지시할 수 있다.

바. 착공, 준공시에는 관계자료 첨부하여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금시 공고 제86호

공 고

폐차체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강제처리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0. 8. 20

미 금 시 장

폐차체 강제처리 대상

발생일시	발생위치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비 고
90.5.10	호평동	강원5마 2398	남양우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 산171-1	
90.6.20	원진앞	서울3라 3144	신동석	미금시 지금동 394	
90.3.10	금곡동	미 상			
90.4.10	금곡하천	대구1라 1306	윤용범	경주군 강동면 유금리 1063	
90.4.15	〃	서울8마 6749	최선자	노원구 중계동 209-10	

의왕시 공고 제108호

공 고

의왕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징수관의 신조공인을 의왕시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사용개시일 : 90. 8. 21

나.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의왕시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징수관인	

1990. 8. 21

의 왕 시 장

성남시 공고 제184호

공 고

성남시공인조례 6조2항 규정에 의거 개각한 공인을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0. 8. 24

성 남 시 장

성남시중원구 성남 동장인		성남시중원구 중 동 장 인		성남동 계인	성남시중원구

하남시공고 제 138호

자동차강제처리(폐차처분)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폐차)조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전(폐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강제처리(매각, 폐차)처분할것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경기도보 기재일로부터 15일간

2. 대상자동차

연번	차량번호	차 종	차 명	방치장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서울2나1873호	승용차	포니 니	하남시신장2동 사무소앞	김포군, 읍사오리 222-2	임시겸
2	부산1다2495호	〃	마 크 4	신장2동신한전기앞	부산시사학구괴정동 957번지	김일선
3	미상	화 물	봉 고	덕풍1동등부여중 정문앞		
4	서울2다5187호	승용차	포 니	덕풍1동호남카 인테리어앞	하남시덕풍동 309-29	강시성
5	미상	승합차	봉 고	덕풍1동 429번지 야산		
6	서울3다7323호	승용차	포 니	덕풍1동 일신공업 사옆	서울시구로구가리봉동 102번지	최태원
7	서울4더1913호	〃	〃	〃	서울시양천구신정동 168-25	이겸용
8	미상	〃	프레스토	덕풍3동 415-72		
9	서울5나5667호	승합차	봉 고	덕풍3동 엘칸토옆	서울시미포구신수동 105-27번지	이동헌
10	서울7마6112호	화 물	2.5톤	풍산동 동부유도장 옆	〃 중랑구망우동 420-14번지	이상윤
11	경기8너8785호	〃	봉고1톤	풍산동 광신교통	하남시풍산동105번지	신창근
12	미상	승용차	포 니	삼사창2동		
13	미상	〃	로얄살롱	초일동산1번지		
14	경기7도3381호	화 물	2.5톤	〃 산2번지	서울시송파구송파동 118-16번지	이찬의
15	경기2다4190호	승용차	마 크 5	광암동 98번지	수원시장안구연무동삼 우연립 7동 102	이광국

3. 기타 문의사항 및 이의가 있으신분은 하남시 지역경제과(전화 790-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0.9.27 하남시장

정 정

1. 경기도보 제 2359 호 (90.8.13)에 게재된 부천시 고시 제 24, 26, 27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가. 부천시 고시 제 24 호의 6 항 토지조서중 지목 누락을 "임"으로

나. 부천시 고시 제 26 호의 1 항중 "경기도고시 제 338 호 ('87.8.29)"을 "경기도고시 제 338 호 ('89.11.20) "토지조서중 14 번" 서울시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APT 326 동 403 호"을 "서울시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 APT 216 동 403 호"로

다. 부천시 고시 제 27 호의 토지조서중 2 공구 3 번 부천시 중구 삼정동 143-4 번지의 공부상 면적을 "20"을 "413"으로, 15 번 부천시 중구 삼정동 "91-1"을 "91-9"로, 31 번 서울시 서대문구 만리동 2 가 "202-18"을 "200-18"로 정정. 끝.

부 천 시 장